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443-01

우리나라 어업지도 · 단속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2009. 11.

주관 연구기관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농 립 수 산 식 품 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연 구 기 관 명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 이 광 남
연 구 원 : 차철표(부경대), 정진호, 최윤범,
김민주, 박광호, 윤동한

요 약 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 불법어업은 어업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에게 법을 지키면서 어업하는 어업인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촌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날로 감소하는 어업자원을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을 실현하며, 지도·단속과 관련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어업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계획의 수립은 물론, 지도·단속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필요성

- 불법어업은 산란장과 치어의 성육장을 파괴하고, 치·자어를 무차별적으로 어획하여 어업자원 전체의 재생산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며, 어장과 자원이용을 둘러싼 어업자들 간의 조업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 EEZ 침범 불법조업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지도·단속 업무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 어업 생산 및 경영 안정이라는 어업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하며 효율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는 체계 및 운영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수산선진국의 지도·단속 사례 분석과 새로운 어업 지도·단속 수요 분석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체계의 구축 및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에서는 여건변화 및 새로운 어업지도·단속 수요분석, 제3장에서는 어업지도·단속의 실태분석, 제4장에서는 불법어업 단속 및 불법어업자 관리 실태분석, 제5장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 제6장에서는 어업지도·단속 운영성과 분석, 제7장에서는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제8장에서는 어업지도·단속 중장기 발전방안 등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기관별·업종별·시간적·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음. 먼저 기관별로는 국가 지도·단속 업무와 지방자치단체, 해경으로 범주를 나누었고, 업종별로는 연근해, 양식, 내수면, 원양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음. 시간적으로는 1960년대 단속업무의 태동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살펴보고,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 연·근해와 EEZ 지역, 지역 수산기구, 러시아 수역 등을 포함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음. 첫째,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둘째, 연구방향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회의 및 자문단 회의를 실시하였음. 셋째, 지도·단속 현황 파악을 위하여 각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작성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넷째, 주요 수산국의 해외사례 조사를 위하여 해외출장 및 관련국 외교공관을 통한 자료 수집, 다섯째, 직·간접 편익 측정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제2장 여건변화 및 새로운 어업 지도·단속 수요 분석

제1절 지도·단속의 역사적 고찰

- 체계적인 불법어업의 단속은 수산청 발족 당시부터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전 해역에 투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연근해에 출어하는 어선들의 안전조업지도를 위하여 정부는 매년 「연근해 어선안전조업지도대책」을 수립·시달하는 한편, 성어기에는 주요 어장에 어업지도선을 전담 배치하여 월선조업방지, 조업분쟁 예방, 어로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였음
- 또한 일선수협으로 하여금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연근해어선의 간부선원에 대하여 직무기술교육과 안전조업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어선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불법어업 단속 및 조업지도 연혁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불법어업 단속 및 조업지도의 연혁

연 도	내 용
1960년대	- 서해 및 동해 어로 보호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 실시
1970년대	- 선박 안전조업 규정 제정(1972.4.17) - 승선지도원 운영(1974~)
1980년대	- 전국 수협, 어촌계를 중심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자체추방운동 전개 - 불법어업 자진 신고기간 설정(1981~) -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배제 및 전국 일제단속, 합동단속 실시
1990년대	- 어업질서 확립대책 수립(1991~) -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 집중 단속 실시 -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불법어업자 전업 지원 조치
2000년대	- 해양질서확립대책 수립(2000) - 행정자치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3부 장관 합동담화문 발표 등 강력한 어업질서 확립 의지 표명(2003) -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2004.12.31) -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2007. 8)

제2절 국내·외 여건변화

1. 국내여건

- 어업인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청·장년층의 수산업 기피 현상으로 어촌지역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의 열악한 의료 및 교육 등의 인프라 개선, 문화생활 공간 확충 등이 필요함
- 과거 해양환경오염 및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인한 고갈 등으로 의해 수산물 생산량은 1995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수산자원회복, 어선감척, 자율관리어업 등의 지속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추진한 결과 2005년 이후 수산자원이 점진적 회복 추세를 보임에 따라 수산물생산량 역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2. 국외여건

- UN해양법협약 발효(1996), 한·일(1999), 한·중(2001)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본격적인 EEZ체제가 정착 및 FAO/IUU 근절을 위한 각국 행동계획 요구
-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어장 축소 및 중국어선의 서해 NLL지역 불법조업 지속적 증가
-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수산자원관리 보존조치의 준수와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감시 활동으로 안정적인 어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승선검색이 필요
- 재급유, 재공급, 전재 및 양륙의 목적으로 외국어선이 항구 또는 연안에서 떨어진 부두(offshore terminals)로 입항할 경우, 항구국에 의한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항구국 조치 사항에 따라야함

제3절 수산정책 여건변화

1. 부문별 여건 변화

- 수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자원남획 → 자원감소 → 경영악화 → 어획노력가중 → 자원남획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되풀이하고 있음
- 더욱이 DDA 협상으로 수산보조금이 대폭 금지되는 안건이 논의 중이며, 동 논의에서 면세유, 영어자금 등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약 70%가 금지될 수도 있고, 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관세인하로 인한 수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 수산물 경쟁력 약화로 수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수산업의 위치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정책 패러다임은 현실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저조한 실정임

2. 신 수산정책 추진

- 부문별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산정책의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수산부문은 과거 해양수산부 정책 기조에서 탈피하여 농림수산물부 시대의 새로운 수산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신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은 ‘산업’으로의 육성이며, 자원보호와 소득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원을 남획하고, 일반 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만드는 불법어업이므로, 이를 근절하기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매우 중요함

제4절 법·제도 여건변화

1. 법·조직 변천

- 우리나라는 수산업에 관한 근대법적 체계를 마련했던 1908년의 어업법에서부

터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어업질서 문란행위와 법규의 위반을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어업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음

- 현재 불법어업에 대한 해상 지도·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어업지도선과 시·도, 시·군 어업지도선 및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불법어업근절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어업 단속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불법어업의 단속과 지원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영해 이원의 관할수역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영해 내측수역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어업지도선, 시·도 및 시·군이 담당하며, 시·도 및 시·군의 경계수역은 시·도 및 시·군이 합동으로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2.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조직과 역할

- 우리나라는 수산업법 제63조, 제64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7조 및 어업감독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에 의하여 어업감독공무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어업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사권한, 검사·질문권, 정선명령권,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권 등의 권한을 가짐

제5절 새로운 지도·단속 수요분석

- 현재 어선어업 이외 분야에 대한 어업감독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의 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며, 현행 연근해 어선어업 단속 중심의 어업감독공무원 활동

범위를 국내외 수산업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어업지도·단속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지도·단속업무 성과 우수 사례를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는 등의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관별 지역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창의적 사고를 통한 개선 성과를 공유하여 지도·단속의 효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입출항 신고제도 개선 및 접경수역 어장확장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어업인 안전조업지도 교육 내실화 및 사고 다발어선 중점관리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이 필요함
- 선령 30년 1척(500톤급), 선령 29년 2척(1,000톤급), 선령 27년 2척(100톤급) 등 선박의 노후도 심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선령 25년 이상 노후 어업지도선의 대체 건조가 시급하며, 국가어업지도선 확충 및 노후 국가어업지도선 조기 대체건조가 필요함
- 불법어업 근절 노력과 함께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관리하는 어업질서 선진화 토대를 마련하고, 어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지도·단속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를 강화하여 위반조업으로 피랍되는 우리어선을 최소화하고, EEZ 및 NLL 주변수역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북한과 인접한 인천, 강원지역의 출입항통제소 15개소에 어선안전점검요원 31명을 배치·운영하고, 특정해역 출어선 선단편성 및 안전점검 강화를 통한 월선·피랍예방 노력이 필요함

제3장 어업 지도·단속의 실태분석

제1절 지도·단속 실태분석

1.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 국가어업지도선의 보유 척수와 권역별 보유 척수를 살펴본 결과,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어업지도선 보유 척수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보다 많지만, 오히려 서해권역에 지방자치단체 보유 척수가 많아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업무 과중이 발생할 수 있음.
- 국가 어업지도선과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의 단순 비율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할 때,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지도선 1척과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이 더 적은데 반해 어업 종사자 대비 어업지도선 비율은 서해가 보다 높아 어업지도선 배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 기관별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척수	비율	척수	비율	척수	비율
어업지도사무소	-	-	-	-	33	-
동해권	7	10.46	7	9.73	7	9.45
강원도	3	4.48	3	4.17	3	4.05
경상북도	2	2.99	2	2.78	2	2.70
울산시	2	2.99	2	2.78	2	2.70
서해권	21	31.35	21	29.16	25	33.79
경기도	6	8.96	6	8.33	6	8.11
인천시	9	13.43	9	12.50	9	12.16
충남	6	8.96	6	8.33	6	8.11
전라북도	0	0.00	0	0.00	4	5.41
남해권	39	58.21	44	61.11	42	56.75
부산시	10	14.93	10	13.89	10	13.51
경상남도	12	17.91	12	16.67	12	16.22
전라남도	17	25.37	17	23.61	17	22.97
제주시	0	0.00	5	6.94	3	4.05
합계	67	100.00	72	100.00	74	100.00

2. 기관별 담당 부서 현황 분석

- 시·도별 공무원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529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620명, 2008년에는 68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시·도별 담당 공무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동해권의 경우는 2006년 약 49%의 인원이 있었으나 2008년에는 약 40%로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남해권은 2006년 약 35%에서 2008년 약 40%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해권과 남해권의 비율이 비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 시·도별 어업감독 공무원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동해권	261	49.34	260	41.94	275	39.98
강원도	82	15.50	82	13.23	82	11.92
경상북도	159	30.06	158	25.48	173	25.15
울산시	20	3.78	20	3.23	20	2.91
서해권	80	15.12	83	13.39	133	19.34
경기도	29	5.48	29	4.68	29	4.22
인천시	19	3.59	22	3.55	22	3.20
충청남도	32	6.05	32	5.16	31	4.51
전라북도	-	0.00	-	0.00	51	7.41
남해권	336	35.53	425	44.68	431	40.7
부산시	83	15.69	95	15.32	94	13.66
경상남도	68	12.85	67	10.81	69	10.03
전라남도	185	6.99	185	5.97	188	5.38
제주시	-	0.00	78	12.58	80	11.63
합계	529	100.00	620	100.00	688	100.00

- 앞서 어업지도선 보유척수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가 포함된 남해권이 가장 많은 어업지도선을 보유한 것에 비해 공무원 비율은 남해권과 동해권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무원 운영체계의 문제점으로 판단되는 바,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권역별 어업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도의 경우 동해권의 어가 인구 비율은 약 14%이고, 서해권은 약 25%, 남해권은 약 61%로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남해권역에 밀집되어 있으나 공무원 분포 비율은 동해권과 남해권이 비슷하여 1인당 공무원 비율 차이가 많이 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제2절 불법어업 단속 현황 분석

1. 기관별·유형별 단속 현황

- 최근 3년(2005~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경찰청의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건수는 담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해경이 단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과 본부의 비율은 비슷한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본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단속업무에서 본부가 차지하는 역할은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됨

<표 4> 기관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본부	723	17.83	637	21.13	954	25.28
해경	2,427	59.87	1,624	53.86	1,950	51.68
지방자치단체	904	22.3	754	25.01	869	23.03
부산	98	2.42	116	3.85	111	2.94
인천	2	0.05	23	0.76	11	0.29
울산	21	0.52	9	0.30	9	0.24
경기	62	1.53	24	0.80	34	0.90
강원	26	0.64	14	0.46	5	0.13
충남	85	2.10	80	2.65	132	3.50
전북	120	2.96	57	1.89	68	1.80
전남	305	7.52	248	8.23	141	3.74
경북	28	0.69	23	0.76	34	0.90
경남	137	3.38	151	5.01	309	8.19
제주	20	0.49	9	0.30	15	0.40
총계	4,054	100.00	3,015	100.00	3,773	100.00

- 다음으로 유형별 집중 단속의 경우는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어업 근절대책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기타로 분류되어 집계되는 불법어업의 종류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표 5> 최근 3년간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부산시	116	13.38	-	0.00	-	0.00
인천시	23	2.65	11	1.28	28	3.47
울산시	9	1.04	9	1.05	8	0.99
경기도	27	3.11	51	5.94	24	2.97
강원도	131	15.11	157	18.28	161	19.93
충청남도	80	9.23	132	15.37	74	9.16
전라북도	57	6.57	-	0.00	-	0.00
전라남도	248	28.60	141	16.41	153	18.94
경상북도	25	2.88	34	3.96	24	2.97
경상남도	151	17.42	309	35.97	305	37.75
제주	-	0.00	15	1.75	31	3.84
총계	867	100.00	859	100.00	808	100.00

2. 행정처분 현황 결과

- 행정처분 건수는 2006년 885건에서 2007년 940건, 2008년 876건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연도별로 차이가 생김. 이는 새로운 불법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표 6> 2008 행정처분현황

구분	지도·단속				행정처분					
	지도		단속		소계	허가취소	정지	과징금	경고	기타
	횡수	건수	단속	사법처리						
부산시	576	3,271	108	91	99	1	59	24	15	-
인천시	6	24	28	28	108	-	104	4	-	-
울산시	35	200	2	2	29	4	20	1	5	-
경기도	61	55	14	5	26	-	3	16	-	7
강원도	-	-	161	109	157	-	39	58	60	-
충청남도	130	208	74	63	36	1	31	1	4	-
전라북도	-	-	79	77	79	-	59	-	2	-
전라남도	445	1,295명	153	112	68	2	57	1	8	-
경상북도	165	425	24	29	145	1	95	87	49	-
경상남도	-	-	305	103	98	1	70	9	18	-
제주	-	-	-	30	31	-	5	-	-	26

제3절 지도·홍보·교육 분야 실적

- 2008년도 지도 홍보 현황을 대략적인 수치로 분석해 본 결과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제주도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울산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활동도 소폭 증가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시·도에 비해 그 활동 폭이 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7> 2008년 시·도별 지도·홍보 현황 종합

구분	계	어업인 교육	불법어업행위자 계도	유인물 제작·배포	간담회	항·포구 정화활동	홍보	기타
부산시	404	66	213	9	-	8	-	108
인천시	107	수시	104	3	-	수시	-	-
울산시	72	20	52	-	-	-	-	-
경기도	123	29	79	15	-	수시	-	-
강원도	186	40	121	21	4	-	-	-
충청남도	177	25	130	8	-	-	-	14
전라북도	132	15	100	5	-	12	-	-
전라남도	755	108	445	19	87	-	96	-
경상북도	265	85	89	24	23	12	32	-
경상남도	538	71	357	30	36	-	43	1
제주	434	139	241	-	1	-	52	1

제4장 불법어업 단속 및 불법어업자 관리 실태분석

- 본 장에서는 불법어업 발생원인, 어업별 불법어업 현황, 기관별 단속 현황, 지역별 불법어업 현황, 월별 불법어업 현황, 불법어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살펴보았음
- 불법어업 발생원인은 크게 무허가 어선에 의한 범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 외의 어업, 허가 어선에 의한 범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 외의 어업,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어업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업종별 불법어업 현황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기타로 분류하여 각각의 주요 불법현황을 파악하였음

- 지역별 불법어업 현황은 동해권, 서해권, 남해권, 한·중 EEZ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각각의 권역별로 주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음. 동해권은 강원 경북 지역 2중 이상 자망어업 문제와 동경 128도 이동 조업문제가 대표적이고, 서해권은 서해특정해역 어로한계선 조업이탈문제와 연안개량 안강망 사용톤수 문제가 대표적임. 남해권은 유사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조업 우려 문제와 중형기선저인망 어구전개판 장착 문제가 있고, 한·중 EEZ 지역은 중국타망(저인망) 서해특정금지구역 조업침범문제가 심각함
- 월별 불법어업 현황은 분기별로 현황을 파악하였음. 1분기에는 주로 대형기선저인망 및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구역 위반 및 침범 문제가 있고, 2분기에는 기선권현망 및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 위반 문제, 3분기에는 서남구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위반과 오징어채낚기어선의 동해특정해역 월선조업 문제, 4분기에는 기선권현망 및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강원도의 경우 2중 이상 자망 사용 문제가 있음
- 불법어업 발생 원인은 크게 어촌소득 전무, 신규인력의 제도권 흡수장치 미흡,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결여, 근절의지가 결여된 단속체계 운용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불법어업 사건의 처리절차는 불법어업을 행하는 어선의 인지와 불법어업 검거 → 사건조사 및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어업지도사무소에의 사건 이첩 및 내사실시 →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의뢰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제7장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에서 살펴보고자 함
- 불법어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로는 조합원 제명, 면세유류 공급중지, 수산기자재 공급중지, 영어자금 대출금지, 영어자금 대출금 회수 등이 있음

<표 8> 불법어업 단속 및 관리 실태 종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불법어업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 어선에 의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 외의 어업 ● 허가 어선에 의한 범류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 외의 어업 ●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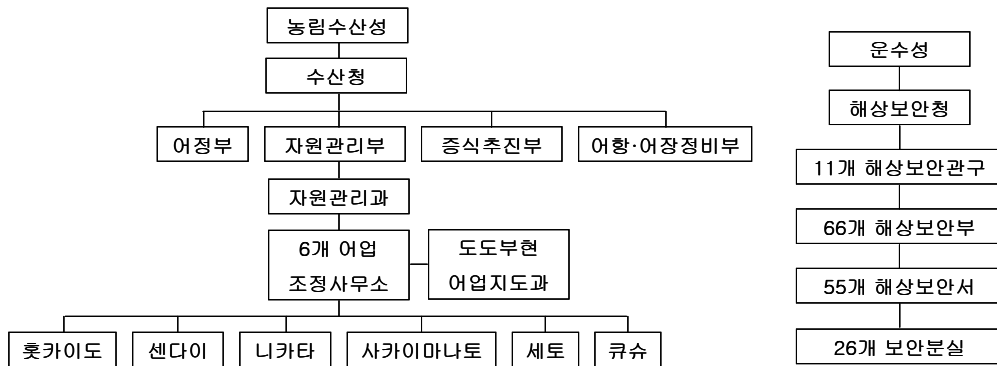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업종별 불법어업 현황	• 근해, 연안, 기타로 구분하여 업종별 주요 위반사례 정리		
지역별 불법어업 현황	동해권	• 강원 경북 지역 2중 이상 자망어업 문제 • 동경 128도 이동 조업문제(일부 대형트롤 어선)	해역별 어 장별 특성 에 따라 불법어업 유형이 상 이한 것으 로 나타남
	서해권	• 서해특정해역 어로한계선 조업이탈문제 • 연안개량안강망 사용톤수 문제	
	남해권	• 유사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조업 우려 • 중형기선저인망 어구전개판 장착 문제	
	한·중·EEZ	• 중국타망(저인망) 서해 특정금지구역 조업 침범	
월별 불법어업 현황	1분기	• 대형기선저인망 및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구 역 위반 및 침범 문제	조업구역 위반 및 2 중 이상 자망 문제
	2분기	• 기선권현망 및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 위반	
	3분기	• 서남구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위반과 오징어채낚기어선의 동해특정해역 월선조업	
	4분기	• 기선권현망 및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조업구 역 위반, 강원도의 경우 2중 이상 자망 사용	
불법어업 발생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소득 전무 • 신규인력의 제도권 흡수장치 미흡 •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결여 • 근절의지가 결여된 단속체계 운용 		
사건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업을 행하는 어선의 인지와 불법어업 검거 → 사 건조사 및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어업지도사무소 사 건 이첩 및 내사실시 →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의뢰 		
불법어업자 에 대한 경제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제명 • 면세유류 공급중지 • 수산기자재 공급중지 • 영어자금 대출금지 • 영어자금 대출금 회수 		

제5장 국외 사례분석

제1절 각국의 어선 감시, 감독 시스템

1. 일본

- 일본의 지도·단속 업무는 농림수산성과 해상보안청에서 수행하고 있음. 농림수산성은 산하에 수산청을 두고 5개 부 중에서 자원관리부에서 담당하며, 중앙에 자원관리과와 지방에 어업조정사무소의 어업감독관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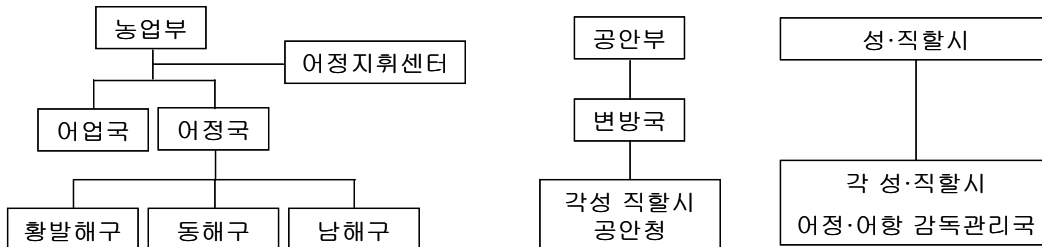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어업지도·단속 기관 현황

해상보안청	수산청	도도부현
순시정 및 항공기	어업단속선	어업지도선

<그림 2> 일본의 기관별 지도·단속 장비 현황

2. 중국

- 중국은 농업부, 공안부, 각 성·직할시 등 어정어항감독 관리기관으로 농업부 산하 어업국과 어정국, 농림부 직속기관으로 어정지휘센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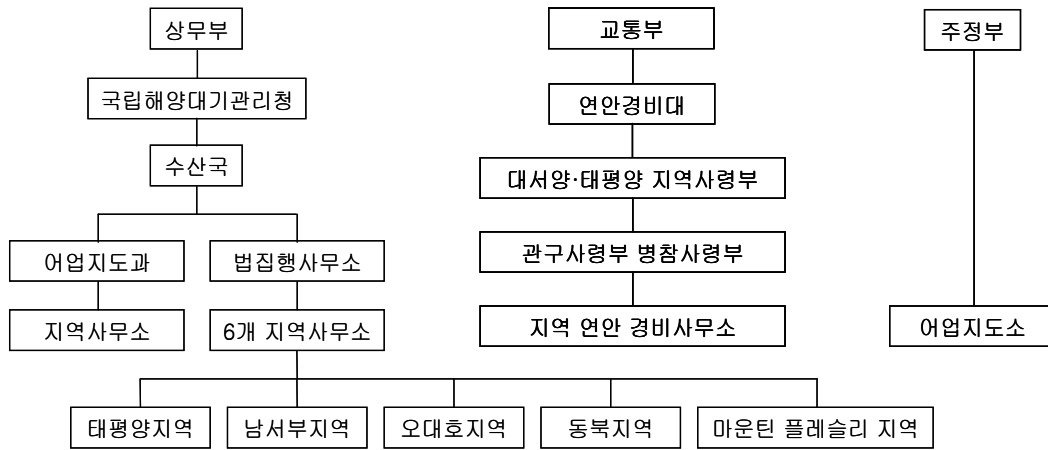
<그림 3> 중국 어업지도·단속 기관 현황

어정지휘센터	어정국(각 해구)	각 성·직할시 공안청	성·직할시 어정·어항 감독관리국
주요 위반사항	어선감시·감독	국경 주변 해상감시·단속권	연안 해역 감시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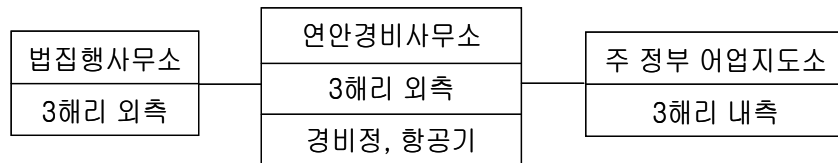
<그림 4> 중국의 기관별 업무 현황

3. 미국

- 미국은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관리청 소속 수산국과 교통부 산하 연안경비대, 주정부 산하 어업지도소를 두고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 5> 미국의 어업지도·단속 기관 현황



<그림 6> 미국의 기관별 담당구역 현황

제2절 주요 국가 지도·단속 제도 비교

1. VMS

- 어선 모니터링 제도는 어선을 모니터링하고, 통제와 감시(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 이하 MCS라 함)를 하는 것으로서, 최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어선의 활동을 감시하고,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VMS(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 이하 VMS라 함)를 도입한 바, 그 실효성이 입증되어 시행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표 9> 주요 국가별 VMS 실시 현황

구분	내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고갈의 위험이 있는 어종이나 서식지 어장의 모든 어선 • 최근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에 설치를 의무화함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정보시스템운영으로 회원국 간 어업정보공유 • 2002년 공동수신정책에 의거 공동조업구역 조업구명 감시·감독 실시 • 전장15m이상 모든 선박에 설치 • 각국 연안수역과 공동수역을 이동하는 어선 추적에 주 목적이 있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MS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임 • 각 어선마다 유사시 대비한 자체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VMS와 인공위성을 이용한 VMS가 있음 • 모든 어선에 VMS설치 • 해안경비대에 의해 모든 어선 감시감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정보시스템(어획량, 어획노력량, 어선항차 등)

2. 옹저버

- 옹저버제도는 어업감독자를 직접 어선에 승선시켜 어업관리에 필요한 양질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어업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임
- 이 제도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을 육지에서 감시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어업선진국에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음

<표 10> 주요 국가별 옹저버 제도 실시 현황

구분	내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주로 외국 어선에 승선, 1980년대부터 국내어선에 승선 • 전체 어선의 20%에 승선 • 어선크기별로 승선기간이 다르게 운영 • 옹저버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약 500명의 옹저버가 활동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감독보다는 자원보호, 생태계 분석 등을 위한 과학 옹저버를 운용 • 향후 EEZ수역 및 공해, 자원관리 보호지역에 중점 운용 • 1997년 TAC제도 시행과 함께 동시운영 • 옹저버 총괄은 수산청 교육은 수산자원개발 센터가 담당 • 현재 30명운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저버 임무: 어획노력량, 어획량, 부수어획물, 어획물의 선상폐기물, 어로일지, 어선위치, 선장·선원인터뷰

3. 양륙항 읍저버

- 미국과 캐나다는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1,000톤 이상은 상시 감독하고 있고, EU는 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정부에서 공인하는 읍저버를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함

<표 11> 주요 국가별 양륙항 읍저버 실시 현황

구 분	내 용
미국·캐나다	• 수산물 가공공장 : 1,000톤 이상 - 상시 / 500~1,000톤 - 가공기간의 30%
EU	• 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정부에서 공인하는 읍저버를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
일본	• 양륙항읍저버는 없음
노르웨이	• 수산물거래에 대해 어업관리 이사회와 판매조직에서 공동감시감독 • 전장 27.5m이상 어선에 조업일지 의무화
비고	• 양륙항 보고서와 수산물 거래일지, 가공일지를 교차 확인

4. 어획량조사체계

- 미국과 캐나다는 어획물 유통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 및 유통가공 실시 후 그 내역을 16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고 일본은 자율 관리 제도를 지향하여 어선 스스로 정하도록 권장하고, 노르웨이는 판매조직이 조사하여 어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표 12> 주요 국가별 어획량 조사체계 현황

구 분	내 용
미국·캐나다	• 어획물 유통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 및 유통가공 내역을 실시 후 16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함 • IVR시스템 : 대서양 청어 유통 업자를 제외한 모든 거래 수산물 내역을 매주 보고토록 함 • 연간보고 :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자는 자신의 연간 수산물 유통 및 가공 내역을 익년 2월 10일까지 보고토록 함
일본	• 자율 관리 제도를 지향하여 어선 스스로 정하도록 권장 •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현황, 조업일지 감독
노르웨이	• 판매조직에 의해 조사되어 어업위원회에 보고됨

5. TAC제도

- 미국과 캐나다는 읍저버의 승선감시와 해양경비대의 해양 및 항공순찰 감시, 수산물 유통업체의 거래일지 및 회계 감사로 운용되고 있고, EU는 어업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음. 일본은 TAC대상 어종의 채포 및 수량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노르웨이는 어선단체별로 할당하여 개별 선박으로 할당하고 있음

<표 13> 주요 국가별 어획량 조사체계 현황

구 분	내 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저버의 승선감시 • 해양경비대-해양 및 항공순찰 감시 • 수산물 유통업체의 거래일지 및 회계 감사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수산정책에 의거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 • 어업정보시스템에서 통합관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EZ 문제 대두 이후 법률적 강제보다는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해 추진함 • TAC대상 어종의 채포 및 수량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단체별로 할당하여 개별 선박으로 할당함

6. 양륙항제도

- 미국과 캐나다는 양륙량 보고와 어획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정장소가 있고, EU는 수산물 매매를 위해 각국별로 결정하고 있고, 일본은 어정사무소의 통제 하에 양륙항에서 양륙량의 보고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양륙보고서와 판매 보고서와 상호 교차 확인제도 유지함

<표 14> 주요 국가별 어획량 조사체계 현황

구 분	내 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륙량 보고와 어획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정장소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매매를 위해 각국별로 결정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륙항에서 양륙량의 보고 및 감독(어정사무소)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륙보고서와 판매 보고서와 상호 교차 확인제도 유지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를 위한 육상감시감독 운영, 어획물 거래 및 가공과 직접 연계

7. 어업감시선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해양경비대는 Ocean Guardian에 101가지 권고사항을 조업규칙에 적용하고 있고, EU는 공동감시선을 운영하지 않고 VIS와 어획 양

륙 및 유통보고서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산국 산하 어업지도선 및 해상보안청 경비함이 있고, 노르웨이는 해양경비대가 감시·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표 15> 주요 국가별 어획량 조사체계 현황

구 분	내 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비대는 Ocean Guardian에 101가지 권고사항을 조업규칙에 적용 • OLE와 8개 지역 어업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감시선을 운영하지 않고 VIS와 어획 양륙 및 유통보고서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사용 • 각 회원국의 양륙지정항 제도를 실시하고 감독 공무원이 양륙량 확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국 산하 어업지도선 및 해상보안청 경비함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비대가 감시·감독

8. 선체표시 및 어구 실명제

- 미국과 캐나다는 모든 어선 내 선체에 선명 및 허가 번호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EU는 공동조업구역에서는 필히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규정에 따라 어선명, 허가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노르웨이는 모든 어선에 선명,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표 16> 주요 국가별 선체표시 및 어구실명제 실시 현황

구 분	내 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종사 모든 어선 내 선체에 선명 및 허가 번호를 표시토록 의무화 함 • 감시선이나 항공기에서도 식별하도록 갑판에도 허가번호를 기재토록함 • 자원보호구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깃발 및 어구에 허가번호를 표시토록 함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각국 별로 시행하며 특히 공동조업구역에서는 필히 사용토록 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에 따라 어선명, 허가번호를 표시토록 함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어선에 선명, 등록번호를 표시토록 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조업구역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기도 함

9. 어획량 보고

- 미국과 캐나다는 어획물을 양륙할 때 양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EU는

생산이력시스템에 의거 어업일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일본은 어선 위치 보고 및 어획 성적서를 어정사무소 감독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모든 어선에 개별 할당 어획량에 대한 어업보고서를 어업위원회에 보고함

<표 17> 주요 국가별 선체표시 및 어구실명제 실시 현황

구 분	내 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물을 양륙할 시 양륙증명서 제출 • 어선활동보고 : 매월 어선활동 보고 의무 • 어선항차보고 : 어선의 항차가 끝날 때 마다 보고 • 어선항정보고 : 전자식 일지 보고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이력시스템에 의거 어업일지에 구체적으로 명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위치보고 및 어획 성적서를 어정사무소 감독관에 제출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어선에 개별 할당 어획량에 대한 어업보고서를 어업위원회에 보고 •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어획량보고, 양륙보고, 수산물 유통 및 가공보고 등 3 보고서를 교차 확인함

제3절 각국의 MCS 제도상의 특징

1. 미국

- 감시감독의 주요 사항은 자원고갈을 예방하기 위한 어종보호와 환경보존관리(해양투기물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어업인에게 가하는 각종 규제 및 MCS 사항에 대하여 자발적인 순응을 얻기 위해 행정력의 중점을 두고 있음. 규제에 대한 순응을 얻어내는 것이 감시감독에 의한 처벌보다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어업자원의 보호 및 환경보호에 대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임

2. 일본

- 일본은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대두 이후 연근해어업에 대해 법률적 강제가 아닌 자율적 자원관리형어업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음

- 최근 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TAC법)에 근거하여 TAC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 수역과 대상 자원의 선정, 총 어획량의 결정과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일방적인 결정, 통보보다는 어업인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의사결정을 배려하고 있음
- TAC 법은 공적관리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어업자 상호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어업자 스스로 이를 준수하게 하는 자율적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정 제도는 어업자 자주적 관리라는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효과를 높이려는 일본식 TAC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읍저버 제도를 감시감독 보다는 기초과학지식을 가지고 어족자원의 보호와 환경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자원평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 읍저버 제도를 199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음

3.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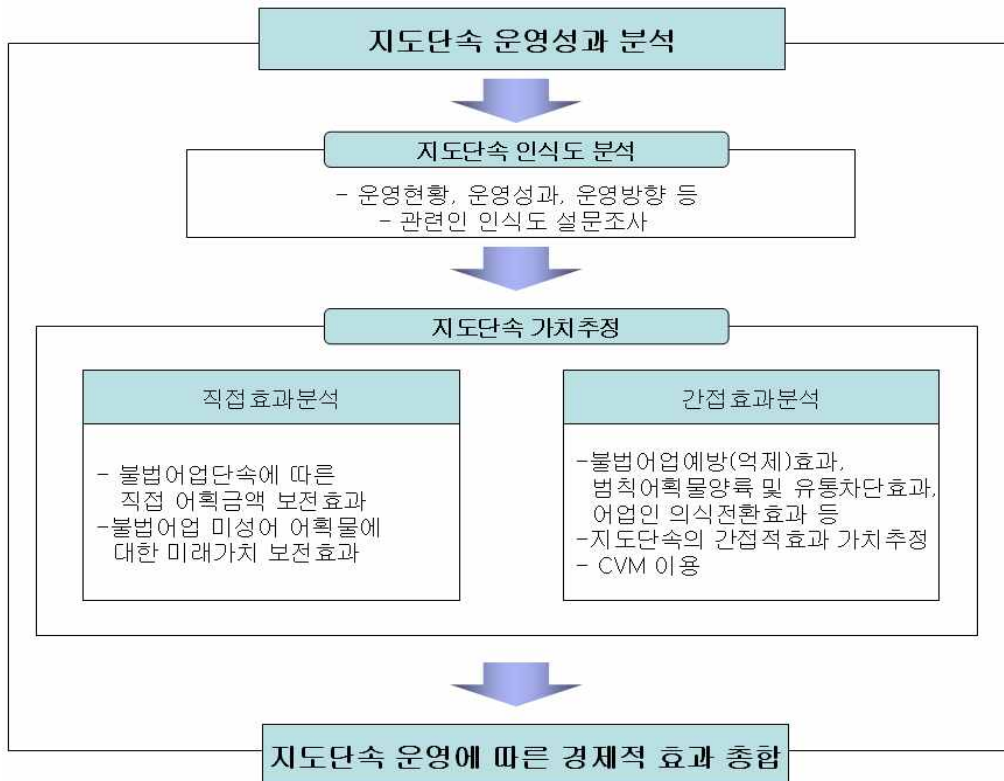
- 어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2년 말 공동 수산정책(Common Fisheries Policy)을 개정하여 공동체 차원의 수산통제기구(Community Fisheries Control Agency, CFCA)를 신설하여 수산정책의 집행에 있어 회원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체 차원에서의 수산정책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능을 확립하고자 했음
- 각 회원국은 회원국 어획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항 제도 및 양륙량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매매보고를 각 회원국 수산감독 공무원을 파견하여 감독하고 있음
- 할당제도를 바탕으로 어업을 관리하는 각 회원국이 각 어선별 할당량 관리 소진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전산화된 데이터 베이스 운영을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규칙에 의해 제도화 하고, 이를 위해 각국의 어업 자료의 교차확인이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통합관리하는 어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표 18> 국내외 사례분석 시사점

국가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법적용과 감시수단의 협동관리체제 구축 •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순응 유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감독관은 조업금지 명령권 가짐 • 자율적 자원 관리형 어업에 중점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생산이력제도 시행 • 어업정보시스템 운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Monitoring 체제의 개선 필요 • 어업집행 예산확대 필요

제6장 어업지도 · 단속 운영성과 분석

- 어업지도·단속 운영성과 분석은 크게 지도·단속 인식도 분석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포함한 지도·단속의 경제적 가치추정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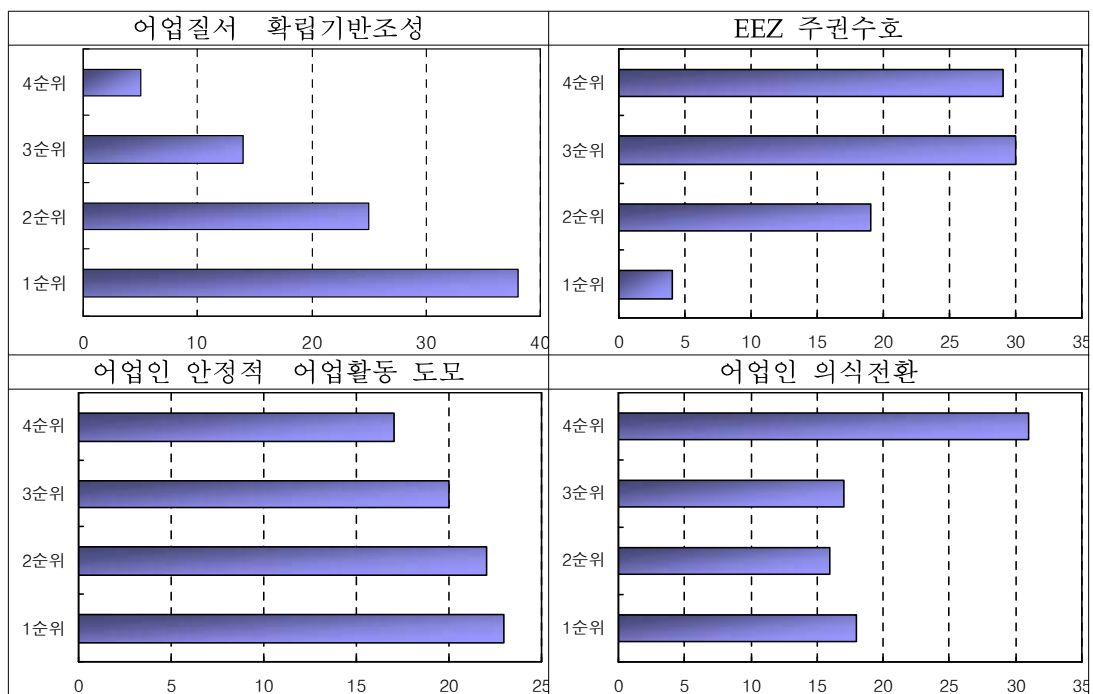


<그림 7> 어업지도·단속 운영성과분석 연구체계

제1절 지도·단속 운영인식도 분석

1. 정책성과

- 지도·단속의 정책성과의 순위분석 결과 1순위는 어업질서확립 기반조성 → 어업인 안정적 어업활동도모 → 어업인 의식전환 → EEZ 주권수호 순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8> 지도·단속 정책성과분석 결과

2. 업무관련 인식

- 지도업무와 단속업무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도업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명, 57.3%로 나타났으며, 단속업무는 35명, 42.7%
 -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업무보다는 교육 및 의식전환과 같은 예방적조치인 지도업무에 대하여 중요성이 높게 인식
- 어업지도·단속에 있어서 경제적 제재조치의 운영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64건, 78.0%로 분석되었음. 또한, 경제적 제재조치 중 가장 효율

제2절 운영성과 분석

1. 직접효과 추정

-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직접 어획금액 보전효과의 추정은 각 업종별로 불법어업 단속건수× 업종별 불법어업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가중치× 업종별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 업종별 어획물의 평균가격으로 추정

$$\text{어획금액 보전효과}(U_1) = \sum_{i=a}^n (R_i \times W_i \times CPUE_i \times P_i)$$

R_i = 각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건수

W_i = 각 업종별 불법어업 조정치

P_i = 업종별 어획물 평균가격 (원/kg)

- 업종별 연간 불법어업 어획금액을 추정해보면 아래와 같으며 총 불법어업단속에 따른 직접어획금액 보전효과는 약 1,018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표 19> 업종별 직접어획금액 보전효과

구분	연간불법어업 이용자원량(톤)	가격 (원/kg)	유형별 가중치	불법어업 어획금액(천원)
대형기저	28,609	2,163.9	0.3	12,381,403
대형트롤	12,001	1,213.5	0.3	2,912,643
중형기저	11,655	2,623.2	0.3	6,114,679
소형기저	65	5,424.2	1	352,573
잠수기	6,000	4,235.0	0.3	7,623,000
기선형망	483	1,316.9	0.5	318,031
삼중자망	1,712	5,540.5	0.7	6,639,735
연안통발	2,534	8,451.8	0.5	10,708,431
연안자망	4,368	5,540.5	0.7	16,940,633
새우조망	5,827	2,619.7	0.5	7,632,496
선망	19,851	938.8	0.3	5,590,836
권현망	6,565	1,064.8	0.3	2,097,124
기타	36,322	2,064.7	0.3	22,498,210
합계	135,992			101,809,793

-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는 업종별 연간불법어업 이용자원량 중 미성어의 어획량에 대한 미래가치라 할 수 있으므로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text{미성어 미래가치 보전효과}(U_2) = \sum_{i=a}^n (R_i \times W_i \times D_i \times S_i \times CPUE_i \times P_i)$$

R_i = 각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건수

W_i = 각 업종별 불법어업 조정치

D_i = 각 업종별 미성어 어획비율

S_i = 미성어 성장비율 및 자원이용 조정변수

P_i = 업종별 어획물 평균가격 (원/kg)

- 업종별 불법어업으로 인한 미성어 어획금액은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는 약 533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

<표 20> 업종별 불법 미성어어획 미래가치 보전효과

구분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량(톤)	가격 (원/kg)	유형별 가중치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금액(천원)
대형기저	20,198	2,163.90	0.3	13,111,906
대형트롤	5,496	1,213.50	0.3	2,000,986
중형기저	6,748	2,623.20	0.3	5,310,599
소형기저	26	5,424.20	1	138,914
잠수기	2,118	4,235.00	0.3	2,690,919
기선형망	373	1,316.90	0.5	245,838
삼중자망	579	5,540.50	0.7	2,244,230
연안통발	1,148	8,451.80	0.5	4,850,919
연안자망	1,476	5,540.50	0.7	5,725,934
새우조망	2,296	2,619.70	0.5	3,007,203
선망	8,337	938.8	0.3	2,348,151
권현망	1,970	1,064.80	0.3	629,137
기타	17,798	2,064.70	0.3	11,024,123
합계	68,563			53,328,859

- 직접 어획금액 보전효과(U_1)와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U_2)를 합산한 연간 어업지도·단속의 직접효과는 어획량 약 20만톤, 금액적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약 1,551억원으로 추정

$$\text{직접효과} = \text{어획금액 보전효과}(U_1) + \text{미성어 미래가치 보전효과}(U_2)$$

2. 간접효과 추정

- 불법어업예방(억제)효과, 범칙어획물양륙 및 유통차단효과, 안전지도 및 어업인 의식전환효과 등과 같은 어업지도·단속의 간접효과는 CVM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대한 WTP를 측정하여 지도·단속 보상수요곡선과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을 도출
- 최우(maximum likelihood) 추정법에 의해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모수 α , β 를 추정한 결과, 각각의 추정계수는 0.7984와 0.2719로 나타남
- 로그우도값은 -261.92이며, Wald 통계량이 112.63로 계산되었음. 이는 추정계수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alpha, \beta = 0$)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여유 있게 기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불의사액이 유의하게 "0"과 다를 것을 나타냄

<표 21> 모형의 추정결과

파라미터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α	0.7984	0.214	4.021***
β	0.2719	0.048	7.981***
log-likelihood		-261.92	
Wald 통계량		112.63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에 대하여 양분선택형 모형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평균 2,936.4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절단된 평균 지불의사액은 4,303원으로 분석되었음

<표 22> 지불의사액의 대표값 추정결과

모형	연평균 WTP 추정치(원)	표준오차	t-값
평균 WTP	2,936.4	0.423	7.324***
제한된 평균 WTP	4,303.1	0.242	15.23***

주 :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연평균 지불의사 추정치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어업 지도·단속 수행에 따른 간접 경제적 가치는 약 467억원~약 684억원 추정

<표 23> 우리나라 지도·단속업무 수행의 총가치

모형	가구당 연간 WTP (A, 원)	가구수(B)	연간 총 수행가치 (A×B, 백만원)
최소 (평균 WTP)	2,936.4	15,887,128	46,651
최대 (절단된 WTP)	4,303.1	15,887,128	68,363

3. 지도·단속 운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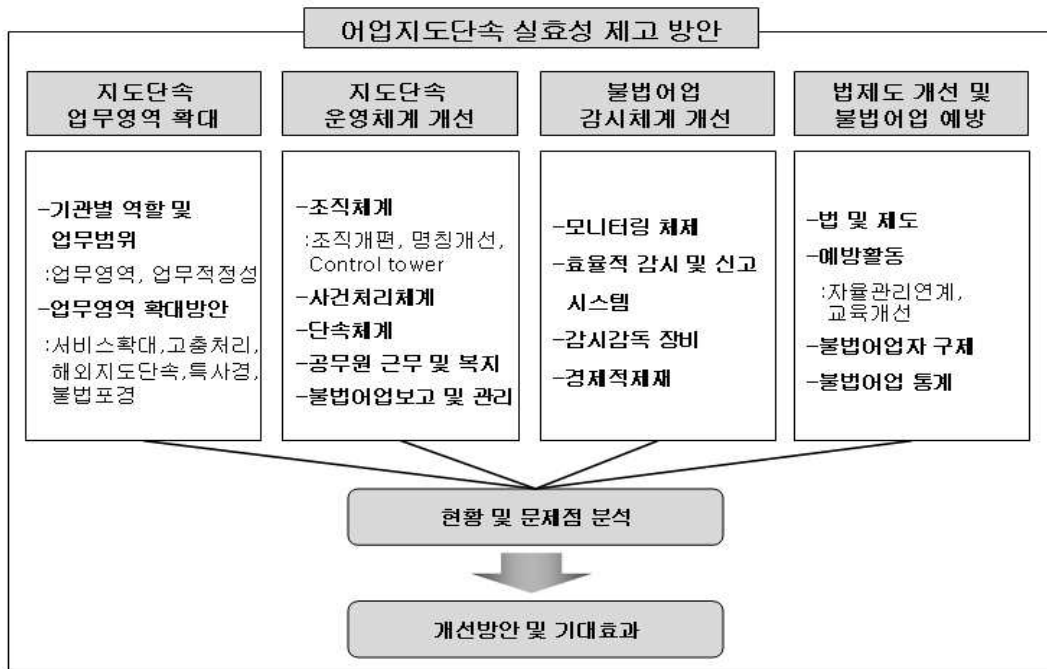
- 우리나라 지도·단속의 운영효과는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직접어획금액 보전 효과와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를 포함하는 직접 효과와 전국민적 지도·단속에 대한 효용가치인 간접효과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음
- 연간 지도·단속의 운영가치를 산출하면 약 2,018억원~ 약 2,23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장기적으로 10년을 보았을 때는 2조원 이상의 효과를 가짐

<표 24> 우리나라 지도·단속업무 수행의 총가치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합
	직접어획금액 보전효과	미성어 어획 미래가치보전효과	지도·단속 국민적 경제적 효용	우리나라 지도·단속 운영의 경제적 가치
금액 (백만 원)	101,809	53,328	46,651~68,363	201,790~223,502

제7장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방안

- 우리나라 지도·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4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대분류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각 각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하여 개선사항 및 기대효과를 제시



<그림 10>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연구체계

제1절 기관별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방안

1.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

- 지도·단속 기관간의 업무영역 체제를 개선 및 업무영역을 구분해야함
-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에 대한 지원 실적을 통한 차등지급 및 지원을 통해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암행감찰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효과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표 25> 기관별 지도·단속 업무영역(범위) 재설정 방안(안)

구분	국가 어업지도선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비고
단속업무 영역	현행	근해	연안	전 해역
	개선안	영해(12해리) 외측~EEZ	영해(12해리) 내측~연안	현행
		EEZ와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 준한 규정단속 확대	양식위주, 연안 단속 겸임	행위에 집중 단속
지도선 경비 차등지급 시스템	현행	-	-	-
	개선안	-	실적을 통한 차등지급 및 지원	-

<표 26>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추진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	- 목표 :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차등지원 - 내용 : 지방자치단체 별 암행감찰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목표 : 단속영역 책임 구역제 도입 - 내용 : 기관별 단속업무영역 구분	- 목표 : 역할 및 업무 범위 재설정 확립 - 내용 :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업무역량 강화 정착

2.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업무구역의 적정성 검토

- 동해 2개 지역에 총 4척, 남해 2개 지역에 총 4척, 서해 2개 지역에 총 4척, 한·일 중간수역 총 4척, 한·일 중간수역 및 한·중 현행 조업유지구역 총 4척, 한·중 잠정조치 수역 총 4척 등 총 38척의 국가 어업지도선이 필요

<표 27> 국가 어업지도선 증척에 따른 필요 인원 추정

구분	현행				개선안
	어업지도선		행정	척당	
	척수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9	270	40	16	16.5(척당 인원수 평균) ×4척(추가필요지도선 수) =66
서해어업지도사무소	15	213	44	17	

주 : 행정 = 관리·운용·안전정보

<표 28> 국가 어업지도선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추진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적정업무 능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적정업무 능력규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영역 적정 선박규모 및 인력 파악 · 예산확보 · 신규선박 건조설계 실시 및 건조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인력 및 선박확충을 통한 업무능력 개선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어업지도선 임무 수행구역 개선 · 적정인력확보 · 신규선박 건조착공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적정능력확보로 국가 어업지도선 효율화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선박 건조완료 및 배치 · 국가 어업지도선 효율적 운영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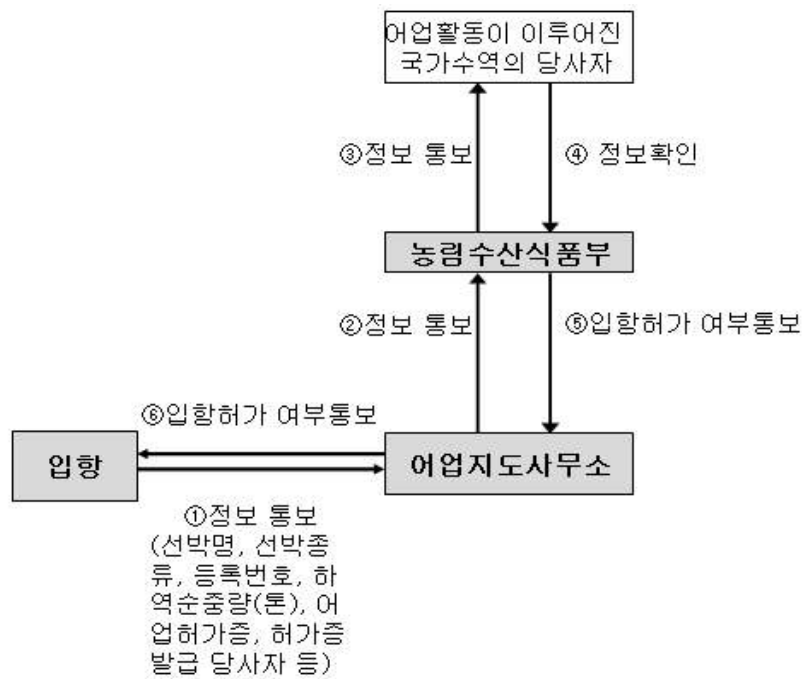
3. 국가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

- 어업지도선의 정원 조정을 통한 업무 영역 확대 및 외국 수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국제 분쟁에 대한 유연한 대처방안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국가 어업지도선의 정원 확대를 통한 육상 단속반 조직, 둘째 어업지도선 정원 충원 및 육상 단속반 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셋째, 국가 어업지도선의 국제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배양. 넷째, 국제협약수역, 원양 등 해외업무 수요발굴 및 장비확보 등이 필요

<표 29> 육상·양식 및 원양으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육상·양식 불법어업 단속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단속인력 확충 및 육상단속반 조직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양식업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인력확보 · 육상단속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육상·양식업 단속체계 정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 높은 육상단속반 단속체계 정립 및 업무영역 확대 	-
해외수역 으로 업무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공무원 양성 및 새로운 수요발굴 · 해외업무 수행 전문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신설 · 해외업무의 수요발굴(국제회의참석 및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해외업무 수행으로 국제적 위상 강화 · 해외업무 수행 전문 공무원 확보 · 해외업무를 위한 장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지속적 해외업무 확대로 국제적 위상 정착 · 신규 수요 발굴 및 지속적 해외업무 파견 등

- IUU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총괄기관으로 담당하며, 항구국조치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획물 감시, 국외어선의 지도·단속 관련 업무는 어업지도사무소에서 관장



<그림 11> IUU협정 어선에 대한 항만국조치 체계(안)

<표 30> 항구국 조치 수산업법 개정(안)

구분	내용
현행 법	제72조(어업감독 공무원)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수정안	제72조(어업감독 공무원)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 <u>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승인된 국제법규를 준수하기</u>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 '구속력 있는 항구국 조치 협정' 포함

<표 31>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	-목표: IUU어선 항구국조치 체계 기반마련 - 내용 · IUU어선 항만국 조치업무를 위한 인력확보 · 법 및 규정의 기반마련 ·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목표: 효율적 IUU어선 항구국업무 구축 - 내용 · IUU어선 항구국업무 체계 정립 및 공무원 교육확대 · IUU협정 확대	-

- 어업지도·단속업무는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이며,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시키고, 어업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어업지도사무소에 대한 불식을 해소. 어업인 인식도제고를 통하여 교육, 계몽, 단속업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인 협조 등 이차적 효과 발생

<표 32> 어업인 서비스영역 확대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지도·단속 서비스영역 확대	- 목표: 어업인 서비스영역 확대 기반조성 - 내용 · 어업인서비스센터 건립 · 서비스 홍보방안 마련	- 목표: 어업인 서비스 제공 확대 - 내용 · 신규서비스 수요발굴 (설문조사 간담회 등) · 인력 및 장비확충으로 서비스 효율화	- 목표: 어업지도·단속 업무 인식제고 - 내용 · 어업인서비스센터 Control tower 포함 · 지속적 서비스 영역 확대

- ‘어업인 고충처리 센터’를 통하여 민원 및 애로사항과 어업인대상 각종 지원 활동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지도·단속과 관련한 정책방향 설립에 도움, 어업지도선과 어업인간의 친밀도 상승 및 어업인 인식도제고를 통하여 교육, 계몽, 단속업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인 협조 등 이차적 효과 발생

<표 33>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	-목표: 어업인 고충해결 시스템 수립 - 내용 · 어업인고충처리센터 건립 · 고충처리 홍보방안 마련	- 목표: 어업인 의견반 영 효율화 - 내용 · 어업인 의견반영 시 스템 구축	- 목표: 어업지도·단속업 무 인식제고 - 내용 · 어업인 고충 센터 Control tower 포함

- 현행 수산업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는 불법어업 행위단속에 국한되
어 있고 어선에 대한 단속권은 없어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가지므로 법·제도
적 개선을 하여 불법어업 행위뿐만 아니라 어선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표 34> 특사경 제도개선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특사경 제도개선	-목표 : 특사경의 직무권한 확대 기반구축 -내용 - 어선의 위반사항 단속 직무영역에 확대 적정성 검토	-목표 : 특사경의 직무권한 강화 -내용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개정 - 특사경의 단속 활성화 및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	-

- 향후 상업포경의 재개와 지속적인 불법포경의 증가 등으로 고래관련 단속수
요의 증가될 것을 고려하여 국가 어업지도선에서 불법포경의 단속에 대한 업
무영역의 확대 필요

<표 35> 불법포경 업무개선 명칭개선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불법포경 업무개선	- 목표 : 어업지도사무소 불법포경 단속시스템 기 반마련 -내용 - 불법포경 단속 교육실시 - 단속 매뉴얼 작성	- 목표 : 체계적 불법포경 단속체계 구축 -내용 - 해경 및 해군과의 합동 단속체계 구축 - 불법포경 단속업무 확대	-

제2절 어업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방안

1.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방안

- 기관명칭 변경으로 기존의 어업지도·단속업무 중심에서 수산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의 이미지 구축 및 기존의 명칭이 가져다 주는 규제 지향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대국민 지원형 명칭으로 새로운 이미지 제시 가능

<표 36> 지도사무소 명칭개선(안) 제시

구분	개선(안)	사유	순위
제1안	○○ 수산청	어촌지도소 업무 등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청'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측면 강조	3
제2안	○○ 수산관리청	지도·단속 업무뿐만 아니라 어항 업무 및 종합적 어업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포괄적 용어 사용	1
제3안	○○ 수산자원관리청	수산자원관리 및 수산자원회복 등을 위한 분쟁조정 업무도 포함하고 있고, 지도·단속 업무는 궁극적으로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있음을 강조	4
제4안	○○ 수산관리종합센터	안전조업, 조업환경개선, 의료지원 등 종합적 어업인 서비스 제공 기능 강조.	2

<표 37> 어업지도사무소 명칭개선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어업지도사 무소 명칭개선	-목표: 새로운 명칭개선으 로 이미지재고 - 내용 · 명칭개선	-	-

- 현재의 지도·단속조직과 기능은 다양하고 변화된 어업현실을 반영하기 역부
족임, 종합수산행정을 수행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
해 지도·단속조직과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

<표 38> 어업지도사무소 조직 개편(안)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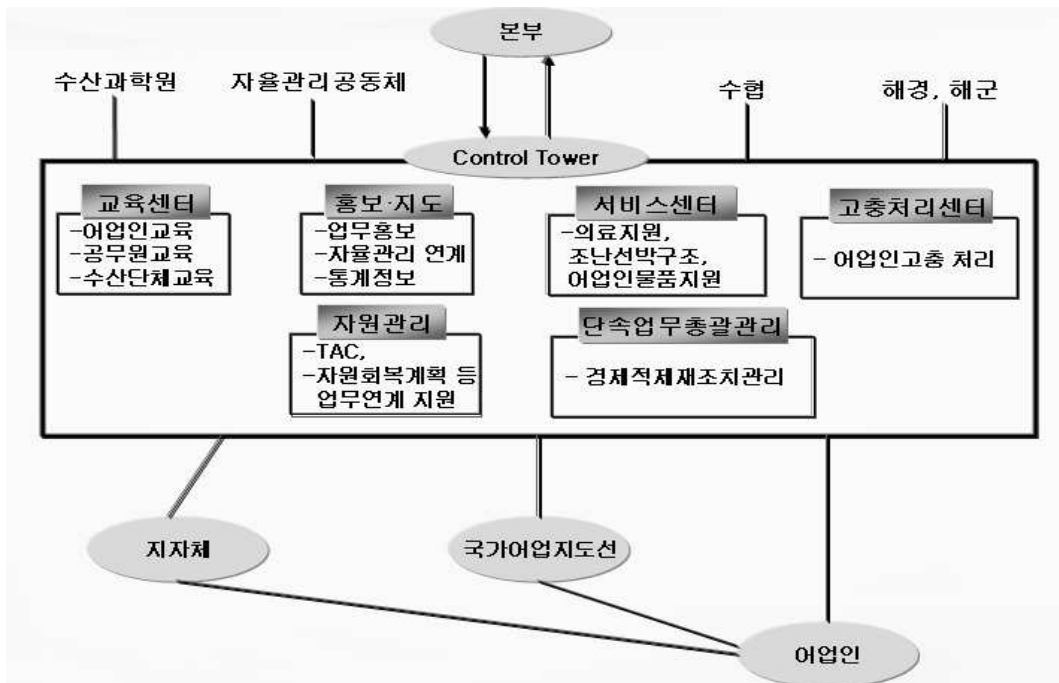
구분	조직	업무 영역
제1안	본원(남해) 1, 동해 및 서해 각 1개소, 1개출장소	동해 지원: 동해안, 한·일 협정수역, 동해 EEZ, 러시아 입어 수역 담당 서해 지원: 서해안, 한·중 협정수역, 서해 NLL 담당 남해 본원: 총괄 및 남해안, 한·일 협정수역, 중·일 협정수 역, 공해
제2안	본원 1, 지소(원)3 사무소로 개편	남해 본원 : 남해안, 한·일 협정수역, 중·일 협정수역, 공해 3개 지원 : 동해와 서해에 3개 지원 설치
제3안	본원 신설 없이 동 서남해지원 증설, 1 개출장소	동해 : 동해안, 한·일 협정수역, 동해 EEZ, 러시아 입어수역 담당 서해 : 서해안, 한·중 협정수역, 서해 NLL 담당 남해 : 남해안, 한·일 협정수역, 중·일 협정수역, 공해

- 주 1) 사무소 위치 : 업무구역, 접안시설, 정주 환경 등을 고려
- 2) 어항사무소 업, (가칭)해역별 수산조정위원회 등 지도·단속업무 외의 업무는 해당
부서(국)에서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체제를 유지

<표 39> 명칭 및 지도·단속 조직개편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추진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지도·단속 조직개편	- 목표 : 조직개편(안) 및 예산확보 - 내용 : 조직개편(안) 마련 및 시행	- 목표 : 조직개편 추진 - 내용 : 조직개편(안) 시행(계속)	- 목표 : 조직개편 정착 - 내용 : 지도·단속업무 실효성 극대화

- 중장기적으로 지도·단속 조직의 개편이후 지도·단속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 단체의 설립은 고려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센터 및 어업인고충처리센터, 교육센터, 홍보센터 등을 포함한 단속업무를 총괄관리와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 등을 종합하여 운영하는 Control tower를 설치함으로써 어업지도·단속업무를 효율화를 도모



<그림 12> 어업지도·단속 Control Tower 조직체계

<표 40> Control Tower건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추진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Control Tower건립	- 목표 : 어업지도·단속 총괄기관 설립기반조성 - 내용 : Control Tower 업무영역 및 범위검토	- 목표 : 어업지도·단속 총괄기관 운영 - 내용 : Control Tower 건립 및 종합적 업무영역 확보	-

2. 사건처리체계 개선방안

- 범칙금 통고제를 통한 사건 처리 개선(안)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구어법 전문가 및 어업인 의견 수렴 후에 구체적인 종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41> 범칙금 통고제를 통한 사건처리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방안	비고
주요 내용	불법어로행위로 인해 적발 시 일반사법처리 절차에 따라 어업지도선-검사-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벌금/과태료/몰수, 또한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징수	불법어업을 행하는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보호 및 조장을 위하여 단속 공무원이 해상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미한 불법어업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도' 신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구어법 전문가 및 어업인 의견 수렴 후 구체적 종류 제시
대상	모든 불법 행위 해당	금지구역위반, 금지체장 위반	

<표 42> 사건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범칙금 통고제	- 목표 : 법·제도 수정(안) 작성 - 내용 : 전문가 및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안)작성	- 목표 : 수산관련법 제도화 - 내용 : 경미한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 정착	-

3. 해상 및 육상단속 체계 개선방안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포함된 시·도 어업지도조직의 창설
 - 시·도 및 시·군·구의 어업지도업무를 통합하여 어업지도조직 창설
 -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와 같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독립기관화 추진
 - 새로이 창설하는 시·도 어업지도조직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파견제 도입

- 농림수산물부 어업지도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원 확충
 - 어업지도선의 운항을 위한 법정 승무정원의 확보
 - 새로이 조직되는 시·도 어업지도·단속 조직에 파견될 22명 인원 확보
 - 국제수산물기구의 가입으로 인한 업무수행을 위한 외국어 능력자 보충

<표 43> 해상 및 육상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해상 및 육상단속 체계 개선	- 목표: 지방자치단체 어업감독공무원 업무능력 강화 - 내용 · 시·도 어업지도조직의 창설	- 목표: 중앙과 지방의 연계강화 - 내용 · 어업지도사무소와 시·도어업지도조직의 협력체제 구축	- 목표: 어업지도·단속업무 실행의 일원화 정착 - 내용 · 상호 협력체제에 의한 입체적인 단속

4. 지도·단속 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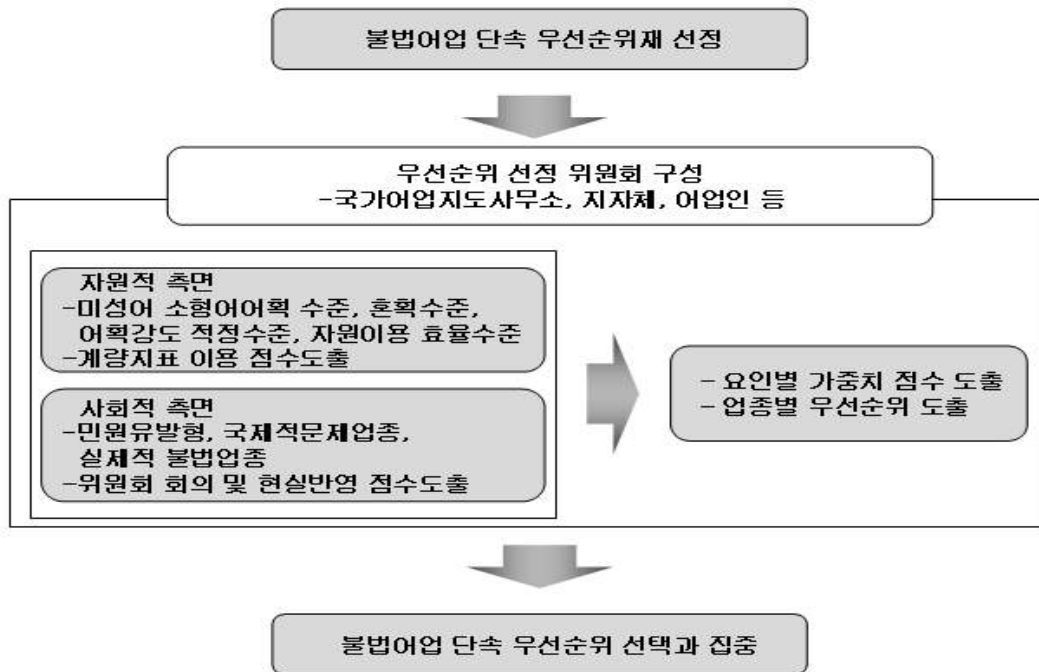
- 수당지급 형평성 확보 및 어업감독공무원 승선정원 확보와 최상의 선박관리 도모
 - 선박 운항에 필요한 최적의 선원 확보
 - 수시 수리체계 구축에 의한 최상의 선박 관리
 - 유사업무 수행기관과 수당지급 형평성 확보
- 이를 통하여 승선 어업감독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선박관리의 최상화 도모, 승선 어업감독공무원의 업무 활성화 동기부여

<표 44> 지도·단속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공무원 근무 개선방안	- 목표: 현실적 승선체계 구축 - 내용 · 기술발달을 감안한 현실적 승선인원 파악 및 배치	- 목표: 효율적 선박운용 및 선박관리체계 정착 - 내용 · 자체선박 수리계획 및 현실적 승무원 배치	-
수당지급형 평성 확보	- 목표: 지도·단속 공무원 업무동기부여 · 형평성있는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개정 및 수당지급	-	-

5. 불법어업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방안

- 어업지도·단속 업무의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단속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 단순히 단속건수의 확대 보다는 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타 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원유발형 및 국제적으로 규제가 되는 문제업종, 실제적인 불법 업종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야 함



<그림 13> 불법어업 단속 우선순위 선정 방법(안)

<표 45> 불법어업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방안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단속우선순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객관적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우선순위 선정의 이론적 기반 검토 · 현실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단속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적 단속체계 정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 단속 실시 	-

제3절 불법어업 감시감독 체계 개선방안

1. 모니터링 체제개선

- VMS 설치에 연근해 어업에서 어장의 정보제공 기피로 인하여 어업인들이 매우 강한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서해 및 동해의 NLL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에 VMS 설치 추진

<표 46> 모니터링 체제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모니터링 체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VMS장착 기반조성 및 시범도입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MS장착에 따른 효과 추정 및 인식도 조사 실시 · 동서해 특정해역 조업 어선 VMS 장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VMS장착 확대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어업 중 대형선박 사용 업종에 대하여 VMS장착 확대 · VMS를 이용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효율적 모니터링 제도 정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어업을 제외한 근해조업 어선에 대하여 VMS장착 · VMS를 이용한 모니터링시스템 정착

2. 효율적 감시 및 신고시스템 개선 방안 (민간감시체계)

- 명예감시선의 명칭 개선 및 명예감시선 선장의 간담회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 명예감시선 신고 인센티브 강화, 명예감시선 운영체계의 개선 실시

<표 47> 명예감시선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명예감시선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명예감시선 제도 활성화 기반조성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감시선 제도 운영 개선수요 및 요구 수렴 · 명예감시선 신고 인센티브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명예감시선 제도 확대 및 활성화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감시선 지정 확대 · 명예감시선 운영체계 확립 및 인센티브제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민감감시감독 문화 정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감시선을 통한 민감감시감독 정착

- 신고대상의 범위확대 및 현실상황을 반영한 대상 선정, 신고 인센티브 증가 및 포상금지급의 제도적 보완

<표 48>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개선	- 목표: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활성화 기반 조성 - 내용 · 신고대상 및 포상금지급제도 개선안 마련	- 목표 :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확대 및 활성화 - 내용 · 신고대상 단계별 확대 · 인센티브 확대	- 목표: 민감감시감독 문화 정착 - 내용 · 신고 및 포상금제도 통한 민간감시감독 정착

3.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 지도·단속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해면에서의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지도·단속업무보다는 항공기 및 헬기를 연계한 입체적 업무수행시 그 효율성을 극대화 될 수 있음

<표 49>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	- 목표 : 지도·단속 항공기 및 헬기 도입 기반 마련 - 내용 · 타당성검토 및 예산확보	- 목표 : 시범적 도입 및 운영 - 내용 · 임대 및 시범적 도입·운영	- 목표: 입체적 지도·단속 업무 정착 - 내용 · 헬기 및 항공기 도입

4. 경제적 제재 투명성 확보

- 수협을 경제적 제재조치의 역할을 국가지도사무소에 이관

<표 50> 경제적제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경제적 제재 투명성 확보	- 목표: 일원화된 행정처리를 통한 단속효과 극대화 - 내용 · 경제적제제조치 효율적 이행책 검토 · 경제적제제조치 권한 이관 검토	-	-

제4절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개선방안

1. 법 및 제도 개선방안

- 벌칙의 단순화와 수산업법의 단순화·전문화 추진 및 불법어업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수산업법 평가제 도입 및 불법어업을 양산하는 현행 어업제도의 개선

<표 51>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법·제도 개선	- 목표: 현실성 있는 수산제도 기반 마련 - 내용 · 교육·홍보 강화 및 수산업법 평가제 · 수산관련 법·제도 개정안 마련 및 검토	- 목표: 알기 쉽고 체계적인 수산법령 구축 - 내용 · 수산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개정	-

2. 불법어업 예방활동 개선방안

- 교육체계 재정립으로 어업인들의 교육참여의지 향상도모 및 중앙 정부차원의 교육매뉴얼 개발과 교육전담단체의 단일화

<표 52> 지도 및 교육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지도 및 교육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효율적 교육체계 구축기반마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교육기회 확대 · 정부차원 교육메뉴얼 개발 및 교육기관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정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어업인교육시스템 정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교육 확대

- 어업지도·단속 업무와 자율관리공동체 연계를 통한 어업인 인식도 제고 및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업무에 어업지도사무소 참여

<표 53> 자율관리어업과 연계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자율관리어업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자율관리어업과 지도 안전업무 협력기반 마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어업과 지도안전업무 연계방안 개발 · 교육프로그램에 국가어업지도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업무연계성 극대화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개선(어업지도소 평가주체로 포함) 	-

3. 불법어업자 구제 개선방안

- 경미한 불법어업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도 신설, 효율적 승선조사 및 불법자 사건조사시 등에서 불편사항 개선

<표 54> 불법어업자 구제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불법어업자 구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어업인권리강화 기반구축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관련 불편사항 수요조사 및 개선 · 불법자 사건조사시 등에서 불편사항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어업인권리보장 확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불법어업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도 신설 	-

4.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 개선

-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의 목적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고 있는 통계 수요에 부응하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 보급

<표 55>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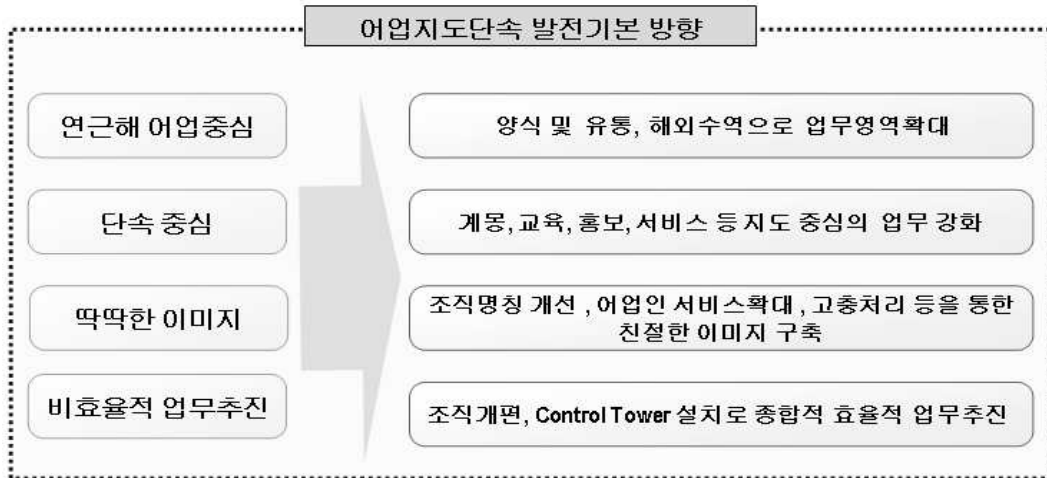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	- 목표: 효율적인 불법어업 통계시스템 구축 - 내용 · 이용자편의 제고 · 통계보고체계 시스템 개편 · 불법어업 통계 홍보	-	-

제8장 어업지도·단속 업무 중장기 발전 방안

제1절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은 크게 네가지로 구성됨
 - 첫째, 이전의 연근해어업중심의 어업지도·단속에서 양식어업 및 육지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 지도·단속, 불법·비보고·비규제(IUU) 및 국제적 수산자원 관리가 강화에 따른 해외수역의 어업지도·단속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 필요
 - 둘째, 단속 중심의 업무에서 단속업무와 병행하여 어업인 교육, 홍보, 대어업인 서비스 등 지도업무의 강화필요
 - 셋째, 조직명칭의 개선, 대어업인 서비스 확대, 고충처리 창구로서의 역할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대상인 어업인에게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친절한 이미지 구축
 - 넷째, 조직개편 및 Control Tower 설치를 통하여 효율적 업무추진 체계의 구축 필요



<그림 14> 어업지도·단속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목표 및 비전

-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기본방향 및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업지도·단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5대 실천전략을 제시함
- 어업지도·단속의 비전은 '선진형 수산업실현의 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 수산업 여건의 개선 및 선진형 수산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어업지도·단속은 그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성장동력원이 되어야 함
- 어업지도·단속의 목표는 첫째, 수산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어업지도·단속 구축, 둘째, 대어업인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어업지도·단속 정착
- 이러한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5대 실천전략으로는 첫째, 조직명칭 변경 및 조직체계 개편, 둘째,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셋째, 법제도 개선. 넷째, 불법어업 예방적조치 강화, 다섯째, 불법어업 감시체계 개선이 포함됨



<그림 15> 어업지도·단속 비전 및 목표

제2절 주요 추진과제

- 어업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는 7장에서 제시된 주요과제 및 세부과제를 총괄 정리하였음

<표 56>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주요 추진과제

주요추진과제	세부 과제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업무구역의 적정성 검토
	국가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 - 육상·양식 및 원양으로 업무영역 확대 - 대어업인 서비스 영역 확충 -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 역할 - 특사경 제도개선 - 불법포경 업무개선
	공무원 근무 및 복지제도 개선

주요추진과제	세부 과제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방안 - 어업지도사무소 명칭 변경 -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 Control tower 설치
	사건처리체계 개선
	해상 및 육상단속 체계 개선방안
	지도·단속 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
	단속우선순위 설정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	모니터링 체제개선(VMS)
	효율적 감시 및 신고시스템 개선 방안 (민간감시체계) - 명예감시선 제도개선 -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제도 개선(어파라치)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
	경제적 제재 투명성 확보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법·제도 개선
	불법어업 예방활동 개선방안 - 지도 및 교육 개선 - 자율관리어업 업무연계 방안
	불법어업자 구제 (어업인 권리 강화)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 개선

제3절 단계별 추진(안)

- 단계별 추진에서는 각 추진 세부 과제별로 단기(제1단계) 3년, 중기(제2단계) 3년, 장기(제3단계) 4년으로 각 단계별 목표 및 주요 실시내용을 제시함

1.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을 위해서 제1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차등지원을 목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암행감찰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함. 제2단계에서는 단속영역 책임구역제 도입을 목표로 기관별 단속업무영역 구분함.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역할 및 업무범위 재설정 확립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업무역량 강화를 정착함

- 적정업무능력 확보를 위해서 제1단계에서는 적정업무 능력규모를 목표로 업무영역 적정 선박규모 및 인력 파악, 예산확보, 신규선박 건조설계 실시 및 건조착공을 추진함. 제2단계에서는 인력 및 선박확충을 통한 업무능력 개선을 목표로 국가어업지도선 임무수행구역 개선, 적정인력확보, 신규선박 건조착공을 추진함. 제3단계로 적정능력 확보로 국가어업지도선 효율화를 목표로 신규선박 건조완료 및 배치, 국가어업지도선 효율적 운영 정착을 추진함
- 육상·양식 불법어업 단속활성화를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단속인력 확충 및 육상단속반 조직을 목표로 육상·양식업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인력확보, 육상단속반 조직을 추진함. 제2단계에서는 육상·양식업 단속체계 정립을 목표로 효율성 높은 육상 단속반 단속체계 정립 및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함
- 해외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단계로 공무원 양성 및 새로운 수요발굴을 목표로 해외업무 수행 전문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신설, 해외업무의 수요발굴을 추진하고, 제2단계로는 해외업무 수행으로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해외업무 수행 전문 공무원 확보와 해외업무를 위한 장비확보를 추진함.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는 지속적 해외업무확대로 국제적 위상 정착을 목표로 신규수요 발굴 및 지속적 해외업무 파견 등을 추진함
-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IUU어선 항구국조치 체계 기반마련을 목표로 IUU어선 항만국 조치업무를 위한 인력확보, 법 및 규정의 기반마련,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효율적 IUU어선 항구국 업무 구축을 목표로 IUU어선 항구국업무 체계정립 및 공무원 교육확대, IUU협정 확대를 추진함
- 지도·단속 서비스영역 확대를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어업인 서비스영역 확대 기반조성을 목표로 어업인서비스센터 건립, 서비스 홍보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어업인 서비스제공 확대를 목표로 신규서비스 수요발굴(설문조사 간담회 등), 인력 및 장비확충으로 서비스 효율화 등을 추진함. 제3단계에서는 어업지도·단속 업무 인식제고를 목표로 어업인 서비스센터(Control tower 포함) 설립, 지속적 서비스 영역 확대 등을 추진함

-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 수행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어업인 고충해결 시스템 수립을 목표로 어업인고충처리센터 건립, 고충처리 홍보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어업인 의견반영 효율화를 목표로 어업인 의견반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특사경 제도개선을 위해서 제1단계에서는 특사경의 직무권한 확대 기반구축을 목표로 어선의 위반사항 단속 직무영역에 확대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특사경의 직무권한 강화를 목표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개정과 특사경의 단속 활성화 및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함
- 불법포경 업무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어업지도사무소 불법포경 단속시스템 기반마련을 목표로 불법포경 단속 교육실시, 단속 매뉴얼 작성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체계적 불법포경 단속체계 구축을 목표로 해경 및 해군과의 합동단속체계 구축, 불법포경 단속업무 확대 등을 추진함

<표 57>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단계별 추진(안)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차등지원 - 내용 : 지방자치단체 별 암행감찰 및 평가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단속영역 책 임구역제 도 입 - 내용 : 기관별 단속 업무영역 구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역할 및 업무 범위 재설정 확립 - 내용 :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업무 역량 강화 정 착
적정업무능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적정업무 능력규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영역 적정 선박규모 및 인력 파악 · 예산확보 · 신규선박 건조설계 실시 및 건조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인력 및 선박 확충을 통한 업무능력 개 선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업지도선 임무 수행구역 개선 · 적정인력확보 · 신규선박 건조착공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적정능력확보 로 국가어업지 도선 효율화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선박 건조완료 및 배치 · 국가어업지도선 효율 적 운영 정착
육상·양식 불법어업 단속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단속인력 확충 및 육상단속반 조직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양식업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위 한 인력확보 · 육상단속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육상·양식업 단 속체계 정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높은 육상단속 반 단속체계 정립 및 업무영역 확대 	-
해외수역으로 업무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공무원 양성 및 새로운 수 요발굴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업무 수행 전문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신설 · 해외업무의 수요발굴 (국제회의참석 및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해외업무 수행 으로 국제적 위상 강화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업무 수행 전문 공무원 확보 · 해외업무를 위한 장 비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지속적 해외업 무확대로 국제 적 위상 정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수요발굴 및 지 속적 해외업무 파견 등

<표 58>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단계별 추진(안)(계속)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	- 목표: IUU어선 항구 국조치 체계 기 반마련 - 내용 · IUU어선 항만국 조 치업무를 위한 인력 확보 · 법 및 규정의 기반마 련 ·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목표: 효율적 IUU어 선 항구국업무 구축 - 내용 · IUU어선 항구국업무 체계정립 및 공무원 교육확대 · IUU협정 확대	-
지도·단속 서비스영역 확대	- 목표: 어업인 서비스 영역 확대 기 반조성 - 내용 · 어업인 서비스 센터 건립 · 서비스 홍보방안 마 련	- 목표: 어업인 서비스 제공 확대 - 내용 · 신규서비스 수요발굴 (설문조사 간담회 등) · 인력 및 장비확충으 로 서비스 효율화	- 목표: 어업지도·단 속업무 인식 제고 - 내용 · 어업인 서비스 센터 Control tower 포함 · 지속적 서비스 영역 확대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	- 목표: 어업인 고충해 결 시스템 수 립 - 내용 · 어업인고충처리센터 건립 · 고충처리 홍보방안 마련	- 목표: 어업인 의견반 영 효율화 - 내용 · 어업인 의견반영 시 스템 구축	- 목표: 어업지도·단 속업무 인식 제고 - 내용 · 어업인 고충 센터 Control tower 포함
특사경 제도개선	- 목표 : 특사경의 직무 권한 확대 기반구축 - 내용 · 어선의 위반사항 단 속 직무영역에 확대 적정성 검토	- 목표 : 특사경의 직 무권한 강화 - 내용 · ‘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 률’ 개정 · 특사경의 단속 활성 화 및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	-
불법포경 업무개선	-목표 : 어업지도사무 소 불법포경 단속시 스템 기반마련 -내용 · 불법포경 단속 교육 실시 · 단속 매뉴얼 작성	-목표 : 체계적 불법포 경 단속체계 구축 -내용 · 해경 및 해군과의 합 동단속체계 구축 · 불법포경 단속업무 확대	-

2.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 지도사무소 명칭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로 새로운 명칭개선으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명칭개선을 추진함
- 지도·단속 조직개편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조직개편(안) 및 예산확보를 목표로 조직개편(안) 마련 및 시행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조직개편 추진을 목표로 조직개편(안) 시행을 계속 추진함. 제3단계에서는 조직개편 정착을 목표로 지도·단속업무 실효성 극대화를 추진함
- Control Tower 건립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어업지도·단속 총괄기관 설립기반조성을 목표로 Control Tower 업무영역 및 범위검토를 추진하고, 제2단계로는 어업지도·단속 총괄기관 운영을 목표로 Control Tower 건립 및 종합적 업무영역 확보를 추진함
- 사건처리체계개선(범칙금 통고제)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법·제도 수정(안) 작성을 목표로 전문가 및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안)작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수산관련법 제도화를 목표로 경미한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 정착을 추진함
- 공무원 근무 개선방안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현실적 승무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술발달을 감안한 현실적 승무인원 파악 및 배치를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효율적 선박운용 및 선박관리체계 정착을 목표로 자체선박 수리계획 및 현실적 승무원 배치를 추진함
- 수당지급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제1단계로 지도·단속 공무원 업무동기 부여를 목표로 형평성 있는 특수 업무수당 지급 규정 개정 및 수당지급을 추진함
- 단속우선순위 설정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객관적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을 목표로 단속 우선순위 선정의 이론적 기반 검토, 현실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정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단속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적 단속체계 정착을 목표로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 단속 실시를 추진함

<표 59>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단계별 추진(안)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지도사무소 명칭개선	- 목표: 새로운 명칭개 선으로 이미지 재고 - 내용 · 명칭개선	-	-
지도·단속 조직개편	- 목표 : 조직개편(안) 및 예산확보 - 내용 : 조직개편(안) 마련 및 시행	- 목표 : 조직개편 추진 - 내용 : 조직개편(안) 시행(계속)	- 목표 : 조직개편 정착 - 내용 : 지도·단속업무 실효성 극대화
Control Tower건립	- 목표 : 어업지도·단속 총괄기관 설립기반조성 - 내용 : Control Tower 업무영역 및 범위검토	- 목표 : 어업지도·단속 총괄기관 운영 - 내용 : Control Tower 건립 및 종합적 업무영역 확보	-
사건처리체계개선 (범칙금 통고제)	- 목표 : 법·제도 수정(안) 작성 - 내용 : 전문가 및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안)작성	- 목표 : 수산관련법 제도화 - 내용 : 경미한 불법 어업 위반자 에 대한 범 칙금 통고제 정착	-
공무원 근무 개선방안	- 목표: 현실적 승무체 계 구축 - 내용 · 기술발달을 감안한 현실적 승무인원 과 약 및 배치	- 목표: 효율적 선박운 용 및 선박관 리체계 정착 - 내용 · 자체선박 수리계획 및 현실적 승무원 배치	-
수당지급 형평성 확보	- 목표: 지도·단속 공 무원 업무동기 부여 · 형평성있는 특수업무 수당 지급규정 개정 및 수당지급	-	-
단속우선순위 설정	- 목표: 객관적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 - 내용 · 단속 우선순위 선정 의 이론적 기반 검 토 · 현실을 반영한 우선 순위 선정	- 목표: 단속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적 단속체 계 정착 - 내용 · 우선순위에 따른 체 계적 단속 실시	-

3.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

- 모니터링 체제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VMS장착 기반조성 및 시범도입을 목표로 VMS장착에 따른 효과추정 및 인식도 조사 실시, 동·서해 특정해역 조업어선 VMS 장착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VMS장착 확대를 목표로 근해어업 중 대형선박사용 업종에 대하여 VMS장착 확대, VMS를 이용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을 추진함. 제3단계에서는 효율적 모니터링 제도 정착을 목표로 연안어업을 제외한 근해조업 어선에 대하여 VMS장착, VMS를 이용한 모니터링시스템 정착 등을 추진함
-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지도·단속 항공기 및 헬기 도입 기반마련을 목표로 타당성검토 및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시범적 도입 및 운영을 목표로 임대 및 시범적 도입·운영을 추진함.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입체적 지도·단속 업무 정착을 목표로 헬기 및 항공기 도입을 추진함
- 경제적 제재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제1단계로 일원화된 행정처리를 통한 단속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적 제재조치 효율적 이행책 검토, 경제적 제재조치 권한 이관 검토 등을 추진함

<표 60>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 단계별 추진(안)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모니터링 체제개선	- 목표: VMS장착 기반조성 및 시범도입 - 내용 · VMS장착에 따른 효과추정 및 인식도 조사실시 · 동서해 특정해역 조업어선 VMS 장착	- 목표: VMS장착 확대 - 내용 · 근해어업 중 대형선박사용 업종에 대하여 VMS장착 확대 · VMS를 이용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 목표: 효율적 모니터링 제도 정착 - 내용 · 연안어업을 제외한 근해조업 어선에 대하여 VMS장착 · VMS를 이용한 모니터링시스템 정착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	- 목표: 지도·단속 항공 기 및 헬기 도 입 기반마련 - 내용 · 타당성검토 및 예산 확보	- 목표: 시범적 도입 및 운영 - 내용 · 임대 및 시범적 도 입·운영	- 목표: 입체적 지도· 단속 업무 정착 - 내용 · 헬기 및 항공기 도입
경제적제재 투명성확보	- 목표: 일원화된 행정 처 리 를 통 한 단속효과 극 대화 - 내용 · 경제적제재조치 효 율적 이행책 검토 · 경제적제재조치 권 한 이관 검토	-	-

4.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 지도 및 교육 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효율적 교육체계 구축기반마련을 목표로 어업인교육기회 확대, 정부차원 교육메뉴얼 개발 및 교육기관 단일화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정립을 목표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정립을 추진함. 제3단계에서는 어업인 교육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어업인 교육기회 확대를 추진함
- 자율관리어업과 연계를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자율관리어업과 지도안전 업무 협력기반 마련을 목표로 자율관리어업과 지도안전업무 연계방안 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국가어업지도소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업무연계성 극대화를 목표로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개선(어업지도소 평가 주체로 포함)을 추진함
- 불법어업자 구제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어업인 권리강화 기반구축을 목표로 단속관련 불편사항 수요조사 및 개선, 불법자 사건조사시 등에서 불편사항 개선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어업인 권리보장 확립을 목표로 경미한 불법어업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도 신설을 추진함

-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로 효율적인 불법어업 통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이용자편의 제고, 통계보고체계 시스템 개편, 불법어업 통계 홍보 등을 추진함

<표 61>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단계별 추진(안)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지도 및 교육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효율적 교육체계 구축기반 마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교육기회 확대 · 정부차원 교육메뉴얼 개발 및 교육기관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정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어업인교육시스템 정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교육기회 확대
자율관리어업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자율관리어업과 지도안전업무 협력기반 마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어업과 지도안전업무 연계방안 개발 · 교육프로그램에 국가어업지도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업무연계성 극대화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개선(어업지도소 평가주체로 포함) 	-
불법어업자 구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어업인권리강화 기반구축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관련 불편사항 수요조사 및 개선 · 불법자 사건조사시 등에서 불편사항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어업인권리보장 확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불법어업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도 신설 	-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효율적인 불법어업 통계시스템 구축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편의 제고 · 통계보고체계 시스템 개편 · 불법어업 통계 홍보 	-	-

제4절 투용자계획

- 단계별 투용자계획은 각 추진 세부 과제별로 단기(제1단계) 3년, 중기(제2단계) 3년, 장기(제3단계) 4년으로 각 단계별 투용자계획을 제시함

1.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의 예산은 단기 55억원, 중기 152억원, 장기 252억원으로 총 459억원이 산정됨
- 적정업무능력 확보는 단기 90.5억원, 중기 230억원, 장기 200억원으로 총 520.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은 육상·양식 및 원양으로 업무영역 확대와 IUU어선 항구국조치 업무개선, 어업인 서비스영역 확대,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 특사경 제도개선, 불법포경 업무개선의 세부 과제를 포함하여 단기 68.2억원, 중기 48억원, 장기 33.5억원으로 총 149.7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임
-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는 약 1,129억원

<표 62>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투용자계획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예산			예산 합계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	55	152	252	459
적정업무능력 확보	90.5	230	200	520.5
국가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	68.2	48	33.5	149.7
육상·양식 및 원양으로 업무영역 확대	47.8	40.9	25.2	113.9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 합계	1.9	0.6	0.8	3.3
어업인 서비스영역 확대	11.5	4	5	20.5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	4	2	2	8
특사경 제도개선	1	0	0	1
불법포경 업무개선	2	0.5	0.5	3
예산 합계	213.7	430	485.5	1129.2

2.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의 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단기 170.2억원, 중기 69.4억원, 장기 68.2억원으로 총 30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방안에는 지도사무소 명칭개선, 지도·단속 조직개편, Control Tower건립이 포함되며 단기 111억원, 중기 29.5억원, 장기 15억원으로 총 149.5억원
- 사건처리체계개선은 단기에 4억원의 예산 소요, 해상 및 육상단속 체계 개선방안은 단기에 15.3억원 예산 필요. 지도·단속 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방안은 단기 38.4억원, 중기 38.4억원, 장기 51.2억원 총 128억원의 예산을 산정
- 단속우선순위 설정 단기 1.5억원, 중기1.5억원, 장기 2억원 총 5억원의 예산을 산정

<표 63>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투융자계획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예산			예산 합계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방안	111	29.5	15	149.5
지도사무소 명칭개선	4	0	0	4
지도·단속 조직개편	105	13	11	123
Control Tower건립	2	16.5	4	22.5
사건처리체계개선(범칙금 통고제)	4	-	-	4
해상 및 육상단속 체계 개선방안	15.3	0	0	15.3
지도·단속 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방안	38.4	38.4	51.2	128
단속우선순위 설정	1.5	1.5	2	5
예산 합계	170.2	69.4	68.2	301.8

3.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

-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의 투융자계획은 모니터링 체제개선, 명예감시선 제도 개선과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제도 개선을 포함한 효율적 감시 및 신고시스템 개선,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이 포함되며 단기 22.7억원, 중기132.4억원, 장기 1,165억원으로 총 1,330억원의 예산을 산정

<표 64>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 투융자계획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예산			예산 합계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모니터링 체제개선	13.5	111	150	274.5
효율적 감시 및 신고시스템 개선 방안	8.9	11.4	15.2	35.5
명예감시선 제도개선	4.5	7.5	10	22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제도 개선	4.4	3.9	5.2	13.5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0.3	10	1000	1020.3
예산 합계	22.7	132.4	1165.2	1330.3

4.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투융자계획은 법 및 제도 개선방안, 불법어업 예방활동 개선방안, 불법어업자 구제개선,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개선이 포함되며, 단기 5.4억원, 중기 10.8억원, 장기 14.4억원으로 총 30.6억원의 예산을 산정

<표 65>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투융자계획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예산			예산 합계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법 및 제도 개선방안	0.6	-	-	0.6
불법어업 예방활동 개선방안	3	9	12	24
지도 및 교육 개선	3	9	12	24
자율관리어업과 연계	0	0	0	0
불법어업자 구제개선	1	1.5	2	4.5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	0.8	0.3	0.4	1.5
예산 합계	5.4	10.8	14.4	30.6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여건변화 및 새로운 어업 지도·단속 수요 분석	11
제1절 지도·단속의 역사적 고찰	11
제2절 국내·외 여건변화	36
제3절 수산정책 여건변화	58
제4절 법·제도 여건변화	63
제5절 새로운 지도·단속 수요분석	70
제3장 어업 지도·단속의 실태분석	77
제1절 지도·단속 실태분석	77
제2절 불법어업 단속 현황 분석	121
제3절 지도·홍보·교육 분야 실적	133
제4절 소결	140
제4장 불법어업 단속 및 불법어업자 관리 실태분석	157
제1절 불법어업 유형 및 실태	157
제2절 연근해 불법어업의 발생원인	199
제3절 불법어업의 단속 및 사건처리 절차	203
제4절 불법어업자의 관리	207
제5절 소결	227

제5장 국외 사례분석	229
제1절 각국의 어업지도·단속 시스템	229
제2절 각국의 해상 지도·단속 제도 고찰	259
제3절 각국의 육상 감시, 감독 체계	271
제4절 소결	280
제6장 어업지도·단속 운영성과 분석	293
제1절 지도·단속 운영인식도 분석	294
제2절 성과분석의 이론적 배경	300
제3절 운영성과 분석	319
제7장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방안	331
제1절 기관별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방안	332
제2절 어업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방안	382
제3절 불법어업 감시감독 체계 개선방안	416
제4절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개선방안	434
제8장 어업지도·단속 업무 증장기 발전 방안	453
제1절 기본방향 및 목표	453
제2절 주요 추진과제	455
제3절 단계별 추진(안)	457
제4절 투융자계획	466
참고문헌	469

< 표 목 차 >

<표 2-1> 1969년 불법어업 단속 및 처리사항	13
<표 2-2> 1970년대 불법어업 단속실적	17
<표 2-3> 1980년대 불법어업 단속실적	23
<표 2-4> 1990년대 불법어업 단속실적	27
<표 2-5> 2000년대 불법어업 단속실적	30
<표 2-6> 불법어업 단속 및 조업지도의 연혁	31
<표 2-7> 어업지도사무소 연혁	33
<표 2-8> 국가어업지도선의 연혁	35
<표 2-9> 어가인구 및 노령인구 비율	36
<표 2-10> 어업별 어업생산량	37
<표 2-11> IUU국제행동계획 채택 약사(略史)	40
<표 2-12> 국제행동계획의 불법(Illegal)어업 정의	41
<표 2-13> 국제행동계획의 비보고(Unreported)어업 정의	42
<표 2-14> 국제행동계획의 비규제(Unregulated)어업 정의	42
<표 2-15> 수산관련 국제규범들 중 강제/자발적 규범 분류	44
<표 2-16> 러시아 선도선박 T/F팀 운용 현황	47
<표 2-17> IPOA-IUU의 기국 책임중 항구국 조치	52
<표 2-18> 항구국 조치와 관련한 외국 사례	53
<표 2-19> 현행 선박의 항구 입항관련 기관별 역할	57
<표 2-20> 주요 소관법률	64
<표 3-1> 국가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77
<표 3-2> 시도별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78
<표 3-3> 강원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78
<표 3-4> 경상북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79
<표 3-5> 울산시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79
<표 3-6> 경기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79
<표 3-7> 인천시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80
<표 3-8> 충청남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80
<표 3-9> 전라북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81

<표 3-10> 부산시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81
<표 3-11> 경상남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82
<표 3-12>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82
<표 3-13> 제주시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83
<표 3-14>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담당 공무원 인원 현황	84
<표 3-15> 서해어업지도사무소 담당 공무원 인원 현황	88
<표 3-16> 강원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91
<표 3-17> 고성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92
<표 3-18> 양양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93
<표 3-19> 동해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94
<표 3-20> 삼척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94
<표 3-21> 경상북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95
<표 3-22> 경상북도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95
<표 3-23> 울릉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96
<표 3-24> 울산시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97
<표 3-25> 울산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97
<표 3-26> 경기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97
<표 3-27> 경기도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98
<표 3-28> 인천시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99
<표 3-29> 인천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99
<표 3-30> 충청남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100
<표 3-31> 충청남도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0
<표 3-32> 전라북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102
<표 3-33> 전라북도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2
<표 3-34> 군산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3
<표 3-35> 부안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4
<표 3-36> 고창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4
<표 3-37> 전라남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105
<표 3-38> 전라남도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5
<표 3-39> 영광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6
<표 3-40> 무안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6
<표 3-41> 목포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6

<표 3-42> 신안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7
<표 3-43> 진도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7
<표 3-44> 여수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8
<표 3-45> 고흥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9
<표 3-46> 부산시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109
<표 3-47> 부산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09
<표 3-48> 경상남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111
<표 3-49> 경상남도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11
<표 3-50> 남해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12
<표 3-51> 통영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12
<표 3-52> 사천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13
<표 3-53> 고성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13
<표 3-54> 거제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14
<표 3-55> 마산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14
<표 3-56> 진해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15
<표 3-57>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115
<표 3-58> 제주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116
<표 3-59> 해양경찰의 업무별 비중	118
<표 3-60> 기관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121
<표 3-61> 2006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122
<표 3-62> 2007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123
<표 3-63> 2008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123
<표 3-64> 강원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124
<표 3-65> 경상북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125
<표 3-66> 울산시 불법어업 단속현황	125
<표 3-67> 경기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126
<표 3-68> 인천시 불법어업 단속현황	126
<표 3-69> 충청남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127
<표 3-70> 전라북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128
<표 3-71> 부산시 불법어업 단속현황	128
<표 3-72> 경상남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129
<표 3-73> 전라남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130

<표 3-74> 제주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130
<표 3-75> 2006 행정처분현황	131
<표 3-76> 2007 행정처분현황	132
<표 3-77> 2008 행정처분현황	132
<표 3-78> 강원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33
<표 3-79> 경상북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34
<표 3-80> 울산시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34
<표 3-81> 경기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35
<표 3-82> 인천시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35
<표 3-83> 전라북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36
<표 3-84> 충청남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36
<표 3-85> 부산시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37
<표 3-86> 경상남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38
<표 3-87> 전라남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38
<표 3-88> 제주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39
<표 3-89> 기관별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140
<표 3-90>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담당 공무원 인원 현황	141
<표 3-91> 시도별 어업감독 공무원 현황	142
<표 3-92> 권역별 어가인구 현황	142
<표 3-93> 각 도, 시 군별 지도·단속 담당 부서 현황	143
<표 3-94> 기관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145
<표 3-95> 최근 3년간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146
<표 3-96> 2006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147
<표 3-97> 2007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148
<표 3-98> 2008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148
<표 3-99> 2006 행정처분현황	149
<표 3-100> 2007 행정처분현황	150
<표 3-101> 2008 행정처분현황	150
<표 3-102> 2006년도 시도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51
<표 3-103> 2006년 시도별 지도·홍보 현황 종합	152
<표 3-104> 2007년도 시도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52
<표 3-105> 2007년 시도별 지도·홍보 현황 종합	153

<표 3-106> 2008년도 시도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154
<표 3-107> 2008년 시도별 지도·홍보 현황 종합	155
<표 4-1> 유형별 업종별 대표적 위반사례	160
<표 4-2> 대형기선저인망 위반사례 현황	163
<표 4-3> 대형기선저인망 금지구역 및 그물코 제한 현황	163
<표 4-4> 동해구기선저인망 위반 사례 현황	164
<표 4-5> 서남해구기선저인망 위반 사례 현황	165
<표 4-6> 근해트롤 위반 사례 현황	166
<표 4-7> 근해트롤 규제 내용 현황	166
<표 4-8> 동해구트롤 위반 사례 현황	167
<표 4-9> 동해구트롤 규제 내용 현황	168
<표 4-10> 근해채낚기 위반사례 현황	168
<표 4-11> 근해자망 위반사례 현황	169
<표 4-12> 근해안강망 위반사례 현황	170
<표 4-13> 대형선망 위반사례 현황	171
<표 4-14> 소형선망 위반사례 현황	172
<표 4-15> 근해통발 위반사례 현황	173
<표 4-16> 근해형망 위반사례 현황	174
<표 4-17> 기선권현망 위반사례 현황	175
<표 4-18> 잠수기 불법어업 위반 사례	176
<표 4-19> 근해연승 불법어업 위반 사례	176
<표 4-20> 근해봉수망 위반사례 현황	177
<표 4-21> 연안자망 위반사례 현황	177
<표 4-22> 연안양조망 위반사례 현황	178
<표 4-23> 연안안강망 위반사례 현황	179
<표 4-24> 연안통발 위반사례 현황	180
<표 4-25> 연안선망 위반사례 현황	181
<표 4-26> 연안들망 불법어업 위반 사례	181
<표 4-27> 연안조망 불법어업 위반 사례	181
<표 4-28> 구획어업 위반사례 현황	182
<표 4-29> 어획물 운반업 위반사례 현황	183
<표 4-30> 어장관리선 위반사례 현황	184

<표 4-31> 대형기선저인망 단속 기준	185
<표 4-32> 중형기선저인망 단속 기준	185
<표 4-33> 대형트롤 단속 기준	186
<표 4-34> 동해구트롤 단속 기준	186
<표 4-35> 근해선망 단속 기준	186
<표 4-36> 근해채낚기 단속 기준	187
<표 4-37> 기선선인망 단속 기준	187
<표 4-38> 근해자망 단속 기준	188
<표 4-39> 근해안강망 단속 기준	188
<표 4-40> 근해붕수망 단속 기준	189
<표 4-41> 잠수기 단속 기준	189
<표 4-42> 근해통발 단속 기준	190
<표 4-43> 근해형망 단속 기준	190
<표 4-44> 근해연승 단속 기준	191
<표 4-45> 연안자망 단속 기준	191
<표 4-46> 연안안강망 단속 기준	191
<표 4-47> 연안선망 단속 기준	192
<표 4-48> 연안통발 단속 기준	192
<표 4-49> 연안틀망 단속 기준	192
<표 4-50> 연안조망 단속 기준	193
<표 4-51> 연안복합 단속 기준	193
<표 4-52> 정치성 구획어업 단속 기준	193
<표 4-53> 이동성 구획어업 단속 기준	194
<표 4-54> 지역별 불법어업 실태 현황	195
<표 4-55> 월별 불법어업 사례 현황	198
<표 4-56> 수산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209
<표 4-57> 근해어업의 업종별 과징금 부과기준과 금액(시행령 별표 4)	210
<표 4-58>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일반기준	213
<표 4-59>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면허어업)	214
<표 4-60>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허가어업·신고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216
<표 4-61> 불법어선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증지규정	222
<표 4-62> 불법어선영어자금융자제한규정	224

<표 4-63> 불법어선 해외자원 생산지원자금의 용자제한	225
<표 4-64> 불법어업자에 대한 지원배제 실적	226
<표 4-65> 불법어업 단속 및 관리 실태 종합	228
<표 5-1> 지역별 해구현황	234
<표 5-2> 큐슈각 현 수용위원의 1개월의 보수와 평균 근무일수(2008년)	238
<표 5-3> 광역어업조정위원회	241
<표 5-4> 일본해 큐슈서광역해 어업조정 위원회 회의개최	241
<표 5-5> 주요 국가별 VMS 실시 현황	283
<표 5-6> 주요 국가별 옵저버 제도 실시 현황	284
<표 5-7> 주요 국가별 양륙항 옵저버 실시 현황	285
<표 5-8> 주요 국가별 어획량 조사체계 현황	285
<표 5-9> 주요 국가별 어획량 조사체계 현황	286
<표 5-10> 주요 국가별 어획량 조사체계 현황	286
<표 5-11> 주요 국가별 어획량 조사체계 현황	287
<표 5-12> 주요 국가별 선체표시 및 어구실명제 실시 현황	288
<표 5-13> 주요 국가별 선체표시 및 어구실명제 실시 현황	288
<표 5-14> 국내외 사례분석 시사점	292
<표 6-1> 운영인식도 조사표본 인구통계학적 분석	294
<표 6-2> 지도업무 수단효율성	298
<표 6-3> NOAA 패널의 가이드라인	310
<표 6-4> 조건부 반응에 따른 확률분포	314
<표 6-5> 주요 불법어업 단속업종의 적정어획강도 수준	319
<표 6-6> 업종별 불법어업단속건수 및 업종별 CPUE	320
<표 6-7> 업종별 불법어업유형별 조정치	321
<표 6-8> 업종별 직접어획금액 보전효과	321
<표 6-9> 업종별 미성어어획 비율 및 업종별 CPUE	323
<표 6-10> 업종별 불법 미성어어획 미래가치 보전효과	323
<표 6-11> 간접효과 조사표본 인구통계학적 분석	326
<표 6-12> 모형의 추정결과	328
<표 6-13> 지불의사액의 대표값 추정결과	328
<표 6-14> 국내 가구수	329
<표 6-15> 우리나라 지도·단속업무 수행의 총가치	329

<표 6-16> 우리나라 지도·단속업무 수행의 총가치	330
<표 7-1> 어업지도선, 해경경비정, 해군함정의 역할	333
<표 7-2> 주요수산국의 어업지도·단속체계	337
<표 7-3> 기관별 지도·단속 업무영역(범위) 재설정 방안(안)	339
<표 7-4>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339
<표 7-5>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341
<표 7-6> 업무영역별 국가 어업지도선 필요척수 추정	343
<표 7-7> 국가 어업지도선 증척에 따른 필요 인원 추정	344
<표 7-8> 국가 어업지도선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345
<표 7-9> 국가 어업지도선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346
<표 7-10> 어업지도사무소 정원현황	347
<표 7-11> 육상·양식 및 원양으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352
<표 7-12> 육상·양식 및 원양으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353
<표 7-13> 항만국조치 조문별 내용	356
<표 7-14> 항만국조치 용어의 정의	357
<표 7-15> 항만국조치 주요내용 및 시사점	359
<표 7-16> IUU/항구국 조치 관련 수산업법 개정(안)	363
<표 7-17> IUU/항구국 조치관련 별도의 규정 및 규칙 신설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363
<표 7-18> 항구국 검색관 교육 지침	364
<표 7-19> IUU/항구국조치 관련 필요한 조치 요약	365
<표 7-20>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366
<표 7-21>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367
<표 7-22> 어업인 서비스영역 확대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370
<표 7-23> 어업인 서비스영역 확대를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371
<표 7-24>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373
<표 7-25>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374
<표 7-26> 특사경 제도개선 단계별 추진 방안	376
<표 7-27> 특사경 제도개선 단계별 투융자계획	376
<표 7-28> 고래류 불법포획 현황	378
<표 7-29> 불법포경 업무개선 명칭개선 단계별 추진 방안	380
<표 7-30> 불법포경 업무개선 명칭개선 단계별 투융자계획	381
<표 7-31> 지도사무소 명칭개선(안) 제시	383

<표 7-32> 어업지도사무소 명칭개선 단계별 추진 방안	384
<표 7-33> 지도사무소 명칭개선 단계별 투융자계획	384
<표 7-34> 어업지도사무소 조직 개편(안) 요약	388
<표 7-35> 명칭 및 지도·단속 조직개편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389
<표 7-36>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390
<표 7-37> Control Tower건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393
<표 7-38> Control Tower건립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393
<표 7-39> 범칙금 통고제를 통한 사건처리 개선(안)	396
<표 7-40> 사건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397
<표 7-41> 사건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397
<표 7-42> 시도별 공무원 및 지도·단속선 1인당/척당 단속비율	400
<표 7-43> 해상 및 육상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403
<표 7-44> 해상 및 육상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403
<표 7-45> 지도·단속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407
<표 7-46> 지도·단속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408
<표 7-47> 자원적 측면 점수 도출 방법	411
<표 7-48> 연근해어업 자원적 측면 업종별 영향도 분석	412
<표 7-49> 연근해어업 사회적 측면 업종별 영향도 분석	413
<표 7-50> 불법어업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방안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414
<표 7-51> 불법어업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방안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415
<표 7-52> 모니터링 체제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421
<표 7-53> 모니터링 체제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422
<표 7-54> 명예감시선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425
<표 7-55> 명예감시선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425
<표 7-56>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427
<표 7-57>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428
<표 7-58> 일본 지도·단속 항공기 현황	429
<표 7-59>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430
<표 7-60>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430
<표 7-61> 불법어업단속과 경제적 제재 조치 현황	431
<표 7-62> 경제적 제재조치 현황	431
<표 7-63> 경제적제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432

<표 7-64> 경제적제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투용자계획	433
<표 7-65> 수산업법 위반사례	434
<표 7-66>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사례	435
<표 7-67>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사례	435
<표 7-68>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439
<표 7-69>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용자계획	440
<표 7-70> 지도 및 교육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442
<표 7-71> 지도 및 교육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용자계획	443
<표 7-72> 자율관리어업과 연계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445
<표 7-73> 자율관리어업과 연계를 위한 단계별 투용자계획	445
<표 7-74> 불법어업자 구제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447
<표 7-75> 불법어업자 구제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용자계획	447
<표 7-76>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450
<표 7-77>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용자계획	451
<표 8-1>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주요 추진과제	455
<표 8-2>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단계별 추진(안)	459
<표 8-3>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단계별 추진(안)(계속)	460
<표 8-4>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단계별 추진(안)	462
<표 8-5>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 단계별 추진(안)	463
<표 8-6>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단계별 추진(안)	465
<표 8-7>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투용자계획	466
<표 8-8>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투용자계획	467
<표 8-9>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 투용자계획	468
<표 8-10>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투용자계획	468

< 그림 목 차 >

<그림 2-1> 연근해 자원량 및 어획량 변화 추이	58
<그림 2-2> 수산업의 악순환 구조	59
<그림 3-1>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조직도	84
<그림 3-2>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조직도	88
<그림 4-1> 불법어업의 단속 업무처리의 흐름도	204
<그림 5-1> 해안경비대 조직도	256
<그림 5-2> 노르웨이 전자교신 모니터링 시스템	263
<그림 5-3> 노르웨이 EEZ내에서 조업하는 EU 어선들의 모니터링 상황	264
<그림 5-4> 일본의 어업지도·단속 기관 현황	280
<그림 5-5> 일본의 기관별 지도·단속 장비 현황	281
<그림 5-6> 중국 어업지도·단속 기관 현황	281
<그림 5-7> 중국의 기관별 업무 현황	281
<그림 5-8> 미국의 어업지도·단속 기관 현황	282
<그림 5-9> 미국의 기관별 담당구역 현황	283
<그림 6-1> 어업지도·단속 운영성과분석 연구체계	293
<그림 6-2> 운영인식도 조사표본 인구통계학적 분석	295
<그림 6-3> 지도·단속 정책성과분석 결과	295
<그림 6-4> 지도·단속 수행효율 인식	296
<그림 6-5> 지도·단속 수행효율 측면	296
<그림 6-6> 지도업무와 단속업무의 업무중요도 비교	297
<그림 6-7> 경제적 제재조치의 운영 효율	297
<그림 6-8> 지도업무 수단효율성	298
<그림 6-9> 재화의 특성에 따른 구분	301
<그림 6-10> 지도·단속업무의 정부제공시 총효용	302
<그림 6-11> 지도·단속의 경제적 가치추정	303
<그림 6-12> 지도·단속의 경제적 가치증가	304
<그림 6-13> 지도·단속의 지대발생 효과	304
<그림 6-14> 어획비용절감효과	305

<그림 6-15>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5단계	309
<그림 6-16> 지도·단속 경제적 가치추정 운용절차	325
<그림 6-17> 간접효과 조사표본 인구통계학적 분석	326
<그림 6-18> 조사표본 가족수현황	327
<그림 7-1>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연구체계	331
<그림 7-2> 국가 어업지도선 단속해역 및 총 필요척수 현황	344
<그림 7-3> 어업인 서비스센터를 이용한 서비스 지원 시스템 도식(안)	369
<그림 7-4> 어업인 고충처리센터를 시스템 도식(안)	373
<그림 7-5> 해양경찰의 불법포경 단속체계	379
<그림 7-6> 불법포경 단속 개선체계	380
<그림 7-7> 1안(남해 본원 1, 지원 2, 출장소1)	386
<그림 7-8> 2안(본원 1, 지원 3)	387
<그림 7-9> 3안(3개지원, 1개 출장소남해 증설)	388
<그림 7-10> 현행 어업지도·단속 조직체계	391
<그림 7-11> 어업지도·단속 Control Tower 조직체계	392
<그림 7-12> 불법어업 단속 우선순위 선정 방법(안)	410
<그림 7-13> 서해 NLL 주변 어장도	421
<그림 7-14>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 보고체계	448
<그림 8-1> 어업지도·단속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453
<그림 8-2> 어업지도·단속 비전 및 목표	45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 수산자원은 두 가지 큰 문제로 인하여 국가별로 많은 고민과 다양한 수산자원 관리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수산자원이 자유크신자원(Self-renewable resource)이라는 점과, 그 다음으로 공유재산(Common property)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먼저, 수산자원이 자유크신자원이라는 것은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감독이 공적 부문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함. 즉, 자원의 분류는 자유크신자원(수산자원, 삼림자원 등)과 비자유크신자원(수자원 등), 비꺾신자원(석유, 석탄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비자유크신자원과 비꺾신자원은 인간의 산업적 기술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 의존적이지만, 수산자원의 경우는 어떻게 이용 및 관리와 보존을 하느냐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 이용 상의 규범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수산관계법령에서 이러한 규범을 정하고 있으며, 규범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지도 및 단속업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수산자원이 공유재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무주의 수산자원을 선점함으로써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과 관리상의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원의 이용-어획노력량 증대-자원의 남획-경영 악화 등의 악순환이 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산관련 법률들은 수산자원의 적절한 이용,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는 업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고유의 공적인 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정부 차원의 수산물 생산 증대 위주의 수산자원관리 업무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보다는 어업조정과 어업질서 유지에만 많은 관심과 노력들

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나,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의 감소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측면에서 현행의 지도·단속 업무는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불법어업과 관련된 감시·감독 업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어획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어업자의 입장과 적정한 수산자원의 유지라는 공무원의 역할이 상반되는 것으로 일명 '단속'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어업인들과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음
- 불법어업의 유형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어법으로 조업하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어선이 허가사항과 달리 어법을 변경하여 조업하는 업종 위반, 허가받은 장소 이외에서 조업하는 조업구역 위반, 금지구역을 침범조업, 금어기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조업기간 위반, 허가받은 어구를 변형하거나 또는 허가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구 제한 위반, 허가할 당시에 부여된 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제한 및 조건 위반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함
- 이러한 불법어업은 어업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에게 법을 지키면서 어업하는 어업인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촌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음
- 따라서,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법무부, 해양경찰 등과 공동으로 단속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으나, 불법어업은 수산관계법령을 지키는 차원보다도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적인 측면과 불법어업을 통한 경제적 이득과 어촌사회에서의 구조적인 측면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이를 근절시키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또한, EEZ 체제의 정착에 따른 지도·단속수역의 확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지역수산기구의 제3국적선 지도·단속 등 수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수산자원 관리수단으로서 지도·단속 업무 추진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날로 감소하는 어업자원을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을 실현하며, 지도·단속과 관련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어업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계획의 수립은 물론, 지도·단속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필요성

- 불법어업은 1990년 8월 1일(법률 제4252호) 개정된 수산업법에서 불법어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불법어업이란 수산업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어업감독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법 또는 위법하게 행하는 어업, 즉, 적법 요건을 결여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어업을 말함
-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 업무는 196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이래, 최근 그 규모가 확대(어장축소로 인한 어구변형 등)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으나, 수산업의 여건변화는 과거와 달리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음
- 먼저, 지도·단속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여건 변화로 어업 종사자 감소 및 노령화, 어촌 이탈 현상, 자원고갈에 따른 연근해어업 위축, 연근해 어선감척 사업 추진 등이 있음
 - 국가어업지도선은 1990년 15척에서 2000년 25척, 2009년 11월 현재 34척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어업종사자수는 2006년 약 21만 명에서 2008년 약 19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 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창출 미흡, 교육·문화, 의료 인프라 열악 등으로 어촌 이탈
 -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추진으로 어업 규모 축소
- 이에 반하여 서해안에서의 중국 어선들에 의한 불법어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동해 EEZ 부근에서도 일본과의 어업 마찰 요인이 잔존해 있어 주변국

과의 어장이용을 둘러싼 분쟁의 예방, 특히 서해 NLL지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 크고 작은 우리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등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2001년 3월 FAO/IUU 국제행동계획의 국내이행과 러시아 활계류 반입 문제와 관련 한·러 불법교역방지 협정체결 추진 및 이에 따른 항구국 조치, 지역 수산기구인 북서태평양(WCPFC) 어선 검색 실시 등 지도·단속과 관련된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지도·단속과 관련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에 관한 우선순위는 기존의 어업자를 우선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을 경영한 경험이 없는 귀어자(歸漁者)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어촌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귀어자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무허가어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수산관련법규는 대부분 규제법이고 수산자원관리 정책이 매우 복잡하여 수산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며, 타 어업자들의 불법어로행위로 인한 충돌적인 불법어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허가권자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을 의식하여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자들은 주요 단속시기를 피하여 불법어업을 행할 경우 적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더욱이, 불법어업은 산란장과 치어의 성육장을 파괴하고, 치·자어를 무차별적으로 어획하여 어업자원 전체의 재생산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며, 어장과 자원이용을 둘러싼 어업자들 간의 조업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 EEZ 침범 불법조업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도·단속 업무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 어업 생산 및 경영 안정이라는 어업관리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하며 효율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는 체계 및 운영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수산선진국의 지도·단속 사례 분석과 새로운 어업 지도·단속 수요 분석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체계의 구축 및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에서는 여건변화 및 새로운 어업지도·단속 수요분석, 제3장에서는 어업지도·단속의 실태분석, 제4장에서는 불법어업 단속 및 불법어업자 관리 실태분석, 제5장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 제6장에서는 어업지도·단속 운영성과 분석, 제7장에서는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제8장에서는 어업지도·단속 중장기 발전방안 등임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여건변화 및 새로운 어업 지도·단속 수요 분석에 대해서 살펴봄. 불법어업에 관한 연구논문, 수산시책 50년 등의 보고서와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지도·단속의 발전 단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고, 어업지도·단속의 여건변화와 지도·단속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변화, 새로운 지도·단속 수요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 제3장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의 내부자료 및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자문, 각 시·도별 출장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어업지도·단속의 실태분석을 실시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어업지도선 보유 척수와 각 시·도별 어업지도선 척수를 동·서·남해권역별로 분류하여 어업지도선 현황을 정리하였음. 둘째, 정부 단속 기관인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의 조직도와 주요 업무를 파악하였고, 시·도별 지도·단속 담당 부서 및 주요 업무 분석, 기관별 업무 비교를 위하여 해양경찰의 임무를 문헌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음. 셋째, 불법어업 단속 현황은 정부, 시·군 단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행정 처분 실적과 홍보 교육 부문도 정리하였음
- 제4장에서는 불법어업 단속 및 불법어업자 관리 실태를 분석함. 이는 각종 문헌 참고 및 통계청 자료와 어업생산포털시스템 자료, 지도안전과 내부자료, 각 시·군 자료 및 담당 공무원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여 분석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연도별 업종별·기관별 불법어업의 유형과 단속현황 정리, 둘째,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불법어업의 유형과 월별·지역별 불법어업의 유

형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음. 셋째, 불법어업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넷째, 불법어업의 단속 및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파악하였음

- 제5장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처리 시스템 및 담당 기관을 파악하였고, 불법어업 단속 사례 및 감시감독 사례를 분석하였음
- 제6장에서는 어업지도·단속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계량적으로 추정하였음. 지도·단속 운영성과 분석을 위하여 각 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하였음. 또한, 직·간접 효과 추정을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이 중 이상치를 제외한 309개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하네만 모형¹⁾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제7장에서는 어업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정리하였음. 어업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불법어업 감시체계 개선,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등 4개의 큰 틀로 접근하여 그에 대한 각각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도·단속 업무영역확대와 관련하여 기관별 역할 및 업무범위와 업무영역 확대 방안, 둘째,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은 조직개편, 명칭개선, Control tower 설치, 사건처리·단속 체계, 공무원 근무 및 복지, 불법어업 보고 및 관리 방안, 셋째, 불법어업 감시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체제, 효율적 감시 및 신고 시스템, 감시감독 장비, 경제적 제재조치, 넷째,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과 관련하여 법 및 제도 개선, 예방활동, 불법어업자 구제, 불법어업 통계 개선 등에 대하여 각각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제시 및 투융자 계획 등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제7장에서 검토한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세부과제별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음

1)이 모형은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을 얻어 이를 확률모형으로 전환하여 지불의사액 함수를 도출한 후, 다시 효용이론(Utility Theory)에 접목시켜 소비자의 후생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임. 제 6장 참조.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기관별·업종별·시간적·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음. 먼저 기관별로는 국가 지도·단속 업무와 지방자치단체, 해경으로 범주를 나누었고, 업종별로는 연근해, 양식, 내수면, 원양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음. 시간적으로는 1960년대 단속업무의 태동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살펴보고,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 연·근해와 EEZ 지역, 지역 수산기구, 러시아 수역 등을 포함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음. 첫째,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둘째, 연구방향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회의 및 자문단 회의를 실시하였음. 셋째, 지도·단속 현황 파악을 위하여 각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작성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넷째, 주요 수산국의 해외사례 조사를 위하여 해외출장 및 관련국 외교공관을 통한 자료 수집, 다섯째, 직·간접 편익 측정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문헌조사 방법을 통하여 제2장의 지도·단속의 역사적 고찰과 여건 변화 분석, 제3장의 실태분석과 제4장의 불법어업 유형 및 사건처리 절차, 제5장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단속의 역사적 고찰은 수산시책 50년(2007) 등 관련 서적을 조사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간한 수산업연차보고서를 연도별로 수집(1969~2008)하여 정리하였으며,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내부자료를 참고하였음. 제3장의 실태분석과 제4장의 불법어업 유형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은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제5장의 해외사례는 국내외 도서와 해외 사이트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 설문조사를 통해 제3장의 지도·단속 실태부분 중 각 시·군의 지도·단속 공무원 수, 어업지도선 척수, 단속 건수, 행정처리 건수, 교육·홍보 현황 등을 조사하였고, 제6장의 운영성과 분석 중 지도·단속 운영인식도 분석을 위하여 각 시·도별 담당 공무원들에게 방문 조사 및 인터뷰와 더불어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하였음

- 제6장의 지도·단속 운영성과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어업지도·단속 성과분석은 크게 지도·단속 인식도 분석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포함한 지도·단속의 경제적 가치추정 분석으로 이루어졌음
- 먼저, 지도·단속 인식도 분석을 위하여 운영현황, 운영성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실제 지도·단속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시군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총 84부의 설문을 실시하여 그 중 결측치 2개를 제외한 82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다음으로, 어업지도·단속 운영성과와 관련된 직접효과 분석은 먼저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직접어획금액 보전효과와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 가치보존 효과 추정을 위해 Bioeconomic Model을 이용하였음. 또한, 간접효과는 불법어업 예방효과, 범칙어획물 양륙 및 유통차단효과, 어업인 의식전환 효과 등 비 시장가치(Non-market)에 대한 CV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조건부 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은 사람들이 어떤 공공재나 환경재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임. 즉, CVM은 간단히 설명해 개인 대 개인, 우편 혹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의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를 설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특별히 고안된 설문지는 비시장재 변화에 대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사람들을 가상의 상황에 결합시켜, 이런 조건하에서 응답자들은 비시장재의 가상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불의사(WTP)가 있는지를 대답하게 됨. 본 연구에서는 CVM 분석을 위하여 설문지를 설계하고 우편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이상치를 제외한 총 309개의 유효 표본을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제7장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투융자,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제8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제2장 여건변화 및 새로운 어업 지도·단속 수요 분석

제1절 지도·단속의 역사적 고찰

1. 불법어업 단속 및 조업지도 연혁²⁾

- 체계적인 불법어업의 단속은 수산청 발족 당시부터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전 해역에 투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연근해에 출어하는 어선들의 안전조업지도를 위하여 정부는 매년 「연근해 어선안전조업지도대책」을 수립·시달하는 한편, 성어기에는 주요 어장에 어업지도선을 전담 배치하여 월선조업방지, 조업분쟁 예방, 어로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였음
- 일본 및 중국 인접어장에서는 조업 중인 어선들을 대상으로 해상유류 및 식수공급과 더불어 긴급환자에게는 치료와 구급약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난어선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음
- 또한 일선수협으로 하여금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연근해어선의 간부선원에 대하여 직무기술교육과 안전조업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어선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불법어업 단속 및 조업지도 연혁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1960년대

- 우리나라는 1908년 어업법을 제정하여 수산업에 관한 근대적인 법 체계를 마련하였고, 동 법에서 명시한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중에서 발생하는 어업질서 문란 행위와 법규위반을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어업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음

2)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69~2007) 및 최정윤 외, 수산시책 50년(2007) 참조

- 1960년대는 수산청이 발족된 1966년 이전과 이후로 살펴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1966년 이전

- 해방이후 1953년에 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어업감독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제 56조(어업감독)부터 제60조까지 명시, 어업감독공무원은 행정권한을 가지고 불법어업 단속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수산업법의 위반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여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어업감독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1966 ~ 1968년

- 1966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법률 제1,752호)의 개정과 더불어 대통령령 제 2,427호에 의해 수산청 직제가 제정됨으로써 수산청이 발족하였고, 수산청에서는 어로지도와 보호, 시험선 및 어업지도선의 운영을 전담하였으며³⁾, 그 후 수산청은 한·일 어업협정의 수행 및 어업지도선 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운영을 위해 1966년 10월 20일 어업지도관실을 신설하여 어업지도선 운영과 어업질서의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음
- 1967년 9월 1일에는 어업지도선 운영체계가 정립되었으며, 근거 법령으로 「어업지도선승무원복무규정」(수산청 훈령 제41호)과 「어업지도선사무분장규정」(수산청 훈령 제42호) 등이 제정되었음
- 1968년 1월 27일에는 수산청 훈령 제49호로 「어업지도요강」을 제정하여 어업질서 확립, 수산자원 보호, 해양사고 미연방지, 구조기능 강화 등 출어선의 안전조업과 원활한 어업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였음

3) 1969년

가) 서해 어로보호지도

3) 水友會, 「現代韓國水産史」, 사단법인 수우회, 1987, p. 318.

- 조기성어기에 서해 어로한계선 근해로 집결, 출어하는 어선의 북한에 의한 피랍, 포격 등 제반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전조업을 위해 노력하였음
- 내무부(해양경찰대) 주관 하에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1969.3.15~6.30까지 경기도 부천군 덕적도에 어로보호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다) 동해 어로보호지도

- 명태성어기에 동해 어로한계선 근해로 집결, 출어하는 어선의 북한에 의한 피랍, 포격 등 제반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음
- 1969.11.1부터 1970.1.30까지 내무부 주관 하에 수산청, 강원도 수협, 해군이 협조하여 출어해역의 경비 강화 및 출어선 등록과 통제를 행하여 위반어선을 단속하였음

라) 불법어업 단속

- 수산관계 제반 법규위반어선에 대하여 본청 및 각 시·도의 어업감독 공무원을 파견, 어업지도선 21척을 동·서·남 전 해역에 걸쳐 운항 단속하였음
- 1969.1.1-6.30까지 804건을 검거하였고, 이 중 408건 기소, 227건 훈방, 169건을 처리하였음

<표 2-1> 1969년 불법어업 단속 및 처리사항

(1969년 6월말 현재)

구분	기저어업	잡수기	권현망	자망	안강망	기타	계
본청	64	4	-	-	-	14	82
부산	-	9	-	-	-	-	9
경기	-	-	-	86	1	157	244
강원	41	16	-	-	-	5	62
충남	9	1	-	8	3	2	23
전북	40	5	-	-	-	-	45
전남	78	2	5	30	-	17	132
경북	64	36	-	1	-	19	120
경남	22	14	-	14	1	19	70
제주	8	9	-	-	-	-	17
계	326	96	5	139	5	233	804

자료 :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수산청, 1996, p.145

나. 1970년대

1) 1970년

가) 서해 어로보호지도

-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내무부(해양경찰대) 주관 하에 1970.3.15부터 6.30까지 경기도 부천군 덕적도에 어로보호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나) 동해 어로보호지도

- 1970.11부터 1971.1까지 3개월에 걸쳐 관계부처(수산청, 강원도, 수협, 해군) 협조를 얻어 내무부 주관 하에 강원도 속초에 어로보호 본부를 설치하였음
- 어로한계선의 경비강화 및 출어선의 등록과 교육, 어로보호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반어선의 검거와 조난선 구조 등 안전조업 확보를 통한 수산물 생산증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였음

다) 불법어업 단속

-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산청 및 각 시·도 합동으로 불법어업자 단속을 시행하였음
- 1970.1.1-12.31 까지의 불법어업자 단속 상황을 보면, 1,112건 송치, 407건 미처리 등 총 1,519건의 검거 실적을 올렸음

2) 1971년

가) 동·서해 어로지도

- 동·서 어로한계선에 출어하는 근해 어선의 생산증대를 기하기 위해 정부는 1971. 5. 10 서해와 동해에 각각 성어기에 한하여 어로한계선 이북 일부 어장에서 어로를 허용토록 조치하였음
- 안전조업 확보를 위하여 서해의 어로한계선과 어로 허용선상에 민간부담으로 간이 부표를 설치하였고, 월선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표지의 설치에 대해 세부추진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였음

나) 불법어업 단속

- 수산청 어업지도선 4척과 각 시·도(시군포함) 어업지도선 39척 포함 총 43척으로 전국 해역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조 하에 어로금지구역 및 조업구역 위반어선과 소형기선저인망 무허가 잠수기어업 등을 중점 단속하여 연안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질서 유지에 노력을 기울였음
- 어기별 어한기를 이용한 계절적 불법어업이 연안 어장에서 행해지고 있어 관할 시·도지사 책임 하에 계속해서 연안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개정 수산업법의 내용에 대한 사전지도 교육을 강화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단조치 하였음
- 불법어업 단속 유공자 20명, 단체 유공기관 13개를 선정하여 포상 및 시상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불법어업의 유형별 현황 분석 및 근본적인 불법어업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해 산학합동으로 전국적인 조사사업을 실시하였음

다) 한·일 어업 공동 규제수역 어업지도

- 어업지도선은 전 년도부터 계속해서 공동규제 수역 및 그 주변해역에 출동하여 양국 어선의 협정사항 위반에 대한 사전 지도·단속과 조업분쟁 방지 등 우리나라 어선단의 안전조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음
- 특히, 대마도 주변 한·일 양국 어업 전관수역 교차 해역에서의 어선단 지도에 주력하였으며, 1970년 7월 31일 현재 양국 간 어업지도선에 의한 제휴 순시 4회, 시찰승선 3회를 실시하였음

3) 1972년

가) 선박안전조업규정 제정

- 동·서해 어로한계선 근해 출어선의 안전조업 확보와 생산증대를 기하기 위해 1972.4.17 다원화된 각종 규정을 현실적으로 통·폐합하여 4부 장관(내무, 국방, 농림, 교통) 합동부령으로 선박안전조업 규정을 제정·공포하였음
- 그 주요 내용은 특정해역 설정, 어로보호본부 운영, 어로 한계선 일부 조정, 주간 어로 허용해역 설정, 어선단 편성, 교육 강화 등임

나) 연근해 어업지도·단속

- 불법어업 체계적 단속을 위해서 지역별·어기별 우범해역과 동 어획물 양륙 지향의 중점단속과, 시·도별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및 잠수기어업 잠재건수를 감안한 시·도별·어업지도선별 단속책임 건수를 할당하여 시·도지사 책임 하에 완전 근절토록 불법어업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4) 1977년

가) 안전조업 지도강화

- 국무총리 훈령 제138호(1976.12.30)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앙 및 지방 어선 안전조업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협의회의 운영을 더욱 강화하였음
-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어선의 안전조업과 해양사고 미연방지에 노력하였으나, 1974년부터 실시한 승선지도원 운영은 우수 승선지도원의 확보가 어렵고 승선지도원 지도능력 부족 및 지휘의 한계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5) 1978년

가) 어선 안전점검강화

-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를 위해 수산청 및 연안 시·도에 어선 안전조업 지도본부 설치 및 전국 1,665개의 어선신고소를 설치·운영하였음
- 동·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북한 피랍 방지를 위하여 동·서해 어로보호본부를 설치하여 명태, 오징어 및 홍어 성어기에 특별지도 사업을 실시하였음
- 동중국해에서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등 13개 주요 항포구에 안전조업 지도소를 잠정기구로 설치하여, 중국에 의한 우리어선의 피랍방지 지도를 담당케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음

나) 불법어업 단속

-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질적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 무허가 잠수기 및 무허가 형망 등을 근절하기 위해 1978년도에는 획기적인 불법어업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음
- 불법어업 교육지도기간(1978.1.1-3.31)을 설정 및 전국 불법어업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여(1978.4.1-5.30) 어업지도선 37척, 단속요원 268명을 동원하여 총 286건을 단속하였음
- 어촌계 단위로 불법어업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불법어업 감시망 구성 및 운영으로 불법어업이 완전 추방된 어촌계는 시범 어촌으로 지정하여 각종 행정지원을 우선하도록 하였음

<표 2-2> 1970년대 불법어업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1970	1972	1975	1976	1977	1978
계	1,779	2,536	2,788	3,100	2,817	2,311
대형기저	68	46	44	36	30	19
중형기저	23	17	21	18	32	9
소형기저	765	1,052	1,176	1,496	1,285	1,110
기선형저인망		502	489	395	308	206
잠수기	199	212	1515	171	93	43
선인망	30	36	54	47	26	21
유자망	153	139	164	175	283	98
기타	541	532	689	762	760	806

자료 :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수산청, 1979, p.169

다. 1980년대

-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 및 복지어촌 건설을 위해 불법어업을 사회정화 차원에서 전국 수협, 어촌계를 중심으로 1980년대에 들어 불법어업에 대한 자체 추방운동을 전개하였음
 - 봄철 치어,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적에 앞서 1개월간을 특별 지도교육기간으로 선정
 - 담화문, 표어, 포스터, 현수막 등을 일선 어촌계 및 주요 항포구에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 강화
 - 매년 4~5월에는 전국 어촌계장 회의를 각 시·도의 주요 항구 12개소를 순회하여 일선 수협 임직원, 어촌계장, 시·도, 시·군 수산공직자에 대하여 단속 교육 실시
 - 홍보영화, 슬라이드 등 시청각 교육을 통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의지를 높임

1) 1980년

가) 출입항 통제강화

-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통제기구로서 인천, 군산 등 13개 주요 항·포구에 안전조업지도소를 설치·운영하였고, 동·서해 어로보호본부를 설치하여 각 어종별 성어기에 특별지도사업을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기상 악화 시 선박 톤수별 어선통제기준을 마련·시행 하였으며, 1,474개 출입항 신고소 119개소에 수협요원 153명을 배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

나) 선단조업강화

- 출어선의 월선 및 피랍방지와 조난 시 상호구조를 위하여 동·서해 특정해역, 대화퇴, 동지나 해역 및 연안 3마일 외해를 선단조업 의무 해역으로 지정하여 동일 업종, 동일 성능의 어선 2척 이상을 선단으로 편성하고, 선단조업을 이 행한 어선에 대하여는 당해 항차 위판수수료 1%를 감하여 선단조업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1977년부터 실시하고, 어장별로 각 지도소에 통제를 받게 하였음

다) 선원안전교육 강화

- 전국 수협에서 차출된 교관요원이 선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교육을 시키는 한편, 기타 특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원에 대하여 선장이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을 실시하였음

2) 1981년

가) 자진 신고기간 설정

- 만성적인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일변도의 방법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어업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였음
 - 전국에서 자진 신고한 1,339건 중 91%에 해당하는 995건을 8~9월 전업기간 중에 전업을 유도하였음

나) 어업통신 시설 확장

- 전국 주요 어항에는 48개 어업무선국이 있으며, 수협중앙회 및 각도 지부에 TTY (teletypewriter, 전신 타자기)를 설치하고 업무를 분담하였음
- 그러나 시설장비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1981년도에는 국고보조금 294백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장비 61대를 보강하고, 전파수신 장애지역 어업무선국 1개소를 이설하였으며, 10톤 미만 동력어선 650척에 소형 무선기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다) 어업지도선 건조

-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은 총 47척으로 그 수가 부족하며 선령이 높고 선체가 작아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총 14억원의 예산으로 150톤급 어업지도선 1척과 50톤급 4척의 신조를 추진하였음

3) 1982년

가) 안전조업체제 강화

-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선박은 종전 2척 이상에서 3척 이상으로 선단편성을 강화하고, 조업자제 해역 및 일반해역은 2척 이상으로 편성토록 하였음

- 위치보고는 특정해역은 종전 1일 4회에서 1일 3회로, 조업자제해역은 1일 2회, 일반해역은 1일 1회로 조정하였고, 위치보고 미 이행 어선에 대하여는 어업무선국장의 추적 확인을 제도화하였으며, 접경해역인 인천, 속초에 수협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어선협회 검사요원 각 2명을 파견, 안전점검 업무를 강화하였음

나) 성어기 어장지도

- 성어기에는 동·서해에 각 3척씩 현지어장 지도를 수행하였으며, 수협 승선지도원을 어선단에 승선시켜 안전조업을 유도하고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출어선의 동태를 파악하는 한편, 위치 파악업무를 강화하여 월선 우려가 있는 어선에 대하여는 즉시 안전해역으로 이동 조업하도록 함

다) 어업지도선 보강

- 1982년에는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100톤급 어업지도선 1척의 건조를 추진하였음

4) 1983년

가) 어업인 교육 강화

- 어업인 교육은 1986년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올림픽개최를 대비한 안보강화가 중심이 되어 각종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음

나) 안전조업체제 강화

- 안전조업지도를 위하여 복지모선(1,340톤)과 오대산호(1,110톤)가 배치되었고, 추가로 4척을 배치해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하였으며, 해군, 해경, 수협 어업무선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어선의 조업동향을 파악하였음
- 4부 합동부령인 선박안전조업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조업해역을 특정해역, 조업자제 해역, 일반해역으로 구분하고,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선단을 종전 2척 이상에서 3~5척으로 강화하여 접경해역에 수협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야간 근무자를 보강하였음

5) 1984년

가) 해양사고현황

- 어장이 원격화 됨에 따라 사고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방지대책으로 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 간 연평균 사고발생 건수는 352척이며, 인명피해는 178명으로 나타났음

나)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기능 강화

- 어선 월선·피랍 및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해 전국의 출입항신고기관에서 출어선에 대한 사전 확인점검 등 출입항 통제를 강화하였음
- 특정해역 및 대화퇴 해역은 3척 이상, 동지나 해역 및 일반해역은 2척 이상으로 반드시 선단을 편성해 조업하도록 하고, 접적해역에는 수협 지도원을 승선시켜 현장 조업 지도를 강화하는 등 선단조업을 강화하였음

6) 1986년

가) 어업인 교육 강화

- 안전조업 교육은 안보교육에 중점을 두어 정기교육으로는 연근해 어선의 선주 및 기관장, 통신장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불법어업 추방' 과목을 추가하였으며, 특별교육으로 안보교육 및 안전조업에 관한 중점교육을 실시하였음

나) 안전조업 지도강화

- 불법어업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법어업 용의자 명단을 작성하여 수협과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에 배포해 면세유류 공급, 출입항신고 등에 위법행위 유무를 확인토록 하는 등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불법어업자가 합법어업으로 전업한 자에 대해 영어자금을 우선 지원하였음

7) 1987년

가) 안전조업지도

- 동해, 서해의 각 어종의 성어기에 500톤급 이상 대형 어업지도선 1~2척을 공동 배치하고, 서일본 수역에는 500톤급 이하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분쟁 예방 및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복지모선을 원해어장에 출동시켜 조업어선에 선용품을 공급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음
- 기업형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소형기저, 기선형망, 잠수기, 낭장망, 스쿠버다이빙 등에 대해 지역책임 담당제, 분기별 유관기관 합동단속, 출입항 단속강화, 불법어획물 유통경로 조사 등의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8) 1988년

- 1988년의 단속실적은 2,814건으로 해역별로는 남해안이 2,003건으로 71.2%를 차지하였으며, 동해 및 서해는 881건으로 28.8%로 나타났고, 어업별로는 소형기선저인망과 기선형망이 1,427건으로 50.7%를 차지하였음
 -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어업질서 확립 유도과 영세 불법어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합법어업으로 전업을 유도, 불법어업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고 불법어선의 출입항 통제 및 단속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였음

9) 1989년

가) 어업질서 확립

-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소형선박 조선소현장 정기점검 및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배제하였고, 매월 10일 이상 도 단위 합동단속 및 매 2개월 마다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소형기선저인망, 기선형망과 같은 상습적인 불법어업을 우선적으로 단속하였음

<표 2-3> 1980년대 불법어업 단속실적

(단위 : 척)

구분	'84	'85	'86	'87	'88
계	3,033	2,567	2,985	2,399	2,814
대형기저	28	40	27	23	39
중형기저	27	40	42	46	81
소형기저	1,539	1,186	1,549	1,122	1,193
기선형망	451	226	276	297	234
잠수기	146	93	103	86	113
선인망	16	34	17	1	30
유자망	191	91	120	92	109
기타	635	857	851	732	1,015

자료 :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수산청, 1988, p.72

라. 1990년대

1) 1990년

- 효율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전국 연안 시·군의 지도·단속 전담계 신설을 적극 추진하였고 소형쾌속 어업지도선을 건조하여 전 연안 시·군에 배치, 활용토록 하고, 노후되었거나 부족한 시·도 어업지도선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도·단속 기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수산업법에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토록 하였음
- 또한, 원해 조업어선의 통신 소통난 해소를 위해 어업무선국을 운영하였으며, 전파 송수신 거리가 양호한 초단파 무전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데 역점을 두어 시행하였음

2) 1991년

- 연근해어업은 '80년대 이후 생산성 둔화 및 일부 연근해 자원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안 어장 축소와 어장환경의 변화 외에도 일부 어업인에 의한 불법어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었음

-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어업질서 확립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였고, 특히 어패류의 산란, 성육기인 5월과 10월을 일제 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음
- 관계기관(검찰, 해경)의 협조 하에 소형기선저인망, 중형트롤과 같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허가 불법어업을 우선적으로 단속하였음
 - '91년도 단속실적은 전년보다 242건이 감소한 2,620건으로, 어업별로는 기선저인망이 1,233건으로 47.1%를 차지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무허가어업이 1,445건, 55.2%로 나타났음

3) 1992년

- 1992년도 단속실적은 전년보다 268건이 증가한 2,888건으로 어업별로는 소형기선저인망이 1,129건으로 39.1%를 차지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무허가어업이 1,407건으로 48.7%로 나타났음
- 지도·단속 기능 및 보완장비를 위하여 수산청에서는 500톤급 및 1,500톤급 어업지도선 2척을 건조하였고, 시·도에 30~80톤급 3척을 건조·확보하여 단속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음

4) 1993년

-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대 어업인 홍보용 담화문 6,200부, 표어, 포스터, 리플렛 배포 및 T·V·라디오 등을 통한 광범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음
- 전국 시·도 수산관계관과 어업지도선 선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993년도 어업질서 확립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사항을 분석·발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하였음
 - 인근 시·도 간 공조체제를 구축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시·도 경계수역 및 불법어업이 심한 항포구 집중단속
 - 단속공무원의 교차승선 단속 및 불법어업자에 대한 정보교환과 인근 시·도 간 단속기간 일치 등

5) 1994년

- 불법어업자 친목단체와 불법어구 전문제작자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단속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어업 다발지역인 시·도 경계수역은 인접 시·도 간 합동단속반 편성 및 단속공무원 상호 교차 승선시켜 단속하는 등 인접 시·도 간 공조체제를 갖추어 해역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음
- 수협에서는 불법어업자 조합원 제명, 면세유류 및 수산기자재 공급중지, 영어자금 회수 및 대출 중지 등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으로는나 경제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함

6) 1995년

- 1995.6.2 제2회 풍요로운 바다 가꾸기 대회를 개최, 대통령의 '중국, 일본 주변 수역을 포함한 국내외의 불법어업을 하루빨리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어느 해보다도 강력한 단속을 함
- 1995년 단속실적은 3,595건으로 1994년에 비해 409건, 10.2% 감소하여 전 어업인들이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의지와 지도교육 등으로 인해 불법어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위반어선 중 상습적 기업형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어업이 전국적으로 위축되었음

6) 1996년

-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발족되어 어느 해보다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한 결과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 등 3,128건을 단속하였음. 이는 1995년도에 비해 467건, 13.0%가 감소한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근절 의지와 지도교육 등으로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진 것으로 분석됨

- 불법어구를 자진반납하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불법어업자에게는 척당 1~3천만원의 전업자금을 지원하여 생계형 불법어선 962척을 합법어업으로 전업 조치하였음
-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무허가 또는 금지어업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불법어업자 양산 방지를 위해 경미한 위반의 경우는 벌금형에서 과태료, 과징금을 전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음

7) 1997년

-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한 결과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 등 3,443건을 단속하였음
- UN해양법협약 발효 및 인접국 EEZ 선포에 따른 지도·단속 해역이 확대됨으로서 우리나라 어선의 보호와 인접국 어선의 우리수역 침범조업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항해 통신장비를 갖춘 500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건조하여 총 20척의 국가어업지도선을 보유하였으며, 이들 국가어업지도선의 전 해상상시 배치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였음

8) 1998년

-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청, 시·도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어업이 심한 해역과 우범 항·포구를 집중 단속하여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 등 3,157건을 단속하였음
- 상습적 기업형 위반어선에 대한 검찰 구속 조치, 수협이 경제적 제재조치, 합법어업으로의 전업지원 등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불법어업추방 캠페인,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규제 완화조치 등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불법어업이 전국적으로 감소하였음

9) 1999년

- 1999.1.22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되고, 한·중·일 3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우리 어선의 보호와 주변국 어선의 우리수역 침범조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지도·단속 장비 보강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2-4> 1990년대 불법어업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계	2,620	2,888	3,797	4,004	3,595	3,128	3,443	3,157	3,277
대형기저	106	101	116	803	78	92	82	52	38
중형기저		129	197	148	162	105	95	59	91
소형기저	1,073	1,129	1,568	1,608	1,595	1,466	1,464	1,396	1,408
기선형망	124	152	132	168	172	154	143	95	72
유자망	92	121	149	172	175	170	168	-	-
기타	1,164	1,191	1,536	1,746	1,342	1,141	1,491	1,555	1,668

자료 :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해양수산부, 1996, p.79 및 1999, p.81

마. 2000년대

1) 2000년

- 불법어업에 의한 어획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다수의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질서 확립대책'을 수립하였음
- 상하반기 지도·단속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질서 확립대책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어업인의 의식개혁을 위해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는 한편, 어패류 산란기인 5월과 성육기인 10월에는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해양질서 확립에 주력하였음
- 또한, 우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업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중국어선이 주로 조업하고 있는 남·서해 해상에 국가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였으며, 영해 및 서해 특정금지구역에 침범한 중국어선 62척을 나포하여 선장 등 책임자를 구속 조치하고 처당 1천~3천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2) 2002년

- 연근해에 출어하는 어선들의 안전조업지도를 위하여 매년 초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지도대책」을 수립·시달하는 한편, 성어기별 주요 어장에 국가어업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여 어로 보호 및 조업분쟁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음
- 일선 수협으로 하여금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연근해어선의 간부선원에 대하여 직무기술 교육과 안전조업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4시간씩 실시토록 하여 어선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였음
- 전국 주요 항포구 39개소의 선박출입항 신고소(통제소 및 합동신고소)에 배치된 어선안전 점검요원 60명을 통하여 출항어선에 대한 항해, 통신장비 점검 및 선원수첩 소지, 어선원 안전조업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게 함으로써 출어선에 대한 월선, 피랍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였음

3) 2003년

- 정부에서는 어업자원의 남획 및 어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3부 장관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강력한 어업질서 확립 의지를 표명하였음
 - 불법어업 합동단속체제를 구축, 매월 2회에 걸쳐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였음
-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무기한 지도·단속체제 구축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에 불법어업 근절 종합대책반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 불법어업의 주 발생 항포구(부산 다대포항, 경남 삼천포항, 전남 녹동항, 전북 군산항)에 해상검문을 위한 국가어업지도선 상시 배치
 - 합법어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구 구입비 등 전업자금 지원
- 어업질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음

4) 2004년

- 관행화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문제는 어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완전 추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04.12.31 법률 제7312호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음
 - '04년 불법어업은 총 3,673건으로 이 중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선 904건, 중형기저 40건, 조업구역 등을 위반한 대형기저 64건, 기선형망 243건 등임
- 불법어업 적발어선은 위반사항별로 사법처벌과 행정처벌을 병행하여 면세유류 및 수산기자재 공급중지, 영어자금회수와 대출중지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였음
- 또한 우리 EEZ 어업자원보호 및 관리를 위해 과도수역 및 서해 특정금지구역에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배치하여 외국어선에 대한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였음

5) 2005년

- 2005년 6월부터는 허가어선의 유형별·해역별 불법어업 근절방안을 수립하여 허가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추진해온 결과 허가어선 단속건수가 2004년까지는 연간 2천여 척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4천여 척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은 2003년 200척을 시작으로, 2004년도에 108척, 2005년도에 92척을 추가 지정하여 '05년 현재 400척으로 증가되었음

6) 2006년

- 2004.12.31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2005~2006년까지 2개년 간 총 826억원을 투입하여 2,467척을 매입·정리함으로써 지난 50년간 이어져왔던 소형기선저인망을 근절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어촌사회 일각에서는 수산자원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더 이상 불법어업은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됨으로서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근절 정책참여가 확대되었음

7) 2007년

-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어선 일부를 개조하여 이삼백 만원 정도의 어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언제든지 불법조업이 가능하므로, 이들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육·해상 집중단속과 함께 어업인들의 자율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2007년 8월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였음
- 불법어선 건조 및 어구제작업체들에 대한 육상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함정, 시·도 어업지도선과 공조하여 초기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약 50년 넘게 수산부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2002년 1,258건에서 2006년 61건, 2007년 43건으로 불법어업 단속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음

8) 2008년

- 합법어선의 불법 조업행위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어업인 자율의 어업질서 확립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비 증가로 '08년 출어척수(조업척수×조업일수)는 980,174척으로 2007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형 불법어업은 증가 추세를 보임
- ‘신고 포상금제도’, ‘명예 감시선 운영’ 등 자율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포상금 지급 및 명예감시선 신고 건수는 1건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음

<표 2-5> 2000년대 불법어업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3,161	3,291	3,102	2,067	3,673	4,054	3,015	3,773	4,449
소형기저	1,179	1,047	1,258	888	904	201	61	43	18
중형기저	45	58	31	37	40	23	30	7	41
대형기저	43	63	39	15	64	70	48	113	60
기선형망	78	105	61	39	243	192	194	203	136
잠수기	40	39	23	27	80	98	73	67	120
기타	1,776	2,178	1,690	1,061	2,342	3,470	2,609	3,341	4,074

자료 :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해양수산부, 2003, p78

수산업 연차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08, P.92

바. 소결

- 이상으로 불법어업 단속 및 조업지도의 연혁을 살펴본 결과, 1960년대의 주요 정책으로는 서해 및 동해 어로 보호지도 활동 및 불법 어업 단속이 있었고, 1970년대에는 선박 안전조업 규정 제정과 승선지도원 운영 등이 있었음
- 1980년대에는 전국 수협과 어촌계를 중심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자체 추방운동이 전개되었고, 불법어업 자진 신고기간이 설정되었으며,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배제 및 전국 일제 단속 및 합동 단속이 실시되었음
- 1990년대에는 1991년부터 어업질서 확립대책이 수립되었고,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 집중 단속이 실시되었으며,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불법어업자들에 대하여 전업을 지원하였음
- 2000년에는 해양질서 확립대책이 수립되었고, 행정자치부·법무부·해양수산부 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어업질서 확립 의지를 표명하였음. 2004년에는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 하였고, 2007년에는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음

<표 2-6> 불법어업 단속 및 조업지도의 연혁

연 도	내 용
1960년대	- 서해 및 동해 어로 보호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 실시
1970년대	- 선박 안전조업 규정 제정(1972.4.17) - 승선지도원 운영(1974~)
1980년대	- 전국 수협, 어촌계를 중심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자체추방운동 전개 - 불법어업 자진 신고기간 설정(1981~) -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배제 및 전국 일제단속, 합동단속 실시
1990년대	- 어업질서 확립대책 수립(1991~) -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 집중 단속 실시 -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불법어업자 전업 지원 조치
2000년대	- 해양질서확립대책 수립(2000) - 행정자치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3부 장관 합동담화문 발표 등 강력한 어업질서 확립 의지 표명(2003) -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2004.12.31) -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2007. 8)

2. 어업지도사무소 연혁4)

- 1966년에는 정부조직법(법률 제1752호)의 개정 공포와 대통령령 제2427호에 의해 수산청이 발족하여 지도과가 신설되어 어업지도선 운영을 전담하였으며, 한·일 어업협정 수행사항 및 어업지도선 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운영을 위해 어업지도관실이 신설되어 어업지도선 운영과 어업질서의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업무를 수행하였음
- 1967년에는 「어업지도선 승무원 복무규정」(수산청 훈령 제41호)과 「어업지도선 사무분장규정」(수산청 훈령 제42호)이 제정되면서 어업지도선 운영체제가 정착되었음
- 1968년에는 어업질서의 확립, 수산자원의 보호, 해양사고의 미연방지, 해난사고의 구조기능 강화 등 출어선의 안전조업과 원활한 어업지도를 위하여 「어업지도요강」(수산청 훈령 제49호)을 제정하였음
 - 어업지도요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어업지도 업무를 해상어업 단속, 공동규제 조치사항 지도, 어로보호 지도, 육상어업 지도, 제휴순시 및 시찰순선 등으로 구분하고,
 - 둘째, 수산청 소속 감독공무원은 전국일원을, 시·도 및 기타 관서 소속 감독공무원은 관할 행정구역을 담당 구역으로 하고,
 - 셋째, 수산청 소속 어업지도선은 주로 한·일 어업 공동규제수역에 대한 어업지도를, 시·도 소속 어업지도선은 주로 연안 수역에 대한 어업지도를 담당하게 하며,
 - 넷째, 어업지도에 임하는 감독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업질서 확립에 진력하도록 조치하였음
- 1970년에는 어업지도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그 당시까지 운영하던 어업지도선의 일부를 시·도 또는 해양경찰대로 이관하고 어업지도선 운항 및 어업단속 업무는 생산국 생산과에서 직접 담당하였으며, 1978년에는 어업지도선 운영 및 승무원 복무 감독을 위해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을 부산에 상주시켜 어업지도선 운항에 필요한 유류 및 선수품 공급과 승무원 급여를 담당하게 하였음

4)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지도·단속 업무편람(2006.12) 참조

- 1991년에는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어업지도선 예산관리 및 집행, 어업지도선의 정비, 유류보급, 선수품 등의 수급,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지도선 승무원 복무 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하였고, 1993.02.10에는 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996년에는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통합된 해양수산부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고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내 관리과, 운용과, 통신과 3개과 신설 직제 변경되었음. 2004.02.02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가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로 분할(해양수산부 훈령 제267호)되었음

<표 2-7> 어업지도사무소 연혁

연도	내용
1966.02.28	정부조직법(법률 제1752호) 개정·공포, 대통령령 제2427호에 의해 수산청 발족
1966.10.20	어업지도관실 신설, 어업지도선 운영과 어업질서의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 업무 수행
1967.09.01	「어업지도선 승무원 복무규정」(수산청 훈령 제41호), 「어업지도선 사무분장규정」(수산청 훈령 제42호) 제정
1968.01.27	「어업지도요강」(수산청 훈령 제49호) 제정
1970.03.13	어업지도관실이 폐지, 어업지도선 운항 및 어업단속 업무 생산국 생산과 담당
1991.08.13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신설
1996.08.08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내 관리과, 운용과, 통신과 3개과 신설 직제 변경
2004.02.02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로 분할(해양수산부 훈령 제267호)

3. 국가어업지도선 연혁

- 1966년 수산청 발족 이전에 한국 해역의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한 어업지도선은 1928.2 진수한 조풍호(125톤급) 1척에 불과하였음
- 1966년 수산청은 150톤급 3척, 300톤급 1척을 건조한 것을 비롯하여, 1967년 20톤급 1척, 80톤급 5척, 150톤급 2척, 300톤급 1척을 건조하여 운항하였으며, 이 중 소형어업 지도선은 시·도로 이관되었음
- 새로이 개척된 동중국해의 어장에 출어하는 대형안강망어선과 대형기선저인망어선 등의 어로보호를 위하여 1970년 3월, 150톤급 1척, 300톤급 2척은 해양경찰대로 이관되었음

- 연안어장의 어업자원 감소로 인해 출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1979년에 500톤급 2척, 1980년에 1,340톤급 복지모선 2척을 건조하여 동중국해와 대화퇴어장에 출어하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조난어선구조 업무를 수행하였음

- 1982년에 95톤급 1척 매입, 1985년에 115톤급 1척 건조 이후 1995년에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세력은 45톤급 1척, 95톤급 1척, 115톤급 1척, 300톤급 3척, 400톤급 2척, 500톤급 5척, 1200톤급 3척, 1300톤급 2척이었던 것을 1996년에 500톤급 1척, 1997년에 500톤급 1척을 건조하였음

- 2001년 감척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감척된 근해트롤어선 5척을 인수하여 어업지도선으로 개조하였음

- 새로운 한·중, 한·일 어업협정 수행 및 우리어선 어로보호를 위한 관리해역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500톤급 첨단 어업지도선을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건조하여 2009년 10월 현재까지 국가어업지도선은 100톤급 2척, 200톤급 5척, 300톤급 3척, 400톤급 2척, 500톤급 16척, 1,000톤급 5척, 2,000톤급 1척으로 총 34척의 어업지도선이 관리·운영되고 있음

<표 2-8> 국가어업지도선의 연혁

진수연월	톤수(급)	척수	변동사항
1928.02	125	1	1969년 전북도 이관, 1978년 폐선
1966.02	150	3	1994년 매각 1970년 해양경찰대 이관 1척 1969년 통영수산전문대학 이관 1척
1966.06	300	1	1970년 해양경찰대 이관
1967.04	80	5	1967년 제주도 이관 1척, 1985년 용도폐지 1968년 경남도 이관 1척, 1983년 폐선 1968년 전남도 이관 1척, 1983년 폐선 1968년 충남도 이관 1척, 1983년 폐선 1968년 경북도 이관 1척, 1984년 폐선
1967.05	300	1	1994년 매각
	150	2	1994년 매각 1척 1980년 전남도 이관, 1986년 폐선
1967.08	20	1	1970년 전남도 이관, 1978년 폐선
1974.06	45	1	FP31호 취항(무궁화 10호)
1979.06	500	1	FP51호 취항(무궁화 3호)
1979.11	500	1	FP52호 취항(무궁화 5호)
1980.04	1,340	1	FP901호 취항(무궁화 1호)
1980.08	1,340	1	FP902호 취항(무궁화 2호)
1982.12	95	1	부산211호 인수(무궁화 11호)
1985.12	115	1	무궁화9호 매입 개조(무궁화 9호)
1988.12	403	1	부산 212호 신조 취항(무궁화 12호)
1989.08	403	1	부산 213호 신조 취항(무궁화 13호)
1990.03	500	1	부산 204호 신조 취항(무궁화 4호)
1990.12	500	1	무궁화 214호 신조 취항(무궁화 14호)
1991.12	1,208	1	무궁화 215호 신조 취항(무궁화 15호)
1992.11	500	1	무궁화 216호 신조 취항(무궁화 16호)
	1,208	1	무궁화 217호 신조 취항(무궁화 17호)
1994.11	311	3	무궁화 206,207,208호 신조 취항(무궁화 6, 7, 8호)
1996.11	507	1	무궁화 219호 신조 취항(무궁화 19호)
1999.06	499	1	무궁화 210호 대체 신조(무궁화 10호)
2001.06	180	3	무궁화 221,222,223호 트롤어선 개조(무궁화 21, 22, 23호)
2003.06	180	2	무궁화 224,225호 트롤어선 개조(무궁화 24, 25호)
2003.09	499	3	무궁화 226,227,228호 신조 취항(무궁화 26, 27, 28호)
2004.02	499	2	무궁화 229,230호 신조 취항(무궁화 29, 30호)
2006.02	499	2	무궁화 231,232호 신조 취항(무궁화 31, 32호)
2006.10	499	1	무궁화 233호 신조 취항(무궁화 33호)
2009.02	2,000	1	탐구1호 이관(국립수산과학원)
2009.05	500	1	무궁화 14호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서해어업지도사무소로 이관

자료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업무편람 2006, p. 6 인용 및 수정

제2절 국내·외 여건변화

1. 국내여건

- 새로운 소득창출이 미흡하고 열악한 교육 및 의료 인프라, 문화생활 공간 미흡으로 어업인의 어촌이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증가하는 전체 인구에 대비하여 어가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00년 약 251천명에서 2005년 약 221천명, 2008년 약 192천명으로 감소
- 현재 어가인구 감소율은 농가 인구 감소율을 능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어촌지역의 노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어가인구 중 노령인구인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00년 6.6%에서 '05년 29.1%, '08년 35.7%로 크게 증가
- 이처럼 어업인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청·장년층의 수산업 기피 현상으로 어촌지역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의 열악한 의료 및 교육 등의 인프라 개선, 문화생활 공간 확충 등이 필요함

<표 2-9> 어가인구 및 노령인구 비율

구분	어가인구	65세이상 어가인구	노령인구 비율(%)
1980	725,314	18,331	2.5
1985	602,237	20,123	3.3
1990	496,089	19,138	3.9
1995	347,210	19,380	5.6
2000	251,349	16,631	6.6
2005	221,132	64,306	29.1
2006	211,610	66,462	31.4
2007	201,512	68,840	34.2
2008	192,341	68,641	35.7

자료 : 통계청(<http://kosis.kr>)

-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추이를 보면 1990년 3,192천톤에서 2000년 2,514천톤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8년 3,363천톤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변화하였음

- 과거 해양환경오염 및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인한 고갈 등으로 의해 수산물 생산량은 1995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수산자원회복, 어선감척, 자율관리어업 등의 지속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추진한 결과 2005년 이후 수산자원이 점진적 회복 추세를 보임에 따라 수산물생산량 역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변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수산업 생산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업종별 어업생산량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수산업 생산량 중에서 원양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8.7%에서 2000년 25.9%, 2008년 19.8%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 해면어업 역시 1990년 46.0%에서 2008년 38.2%로 크게 감소하였음
- 반면, 천해양식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1990년 24.2%로 일반 해면어업 생산량에 비해 약 절반가량에 불과했으나, 2008년 41.0%로 일반 해면어업 생산량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수산자원 회복 및 지속적인 이용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 어업질서 확립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함

<표 2-10> 어업별 어업생산량

(단위 : M/T,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8
합계	3,198,234 (100)	3,348,216 (100)	2,514,225 (100)	2,714,050 (100)	3,363,268 (100)
원양어업	919,312 (28.7)	897,324 (26.8)	651,267 (25.9)	552,096 (20.3)	666,182 (19.8)
일반해면어업	1,471,810 (46.0)	1,425,213 (42.6)	1,189,000 (47.3)	1,097,041 (40.4)	1,285,808 (38.2)
천해양식어업	772,731 (24.2)	996,451 (29.8)	653,373 (26.0)	1,041,074 (38.4)	1,382,098 (41.1)
내수면어업	34,381 (1.1)	29,228 (0.9)	20,585 (0.8)	23,839 (0.9)	29,180 (0.9)

주 : ()내는 합계에 대한 업종별 백분율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생산통계시스템(<http://fs.fips.go.kr>)

- 그리고 연근해 어선 감척, 바다목장 조성, 종묘방류 및 인공 어초 시설,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의 사업이 중점 추진 중에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나 어업분쟁 및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46개 업종 7만여 척의 어선이 한정된 어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
- 불법어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지난 50여 년 간 지속되어온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로, 이 업종에 대한 근절 노력을 통해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정리를 희망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정부 재정을 투자하여 매입·정리, 신청어선에 대해 잔존선가 및 폐업지원금 지급
 -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4.12.31) 및 불법어선 매입·정리(2005~2006) : 2,467척(826억원)
 -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재진입 방지 및 허가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어업인의 불법어업 실행의지를 크게 약화시킴
- 불법어업 근절정책에 어업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어촌사회도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업계의 자구노력과 자율감시 기능이 확대되는 등 어촌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근절 의지가 크게 확산
 - 또한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으로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어업관리 확대
- 이처럼 자원관리 및 수산업 생산구조의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은 21세기 수산업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의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국외여건

가. EEZ수역 어업지도·단속의 여건변화

- UN해양법협약 발효(1996), 한·일(1999), 한·중(2001)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본격적인 EEZ체제가 정착하여 국내외 어선 불법어업 단속 및 EEZ 관리업무가 급증하였음
 - 조업어장이 축소된 반면, 우리연안에서 집단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대폭 감소하였음(협정이전 12,000여척 → '05 입어합의 2,100척)
- 우리나라 수역 침범 중국어선에 대해서 나포, 처벌 등 강경 대응과 외교경로를 통한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수역 침범 방지 노력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한·중 간 지속적인 단속과 외교노력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양국 간 어업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 ('03) 240건 → ('05) 584건 → ('08) 432건
 - 양국 간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에 성의 있는 조치 요구 등 근본대책 추구
- 한·중·일 3국 모두 자국 EEZ내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매년 상호협상을 통해 상대국 EEZ에서 조업하고 있음
 - 우리 어선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일본수역 내 입어를 선호하는 반면, 중국 어선은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여 불법어업 자행

나. FAO/IUU 근절을 위한 각국 행동계획 요구

- IUU어업 개념의 등장은 IUU어업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자원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어족자원의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가 불법(illegal) 어업뿐 아니라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도 불법어업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비보고·비규제 어업도 불법어업과 마찬가지로 타도(combat)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과 관련하여 WSSD(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 2002년 9월에는 IUU 및 Overcapacity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거와 관련하여 이를 이행하자는 주장이 채택된 바 있으며, WTO/DDA 제4차 규범회의(10.16-10.18)에서도 미국, 칠레,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들은 WSSD 이행계획

중 IUU어업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WTO협정 연계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며, 호주는 WTO규범으로 공해상 IUU어업규제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차기회의(02.11)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논의도 이루어졌음

<표 2-11> IUU국제행동계획 채택 역사(略史)

시 기	주요 내용	비 고
1996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상임위원회는 CCAMLR 수역에서 이빨고기(Tooth Fish)의 어획쿼타가 13,000톤이었으나 100,000톤이상이 불법어획되었다고 보고 ⇒ 지나친 자원남획 우려	CCAMLR
1997.10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상임위원회의 의제에서 IUU어업이란 용어 처음으로 등장	CCAMLR
1999.02	제23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IUU어업이 어업자원을 고갈시켜 어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개발 필요성 제기	FAO
1999.03	FAO 각료회의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만들 것을 선언	FAO
2000.05	호주정부와 FAO의 주도로 국제행동계획 예비초안 채택을 위한 전문가 회의(Expert Consultation)를 개최	호주/시드니
2000.10	기술협의회(Technical Consultation) 개최, IUU어업 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예비초안 검토	이탈리아/로마
2001.02	IUU어업 대처 국제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2차 기술협의회가 개최	이탈리아/로마
2001.2.26~3.2	제24차 FAO 수산위원회에서 동 국제행동계획이 채택	이탈리아/로마

자료 :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연구, 2003. p. 15

-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채택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채택된 행동계획은 수산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제도정비를 위한 중요한 문서라는 점, 둘째로 동 국제행동계획은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강화조치를 요구하므로 동 행동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와 정부간의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우리나라의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새로운 의식전환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음

- 불법어업(Illegal Fishing)이라 함은 첫째,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가의 관할 수역 내(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둘째, 지역수산기구의 협약수역 내에서 회원국의 어선이 협약이 정한 보존조치 또는 국제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것을 의미하고, 셋째, 비회원국이 지역수산관리기구로부터 부과 받은 의무 또는 국가적,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어업활동을 지칭하고 있음

<표 2-12> 국제행동계획의 불법(Illegal)어업 정의

위반사항	주요내용	관련규정
연안국 법규 위반	•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그 국가의 관할수역에서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1.1
국제법 관련 규정 위반	• 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어업활동을 행하지만 그 기구에 의해 채택되고 그 국가를 구속하는 보존관리조치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1.2
국제적 의무 위반	• 국가 법률을 위반한 어업활동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대한 협력국이 약속한 의무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1.2

자료 :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연구, 2003. p. 8

- 비보고어업(Unreported Fishing)이라 함은 첫째,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당해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여 조업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 보고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서는 연안국 어선이든 조업국 어선이든 해당 법규 위반사실에 대하여 어업인(조업자)이 스스로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누락 보고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임
- 둘째, 지역수산기구의 관할수역 내에서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하는 어업활동을 지칭하며, 특히 어장별, 어종별 어획량 통계는 어업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고 있음. 이러한 보고상의 오류는 자원관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음

<표 2-13> 국제행동계획의 비보고(Unreported)어업 정의

위반사항	주요내용	관련규정
관련국에 비보고/잘못보고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국가의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를 하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2.1
수산기구에 비보고/잘못보고	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그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하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2.2

자료 :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연구, 2003. p. 9

- 비규제어업(Unregulated Fishing)은 지역수산기구의 협약수역에서 무국적 어선 또는 비회원국들의 협약이 정한 자원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어업활동과, 보존관리 조치가 없는 수역 또는 어족에 대하여는 국제법에서 정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은 어업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두 번째의 비보고어업의 정의에서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라 함은 저개발국의 EEZ 수역으로 적절한 규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어족이라 함은 주로 공해수역의 고도 회유성 어족 및 경계왕래어족이외의 어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원도 국제법 하에서 책임있게 보존·관리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표 2-14> 국제행동계획의 비규제(Unregulated)어업 정의

위반사항	주요내용	관련규정
무국적어선/ 해당기구조치 불일치/위반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적용수역에서 무국적어선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또는 그 기구의 비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 또는 조업실체에 의하여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3.1
공해상 국제법 불일치	적용가능한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또는 어족을 대상으로하여 국제법상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해지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3.2

자료 :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연구, 2003. p. 12

- IUU어업의 문제는 1997년 10월에 개최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며, 그 이후 지역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음

- 1996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상임위원회는 CCAMLR 수역에서 이빨고기(Tooth Fish)의 어획쿼터가 13,000톤이었으나 100,000톤 이상이 불법어획 되었다고 보고하고 지나친 자원남획을 우려하였음
- 1999년 2월에 개최된 제23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IUU어업이 어업자원을 고갈시켜 어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행동계획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어 1999년 3월에 개최된 FAO 각료회의에서는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만들 것을 선언하였음
- 이에 CCAMLR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호주정부는 예비초안을 만들기 로 하고 2000년 5월 호주에서 IUU어업방지를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 “IUU어업방지국제행동계획 예비초안”을 마련하였으며,⁵⁾ 이 초안은 2000년 10월에 로마에서 제1차 IUU 어업방지기술협의회에서 각국 정부대표간의 협의를 거쳐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한국, 일본 등 주요 조업국 및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일부 국가들이 항구국 조치와 시장 관련조치에 반발하여 문안합의를 이루지 못했음.⁶⁾ 이어서 제2차 IUU어업방지기술협의회가 2001년 2월 로마에서 개최되어 추가적인 협의를 갖고 절충하였으나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1년 2월 26일부터 로마에서 개최된 제24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회원국 간의 공식·비공식 추가 절충을 거쳐 2001년 3월 2일자로 국제행동계획 문안에 합의 및 채택되었음
- 국제규범은 강제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유엔해양법협약을 우선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편의치적금지협정,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협약 및 그 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한·일, 한·중, 한·러 어업협정 등 양자간 협정 등이 있음. 강행규범은 아니나 사실상 각국의 입법표준이 될 수 있는 자발적 성격의 규범으로서는 책임수산업행동규범 및 그 이행을 위한 국제행동 계획들, 대규모 유자망어업에 관한 유엔총회결의 등 각종 어업관련 결의 등을 들 수 있음

5) 호주정부와 FAO의 주도로 국제행동계획 예비초안 채택을 위한 전문가 회의(Expert Consultation)를 개최하였는데, 동 회의에 세계 각국 및 국제수산기구 전문가 57명이 참석하였음.

6) 72개 회원국, 옵서버 1개국, UN 및 UN 전문기구 대표, 10개 정부간 기구 및 9개 비정부간 기구 등 총180여명이 참석하여 기술협의회(Technical Consultation) 개최

- 동 IUU어업방지 국제행동은 국제규범의 분류상 그 성격에 있어 자발적 규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각국 및 지역수산기구의 입법표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행규범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음

<표 2-15> 수산관련 국제규범들 중 강제/자발적 규범 분류

구 분	수산관련 국제규범 종류
강제(강행)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해양법협약(1982) • 편의치적금지협정(1993) •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1995) •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협약 및 그 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 한·일·중 어업협정 등 양자간 협정들
자발적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행동규범(1995) • 연승어업에 의한 바다새의 우발적 포획에 관한 국제행동계획(1999) • 상어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1999) • 어획능력의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1999)

자료 :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연구, 2003. p. 18

- “국제행동계획은 자발적이다(제4조)”라는 표현은 ‘자발적(voluntary)’이라는 것이 어느 국가가 이 국제행동을 지키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임. 그러나 행동규범 제2조 d항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행동계획이 다른 강행 또는 자발적 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이를 내부적으로 도입할 경우 강제성을 띠 수도 있을 것임
-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이 자발적이라고 하여 그것이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다거나, 또는 임의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동 국제행동계획은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 규범의 가이드라인 이라는 차원에서 작성된 법률 문건(a legal instrument)임.⁸⁾ 한편, 내용면에서도 동 국제행동계획은 유엔 해양법협약, 유엔공해어업협정, FAO의 준수협정(Compliance Agreement: 편의치적 금지협정)을 보완, 발전시키고 있어, 이 국제행동계획은 그 자체로서

7) 책임수산업행동규범 제2조 d항에서는 “국제적 협정과 구속력이 있거나 자율적인 기타 법적 협정 등의 마련 및 이행에 적절하게 사용될 기준 제공”을 제시하고 있음을 명시.

8)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제4조의 후단은 “이 국제행동계획이 행동규범 제2조 d항에 규정된 대로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규범의 범위내에서 작성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규범의 제2조 (d)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이 행동규범은) 적절한 경우, 국제협정 및 구속적 또는 자발적 법률 문건의 작성과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는 법이 아니나 IUU어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현재 국제사회에서 “형성중인 법규(lege ferenda)”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⁹⁾

-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의 대상은 공해상 어업 또는 기타 특정 해역에서 행해지는 어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모든 수산업에서 일어나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을 포괄하며, 이러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을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예방, 방지, 근절하도록 하고 있음¹⁰⁾

다.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어장 축소

1) 중국 어선들의 서해 NLL지역 조업 실태

- 중국어선의 서해 NLL지역 불법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단속건수와 반비례) 있는 추세임. NLL수역의 특수성과 북측의 조업 용인으로 인해 강력한 단속과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에 어려움
 - 중국 어선 나포척수 : (2005) 584척 → (2006) 522척 → (2007) 494척 → (2008) 432척
- 2008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합동참모본부, 해군2함대, 해양경찰청, 인천시(옹진군포함), 옹진수협 등 8개 기관과 협의하여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
 - 동 계획에는 봄 어기(08.4.1~6.30)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업구역 이탈 어구설치 및 현지대책반(T/F팀)운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가을철 꽃게 조업기간(08.9.1~11.30) 동안 조업구역 이탈 어구설치 방지와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4척으로 증강 배치하고, 또한 중국어선의 NLL 침범 등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해경과 해군은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편성·배치하여 신속 나포하는 등 상호 공조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9) 연성법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하여는, Martin Dixon, *Textbook on International Law*(제4판), Blackstone Press Limited(2001), p.49 참조.

10) 김선표·이형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과 국내적 이행방안 연구」, KMI, 2001.12.

- 현지 대책반(T/F팀) 운영지침을 시달하여 그 동안 운영주체 없이 각 기관별로 활동함으로서 미흡하였던 안전조업과 조업구역 이탈 어구설치 예방, 기타 수산관련 정책홍보 등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조업시기 도래 전 어업인이 어장 선점을 위해 사전 출어하여 조업구역 이탈 어구설치로 해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어업지도선, 인천시 어업지도선 등을 '08.8.24일부터 현장에 사전 배치, 어장경계선을 선점하여 어선을 통제하기로 하였음
- 또한, 용진수협에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금번 회의 내용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출어 전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단속기관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교육에 참여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음

2) 러시아 수역 선도선박

- 2008년에는 러시아 연해주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에 대한 선도선박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러시아 측 국경수비대 감독관(3명)과 통역원 1명이 승선하여 우리어선에 대한 감시·감독 임무수행을 지원하였음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도선박 T/F팀을 구성하여 운용하였음. 1차 선도선박으로는 무궁화 18호, 2차는 무궁화 17호가 배치되었고, 각 선별로 팀장 1명, 간사 2명, 나머지 팀원으로 구성되었음
 - 선도선박별 출동계획을 감안하여 1팀, 2팀으로 구성·운영
 - 선도선박 배치 전 사전업무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 원활한 임무수행 도모
- T/F팀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선도선박 임무수행 T/F팀 구성 및 승선직원 임무수행 교육, 선도선박 운항계획 수립 및 어업지도선 안전운항 점검, 선도선박 인력지원 배치 및 의료지원, 러시아 감독관 물품 인수 및 승선배치, 선도선박 배치를 위한 최종 점검, 러시아 연해주 국경수비대 감독관 승선, 선도선박 임무수행 보고서 작성 등임

<표 2-16> 러시아 선도선박 T/F팀 운용 현황

추진 내용	추진기관	
	대내	대외
1. 러시아 연해주수역 선도선박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선박 선정관련 업무협의 개최 및 결과 - 러시아 입어선 선도선박 교대 척수 선정(2척) - 1,000톤급 중 선박선정(무궁화 17,18호) 	동해소	
2. 선도선박 배치 한·러 실무협의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선박 배치관련 한·러 실무협의회 개최 - 러시아 국경수비대 감독관 근무계약 체결 포함 		원양산업과 (러시아) 수협중앙회
3. 선도선박 임무수행 운용 T/F팀 구성 및 승선직원 임무수행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선도선박 임무수행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선도선박의 직원별 매뉴얼 작성 - 선박안전운항 관련 사전 준비 - 선도선박 배치 전 개선·보완사항 검토 • 선도선박 역할에 대한 설명회 개최(참석) - 러시아 수역 입어선 특별교육 및 선도선박 주요 활동 	선도선박 선도선박	수협중앙회
4. 선도선박 운항계획 수립 및 어업지도선 안전운항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운항·통신장비 점검 매뉴얼 작성 및 점검 - 주요 탑재 장비 점검 및 보완 수리 - 유류, 청수, 생수, 식료품 적재계획 수립 및 적재 • 러시아 선도선박 운항계획 수립 및 출동명령 조정 ※ T/F팀 활동 시 병행 운용 		
5. 선도선박 인력지원 배치 및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의료·위생인력 지원근부 배치 • 의료지원팀 구성 및 구급의료 시설·의약품 완비 - 위생인력 지원 및 식료품 구비 적재 	인사계 의료계	
6. 러시아 감독관 물품 인수 및 승선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감독관 인원·물품 인수 및 배치 - 주요적재 물품·장비 인수 	동해어업지 도사무소	수협중앙회
7. 최종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선박 시뮬레이션 운항 • 선박안전 종합점검 실시 	선도선박 각 부서별	
8. 러시아 연해주국경수비대 감독관 승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감독관, 통역원 선도선박 승선 및 업무회의 		러시아 국경수비대
9. 선도선박 임무수행·교대보고서 작성 및 향후 보완 업무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선박 업무보고서 작성 - 러시아 임무수행 보고서 및 인수인계서 작성 • 선도선박 임무수행 완료 종합 보고회 	선도선박 선도선박	

자료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내부자료(러시아 선도선박배치 Action Plan), 2008. 5

다. 중서부태평양 승선검색

- 승선검색은 제3차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2006-08 승선검색에 대한 보존조치의 제10조에서 명시되고 있는 내용은 우선적 승선검색 대상 선박에는 순찰선 미 파견국 어선 및 대형 다량어 어선으로, WCPFC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약 150여 척의 우리 다량어 조업 선박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우선적 승선검색대상 선박 : 위원회 어선등록부에 미등록된 회원의 어선, 보전 조치 위반 혐의 어선, 순찰선 미 파견국 어선, 읍서버가 승선하지 않는 어선, 대형 다량어 어선, IUU 전력 어선
 - 2008년 9월 4일, 미국연안경비대(US Coast Guard) 소속 경비함 Galveston island 가 북위 05도10분 서경 156도05분에서 우리나라 연승어선 207 Ocean 호(411톤)에 대한 승선검색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수산자원관리 보존조치의 준수와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감시 활동으로 안정적인 어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승선검색이 필요함
 - 우리나라 검색선 파견 시 조업 중인 우리 다량어 어선들이 타 회원국 소속의 검색선으로부터 검색 최소화로 원활한 조업활동 지원
- 승선검색은 UN 공해 어업협정 제21조 및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WCPFC 승선검색절차가 채택되어 시행되었으며, 2007년 12월 괌에서 개최된 WCPFC 제4차 연례회의에서는 검색선 등록부 등 세부사항이 결정되어 2008년 5월 16일부터 승선검색이 시작되었음.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24호를 통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음
-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7년 4월에 승선검색선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수산과학원, 어업지도선, 해경 등과 협의한 결과 '탐구 1호'를 파견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년 6월 20일에 WCPFC 승선 검색 추진 준비회의를 실시하여 탐구1호 파견확정 및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검색관 파견을 결정하였음.

동년 7월 25일에는 WCPFC 승선검색선 승무원 및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 4일에는 WCPFC 승선검색선 '탐구1호' 사무국에 등록하였고, 11월 3일에는 WCPFC 승선검색선 파견 최종 점검회의를 실시, 11월 6일에 승선 검색활동 시행계획을 WCPFC 사무국에 통보하였고, 검색관 신분증(7명) 발급 및 검색기 제작을 완료하였음

- 승선검색 주요 임무로는 조업선 등록여부, 어구, 장비, 시설, 기록 등의 관련문서 검색 등 WCPFC 공해상 참치어선의 자원보존관리 조치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협약 및 자원보존조치의 이행으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것임
- 승선 검색선 파견은 2008년 11월 10일 출항하여 11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항해 17일, 검색 8일, 기항 2일 등 총 27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음. 검색선은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탐구1호'(2,180톤)로, 승선원은 총 22명으로 그 중 검색관은 승무원 3명, 국제 읍저버 1명, 동해어업지도사무소 3명 등 7명이 배치되었음
- 검색 지역은 PNG 북방 공해 및 폰페이 남동방 공해로, 2008년 11월 27일 승선검색을 통하여 동원산업(주)소속 '유니버스 김'호를 PNG 북방 공해상(N 02도 7분, E 149도 04분)에서 검색국적선 원양 선망어선 1척을 승선 검색하였고, 대만 5척, 중국 1척 등 외국적 참치어선과 무선통신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음

라. 항구국 조치 사항

1) IUU-IPOA의 항구국 조치 내용

- 항구국 조치란 재급유, 재공급, 전채 및 양륙의 목적으로 외국어선이 항구 또는 연안에서 떨어진 부두(offshore terminals)로 입항할 경우, 항구국에 의한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항구국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야 하며 공정, 투명,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함¹¹⁾

11) 한·러 수산물 불법교역방지 및 위생보장협정체결에 따른 영향과 대책연구, 2008., 해양수산부, p.167-179 참고 및 정리

- 국가는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하여 어선에 대한 항구국 통제조치를 사용해야 함. 항구국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야 하며 공정, 투명,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함(제52조)
- 항구접근이라 함은 자국의 법률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 제2항12), 다른 관련 국제법에 따라서 연안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재급유, 재공급, 전채 및 양육의 목적으로 외국어선이 항구 또는 연안에서 떨어진 부두로 입항함을 의미함(제53조)
- 우선 항구국은 선박의 항구접근을 허용하기에 앞서 항구로 입항하기를 원하는 어선 및 어업관련활동에 관련된 선박에게 그들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했거나 지원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증의 사본, 조업여정(일정)의 상세내용 및 선상 어획량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야 함(제55조)
-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자국의 항구입항을 허용하였던 어느 선박이 IUU어업활동에 종사했다는 분명한 증거(Clear evidence)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항구국은 그 선박이 자국의 항구에서 양륙 또는 전채를 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 문제를 그 선박의 기국에 통보하여야 함(제56조)
- 동조의 문안작성 시 한국은 증거가 분명해야 함을 주장하여 채택된 것으로 IUU어업에 대한 항구국의 입증책임을 강조한 것임. 또한, 항구국은 외국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항구들은 검사를 행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장해야 하며, 어선을 검사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항구국은 어선의 기국 및 확인 상세내용, 선장 및 어로장의 이름, 국적 및 자격증, 어구, 원산지, 어종, 가공형태 및 어획량을 포함한 선상 어획량, 관련지역수산물리기구 또는 다른 국제협정에 의해 요구된 기타 정보, 총양륙 및 전채량 등을 수집하여 기국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지역수산물리기구에 송부하여야 함(제58조)

12) 유엔해양법협약(82) 제25조(연안국의 보호권) 2항 : 연안국 선박이 내수를 향하여 또는 내수 외측의 항만시설에 기항하고자 기항하는 경우에도 당해 선박이 내수로 들어가기 위하여 또는 항만시설에 기항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조건에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In the case of ships proceeding to internal waters of a call at a port facility outside internal waters, the coastal State also has the right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prevent any breach of the conditions to which admission of the those ships to internal waters of such a call is subject)

- 또한, 만일 검사 도중 그 선박이 항구국의 관할을 넘은 수역에서 IUU어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항구국은 국제법에 일치하는 여타의 조치에 추가하여 즉각 그 문제를 그 선박의 기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른 연안국과 지역수산기구에도 보고하여야 함. 항구국은 기국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59조)
- 다음으로 항구국의 의무로서 항구국은 통제관의 훈련, 기술적 지원, 자격요건과 일반운영지침을 포함하여 어업 및 관련활동에 연관된 선박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적인 전략과 절차를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함(제61조). 모든 국가는 양자간, 다자간 그리고 관련 지역수산기구내에서 어선에 대한 항구국 통제를 위한 일관성 있는 조치를 개발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동 조치는 항구국이 수집할 정보, 정보수집 절차 그리고 국가적, 지역적 또는 국제적 체제하에서 선박에 의한 침해혐의를 다루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여야 함(제62조)
-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모든 국가들은 관련지역 수산관리기구의 비 당사국이면서 그 지역 수산기구의 비협력국이 그 기구의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선은 그 기구의 보존관리 조치를 침해한다는 가정 하에 항구국 조치의 개발을 고려하여야 함
- 그러한 항구국 조치는 그 확인된 선박의 어획량이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어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어획물의 양육과 전채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의한 IUU 선박의 확인은 공정, 투명, 비차별적 방법으로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제63조)
- 이 조항은 지역수산관리기구 비회원국에 대하여 항구국이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IUU 선박의 확인"은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비회원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구국에서 어획물의 양륙 또는 전채의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표 2-17> IPOA-IUU의 기국 책임중 항구국 조치

구 분	주요 내용
통제조치 (제52조)	• IUU어업방지를 위해 어선의 항구국 통제조치를 사용해야 함
항구접근 (제53조)	• 재급유/재공급/전재/양육의 목적으로 외국어선이 항구/연안에서 떨어진 부두로 입항함을 의미함
불가항력 (제54조)	• 불가항력적 원인/위험 등 국제법에 따라 선박의 항구 접근이 허용
IUU 종사 확인 (제55조)	• 입항선박 IUU어업 종사여부 확인위해 어업허가장의 사본/조업일정의 상세내용 및 선상 어획량에 관한 정보를 요구.
IUU어업 규제/통보 (제56조)	• IUU전력 어선에 대해 항구국은 그 선박이 자국 항구에서 양육/전재 허용 금지 및 그 문제를 해당 선박 기국 통보
공개/검사 (제57조)	• 외국선박이 입항 항구 공개, 검사 능력 보장
정보 송부 (제58조)	• 어선 검사시 항구국은 정보 수집하여 기국 송부
IUU어업종사어선 적절한 조치(제59조)	• IUU의심 선박에 대해 항구국은 국제법에 따라 기국/다른 연안국/지역수산기구에 보고하여야 함
보안성(제60조)	• 제58조/제59조 적용시 국제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안성 유지
항구국의무 (제61조)	• 항구국은 통제관의 훈련/기술적 지원/자격요건과 어업/관련활동에 연관된 선박에 대한 통제 위해 국가적 전략/절차 수립/공개
항구국 조치 (제62조)	• 양자간/다자간/지역수산기구내에서 어선에 대한 항구국 통제의 일관성 있는 조치를 개발하도록 협력하여야 함
협력 (제64조)	• 국가는 관련정보의 유통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관련지역수산기구/국가들간의 항구국 통제에 관하여 협력 증진

자료 : 한·러 수산물 불법교역방지 및 위생보장협정체결에 따른 영향과 대책 연구, 2008. p.170

2) 외국사례

- 항구국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스페인의 경우는 대서양참치 보존위원회(ICCAT)의 IUU리스트에 오른 선박의 스페인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EU는 어선에 의한 항구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항구국의 권리 및 책임을 정의하기 위한 국제협정을 개발할 국제회의 개최를 추진하였음
- 다음으로 호주는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개발을 주도한 나라로 이미 기존의 법제에 행동계획의 많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즉, Risk-based 어업감시 및 이행 체제를 개발하여 육상과 상공에서의 수색, 항구에서의 어획량 하역 감시, VMS와 같은 기술적 장치와 어획량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검사 등을

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최근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정책지침을 마련하였고, 호주 어업관리당국은 입항어선에 대하여 허가장을 줄 수 있으며, IUU어선에 대하여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구 입항을 거부하는 국제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칠레는 조업한 수산물의 환적 또는 수산물 수입을 위해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입항통제를 비롯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허가된 어종만 양륙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표 2-18> 항구국 조치와 관련한 외국 사례

국가명	항구국 조치 내용	비고
스페인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IUU리스트 선박의 스페인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 강구	조업국
EU	- 항구국의 권리 및 책임을 정의하기 위한 국제협정 추진 중	조업국
호주	- 육상과 상공에서의 수색, 항구에서의 어획량 하역 감시 - VMS와 같은 기술적 장치와 어획량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검사 등 - 어업관리당국은 입항어선에 대한 허가장 부여 - IUU어선에 대하여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 항구 입항을 거부	연안국/ IUU-IPOA 주도국
칠레	- 조업한 수산물의 환적 또는 수산물 수입을 위해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입항통제 - 제한된 지역에서 허가된 어종만 양륙하도록 엄격히 통제	연안국

자료 : 한·러 수산물 불법교역방지 및 위생보장협정체결에 따른 영향과 대책 연구, 2008. p.171

3) IPOA-IUU관련 우리나라 현황

- IPOA 제54조~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구국의 조치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음.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조업국의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없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경우는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 한·러 어업협정 등에 의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 어선 등이 입항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양자 간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 시 긴급피난 등은 국제적 합의에 따라 협정 당사국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음

- 그러나 IPOA-IUU에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불법 어획물인 러시아 활게류 동해항 반입(입항)과 관련하여 항구국 조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4) 현행 기관별 항구국 조치관련 현황

가) 기관별

(1) 항만관제센터

- 항만관제센터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 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해상교통안전법)를 위해 설치하였음

(2) 지방항만사무소(항만공사)

- 개항질서법은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이 목적으로, 입·출항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입·출항의 신고와 개항질서법시행령 제4조 입출항의 신고에 언급되어 있음
- 개항질서법 제5조 (입·출항의 신고)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4조 (입·출항의 신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의 신고는 2개 호의 구분에 의하여 내항 선박과 외항 선박으로 나누어짐
 - 내항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후 지체 없이 항계 밖으로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내항선 입·출항신고서를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함)에게 제출하여야 함
 - 외항선박이 항계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계 밖으로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외항선 입·출항신고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출항 신고는 항만시설의 이용신청을 시설의 사

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임

-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제89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②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항만법시행령 제91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고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 법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 및 허가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및 신고의 수리,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법 제13조에 따른 부수공사의 시행, 법 제14조에 따른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변경 등록, 법 제21조에 따른 분구의 설정,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 법 제26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검사, 법 제27조에 따른 검사의 면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 법 제31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명령, 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법 제3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법 제38조에 따른 예선 사용의무 명령 및 예선 사용기준의 설정·고시, 법 제6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법 제62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명령, 법 제7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법 제7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에만 해당한다), 법 제72조에 따른 처분 등, 법 제73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법 제74조에 따른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법 제76조에 따른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법 제7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 법 제80조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82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시설 설치, 법 제83조에 따른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법 제88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법 제9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음
 - 제1항제2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 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연안항의 항만시설만 해당한다)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의 결정, 법 제63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항만법시행령 제88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①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별로 구축함.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서식이나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봄.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물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전자문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④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장애 등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함

(3) 세관 및 출입국사무소

- 세관의 경우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며, 출입국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함

<표 2-19> 현행 선박의 항구 입항관련 기관별 역할

중앙부처	집행기관	역 할	비 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함	해상교통 안전법
	지방해양항만청	•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 •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출항 신고는 항만시설의 이용신청을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임	개항질서법 제39조 항만법 제30조 시행령 제61조, 제63조
관세청	세 관	•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의 확보	관세법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법

자료 : 한·러 수산물 불법교역방지 및 위생보장협정체결에 따른 영향과 대책 연구, 2008. p.174

- 우리나라에서는 IUU 어선 항만국 조치와 관련된 국내규정 및 근거가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수산업법에 명시하고 있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업무범위 수정, 항구국 검색관 교육, 관계부처 협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3절 수산정책 여건변화

1. 부문별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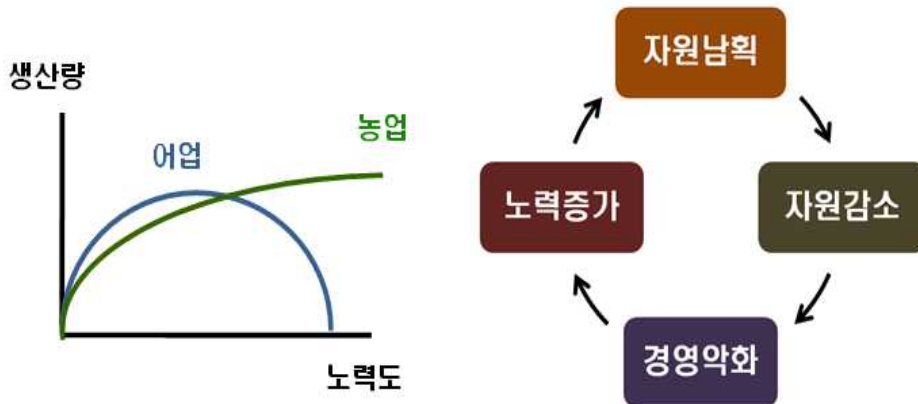
- 생산 지향형 어업의 패러다임으로 심각한 자원고갈과 어장 축소 등 수산 자원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정책적 기조는 생산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급변하는 수산업 여건 변화를 정책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 수산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1995년 0.65%에서 2002년 0.32%, 2006년 0.21%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수산업의 경제적인 위치가 점차 약화되고 있고, 수산물 자급율도 1995년 104%에서 2002년 72%, 2006년에는 65%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어가 소득도 2008년 현재 도시 근로자 대비 70% 정도의 수준인 3,117만원이며, 농가소득이 3,052만원임에 비추어 볼 때 어업인은 소득 및 생활여건 등에 있어 도시 근로자와 농가 소득보다 열악한 상태로 파악되었음
- 연근해어업의 경우, 자원량은 1984년 920만 톤에서 1992년 820만 톤, 2000년 790만 톤, 2008년에는 835만 톤으로 자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어획량은 1984년 124만 톤에서 1992년 108만 톤, 2000년 110만 톤, 2008년 129만 톤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등 구조조정 및 자원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회복이 더디고 연근해 어획량도 정체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음¹³⁾



<그림 2-1> 연근해 자원량 및 어획량 변화 추이

13) 수산정책과 내부자료, 2009

- 양식어업은 전체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년 26%에서 '04년 36%, '08년 41%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생산 비중이 증가함에 반하여 어장오염, 밀식, 어병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원양어업은 연안국 규제 강화와, 장비 노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EEZ 체제에 따라 주요 연안국들이 타국 어선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참치 등 공해상 자원에 대한 쿼터감축 등 국제규제도 강화되고 있음. 더욱이 원양 어획능력 위축 및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양어선 척수는 '77년 850척에서 '90년 810척, '08년 380척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1년 이상된 어선의 비율도 '77년 29%에서 '90년 49%, '08년 77%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수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자원남획 → 자원감소 → 경영악화 → 어획노력가중 → 자원남획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되풀이하고 있음



<그림 2-2> 수산업의 악순환 구조

- 국제적인 부문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개방 등 글로벌 트렌드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국내 수산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지구온난화로 국제적 탄소경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유류소비량이 많은 수산업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 항공운송(26%) - 택배(24%) - 도로운송(22%) - 수상운송(19%) - 어선어업(17%) 순으로, 어선어업은 우리나라 168개 산업분야 중 5번째로 유류비 비중이 높음

- 더욱이 DDA 협상으로 수산보조금이 대폭 금지되는 안건이 논의 중이며, 동 논의에서 면세유, 영어자금 등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약 70%가 금지될 수도 있고, 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관세인하로 인한 수산물 수입 증대로 국내 수산물 경쟁력 약화로 수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수산업의 위치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정책 패러다임은 현실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저조한 실정임. 그 예로 친환경 어법, 수산생명공학, 첨단 양식기술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 견인 예산이 전체의 3.8%에 불과함

2. 신 수산정책 추진

- 부문별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산정책의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수산부문은 과거 해양수산부 정책 기조에서 탈피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시대의 새로운 수산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 조직개편으로 수산업 부문이 정책 기본방향과 수단이 유사한 농업과 통합되고, 미래지향적인 “식품산업”도 가세되어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의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수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수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농업과 잘 조화되고, 식품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 모색
- 이러한 신 수산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 ‘스스로 강해지는 수산업’으로, 이를 통하여 ‘08년 3,118만원이던 어가 소득을 2015년에는 4,500만원으로 증가시키고, 2008년 14.5억불인 수산물 수출도 2015년에는 30억불로 증가시킬 계획을 마련하였음
- 특히, 과거 생산지향적인 정책 패러다임에서 신개념 수산정책 실천으로 수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생산 중심의 “어업”에서 자원관리에 중점을 두고 유통/가공과 융복합된 “산업”으

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부문별 세부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연근해어업’은 ‘해양생물자원산업’으로 정책을 설정하였음. 이는 무주물 선점, 공유재의 비극, 경쟁조업, 남획, 과잉생산 등 과거에는 자원관리보다는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어업인은 자원을 이용, 정부는 이용을 규제하는 기존의 입장을 변화시켜 연근해어선 구조조정과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통하여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도록 산업적 측면을 강화시키기 위함임
- ‘양식어업’은 ‘양식산업’으로 체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안역 위주 어장 개발로 사료 및 어류 배설물로 인한 오염 심화, 질병 발생, 태풍·적조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해양식 활성화, 친환경 R&D 강화, 외해 진출, 환경 친화, 부가가치 제고 및 규모화 등의 정책 추진으로 ‘양식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원양어업’은 ‘원양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마련하였음. 이는 과거 어업 생산 위주의 구조로 인하여 어업자원의 자국화 심화에 따른 원양어장 상실 및 보유 어선 노후화 등으로 생산량 증대에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임. 따라서, ‘원양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 인프라 강화, 금융기법 활용, 해외어업, 양식, 가공, 유통, 판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양화하고 융·복합화할 계획을 수립·추진 중임
- 수산식품 및 유통부문은 기존의 활·선·냉동품 위주의 단순소비와 단순가공, 저 부가가치, 유통시설 낙후,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구조를 개선하여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의 고차원화를 추진하며, 수산업의 부가가치와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Blue Ocean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어촌사회의 고령화, 어촌 공동화, 정부의존 심화, 어업인 자생력 약화 등 열악한 생활환경과 낮은 소득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촌관광 개발, 교육 및 복지 강화, 어촌은 즐거움이 넘치는 복합생활공간으로, 어업인은 경쟁력을 갖춘 경영주체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은 '산업'으로의 육성이며, 자원보호와 소득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원을 남획하고, 일반 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만드는 불법어업이므로, 이를 근절하기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매우 중요함

제4절 법·제도 여건변화

1. 법·조직 변천¹⁴⁾

- 우리나라는 수산업에 관한 근대법적 체계를 마련했던 1908년의 어업법에서부터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어업질서 문란행위와 법규의 위반을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어업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음
- 1953년에 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제56조(어업감독)부터 제60조까지 어업감독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업감독공무원은 행정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수산업법의 위반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여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도록 하고 있음
- 1966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법률 제1752호)의 개정과 더불어 대통령령 제2427호에 의해 수산청 직제가 제정됨으로써 수산청이 발족하였고, 더불어 수산청이 어로지도와 보호, 시험선 및 어업지도선의 운영을 전담하였으며¹⁵⁾, 그 후 수산청은 한·일 어업협정의 수행 및 어업지도선 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운영을 위해 1966년 10월 20일 어업지도관실을 신설하여 어업지도선 운영과 어업질서의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음
- 1967년 9월 1일에 「어업지도선승무원복무규정」(수산청 훈령 제41호)과 「어업지도선사무분장규정」(수산청 훈령 제42호)이 제정되면서 어업지도선 운영체계가 정착되었음
- 1968년 1월 27일에는 어업질서의 확립, 수산자원의 보호, 해양사고의 미연방지, 구조기능의 강화 등 출어선의 안전조업과 원활한 어업지도를 위하여 수산청 훈령 제49호로 「어업지도요강」을 제정하였음
- 1970년 3월 13일 어업지도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그 당시까지 운영하던 어업지도선의 일부를 시·도 또는 당시 해양경찰대로 이관하고 어업지도선 운영 및 어업단속업무를 어업생산국 어업생산과에서 담당하게 하였음

14) 해양수산부, EEZ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2.7 참조

15) 水友會, 「現代韓國水産史」, 사단법인 수우회, 1987, p. 318.

- 1991년에는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어업지도선 예산관리 및 집행, 어업지도선의 정비, 유류보급, 선수품 등의 수급,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지도선 승무원 복무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현재 불법어업에 대한 해상 지도·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어업지도선과 시·도, 시·군 어업지도선 및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불법어업근절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어업 단속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불법어업의 단속과 지원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영해 이원의 관할수역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영해 내측수역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어업지도선, 시·도 및 시·군이 담당하며, 시·도 및 시·군의 경계수역은 시·도 및 시·군이 합동으로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표 2-20> 주요 소관법률

법률명	주요내용	제·개정경과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효율적인 정리로 수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04.12.31 제정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특별법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05. 4.27 제정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어업지도 감독 공무원의 직무 범위	'70. 7. 9 제정 '98. 2.24 개정
수산업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해기사 행정처분 포함)	'84. 2.10 제정 '08. 4. 전문개정
선박안전조업규칙	선박에 대한 어업 및 항해의 제한 기타 사항	'72. 4.17 제정 '07.12. 3 전문개정
어선안전조업규정	수산업법 및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한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	'92. 9. 5 제정 '06. 5.26 개정
선박통제규정	선박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선박통제 업무처리	'85. 6. 7 제정 '07.12. 1 개정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	'79. 6.30 제정 '07.11. 9 전부개정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	소형기선저어업과 불법공조조업(오징어채낚기트롤)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07. 8.14 제정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선박직원 복무요령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복무에 관한 사항	'97. 2.28 개정 '07. 4. 9 전부개정 '08. 12. 31 일부개정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	'05. 4. 13 제정 '09. 9. 21 일부개정

2.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조직과 역할¹⁶⁾

가. 어업감독공무원의 의의

- 어업감독 또는 사법경찰은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어업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¹⁷⁾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법은 수산동식물의 번식과 생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강제를 부과하고 있음
- 어업감독공무원이라 함은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한 법령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법령이 준수 이행되는 것을 감독하고, 또한 법령 위반의 유무를 조사하여 위반자를 적발하고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임.¹⁸⁾ 다시 말해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 또는 어업의 질서유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업에 관한 규정의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를 적발·단속하는 것이 주된 업무임
- 우리나라는 수산업법 제63조, 제64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7조 및 어업감독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에 의하여 어업감독공무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나.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과 직무

- 어업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을 단순히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만

16) 해양수산부, EEZ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2.7 참조

17) 片山房吉, 「改訂 漁業法講義」, 동경: 水産社, 1943, 135面.

18) 金田禎之, 前掲書, p. 362

규정(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에 관한 사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일본 어업법은 어업감독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 어업에 관한 법령 관련 사무에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 어업에 관한 행정사무에 경험이 있어야 하며, 대학 또는 수산관계 전문 학교를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어업법 시행령 제27조)

-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에 관한 법령의 이행을 지도·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감독공무원이 되게 하는 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어업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
- 예를 들어 어획물운반업, 수산가공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담당공무원은 어업뿐만 아니라 어선에 관한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어업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¹⁹⁾
- 따라서 수산업법상의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을 일본 어업법과 같이 어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또한 소속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지명 받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관이라 하여(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 이들 중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과 9급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담당함
- 어업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어업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사법경찰관은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하고,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하며(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사법경찰관리는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임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업무 관할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

19) 수산업법 제2조 정의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에 한정함

- 다만,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4조 제2호에 의거 관할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 후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음

다. 어업감독공무원의 권한

1) 수사권한

-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며²⁰⁾, 법률상 수사권한이 인정되는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임
- 수산업법에서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지명 받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소속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것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것은(법 제64조)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로서의 수사권을 부여한 규정임
- 이처럼 행정기관에 대하여 사법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는 그 본래의 직무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당해 직무와 연관한 범죄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본무로서 집행하는 것이 일반사법경찰관리보다 더 많은 범죄를 인지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또 그것만이 단속이 용이하다고 하는 것임²¹⁾
- 이와 같이 어업감독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어업감독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사항적·지역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20) 李在祥, 「刑事訴訟法」, 박영사, 1999, p. 169.

21) 金田禎之, 前掲書, 368面.

2) 검사·질문권

-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95조), 이에 근거하여 수산업법 제63조 제1항은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안전조업조정·불법어업 방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어업감독공무원은 법령의 이행 사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박이나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상황이나 장부서류의 검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관계자를 만나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가능함.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고, 질문을 인정한 취지의 규정은 관계자가 답변을 거절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임²²⁾

3) 정선명령권

- 과거에는 어업감독공무원은 검사·질문의 권한을 갖지만, 항행 중인 선박을 검사하거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승무원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선박을 정선시키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으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 또는 회항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시키거나 회항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선명령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1999년 4월 15일 수산업법 개정에서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고 수산업법 제63조를 개정한 바 있음
- 또한, 현행 수산업법 제58조의2의2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동 문제는 해결됨

22) 田上穰治, 「警察法」, 133面.

4)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권

- 수산업법 제74조 제1항에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방류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방류명령을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이 부과됨(제95조)
- 어업감독공무원이 어류의 특성이나 생활습성 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러한 전문지식이 없는 어업감독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칙어획물의 방류를 강요할 경우에는 힘들어서 어획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 가능성이 없는 자원을 방류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환경마저 오염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 어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일단 어획된 어류는 어장수심, 예망시간, 1회 조업마다의 어획량, 어획에서 방류까지 걸리는 시간, 기온, 갑판의 상태(온도, 수분)에 따라 대부분 생존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²³⁾

23) 松田 皎, 「漁業の混獲問題」, 日本水産學會 105 水産學シリーズ, 東京: 恒星社厚生閣, 1995, 45面.

제5절 새로운 지도·단속 수요분석

1.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

가. 어업지도·단속 시스템 구축

- 현재의 어업지도선에 의존하는 1차원적 지도·단속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불법어업 단속 및 자원관리에 한계가 있음
 -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소규모 어선 위주 단속만으로는 불법어업의 근원적 해결이 곤란함
 - 특히, 어업지도선에 의한 해상 단속만으로는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과 같은 공모형 불법어업 단속에 한계가 있음
- 한·일, 한·중 어업협정 이행, 국제수산기구 권고 사항 이행 등 지도·단속 영역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중국어선 단속은 주로 해경에서 수행하고(연간 400여척), 어업지도선에 의한 단속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중국어선 단속 실적: 2004~2007년 9척, 2006~2007년 0척, 2008년 16척) 미미한 수준임
 - 중서부태평양 승선검색선 및 러시아 연해주 수역 선도선박 파견요구 등 원양 수역의 지도 수요도 증가함
- 현재 어선어업 이외 분야에 대한 어업감독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의 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며, 현행 연근해 어선어업 단속 중심의 어업감독공무원 활동 범위를 국내외 수산업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어업지도·단속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나. 기관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

- '04년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로 분리 후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왔으나, 업무 공유를 통한 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중국어선 단속(서해), 오징어 공조조업 예방(동해) 등 특화된 사무소별 주요업무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정책과 연계되는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우수 사례의 공유·활용 노력은 미흡함

- 초고유가, 연근해어선 감척 등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획일적인 과거 답습형 지도·단속을 지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지도·단속 모델의 발굴이 필요함
 - 어업감독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방안, 어업지도선 운항경비 절감 등 실제 적용 가능한 단속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지도·단속업무 성과 우수 사례를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는 등의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창의적 사고를 통한 개선 성과를 공유하여 지도·단속의 효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다. 안전조업 제도 개선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출항·입항신고)²⁴⁾에 의하면, 2톤 미만 어선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출입항 신고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2톤 이상은 방문 신고토록 규정하여, 2톤 이상 어선 출입항시 신고기관 방문 신고로 출어 시간 지연 등 어업인의 불만이 초래되고 있음
- 한편, 서해 5도에서 어업인이 조업할 수 있는 주변어장은 한정되고 협소하나, 매년 어장확장 요구 등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어장 확대에 따라 감독 범위가 넓어지므로 안전조업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협 주관 하에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안전조업지도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의 관심부족과 안전의식 결여로 해상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사고발생 : (2005) 515척 → (2006) 492척 → (2007) 405척 → (2008.11) 320척
- 입출항 신고제도 개선 및 접경수역 어장확장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어업인 안전조업지도 교육 내실화 및 사고 다발어선 중점관리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이 필요함

²⁴⁾선박조업안전규칙 개정 (2010.1. 14)에 의하면 2톤 미만 어선에서 5톤 미만 어선으로 개정되었음

라. 어선세력의 현대화

- 2009년 11월 현재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어업지도선 100~1,200톤급 33척, 2,000톤급 1척(동해 19척, 서해 15척)과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100톤급 이하 77척(평균 45톤)으로 이루어져 있음
- 또한 선령 30년 1척(500톤급), 선령 29년 2척(1,000톤급), 선령 27년 2척(100톤급) 등 선박의 노후도 심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선령 25년 이상 노후 어업지도선 5척의 대체 건조가 시급하며, 국가어업지도선 확충 및 노후 국가어업지도선 조기 대체건조가 필요함

마. 선진어업질서 구축

- 특별법 제정('04.12)을 통해 지난 50여 년간 자원고갈의 원인이었던 불법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소형기선저인망은 소멸 단계로 파악되나, 변형 형태가 등장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진입 방지노력이 필요함
- 합법어선의 불법 조업행위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어업인 자율의 어업질서 확립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비 증가로 조업어선 수는 줄었으나 생계형 불법어업은 증가 추세
 - '신고 포상금제도', '명예 감시선 운영' 등 자율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참여율은 극히 저조함(포상금 지급 및 명예감시선 신고(2007~2008)는 거의 없음)
- 불법어업 근절 노력과 함께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관리하는 어업질서 선진화 토대를 마련하고, 어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지도·단속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바. EEZ 주권 수호

- 1999. 1월 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협정위반으로 일본 측에 피랍되는 우리

어선은 점진적으로 감소(2008년 다소 증가) 하였음

- 위반사례는 어획할당량 부족을 이유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하는 것이 대부분(2008년 14척)

- 피랍척수 : (2002) 32척 → (2004) 19 → (2005) 15 → (2006) 10 → (2007) 15 → (2008) 18

○ 중국 어선들은 자국 연안어장의 자원 고갈로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우리 수역 조업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상악화 또는 야간을 이용 우리수역을 침범 또는 어획량 축소기재 등 허가사항 위반

- 나포척수 : (2005) 584척 → (2006) 522 → (2007) 494 → (2008) 432척

○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를 강화하여 위반조업으로 피랍되는 우리어선을 최소화하고, EEZ 및 NLL 주변수역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사.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개선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전국 17 개소에 어업정보통신국을 설치·운영(본부1, 해안국 16)중에 있으나, 어업정보통신국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편중되어 있으며, 경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 따라서 어업정보통신국의 현대화 및 광역 집중화가 필요함

○ 또한 북한과 인접한 인천, 강원지역의 출입항통제소 15개소에 어선안전점검요원 31명을 배치·운영하고, 접경수역인 특정해역 출어선에 대해 어선단 편성과 어선 향해 및 기관장비 이상유무 확인 등 특정해역 출어선 선단편성 및 안전점검 강화를 통한 월선·피랍예방 노력이 필요함

2. 시·도 어업지도선

가. 강원도

- 강원도는 북한 및 일본, 러시아 등 3개국의 EEZ 경계선과 인접하고, 동해의 어로한계선과 북방어장, 저도어장 등 복잡한 해상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차 가시화 되는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 수산경제교류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
-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어업지도선은 노후 및 소규모로 임무수행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적 해양 및 어업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국제화에 부응하는 다목적 어업지도선의 보유가 필요함

나. 경기도

-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표지를 규격에 맞춰 어업인이 제작하여 부착한 경우, 파도·풍랑 등에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거나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많음
-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표지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목격하여야 단속이 가능하므로 표지가 훼손된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표지를 전문제작업체에 제작 의뢰하여 보급하는 방안 및 바다의 특수한 환경에서도 훼손되지 않는 표지판의 제작비를 국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다. 인천시

- 서해 5도의 중국어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어업인 특별지도 단속 교육 및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함
- 어장 선점을 위한 어구방치로 어업인간 위화감 조성, 산란, 서식장 황폐화 방지 등 자원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및 폐어구에 대한 어장청소 사업비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수산자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어업허가 정수의 재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관할해역에서 일

정시기 수산자원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허가(어구 어법)를 할 수 있도록 조기
법제화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연안 해역에 바다목장화 사업(인공어초시설, 종묘방류 등)을
추진하여 자원조성 및 증강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연안 및 근해어업의 조업구
역이 구분되지 않아 업종 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연안 및 근해어업의 조
업구역 명문화가 필요함
- 불법어업으로 단속된 어선에 대하여 행정처분시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
로 대체함으로서 불법어업에 대한 범죄의식을 상실하게 됨. 불법어업 같은 위
반행위를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불법어업 근절
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 지역에 따라 어구 어법에 있어서 일부 변형된 어구를 사용하고 있어 지역어
업인과 단속기관의 마찰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어구 어법, 모식도
명문화 및 자원량에 영향이 없는 안강망류 등과 같은 어구 어법은 완화 또는
허용이 필요함
- 꽃게 금어기간이 전국이 6.16~8.15까지로 동일하나, 인천 경기지역의 연평어장
및 덕적 서방 특정 해역은 7.1~8.31까지로 이원화되어 금어기간의 일원화가
필요함

라. 전라북도

- 연안조망(새우방)어업과 근해형망은 포획 대상어종이 규정되어 있는 허가 업종
으로써, 잡어 혼획률 인정 범위 등 관련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단속어선 및 피의자 수사거부 및 집단행동 등으로 단속공무원의 신변 안전
확보 등의 대처방안이 미흡하므로, 불법어업 단속 시 다수 어선이 조업하는
현장이나 불법어선 집단행동 징후 또는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공조체
계를 구축해야 함

-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방조제 공사로 인한 내측어선의 방조제 외측 이동시 어업인의 반발 및 보상기대 심리로 인한 이동기피 등의 현상이 발생하므로, 새만금 내측 어선 불법어업 단속요청 시 해경 및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도 협조 지원이 필요함

마. 제주도

-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유가로 자체예산 확보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어업지도선의 유류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불법어업이 고도화, 지능화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비한 완벽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원거리 및 야간에 불법어업 현장 식별이 가능한 어업지도선 장착용 고성능 비디오 카메라(야간 적외선 촬영 가능)의 구입이 필요함

제3장 어업 지도·단속의 실태분석

제1절 지도·단속 실태분석

1.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 단속 업무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시·도별 어업지도선, 해경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어업지도선은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시·도별 어업지도선은 각 도, 시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 본 장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각 시·군구 지도·단속 공무원과 척수를 파악하였으며, 각 시·도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종합하였음
- 2009년 11월 현재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100톤급 2척에서부터 2,000톤급 1척 등 총 19척의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200톤급 3척에서부터 1,000톤급 2척 등 총 15척의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음

<표 3-1> 국가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구분	계	100톤급	200톤급	300톤급	500톤급	1,000톤급	2,000톤급
계	34	2	5	3	18	5	1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9	2	3	2	8	3	1
서해어업지도사무소	15	-	2	1	10	2	-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09. 11. 수요포럼 내부자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 시, 군별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어업 규모에 따라 어업지도선의 규모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시·도별 어업지도선 규모를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17척으로 가장 많은 척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경상남도가 12척, 부산시가 10척, 인천시가 9척을 보유하고 있음

<표 3-2> 시·도별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척수	비율	척수	비율	척수	비율
부산시	10	14.93	10	13.89	10	13.51
인천시	9	13.43	9	12.50	9	12.16
울산시	2	2.99	2	2.78	2	2.70
경기도	6	8.96	6	8.33	6	8.11
강원도	3	4.48	3	4.17	3	4.05
충청남도	6	8.96	6	8.33	6	8.11
전라북도	0	0.00	0	0.00	4	5.41
전라남도	17	25.37	17	23.61	17	22.97
경상북도	2	2.99	2	2.78	2	2.70
경상남도	12	17.91	12	16.67	12	16.22
제주도	0	0.00	5	6.94	3	4.05
합계	67	100.00	72	100.00	74	100.00

자료 : 지방자치단체별 설문조사 결과

가. 동해권

1) 강원도

-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3척으로, 60톤급 1척, 25톤급 2척을 운영하고 있음. 승선원 수는 60톤급 10명, 23톤급 각각 6명이고, 선령은 15년에서 16년으로, 어업지도선이 노후화 된 것을 알 수 있음

<표 3-3> 강원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구분	선 명	톤수	마력	승선원수	선령	소속
2006 ~ 208	강원201호	60	1,045	10	15	강원도
	강원202호	25	800	6	16	
	강원203호	25	800	6	16	

자료 : 강원도청 설문조사 결과

2) 경상북도

-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2척으로, 61톤급 1척, 29톤급 1척을 운영하고 있음. 승선원 수는 61톤급 어업지도선의 정원은 8명이나 7명이 탑승하고 있고, 29톤급 어업지도선의 정원은 5명이나 4명이 탑승하고 있음. 선령은 12년, 14년으로 10년 이상 된 선박으로 업무가 운영되고 있음

<표 3-4> 경상북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구분	선 명	톤수	마 력	승선원수	선 령	소 속
2006~2008	경북201호	61	1,324×2대	8/7	12년	경상북도
	경북207호	29	624×2대	5/4	14년	포항시청

자료 : 경상북도청 설문조사 결과

3) 울산시

-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17톤급 1척, 3.17톤급 1척 등 총 2척으로 소형선이 운영되고 있음. 승선원 수는 17톤급 어업지도선은 6명, 3.17톤급 어업지도선은 2명이 탑승하고 있고, 선령은 19년, 13년으로 10년 이상 된 선박으로 단속 업무가 실시되고 있음

<표 3-5> 울산시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구 분	선 명	톤 수	마 력	승선원수	선 령	소 속
2006~2008	울산201호	17	900	6	19	울산시
	울산202호	3.17	216	2	13	

자료 : 울산시청 설문조사 결과

나. 서해권

1) 경기도

-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6척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80톤급 1척과 1.2톤급 1척을 비롯하여 시, 군에서 운영하는 26톤급 1척 등 4척이 있음. 승선원 수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못하였으나, 80톤급에 8명, 18톤급에 5명, 26톤 급에 6명 등 총 1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선령은 1년부터 17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10년 이상인 어업지도선은 2척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6> 경기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구 분	선 명	톤 수	마 력	승선원수	선 령	소 속
2006	경기212호	80	1,800	8	16	경기도
	경기213호	1.2	250		1	경기도
~ 2008	경기217호	18	900	5	9	안산시
	경기218호	2.38	200		6	안산시
	경기208호	26	800	6	17	화성시
	경기209호	0.71	200		7	화성시

자료 : 경기도청 설문조사 결과

2) 인천시

-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9척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132톤급 1척의 어업지도선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113톤급 1척을 포함한 8척이 있음. 선박마다 5명에서 8명까지 승선하고 있어 승선원 수는 총 56명임. 선령은 30년이 넘는 선박도 있으며, 대부분 90년대 후반에 건조된 노후화된 선박이고, 가장 최근에 건조된 선박은 2006년에 건조된 인천232호가 있음

<표 3-7> 인천시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구분	선명	톤수	마력	승선원수	선령	소속
2006 ~ 2008	인천201호	132	4,400	8	1997. 12	인천시
	인천204호	30	950	5	1999. 05	강화군
	인천206호	25	730	5	1995. 06	강화군
	인천214호	구)132	675	7	1977. 11	옹진군
	인천216호	51	2840	6	1995. 09	옹진군
	인천226호	43	2600	6	1995. 12	옹진군
	인천227호	45	2600	6	1996. 08	옹진군
	인천228호	52	2600	6	1996. 08	옹진군
	인천232호	113	5440	7	2006. 04	옹진군

자료 : 인천시청 설문조사 결과

3) 충청남도

-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6척으로 도청에서 운영하는 63톤급 1척과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84톤급 1척 등 5척이 있음. 승선원 수는 1명에서 7명까지 총 30명이고, 선령은 1년에서 15년까지 다양하며, 2척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8> 충청남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구분	선명	톤수	마력	승선원수	선령	소속
2006 ~ 2008	충남295호	63	2,556	7	13	충남도
	충남201호	84	3,652	6	1	보령시
	충남207호	25	980	5	9	서산시
	충남205호	18	650	5	15	서천군
	충남208호	5.34	450	1	6	홍성군
	충남202호	54	2,800	6	7	태안군

자료 : 충청남도청 설문조사 결과

4) 전라북도

-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4척으로, 75톤급 1척, 65톤급 1척, 33톤급 1척, 18톤급 1척을 운영하고 있음. 승선원 수는 75톤급 8명, 65톤급 8명, 33톤급 5명, 18톤급 4명임. 선령은 13년에서 18년으로 10년 이상인 선박으로 단속업무가 운영되고 있음

<표 3-9> 전라북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구분	선 명	톤수	마력	승선원수	선령	소속
2006, 2007	-	-	-	-	-	-
2008	전북207호	75	1300, 2대	8	15	전라북도
	전북209호	65	1400, 2대	8	13	군산시
	전북208호	18	400, 2대	4	16	고창군
	전북202호	33	510, 2대	5	18	부안군

자료 : 전라북도청 설문조사 결과

다. 남해권

1) 부산시

-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10척으로, 시에서 369톤급 1척, 34톤급 1척, 구군에서 9.77톤급 3척, 22톤급 2척, 24톤급 1척, 2.21톤급 1척, 0.75톤급 1척을 운영하고 있음. 승선원 수는 369톤급 어업지도선의 정원은 8명이나 7명이 탑승하고 있고, 29톤급 어업지도선의 정원은 5명이나 4명이 탑승하고 있음. 선령은 7년에서 14년으로 대체적으로 선령이 10년이 넘는 노후 어선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0> 부산시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구분	선 명	톤수	마력	승선원수	선령	소속
2006	부산201	369	디젤 3,305 x 2	18	7	부산시
	부산221	34	디젤 650 x 2	7	14	부산시
	부산232	9.77	디젤 450	3	14	영도구
	부산233	9.77	디젤 450	3	14	수영구
	부산234	9.77	디젤 450	3	14	해운대구
2008	부산235	22	디젤 450 x 2	4	14	사하구
	부산236	22	디젤 650 x 2	5	11	기장군
	부산237	0.75	가솔린 90	10	10	기장군
	부산238	2.21	가솔린 360	5	8	강서구
	부산239	24	디젤 800 x 2	2	2	강서구

자료 : 부산시청 설문조사 결과

2) 경상남도

-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12척으로, 도청에서 운영하는 40톤급 1척과 시, 군에서 운영하는 3.73톤급부터 26톤급까지 총 11척의 어업지도선이 운영되고 있음. 승선원 수는 2명부터 6명까지 총 42명이 승선하고 있고, 선령은 2년부터 16년으로, 최근에 건조된 선박이 2척 있으나 나머지 선박들은 10년 이상 된 선박으로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표 3-11> 경상남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구분	선 명	톤수	마력	승선원수	선령	소속
2006 ~	경남 230	40	1,080 x 2	6	16	경남도청
	경남 236	18	475 x 2	4	15	마산시
	경남 232	26	585 x 2	4	13	진해시
	경남 237	26	550 x 2	4	12	통영시
	경남 242	13	430 x 2	3	5	
	통영 237	3.73	254	-	2	
2008	경남 233	21	650 x 2	4	12	사천시
	경남 241	8.55	400	2	13	
	경남 238	24	650 x 2	6	14	거제시
	경남 239	21	650 x 2	4	13	고성군
	경남 240	23	650 x 2	3	13	남해군
	경남 243	9.16	450	2	15	하동군

자료 : 경상남도청 설문조사 결과

3) 전라남도

-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17척으로, 도청에서 운영하는 115톤급 1척을 비롯하여 4척의 어업지도선이 있고,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6.12톤급 1척을 비롯하여 60톤급 2척까지 총 13척의 다양한 톤수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음. 승선원 수는 2명에서 6명까지 총 75명이 승선하고 있음. 선령은 가장 노후화된 선박이 16년 되었고, 가장 최근에 건조된 선박으로는 2004년에 전남202가 있음

<표 3-12>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구분	선 명	톤수	마력	승선원수	선령	소속
2006	전남201	115	5,442	6	9	전남도본청
	전남204	33	2,144	5	14	전남도본청
~ 2008	전남207	90	2,000	6	8	전남도본청
	전남210	60	2,800	6	17	전남도본청
	전남216	10	650	3	13	목포시
	전남202	64	3,600	5	5	여수시

구분	선 명	톤수	마력	승선원수	선령	소속
2006 ~ 2008	전남212	20	950	5	11	여수시
	전남203	31	1,826	5	14	고흥군
	전남206	20	880	3	10	보성군
	전남214	10	460	2	10	장흥군
	전남218	6.12	360	2	9	강진군
	전남208	23	1,162	4	13	해남군
	전남217	10	490	4	13	무안군
	전남205	26	1,600	5	13	영광군
	전남211	24	1,300	5	16	완도군
	전남215	44	2,114	5	5	진도군
전남213	60	2,800	4	15	신안군	

자료 : 전라남도청 설문조사 결과

4) 제주도

-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2007년에는 5척을 운영하였으나 2008년에는 3척으로 감소하였음. 도청에서 운영하는 250톤급 1척은 계속 운행되고 있으나, 서귀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던 칠십리호와 마리호가 2008년에는 운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승선원 수는 도청에서 운영하는 삼다호의 경우 2007년에는 14명에서 2008년 16명으로 증원되어 승선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탐라호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어 운행되고 있음. 선령은 대부분 10년 이상 되었으며, 최근에 건조된 선박으로는 2007년에 영주호가 있음

<표 3-13> 제주시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구분	선 명	톤수	마력	승선원수	선령	소속
2006	-	-	-	-	-	-
2007	삼다호	250	3,600	14	15	도청
	영주호	184	3,195 X 2	9	2	제주시
	탐라호	60	2,800	6	18	제주시
	칠십리호	33	1,836	6	14	서귀포시
	마리호	40	2,160	6	18	서귀포시
2008	삼다호	250	3,600	16	15	도청
	영주호	184	3,195 X 2	13	2	제주시
	탐라호	60	2,800	8	18	서귀포시

자료 : 제주시청 설문조사 결과

2. 기관별 담당 부서 현황 분석

가. 어업지도사무소

1) 동해어업지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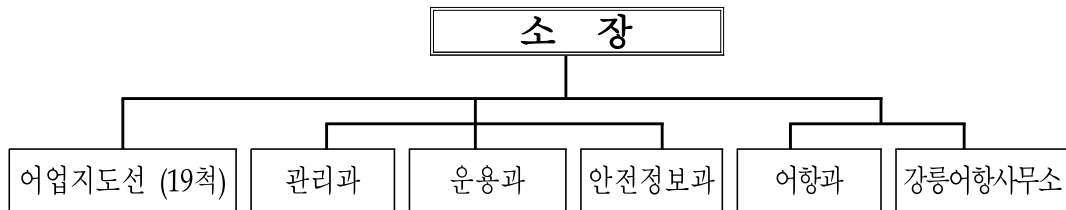
가) 조직도

-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소장 산하 관리과, 운용과, 안전정보과 등 4개 과가 있고, 국가 어업지도선은 총 19척이 있음

<표 3-14>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담당 공무원 인원 현황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정원	327	159	1	2	17	139	168
현원	326	158	1	1	18	138	168
과부족	-1	-1	-	-1	+1	-1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9. 11. 수요포럼 내부자료



<그림 3-1>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조직도

나) 주요기능

(1) 관리과

- 관리과 주요 업무는 어업지도 및 지도선 운항과 어항공사 등의 사업집행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관리, 제도·행정개선 및 변화관리, 소속직원의 인사·성과·복무·급여 등 관리, 국유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고 기획인사계, 재정운영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발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

- 기획인사계 : 공직기강 및 청렴도, 감사, 기획 및 행사, 노조업무, 비상·당직·방재, 행정규칙, 홈페이지, 정보화 사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네트워크 운영·관리, 보안업무 처리, 개인정보 보호, 정책홍보, 변화관리, 제안 및 제도개선, 행정서비스, 통합성과 및 성과급 관리, 각종 회의 및 업무계획, 징계·복무, 조직관리, 공무원 채용, 인사, 상훈, 교육훈련, 재해보상, 청사관리, 기록물 관리, 에너지 및 자원재활용, 직원상조회 및 장학회, 공용차량, 민방위

및 예비군, 비상연락망 등 관리

- 재정운영계 : 예산편성·운영·관리, 선박 수리계약 및 물품계약, 일반계약, 선박보험, 재무관 및 지출관 보조, 공무원 연금, 관서운영경비, 공공요금 관리, 급여 및 수당 관리, 어항공사계약, 농특회계 집행, 국유재산관리, 농특회계 수입업무,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등 관리

(2) 운용과

- 운용과 주요 업무는 어업지도단속 업무 총괄, 어업분쟁 조정을 위한 동해어업 조정위원회 운영, 국가어업지도선 관리, 외국과의 어업협정사항 이행, 어업인 지원활동, 기타 어업지도 관련 각종 홍보 및 행사 추진 등을 담당하고 지도계, 운항지원계, 의료지원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
 - 지도계 : 어업지도선 운영 및 지도단속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운영, 국가어업지도선 출동계획 수립, 육상단속, 수산관계법령위반사건 송치·이송 및 압수물 처리, 불법어업자 구속수사에 관한 사항, 내수면 및 TAC 관련 업무, 수산관계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신종 어구어법 관련 업무, 특별사법경찰 및 어업감독공무원 관리 및 역량강화 업무,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 어업인 간담회 관련 업무, 어업인 민원 관련 업무, 외국과의 어업협정사항 이행 및 외국어선 사건처리, 어업인 계도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어업지도단속 관련 통계업무, 어업지도선 선석 지정관련 업무, 기타 어업지도 관련 각종 행사실시 등
 - 운항지원계 : 국가어업지도선 정기 및 간이 수리 관련 업무,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관련 업무, 자체정비반 운용, 어업지도 관련 유류 및 물품 공급·관리 업무, 어업지도 장비 관리, 국가어업지도선 안전점검 전반에 관한 사항, 국가어업지도선 에너지 절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 방지 관련 업무, 어업감독공무원 총포류 사용자 소지허가에 관한 사항, 국가어업지도선 선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의료지원계 : 국가어업지도선 의료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도서낙도 지역 방문 의료지원 업무, 조업현장 어업인 대상 의료지원 업무, 국가어업지도선 의약품 관리 및 보급 업무, 어업감독공무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3) 안전정보과

○ 안전정보과 주요 업무는 찾아가는 어업인 서비스 제공, 국가어업지도선 향해 전자장비 수급관리, 해안국 및 선박무선국 운영·관리, 국가 보안업무 활동계획수립 및 추진업무, 종합상황보고, 불법어업신고센터 운영, 연근해출어선 조업정보제공, EEZ내 외국어선 입·출역관리, 해양사고 및 조난선 구조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산정보계와 상황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별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수산정보계 : 해안무선국 및 선박무선국 검사·운영 총괄, 지도선 통신전자장비 수급 및 유지보수, 통신운영 물품수급, 해안국 시설장비 운영·관리, 통신보안업무, 보안자재 및 비밀문서 수발, 암호훈련 및 암호실 운용관리, 군·경 해상사격훈련 및 항행통보, 명예감시선제도 관리·운영,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예방홍보, 국가어업지도선 승선체험, 국·내외 수산동향 파악, 수산정보 안내게시판 운영, 어업인 조업정보 제공, 어업인 간담회 결과분석 등
- 상황실 : 해안무선국 통신운영 장비 유지 관리, 선박위치 모니터링 시스템(VMS) 관리, 국가지도선 및 외국어선 모니터링 운영, 지도선 일일 종합상황 및 배치현황 보고, 지도선 활동상황 및 각종 전문수발 관리, 출어선 안전조업정보제공 및 유관기관 상황통보, 전국불법어업신고(1588-5119) 접수 및 전파, 피랍·나포·조난어선 상황접수 및 전파, 불법어업자 신원 및 허가조회 통보, EEZ 출어선 조업정보 접수관리 및 전파, 연근해 출어선 조업정보 접수관리 및 전파, 범칙 허가어선 관할 행정기관 통보, 출동 지도선에 수산정보 전파, 지도선 출동 전 조업정보 제공, 어업인 Call Service Center 운영, 토요일(야간) 민원 상황실 운영 및 당직업무

(4) 어항과

○ 어항과 주요 업무는 부산, 울산, 경북, 경남지역 일원 어촌의 핵심 기반시설인 31개 국가어항의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중심인 어항이 어업인의 삶과, 휴양, 산업이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어항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어촌·어항법에 의거 어항개발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어항공사에 대한 설계 및 검사 업무는 물론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협의) 업무, 어항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사1계, 2계, 3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

- 공사1계 : 부산, 남해지역 7개 국가어항(대변, 다대포, 천성, 미조, 물건, 호두,

- 맥전포항)에 대한 어항공사(용역) 감독 및 지원업무 수행, 담당항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 착수, 자재조달 등 공사업무 수행, 공사기성 및 준공검사, 담당항 민원업무 처리,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협의), 담당항 어항시설물 하자검사 및 안전점검, 어항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 업무 등
- 공사2계 : 울산, 경주, 포항, 울릉도지역 9개 국가어항(정자, 방어진, 읍천, 감포, 양포, 대보, 저동, 현포, 남양항)에 대한 어항공사(용역) 감독 및 지원업무 수행, 담당항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 착수, 자재조달 등 공사업무 수행, 공사기성 및 준공검사, 담당항 민원업무 처리,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협의), 담당항 어항시설물 하자검사 및 안전점검, 어항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 업무 등
 - 공사3계 : 마산, 거제, 고성, 통영, 사천, 하동지역 15개 국가어항(광암, 원전, 지세포, 구조라, 외포, 대포근포, 능포, 다대포, 남포, 매물도, 삼덕, 능양, 옥지, 신수, 노량항)에 대한 어항공사(용역) 감독 및 지원업무 수행, 담당항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 착수, 자재조달 등 공사업무 수행, 공사기성 및 준공검사, 담당항 민원업무 처리,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협의), 담당항 어항시설물 하자검사 및 안전점검, 어항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 업무 등

(5) 강릉어항사무소

- 강릉어항사무소는 강원도와 경북도의 울진, 영덕군내 22개의 국가어항의 원활하고 안전한 어항기능 수행을 위해 어항시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집행·시공감독,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및 피해복구공사,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 및 협의, 어항시설물 안전·품질관리 및 자연재난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6) 국가 어업지도선

- 국가 어업지도선의 임무 및 역할은 국내어선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협정과 정부 간 합의사항 이행 및 지도·단속, 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인 지원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05년부터 강력 추진 중인 허가어선의 위반행위 단속 및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불법어업 재진입 차단 및 불법어업 자율적 감시 및 현장 신고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 참여 유도
 - 한·중·일 EEZ수역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 어업협정 사항 이행지도, 외국

어선과의 조업분쟁 예방 및 우리어선 피랍방지

- 피랍방지 안전조업 지도, 현장 어업분쟁 해소, 어업인 지원활동 강화

2)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가) 조직도

-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소장 산하 관리과, 운용과, 어항과, 안전정보과, 어업지도선 등 총 4개 과가 있고, 인천어항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표 3-15> 서해어업지도사무소 담당 공무원 인원 현황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정원	264	132	1	1	16	114	132
현원	262	130	1	1	15	112	132
과부족	-2	-2	-	-	-1	-2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9. 11. 수요포럼 내부자료



<그림 3-2>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조직도

나) 주요 기능

- 주요 기능으로는 어업지도·교육 및 어업분쟁 조정,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및 사건조사, 정부 간 어업협정의 합의사항 수행, 국가어업지도선 운용 및 안전관리, 어항공사 및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등 총 5가지가 있음

(1) 관리과

- 관리과는 서무계와 재무계, 승무원 회관으로 나누어지며, 각 파트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서무계 : 기획, 조직운영, 직장노조, 공직기강, 보안, 청사 및 숙소관리 등 / 호봉, 상훈, 징계, 교육, 평정, 성과급, 공익 및 비정규직 관리 등 / 성과(변화)관리, 전산, 개인정보 보호, 홍보, 각종 회의자료 작성 등 / 서무, 민원, 기록물,

- 행정서비스, 감사, 청렴, 행정정보 공개 등 / 공직기강, 감사 등 업무보조
- 재무계 : 경리, 용도 총괄, 어항관련계약 등 / 어업지도선 수리계약, 세입징수, 단가계약, 어업지도선 물품 불용품 처리 등 / 물품구매, 유류공급, 선박보험, 직원숙소 관리, 관용차량 관리 등 / 건강보험, 연금, 맞춤형 복지, 급여, 관서 운영경비 지출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소송 등
- 승무원 회관 : 전용부두 및 회관 관리, 출입자 통제 및 보안관리 등

(2) 운용과

- 운용과는 하부 조직으로 단속계와 선박계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단속계 : 어업지도선 운영, 해경,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공조, 승선직원 교육 등 / 우범 항·포구 관리 및 육상단속, 불법어업 동향 파악, 단속 예고제 등 / 국내어선 사건조사 처리, 행정처분 및 사건송치, 수산관계법령 전파 등 / 국내어선 사건조사 처리, 압수물 지휘 처리, 수사 자료표 감식 등 / 중국어선 사건조사 처리, 외국과의 어업협정에 관한 업무 등 / 어업지도선 운항 계획수립 및 종합보고, 성과관리, 서무 업무 등 / 불법어업 민원접수, 어구 제작업체 및 판매점 관리, 어업인과의 간담회 등
 - 선박계 : 신조선에 관한 업무, 어업지도선 하자수리 등 / 선체수리, 안전점검, 단속 장비 사용허가 등 / 기관수리, 정기수리 관급자재 공급, 해양오염 방지 등 / 어업지도선 유류 및 선용품 공급, 승무원 피복관리 등

(3) 안전정보과

- 안전정보과는 정보계와 지도계를 두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정보계 : 보안업무(통신보안 및 보안자재 관리에 관한 업무) / 예산운영(통신 운영 예산 업무 및 장비 수급에 관한 업무) / 무선국 관리(어업지도선 무선국(선박국, 의무선박국, 이동국) 허가에 관한 업무) / 업무보고(업무 및 입출항 보고 등 정보접수 처리, 종합 어업정보시스템 입력) / 단속보고(단속대장, 단속현황 작성자료 처리 등) / EEZ 정보관리(한·중 EEZ 조업실적, 입·출역 현황 등 자료처리 등) / 출어선 현황관리(우리어선 연근해 출어선 현황자료 처리) / EEZ정보 제공(한·중 조업선 분포현황 및 입출력 현황 제공) / VMS운용(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및 일지 작성) / 사건사고(조난, 피랍, 나포 등

발생상황유지 및 상황보고서 작성 전파) / 기상정보(개황, 특보, 예보, 태풍 제공 및 보고) / 신원 및 선적 조회(행정정보 시스템 및 시·도 정보 조회 결과 통보) / 유관기관 업무(해군·해경, 상황통보서접수, 처리 및 업무협조) / 기상 정보(개황, 특보, 예보, 태풍 제공 및 보고)

- 지도계 : 어업인 지도 교육(간담회) 및 불법어업 동향파악(단속자료 통계·분석)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업인 해피콜 설문조사 / 어업인 지도업무 관련 관계기관 및 어업인 협회와의 정보교환 /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어업인 지도·교육 홍보물 제작 / 명예감시선제도 관리·운영

(4) 어항과

- 어항과는 공사 1담당과 공사 2담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공사 1담당 : 전라남도(여수시, 고흥군, 장흥군) 국가어항 관련업무 / 어항 개발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정비·실시설계)에 관한 업무 / 어항건설 공사 설계, 공사(용역) 감독 및 공사 지원업무 /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협의) 업무 / 어항시설물 하자검사 및 안전점검 / 어항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 / 방재 관련 업무
 - 공사 2 담당 : 전라남도(영광군,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국가어항 관련 업무 / 어항시설 계획, 총 사업비 관리업무 / 어항건설 공사 설계, 공사(용역) 감독 및 공사 지원업무 /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협의) 업무 / 어항시설물 하자 검사 및 안전점검 / 어항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

(5) 인천어항사무소

- 인천어항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총 4곳 이고, 관할 어항은 18개 국가어항임
- 주요 업무로는 어항개발사업 조사·설계, 감독, 설계심사, 계약요청, 어항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어항배후부지 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비 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관리, 어항구역내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등이 있음
 - 공사1팀 관할어항 : 덕적도항, 어유정항, 삼길포항, 모항항, 안흥항, 어청도항,

연도항, 격포항, 궁평항, 위도항

- 공사2팀 관할어항 : 선진포항, 장봉항, 울도항, 남당항, 흥원항, 외연도항, 말도항, 구시포항, 오천항, 장고항

(6) 국가어업지도선

- 무궁화 2호, 4호, 5호, 8호, 10호, 13호, 14호, 15호, 19호, 23호, 25호, 27호, 29호, 31호, 33호 등 총 15척 운항 중

나. 지방자치단체 업무

1) 동해권

가) 강원도

-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총 82명으로, 이 중 특별사법경찰관은 18명이 겸임하고 있음

<표 3-16> 강원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구분	계	구분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2006	82	26	56	18
2007	82	26	56	18
2008	82	26	56	18

주 : 시군은 강릉시 22명, 동해시 10명, 속초시 4명, 삼척시 12명, 고성군 3명, 양양군 5명
 자료 : 강원도청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강원도에서는 환동해출장소를 강릉에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업무는 어업지원과 어업지도팀에서 실시하고 있음
- 주요 업무로는 해양사고방지 종합대책,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총괄, 불법어업 근절 및 자원보호 종합대책 추진, 수산사범 사건처리 및 행정처분, 수산자원 보호관련 어업분쟁조정지도, 어선대피시설지원 및 위령탑시설관리, 해양수산 재난상황 관리 및 피해 집계 총괄, 동해어로보호본부 수산연락관 임무 수행, 출어선 동향 관리, 해난 어업인 지원 및 유가족지원기금 운용, 기타 자원보호 및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단속 업무 이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음

(1) 고성군

- 고성군에서는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추진, 어항수축 및 인공어초 시설사업,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사업추진,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어업인 교육, 어항시설 점, 사용허가 업무, 어촌종합개발사업 관리,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낚시어선업 신고관리 업무, 수상레저기구등록 관리업무 등으로 지도·단속과 관련된 공무원은 총 7명임

<표 3-17> 고성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연안관리기획 및 업무전반/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관련업무/연안정비사업 관련 업무/불법어업지도·단속업무/어항개발관련 업무/조선산업특구 공유수면매립 관련업무/국가어항지정 관련업무
1	연안관리기획 및 업무전반/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관련업무/연안정비사업 관련 업무/불법어업지도·단속업무/어항개발관련 업무/조선산업특구 공유수면매립 관련업무/국가어항지정 관련업무
1	불법어업 지도·단속/공유수면관련업무/유람선일반/동력수상레저기구일반
1	어항시설사용 허가 및 신고/낚시어선업 신고 및 관리/어촌종합개발사업/수산 자원보호구역/어업인 교육 지도
1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총괄
2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전반

자료 : 고성군청 홈페이지(<http://www.goseong.org/>)

(2) 속초시

- 속초시에서는 해양수산과 해양기획팀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어선등록 및 어선 건·개조 업무, 어선법 위반 행정처분 및 어선관련 민원업무, 어업면허 및 어업권관리(정치성구획어업허가 포함), 유도선 관련사무,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자율관리어업육성 및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관련사무, 수산관계 피해복구사업 및 어업인 동향관리, 농어촌진흥기금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3) 양양군

- 양양군에서는 해양수산과 자원개발팀에서 해양사고 어업인 지도 및 관리, 신 어구·어법 개발 및 시험조업, 어로시설 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어로시설사업 계획 및 추진, 내수면 개발, 어도시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및 홍보, 내수면 자원 조성 및 이식승인, 수산물원산지표시 단속, 홍보 및 과태료 처분, 수산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새농어촌 건설운동, 수산업 경영인 육성, 내수면 인·허가 및 신고, 어업전문지 보급사업, 어업지도선 운영 및 관리, 낚시 어선업 신고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어업 담당 공무원은 2명임

<표 3-18> 양양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불법어업단속, 수산물유통
1	낚시어선업 신고, 안전조업지도

자료 : 양양군청 홈페이지(<http://www.yangyang.go.kr/>)

(4) 강릉시

- 강릉시에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지원 담당 팀에서 어업지원부서 총괄,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불법어업 단속, 어업인 생활지원, 어선 현대화, 낚시 어선, 후계자 관리, 어선 안전조업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5) 동해시

- 동해시에서는 해양정책과 해양정책담당에서 해양수산 정책개발 및 발전계획 수립, 어업인 생계 종합대책 수립, 어업면허 등 어업권 운영관리, 외국과의 어업협정 및 EEZ입어 허가처분, 어업 허가처분 및 어선 등록관리, 낚시어선 허가처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영어조합법인 관리, 수산업 경영인 육성, 전업어가 육성, 귀어가 관리, 산업기능요원 추천 및 관리, 해양·수산분야 충무계획 수립 시행, 해양수산 단체관리 및 어업인 교육, 보호수면 지정 및 수산자원 보존지역 관리, 수산물 생산지도, 기본통계 조사 관리, 해양수산시책 홍보, 어업 분쟁 조정, 어업피해 보상관련 업무,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 관리, 해양수산정책자금 운영,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지도, 기상특보 발효 시 사전조치 및 비상근무, 해양사고 조치 및 해양사고 어업인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음. 지도·단속 관련 업무는 2명이 담당하고 있음

<표 3-19> 동해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불법어업 지도·단속(해면 및 내수면), 범칙어선단속 및 행정처분 집행,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관리, 외국과의 어업협정(EEZ입어허가)관리, 어업인 및 해양수산단체 동향관리, 어구실명제 정착지도, 해양수산관련 법령. 제도개선, 과내 회계업무
1	연·근해어업 허가 처분 및 관리, 어선등록 및 어선관리, 낚시어선업 허가처분 및 관리, 수산업경영인, 전업어가육성, 귀어가관리, 산업기능요원 추천,관리, 수산물생산지도, 해양수산기본통계관리,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 기상특보발효시 사전조치 및 비상근무, 해양사고어업인 관리, 과내 일반서무

자료 : 동해시청 홈페이지(<http://www.dh.go.kr/>)

(6) 삼척시

- 삼척시에서는 해양수산과 연안개발팀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3명이 담당하고 있음

<표 3-20> 삼척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연안개발 업무 총괄, 어업질서 확립 및 종합계획 수립, 불법어업예방 및 지도·단속, 범칙어선행정처분 및 집행, 불법어업자 전업지도, 수산사범 사건처리, 어로시설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노후어선,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어선용 기계공급/어선인양기 시설사업)
1	안전조업지도 및 해양사고 방지대책 수립, 태·폭풍래습 예방대책 추진, 수산피해조사 및 복구, 사후관리(어망,어선),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지도 관리,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불법어업 단속상황 보고(해면, 내수면), 수산물 유통·가공
1	어업지도선 운항, 일일 출어선 파악,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어구 안전관리

자료 : 삼척시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나) 경상북도

-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06년 159명, 2007년 158명, 2008년 17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을 겸임하는 공무원은 2006년 64명에서 2007년 66명으로 증가하였음

<표 3-21> 경상북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구분	계	구 분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2006	159	18	141	64
2007	158	18	140	66
2008	173	18	155	66

자료 : 경북도청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경상북도에서는 농수산국 수산진흥과에서 총 10명의 공무원이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22> 경상북도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어업지도 업무 총괄 관리, 불법어업단속 근절대책 수립 추진, 어선 및 어선원 보험지원 사업,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
1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어업허가 행정처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 수산사업추진(기금 및 보조사업)
1	어업허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불법어업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 어선안전조업 대책 및 해양사고 등 관리,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2	불법어업지도 등(어업지도선 근무)
2	불법어업 지도·단속
1	어업지도선 통신업무, 불법 어업지도·단속, 네트워크관리
1	어업지도선 201호
1	어업지도

자료 : 경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yeongbuk.go.kr/>)

(1) 포항시

- 포항시에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지도 담당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어업지도·단속, 어선행정처분,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 어선어업 허가 및 시험교습허가, 어업지도선 관리, 어린이 바다탐구 체험교실 운영, 어선에 관한 지원사업
 - 어선등록, 외국과의 입어허가 지원, 낚시어선업 관리
 - 어업지도선 운항

(2) 울진군

- 울진군에서는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에서 1명의 공무원이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구조조정, 양식어장 정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3) 영덕군

- 영덕군에서는 해양수산과 어업관리담당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어업관리담당업무 전반, 수산자원특화단지조성사업 전반, 피해복구 전반, 어업관리시책업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통발어업보상업무,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법경찰관 관리 업무,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조사 및 송치, 어구 실명제, 생분해성어구사업, 내수면 허가 및 신고 관련 업무,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및 지도관리, 어도시설 및 관리 관련업무, 내수면 치어방류사업

(4) 경주시

- 경주시에서는 해양수산과 수산행정 담당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 수산재해 및 어업피해 보상,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안전조업지도 등이 있음

(5) 울릉군

- 울릉군에서는 해양수산과 해양시설 담당 팀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23> 울릉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한·중·일EEZ업무에 관한 사항,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행위 행정처분, 어업지도선 관리
3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

자료 : 울릉군청 홈페이지(<http://www.ulleung.go.kr/>)

다) 울산시

-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최근 3년간 20명으로 변화가 없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을 겸임하는 공무원도 10명으로 인원 증감이 없음

<표 3-24> 울산시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구분	계	구분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2006	20	11	9	10
2007	20	11	9	10
2008	20	11	9	10

자료 : 울산시청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울산시에서는 경제통상실 항만수산물에서 항만, 어촌, 수산, 해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업지도·단속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은 총 9명임

<표 3-25> 울산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어업지도 업무 총괄
1	불법어업지도·단속, 수산물유통가공
7	불법어업지도·단속

자료 : 울산시청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2) 서해권

가) 경기도

-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최근 3년 동안 29명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직을 겸임하는 공무원도 14명으로 변화가 없었음

<표 3-26> 경기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구분	계	구분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2006	29	29	-	14
2007	29	29	-	14
2008	29	29	-	14

자료 : 경기도청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경기도에서는 지도·단속 업무를 농정국 해양수산과와 경제농정국 축수산 산림과 이 두 개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음. 전자는 해수면을 담당하고, 후자는 내수면을 담당하고 있어 지도·단속업무가 통합되지 않고, 따로 실시되고 있음

<표 3-27> 경기도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비고
7	불법어업 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1	연근해어업 허가 불법어업단속 어선 안전 조업지도	
1	예산편성 및 정산, 회계, 표창 / 수산정책자금, 어촌투자유치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 수급 /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 등록 관리 / 어업지도선 경기212호 운영관리	
1	수산자원조성, 어업생산기반구축, 내수면 생태계 및 환경보전, 불법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업무	경제농정국 축수산 산림과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1) 부천시

- 부천시에서는 농산 지원과 농업경영팀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내수면 어업허가, 신고, 관리 등 주로 육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2) 시흥시

- 시흥시에서는 농수산과 수산계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낚시 어선업과 어업구조 조정사업 등도 같이 병행하고 있음
 - 어업면허, 어장관리, 수산재해, 해양오염방지, 내수면어업 허가 및 신고·관리, 불법어업 지도, 낚시 어선업, 어업구조조정 사업 등

(3) 화성시

- 화성시에서는 축수산과의 해양지도 담당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이외에도 오염방지 등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음
 - 어선등록 인허가,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 허가, 해양오염 방지

(4) 평택시

- 평택시에서는 축수산과 수산팀에서 수산관련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해면수산사업추진, 어선등록관리·연안통합관리, 연근해어업허가 및 구조조정

나) 인천시

-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06년 19명에서 2007년 22명, 2008년 22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을 겸임하는 공무원은 최근 3년 동안 7명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8> 인천시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구분	계	구분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2006	19	12	7	
2007	22	15	7	
2008	22	15	7	

자료 : 인천시청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인천시에서는 항만공항 물류국 소속 해양수산과에서 수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 32개 업무 중 지도·단속과 관련된 업무로는 수산단체 지도감독, 수산제조업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 및 범칙어선 행정처분 등 4개 업무가 있음. 담당 공무원은 총 10명임

<표 3-29> 인천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어업지도팀 업무 총괄, 행정처분
1	범칙어선 사건송치 및 행정처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장확장 등
1	어업허가 및 어선관리 등에 관한 업무
1	어업지도선 운항총괄 (선장)
1	어업지도선 운영에 관한 업무
1	어업지도선 선장
1	어업지도선 기관장
1	어업지도선 항해사
1	어업지도선 관리
1	인천시 클린호 기관원

자료 : 인천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다) 충청남도

-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06년 32명, 2007년 32명, 2008년 31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을 겸임하는 공무원도 2006년 32명에서 2008년 31명으로 감소하였음

<표 3-30> 충청남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구분	계	구분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2006	32	5	28	32
2007	32	5	28	32
2008	31	5	28	31

주 : 시·군은 보령시 7명, 서산시 6명, 서천군 3명, 홍성군 3명, 태안군 4명, 당진군 5명임
 자료 : 충남도청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충청남도에서는 농림수산물 수산과의 어업지도 파트에서 수산관련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용, 불법 어업단속(해면, 내수면) 및 어업질서 확립 대책수립 추진, 어로시설 사업 및 수산기자재 지원 및 관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 어업인 교육, 어선관리 및 안전조업 지도·감독, 수산재해 예방대책 및 피해조사 보고, 어로시설 및 어구·어망 피해복구, 방치 폐어선 관리, 출어선 조업현황 파악 및 보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지도 및 관리, 근해어업 허가 및 연안어업 허가, 어획물 운반업 등록, 어업신고 등 지원 관리, 어업협정에 관한 사항 (주변국과의 입어협정), 해면 수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바다낚시 업무에 관한 사항, 어선어업 관련 피해분쟁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지도·단속 업무는 총 4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31> 충청남도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어업지도담당 업무총괄 및 기획조정,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확립지도, 어업허가·행정처분 지도 조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 및 조정, 낚시어선업 운영 및 영업구역 조정
1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해면 및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질서 확립대책 수립 추진, 민간자율 불법어업감시단 운영, 어선(낚시어선)안전조업 및 해양사고 예방, 어선등록 및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방치폐어선 처리사업 및 관리, 어선표지판약호부여에 관한 사항, 어선·어선원 공제가입 업무 추진

담당	주요 업무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친환경어선, 안전설비지원 등 어로시설 사업 추진, 근해어업허가 및 행정처분, 배타적 경제수역 입어허가에 관한 사항, 연안어업허가, 어업신고, 어획물운반업 등록 지도 감독, 불법어업단속지원, 어선, 어구·어망 피해복구, 허가어업 조정관리, 해적생물구제사업 추진, 어구수선장 및 어선저유소설치사업 추진,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1	과내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문서이관, 폐기 등 기록물 정리업무, 과내 물품관리,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과징금, 과태료 징수, 어업허가관련 민원 보조

자료 :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1) 태안군

- 태안군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수산행정, 어업지도, 연안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어업지도 업무는 3명이 담당하고 있음
- 주요 업무로는 관공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어업 지도·단속, 수산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수산기술자 훈련 및 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어업 총 조사 실시, 어획물 양륙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범칙어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선 안전 조업 지도, 친환경 어선건조 및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낚시 어선업 신고 및 수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및 관리, 무공해 낚시 추 제작 보급 등이 있음

(2) 홍성군

- 홍성군에서는 농수산과 수산해양 파트에서 어업지도선 운항 관리, 낚시어선법 신고, 어업지도선 수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3) 보령시

- 보령시에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지원팀(수산 3명, 기능 7명)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어선어업의 안전적 운영을 위해 노후어선 기관 대체, 친환경 어선건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어업 근절 및 해양사고 예방 등의 업무 추진
 - 어선등록 관리 및 전산입력, 방치폐어선 처리사업, 노후어선대체사업 및 사후관리, 어선용 기계 공급사업, 어선기관 대체사업, 어업질서 확립대책 수립 추진
 -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용, 해면 및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국제규제 사업 추진, 자율관리어업 관련 전반, 수산피해 예방 및 피해총괄

에 관한 사항, 수산피해(어선, 어구·어망) 복구사업, 낚시 어선업 신고 및 관리
-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해양사고 예방, 불법어업자 합법어업 전업 지도,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및 해면단속 지원, 어선 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기타 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어업지도 및 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4) 서천군

- 서천군에서는 해양수산과 산하 수산정책 담당, 수산자원 담당, 항만연안 담당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건처리,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조업 지도에 관한 사항, 항로표지 업무에 관한사항 등이 있음

라) 전라북도

-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08년에 51명으로 조사되었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직을 겸임하는 공무원은 25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2> 전라북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구분	계	구분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2006	-	-	-	-
2007	36	13	23	25
2008	36	13	23	25

자료 : 전북도청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전라북도에서는 농수산식품국 해양수산과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10명이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3-33> 전라북도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수산물 생산담당 1	내수면 어업개발계획 추진, 내수면 사업추진 및 지도관리,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수산동식물 이식승인 관련, 수산분야 재해업무추진 등
해양환경담당 1	공유수면, 행정처분, 불법어업
어업지도 선장 외 7	어업지도선(207호) 운항 및 단속 추진

자료 :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1) 군산시

- 군산시에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지도담당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관공선 운영관리,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집행, 범칙어선 과징금 부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수산관계법령 위반 사건송치 관련 업무, 수산분야 재해대책 업무추진, 안전조업 및 해양사고 방지, 특별사법경찰 관리 업무, 행정선 기관운전, 공구 관리, 기관유지 전반, 어업지도담당 업무 전반, 기관 보조, 공구 및 일지정리 등이 있음
-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은 총 10명으로, 각각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34> 군산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어업지도 업무 전반/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획수립/재해대책 계획수립
1	사건송치 관련 업무/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어업질서 확립자금 지원사업
1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집행/범칙어선 과징금 부과/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1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총괄/불법어업 지도·단속
1	기능운영관리 전반/기관정비 및 보존/불법어업 지도·단속
1	비품 및 기기관리/불법어업 지도·단속
1	항해 및 선용품 관리/선체보관 및 수리/불법어업 지도·단속
1	어업지도선 통신관련 업무/선내 제규율에 관한 사항/불법어업 지도·단속
1	어업지도선 갑판정리 및 관리/불법어업 지도·단속
1	기관부 비품보관 및 관리/선내전기 및 발전/불법어업 지도·단속

자료 :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2) 부안군**

- 부안군에서는 해양수산과 수산지도담당에서 수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바다청소 및 바다의 날 행사추진, 해상경계수역 조정,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업 단속, 연안 해운·해양사고 예방 및 지도, 수산재해 예방·피해 조사·복구계획 수립, 격포 다기능 어항개발사업 추진, 어촌·어항 관광개발 및 활성화 추진, 연안정비 사업 추진,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폐어선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사업,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사업 추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및 관리, 방치폐선 처리사업 추진, 어촌종합 개발계획 수립, 어촌종합 개발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해양오염 피해보상 처리 및 수습, 어항시설물 사용협의,

국가·지방어항 폐기물 청소,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어항구역 내 불법시설 점검 및 정비, 위도·식도 여객선터미널 사용허가, 해수부 소관 해수욕장 관련업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아름다운 어촌 만들기 지원 사업,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체험행사 추진, 어업감독공무원 지정 및 사법경찰관 관리,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관리, 낚시어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도서민 여객운임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위도 여객선(화물선 포함) 건조 지원, 소관 행정재산 관리 등임

- 수산지도 담당 공무원은 총 9명으로, 그 중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4명이고,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35> 부안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업 지도 단속
1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낚시어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1	연안해운해양사고 예방 및 지도,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체험행사 추진
1	불법어업 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자료 :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

(3) 고창군

- 고창군에서는 해양수산과 수자원 관리담당에서 총 8명의 담당 공무원이 수산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5명이고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36> 고창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불법어업 지도·단속, 특화품목 갯벌 풍천장어 현대화 시설사업 추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1	어업지도선 총괄운영
1	어업지도선 운영관리(갑관)
1	어업지도선 운영관리(기관)
1	어업지도선 운영관리(기관보조), 불법어업 DB구축, 불법어업 사건송치

자료 :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마) 전라남도

-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최근 3년간 37명으로 변화가 없고,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겸임하는 공무원 수도 4명으로 인원 변화가 없음

<표 3-37> 전라남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구분	계	구분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2006	37	4	33	4
2007	37	4	33	4
2008	37	4	33	4

자료 : 전남도청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전라남도에서는 해양수산환경국 수산자원과 어업지도 담당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지도담당업무 전반, 어업질서 확립 대책 수립 추진, 적조피해 예방대책 수립 추진, 어선안전조업 대책 수립 추진,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일상경비 집행,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홍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관리, 해적생물 구제 사업,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감시관 운영 등이 있으며,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3명으로,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38> 전라남도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어업지도담당 업무전반
1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운영 등
1	불법어업자 관리 등

자료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1) 영광군

- 영광군에서는 해양수산과 수산경영 담당에서 수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총 18명이고 그 중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 4명으로, 각각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39> 영광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전반
1	어업지도선 기관업무
1	어업지도선 통신장비 전반 운영관리
1	어업지도선 입출항 준비 및 신고

자료 : 영광군청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2) 무안군

- 무안군에서는 해양수산과 해양자원 담당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2명으로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40> 무안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해양자원업무 총괄/어업지도선 217, 229호 운영관리 총괄/어업질서확립 대책 수립/수산물 수출입에 관한사항
1	보호 육성수면 지정관리/총어획량 설정 관리/불법어업 지도·단속/어선 안전 조업 지도/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지원/수산자원조성 관리

자료 : 무안군청 홈페이지(<http://www.muang.go.kr/>)

(3) 목포시

- 목포시에서는 경제환경 수산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책임관에서 총 3명이 수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1명임

<표 3-41> 목포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업지도·단속/어업지도선 운영/수산물원산지지도·단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수산물 가공, 유통 업무

자료 :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4) 신안군

- 신안군에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지원 담당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총 6명으로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42> 신안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불법어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1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및 선원관리단속/불법모래채취단속
1	어업지도선 기관업무 관리
1	어업지도선 선체 및 갑판관리
1	전남213호 기관업무관리/전남213호 기관운영 정비점검/기관 행정업무/기관용품 및 부품관리
1	행정선 선체 및 갑판관리

자료 :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5) 진도군**

- 진도군에서는 해양수산과 수산정책 업무 팀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 6명의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3-43> 진도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해양수산진흥 종합개발계획 수립, 해양수산 기획, 조정에관한 사항, 해양수산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어업질서확립대책 총괄
1	불법어업단속/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다목적인양기 사업/수산물인양기수리사업
1	전남 215호 운영 총괄
1	215호 어업지도선 기관 업무관리, 어업지도선 기관 운영 및 정비 점검
1	전남 712호 갑판부 전반, 해사채취 지도·단속
1	어업지도선 근무

자료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6) 해남군**

- 해남군에서는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5명), 어업생산담당(5명), 해양자원담당(5명), 수산물 유통담당(3명)이 수산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 중 해양자원 담당과에 어업지도선장 1명이 배속되어 불법어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7) 강진군

- 강진군에서는 해양수산팀에서 총 74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지도 단속과 관련된 업무로는 어업인 교육 홍보·지도, 유해약품 사용 지도 단속, 어선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사항, 해양오염 사전지도 단속, 불법어업자 사후관리 지도, 내수면 어업육성 및 지도 단속, 수산물 가공업 신고수리 및 지도, 수산물 유통 및 원산지표지 지도 단속, 불법어업 근절대책 계획 수립 및 지도 단속, 불법어구의 제작·소지·판매 단속,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어업지도선 선원관리 감독 등 12개의 업무가 있음

(8) 여수시

- 여수시에서는 관광문화수산국 어업생산과에서 어업지도담당 부서를 두어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불법어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4명임

<표 3-44> 여수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3	불법어업지도
5	전남 919호 관련 담당 공무원
4	전남 212호 관련 담당 공무원
3	전남 202호 관련 담당 공무원
4	전남 921호 관련 담당 공무원
2	어업지도선 선장, 기관장
2	행정선 기관장, 항해 담당
1	행정선 전남 516호 담당

자료 :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9) 고흥군

- 고흥군에서는 수산과 수산지도부서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요 업무로는 수산지도 업무 전반, 어업지도선 업무 등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총 6명임

<표 3-45> 고흥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수산지도 업무 전반
1	어업질서 확립 업무
4	어업지도선 업무

자료 : 고흥군청 홈페이지(<http://www.goheung.go.kr>)

3) 남해권

가) 부산시

-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06년 83명, 2007년 95명, 2008년 9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을 겸임하는 공무원은 2006년 34명에서 2007년 35명, 2008년 36명으로 증가하였음

<표 3-46> 부산시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구분	계	구분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2006	83	31	52	34
2007	95	32	63	35
2008	94	31	63	36

자료 : 부산시청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부산시에서는 해양농수산물 어업조정 담당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29명에 달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타남

<표 3-47> 부산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불법어업 지도·단속 총괄기획, 해양사고 사후수습 총괄기획, 부산신항 건설관련 어업보상 총괄, 불법어업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총괄
1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 연근해어업 해양사고 관련업무, 사건 지휘·건의(송치), 관공선(부산201호,221호) 승무원 관리에 관한사항,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어업분쟁, 어업조정에 관한사항
1	어업인 교육, 내수면 불법어업 업무, 수산재해예방 및 지도, 명예감시관 및 감시선 관련 업무

담당	주요 업무
1	부산 신항 건설 관련 어업보상에 관한 사항,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 어업조정 관련 의회 및 국회관련 업무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 근해어선 행정처분, 어업협정위반어선 사건 처리 및 행정처분, 어업지도 관련 소송에 관한사항
1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에 관한 사항, 사건송치관련 업무 보조, 연근해감척업무 보조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건처리, 어업지도선 부산201호 운항 및 관리총괄, 해양사고어선의 긴급구호 및 어선 안전조업지도, 외국어선의 조업 동태 파악 보고 및 지도·단속, 기타 어업지도·단속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기관비품 및 소모품관리, 청구에 관한 사항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기관부 업무 총괄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항해, 갑판업무 총괄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통신관련 업무 및 영상회의실 총괄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갑판 소모품 수급 및 관리, 승무원 교육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기관기기 정비에 관한 사항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선체 및 갑판정비, 갑판장비 점검 및 보수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기관기기 정비에 관한 사항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선내·외 서무관련 업무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기관부소관 장비품 관리 및 대장정리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전기계통 전반에 관한 유지, 관리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취사용품 및 주부식 수급, 관리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기관기기 정비에 관한 사항
1	어업지도선 위생업무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선박항해, 장비, 비품 관리
1	어업지도선 부산221호 운항 및 관리총괄,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사고 어선의 긴급구호 및 어선 안전조업지도, 외국어선의 조업동태 파악보고 및 지도, 단속, 기타 어업지도·단속관련 지시사항의 이행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기관운전 정비 및 소모품 관리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기관업무 총괄 및 유류수불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선박항해, 장비, 비품 관리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선박항해, 안전장비 관리 및 선체정비에 관한 사항
1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선대 통신업무 및 통신장비 관리
1	사법업무추진, 불법어업지도·단속

자료 : 부산시청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나) 경상남도

-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06년 68명, 2007년 67명, 2008년 69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을 겸임하는 공무원은 2007년까지 31명에서 2008년 32명으로 1명 증가하였음

<표 3-48> 경상남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구분	계	구분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2006	68	10	58	31
2007	67	10	57	31
2008	69	10	59	32

자료 : 경상남도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경상남도에서는 어업진흥과의 어업지도담당 팀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어업 질서 확립 종합 대책 수립, 불법 어업 예방·지도 단속(총괄), 내수면 불법 어업 지도·단속, 어선 안전 조업 지도 및 교육, 해안 사고 예방 지도,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어업 협정 관련 어업인 교육 및 홍보, 불법 어업 신고 센터 관리·운영, 특정 해역 어선 관리·지도, 한·일, 한·중 어업 협정에 따른 출어선 관리 및 조업 지도, 수산 관계 법령 위반 어업자 행정 처분 집행, 한·중·일 배타적 경제 수역 입어 절차 및 신청 등이 있음. 담당 공무원은 총 10명이 있으며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49> 경상남도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 총괄/시·군 지도·단속업무 독려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 담당 소관업무 총괄·조정 및 의회 관련 업무
1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관한 업무 / 어업지도담당 소관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불법어업인 전업대책 및 사후관리 / 불법어업관련 홍보·교육·회의 등에 관한 업무
1	불법어업 지도·단속(해면 및 내수면) / 내수면어업 개발 및 지원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 낚시어선의 운영관리 / 해면 및 내수면어업 지도·단속 통계·월보 업무
1	불법어업 지도·단속(해면 및 내수면) / 어업지도선(승무원)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 명예감시선(관) 지도·관리에 관한 업무 / 담당 내 예산 서무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5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1	통신기기 점검 및 외부통신

자료 : 경남도청 홈페이지(<http://www.gsnd.net/>)

(1) 남해군

- 남해군에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 4명의 공무원이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3-50> 남해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어업질서 확립대책 및 불법어업 단속/수산사범 지휘 및 사건송치/범칙어선 행정처분/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어선인양기 및 기타 어로시설사업
3	어업지도선 선장, 기관장, 갑판장

자료 : 남해군청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2) 통영시

- 통영시에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지도담당 팀에서 불법어업 근절대책수립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질서 확립 자금지원 및 관리, EEZ 관련 업무, 어업지도선 관리, 해양사고 수습 및 사후관리, 범칙어선 행정처분(연안·근해·취소), 낚시어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혼획 고래포획 관련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도·단속 업무는 총 7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51> 통영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불법어업 지도·단속(총괄)/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해양사고 수습 및 사후관리/어업지도·단속
1	불법어업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어업지도선·단속차량 관리/수산사범경찰 업무/불법어업지도 및 단속/불법어업자 관리 및 전업지도
1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범칙어선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낚시어선어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업무/EEZ관련업무/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선)
1	어업지도선 운항관리(전반)
1	어업지도선 운항관리(항해, 갑판)
1	어업지도선 운항관리(기관)
1	어업지도선 관리

자료 : 통영시청 홈페이지(<http://www.tongyeong.go.kr/>)

(3) 사천시

- 사천시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지도를 담당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은 총 8명으로 조사되었음

<표 3-52> 사천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어업지도업무 기획조정 총괄, 어업지도 및 불법어업 근절 대책에 관한 사무, 교육에 관한 사무, 어업 분쟁에 관한 사무, 어업지도선 직원관리·감독에 관한 사무
1	어업지도, 불법어업 예방지도 및 단속, 어업지도선 운용 및 관리, 어업인 교육, 불법어업자 수사 및 사건처리, 범칙어선 행정처분, 어선피해 복구 및 어로시설 사업
1	어선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사항, 어선 건조, 개조 발주허가 및 지도·단속, 어선표지판 제작 관리
1	어선등록(신규, 변경, 말소 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어선 건조, 개조 발주허가 및 지도·단속, 어선표지판 제작 관리 등 업무, 어선관계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 어업지도, 불법어업 예방 지도 및 단속보조
4	불법 어업 예방 지도 및 단속, 어업지도선 관리

자료 :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4) 고성군**

- 고성군에서는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도·단속 업무는 총 6명의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음

<표 3-53> 고성군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연안관리기획 및 업무전반/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관련업무/연안정비사업 관련업무/불법어업지도·단속업무/어항개발관련 업무/조선산업 특구 공유수면매립 관련 업무/국가어항지정 관련업무
1	불법어업 지도·단속/공유수면관련업무/유람선 일반/동력수상레저기구일반
1	어항시설사용 허가 및 신고/낚시어선업 신고 및 관리/어촌종합 개발사업/수산자원 보호구역/어업인 교육 지도
3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총괄

자료 : 고성군청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5) 거제시

- 거제시에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자원담당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 중에서 지도·단속과 관련된 공무원은 총 9명임

<표 3-54> 거제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안전조업지도 및 해양사고 지도/불법어업지도 및 단속(사건 지휘·송치)/군항 수역 관리 지도 및 한·중·일 어업협정 관련 업무/원산지표시제도 지도 단속/고래류 업무관리 및 어업지도선 운영
1	어업인 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류사업)/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추진/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불법어업 행정처분 및 과징금/정 치망 어업권 관리 및 어업지도선 관리/인공어초시설 및 사후관리
1	불법어업 행정처분
6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자료 : 거제시청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6) 마산시

- 마산시에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지도 담당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총 5명임

<표 3-55> 마산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어업지도담당업무 종합관리/어선어업 분쟁에 관한 사항/안전조업지도
1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어업지도선 운영관리/사법경찰관 직무 취급 및 수산관련 법규 위반자 처리/불법어업자 전업추진 및 사후관리/행정소송에 관한업무
1	경남236호 종합관리 및 승무원 복무감독
1	경남 206호 어업지도선 운영보조 및 경남 236호 통신기 운영관리
1	경남 236호 기관운영 및 어업지도선 운영보조

자료 : 마산시청 홈페이지(<http://www.masan.go.kr/>)

(7) 진해시

- 진해시에서는 항만수산과 어업지도 담당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 6명의 공무원이 지도·단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3-56> 진해시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불법어업예방 및 지도·단속/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어선어업분쟁에 관한 사항/어선안전조업지도 및 전업지도/어업지도담당 전반에 관한 사항
1	불법어업자 행정처분(어업허가 취소, 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및 정지요구)/불법어구 제작 및 소지판매자 단속/수산물 유통 및 포장용기에 관한사항/월선조업, 전관수역 침범조업 위반자에 관한사항/수산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관리에 관한사항/수산가공업등록 및 신고
1	경남232호 운영 종합관리 및 승무원 복무 감독
1	경남232호 기관 운영관리 및 항해 보조
1	경남232호 통신기 운영관리 및 항해보조
1	진해호 쾌속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및 경남232호 보조

자료 : 진해시청 홈페이지(<http://www.jinhae.go.kr/>)

다) 제주도

-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07년 68명, 2008년 7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을 겸임하는 공무원은 10명으로 변화가 없음

<표 3-57>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 현황

구분	계	구분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2006	-	-	-	-
2007	68	34	34	10
2008	70	37	33	10

자료 : 제주도청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제주도에서는 해양수산물 수산정책과 어선어업 담당에서 총 5명의 공무원이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58> 제주도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 주요 업무 현황

(단위 : 명)

담당	주요 업무
1	한·중·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입어허가 및 한·중·일 어업협정에 관한 사항,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등
1	근해어선 및 연안어선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연근해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
3	어업지도선 삼다호

자료 :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

다. 해양경찰

1) 연혁 및 임무 내용

-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1953년 12월 내무부소속 해양경찰대로 태동한 이후로 1991년 8월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되고,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승격되었고,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상경비 활동으로 해상안보태세 확립과 해상안전을 확보하는 역할과 해상치안활동을 강화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²⁵⁾
- 해양경찰의 임무는 일반적인 경찰의 임무보다 영역이 넓으며 그 경계 또한 모호함.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⁶⁾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관한법률」에서는 경찰에 관한 사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행법에서 경찰의 임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음
- 경찰법에서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하고 있고,²⁷⁾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경찰의 직무범위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음²⁸⁾

25) EEZ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2. 7 해양수산부, p. 153

26)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3조.

27) 경찰법, 제3조.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그리고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서는 경찰사명으로서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규정하고 있음²⁸⁾
-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나타나 있어서 실정법상 해양경찰 임무의 내용과 범위는 모호함³⁰⁾
- 또한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경찰은 사회치안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한국경찰은 사회치안과 더불어 남북의 분단·대치로 인하여 국가보위와 직결되는 분야인 국가치안에도 주력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임
- 국가보위 활동으로서의 국가치안은 국가 목적치안³¹⁾이라고도 하며, 대간첩작전과 간첩 색출 및 대간첩 태세의 확립, 주요시설의 경비, 용공좌경분자의 단속, 불법 집단행동의 억제, 그리고 국가원수 등 요인 경호 등의 임무를 말함. 이 같은 임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찰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외국에서도 없지 않으나³²⁾ 그것은 예외적이고 부수적인데 반하여 한국에서 경찰의 국가보위 임무는 경찰임무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³³⁾
- 그리고 해양경찰은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구조하기 위한 해상구조 활동은 물론,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해양오염을 감시하고 방

28)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29)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30) 이황우, “경찰정신사와 경찰상 정립, 경찰 창설 50주년과 경찰의 좌표,” 「치안정책세미나」, 치안연구소, 1995, pp. 41-42.

31) 구광모, “경찰관행과 경찰관의 행태,” 「서재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동국대학교 논문발간위원회, 1989, p. 146.

32) John L. Sullivan,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New York: McGraw-Hill, 1977, p. 29.

33)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pp. 189-190.

제하는 해상오염 방지 임무도 수행하며, 여객선,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안전관리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해상교통안전 임무와 더불어 북한을 포함한 외세로부터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정보 및 보안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일본과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조직상의 차이점을 보면,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외청으로서 행정경찰기관인 데 비하여,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운수성에 속해 있으며, 행정관청으로서의 행정작용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사법경찰기관으로서 경찰작용을 하는 복합 기관임

<표 3-59> 해양경찰의 업무별 비중

업무기능	주요업무	근거법령	시설장비	인력(전경제외)
				정원 7,385명
안보	통합방위작전	통합방위법 EEZ관련법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선박안전조업규칙	함정 231척 헬기 17대 무선국 6개소 파출소 74개 출장소 245개	5,736
	책임항만방어			
	관할해역경비			
	선박통제			
	집적지역 어로보호			
경찰	해상수색 및 구조	수난구조법 형법·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출입국관리법 밀항단속법 국가보안법 관세법 해상교통안전법	특수구조대 형사기동정 28척	2,814명 (안보인력과 중복)
	중요인사 경호 해상테러 업무			함정, 신고소 요원은 복합업무 수행 전종인력
	범죄 예방 및 진압			
	경찰정보수집			
	입출국, 밀수, 해적 등 국제 성 범죄			
	해상교통질서 유지			
	국가보안활동			
해상안전	여객선 안전관리 유·도선 안전관리	한국해운조합법 유·도선 사업법	-	169명
해양환경	해양오염 감시단속, 해양오염 방제	해양오염방지법	방제정 19척	487명
기타	경무행정, 함정·무기 관리	경찰공무원법	본청·정비창· 학교 등	705명

자료 : 해양경찰청 내부자료

2) 해양경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의 문제

- 일반사법경찰관리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는 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등의 사법경찰관(형사소송법 제

196조 제1항; 검찰청법 제46조 제2항;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6조)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경사·경장·순경 등의 사법경찰리가 있음

-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어업감독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큰 차이점은 행정 권한과 사법권한과의 관계임. 즉, 어업감독공무원은 사법적 권한과 행정적 권한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지만,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권한은 있으나 행정권한이 없음
- 다시 말해서 사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피의자를 취조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상 피의자의 묵비권이 인정되고 있는데도, 행정감독은 그 권한에서 별칙에 의해 질문을 강요하고 있어 피의자의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³⁴⁾
- 이와 같이 사법권한과 행정권한의 목적이 분명하게 달라도 어업감독공무원에 의한 어업감독은 한편으로는 수산업법 관련법령의 이행을 위한 행정감독, 다른 한편으로는 범인을 수색하고 피의자를 취조, 기소하기 위한 사법권한으로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권한이 달라도 모순은 없음. 즉, 사법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행정권한으로 법령의 이행을 강요함³⁵⁾
-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어업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했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장주의와 강제수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증거보전청구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접견교통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어업감독에 관한 업무수행상 위법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질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수사 활동을 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조업중인 선박의 어구가 현행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어구를 양망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선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불가능함

34)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제15호에서 어업감독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5) 어업감독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어업법령의 위반을 감독할 경우에는 행정권한을 이용하고, 특히 범죄수사를 위한 피의자로서 취조할 경우에는 사법권한에 의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되 행정권한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金田禎之, 上掲書, 368面).

- 둘째, 행정기관에 대하여 사법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는 그 본래의 직무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더 많은 범죄를 인지하기 위함이며, 사법경찰관리는 수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권한이 행사될 수 있으며, 셋째, 사법경찰관리의 일상적인 업무 집행에 의해 어업자의 어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음

제2절 불법어업 단속 현황 분석

1. 기관별 · 유형별 단속 현황

가. 기관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 통계청의 불법어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 3,161건, 2005년 4,054건, 2008년 4,449건으로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관별 단속 비율을 살펴보면 본부의 경우 2000년에는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5년에는 약 18%, 2008년에는 약 25%로 단속 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해경이 단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이후로 약 50%로 절반을 상회하는 단속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2000년에는 약 35%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약 59%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약 56%로 단속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에는 약 48%의 높은 단속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2005년에는 약 25%, 2008년에는 약 19%로 단속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표 3-60> 기관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3,161	3,291	3,102	2,067	3,673	4,054	3,015	3,773	4,449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502	417	606	527	416	723	637	954	1,106
해양경찰청	1,112	1,152	495	234	2,132	2,427	1,624	1,950	2,502
지방자치단체	1,547	1,722	2,001	1,306	1,125	904	754	869	841
부산시	145	194	201	117	111	98	116	111	108
인천시	12	25	44	19	19	2	23	11	29
울산시	18	7	3	29	13	21	9	9	8
경기도	59	44	70	95	66	62	24	34	17
강원도	86	29	39	49	85	26	14	5	11
충청남도	179	162	73	103	131	85	80	132	74
전라북도	139	159	168	97	114	120	57	68	79
전라남도	555	653	920	359	303	305	248	141	155
경상북도	45	67	32	61	60	28	23	34	24
경상남도	245	287	397	347	201	137	151	309	305
제주도	64	95	54	30	22	20	9	15	3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나.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 시·군에서 단속한 불법어업의 단속 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6년에는 총 867건으로 그 중에서 무허가어업이 282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 건수를 나타내고 있음. 그 다음으로 어구 위반이 230건으로 나타났고, 조업구역·금지구역 위반은 15건으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1> 2006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구분	무허가	조업구역 금지구역	허가조건	어구위반	양식어업	기타	계
부산시	69	2		11	25	9	116
인천시	3	1	-	6	-	13	23
울산시	5	-	-	3	-	1	9
경기도	-	2	8	4	-	13	27
강원도	-	5	21	12	-	93	131
충청남도	19	1	6	54	-	-	80
전라북도	17	-	8	30	-	2	57
전라남도	151	2	4	46	45	-	248
경상북도	-	1	3	10	-	11	25
경상남도	18	1	25	54	36	17	151
제주	-	-	-	-	-	-	-
총계	282	15	75	230	106	159	867

자료 : 각 시·도별 설문조사 종합

- 2007년의 경우는 총 859건으로 2006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음. 당해에는 어구위반이 248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무허가어업이 209건으로 나타났음. 조업구역·금지구역 위반은 37건으로 여전히 적은 단속 건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6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62> 2007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구분	무허가	조업구역 금지구역	허가조건	어구위반	양식어업	기타	계
부산시	73	11	2	18	3	4	
인천시	4	1	-	4	-	2	11
울산시	3	-	-	1	-	5	9
경기도	2	8	6	2	-	33	51
강원도	-	6	18	7	-	126	157
충청남도	40	2	1	89	-	-	132
전라북도	3	-	13	36	-	16	
전라남도	73	1	4	23	24	16	141
경상북도	-	-	4	12	-	18	34
경상남도	11	7	7	53	67	164	309
제주	-	1	5	3		6	15
총계	209	37	60	248	94	390	859

자료 : 각 시·도별 설문조사 종합

- 2008년에는 총 단속 건수가 808건으로 무허가 단속이 25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위반사항이 439건으로 그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63> 2008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구분	무허가	조업구역 금지구역	허가조건	어구위반	양식어업	기타	계
부산시	75	12	4	13	1	3	-
인천시	11	12	-	1	-	4	28
울산시	-	-	-	1	-	7	8
경기도	4	-	9	2	-	9	24
강원도	-	4	32	12	-	113	161
충청남도	11	2	3	58	-	-	74
전라북도	33	-	5	25	-	16	-
전라남도	95	5	2	17	8	26	153
경상북도	-	-	3	9	-	12	24
경상남도	29	9	-	41	2	224	305
제주	1	1	1	-	3	25	31
총계	259	45	59	179	14	439	808

자료 : 각 시·도별 설문조사 종합

2. 권역별 단속 현황

가. 동해권

1) 강원도

- 최근 3년간 강원도의 불법어업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 131건, 2007년 157건, 2008년 157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자망어업이 3년 동안 가장 많은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면허어업과 기타어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자망어업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단속 건수의 변동이 심한 채낚기어업, 면허어업 등 기타 다른 어업에 대해서도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임

<표 3-64> 강원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업종별	'06	'07	'08
계	131	157	161
트롤	1	10	4
저인망	10	2	3
채낚기	6	35	14
통발	5	5	3
자망	57	74	89
복합어업	4	2	12
구획어업	2	2	4
면허어업	30	8	24
기타	16	19	8

자료 : 강원도청 설문결과

2) 경상북도

- 경상북도의 경우, 2006년에는 25건, 2007년에는 34건, 2008년에는 24건으로 단속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로 자망어업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예방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5> 경상북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업종별	'06	'07	'08
계	25	34	24
중형기저	1	-	-
잠수기	-	1	1
자 망	20	26	15
통 발	4	7	8

자료 : 경상북도청 설문결과

3) 울산시

- 울산시의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 9건, 2007년에 9건, 2008년에 8건으로 단속 건수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음. 주로 양식어업과 구획어업에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울산시에서는 양식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단속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6> 울산시 불법어업 단속현황

업종별	'06	'07	'08
계	9	9	8
삼중자망	3	1	1
연안통발	2	1	-
기타(양식어업, 구획어업)	4	7	7

자료 : 울산시청 설문결과

나. 서해권

1) 경기도

- 경기도의 불법어업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27건, 2007년도 51건, 2008년도 25건으로, 2007년도에 소폭 상승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타어업이 가장 많은 단속건수를 나타내고 있고,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이 그 뒤를 잇고 있음. 2007년의 경우 기타어업의 단속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따라서, 기타어업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를 줄이기 위한 예방 노력과 연안개량 안강망 어업의 불법어업 예방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7> 경기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업종별	'06	'07	'08
계	27	51	25
연안개량안강망	9	5	6
연안자망	2	8	4
연안통발	1	5	3
근해통발	1	1	2
근해형망	7	9	1
근해안강망	6	2	1
근해자망	-	1	1
기타	1	20	7

자료 : 경기도청 설문결과

2) 인천시

- 인천시의 불법어업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23건, 2007년도 11건, 2008년도 28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연안 통발어업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기타어업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가 감소하였지만, 연안자망어업의 불법어업 건수가 소폭 증가하는 등 불법어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활동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8> 인천시 불법어업 단속현황

업종별	'06	'07	'08
계	23	11	28
대형기저	1	-	-
연안자망	2	4	6
연안통발	4	5	14
기타	16	2	8

자료 : 인천시청 설문결과

3) 충청남도

- 충청남도의 불법어업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80건에서 2007년도 132건, 2008년도 74건으로 2007년도에 소폭 상승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2중 이상 자망 단속 건수가 감소하였고, 기타어업에 대한 단속 건수도 감소되었기 때문임
- 다른 어업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불법어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2중 이상 자망과 기타어업에 대한 단속 건수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9> 충청남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업종별	'06	'07	'08
계	80	132	74
소형기저	7	1	1
레저(스쿠버)	-	8	3
자망	-	11	6
근해/개량안강망	1	16	-
조망(새우망)	2	7	1
통발	8	12	3
2중 이상 자망	25	32	28
잠수기	10	9	8
형망	4	4	1
양조망(소형선망)	4	-	1
삼각망	2	8	3
기타	17	24	19

자료 : 충청남도청 설문결과

4) 전라북도

- 전라북도의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46건, 2007년도에 44건, 2008년도에 61건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주로 단속되는 업종으로는 연안자망어업이고, 2008년도에 양조망어업의 단속 건수가 증가하였고, 기타 단속 건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양조망어업에 대한 불법어업 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함

<표 3-70> 전라북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업종별	'06	'07	'08
계	46	44	61
삼각망	-	3	1
잠수기	1	-	2
형망	1	1	2
삼중자망	5	8	8
연안통발	12	7	9
연안복합		9	3
연안자망	13	6	12
새우조망	4	-	5
양조망	-	8	19
소형기저	-	2	-
선인망	10	-	-
기타	9	24	18

자료 : 전라북도청 설문결과

다. 남해권

1) 부산시

- 부산시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116건, 2007년도에 111건, 2008년도에 108건으로 단속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하였고, 그 이외에 기타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2중 이상 자망사용에 대한 예방 및 지도가 우선되어야 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71> 부산시 불법어업 단속현황

업종별	'06	'07	'08
계	116	111	108
중형기저	-	-	2
소형기저	-	1	-
잠수기	1	1	1
형망	13	15	22
2중 이상 자망	24	31	24
연안통발	8	11	19
연안자망	13	16	3
새우조망	1	1	-
선망	-	-	-
권현망	-	-	-
기타	56	35	37

자료 : 부산시청 설문결과

2) 경상남도

- 경상남도의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151건에서 2007년도 309건, 2008년도 305건으로 단속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호망, 각망, 건망의 불법어업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외에도 양식어업과 삼중자망의 불법어업 건수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활동과 지도 및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72> 경상남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업종별	'06	'07	'08
계	151	309	305
대형기저	1	-	-
소형기저	1	1	-
잠수기	24	-	-
형망	3	-	3
삼중자망	29	25	32
연안통발	9	9	12
연안자망	1	6	1
새우조망	8	6	6
연안복합	-	1	-
호망, 각망, 건망	-	170	185
들망	-	13	2
양식어업	-	67	47
기타	75	11	17

자료 : 경상남도청 설문결과

3) 전라남도

- 전라남도의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248건, 2007년도에 141건, 2008년도에 153건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연안통발의 단속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어업 부분도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기타어업의 불법어업을 줄이기 위해 유형별 불법어업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연안통발어업에 대한 지도 및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73> 전라남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업종별	'06	'07	'08
계	248	141	153
대형기저	1	-	-
대형트롤	1	-	-
중형기저	-	-	-
소형기저	8	1	2
잠수기	-	1	2
형망	9	1	4
삼중자망	30	25	28
연안통발	37	16	40
연안자망	7	7	6
새우조망	9	5	8
선망	-	1	1
기타	146	84	62

자료 : 전라남도청 설문결과

4) 제주

- 제주도의 불법어업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15건, 2008년도에 3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타어업의 단속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대형기저어업과 대형트롤어업, 연안자망어업의 불법어업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불법어업이 많이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타어업의 증가건수가 대폭 상승하였으므로, 기타어업의 불법어업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74> 제주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업종별	'06	'07	'08
계	-	15	31
대형기저	-	3	1
대형트롤	-	1	-
연안자망	-	6	1
기타	-	5	29

자료 : 제주도청 설문결과

3. 행정처분현황

- 시·도별 행정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행정 처분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로, 총 151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음.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여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경기도에서는 27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5> 2006 행정처분현황

구분	지도·단속				행정처분					
	지도		단속		소계	허가 취소	정지	과징금	경고	기타
	횟수	건/명	단속	사법처리						
부산시	280	4,264건	116	94	119	-	68	28	23	-
인천시	6	18건	23	23	83	1	79	3		-
울산시	10	78건	9	8	61	3	37	8	21	-
경기도	24	23건	13	1	27	-	8	18	1	-
강원도	-	-	131	72	119	-	39	35	45	-
충청남도	318	1,619건	80	72	62	4	58			-
전라북도	-	-	57	57	57	-	46	-	-	-
전라남도	163	1,419명	248	245	151	3	132		16	-
경상북도	162	393건	25	23	99	-	85	-	14	-
경상남도	-	-	151	130	107	2	92	-	13	-
제주	-	-	-	-	-	-	-	-	-	-

자료 : 각 시·도별 설문조사 종합

- 2007년도에는 경상북도가 176건으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도보다 77건 증가한 수치로, 앞서 살펴본 호망·각망·건망의 불법어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주목할 점은 전라남도의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이 지역의 불법어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표 3-76> 2007 행정처분현황

구분	지도·단속				행정처분					
	지도		단속		소계	허가 취소	정지	과징금	경고	기타
	횟수	건/명	단속	사법처리						
부산시	407	2,856건	111	107	137	1	79	28	29	-
인천시	5	15건	11	11	77	-	73	4	-	-
울산시	17	127건	6	5	26	4	12	2	10	-
경기도	61	55건	34	16	51	-	13	28	3	7
강원도	-	-	157	65	157	-	35	56	66	-
충청남도	150	174건	132	129	96	-	91	-	5	-
전라북도	-	-	68	65	68	-	37	-	1	-
전라남도	205	1,814명	141	134	60	-	53	6	1	-
경상북도	148	284건	34	24	176	3	100	54	73	-
경상남도	-	-	309	98	77	-	65	6	6	-
제주	-	-	-	9	15	-	8	-	-	7

자료 : 각 시·도별 설문조사 종합

- 2008년도에는 강원도가 행정처분이 15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7년도에 가장 많은 행정처분 건수를 기록했던 경상북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77> 2008 행정처분현황

구분	지도·단속				행정처분					
	지도		단속		소계	허가 취소	정지	과징금	경고	기타
	횟수	건/명	단속	사법처리						
부산시	576	3,271 건	108	91	99	1	59	24	15	-
인천시	6	24건	28	28	108	-	104	4	-	-
울산시	35	200건	2	2	29	4	20	1	5	-
경기도	61	55건	14	5	26	-	3	16	-	7
강원도	-	-	161	109	157	-	39	58	60	-
충청남도	130	208건	74	63	36	1	31	1	4	-
전라북도	-	-	79	77	79	-	59	-	2	-
전라남도	445	1,295명	153	112	68	2	57	1	8	-
경상북도	165	425건	24	29	145	1	95	87	49	-
경상남도	-	-	305	103	98	1	70	9	18	-
제주	-	-	-	30	31	-	5	-	-	26

자료 : 각 시·도별 설문조사 종합

제3절 지도·홍보·교육 분야 실적

1. 동해권

가. 강원도

- 강원도에서는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에 중점을 두어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간담회는 2006년도에 71회가 실시되었으나 2007년도에 1회, 2008년도에 4회로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교육 실적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강원도의 지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78> 강원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활동 구분	2006		2007		2008	
	어업인 교육	91회	6,459명	58회	3,122명	40회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193회	5,660명	157회	1,227명	121회	385명
유인물 제작 배포	16종	9,035부	24종	10,812부	21종	2,333부
간담회	71회	589명	1회	16명	4회	85명

자료 : 강원도청 설문 결과

나. 경상북도

- 경상북도에서는 유인물 제작 배포를 중점을 두어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21종 3,2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2007년도에는 23종 8,982부를 제작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분량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알 수 있음. 2008년도에는 24종 2,254부로 제작 분량은 줄어들었으나 홍보용 유인물의 양을 다변화 하고 있음
- 이외에도 간담회와 항·포구 정화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나, 어업인 교육과 TV·신문 홍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지도, 홍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79> 경상북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활동 구분	2006		2007		2008	
	어업인 교육	243회	846명	31회	345명	85회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89회	1,689명	137회	2,887명	89회	425명
유인물 제작 배포	21종	3,200부	23종	8,982부	24종	2,254부
항·포구 정화활동	10회	200명	13회	255명	12회	280명
(기타활동) 간담회	24회	232명	12회	256명	23회	291명
TV, 신문 홍보	43회	-	37회	-	32회	-

자료 : 경상북도청 설문 결과

다. 울산시

- 울산시에서는 지도 홍보 교육 분야에 타 시·도보다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어업인 교육과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유인물 제작 배포를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만이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을 뿐 유인물 제작도 2006년을 마지막으로 실적이 없고, 어업인 교육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지도 홍보 및 불법어업 예방 교육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3-80> 울산시 홍보 교육 분야 실적

활동 구분	2006		2007		2008	
	어업인 교육	61회	1,524명	3회	478명	20회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10회	360명	27회	369명	52회	375명
유인물 제작 배포	8종	673부	-	-	-	-

자료 : 울산시청 설문 결과

2. 서해권

가. 경기도

- 경기도에서는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와 항·포구 정화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어업인 교육, 유인물 제작 등은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 활동과 홍보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간담회와 캠페인 등의 추가적인 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81> 경기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활동 구분	2006		2007		2008	
	어업인 교육	27회	826명	33회	1,176명	29회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15회	31명	65회	144명	79회	156명
유인물 제작 배포	16종	925부	15종	710부	15종	790부
항·포구 정화활동	961명	121.49톤	797명	220.51톤	746명	312.78톤

자료 : 경기도청 설문 결과

나. 인천시

- 인천시에서는 어업인 교육,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유인물 배포, 항·포구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항·포구 정화 활동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다른 시·도와 달리 간담회와 홍보 활동에 대한 실적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82> 인천시 홍보 교육 분야 실적

활동 구분	2006		2007		2008	
	어업인 교육	수시	1,500여명	수시	1,500여명	수시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79회	120여명	73회	130명	104회	160여명
유인물 제작 배포	2종	2,500여부	2종	3,000여부	3종	2,800여부
항·포구 정화활동	양식어장 정화	295ha	183ha	210ha		
	침체어망 인양	215톤	272톤	214톤		
	불가사리구제	510톤	384톤	296톤		
	쓰레기수거마대구입	1만대	1만대	1만대		
	어장내 미철거 방치어구 철거	222톤	80톤	53톤		

자료 : 인천시청 설문 결과

다. 전라북도

- 전라북도에서는 어업인 교육,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유인물 제작 배포, 항·포구 정화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자료는 부정확하여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업인 교육 횟수가 증가하였고, 항·포구 정화활동도 횟수와 참여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도 100명 증가하였고, 유인물 제작 배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표 3-83> 전라북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활동 구분	2006		2007		2008	
	어업인 교육	-	-	10회	1,000명	15회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	-	100회	500명	100회	600명
유인물 제작 배포	-	-	5종	1,000부	5종	1,000부
항·포구 정화활동	-	-	10회	300명	12회	500명
기타(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	-	-	25회	500명	-	-

자료 : 전라북도청 설문 결과

라. 충청남도

- 충청남도에서는 어업인 교육과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유인물 배포, 간담회, 캠페인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활동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업인 교육이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참여 인원이 감소하였고,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도 2006년에 비하여 대폭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음. 유인물 배포도 종수와 부수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간담회 및 결의대회의 참가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어업인들이 이러한 홍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포구 정화활동과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표 3-84> 충청남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활동 구분	2006		2007		2008	
	어업인 교육	-	4,943명	18회	3,607명	25회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318회	1,619명	150회	174명	130회	208명
유인물 제작 배포	20종	873부	6종	170부	8종	219부
기타(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	27회	1,326명	27회	238명	14회	302명

자료 : 충청남도청 설문 결과

3. 남해권

가. 부산시

- 부산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인물 제작 배포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항·포구 정화활동과 불법 정치성 어구류 및 시설물 철거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어업인 교육 활동은 횟수와 참가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지속적인 지도 및 예방활동 강화와 어업인 교육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85> 부산시 홍보 교육 분야 실적

활동 구분	2006		2007		2008	
어업인 교육	136회	4,647명	58회	1,582명	66회	2,463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239회	1,125명	182회	795명	213회	647명
유인물 제작 배포	2종	280부	6종	405부	9종	2,577부
항·포구 정화활동	-	-	4회	1,628명	8회	1,901명
불법 정치성 어구류 및 시설물 철거	57회	374건	35회	152건	108회	341건

자료 : 부산시청 설문 결과

나. 경상남도

- 경상남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업인 교육과 간담회, 캠페인 활동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홍보활동과 세미나 개최, 홍보물 제작 건수 등은 확대되고 있음.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활동도 그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대상자가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2007년도 한 해에만 결의대회가 실시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전체적으로 홍보 교육 실적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활동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꾸준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3-86> 경상남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활동구분	2006		2007		2008	
	단체·어업인 교육	170	10,744	81	11,443	71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372	1,542	312	1,315	68	1,485
간담회	64	1,439	46	1,235	36	710
캠페인	3	125	14	1,245	2	724
결의대회	-	-	41	6,232	-	-
TV·신문 등 홍보	23	-	21	-	39	-
세미나 개최 및 사례발표	-	-	-	-	1	-
언론매체와 공동기획 홍보	3	-	5	-	2	-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26	6,370	41	12,818	30	13,708

자료 : 경상남도청 설문 결과

다. 전라남도

- 전라남도에서는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횡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참가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어업인 교육도 횡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유인물 제작도 부수가 감소하고 간담회 개최도 인원이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참여가 점차 저조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러한 지도 홍보 활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87> 전라남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활동 구분	2006		2007		2008	
	어업인 교육	55회	9,834명	131회	3,404명	108회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163회	1,419명	205회	1,814명	445회	1,295명
유인물 제작 배포	54종	5,169부	9종	14,158부	19종	863부
간담회 개최	66회	1,727명	44회	831명	87회	813명
TV, 신문 홍보	24		7		96	

자료 : 전라남도청 설문 결과

라. 제주

- 제주도에서는 어업인 교육과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2006년도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2007년도에 어업인 교육은 137회 3,190명, 2008년도에는 139회 4,240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음
-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인물 제작 및 간담회 개최 등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TV, 신문 홍보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88> 제주 홍보 교육 분야 실적

활동 구분	2006		2007		2008	
어업인 교육	-	-	137회	3,190명	139회	4,240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	-	285회	1,748명	241회	2,575명
유인물 제작 배포	-	-	7종	4,900부	-	-
간담회 개최	-	-	15회	370명	1회	250명
TV, 신문 홍보	-	-	13회		52회	
불법어구 수거처리	-	-	5회	1,000개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청 설문 결과

제4절 소결

1. 지도·단속 기관 간 협력체제 분석

가. 기관별 어업지도선 현황분석 결과

- 2008년까지 국가어업지도선 보유 척수는 총 33척, 2009년 11월 현재까지 국가 어업지도선 보유 척수는 총 34척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보유 척수는 총 74척임. 최근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보유 척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포함되어 있는 남해권이 절반 이상의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고, 동해권이 가장 적은 척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가어업지도선의 보유 척수와 권역별 보유 척수를 살펴본 결과,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어업지도선 보유 척수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보다 많지만, 오히려 서해권역에 지방자치단체 보유 척수가 많아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업무 과중이 발생할 수 있음. 즉, 국가 어업지도선과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의 단순 비율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할 때,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지도선 1척과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이 더 적은 데 반해 어업 종사자 대비 어업지도선 비율은 서해가 보다 높아 어업지도선 배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89> 기관별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척수	비율	척수	비율	척수	비율
어업지도사무소	-	-	-	-	33	-
동해권	7	10.46	7	9.73	7	9.45
강원도	3	4.48	3	4.17	3	4.05
경상북도	2	2.99	2	2.78	2	2.70
울산시	2	2.99	2	2.78	2	2.70
서해권	21	31.35	21	29.16	25	33.79
경기도	6	8.96	6	8.33	6	8.11
인천시	9	13.43	9	12.50	9	12.16
충남	6	8.96	6	8.33	6	8.11
전라북도	0	0.00	0	0.00	4	5.41

구분	2006		2007		2008	
	척수	비율	척수	비율	척수	비율
남해권	39	58.21	44	61.11	42	56.75
부산시	10	14.93	10	13.89	10	13.51
경상남도	12	17.91	12	16.67	12	16.22
전라남도	17	25.37	17	23.61	17	22.97
제주시	0	0.00	5	6.94	3	4.05
합계	67	100.00	72	100.00	74	100.00

나. 기관별 공무원 현황 분석 결과

-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326명,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 261명 등 총 587명임

<표 3-90>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담당 공무원 인원 현황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4급	4·5급	5급	6급 이하		
동해	정원	327	159	1	2	17	139	168
	현원	326	158	1	1	18	138	168
	과부족	-1	-1	-	-1	+1	-1	-
서해	정원	264	132	1	1	16	114	132
	현원	262	130	1	1	15	112	132
	과부족	-2	-2	-	-	-1	-2	-
총계	587	287	2	2	33	250	300	

- 시·도별 공무원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529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620명, 2008년에는 68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시·도별 담당 공무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동해권의 경우는 2006년 약 49%의 인원이 있었으나 2008년에는 약 40%로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남해권은 2006년 약 35%에서 2008년 약 40%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해권과 남해권의 비율이 비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91> 시·도별 어업감독 공무원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동해권	261	49.34	260	41.94	275	39.98
강원도	82	15.50	82	13.23	82	11.92
경상북도	159	30.06	158	25.48	173	25.15
울산시	20	3.78	20	3.23	20	2.91
서해권	80	15.12	83	13.39	133	19.34
경기도	29	5.48	29	4.68	29	4.22
인천시	19	3.59	22	3.55	22	3.20
충청남도	32	6.05	32	5.16	31	4.51
전라북도	-	0.00	-	0.00	51	7.41
남해권	336	35.53	425	44.68	431	40.7
부산시	83	15.69	95	15.32	94	13.66
경상남도	68	12.85	67	10.81	69	10.03
전라남도	185	6.99	185	5.97	188	5.38
제주시	-	0.00	78	12.58	80	11.63
합계	529	100.00	620	100.00	688	100.00

- 앞서 어업지도선 보유척수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가 포함된 남해권이 가장 많은 어업지도선을 보유한 것에 비해 공무원 비율은 남해권과 동해권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무원 운영체계의 문제점으로 판단되는 바,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즉, 권역별 어업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도의 경우 동해권의 어가 인구 비율은 약 14%이고, 서해권은 약 25%, 남해권은 약 61%로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남해권역에 밀집되어 있으나 공무원 분포 비율은 동해권과 남해권이 비슷하여 1인당 공무원 비율 차이가 많이 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표 3-92> 권역별 어가인구 현황

시·도별	2006		2007		2008	
	어가인구	비율	어가인구	비율	어가인구	비율
동해권	30,814	14.56	29,418	14.60	26,088	13.56
강원도	13,021	6.15	12,201	6.05	10,619	5.52
경상북도	14,369	6.79	13,886	6.89	12,386	6.44
울산시	3,424	1.62	3,331	1.65	3,083	1.60
서해권	51,610	24.39	49,697	24.66	47,778	24.84
경기도	4,740	2.24	4,529	2.25	4,328	2.25
인천시	8,478	4.01	7,861	3.90	7,767	4.04
충청남도	26,898	12.71	26,943	13.37	26,182	13.61
전라북도	11,494	5.43	10,364	5.14	9,501	4.94

시·도별	2006		2007		2008	
	어가인구	비율	어가인구	비율	어가인구	비율
남해권	129,185	61.05	122,397	60.74	118,475	61.60
부산시	9,794	4.63	9,061	4.50	8,196	4.26
경상남도	35,393	16.73	32,307	16.03	30,184	15.69
전라남도	64,610	30.53	61,843	30.69	61,631	32.04
제주도	19,388	9.16	19,186	9.52	18,464	9.60
총계	211,610	100.00	201,512	100.00	192,341	100.00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다. 권역별 담당 부서 현황 분석 결과

-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를 정리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업무는 해양수산과, 해양 정책과 소속이고, 동해권에 14개 시·군이, 서해권에 15개 시·군이, 남해권에 12개의 시·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3-93> 각 도, 시 군별 지도·단속 담당 부서 현황

구분	담당 부서	비고	
동 해 권	강원도	환동해 출장소 어업지원과 어업지도	
	고성군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속초시	해양수산과 해양기획	
	양양군	해양수산과 자원개발	
	강릉시	해양수산과 어업지원담당	
	동해시	해양정책과 해양정책담당	
	삼척시	해양수산과 연안개발팀	
	경상북도	농수산국 수산진흥과	
	포항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 담당	
	울진군	해양수산과 해양관리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관리담당	
	경주시	해양수산과 수산행정 담당	
	울릉군	해양수산과 해양시설 담당	
	울산시	경제통상실 항만 수산과	
서 해 권	경기도	농정국 해양수산과	해수면 단속
		경제농정국 축수산 산림과	내수면 단속
	부천시	농산지원과 농업경영팀	
	시흥시	농수산과 수산계	
	화성시	축수산과 해양지도 담당	
	평택시	축수산과 수산팀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국 소속 해양수산과	
	충청남도	농림수산국 수산과 어업지도분야	
	태안군	해양수산과 어업지도	
	홍성군	농수산과 수산해양 파트	
	보령시	해양수산과 어업지원팀	
서천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담당		

	구분	담당 부서	비고
서 해 권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농수산 식품국 해양수산과	
	군산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담당	
	부안군	해양수산과 수산지도담당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자원 관리담당	
남 해 권	부산시	해양농수산물국 어업조정 담당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해양환경보전담당	
	남해군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	
	통영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담당	
	전라남도	해양수산환경국 수산자원과 어업지도 담당	
	영광군	해양수산과 수산경영 담당	
	무안군	해양수산과 해양자원 담당	
	목포시	경제환경수산물국 해양수산물 수산진흥책임관	
	신안군	해양수산과 어업지원 담당	
	진도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 업무	
	강진군	해양수산팀	
	여수시	관광문화수산물국 어업생산과	
	고흥군	수산과 수산지도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물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 담당	

- 행정조직 중 어업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각 도와 그 산하 시, 군의 행정 조직도를 정리해 본 결과,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과의 명칭이 상이하고, 업무 범위도 상이함
- 대부분 해양수산물과 소속으로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업무 범위가 적은 곳은 농축산, 농수산물과로 편속되어 수산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특히 부천시내 내수면어업 단속을 농업경영팀에서 실시하고 있음
- 해양수산물과 소속으로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편속되어 있는 과의 명칭은 조금씩 상이함. 예를 들어, 해양기획, 연안관리, 자원개발, 수산지원, 어업관리 등 편속되어 있는 하부 과의 명칭을 보고 지도·단속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는 없음
- 해양경찰의 경우는 보안 상 자세한 자료는 수집하기 힘들었으나, 2002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안보와 경찰에 대한 업무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안전과 환경,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불법어업 단속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불법어업 단속현황 결과

가. 기관별 단속 현황

- 기관별 단속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05년도 4,054건에서 2006년도에는 3,015건, 2007년도에는 3,773건으로 최근 3년간 단속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해경이 단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로 절반을 상회하는 단속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2005년에는 약 59%에 달했으나, 2007년에는 약 51%로 단속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경의 단속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본부의 단속 건수는 2005년 약 17%의 단속 건수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7년 약 25%로 8%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단속에 있어서 그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방자치단체는 약 20%의 단속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남이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4> 기관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본부	723	17.83	637	21.13	954	25.28
해경	2,427	59.87	1,624	53.86	1,950	51.68
지방자치단체	904	22.3	754	25.01	869	23.03
부산	98	2.42	116	3.85	111	2.94
인천	2	0.05	23	0.76	11	0.29
울산	21	0.52	9	0.30	9	0.24
경기	62	1.53	24	0.80	34	0.90
강원	26	0.64	14	0.46	5	0.13
충남	85	2.10	80	2.65	132	3.50
전북	120	2.96	57	1.89	68	1.80
전남	305	7.52	248	8.23	141	3.74
경북	28	0.69	23	0.76	34	0.90
경남	137	3.38	151	5.01	309	8.19
제주	20	0.49	9	0.30	15	0.40
총계	4,054	100.00	3,015	100.00	3,773	100.00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최근 3년(2005~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경찰청의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건수는 담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나. 유형별 단속 현황

- 유형별 단속현황을 종합해 보면, 2006년도의 단속 건수는 867건, 2007년 859건, 2008년 808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유형별 정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무허가와 어구위반에 대한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로 분류되어 단속된 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유형별 집중 단속의 경우는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어업 근절대책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기타로 분류되어 집계되는 불법어업의 종류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는 불법어업의 유형이 많이 변형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향후 법 개정과 단속 근거 마련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현실에 맞는 단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임

<표 3-95> 최근 3년간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부산시	116	13.38	-	0.00	-	0.00
인천시	23	2.65	11	1.28	28	3.47
울산시	9	1.04	9	1.05	8	0.99
경기도	27	3.11	51	5.94	24	2.97
강원도	131	15.11	157	18.28	161	19.93
충청남도	80	9.23	132	15.37	74	9.16
전라북도	57	6.57	-	0.00	-	0.00
전라남도	248	28.60	141	16.41	153	18.94
경상북도	25	2.88	34	3.96	24	2.97
경상남도	151	17.42	309	35.97	305	37.75
제주	-	0.00	15	1.75	31	3.84
총계	867	100.00	859	100.00	808	100.00

다. 업종별 단속 현황

- 각 시·도별 업종별 단속 현황을 종합해 보면, 2006년도에는 전라남도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기타어업이 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단속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25건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어업인 분포가 전라남도에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전라남도에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96> 2006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구분	계	세부 내용
부산시	116	잠수기(1), 형망(13), 2중 이상 자망(24), 연안통발(8), 연안자망(13), 새우조망(1), 기타(56)
인천시	23	대형기저(1), 연안자망(2), 연안통발(4), 기타(16)
울산시	9	삼중자망(3), 연안통발(2), 기타(양식어업, 구획어업)(4)
경기도	27	연안개량안강망(9), 연안자망(2), 연안통발(1), 근해통발(1), 근해형망(7), 근해안강망(6), 기타(1)
강원도	131	트롤(1), 저인망(10), 채낚기(6), 통발(5), 자망(57), 복합(4), 구획(2), 면허(30), 기타(16)
충청남도	80	소형기저(7), 근해개량안강망(1), 새우조망(2), 통발(8), 2중 이상 자망(25), 잠수기(10), 형망(4), 소형선망(4), 삼각망(2), 기타(17)
전라북도	55	잠수기(1), 형망(1), 삼중자망(5), 연안통발(12), 연안자망(13), 새우조망(4), 선인망(10), 기타(9)
전라남도	248	대형기저(1), 대형트롤(1), 소형기저(8), 형망(9), 삼중자망(3), 연안통발(37), 연안자망(7), 새우조망(9), 기타(146)
경상북도	25	중형기저(1), 자망(20), 통발(4)
경상남도	151	대형기저(1), 소형기저(1), 잠수기(24), 형망(3), 삼중자망(29), 연안통발(9), 연안자망(1), 새우조망(8), 기타(75)
제주	-	-

- 2007년도에는 경상남도의 단속 건수가 30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06년도에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던 전라남도는 248건에서 141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경상남도가 151건에서 30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경상남도의 호망·각망·견망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가 170건이나 발생하여 단속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97> 2007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구분	계	세부 내용
부산시	111	소형기저(1), 잠수기(1), 형망(15), 2중 이상 자망(31), 연안통발(11), 연안자망(16), 새우조망(1), 기타(35)
인천시	11	연안자망(4), 연안통발(5), 기타(2)
울산시	9	삼중자망(1), 연안통발(1), 기타(양식어업, 구획어업)(7)
경기도	51	연안개량안강망(5), 연안자망(8), 연안통발(5), 근해통발(1), 근해형망(9), 근해안강망(2), 근해자망(1), 기타(20)
강원도	157	트롤(10), 저인망(2), 채낚기(35), 통발(5), 자망(74), 복합(2), 구획(2), 먼허(8), 기타(19)
충청남도	132	소형기저(1), 레저(스쿠버)(8), 자망(11), 근해개량안강망(16), 새우조망(7), 통발(12), 2중 이상 자망(32), 잠수기(9), 형망(4), 삼각망(8), 기타(24)
전라북도	68	삼각망(3), 형망(1), 삼중자망(8), 연안통발(7), 연안복합(9), 연안자망(6), 양조망(8), 소형기저(2), 기타(24)
전라남도	141	소형기저(1), 잠수기(1), 형망(1), 삼중자망(25), 연안통발(16), 연안자망(7), 새우조망(5), 선망(1), 기타(84)
경상북도	34	잠수기(1), 자망(26), 통발(7)
경상남도	309	소형기저(1), 삼중자망(25), 연안통발(9), 연안자망(6), 새우조망(6), 연안복합(1), 호망·각망·건망(170), 들망(13), 양식어업(67), 기타(11)
제주	15	대형기저(3), 대형트롤(1), 연안자망(6), 기타(5)

- '08년도에도 경상남도의 단속 건수가 30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07년도와 마찬가지로 호망·건망·각망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가 18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07년도의 170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98> 2008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구분	계	세부 내용
부산시	108	중형기저(2), 잠수기(1), 형망(22), 2중 이상 자망(24), 연안통발(19), 연안자망(3), 기타(37)
인천시	28	연안자망(6), 연안통발(14), 기타(8)
울산시	8	삼중자망(1), 기타(양식어업, 구획어업)(7)

구분	계	세부 내용
경기도	25	연안개량안강망(6), 연안자망(4), 연안통발(3), 근해통발(2), 근해형망(1), 근해안강망(1), 근해자망(1), 기타(7)
강원도	161	트롤(4), 저인망(3), 채낚기(14), 통발(3), 자망(89), 복합(12), 구획(4), 면허(24), 기타(8)
충청남도	74	소형기저(1), 레저(스쿠버)(3), 지망(6), 새우조망(1), 통발(3), 2중 이상 자망(28), 잠수기(8), 형망(1)소형선망(1), 삼각망(3), 기타(19)
전라북도	79	삼각망(1), 잠수기(2), 형망(2), 삼중자망(8), 연안통발(9), 연안복합(3), 연안자망(12), 새우조망(5), 양조망(19), 기타(18)
전라남도	153	소형기저(2), 잠수기(2), 형망(4), 삼중자망(28), 연안통발(40), 연안자망(6), 새우조망(8), 선망(1), 기타(62)
경상북도	24	잠수기(1), 자망(15), 통발(8)
경상남도	305	형망(3), 삼중자망(32), 연안통발(12), 연안자망(1), 새우조망(6), 호망·각망·건망(185), 들망(2), 양식어업(47), 기타(17)
제주	31	대형기저(1), 연안자망(1), 기타(29)

3. 행정처분 현황 결과

- 시·도별 행정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행정 처분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로, 총 151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음.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여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경기도에서는 27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9> 2006 행정처분현황

구분	지도·단속				행정처분					
	지도		단속		소계	허가 취소	정지	과징 금	경고	기타
	횟수	건수	단속	사법처리						
부산시	280	4,264	116	94	119	-	68	28	23	-
인천시	6	18	23	23	83	1	79	3	-	-
울산시	10	78	9	8	61	3	37	8	21	-
경기도	24	23	13	1	27	-	8	18	1	-
강원도	-	-	131	72	119	-	39	35	45	-
충청남도	318	1,619	80	72	62	4	58	-	-	-
전라북도	-	-	57	57	57	-	46	-	-	-
전라남도	163	1,419명	248	245	151	3	132	-	16	-
경상북도	162	393	25	23	99	-	85	-	14	-
경상남도	-	-	151	130	107	2	92	-	13	-
제주	-	-	-	-	-	-	-	-	-	-

- 2007년도에는 경상북도가 176건으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06년도보다 77건 증가한 수치로, 앞서 살펴본 호망·각망·건망의 불법어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주목할 점은 전라남도의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이 지역의 불법어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표 3-100> 2007 행정처분현황

구분	지도·단속				행정처분					
	지도		단속		소계	허가취소	정지	과징금	경고	기타
	횡수	건수	단속	사법처리						
부산시	407	2,856	111	107	137	1	79	28	29	-
인천시	5	15	11	11	77	-	73	4		-
울산시	17	127	6	5	26	4	12	2	10	-
경기도	61	55	34	16	51	-	13	28	3	7
강원도	-	-	157	65	157	-	35	56	66	-
충청남도	150	174	132	129	96	-	91		5	
전라북도	-	-	68	65	68	-	37	-	1	-
전라남도	205	1,814명	141	134	60	-	53	6	1	-
경상북도	148	284	34	24	176	3	100	54	73	-
경상남도	-	-	309	98	77	-	65	6	6	-
제주	-	-	-	9	15	-	8	-	-	7

- 2008년도에는 강원도가 행정처분이 15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2007년도에 가장 많은 행정처분 건수를 기록했던 경상북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01> 2008 행정처분현황

구분	지도·단속				행정처분					
	지도		단속		소계	허가취소	정지	과징금	경고	기타
	횡수	건수	단속	사법처리						
부산시	576	3,271	108	91	99	1	59	24	15	-
인천시	6	24	28	28	108	-	104	4		-
울산시	35	200	2	2	29	4	20	1	5	-
경기도	61	55	14	5	26		3	16		7
강원도	-	-	161	109	157	-	39	58	60	-
충청남도	130	208	74	63	36	1	31	1	4	
전라북도	-	-	79	77	79	-	59	-	2	-
전라남도	445	1,295명	153	112	68	2	57	1	8	-
경상북도	165	425	24	29	145	1	95	87	49	-
경상남도	-	-	305	103	98	1	70	9	18	-
제주				30	31	-	5	-	-	26

- 이상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 건수는 2006년 885건에서 2007년 940건, 2008년 876건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연도별로 차이가 생긴다. 이는 새로운 불법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지도·홍보 현황 종합

- 2006년도 현황을 종합해보면, 시·도별 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로 어업인 교육과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부분에 대체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02> 2006년도 시·도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구분	세부 내용
부산시	어업인 교육(136회/4,647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239회/1,125명), 유인물 제작 배포(2종/280호), 불법 정치성 어구류 및 시설물 철거(57회/374명)
인천시	어업인 교육(수시/1,500여 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79회/120여 명), 유인물 제작 배포(2종/2,500여 부), 항·포구 정화활동(양식장 정화 295ha, 침체어망 인양 215톤, 불가사리 구제 510톤, 쓰레기 수거 마대 구입 1만 대, 어장 내 미철거 방치어구 철거 222톤)
울산시	어업인 교육(61회/1,524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10회/360명), 유인물 제작 배포(8종/673부)
경기도	어업인 교육(27회/826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15회/31명), 유인물 제작 배포(16종/925부), 항·포구 정화활동(961명/121.49톤)
강원도	어업인 교육(91회/6,459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193회/5,660명), 유인물 제작·배포(16종/9,035부), 간담회(71회/589명)
충청남도	어업인 교육(4,943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318회/1,619명), 유인물 제작 배포(20종/873부), 기타활동(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27회/1,326명)
전라북도	-
전라남도	어업인 교육(55회/9,834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163회/1,419명), 유인물 제작 배포(54종/5,169부), 간담회 개최(66회/1,727명), TV·신문 홍보(24회)
경상북도	어업인 교육(243회/846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89회/1,689명), 유인물 제작·배포(21종/3,200부), 항·포구 정화활동(10회/200명), 간담회(24회/232명), TV 신문 홍보(43회)
경상남도	단체·어업인 교육(170회/10,744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372회/1,542명), 간담회(64회/1,439명), 캠페인(3회/125명), TV·신문 등 홍보(23회), 언론매체와 공동기획 홍보(3회),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26종/6,370부)
제주	-

- 이를 다시 정리하여 활동 건수를 비교해보면, 인천과 충청남도의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항목이 있어서 절대적인 비교가 제대로 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대체적으로 경상남도가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지역도 비슷한 현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인천시와 경기도, 울산시의 지도홍보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103> 2006년 시·도별 지도·홍보 현황 종합

구분	계	어업인 교육	불법어업행위자 계도	유인물 제작·배포	간담회	항·포구 정화활동	홍보	기타
부산시	434	136	239	2	-	-	-	57
인천시	81	수시	79	2	-	수시	-	-
울산시	79	61	10	8	-	-	-	-
경기도	58	27	15	16	-	961명	-	-
강원도	371	91	193	16	71	-	-	-
충청남도	365	수시	318	20	-	-	-	27
전라북도	0	-	-	-	-	-	-	-
전라남도	362	55	163	54	66	-	24	-
경상북도	420	243	89	21	24	10회	43	-
경상남도	661	170	372	26	64	-	26	3
제주	-	-	-	-	-	-	-	-

- 2007년도에도 어업인 교육과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활동이 활발하였으며, 부산시에서 항·포구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음

<표 3-104> 2007년도 시·도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구분	세부 내용
부산시	어업인 교육(58회/1,582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182회/795명), 유인물 제작 배포(6종/405부), 항·포구 정화활동(4회/1,628명), 불법 정치성 어구류 및 시설물 철거(35회/152건)
인천시	어업인 교육(수시/1,500여 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73회/130여 명), 유인물 제작 배포(2종/3,000여 부), 항·포구 정화활동(양식장 정화 183ha, 침체어망 인양 272톤, 불가사리 구제 384톤, 쓰레기 수거 마대 구입 1만 대, 어장 내 미철거 방치어구 철거 80톤)

구분	세부 내용
인천시	어업인 교육(수시/1,500여 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73회/130여 명), 유인물 제작 배포(2종/3,000여 부), 항·포구 정화활동(양식장 정화 183ha, 침체어망 인양 272톤, 불가사리 구제 384톤, 쓰레기 수거 마대 구입 1만 대, 어장 내 미철거 방치어구 철거 80톤)
울산시	어업인 교육(3회/478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27회/369명)
경기도	어업인 교육(33회/1,176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65회/144명), 유인물 제작 배포(15종/710부), 항·포구 정화활동(797명/220.51톤)
강원도	어업인 교육(58회/3,122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157회/1,227명), 유인물 제작·배포(24종/10,812부), 간담회(1회/16명)
충청남도	어업인 교육(18회/3,607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150회/174명), 유인물 제작 배포(6종/170부), 기타활동(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27회/238명)
전라북도	어업인 교육(10회/1,000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100회/500명), 유인물 제작 배포(5종/1,000부), 항·포구 정화활동(10회/300명), 기타 (25회/500명)
전라남도	어업인 교육(131회/3,404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205회/1,814명), 유인물 제작 배포(9종/14,158부), 간담회 개최(44회/831명), TV·신문 홍보(7회)
경상북도	어업인 교육(31회/345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137회/2,887명), 유인물 제작·배포(23종/8,982부), 항·포구 정화활동(13회/255명), 간담회(12회/256명), TV 신문 홍보(37회)
경상남도	단체·어업인 교육(81회/11,443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312회/1,315명), 간담회(46회/1,235명), 캠페인(14회/1,245명), 결의대회(41회/6,232명), TV·신문 등 홍보(21회), 언론매체와 공동기획 홍보(5회),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41종/12,818부)
제주	단체·어업인 교육(137회/3,190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285회/1,748명), 간담회(15회/370명), TV·신문 등 홍보(13회),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7종/4,900부), 불법어구(그물식 통발)수거 처리(5회/1,000개)

-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치별 현황을 다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도 작년 대비 활동 폭이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울산시와 인천시의 지도 홍보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105> 2007년 시·도별 지도·홍보 현황 종합

구분	계	어업인 교육	불법어업행위자 계도	유인물 제작·배포	간담회	항·포구 정화활동	홍보	기타
부산시	281	58	182	6	-	4회		35
인천시	75	수시	73	2	-	수시	-	-
울산시	30	3	27	-	-	-	-	-
경기도	113	33	65	15	-	797명	-	-

구분	계	어업인 교육	불법어업행위자 계도	유인물 제작·배포	간담회	항·포구 정화활동	홍보	기타
강원도	240	58	157	24	1	-	-	-
충청남도	201	18	150	6	-	-	-	27
전라북도	150	10	100	5	25	10	-	-
전라남도	396	131	205	9	44	-	7	-
경상북도	240	31	137	23	12	13회	37	-
경상남도	561	81	312	41	46	-	81	-
제주	462	137	285	7	15	-	13	5

○ 2008년도에는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고, 어업인 교육과 유인물 배포 활동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106> 2008년도 시·도별 홍보 교육 분야 실적

구분	세부 내용
부산시	어업인 교육(66회/2,463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213회/647명), 유인물 제작 배포(9종/2,577부), 항·포구 정화활동(8회/1,901명), 불법 정치성 어구류 및 시설물 철거(108회/341건)
인천시	어업인 교육(수시/1,400여 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104회/160여 명), 유인물 제작 배포(3종/2,800여 부), 항·포구 정화활동(양식장 정화 210ha, 침체어망 인양 214톤, 불가사리 구제 296톤, 쓰레기 수거 마대 구입 1만대, 어장 내 미철거 방치어구 철거 53톤)
울산시	어업인 교육(20회/872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52회/375명)
경기도	어업인 교육(29회/827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79회/156명), 유인물 제작 배포(15종/790부), 항·포구 정화활동(746명/312.78톤)
강원도	어업인 교육(40회/4,378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121회/385명), 유인물 제작·배포(21종/2,333부), 간담회(4회/85명)
충청남도	어업인 교육(25회/2,301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130회/208명), 유인물 제작 배포(8종/219부), 기타활동(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14회/302명)
전라북도	어업인 교육(15회/1,000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100회/600명), 유인물 제작 배포(5종/1,000부), 항·포구 정화활동(12회/500명)
전라남도	어업인 교육(108회/1,585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445회/1,295명), 유인물 제작 배포(19종/863부), 간담회 개최(87회/813명), TV·신문 홍보(96회)
경상북도	어업인 교육(85회/701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89회/425명), 유인물 제작·배포(24종/2,254부), 항·포구 정화활동(12회/280명), 간담회(23회/291명), TV 신문 홍보(32회)
경상남도	단체·어업인 교육(71회/8,870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357회/1,485명), 간담회(36회/710명), 캠페인(2회/724명), TV·신문 등 홍보(39회), 세미나 개최 및 사례발표(1회), 언론매체와 공동기획 홍보(2회),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30종/13,708부)
제주	단체·어업인 교육(139회/4,240명),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241회/2,575명), 간담회(1회/250명), 결의대회(1회/50명), TV·신문 등 홍보(52회), 불법어업 근절대책반 설치·운영(16명)

- 2008년도 지도 홍보 현황을 대략적인 수치로 분석해 본 결과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제주도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울산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활동도 소폭 증가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시·도에 비해 그 활동 폭이 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107> 2008년 시·도별 지도·홍보 현황 종합

구분	계	어업인 교육	불법어업행 위자 계도	유인물 제작·배포	간담회	항·포구 정화활동	홍보	기타
부산시	404	66	213	9	-	8	-	108
인천시	107	수시	104	3	-	수시	-	-
울산시	72	20	52	-	-	-	-	-
경기도	123	29	79	15	-	수시	-	-
강원도	186	40	121	21	4	-	-	-
충청남도	177	25	130	8	-	-	-	14
전라북도	132	15	100	5	-	12	-	-
전라남도	755	108	445	19	87	-	96	-
경상북도	265	85	89	24	23	12	32	-
경상남도	538	71	357	30	36		43	1
제주	434	139	241	-	1	-	52	1

제4장 불법어업 단속 및 불법어업자 관리 실태분석

제1절 불법어업 유형 및 실태

1. 불법어업의 유형

- 불법어업의 형태를 보면, 크게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어업의 방법으로 행하는 어업, 어업허가를 소지하거나 어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어업과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어업자가 허가 또는 면허의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법으로 행하는 어업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가. 무허가어선에 의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 외의 어업

- 우리나라 연근해에 만연되어 있고, 조직화, 집단화, 지능화 등의 형태를 보이면서 정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일명 고데구리)이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대표적인 어업의 방법임
-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1996년 이후 불법어업의 단속건수를 기준으로 매년 3천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어장형성과 관계없이 30~50여척이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집단적으로 조업하며, 전국어업인총연합회를 결성하여 정부의 지도·단속에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
- 특히 이러한 어업은 법률에서 허용된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코가 아주 작은 어망을 사용함으로써 치·자어를 무차별적으로 어획하며, 또한 폐어구로 인해 치·자어의 산란장과 성육장을 파괴하기 때문에 어업자원이 고갈되도록 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 더욱이 이 어업은 통발·연승어업의 부설 어구를 파손 또는 훼손함으로써 업종 간 어구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 최근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소형어선 정리 사업으로 이들 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은 거의 사라졌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변형된 방법으로 불법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허가어선에 의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 외의 어업

-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저층을 소해하는 어법으로서 서식지의 파괴, 치·자어의 무차별적인 어획 등 자원보호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업임
- 이러한 어업을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였을 경우와 특정업종의 허가를 소지한 상태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방법으로 어업을 행한 경우 및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이용한 선박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수산업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무허가어선이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 이외의 어업을 행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나, 특정한 어업의 허가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어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43조의 위반인지 아니면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 그리고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어법이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법(동해구트롤)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 의하여 (소형)기선저인망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43조의 위반인지 제58조의 위반인지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허가받은 어선이 수산업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어구·어법을 이용하여 어업을 행한 경우에는 무허가어선과 동일하게 수산업법 제58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어구·어법과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어구·어법을 이용한 경우에도 무허가어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허가받은 어선이 허가받은 어구·어법과 다르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 행하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근해유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고정자망을 사용하거나 또는 고정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유자망을 사용하며, 20톤 이상의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개판을 사용하여 조업하는 경우로 이는 어업방법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수산업법 제43조 위반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삼중자망어업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구역 내에서 조업이 허용되고 있음. 만약 승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조업을 하였을 경우에 수산업법 제43조 위반인지 제58조 위반인지 아니면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음
- 2중 이상 자망(삼중자망)어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을 하여야 조업이 가능한 어구어법으로 수산관련법에 의한 어업방법으로 판단하여 볼 때 수산업법 제43조의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다.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어업

-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어업은 허가사항의 하나인 조업구역을 위반하거나, 또는 조업기간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어구제한 규정의 위반과 제한 및 조건의 위반 등임
- 대형기선저인망어업(트롤포함)의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을 위반하거나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의 제1구 허가를 가진 선박이 제2구에서 조업하는 조업구역위반과 금지구역 침범조업 행위와 허가사항(마력 제한 위반) 위반하는 것임
- 그러나 근해형망어업과 같이 일부의 시·도에서는 허가되나 일부의 시·도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어업의 경우에는 조업구역 위반과 무허가어업이라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음
 - 예를 들어 허가가 되지 않는 전라남도에서 전라북도 지사의 허가를 가진 근해형망이 조업한 경우에는 무허가어업으로 보고 수산업법 제43조를 적용한 사례가 있음
- 조업기간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별, 대상어종별 조업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업종별, 대상자원별 금어기를 설정하고 있음. 허가받은 어선으로 하여금 어류의 산란이나 성육에 적합한 시기에 어업을 금지시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어업을 못하게 하는 것임
- 조업기간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선권현망어업의 멸치포획 허용 기간의 위반과, 새우조망어업의 조업허용 기간의 위반 및 이동성 구획어업 중 새우방어업의 조업허용 기간의 위반 등임

- 어구제한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업종별 그물코의 제한, 사용어구의 수의 제한, 사용어구의 형태 및 사용시기 등을 정하고 있음. 어구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연안연승어선의 새우포획어구(새우조망형태)부착, 안강망어선의 어구사용 통수 초과, 망목제한위반 및 어포부 이중망 사용 등임

<표 4-1> 유형별 업종별 대표적 위반사례

유형		업종 및 위반사례
무허가 어업	법에 의한 어업 외의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톤 미만의 소형기선저인망어업 • 이동성 구획어업 중 5톤 이상 형망어업, 새우조망어업 • 8톤 이상의 연안새우방어업
	업종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중자망어선이 승인받은 구역이외의 장소에서의 조업 • 20톤 이상의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이 전개판 사용 조업 • 연안어선이 허가된 구역이외에서의 조업(선인망, 조망, 양조망 등) • 연안자망, 연승 어업허가를 받은 후 중형기선저인망 조업 •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전개판사용(동해구트롤, 서남구기저) • 쌍끌이저인망어선이 외끌이저인망어업으로 전개판 사용 조업 • 기선권현망어선이 저인망어업으로 조업
허가 어업	조업구역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기선저인망어선(트롤포함)의 금지구역 위반조업 •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제1구에서 제2구로)위반조업 • 대형선망어선의 불빛을 이용하여 제주도 연안조업 • 소형선망어선의 정치망 보호구역내 조업 • 형망어선(인천·경기·충남·전북 허가)이 경남·전남에서 조업 • 통발어선이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 • 구획어업중 새우조망어선의 허가된 구역이외에서의 조업
	조업기간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선권현망어선의 멸치포획 기간위반 • 연안조망 어선의 조업금지기간 위반 조업행위
	어구제한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연승어선의 새우포획어구(새우조망형태)부착 • 안강망어선의 어구사용 통수 초과 • 망목제한위반 및 어포부 이중망 사용
	제한조건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롤어업이 128도 이동조업 • 대형기선저인망,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 월선 • 기선권현망어선이나 형망어선의 야간조업(기선권현망 야간조업 폐지됨) • 연안개량안간망어선의 어구통수 초과 • 형망어업의 콤프레샤와 해수펌프 이용 변형어업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망의 자연산 우럭 치어포획 가두리 양식자에게 판매 • 체험어장 등 레저를 빙자한 일부 дай버들의 자원남획 • 대형트롤어업이 오징어채낚기 어업과 공조 조업

라. 기타

- 최근 새로운 유형의 불법어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원양어선이 중국기를 달고 연근해에서 위장조업을 하는 형태, 경남·부산·울산 연안 수역에서 일부 권현망 어선들이 선체일부를 개조하고 쌍끌이저인망 형태로 변형한 어구로써 중·저층 잡어를 포획하는 형태, 강원도 연안수역의 일부 소형선망어선이 연안 1마일 내측에서 기존 조업방법을 벗어난 U자 형의 어구를 인망하여 양미리를 대량포획 하는 형태 등이 있음
- 두 번째로 전북 하제항 및 임수도 주변에서 콤프레샤와 해수펌프를 이용한 변형 형망으로 백합·동죽 등을 포획하는 형태, 전남 흑산도 및 통영 연안수역에서 자연산 조피 불락치어를 불법으로 대량 어획하여 양식업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도 나타남
- 세 번째로 전남 목포·무안·신안해역에서 실뱀장어잡이 바지(barge) 또는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 개량안강망 등을 이용하여 꽃새우 및 젓새우를 포획하는 형태, 남해안 일부 도서에서 전문 다이버들에 의한 작살을 이용한 어류를 포획하여 판매하는 형태 등이 있음
- 지속형 불법어업으로는 무허가어선뿐 아니라 허가어선까지도 불법어업을 행하고 있음. 구체적인 예로는 소형기선저인망, 삼중자망, 정치성구획어업(이각망, 삼각망), 여수지역 중형기선저인망의 전개판 사용, 범칙어획물 운반 및 판매, 경남의 변형통발(속칭 들이)등이 있음
- 지역간·업종간 분쟁형 불법조업으로는 대형트롤어선이 동해 남부수역에 출어하여 오징어를 대상으로 어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오징어채낚기 업계와의 대립과 분쟁,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서남구 기선저인망 조업구역을 침범하여 가자미를 대상으로 조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남구 기선저인망업계와의 분쟁, 경남의 기선권현망어업이 경북 감포 앞바다 및 전남 소리도 수역까지 출어하여 조업함으로써 지역어업인과의 분쟁, 무허가 형망어선들이 장흥·보성·강진·완도 해역에서 갯지렁이 포획함으로써 연안 양식어업인들과의 분쟁 등이 있음

2. 연근해 업종별 불법어업의 유형

가. 근해 어업³⁶⁾

1)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쌍끌이)

- 대표적인 불법어업 실태를 살펴보면, 취약 시간대를 이용하여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와 수산동물의 산란장 및 성육장내에서의 어획강도가 높은 트롤·저인망 조업, 동해안 전역에서 중층 트롤들이 2중 낭망을 사용하여 오징어를 어획하고 은폐한 후 입항하는 경우, 채낚기어선과 선미식트롤(저인망)어업과 공조조업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동중국해와 제주도 및 흑산도 주변수역에서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망구에 전개판을 부착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있음
- 문제는 조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단속 차 승선하면 양망 중 고의로 끌줄을 절단하여 전개판 및 어구일체를 해중에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을 때만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인의 변명이나 죄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 두 번째,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금지구역을 고의로 침범하여 조업하거나 규정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함
 -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특정해역의 어로한계선이나 조업 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안전규칙 제20조1항 적용)
- 그 밖에 그물코의 규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2중 이상의 어망을 사용하거나 또는 세망을 내장망으로 사용하여 포획금지체장 이하의 어종 또는 소형어류를 포획하는 사례가 있음
 -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이하인 것 포획한 때(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

36) 어업지도·단속 업무편람, 동해어업지도사무소, 2006, p. 38~122, 서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무서, 서해어업지도사무소, 2007, p. 66~180 자료 참고 및 인용

- 또한,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고의로 외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개판을 사용하여 선미식 트롤 조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수산업법 제43조1항1호 적용)

<표 4-2> 대형기선저인망 위반사례 현황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망구에 전개판을 부착하여 조업한때	법 제43조	제94조 1항3호
쌍끌이어업 허가선이 외끌이 조업한 때	법 제43조	제94조 1항1호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특정어업 금지구역을 침범 조업한 때	보호령 제4조1호	보호령 제37조1호
그물코의 규격이 33mm 이하인 때(외끌이)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그물코의 규격이 54mm 이하인 때(대형트롤)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낭망 부분에 2중 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보호령 제20조1항	보호령 제37조5호
허가 없이 어선을 개조한 때	어선법 제8조1항	어선법 제43조

- 규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기선저인망의 금지구역은 총 9개 구역이며, 그물코 제한은 외끌이는 33mm, 쌍끌이는 54mm로 제한하고 있으며, 2중 어망 설치도 금지하고 있음

<표 4-3> 대형기선저인망 금지구역 및 그물코 제한 현황

규제항목	규 제 내 용	비 고
금지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 127도59분52.21초경선 및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흥도 고정과 전라남도 여수시 하백도 고정을 연결한 선과의 교차점 • 여수시 하백도 고정, 제주도 우도 동단 정동 6해리의 점, 제주도 내어곶 남동 6해리의 점 • 제주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 • 제주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으로부터 제주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선과 제주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과의 교차되는점(이하 이 표에서 “가점”이라 함) •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단으로부터 제주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과의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나점으로 함) • 전라남도 신안군 매가도 서단 정서 6해리의 점, •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단,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단, •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매화리 남서돌각을 순차로 연결한 선 (“가점”과 “나점”의 연결은 제주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 다만,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단, 옹진군 대청도 서단, 옹진군 소청도 서단,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 북격열비도 고정에서 정서로 대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과 교차되는 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에 대하를 포획할 목적으로 저인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수산자원 보호령 제4조 제1호 [별표1]
그물코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33mm이하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제1항제3호) • 대형트롤어업-54mm이하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제1항제4호) • 낭망부분에는 2중이상의 어망설치 금지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제2항) 	수산자원 보호령 제6조

2) 동해구기선저인망

- 동해구기선저인망의 주요 위반 사례로는 전개판 부착, 금지구역 침범 조업, 그물코 규격 제한 등 9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조업구역 위반 사례의 경우는 동해구기선저인망이 경북과 울산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107도선 이남으로 내려오거나 서남해구 기선저인망이 107도선 이북에서 조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단속이 곤란한 취약시간 또는 악천후 시에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그물코의 규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2중 이상의 어망 또는 세망을 내장망으로 사용하여 포획금지체장 이하의 어종 또는 소형 어류를 포획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이하인 것 포획한 때(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

<표 4-4> 동해구기선저인망 위반 사례 현황

위반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망구에 전개판을 부착하여 조업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특정어업 금지구역을 침범 조업한 때	보호령 제4조3호	보호령 제37조1호
그물코의 규격이 33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낭망 부분에 2중 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특별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경북 해역(강원도해역)에서 어구사용 금지기간(5.1~5.31)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수자보(별표10참조)	보호령 제37조2호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이하인 것 포획한 때	보호령 제12조	보호령 제38조1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보호령 제20조1항	보호령 제37조5호
다른 어업 허가어선과 공조 조업한 때	보호령 제25조1항	보호령 제37조2호

3) 서남해구기선저인망(외끌이·쌍끌이)

- 서남해구기선저인망의 주요 불법어업 사례로는 허가 이외의 근해어업 조업, 망구에 전개판 부착 조업, 특정어업금지구역 침범 조업 등 8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음
- 구체적인 사례로는 외끌이 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선에 사용이 금지된 망구 전개판을 부착하여 제주도 주변해역과 동중국해에서 트롤어업의 형태로 조업하는 경우가 있음

<표 4-5> 서남해구기선저인망 위반 사례 현황

위반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허가 이외의 근해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망구에 전개판을 부착하여 조업한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특정어업 금지구역을 침범 조업한 때	보호령 제4조3호	보호령 제37조1호
그물코의 규격이 33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낭망 부분에 2중 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특별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보호령 제20조1항	보호령 제37조5호
다른 어업 허가어선과 공조 조업한 때	보호령 제25조1항	보호령 제37조2호

4) 근해트롤

- 근해트롤어업의 주요 불법어업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어업 금지구역 침범 조업, 그물코 규격 미 준수, 2중 이상 어망 설치 등 6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음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부의 단속이 곤란한 취약시간 또는 악천후 시에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대형트롤어선이 허가상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여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세 번째로, 동해수역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생산고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조조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함

- 공조조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트롤어선 및 채낚기 어선을 단속하고 생산고 분배에 관한 계약여부를 파악하여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어업지도선에서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없음
- 네 번째로, 그물코의 규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2중 이상의 어망 또는 세망을 내장망으로 사용하여 포획금지체장 이하의 어종 또는 소형어류를 포획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이하의 어종 포획한 때(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
- 그 밖에 선명을 은폐하고 야간을 틈타 조업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어선법제16조(선박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와 수산업법제60조(표지의 설치·보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목에 위배됨

<표 4-6> 근해트롤 위반 사례 현황

위반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근해트롤어업의 특정어업 금지 구역을 침범 조업한 때	보호령 제4조2호	보호령 제37조1호
그물코의 규격이 54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낭망 부분에 2중 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획한 때	보호령 제12조	보호령 제38조1호
오징어 채낚기어업과 공조조업한 때	보호령 제25조1항	보호령 제37조2호
동경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 근해트롤의 규제 내용으로는 어선규모 제한, 조업 금지구역 10곳 제한, 허가정수 제한, 어업허가 제한 및 조건, 그물코 제한 등이 있음

<표 4-7> 근해트롤 규제 내용 현황

규제항목	규 제 내 용	비 고
어선규모 제한	• 60톤 이상 140톤 미만 (구 톤수 80톤 이상 170톤 미만)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1항 [별표1]
조업구역	• 전국근해 ※허가정수 37건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제1항 [별표13]

규제항목	규제내용	비고
금지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북 경흥군 노서면 우암령 정상에서 150도 6,486m의 점 • 경북 울릉군 동단 • 동경129도59분51.58초 북위35도00분11.19초의 교점 • 경남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단 • 동경126도59분52.57초 북위32도45분12.01초의 교점 • 동경125도59분52.87 북위32도45분12.00초의 교점 •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서단 • 인천 용진군 백령도 서단 • 평북 용천군 신도 서단 • 용천군 용암포읍 매로리 동서돌각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2호 [별표2]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9]
그물코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mm이하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 낭망부분에는 2중이상의 어망 설치 금지 (수산자원보호령 제8조) 2중이상의 어망사용 금지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수산자원보호령 제8조

5) 동해구트룰

- 동해구트룰의 경우 대표적인 불법어업의 유형으로는 금지구역 침범, 그물코 규격, 2중 이상 어망 설치, 포획금지체장 위반, 조업구역 위반, 공조조업 등 6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음

<표 4-8> 동해구트룰 위반 사례 현황

위반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동해구트룰어업의 특정어업 금지 구역을 침범 조업한 때	보호령 제4조2호	보호령 제37조1호
그물코의 규격이 43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낭망 부분에 2중 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획한 때	보호령 제12조	보호령 제38조1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보호령 제20조1항	보호령 제37조5호
다른 어업 허가어선과 공조조업한 때	보호령 제25조1항	보호령 제37조2호

-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로는 어선규모 제한과 조업구역 설정, 금지구역 설정, 그물코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4-9> 동해구트롤 규제 내용 현황

규제항목	규제내용	비고
어선규모 제한	• 20톤 이상 60톤 미만 (구 톤수 20톤 이상 80톤 미만)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1항 [별표1]
조업구역	• 경북과 울산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허가정수 23건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제1항 [별표13]
금지구역	•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수원단· 고성군 거진읍 거진단에서 90도 9,266m의점· 양양군 강현면 웅진단에서 90도 7,412m의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90도 11,199m의점· 강릉시 강동면 정도진단에서 90도 9,266m의점·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90도 18,531m의점· 경북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에서 90도 18,531m의점· 울진군 기성면 화모말에서 90도 20,384m의점· 영덕군 강구면 강구동 등대에서 90도 21,310m의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기갑에서 90도 11,119m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리말에서 90도 12,972m의점· 경주시 감포읍 대본말에서 90도 18,531m의점· 경북과 울산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107도 22,237m의점 및 경북과 경남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해역 • 경북 울릉군 울릉도 본도 주위 1,800m 이내의 해역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6호 [별표 6]
그물코 제한	• 43mm이하 (수산자원보호령제6조) • 낭망부분에는 2중이상의 어망 설치 금지 (수산자원보호령 제8조) 2중이상의 어망사용 금지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수산자원보호령제6조 수산자원보호령제8조

6) 근해채낚기

- 근해채낚기의 대표적인 불법어업 유형은 공조조업과 집어등 광력 기준 위반 등 2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음

<표 4-10> 근해채낚기 위반사례 현황

위반 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다른 어업 허가어선(대형트롤어선)과 공조 조업한 때	보호령 제25조1항	보호령 제37조2호
집어등 광력기준 위반한 때 (허가규칙 [별표 1]의 비고 8 참조)	허가규칙 제3조1항	법제95조1항

7) 근해자망

- 근해자망의 불법어업 사례를 살펴보면, 허가 이외의 근해어업, 무허가 근해자망어업, 2중 이상 자망 사용, 금지구역 침범 조업 등 18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며, 주로 그물코 제한과 금지기간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사례로는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경남 통영 인 근해상에서 삼중자망을 사용하여 조업 하는 경우와, 서해특정해역에서 어로한계선을 월선 하여 조업(안전규칙 제20조1항)하는 경우가 있음

<표 4-11> 근해자망 위반사례 현황

위반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허가 이외의 근해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무허가 근해자망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유자망어선이 고정자망을 사용한 때, 고정자망어선이 유자망 사용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1호
근해자망허가 없이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한 때	법 제58조	법 제94조1항3호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특정어업 금지구역을 침범 조업한 때	보호령 제4조5호	보호령 제37조1호
신고하지 않고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이상의 자망 사용한 때	보호령 제5조1호	보호령 제37조2호
삼중자망어선이 신고한 구역이외에서 조업한 때	보호령 제5조1호	보호령 제37조2호
삼중자망어선이 승인 받은 구역이외에서 조업한 때	보호령 제5조1호	보호령 제37조2호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이 100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조기류의 포획을 목적으로 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이 50mm이하인 때 (2007.7.13. 이후 법 시행)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대개의 포획을 목적으로 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이 240mm이하인 때(2007.7.13. 이후 법 시행)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2중 이상 자망 사용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어선의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 규격이 40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여자망,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자망어업의 어망사용 금지기간(5.16~6.15) 위반한 때 - 다만, 인천시, 경기도, 충남(7.16~8.15) 및 전남 영광군·신안군 (8.1~8.31)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일부구역에서 멸치포획을 목적으로 한 금지기간(4.1.~6.30)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다만, 주1) 및 주2)의 좌표를 각각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자보 제11조) 별표참고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경기·인천의 근해자망어선이 전남 연안에서 부속선을 이용 이중이상 자망어구를 부설 조업한 때	허가규칙3조	법제50조
바다에 부설한 어구의 틀 양쪽 끝에 일정한 표기를 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 2008.12.31.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개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상실됨	허가규칙14조	법 제50조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해당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선박에 실지 아니한 때 - 2009.6.30.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개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상실됨	허가규칙14조	법제50조

8) 근해안강망

- 근해안강망의 불법어업 유형은 허가 이외의 근해어업 조업, 금지구역 침범, 그물코 규격 위반, 2중 이상 어망 설치 등 7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허가 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12> 근해안강망 위반사례 현황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허가 이외의 근해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1호
근해안강망어업의 특정어업 금지 구역을 침범 조업한 때	보호령 제4조7호	보호령 제37조1호
그물코의 규격이 35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낭망 부분에 2중 이상의 어망 설치한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여자망,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근해안강망어업의 어망사용 금지기간 (5.16~6.15) 위반한 때 - 다만, 인천시, 경기도, 충남(7.16~8.15) 및 전남 영광군·신안군 (8.1~8.31)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어구사용 통수 위반(5통)한 때 - 다만, 인천·경기도·충남 해역에서는 1.1~6.30까지는 10통 이내	허가규칙 제14조	법제50조
바다에 부설한 어구의 틀 양쪽 끝에 일정한 표기를 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 2008.12.31.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개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 상실됨	허가규칙 제14조	법제50조

9) 대형선망

- 대형선망의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면, 금지구역 침범, 그물코 제한 위반, 어구사용금지구역 위반, 어획 금지기간 위반 등 10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음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국연안에 불빛사용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주로 제주도 연안에 설정된 불빛사용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소형선망어선의 정치망어업권 보호구역내에서 임의 조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세 번째로, 허가받은 소형선망어선이 멀리 포획을 목적으로, 2~3척의 별개의 허가선을 하나의 선단으로 구성하여 여천군 일원 및 고흥 나라도, 완도 청산도 부근해역에서 선단 형태로 조업하는 사례가 있음
- 적용법규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어선의 규모·장비 등의 기준)

- 이 외에도 그물코의 규격 제한규정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2중 이상 또는 세망을 내장망으로 사용하여 포획금지체장 이하의 어종 또는 소형 어류를 포획하고 있음
-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이하인 것 포획한 때(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

<표 4-13> 대형선망 위반사례 현황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특정어업 금지구역에 침범 조업한 때	보호령 제4조5호	보호령 제37조1호
그물코의 규격이 30mm 이하인 때 - 사용 중인 어구일 경우 10% 오차범위 허용) - 오차범위는 2008. 7.13. 이후 폐지됨)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불빛을 이용한 선망어업의 어구사용금지구역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일부지역에서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한 금지기간 (12.1~다음해2월말)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여자망,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근해선망어업의 어망사용 금지기간 (5.16~6.15) 위반한 때 다만, 인천시, 경기도, 충남(7.16~8.15) 및 전남 영광군·신안군 (8.1~8.31)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전남 및 경남 일부해역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한 어구사용 금지구역을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경남일부·부산시·울산시 해역 및 전남해역에서 멸치포획 목적으로 한 금지기간(4.1.~6.30)을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일부구역에서 멸치 포획을 목적으로 한 금지구역을 위반한 때 [별표 9 및 그 부도 내]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정치망보호구역에서 불빛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한 때	보호령 제28조2호	보호령 제38조1호

10) 소형선망

- 소형선망의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저인망 조업, 금지구역 침범조업, 그물코 규격 미 준수, 어구사용 금지구역 위반 등 총 11가지의 사례가 있음. 이러한 위반 사례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위배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14> 소형선망 위반사례 현황

위반 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저인망 조업을 한 때 (20톤 미만의 소형선망어선)	법 제58조	법 제94조1항3호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특정어업 금지구역에 침범 조업한 때	보호령 제4조5호	보호령 제37조1호
그물코의 규격이 30mm 이하인 때 (사용 중인 어구일 경우 10% 오차범위 허용은 법 개정으로 2008. 7.13. 이후 폐지됨)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불빛을 이용한 선망어업의 어구사용 금지구역 위반한 때 (소형선망어업은 일부지역 제외)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경남 및 전남 일부해역에서 삼치 포획을 목적으로 한 금지기간(12.1~다음해2월말)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여자망,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근해선망어업의 어망사용 금지기간 (5.16~6.15) 위반한 때. 다만, 인천시, 경기도, 충남(7.16~8.15) 및 전남 영광군·신안군 (8.1~8.31)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전남 및 경남 일부해역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한 어구사용 금지구역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경남일부·부산시·울산시 해역 및 전남해역에서 멸치포획 목적으로 한 금지기간 (4.1.~6.30)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일부구역에서 멸치 포획을 목적으로 한 금지구역 위반한 때 [별표 9 및 그 부도 내]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정치망보호구역에서 불빛이용 수산동물 유인한 때	보호령 제28조2호	보호령 제38조1호

11) 근해통발

- 근해통발의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어업,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금지구역 위반 등 13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 중에서 그물코 규격 위반에 대한 유형이 빈번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구체적인 불법어업 사례로는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 조업이 금지된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와 그물코의 규격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경우, 그리고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치·자어 및 미성숙어를 포획[적용법규 :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수산동물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표 4-15> 근해통발 위반사례 현황

위반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근해어업 허가어선이 무허가로 근해통발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1호
대게포획을 주 목적으로 한 그물코의 규격이 150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붉은 대게포획을 주 목적으로 한 그물코의 규격이 120mm 이하인 때 ※ 2008년 7월 14일부터 125mm 이하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꽃게포획을 주 목적으로 한 그물코의 규격이 65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기타 수산동물포획을 주 목적으로 한 그물코의 규격이 35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강원 일부지역에서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한 어구사용 금지기간(5.1~7.31, 10.31~12.31)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제주도(본도에 한함)의 주위 2천7백미터 이내의 구역 안에서 통발을 사용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꽃게포획금지기간(6.16~8.31) 위반하여 조업한 때 - 단, 인천·경기도·충남에서는 7.1~8.31)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붕장어 및 꽃게포획금지체장 위반한 때(붕장어35cm, 꽃게 갑장 6.4cm)	보호령 제12조	보호령 제37조1호
통발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한 때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6조	보호령 제37조3호
정치망보호구역안 통발어구 설치한 때	보호령 제28조3호	보호령 제38조2호
바다에 부설한 어구의 틀 양쪽 끝에 일정한 표기를 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 2008.12.31.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개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 상실됨	허가규칙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해당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선박에 실지 아니한 때 - 2010.6.30.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개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 상실됨	허가규칙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12) 근해형망

- 근해형망의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 조업과 금지구역 침범 조업, 형망사용금지기간 위반 등 11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도안전과에서는 이러한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6년 특별 합동단속 계획 안을 마련하였음. 그 내용으로는 어구에 별도의 체인을 달아 사용할 경우 수산업법 제58조에 위반됨을 지도하는 것과 망고, 망폭 전개를 위한 일자형 파이프를 부착하여 사용한 때, 즉 연안조망형태의 조업을 8톤 미만의 어선은 수산업법 제43조를 적용하는 것 등이 있음

<표 4-16> 근해형망 위반사례 현황

위반 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20톤 미만 어선이 무허가로 패류형망어업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근해형망어업의 특정어업 금지 구역을 침범 조업한 때	보호령 제4조8호	보호령 제37조1호
동력어선에 사용되는 형망 사용금지기간(6.1~7.31)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보호령 제20조1항	보호령 제37조5호
형망의 허가가 없는 전남·경남연해에서 조업한 때	보호령 제20조1항	보호령 제37조5호
해가 진 뒤에 조업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4통 이상의 어구사용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갈퀴간격 4cm이하인 것 사용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그물코의 안쪽길이가 5.7cm이상인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패류 이외의 어획물을 포획한 때 - 즉, 허가이외의 어획물을 포획한 때	허가규칙 제16조	허가규칙4호

13) 새우조망

- 새우조망의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면,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금지기간 위반 등이 있음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통영시 한산, 산양, 옥지해역에서 망구, 막대 길이 (8m이하), 조업구역 등을 위반하여 조업하거나, 날개그물 7m이하 사용과 16mm이상의 망목과 허그물 사용을 사용하여 조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규격 초과한 어구와 망목 사용의 사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어종을 포획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새우방어업 허가를 득한 50여척이 어구사용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겨울철 취약시간대에 조업하는 사례도 있음

14) 기선권현망

- 기선권현망의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 어구변형 등 불법어구 사용, 금지기간 위반 등 9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권현망어구가 아닌 변형된 어구를 사용하여 쌍끌이 형태로 삼치, 갈치, 고등어 등을 포획하고, 날개그물과 자루그물에 모지망 이외의 그물을 사용하며,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이탈하여 조업, 멸치 포획기간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권현망어선이 어구와 어선을 개조하여 저서어종을 어획함
 - 기장군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권현망어구를 저인망어구로 변형하여 쌍끌이 저인망의 방법으로 조업 중인 것 단속됨
 - 경남선적 일부 기선권현망어선이 멸치 어획 부진 등의 사유로 중층트롤어망을 개량, 쌍끌이저인망어선 형태로 육지도 근해에서 조업함에 따라 소형어류 및 치어까지 무차별 포획하여 연안수산자원의 남획우려와 수심이 낮은 곳에서 인망 함으로써 통발·유자망 등 타 업종 간 어구분쟁소지 다발

<표 4-17> 기선권현망 위반사례 현황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무허가로 기선권현망어업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어구변형 및 어선·어구 타 근해 허가어업 형태로 변형하여 조업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1호
저인망식 조업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1호
기선선인망어업의 특정어업 금지구역을 침범 조업한 때	보호령 제4조4호	보호령 제37조1호
그물코의 규격이 15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경남일부·부산시·울산시 해역 및 전남해역에서 멸치포획 목적으로 한 금지기간(4.1.~6.30)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제1구(경남)에서 제2구(전남) 월선조업으로 인한 조업구역을 위반한 때	보호령 제20조1항	보호령 제37조5호
정치망보호구역에서 어업권행사 방해한 때	보호령 제28조	보호령 제38조2호

15)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의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어업, 조업구역 위반, 장비 및 인원 위반 등 8가지의 대표적인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보령시, 서천군 연안 일원에서 30여척이 고마력 가솔린 기관을 장착하고 취약시간대에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물성 패류의 채취금지기간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키조개 : 7.1~8.31
 - 새조개 : 6.16.~9.30, 부산·울산·경남·제주도 및 전남(무안군 및 영광군 제외)에서는 6.1~9.30
 - 코끼리조개 : 강원도와 경북에 한하여 4.1~7.31까지
 - 적용법규 :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제1항(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 악천후 시 단속이 곤란함을 틈타 섬주위에 파고가 잔잔한 곳을 선점하여 묘박 후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단속이 어려운 이유로는 잠수기어선의 속력이 40~50노트로 고속이고, 단속이 어려운 야간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8> 잠수기 불법어업 위반 사례

위반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8톤 미만의 어선이 무허가로 잠수기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1항1호	법 제94조1항1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보호령 제20조1항	보호령 제37조5호
정치망보호구역안, 잠수기 사용한 때	보호령 제28조3호	보호령 제38조2호
장비 및 인원 위반한 때 - 허가규칙 [별표 1] 비고 8 참조	허가규칙 제3조1항	허가규칙 제1호 가 목
배 길이의 1/2에 해당하는 선수부 좌우현 외판에 황색의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150m이상의 호스사용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해가 진 뒤에 조업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분사기사용한 때 (시·도지사 승인 시 제외)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16) 근해연승

- 근해연승의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어업, 조업구역 위반, 연승어구 설치 등이 있으며, 이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위배되는 사항임

<표 4-19> 근해연승 불법어업 위반 사례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근해어업 허가어선이 무허가로 근해연승어업을 한 때	법 제58조	법 제94조1항3호
미끼용 새우포획목적으로 무허가 연안조망어업(연안새우방 어업)을 한 때 - 연안조망어업의 어선의 규모가 8톤이하이기 때문에 법 제58조를 적용	법 제58조	법 제94조1항3호
정치망보호구역안, 연승어구 설치한 때	보호령 제28조3호	보호령 제38조2호

17) 근해봉수망

- 근해봉수망의 불법어업 유형으로는 무허가 조업, 범칙 어획물 방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지기간 위반 등 5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며, 이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위배되는 사항임

<표 4-20> 근해붕수망 위반사례 현황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근해어업 허가어선이 무허가로 들망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범칙어획물방류 명령 위반한 때	법 제74조2항	법 제95조9호
경남 일부지역 멸치포획 목적으로 한 들망 사용 금지구역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경남일부·부산시·울산시 해역 및 전남일부해역에서 멸치포획 목적으로 한 금지기간 (4.1.~6.30)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들망이용 조피볼락치어 포획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나. 연안어업

1) 연안자망

- 연안자망의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면, 허가 이외의 연안어업 조업, 2중 이상 자망 사용, 금지구역 침범 등 15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로 지역별·어종 별로 그물코 크기 위반과 어획 금지기간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위배되는 사항임

<표 4-21> 연안자망 위반사례 현황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허가 이외의 연안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연안자망허가 없이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특정어업 금지구역을 침범 조업한 때	보호령 제4조5호	보호령 제37조1호
신고하지 않고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이상의 자망 사용한 때	보호령 제5조1호	보호령 제37조2호
삼중자망어선이 신고한 구역이외에서 조업한 때	보호령 제5조1호	보호령 제37조2호
삼중자망어선이 승인 받은 구역이외에서 조업한 때	보호령 제5조2호	보호령 제37조2호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이 100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조기류의 포획을 목적으로 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이 50mm이하인 때(2007.7.13. 이후 법 시행)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대게의 포획을 목적으로 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이 240mm이하인 때(2007.7.13. 이후 법 시행)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2중 이상 자망 사용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어선의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 규격이 40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여자망,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자망어업의 어망사용 금지기간(5.16~6.15)위반한 때 - 다만, 인천시, 경기도, 충남(7.16~8.15) 및 전남 영광군·신안군(8.1~8.31)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일부구역에서 멸치포획을 목적으로 한 금지기간 (4.1.~6.30)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다만, 주1) 및 주2)의 좌표를 각각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함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바다에 부설한 어구의 틀 양쪽 끝에 일정한 표기를 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 2008.12.31.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개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 상실됨	허가규칙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어선 규모 8~20톤 미만의 어구량 범위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선박에 싣지 아니한 때	허가규칙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 주1) 및 주2)는 수산자원보호령 별표 10 참조

2) 연안양조망

- 충남 연안 해상 일원에서 60여척이 기선권현망어구 형태로 어구를 개량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함
- 연안양조망어선이 양조망어구를 변형하여 저인망 조업을 하였을 경우, 어선의 규모 기준에 의하면 저인망은 20톤 이상인 어선(중형기선저인망)에 허가가 발급되며, 20톤 미만의 어선은 저인망 허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산업법 제43조가 아닌 법 제58조가 적용이 되어야 함

<표 4-22> 연안양조망 위반사례 현황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허가 이외의 연안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타 관할구역(시·도)에서 조업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저인망 조업을 한 때	법 제58조	법 제94조1항3호
그물코의 규격이 15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불빛을 이용한 선망어업의 어구사용 금지구역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일부지역에서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한 금지기간(12.1~다음해2월말)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여자망,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연안 선망어업의 어망사용 금지기간(5.16~6.15) 위반한 때 - 다만, 인천시, 경기도, 충남(7.16~8.15) 및 전남 영광·신안군(8.1~8.31)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전남 및 경남 일부해역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한 어구사용 금지구역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경남일부·부산시·울산시 해역 및 전남해역에서 멸치포획 목적으로 한 금지기간(4.1~6.30)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꽃게포획금지기간(6.16~8.31) 위반하여 조업한 때 - 단, 인천·경기도·충남에서는 7.1~8.31)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다른 어업 허가어선과 공조 조업한 때	보호령 제25조 1항	보호령 제37조2호

3) 연안개량안강망

- 연안개량안강망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허가 이외의 어업, 그물코 규격제한 위반, 2중 이상 자망 사용, 금지기간 위반 등 8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금지기간 위반과 불법어구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구체적인 사례로는 충남 연안해상일원에서 100여척이 그물코 25mm이하를 사용하여 불법조업을 하여 치어 남획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23> 연안안강망 위반사례 현황

위반 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허가이외의 연안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연안개량안강망(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 제외) 그물코의 규격이 25mm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낭망 부분에 2중 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법에 의하여 인정된 어구외의 어구를 소지한 때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의 경우 등)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 포함)의 어망사용 금지기간(5.16~6.15)을 위반한 때 - 다만, 인천시, 경기도, 충남(7.16~8.15) 및 전남 영광군·신안군 (8.1~8.31)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다만, 주1) 및 주2)의 좌표를 각각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함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개량안강망 어구사용 통수(5통) 위반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바다에 부설한 어구의 틀 양쪽 끝에 일정한 표기를 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 2008.12.31.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개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상실됨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4) 연안통발

- 연안통발의 불법어업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조업, 그물코 제한 위반, 어구 사용 금지기간 위반, 금지채장 위반 등 12가지의 대표적인 위반 사례가 나타났으며, 주로 그물코 제한 위반과 채장 위반 등의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음

<표 4-24> 연안통발 위반사례 현황

위반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8톤 미만의 어선이 무허가로 연안통발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붕장어·낙지·새우류·민꽃게의 포획을 주 목적으로 한 그물코의 규격이 22mm 이하인 때 - 통발입구에 부착된 갈때기 모양 그물 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 길이는 140mm 이상)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대게포획을 주 목적으로 한 그물코의 규격이 150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붉은 대게포획을 주 목적으로 한 그물코의 규격이 125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기타 수산동물포획을 주 목적으로 한 그물코의 규격이 35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그물코위반 통발을 사용하지 않고 적재	보호령 제8조	
강원 일부지역에서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한 어구 사용 금지기간(5.1~7.31, 10.31~12.31)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다만, 주1) 및 주2)의 좌표를 각각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보호령 제11조	보호령 제30조2호
포획·채취 금지채장 또는 채중을 위반하여 어획한 때	보호령 제12조	보호령 제38조1호
붕장어 및 꽃게포획금지채장 위반한 때 - 붕장어35cm, 꽃게 갑장 6.4cm	보호령 제12조	보호령 제38조1호
정치망보호구역안 통발어구 설치한 때	보호령 제28조3호	보호령 제38조2호
바다에 부설한 어구의 틀 양쪽 끝에 일정한 표기를 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 2008.12.31.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개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상실됨	허가규칙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장어통발어업 및 기타통발어업인 경우 8~20톤 미만의 어구량 및 통발간격 범위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선박에 실지 아니한 때 - 2010.6.30.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개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상실됨	허가규칙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5) 연안선인망

- 연안선망의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어업, 그물코 제한 위반, 어구 사용 금지기간 위반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위배되는 사항임

<표 4-25> 연안선망 위반사례 현황

위반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8톤 미만의 어선이 허가를 받지 않고 연안선인망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그물코의 규격이 15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어구사용 금지기간(1.1~9.30)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6) 연안들망

- 연안들망의 불법어업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어업, 범칙 어획물 방류 명령 위반, 어획 금지구역 위반 등 6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음

<표 4-26> 연안들망 불법어업 위반 사례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10톤 미만 어선이 무허가로 연안들망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범칙어획물방류 명령 위반한 때	법 제74조2항	법 제95조9호
경남 일부지역 멸치포획 목적으로 한 들망 사용 금지구역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경남일부·부산시·울산시 해역 및 전남 일부해역에서 멸치포획 목적으로 한 금지기간 (4.1.~6.30)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포획금지채장·채중을 위반하여 어획한 때	보호령 제12조	보호령 제38조1호
들망이용 조피볼락 치어포획한 때	보호령 제12조	보호령 제37조3호

7) 연안조망

- 연안조망의 불법어업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어업, 그물코 제한 위반 등 9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며, 이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허가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나타났음

<표 4-27> 연안조망 불법어업 위반 사례

위반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불법어구(형망식 어구)사용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타 관할구역(시·도)에서 조업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8톤 이상 어선이 무허가로 연안새우방어업을 한 때	법 제58조	법 제94조1항3호
그물코의 규격이 25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낭망 부분에 2중 이상의 어망 설치한 때	보호령 제6조	

위반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전라남·북도 일부해역에서 새우포획을 목적으로 한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7.1~8.31)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어구사용금지기간(10.1~다음해 4.30까지) 위반한 때 - 꽃새우 포획목적일 경우 충남 및 전북해역에서는 5.1~9.30일 까지는 제외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조업기간(5.1~9.30) 중 꽃새우 이외의 어획물을 포획한 때	보호령 제9조	보호령 제37조2호
망구에 설치한 막대 길이 12m 이하 위반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다. 기타 위반 사례

1) 구획어업

- 구획어업의 불법어업 유형으로는 허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야간 조업, 어구사용 위반 등 7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정치성 구획어구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단속 취약 시간대인 새벽을 틈타 어구를 양망하는 경우와, 남해안의 연안 수역에 유도망을 이용하여 어류를 헛통에 유도한 후 자루그물로 유도하여 어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외에도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구획어업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어장을 매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표 4-28> 구획어업 위반사례 현황

위반사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허가받은 수역이 아닌 다른 수역에서 조업 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그물코의 규격이 15mm 이하인 때	보호령 제6조	보호령 제37조2호
해가 진 뒤에 조업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2통 이상의 어구사용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갈퀴간격 3.5cm이하인 것 사용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그물코 안쪽길이가 5cm 이하인 어구를 사용한 때	허가규칙 제14조	허가규칙3호 나목

2) 어획물 운반업

- 어획물 운반업의 위반 사례로는 어획 행위, 미등록 어선 사용, 관계법령 위반 등 7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산업 법과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위배되는 사항임

- 관련법을 살펴보면, 수산업법 제49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어획물을 운반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8조(면허어업)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 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와 법 제29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3조(허가어업)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6조(신고어업)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가 있음

<표 4-29> 어획물 운반업 위반사례 현황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때	법 제43조	법 제94조1항3호
어획물운반업등록을 하지 않고 어획물을 운반한 때	법 제49조1항	법 제94조1항1호
수산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법 제73조	법 제95조6호
관세법 위반으로 관세청장의 요청에 의한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위반한 때	법 제50조1항2호	법 제96조1호
어획물 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운반을 의뢰받을 수 없는 어업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 한 때	어획물 운반업 등록 규칙 제4조	어획물 운반업 등록 규칙 1호
어획물운반업등록의 제한 또는 조건에 위반한 때	어획물 운반업 등록 규칙 제6조	어획물 운반업 등록 규칙 2호
어획물운반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획물운반업을 한 때	어획물 운반업 등록 규칙 8조	어획물 운반업 등록 규칙 3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제6조 관련)

1. 공통사항
 - 가.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획물·양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이 어선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어획물·양식물 또는 그 제품은 그 운반을 의뢰한 어선의 양륙항에 양륙하여야 한다.
 - 라.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해상에서 어획물·양식물 또는 그 제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이 노후되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어선을 폐기하거나 수출 또는 다른 어선으로의 대체신청등(이하 “어선의 폐기등”이라 한다)의 조치내역 또는 조치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6월이내에 어선의 폐기등을 하는 조건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사.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어획물운반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설된 연료유 탱크외의 장소에 유류를 적재·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영 별표 1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가 가공하는 수산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어획물만을 운반하여야 한다.
3. 영 별표 1의2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어획물만을 운반하여야 한다.

3) 어장관리선

- 어장관리선의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면,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선박을 운행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구역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양식어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이 일반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수산업법에 위반되는 사항임
- 어장관리선으로 사용을 지정받은 어선이나 승인을 얻은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 제43조(허가어업) 또는 제46조(신고어업)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가능함

<표 4-30> 어장관리선 위반사례 현황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벌칙조항
관리선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때	법 제29조1항	법 95조3호
관리선의 지정·승인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때	법 제29조4항	법 95조3호
양식어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형망어선을 사용하여 일반해역에서 조업한 때	법 제29조4항	법 95조3호

4) 소형기선저인망어업

-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불법어업의 대표적인 경우로,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 단속으로 근절되고 있음. 구체적인 불법어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수산업법에서 그 어업을 인정하지 않는 어업으로 어구에 전개판을 부착하여 어망을 전개하고 해저를 소해하는 어법으로서 트롤어업과 유사한 어업
 - 어장형성과 관계없이 고질적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조업
 - 주로 10톤 미만 어선으로 전개판(오타)이 없이 11m정도의 파이프 수해를 장착하고 저면에는 와이어에 구슬납을 5cm간격으로 달아서 조업
 - 주로10톤 미만 어선으로 전개판(오타)이 없으며, 11m정도 길이의 파이프 수해를 장착하고 저면에는 가락납을 20~30cm간격으로 달았음(새우방)
 - 총톤수 20톤을 기준으로 한 적용 법 조항 : 20톤 미만 및 20톤 이상 어선이 망구 전개판을 사용 수산업법에 없는 소형기선저인망(속칭 고데구리)어업을 하여 포획·채취물(어획물)이 있는 경우

- 조업을 하지 않고 소형기선저인망어구를 적재한 상태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적용 법 조항 : 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제1항

3. 연근해 업종별 단속 기준

가. 근해어업

- 대형기선저인망에 해당하는 외끌이·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의 경우 주로 조업구역과 금지구역, 그물코 규격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31> 대형기선저인망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의 명칭	외끌이, 쌍끌이
조업구역 (보호령20조1항 별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도 해안선과 동경 128°선의 교점·북위 33°20' 동경 128°의 교점 및 북위 33°30' 동경 129°50'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 •[별표13 비고] : 쌍끌이는 1척 침몰시 어선복구 또는 건조까지 외끌이로 조업가능
특정어업 금지구역 (보호령4조)	별표1 및 그 부도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54mm이하, 2중 이상 낚망 사용금지

- 중형기선저인망인 동해구기선저인망, 외끌이·쌍끌이 서남해구기선저인망의 경우는 조업구역과 금지구역, 그물코 제한, 어구사용 금지구역, 2중 이상 자망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32> 중형기선저인망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의 명칭	동해구, 외끌이서남해구, 쌍끌이서남해구
조업구역 (보호령20조1항 별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도와 울산시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별표13 비고] : 쌍끌이는 1척 침몰시 어선복구 또는 건조까지 외끌이로 조업가능 <이남과 이서의 해역>
특정어업 금지구역 (보호령4조)	별표3 및 그 부도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33mm이하, 2중 이상 낚망 사용금지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2중이상 자망 사용금지(보호령 5조, 규척 41조2,3,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8 및 그 부도 • 5.1~5.31 강원도해역 사용금지(동해구기저에 한함)

- 대형트롤의 경우는 조업구역이 전국 근해이고, 금지구역과 그물코 규격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33> 대형트롤 단속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대형트롤
어업의 명칭	대형트롤
조업구역 (보호령20조1항 별표13)	전국 근해
특정어업 금지구역 (보호령4조)	별표2 및 그 부도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54mm이하, 2중 이상 낱망 사용금지

- 동해구트롤은 조업구역과 금지구역, 그물코 규격과 허가 제한 및 조건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34> 동해구트롤 단속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동해구트롤
어업의 명칭	동해구트롤
조업구역 (보호령20조1항 별표13)	경북도와 울산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특정어업 금지구역 (보호령4조)	별표5-2 및 그 부도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43mm이하, 2중 이상 낱망 사용금지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8)	동경128° 이동수역 조업 금지

- 근해선망에 해당하는 대형·소형 선망은 전국 근해에서 조업하고 있고, 금지구역과 그물코 규격, 어구사용금지구역과 2중 이상 자망 사용금지 등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35> 근해선망 단속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근해선망
어업의 명칭	대형선망, 소형선망
조업구역 (보호령20조1항 별표13)	전국근해
특정어업 금지구역 (보호령4조)	삼치포획목적 별표5 및 그 부도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30mm이하, 사용중인 어구는 10%오차 허용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2중이상 자망 사용금지(보호령 5조, 규칙 41조2,3,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빛사용 금지구역 (해역 및 소형선망 예외 구역 별도표시) • 삼치포획목적 12.1~2.30 금지구역 별도 표시 • 멸치포획시 금지구역 (해역별도 표시)

- 근해채낚기는 전국 근해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단속근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36> 근해채낚기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근해채낚기
어업의 명칭	근해채낚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광력기준위반 신설요구

- 기선 선인망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선권현망은 조업구역이 2군데이며, 금지구역 및 그물코 규격, 어구사용금지구역과 2중 이상 자망 사용금지, 허가 제한 및 조건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37> 기선선인망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기선선인망
어업의 명칭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보호령20조1항 별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 : 경북도와 울산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남도와 전남도의 도계선간의 해역 • 제2구 : 전남도의 해역
특정어업 금지구역 (보호령4조)	별표4 및 그 부도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15mm이하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2중이상 자망 사용금지(보호령 5조, 규칙 41조2,3,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치포획시 어구 사용금지 구역 별표9 및 그 부도 • 멸치포획 금지 구역 외의 경남, 부산, 울산, 전남해역에서 4.1~6.30일까지 멸치 포획목적 어구 사용 금지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8)	경남도 연안 일몰 후 조업금지

- 근해자망의 경우 전국 근해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금지구역과 그물코 규격,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2중 이상 자망 금지, 허가의 제한 및 조건 등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38> 근해자망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근해자망
어업의 명칭	근해자망
조업구역 (보호령20조1항 별표13)	전국 근해
특정어업 금지구역 (보호령4조)	삼치포획목적 별표5 및 그 부도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삼치포획시 100mm 이하, 2중이상 자망의 내망은 40mm이하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2중이상 자망 사용금지(보호령 5조, 규칙 41조2,3,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조] 1. 별도1(왕돌초)지역 조업신고 또는 2. 별도 승인 외에는 2중망 이상 사용금지 - 4.1~6.30간 별표10 구역내 멸치포획금지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특해역에서 조업어선 어구위치 설치 표시 방법 • 근해채낚기 겸업시 근해자망어업은 별도표시 해역에서 만 조업 가능 다만,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경계선 설정시 월선조업 금지 • 어망 위치의 설치표시 방법 • 어구사용량의 제한('06.07.01)

- 근해안강망의 경우, 조업구역은 전국 근해이며 금지구역과 그물코 규격, 어구 사용금지구역과 2중 이상 자망 사용, 허가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39> 근해안강망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근해안강망
어업의 명칭	근해안강망
조업구역 (보호령20조1항 별표13)	전국 근해
특정어업 금지구역 (보호령4조)	별표6 및 그 부도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mm이하, 과학원장 고시 해파리 배출망에 20~35mm를 7.1~12.31일까지 사용하는 경우 제외 • 2중 이상 낭망 사용금지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2중이상 자망 사용금지(보호령 5조, 규칙 41조2,3,4항)	사용금지 기간 및 내용 별표 표시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땃포함) 사용 또는 적재 제한 • '03.7.1부터 15통 이내(땃포함) • '04.7.1부터 10통 이내 • '05.7.1부터 5통 이내(인천시·경기도 및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10통 이내의 어구) • 어망 위치의 설치표시 방법

- 근해봉수망의 경우 조업구역은 근해봉수망은 전국 근해, 근해자리돔들망은 제주도 연해이며, 특별한 단속근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40> 근해봉수망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근해봉수망
어업의 명칭	근해봉수망, 근해자리돔들망
조업구역 (보호령20조1항 별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봉수망 : 전국 근해 • 근해자리돔들망 : 제주도 연해

- 잠수기의 경우, 조업구역은 제1구부터 제5구까지 나뉘어져 있으며, 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41> 잠수기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잠수기
어업의 명칭	잠수기
조업구역 (보호령20조1항 별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 : 강원도 연해, 제2구 : 경북도 연해, 제3구 : 부산시, 울산시 및 경남도 연해, 제4구 : 전남도 연해, 제5구 :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및 전북도 연해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의 1/2 선수부 좌우현 외판에 황색칠 • 150m 미만의 호스 사용 • 마을어장내 관리선 지정 후 조업 • 일몰 후 조업 금지 • 두구식 또는 마스크식 중 하나 선택 조업 • 분사기 사용 금지(매물성 패류에 한해 시·도지사가 정한 조건하에서 가능)

- 근해통발에 해당하는 장어통발, 기타통발, 문어단지의 경우는 전국 근해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금지구역 및 그물코 규격, 어구사용금지구역 및 기간과 2중 이상 자망 금지, 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42> 근해통발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근해통발
어업의 명칭	장어통발, 기타통발, 문어단지
조업구역 (보호령20조1항 별표13)	전국 근해
특정어업 금지구역 (보호령4조)	별표1 및 그 부도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기타 통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게 포획시 150mm이하, 붉은 대게 포획시 120mm 이하 (울산시와 경북도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선 이북의 동해에 한함) • 꽃게 포획시 65 mm이하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수산동물의 포획시 35mm 이하 • 통발안쪽 깔대기망은 적용 안함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2중이상 자망 사용금지(보호령 5조, 규칙 41조2,3,4항)	4.1~7.31, 10.31~1.31까지 계통발어구 사용금지 구역(해역 별도 표시)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망 위치의 설치표시 방법 • 어구사용량의 제한('07.07.01

- 근해형망의 경우 해당되는 업종은 패류형망으로 조업구역은 제1구부터 제3구 까지 3구역이 있으며, 금지구역과 어구사용금지구역 및 기간, 2중 이상 자망 금지, 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43> 근해형망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근해형망
어업의 명칭	패류형망
조업구역 (보호령20조1항 별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 : 인천시, 경기도, 충남도 연해 • 제2구 : 전북도 연해
특정어업 금지구역 (보호령4조)	별표11 및 그 부도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2중이상 자망 사용금지(보호령 5조, 규칙 41조2,3,4항)	6.1~7.31 사용금지 (관리선은 제외)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 후 조업 금지 • 갈퀴 간격 4cm이상, 그물코 5.7cm 이상 • 4통 이내 어구 사용 • 흡입펌프, 분사장치 부착 또는 사용금지 • 마을어장내 관리선 지정후 조업-

- 근해연승은 전국 근해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특별한 단속근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44> 근해연승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근해연승
어업의 명칭	근해연승
조업구역 (보호령20조1항 별표13)	전국 근해

나. 연안어업

- 연안자망의 경우는 그물코 규격과 특정어업 금지구역, 어구사용금지구역 및 기간, 2중 이상 자망 사용, 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45> 연안자망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연안자망
어업의 명칭	연안자망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삼치포획시 100mm 이하, 2중 이상 자망의 내망은 40mm 이하
특정어업금지구역(보호령4조)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2중이상 자망사용(보호령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조] : 삼치포획목적 별표5 및 그 부도 • [5조] : 1. 별도1(왕돌초)지역 조업신고 또는 2. 별도 승인외에는 2중망이상 사용금지 • 4.1~6.30 별표10 구역내 멸치포획금지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망 위치의 설치표시 방법 • 어구사용량의 제한('06.07.01

- 연안안강망의 경우 해당되는 업종은 연안개량안강망으로, 그물코 규격과 금지 구역,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과 2중 이상 자망 사용, 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46> 연안안강망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연안안강망
어업의 명칭	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mm 이하(연안안강망, 연안낭장망 제외) • 2중이상 낭망 사용금지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6~6.15 사용금지. 다만,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 남도의 영광, 신안군은 8.1~8.31(연안안강망 및 연안 낭장망 포함)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통 이내의 어구(돛포함) 사용 또는 적재 • 어망 위치의 설치표시 방법

- 연안선망의 경우 해당되는 업종은 연안양조망으로, 그물코 규격과 금지구역,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 2중 이상 자망 금지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47> 연안선망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연안선망
어업의 명칭	연안양조망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15mm이하
특정어업금지구역(보호령4조)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2중이상 자망사용(보호령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빛사용금지구역(해역 별표 표시) • 멸치포획 금지 구역 외의 경남, 부산, 울산, 전남해역에서 4.1~6.30일까지 멸치 포획목적 어구 사용 금지 • 삼치포획 목적 12.1~2.30 금지구역 별도 표시

- 연안통발의 경우 그물코 규격위반과 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48> 연안통발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연안통발
어업의 명칭	연안통발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35mm 이하. 다만, 붉은대게 포획시 기타통발 가목 적용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포획시 22밀리미터 이하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망 위치의 설치표시 방법 • 어구사용량의 제한('07.07.01)

- 연안들망의 경우 특정어업 금지구역 및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 2중 이상 자망 사용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49> 연안들망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연안들망
어업의 명칭	연안들망
특정어업금지구역(보호령4조)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2중이상 자망사용(보호령5조)	멸치포획 목적 사용금지(해역별도 표시) 다만, 전남도 별도 표시 해역 내에서는 사용가능

- 연안조망의 경우 해당되는 업종은 연안새우방으로, 그물코 규격과 특정어업금지구역,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 2중 이상 자망 사용, 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한 단속 근거를 두고 있음

<표 4-50> 연안조망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연안조망
어업의 명칭	연안새우방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25mm 이하, 2중이상 낭망 금지
특정어업금지구역(보호령4조) /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 2중이상 자망사용(보호령5조)	5.1~9.30 충남, 전북 해역에서 꽃새우 포획의 사용금지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8)	망구에 설치하는 막대길이 12m 이하

- 연안복합의 경우 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51> 연안복합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연안복합
어업의 명칭	연안복합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8)	[패류미끼망] : 미끼 넣은 그물 주머니 입구가 닫힌 상태로 패류를 부착

- 정치성 구획어업의 경우 해당되는 업종으로는 지인망, 선인망, 호망, 건망, 승망, 건간망, 부망, 장망, 각망, 낭장망, 해선망, 주목망, 안강망 등이 있으며, 그물코 규격 및 금지구역, 어구사용금지구역 및 기간, 2중 이상 자망사용, 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하여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52> 정치성 구획어업 단속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정치성구획어업
어업의 명칭	지인망, 선인망, 호망, 건망, 승망, 건간망, 부망, 장망, 각망, 낭장망, 해선망, 주목망, 안강망
그물코 규격(보호령 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mm 이하 • 각망, 낭장망 : 내수면어업법상 24mm 이하, 다만 12.1~3.31 빙어포획시 8mm 이하 • 주목망 : 다만, 영광군 연안 25mm 이하
특정어업금지구역(보호령4조)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2중이상 자망사용(보호령5조)	낭장망, 해선망, 주목망 : 5.16~6.15 사용금지. 다만, 인천시,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의 영광, 신안군은 7.16~8.15(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 포함)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8)	어망 위치의 설치 방법 표시

- 이동성 구획어업의 경우 해당되는 업종으로는 형망,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문어단지 등이 있으며, 금지구역과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 2중 이상 자망 사용, 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한 단속근거를 두고 있음

<표 4-53> 이동성 구획어업 단속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어업의 종류	이동성구획어업
어업의 명칭	형망,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문어단지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보호령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망 : 동력어선 형망(폐류양식어장 관리선 제외) 6.1~7.31 금지 • 새우조망 :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로 정한 시기로 하되, 국립수산물과학원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2개월 이상 조업금지 기간을 설정 ※ (허용된 경우)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 연안해역, 전라남도: 여수시·장흥군·강진군·고흥군·완도군·진도군·해남군 연안해역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허가규칙 제14조 별표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망 : 일몰후 조업금지, 갈퀴간격 3.5cm 이상, 그물코 5cm 이상 (시·도지사가 장관 승인하에 고시로 정한 경우 제외), 2통 이내 어구 사용,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 부착 또는 사용 금지 • 새우조망 : 망구막대의 길이 8m이하, 망목의 내경 16mm 이상, 자루그물의 허그물(누두망) 부착금지, 날개그물 길이 7m이하 • 실뱀장어 안강망 : 2통이내 어구 사용, 수해·암해 길이 10m 이하, 어망 위치의 설치표시 방법, 포획물 중 실뱀장어의 방류

4. 지역별 불법어업 실태

- 지역별로 대표적인 불법어업 사례를 살펴보면, 동해안 지역인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는 연안자망 어선들의 삼중 자망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와, 대게 조업에 있어서 금지체장 위반과 암컷 포획 금지 위반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형트롤 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서해안 지역인 경인, 충남, 전북 지역의 불법어업 사례를 살펴보면, 연평도 꽃게 성어기에 어로한계선 이탈 조업이 이루어져 안전규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지역의 연안개량안강망 어선들은 어구사용통수를 위반하고, 소형기선저인망어선들이 불법 조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제주 및 경남 지역에서는 여수지역 중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제주도 연근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소형기선저인망들의 전남 여수지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국 어선들의 서해 특정구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4> 지역별 불법어업 실태 현황

지 역	불법어업 실태 및 근거법령
강원 · 경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및 경북 연안자망어선들이 2중 이상 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연안에서 불법조업(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일부 어업인들은 단속에 반발 합법화 요구 • 자망어선은 대게 포획금지체장(9cm이하)을 위반하거나(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 대게 암컷 포획금지 위반(수산자원보호령 제13조제1항) • 일부 대형트롤어선이 동경 128도 이동 수역 조업금지를 위반하여 동해남부수역에서 조업(허가규칙 제14조)
경인 · 충남 및 전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연평도지역 일부 자망어선들이 꽃게 성어기(4.1~6.30까지, 9.1~11.30까지)에 서해특정해역의 어업구역을 이탈 어로한계선 밖에서 조업(안전규칙 제20조1항) • 충남지역 연안개량안강망어선들은 어구사용통수 기준(5통이내)을 초과하여 20여통의 많은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허가규칙 제14조) ※ 근해안강망은: 다만, 인천 · 경기도 · 충남해역에서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10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있다.
전남 · 제주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여수 및 인근지역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은 소라도 남방 및 거문도 주변에서 불법조업(법 제58조) • 고흥지역 어선들은 관내 연안지역에서 낙지 등을 주로 포획함으로써 마을어장 어업인들과 마찰 • 여수지역 중형기선저인망이 제주도 연근해에서 어구전개판을 장착하여 불법조업(법 제43조1항1호)
한 · 중 EEZ 수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타망(저인망)어선들이 기상불량 및 야간을 틈타 5~6 월중 서해특정금지구역 침범조업(EEZ 어업법 제4조)

5. 월별 불법어업 실태

가. 1분기

- 1월에는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금지구역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함. 주로 제주부근 해역의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며, 이는 2월까지 지속되고 있음. 또한 강원도 지역에서 자망어선이 3중 자망 어구를 사용하며, 이 역시 2월까지 지속되고 있음

-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1호로 특정어업 금지구역에 관한 사항과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에 위배됨
- 2월에는 제1구 기선권현망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함. 주로 울산에서 방위각 107도 연장선인 이북 동해안에서 조업함. 또한, 서남해구 중형기선저인망어선도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며, 주로 동해구 중형기선저인망 조업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함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제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 관한 사항에 위배됨
- 3월에는 제1구 기선권현망어선들이 2월부터 시작하여 계속하여 같은 지역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으며, 서남해구 중형기선저인망어선도 마찬가지로 조업 구역을 위반하고 있음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제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 관한 사항에 위배됨

나. 2분기

- 4월에는 제1구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경남 연안 및 동해남부 수역에서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서해안 꽃게어획에서 삼중자망 어구가 사용되고 있음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제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 관한 사항에 위배됨
- 5월에는 2월부터 시작된 제1구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이 계속되고 있고,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으로 경남 연안에서 멸치, 전어를 어획하고 있으며, 서해안 꽃게어획 시 삼중자망 어구가 사용되고 있음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제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 관한 사항과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2중이상 자망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에 위배됨
- 6월에는 5월부터 계속해서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남해구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이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울산에서 방위각 107도 연장선 이북 동해안에서 가자미를 어획하고 있음. 또한, 4월부터 계속해서 서해안 꽃게어획 시 삼중자망 어구가 사용되고 있음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제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 관한 사항과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에 위배됨

다. 3분기

- 7월에는 6월부터 계속해서 서남해구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해형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사례도 발생하며, 이는 8월, 9월까지 지속되고 있음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제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 관한 사항에 위배됨
- 8월과 9월에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동해특정해역 월선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안전규칙 제20조제1항 월선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위배됨

라. 4분기

- 10월에는 기선선인망어선이 울산에서 방위각 107도 연장선 이북 동해안에서 조업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있고, 대형트롤어선이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공조조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11월, 12월 까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서해안 꽃게어획 시 삼중자망 어구 사용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제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 관한 사항과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어선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에 위배됨
- 11월과 12월에는 전남 도계를 위반하여 제1구 기선권현망어선이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고 있고,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제주 주변 해역에서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삼치, 병어 등을 어획하고 있고, 대형트롤어선이 동경 128도로 이동하여 조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강원도 관내에서 소형어선들이 삼중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도치, 곰치 등을 어획하고 있음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제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 관한 사항과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1호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관한 사항, 허가규칙 제14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사항과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에 위배됨

<표 4-55> 월별 불법어업 사례 현황

구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1분기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제주부근해역 금지구역 침범 조업 (2월까지 지속됨) • 강원도지역 자망어선의 3중 자망 어구사용 (3중 자망 사용이 2월까지 지속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1항 (특정어업의 금지구역)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 (울산에서 방위각 107도 연장선 이북 동해안에서 조업) • 서남해구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조업 (동해구 중형기선저인망 조업구역을 침범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 (울산에서 방위각 107도 연장선 이북 동해안에서 조업) • 서남해구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 구역 위반 조업(울산에서 방위각 107도 연장선 이북 동해안에서 가자미 어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2분기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 (울산에서 방위각 107도 연장선 이북 동해안에서 조업) •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경남 연안 및 동해남부 수역에서 위반 조업) • 서해안 꽃게어획 시 삼중자망 어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 (울산에서 방위각 107도 연장선 이북 동해안에서 조업) •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 (경남 연안에서 멀치, 전어 어획) • 서해안 꽃게어획 시 삼중자망 어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 (경남 연안에서 멀치, 전어 어획) • 서남해구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조업 (울산에서 방위각 107도 연장선 이북 동해안에서 가자미 어획) • 서해안 꽃게어획 시 삼중자망 어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3분기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남해구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 (울산에서 방위각 107도 연장선 이북 동해안에서 가자미 어획) • 근해형망어선 조업구역 위반 조업 (8월, 9월까지 지속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동해특정해역 월선 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규칙 제20조1항(월선의 금지 등)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동해특정해역 월선 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규칙 제20조1항(월선의 금지 등)
4분기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선선인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 (울산에서 방위각 107도 연장선 이북 동해안에서 조업) • 대형트롤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공조조업 (11월, 12월 까지 지속됨) • 서해안 꽃게어획 시 삼중자망 어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의2 (어선의 사용제한)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 (전남 도계 위반하여 조업) •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제주 주변 해역에서 금지구역 위반 조업 (삼치, 병어 어획) •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 강원도 관내 소형어선 삼중자망 어구 사용 (도치, 곰치 어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1항 (특정어업의 금지구역) • 허가규칙 제14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조업 (전남 도계 위반하여 조업) •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제주 주변 해역에서 금지구역 위반 조업 (삼치, 병어 어획) •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 강원도 관내 소형어선 삼중자망 어구 사용 (도치, 곰치 어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1항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1항(특정어업의 금지구역) • 허가규칙 제14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제2절 연근해 불법어업의 발생원인

-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업인들은 합법적인 어구·어법에 의한 방식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이 때문에 허가받은 어업자가 어구나 어법을 변형하여 위법한 조업을 한다든지 또는 적은 비용과 노동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연근해 수산자원의 생태계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불법어업은 단순히 어업인의 준법정신의 문제라든가 윤리의 문제로서만 다루어질 수 없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임.³⁷⁾ 불법어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어촌소득원의 전무

- 도·농·어촌간의 문화적 격차는 줄어들고 어촌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문화·교육·레저 비용의 증가에 맞추어 어가소득이 증가되어야 하나, 어촌은 어업활동 만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렵고, 어업 이외의 소득원도 거의 없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별로 어촌관광이나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까지는 그 효과가 어촌민에게 확실하게 와 닿지 않고 있음
- 자원이 감소하여 합법적인 어업으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확보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을 생업으로 해야 하는 어업자의 측면에서 보면, 불법어업이라도 해야 생계유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됨

37)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행정연구소, 「연근해 어업진흥과 수산행정체계의 개선방안 및 불법어업에 관한 연구」, 1971, pp.218-234.

- 이는 어촌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형태의 어촌소득원 개발이 곧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어촌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불법어업이 자행되고 근절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2. 신규 인력의 제도권 흡수장치가 미흡

-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의 면허나 허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나 허가의 행정처분 건수보다 그 신청자가 많으면 누구에게 면허 또는 허가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준을 수산업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음
- 우선순위는 경영자 또는 경험자 우선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의 경영 경험이 없는 신규 인력은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어촌으로 유입된 젊은 인력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나, 어촌에서 어업 이외의 분야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인력은 적은 비용으로도 시작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선어업을 영위하게 되며, 이들 대부분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어업자들임

3.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결여

- 과거에 수산자원은 포획·채취하는 수단과 방법을 묻지 않고 먼저 포획·채취하는 자가 소유권을 향유하는 무주물적 성격이 강한 자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어획하려는 선취경쟁과 누구보다도 많이 이용하려는 어획경쟁이 공공연히 행해졌음
- 수산자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소유의 자원이면서도 공유 재산적 자연자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균등한 이용의 기회와 지속적 이용의 원칙에 따라 자원을 이용하고 또한 관리하여야 함

- 그리고 수산업제도가 갖는 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어업관리 주체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어업정책 시행이 어렵고, 법률에 대한 어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짐. 또한, 정부는 각종 규정이나 규제를 어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지키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어업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업자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여 참여의지가 약한 것이 현실임

4. 자원감소로 인한 채산성 악화

- 연근해의 어업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허가받은 어업으로는 출어경비를 포함한 어업의 경영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함. 예를 들어, 자망어업은 대상으로 하는 어종이 그물코에 꽂이도록 하여 어획하는 어법임
- 그런데, 최근에 어업자원의 감소와 더불어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종의 체장이 현격하게 작아져서 허가받은 자망어구를 이용할 경우 어획되는 양은 극히 적어 출어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임
- 이 때문에 자망어업자들은 수산업법상 금지되어 있는 삼중자망을 사용하게 됨. 그 이유는 비교적 체장이 적은 물고기도 포획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수산업법은 어업의 어획강도와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 어업별로 어업의 형태나 금지조항을 정하고 있음
- 문제는 자원상황이 악화되어 허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어업을 영위할 경우, 채산성의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선저인망어선이 트롤어선과 같이 전개판을 사용하여 어획강도가 높은 조업하는 등의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구를 개조·변경한다는 것임
- 어업허가제도가 연근해어선의 어획강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어업허가의 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 고용창출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어업의 현실에 맞도록 융통성 있는 정책의 수립·집

행이 요구되며, 재산성의 유지를 통한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원의 회복 및 조성 등의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5. 근절의지가 결여된 단속 체계의 운용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보면, 특정시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계도와 더불어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 시기를 벗어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의 지도·단속은 기관별로 주어진 여건에 맞춰 불법어업을 단속함
- 그리고 대부분의 어업자들은 수많은 어선에 비해 단속조직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집중단속 기간만 피하고 나면 불법어업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행여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익이 커서 벌금 등의 불이익은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게다가 근해어업은 선박소유자와 선장간의 도급계약 형태의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압력이 불법어업으로 귀결되는 사례도 많음
- 특정인에 의한 불법어업의 재발방지는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단속만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단속조직의 한계 등으로 체계적인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고의든 과실이든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임

제3절 불법어업의 단속 및 사건처리 절차

1. 불법어업 지도·단속 체계

가. 지도·단속 절차

- 해상에서 불법어업을 행하고 있는 어선을 어업지도선이 인지한 경우, 단속용 보트를 이용하여 4~5명의 단속공무원이 어선에 승선하여 위반사실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함
- 위반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관련자를 어업지도선으로 이선시켜 특별사법경찰 관리 2명과 어업감독공무원 2명이 합동으로 어업지도선 내 개방된 조사실에서 조사하되, 구체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벌 또는 사법처리 대상을 구별하여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의 사건조사를 행함
-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구 또는 어획물을 임의제출 받아 어업지도선에 이적함으로써 제1차 조사를 완료함
- 이 때 조사가 끝난 어선을 석방하거나 또는 항·포구로의 회항을 명함. 어업지도선이 사건일체를 어업지도사무소에 이첩하면, 어업지도사무소는 그 위반어선의 위반사실에 대해 보완조사를 실시함
-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를 종료하지만,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의 보완조사를 하며, 범죄경력조회 등의 사건송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 및 압수물 처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함

나. 위반자에 대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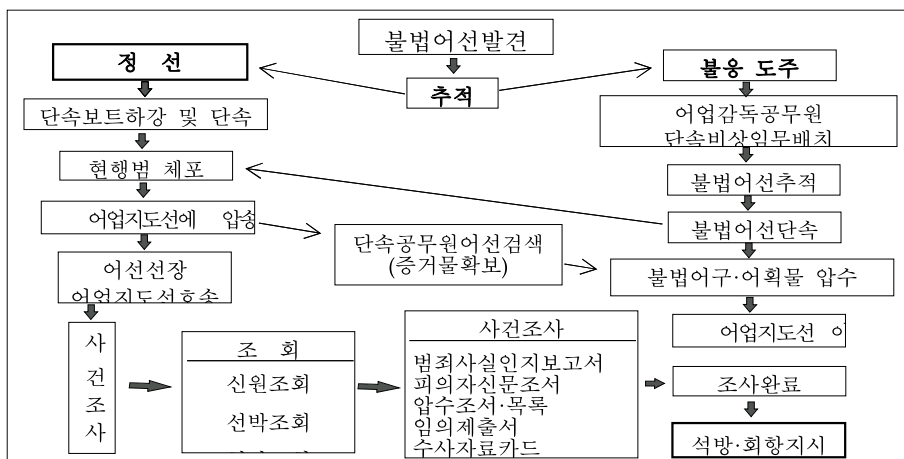
- 허가어선일 경우에는 허가한 행정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무허가어선일 경우에는 소환하여 범죄경력조회 등의 사건송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 및 압수물 처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함. 이 때 사법처리의 대상 중 구속사유인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을 신청함

- 수산사범 위반자 중 누범자는 전산체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과조회 등을 파악하며, 누범자에 대하여는 전과기록을 근거로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절차에 따라 어업정지·어획물 몰수 등의 처분을 함

2. 불법어업의 단속 및 사건처리 절차

가. 불법어업을 행하는 어선의 인지와 어업지도선 출동

- 불법어업을 행하고 있는 어선을 현장에서 인지하였을 경우 그 어선이 항해 중인 경우에는 정선명령을 발하여 어선을 정선시키고 단속용 보트를 이용하여 4~5명의 어업감독공무원이 어선에 승선함
- 어업지도선에서의 정선명령에도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에는 단속보트를 이용하여 추적하는 한편, 어업지도선은 어업감독공무원을 단속비상임무 배치시킴
- 어선에 승선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유자격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한 후, 수산관계 법령의 위반사실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함. 이 때 소요되는 시간은 사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1시간 이내에 종료됨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범을 체포하여 어업지도선으로 이송하고, 불법어구나 어획물을 압수하는 등 불법어업을 행하였다는 증거 확보를 위한 검색을 실시하며, 불법어업을 행한 어선의 선장을 어업지도선으로 호송하여 조사함



<그림 4-1> 불법어업의 단속 업무처리의 흐름도

나. 사건조사 및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위반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관련자를 어업지도선으로 이송시켜 특별사법경찰 관리 2명과 어업감독공무원 2명이 합동으로 개방된 조사실에서 조사함
- 불법어업을 행한 혐의가 있는 어선을 조사함에 있어서 “국가어업지도선의 공무원은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당하였거나 금품수수와 관련한 요구가 있는 경우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숙지시킴
- 또한 금품수수의 개연성과 피조사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조사자 이외에도 동료 어업인을 참석하도록 함(2005.1월부터 시행)
- 항해장은 무선으로 불법어업을 행한 어선의 선장에 대한 신원조회와 선박조회 및 어업허가 소지 여부를 어업지도사무소에 조회함
- 위반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어업감독공무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어선의 구체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벌 또는 사법처리 대상을 구별하여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의 사건조사를 행함
- 조사완료 후에는 항해장이 어업지도사무소에 어선단속 사실을 통보함(통보받은 어업지도사무소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도에 단속현황을 팩스로 통보)
-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자·어업종사자·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수산관계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업신고필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해기사면허증(이하 "어업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압류함
- "어업면허증등"을 압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당해 어업자·어업종사자·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에게 교부하고 각종 서류(위반사실 확인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술조서, 위반조서)를 작성하여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어업지도사무소에의 사건 이첩 및 내사실시

- 어업지도선이 입항한 후 어업지도사무소에 사건일체를 이첩하면, 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그 위반사실에 대해 보완조사를 실시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 등의 송치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 수사를 종료함
- 그러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어업지도사무소 관할 소재지 이외의 행정관청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아 사건일체를 어업을 허가한 행정관청에 이송하고, 어업지도선 관할 소재지의 사건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2차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보완조사를 함
- 위반어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인지와 형사입건 등의 판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허가한 행정관청이 판단함

라.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의뢰

- 허가어선일 경우에는 허가한 행정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무허가어선일 경우에는 소환하여 범죄경력조회 등의 사건송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 및 압수물 처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함. 이 때, 사법처리의 대상 중 구속사유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을 신청함

제4절 불법어업자의 관리

1. 사법처리

가. 형 벌

- 통상적으로 형벌(刑罰)이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범죄의 진압·예방을 목적으로 그가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법상의 법적 효과"라고 정의된다. 형벌은 범인의 개성과 형벌적응능력에 알맞게 과하여야 하고, 형량의 표준을 범죄의 위험성에 두어야 하며, 일반인에 대하여 범죄적 경향을 억제시키는 일반 예방적 기능을 달성해야 함
- 형벌에는 자연법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사벌(자유형, 명예형, 재산형)과 법정범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벌이 있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음
- 자유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사형, 징역, 금고, 구류가 있고, 징역과 금고는 그 기간이 31일 이상이며, 주로 고의범인 파렴치범(破廉恥犯)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정치범이나 과실범인 비파렴치범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부과함
- 재산형에는 벌금(50,000원 이상), 과료(2,000원~50,000원), 몰수(타 형벌에 부가)가 있음. 재산형은 형법상의 형벌로서 사법권의 작용에 의해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전납부를 명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함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상 의무의 위반 정도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 및 사회목적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는 정도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정 액수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행정적 제재를 말하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함

나. 수산업법상의 행정벌

- 「수산업법」 제10장 각조에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벌칙 내용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제94조, 제94조의 2, 제95조, 96조), 몰수(제97조) 등의 행정형벌과 함께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제99조)를 규정하는 외에 양벌규정(제98조)도 두고 있음
- 행정벌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처벌을 말하며, 이를 형사벌과 구별하여 행정벌이라 함³⁸⁾
 - 행정형벌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에 규정된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및 몰수 ; 「형법」 제41조)을 과하는 것임. 행정형벌을 과할 때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됨
 - 행정질서벌 : 행정질서벌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상의 형명이 없는 벌칙인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을 말함.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행정목적에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하여, 행정질서벌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침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에 지나지 않음(「수산업법」 제99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재산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벌금형을 과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것을 양벌규정 또는 쌍벌규정이라 함(「수산업법」 제98조)
 - 몰수 : 몰수라 함은 범죄행위와 관계가 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①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겨났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위 ①과 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이다. 「수산업법」 제97조는 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추징 :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또는 그것에

38) 행정벌과 구분되는 개념에는 징계벌(懲戒罰)과 집행벌(執行罰)이 있다. 징계벌은 공법상의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질서문란자에게 과하는 제재이고, 집행벌은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강제집행의 일종이다.

의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취득한 물건, 이러한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사유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법처분임

<표 4-56> 수산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벌칙의 상한	위반 행위
* 징역 3년/ 벌금 200만~2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어업, 무허가어업, 무허가어획물운반업, 무등록수산물가공업 • 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계류 처분 위반 • 면허·허가·신고어업 이외의 어업금지 규정 위반
*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 허가, 등록 • 어업권의 불법적 이전·분할·변경, 어촌계 어업권 담보금지 위반, • 어장관리선의 사용·제한·금지규정 위반 • 타인 지배금지 규정 위반 / 어업권 임대차 규정 위반 •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규정 위반 / 육성수면 관리규정 위반 • 보호수면 내에서의 무단공사·준설·매립·어로행위 • 유해어업 금지규정 위반·범칙어획물 소지·운반·처리·가공·판매 •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불이행
*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허가어업 제한규정 위반 • 어장·어선·어구에 대한 표지설치 명령 불이행 • 어업감독공무원의 검사 불응, 정선명령 불이행 • 어장관리명령 불이행 • 소하성어류 보호·방류에 관한 규정 위반
* 과태료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의 위반 • 휴업 및 어업권 포기신고 규정의 위반 • 어업의 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위반 •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위반 • 어장관리규약에 의하지 아니한 어업권의 행사 •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의 위반 • 어업권행사의 제한 또는 금지 위반 •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처분 위반 • 신고하지 않고 신고어업의 경영 / 신고어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변경허가나 신고 또는 폐지신고 불이행 • 지정받지 아니한 자의 유어장 운영금지 규정 위반 • 양식물 또는 시설물의 철거기간 내 철거 불이행 • 어장·어구표식의 미설치 및 표식의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 • 장애물의 이전·제거 거부 또는 방해, 어업감독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 허위진술 • 보호수면 구역 안에서 승인받지 않은 공사 또는 어로행위 • 소하성 어류 등의 보호와 관련한 제한 또는 금지규정의 위반 • 자원의 조사보고 규정의 위반 • 수산조정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및 허위진술, 허위보고
* 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징역 3년/벌금 200만~2천만의 처벌을 받은 경우 어선과 어구 몰수

다. 과징금처분

1) 의 의

-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이익 금액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제재금임
-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 위반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통상 불법적 영업수익의 한도 내에서 결정됨
- 과징금을 부과하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이익이 박탈되기 때문에 범칙행위자는 위반행위를 하여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됨
-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일정한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벌금이나 과태료와 다를 바 없으나, 형식적으로는 행정벌에 속하지 않음. 그래서 「수산업법」에서는 벌칙규정이 아닌 별도의 보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

2) 과징금의 금액과 부과기준

- 「수산업법」상 과징금의 최고한도는 2,000만원이고, 과징금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근해어업의 업종별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4-57> 근해어업의 업종별 과징금 부과기준과 금액(시행령 별표 4)

어업별	업종별	부과기준 및 금액
근해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 근해트롤(대형트롤) • 근해선망(대형선망) •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 어업정지 1일 : 19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 중형기선저인망(서남해구) • 근해트롤(동해구 트롤) • 근해안강망 	• 어업정지 1일 : 13만원
	• 기타 근해어업	• 어업정지 1일 : 6만원
	연안어업	• 모든 연안어업
구획어업	• 정치성, 이동성구획어업	• 어업정지 1일 : 4만원
신고어업	• 모든 신고어업	• 어업정지 1일 : 1만원

어업별	업종별	부과기준 및 금액
어획물 운반업	• 총톤수 70톤 이상	• 운반업 정지 1일 : 13만원
	• 총톤수 50-70톤	• 운반업 정지 1일 : 9만원
	• 총톤수 10-50톤	• 운반업 정지 1일 : 6만원
	• 총톤수 10톤 미만	• 운반업 정지 1일 : 3만원

- 과징금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초과하여 어구를 부설한 때
 -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처분기관의 관할수역 중 허가 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때
 -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 어구사용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 포획금지구역을 위반한 때
 -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 기타 선박안전조업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위반행위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또한,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나 관할지역 내 경제적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어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과징금을 경감함. 이 때 과징금의 경감처분은 과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됨

2. 행정처분

-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 있음

- 동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7호·제8호, 제37조, 제48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취소와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정하고 있음

- 동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어업등행정처분이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이 경우 그 행정처분(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고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증에 기재하여야 함
 -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계류하게 하여야 함
 -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함
 -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되, 해당 어선 등의 선장과 위반행위를 한 해기사 및 그 면허를 대상으로 함

<표 4-58>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이하 “행정처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가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적용하고, 어선의 대체·매도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또는 어업의 신고수리가 있는 경우에는 중전의 행정처분등을 이를 위반행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그 정지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1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을 취소하거나 해기사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외국에 억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그 억류기간을 감경한다.
4. 관할 행정청은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류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어업의 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해당 선장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관할 행정청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산일수(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를 포함한다)가 150일을 초과한 어선등이 다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II.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가. 어업정지, 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면허정지 요구의 대상인 경우: 행정처분등 기준일수의 2분의1
 - 나.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취소 또는 해기사면허취소 요구의 대상인 경우: 90일 이상의 어업 정지, 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면허정지 요구

<표 4-59>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면허어업)

구분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수 산 업 법	1.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구역 밖에 어구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8조	경고	취소	-
	2.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경고	경고	취소
	3.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이전·분할한 경우	제21조	경고	취소	-
	4.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변경한 경우	제21조	경고	경고	취소
	5.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23조	경고	취소	-
	6. 어업권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25조	경고	취소	-
	7.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거나 관리선의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 어업면허 ○ 관리선	제29조	경고 정지 30일	경고 정지 45일	취소 취소
	8.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그 관리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0조	경고	경고	취소
	9.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면허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경고	경고	취소
	10.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2조	경고	취소	-
	11. 면허어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경고	경고	취소
	12.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면허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34조	경고	취소	-
	13.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제35조	경고	취소	-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제37조	취소	-	-
	15.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39조	경고	경고	취소
	16.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관리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0조	경고	경고	취소
	17. 입어 등의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한 경우	제42조	경고	경고	취소
	18. 이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제58조	경고	취소	-
	19. 어업시기가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59조	경고	경고	취소
	20.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제60조	경고	경고	취소

구분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수산업법	21.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63조	경고	경고	취소
	22. 무기산 등의 유해약품, 그 밖의 유독물을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71조	경고	취소	-
어장관리법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경고	경고	취소
수산업법시행령	1. 어업권자가 어업면허변경사항 등을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	경고	경고	취소
	2.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시의 규격 및 형태와 그 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44조 제3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수산자원보호령	1. 포획·채취금지기간 또는 포획·채취금지 체장 및 체중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 어업면허 ○ 관리선	제11조 제12조	경고 정지 30일	경고 정지 45일	취소 취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경고	취소	-
	3. 수질보전의 기준, 약품 및 물질의 사용기준이나 그 사용의 제한·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19조	경고	취소	-
	4. 포획·채취물의 종류와 체장 및 포획·채취시기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1조	경고	경고	취소
	5.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2조	경고	경고	취소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1.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경고	경고	취소
	2.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에 관한 시설·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경고	경고	취소
	3. 가두리시설의 설치사실을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경고	경고	취소
	4.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경고	경고	취소
	5.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16조	경고	경고	취소
	6.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어장에서의 잠수기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의2	경고	경고	취소

<표 4-60>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허가어업·신고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구분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수 산 업 법	1.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제48조 제52조	경고	취소	-
	2.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2조 제48조 제52조	경고	취소	-
	3.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제48조 제52조	경고	경고	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34조 제48조 제52조	경고	취소	-
	5. 계류 중인 어선등이 행정처분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로부터 벗어난 경우	제36조 제48조 제50조	정지 30일 추가	취소	-
	6.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외국의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해당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제36조 제48조 제50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37조 제48조 제52조	취소	-	-
	8.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제43조 제49조 제50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9.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에 다음 각 목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트롤어업을 한 경우 나. 그 밖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43조 제49조	취소 정지 90일	- 취소	- -
	10.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43조 제49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11.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 어업을 한 경우	제43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구분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제43조	경고	경고	취소
	13.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 종묘시설을 한 경우	제43조	경고	취소	-
	14.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부설한 경우	제43조	경고	정지 30일	정지 45일
	15.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제43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6.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정지 10일	정지 20일	신고증명서회수
	17.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 정지요청을 한 경우 ○ 취소요청을 한 경우	제48조 제50조	정지 40일 취소	정지 60일 -	취소 -
	18.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제50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9. 이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제58조	취소	-	-
	20. 어업시기가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제59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1. 어장·연근해어선 또는 어구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제60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22.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다시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 제61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90일
	23.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63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4.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무기산 등 유해약품, 그 밖의 유독물을 어구·어망에 붙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71조	정지 60일	취소	-
	25.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 제74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26. 어업자원의 조사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75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어장관리법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해상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으로 한정한다)	제12조	경고	경고	취소

구분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수산업법시행령	1.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표지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4조 제2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2.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 형태와 그 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44조 제3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3. 수산업자 등이 행정관청이 행한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제45조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4. 정선 또는 회항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6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수산자원보호령	1.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트롤어업 및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선망어업으로 한정)	제4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2.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	제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한 경우	제5조 제1호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4.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및 어구의 규모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5조 제2호 제6조 제7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목적으로 특정어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사용한 경우	제8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6.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트롤어업 및 불빛을 이용한 선망어업으로 한정)	제9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7.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8.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기간 또는 체장·체중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9. 대게의 암컷 또는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거나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의 암컷을 포획한 경우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0. 수중에 방란된 어란을 채취하거나 치어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1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1.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12.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트롤어업 및 대형선망어업으로 한정)	제20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3.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제12호의 경우는 제외)	제20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구분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4. 포획·채취물의 종류와 체장 및 포획·채취 시기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1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15.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2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16. 연근해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7. 연근해어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 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어선을 사용한 경우(선장이 어선소유자의 동의 없이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사실을 어선의 소유자가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제25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18.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8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19.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9조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20.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제3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1. 총허용어획량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별로 할당된 배분량에 대한 포획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31조 제5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22.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수산자원의 어획물과 그 어획물의 제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3. 범칙행위로 인하여 포획·채취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경우	제35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선박 안전보업규칙	1. 출항·입항 신고 또는 출항·입항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15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2.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한 경우	제16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3. 어선단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조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단에서 이탈한 경우	제17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4. 어선단으로부터 어선이탈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선단장의 어선만 해당)	제17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5. 지정된 안전항로경유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항해한 경우	제18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6. 어로 또는 항해가 금지되는 구역 또는 시간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구분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7. 동·서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하거나 항해한 경우 가. 피랍(被拉)되거나 나포(拿捕)된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제20조	취소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취소	
	8. 어로한계선 이북의 도서지역 어선이 어로한계선 바깥쪽에 설정한 조업구역을 벗어난 경우	제20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9. 서해특정해역 안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제2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0. 동·서해특정해역 안에서 10톤미만의 어선이 동해에서는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131도 00분)부터 그 동쪽 해역, 서해에서는 동경 124도 59분 53.06초(동경측지계: 125도 00분)부터 그 서쪽 해역에 출어한 경우(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울릉도 주위로부터 60마일 밖의 해역에서 조업한 경우)	제21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11. 특정해역의 출어선이 어업정보통신국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2. 출어한 연근해어선이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3. 거짓으로 위치보고를 한 경우(대리자 및 의뢰자를 포함한다)	제23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4. 연근해어선 식별신호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식별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15. 통신기가 설치된 연근해어선이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청취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	-	-	
	16. 경비함정이나 어업지도선으로 부터 위협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17. 간부선원이 해상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출어한 경우	제29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 연근해어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근해어선의 규모·장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어구의 종류·규모·사용량과 장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3조 제6항	정지 30일 정지 30일	취소 정지 45일	- 정지 60일
		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규모·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제3조제3항·제4항	경고	경고	취소
		3.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 대체되는 노후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밖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경고 정지 20일	취소 정지 30일	- 정지 40일

구분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4.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제16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양식한 경우	제16조	경고	경고	취소
	6.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7.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경고	경고	취소
	8.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의 폐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의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	경고	취소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1.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운반을 의뢰받을 수 없는 어업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제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 어획물운반업등록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3. 어획물운반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8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3. 각종 지원 배제

가.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 중단

- 우리나라의 어업용 유류의 면세혜택을 살펴보면, 유종별로는 경유 및 휘발유, 중질유 모두 관세 및 석유사업기금은 과세 및 납부를 하고 있으나, 교통세(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는 면세를 받고 있음. 중질유는 B.A유, 중유, B.C유를 말하며, 교육세는 교통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15% 세율로 부과, 주행세는 교통세의 3.2%로 200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음
- 과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여 불법어업을 한 어선의 경우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의 2배, 어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제한기간의 2배, 불법

어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을 매입 및 변경 등록한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의 2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선의 경우, 과징금 납부여하에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간 만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지하였음

- 그러나 최근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을 개정(2008. 11. 10)하여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 육상양식 어업용 시설에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역할 및 권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부정유출 어업인 소속 조합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통보된 불법유출량 중 최근 2년간의 평균 불법유출량의 2배수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삭감하되, 평균 불법유출량은(전년도 불법유통량+전전년도 불법유통량)/2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부정유출 발생조합에 대해서는 부정유출방지이행계획서를 징구해야 하며, 이행계획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수협경제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하였음

<표 4-61> 불법어선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중지규정

유 형	면세유류 공급 중지 기간	유류공급사업요령
불법어업을 한 어선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제52조2항2호
어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어업허가 제한기간	제52조2항3호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을 매입 및 변경 등록한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제52조2항4호

나. 영어자금의 회수

- 영어자금이라 함은 정부가 어가(법인을 포함)의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함
-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기관의 신용자금·상호자금 및 기타자금을 융자재원으로 하여 수협 중앙회장이 정부의 영어자금운용계획 및 영어자금운용지침 등에 의하여 조달 및 관리함
- 영어자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수산업법 제8조, 제43조, 제46조 및 원

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행사계약에 의한 입어를 포함한 다)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와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및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며, 영어자금의 용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생산 소요년수가 2년 이상인 어업에 있어서는 2년 이내로 함

- 다만, 동일인이 당초 용자금액 범위 내에서 용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 그리고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간 합의사항 미이행 또는 업계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하는 등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업자 또는 그 선박, 영어자금 용자대상 목적물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이미 영어자금을 용자한도까지 대출 받아 사용중에 있는 어선(영어자금을 대출 받아 사용중인 어선이 대체되는 경우에 기존의 어선과 대체허가를 받은 어선은 이를 하나의 어선으로 본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어자금 운용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어자금을 용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영어자금 운용요령 제13조)
- 또한, 영어자금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어업권 또는 어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용자기간 중 계속하여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계절성 어업의 비어기 기간과 해외어장에서 조업 쿼터 미확보,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업할 수 없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용자금의 회수유예를 승인한 기간은 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에는 용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제14조)
- 반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용자하는 자금(이하 "용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동 규칙 제6조에서 용자금 지원받은 자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받은 경우, 용자금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용자금을 사용한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용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용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그 용자금을 회수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용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

<표 4-62> 불법어선영여자금용자제한규정

구 분	용 자 제 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된 대출금 전액을 인지한 날 또는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상환토록 통보하되, 그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채권보전조치 및 법적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회수하고 기존 대출금 회수일로부터 6개월간 대출(서환포함) 중지 •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위반회수에 따라 대출중지 기간을 6개월씩 가산 적용

※ 관련법 : 수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용자에관한규칙(제6조제3항)및 영여자금 운용요령(제13조)

다. 해외자원 생산지원자금의 지원 중단

- 해외자원 생산지원자금은 원양어업의 지속적 생산증대와 어장의 유지, 개발 및 국제어업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용자 특별회계로부터 용자받는 자금을 말함
- 해외자원 생산지원자금에 대해서 수산관계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정지 45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어업인 또는 선박에 대해서는 영여자금에 대한 지원 회피와 유사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음

<표 4-63> 불법어선 해외자원 생산지원자금의 용자제한

구 분	용 자 제 한
수산관계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정지 45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어업인 또는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 전액을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진 상환토록 통보하되, 그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법적수속 등을 통해 4개월 이내에 회수하고 기존 대출금 회수일로부터 6개월간 대출(서환 포함) 중지 •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위반회수에 따라 대출중지 기간을 6개월씩 가산 적용

주 : 해외자원 생산지원자금 운영요령 제11조 제2항

-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불법어업자들에 대하여 제재조치(21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처벌(법무부), 행정처분(시·도/시·군·구)과 병행하여 불법어업자 각종 지원도 배제도 하고 있는 등 매우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즉, 정부지원인 면세유류공급, 영어자금 해외생산지원자금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행동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됨

4. 지원배제 실적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과 영어자금 운용요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의 관리 및 수산금융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수협 중앙회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율관리 감시 체계 활성화로 불법어업 근절 유도, 어업인 의식전환 지도 교육 강화,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으로 자율감시체계 확립을 목표로 어업인 자율에 의한 불법어업 근절 활동 전개, 위관장 지도·감독 강화, 불법어업 없는 시범어촌계 운영,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배제 조치 시행, 어업인 교육 및 홍보 강화, 불법어업 근절지도·점검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들 사업 중에서 불법어업자의 관리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영어자금의 회수와 대출 중지 및 면세유 공급 중단 이외에도 불법어업자에 대하여 조함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음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불법어업자에 대한 지원배제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64> 불법어업자에 대한 지원배제 실적

추진사항	단위	년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조합원 제명	명	114	16	283	7
면세유류 공급중지	건	1,963	1,219	893	458
수산기자재 공급중지	건	307	180	149	121
영어자금 대출금지	건/백만원	110/262	64/473	104/235	88/280
영어자금 대출금 회수	건/백만원	77/768	55/969	46/787	41/531

제5절 소결

- 본 장에서는 불법어업 발생원인, 어업별 불법어업 현황, 기관별 단속 현황, 지역별 불법어업 현황, 월별 불법어업 현황, 불법어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살펴보았음
- 불법어업 발생원인은 크게 무허가 어선에 의한 범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 외의 어업, 허가 어선에 의한 범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 외의 어업,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어업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업종별 불법어업 현황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기타로 분류하여 각각의 주요 불법현황을 파악하였음
- 지역별 불법어업 현황은 동해권, 서해권, 남해권, 한·중 EEZ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각각의 권역별로 주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음. 동해권은 강원 경북 지역 2중 이상 자망어업 문제와 동경 128도 이동 조업문제가 대표적이고, 서해권은 서해특정해역 어로한계선 조업이탈문제와 연안개량 안강망 사용톤수 문제가 대표적임. 남해권은 유사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조업 우려 문제와 중형기선저인망 어구전개관 장착 문제가 있고, 한·중 EEZ 지역은 중국타망(저인망) 서해특정금지구역 조업침범문제가 심각함
- 월별 불법어업 현황은 분기별로 현황을 파악하였음. 1분기에는 주로 대형기선저인망 및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구역 위반 및 침범 문제가 있고, 2분기에는 기선권현망 및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 위반 문제, 3분기에는 서남구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위반과 오징어채낚기어선의 동해특정해역 월선조업 문제, 4분기에는 기선권현망 및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강원도의 경우 2중 이상 자망 사용 문제가 있음
- 불법어업 발생 원인은 크게 어촌소득 전무, 신규인력의 제도권 흡수장치 미흡,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결여, 근절의지가 결여된 단속체계 운용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불법어업 사건의 처리절차는 불법어업을 행하는 어선의 인지와 불법어업 검거 → 사건조사 및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어업지도사무소에의 사건 이첩 및 내사실시 →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의뢰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제7장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에서 살펴보고자 함
- 불법어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로는 조합원 제명, 면세유류 공급중지, 수산기자재 공급중지, 영어자금 대출금지, 영어자금 대출금 회수 등이 있음

<표 4-65> 불법어업 단속 및 관리 실태 종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불법어업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 어선에 의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 외의 어업 • 허가 어선에 의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 외의 어업 •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어업 		
업종별 불법어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 연안, 기타로 구분하여 업종별 주요 위반사례 정리 		
지역별 불법어업 현황	동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경북 지역 2중 이상 자망어업 문제 • 동경 128도 이동 조업문제(일부 대형트롤 어선) 	해역별 어장별 특성에 따라 불법어업 유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서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특정해역 어로한계선 조업이탈문제 • 연안개량안강망 사용톤수 문제 	
	한·중EE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타망(저인망) 서해 특정금지구역 조업 침범 	
월별 불법어업 현황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기선저인망 및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구역 위반 및 침범 문제 	조업구역 위반 및 2중 이상 자망 문제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선권현망 및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 위반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남구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위반과 오징어채낚기어선의 동해특정해역 월선조업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선권현망 및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강원도의 경우 2중 이상 자망 사용 	
불법어업 발생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소득 전무 • 신규인력의 제도권 흡수장치 미흡 •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결여 • 근절의지가 결여된 단속체계 운용 		
사건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업을 행하는 어선의 인지와 불법어업 검거 → 사건조사 및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어업지도사무소 사건 이첩 및 내사실시 →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의뢰 		
불법어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제명 • 면세유류 공급중지 • 수산기자재 공급중지 • 영어자금 대출금지 • 영어자금 대출금 회수 		

제5장 국외 사례분석

제1절 각국의 어업지도·단속 시스템

1. 일본

- 일본의 수산 행정기구 및 조직은 농림수산성 산하에 수산청에 있고, 수산청에는 어정부, 진흥부, 자원관리부, 증식추진부, 어장어항정비부 등 5개 부를 두고 있음
- 어업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서는 수산청 자원관리부 관리과이고, 지방에는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어업조정사무소의 어업감독관이 담당하며, 도도부현 및 해상보안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음
- 어업단속관을 어업감독공무원이라고도 하며, 수산청에 소속되어 본청 및 지방의 어업조정사무소에 배속되는 어업감독과 도도부현의 직원 중에서 지사가 임명하는 어업감독사원이 있음. 형사소송법에 기초하여 소속하는 관공서의 장이 담당자의 주요 근무지를 지방검찰청의 검사정과 협의하여 지명한 자를 사법경찰직원으로 임명함. 단속 범위는 어업에 관한 죄로써 구체적으로는 어업법, 수산자원보호법, 외국인어업규제에 관한 법률, 어업주권법(배타적 경제수역의 어업권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단속을 뜻함
- 어업조정사무소가 하는 지도·단속의 주요 역할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력현화, 어선 입출항관리, 어선 VMS설치, 오퍼버 승선, 어선표지설치 등 어업지도·단속을 위한 사전 사후조치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음. 현재 일본의 어업지도·단속은 연근해 수역에 있어서는 해상보안청 순시정 및 항공기와 수산청의 어업지도선 및 도도부현의 어업지도선이 협력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음

가. 수산청의 어업단속

1) 어업단속

- 원칙적으로 지사허가어업은 도도부현의 어업지도선이 실시하고, 대신 허가어업 단속은 수산청 어업지도선이 실시함. 수산청도 지사허가어업의 단속권한을 가짐
- 어업단속은 기본적으로 수산청의 직책으로, 불법조업 어선의 나포에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자주 등장하지만 어업단속은 어디까지나 수산청에 협력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음
- 수산청 및 도도부현에는 어업법에 기초한 특별사법경찰원으로 지명된 자도 있어 단독으로 어업단속이 가능하지만, 장비상의 문제도 있어 해상보안청과 제휴해서 어업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체포나 나포를 실시할 경우 현행범을 제외하고,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집행함. 현장검사의 경우 무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외국 불법조업선의 현장검사시 칼이나 봉을 사용하여 저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어업단속 부서는 수산청 자원관리부 관리과로 6개소의 어업조정사무소(북해도, 센다이, 니가타, 사카이 미나토, 세토내해, 큐슈와 더불어 단속에 임하고 있음

2) 단속체제와 실적

- 어업지도선은 수산청이 6척, 민간지원 용선이 32척(2006년), 도도부현이 95척(1998년)을 보유하고 있음. 수산청 어업지도선 6척의 크기는 2,071톤, 1,229톤, 499톤 3척, 149톤이고, 용선 32척 중 28척은 400톤급(특히 499톤)이며, 그 외 300톤급 1척, 100톤급 2척, 39톤 1척임. 공해에서의 단속은 499톤형 용선 3척이 담당하고 있음
- 단속 건수는 300건(1995년)으로 조사되었고, 송치된 용의자 총 317명 중 314명이 감독관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주로 감독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감독관의 주요 대상은 EEZ내에서 위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으

로, 국제연합해양법조약과 어업주권법이 발효된 1996년 이후부터 감독관에 의한 단속이 증가하였음

- 단속 구역은 기본적으로 EEZ 내, 근거법은 어업주권법임. 이 법률에는 담보금 지불에 의한 조기석방이라고 하는 제도(본드제도)가 있음. 담보금을 지불하면 신병의 구속과 어구 등의 압류를 풀어줄 수 있고, 이후 소환에 응해 출두해서 취조에 응하면 담보금을 반환해줌. EEZ 밖에서는 일본 어선만이 단속 대상임(기국주의)

3) 불법 어업대책 강화

- 2002년 3월에 최초로 수산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2007년 3월에 개정되었음. 이 중 '불법어업 등의 위반 방지대책 강화와 어업조정 의 원만한 추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며, '위반조업에 대한 효율적 또는 효과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관계 성, 청 등의 연대 강화와 동시에 어업지도선의 장비 충실 등에 따른 지도·단속 능력의 향상을 기함. 특히 전국 연안의 어업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최근 증가경향을 나타내는 것에 대응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의 상향, 행정처분의 엄격화, 도도부현 어업감독사원(漁業監督使員)의 조사가능 구역확대와 위반 상습어선에 대한 위성 위치 측정 송신기 설치의무 부여 등을 통해 위반방지 대책 강화에 몰두한다'라고 공표함
- 이것을 수용하여 같은 해에 어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법이 개정되어 첫째,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고, 둘째, 어업감독관의 권한행사구역이 확대되었음
 - 첫째, 불법어업에 대한 현행 벌칙규정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경할 필요와 각 부현마다의 규제장치를 전국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법률이 아닌 성령이나 규칙(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성령·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벌칙의 한계는 법률의 경우보다 낮고, 불법어업의 즉각적인 방지효과를 손상시키고 있음. 본 개정에서는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 강화를 위해 성령·규칙에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를 어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법상의 범죄행위로 인정함으로써 양 법에 규정하는 최고 양형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음.

성령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규칙에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음

- 둘째, 어업위반의 단속과 사법경찰원으로서 조사를 행하기 위해서 어업감독관(대신임명)과 어업감독사원(지사임명)을 두고 있음. 양자에 권한상의 차이는 없지만 어업감독사원의 집행구역은 당해 부현의 관할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음. 불법어업의 구역화, 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감독사원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신의 허가를 얻어 관할구역 이외에서도 집행을 가능하게 했음

나. 어업조정사무소

1) 현황

- 어업조정사무소는 어업질서 유지와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 어업수역에서 외국 어선과 일본 어선의 지도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산 동식물의 번식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 이 외에도 여러 현에 걸쳐있는 어업 분쟁의 조정, 특정 장관 허가어업(센다이, 니가타 제외) 허가업무의 일부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 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6 개소의 어업조정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
 - 홋카이도 어업조정사무소: 홋카이도 일대 해상수역
 - 센다이 어업조정사무소: 센다이,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현과 후쿠시마 해역
 - 니가타 어업조정사무소: 아키타현, 야마다현, 도야마현 해역
 - 사카이 미나토 어업조정사무소 :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 현과 시마네현 해역
 - 세토 어업조정사무소: 세토, 도쿠시마현, 에히메현, 고치현 해역
 - 큐슈 어업조정사무소: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히타현,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해역(세토나이카이 해역은 제외)

2) 어업조정사무소

가) 개요

- 어업조정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의 하나로 전후(前後)해역에서의 어업의 민주화를 위해 도입된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주체로 하는 어업조정기구로, 수산

행정의 중심역할을 수행함. 어업법의 목적은 어업조정위원회의 운용에 의해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어업생산력을 발전시켜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설치근거로는 어업을 주관하는 어업법(농림수산대신)과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법(도도부현지사 등)에서 각각 설치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 어업법 제82조의 규정에서 해구어업조정위원회,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 광역어업조정위원회 설치토록 함
 - 지방자치법 제180조의 5, 제20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서 해구어업조정위원회 및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에 대한 설치와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한 지시, 기타 관련 사무를 행하도록 규정

나) 기능과 권한

(1) 자문사항(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어업조정위원회)

- 어장계획의 작성(어업법 제11조 제1항), 어업권의 면허(어업법 제12조), 이외 어업권에 관한 일체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업조정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시행

(2) 건의사항(어업조정위원회)→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

- 어장계획의 수립(어업법 제11조 제3항), 면허후의 어업권에 제한·조건 부여(어업법 제34조 제3항),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지사의 명령조치(어업법제67조 제4항)등
 -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가 해야할 취지를 적극적으로 건의

(3) 결정사항(어업조정위원회)

- 위원회 자체 결정사항으로서 입어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당사자끼리 협의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어업법 제45조 제7항)등, 판단 결정(潔定)
- 어업자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채포의 제한·금지(어업법 제67조 제1항) 등의 지시, 어업권의 적격성 사항에 관한 인정(어업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법정화 되어 있음

(4) 기타사항

-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어업자, 어업종사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출두요구 및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어장, 선박, 사업장 등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사를 시킬 수 있음(어업법 제115조 1항, 제2항)

다) 종류별 기능과 역할

(1) 해구어업조정위원회

(가) 설치기준

- 기본적으로 각 현(縣)에 1해구 기준이나, 특수한 입지조건에 있는 수면에 대해서는 형편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구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66해구를 지정하였음
 - 홋카이도,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가고시마현 등은 3개 이상임

<표 5-1> 지역별 해구현황

계	10해구 지역	4해구 지역	3해구 지역	2해구 지역	1개현 지역
66개	북해도 (10)	나가사키 현 (4)	후쿠오카현 가고시마현 (6)	아오모리현, 이바라기현, 동경도, 니가타현, 효고현, 시마니현, 아마구치현, 사가현, 구마모토현(9개현) (18)	이외 부현 (28)

- 66해구 중에서 어업자수가 적은 해구의 경우는 편의상 특수해구로 표기하고, 다음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적게 하고 있음
 - 특수해구로는 카스미가우라, 기타우라, 동경도 내만, 오가사와라, 사도, 오사카, 다지마, 비와호, 오키, 후쿠오카현 후젠, 치쿠젠, 후쿠오카현 아리아케, 사가현 아리아케, 고토, 쓰시마, 구마모토현 아리아케, 구마게, 아마미오시마 등이 있음

(나) 성격

- 기존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유하는 동시에 준행정, 준사법의 권한을 소유하는 독자적인 기관으로 어업자의 직접선거에 의한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임

(다) 기능과 역할**① 자문사항(지사가 위원회에 대한 자문요청)**

- 어업권의 면허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며 어장계획의 작성, 어업권의 면허, 그 외 어업권 일체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지사면허 등에 대해서는 필히 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여 해구어업 조정위원회 의견 수렴, 자문절차 미 이행시 무효

② 건의사항(위원회가 지사에 의견 제시)

- 어업조정에 관한 지시권을 가지고 있어 지사에 대한 자문뿐만이 아니라, 지사가 실시해야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법정화하고 있음
 - 어장계획 수립, 면허 후 어업권에 제한조건 부여, 위원회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명령조치 등

③ 결정사항

- 입어권 및 토지 등의 설정, 변경, 소멸 등의 재정 등 어업조정상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스스로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시·인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재정(행정과 어업자 등의 사이의 결정을 제3자인 위원회가 결정)
 - 입어권의 결정, 변경, 소멸의 재정
 -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사용권 설정
 - 토지 또는 토지의 정착물의 대출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 지시(법률에서는 대응 할 수 없는 결정사항)→위원회 지시
 - 수산 동식물의 채포에 관한 제한, 금지, 어업자 수의 제한, 어장의 사용제한 등
- 인정(적절한 이행여부 확인 및 결정)
 - 어업권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이러한 사항 등의 처리를 위한 조사 등을 행하고 있음

(라) 주요 법령별 역할과 권한

- 어업관련 법령(규정)에서 지사자문에 대한 의견제시(답신), 위원회의 지사에 대한 건의, 위원회결정사항 등에 대한 주요 역할과 권한 부여
 - 어업법, 수산자원보호법, 연안어장정비법, 해양수산개발촉진법, 해양생물자원의보존및관리에 대한 법률, 현 어업조정규칙 등

(마)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내용 및 위반시 조치

①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어업법 제67조)

- 수산 동식물의 번식보호 도모 및 어업권 또는 입어권의 행사를 통한 어장사용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도모

-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자에 대해 수산 동식물의 채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어업자의 수에 관한 제한, 어장의 사용에 관한 제한, 그 외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② 지시의 목적

- 어업법, 어업조정규칙 등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안전에 대하여 발동시켜 어업조정의 원활화를 도모함

③ 지시내용 및 관계자(대상자)

- 지시내용은 어업조정 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관계자는 어업자, 유어자, 특정인, 일반 불특정인 등임

④ 지시의 형식

- 관계자에 대한 채포제한 또는 금지 등의 제한, 또는 적극적인 의무부과

⑤ 지시위반시 조치

- 위원회 지시위반에는 벌칙은 없으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때는 위원회가 지사에게 조치토록 요청(어업법 제67조 제8항)
 - 지사는 동 내용을 근거로 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어업법 제67조 제11항)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의 위반으로서 어업법 제13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혹은 과태료의 벌칙부과

(바)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주요지시 사례**① 오키해구어업조정위원회 지시 제3호(2007.4.3)**

- 오징어채낚기어업에 대한 조업제한
 - 연안오징어채낚기 및 소형오징어채낚기 조업에 따른 본 위원회의 승인, 조업 금지해역, 전기설비등의 사용제한, 승인의 취소 등, 지시의 유효기간 (2007.5.1~2010.4.30)

② 미야자키해구어업조정위원회 지시 제83호(2008.12.18)

- 미야자키해구에서의 바다거북채포 및 란 채취에 대한 어업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 채포의 제한, 채포금지기간, 수컷거북의 채포금지, 제한또는 조건, 취급요령, 소지및 판매금지, 지시의 유효기간(2009.1.1~2011.12.31)

③ 미야자키해구어업조정위원회 지시 제82호(2008.7.17)

- 솜팽이 자원보호를 위해 2010.6.30 까지 새로운 채포제한 보호구역 5개소 추가
 - 어장구역, 경위도, 도면 등

④ 미에해구어업조정위원회 지시 제6호(2008.8.8)

- 바다거북 등 채포에 관한 지시
 - 채포의 제한, 승인대상, 승인조건, 승인증의 휴대, 보고서 제출, 승인의 취소, 적용제외, 지시의 유효기간(2008.8.16~2009.8.15)경위도, 도면 등

⑤ 미에해구어업조정위원회 지시 제5호(2008.8.8)

- 연승어업에 관한 지시
 - 금지어구, 조업금지기간, 채포금지대상 어종 및 중량, 지시의 유효기간 (2007.9.30~2008.9.30)
 - 취지, 토론 등의 금지, 개최의 공시, 의견청취 기일변경, 심리방식, 참가인의 참가허가 절차, 문서등의 열람, 의견청취 조서 및 보고서의 기재사항, 보고서의 열람 절차 등
- 위원회운영
 - 오키나와해구 어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취지, 회장 등의 임무, 회의 소집의 통지, 전문위원회의 회의출석, 전문위원 등의 발언 범위, 심의의 종결, 채택, 의사록, 방청인, 사무국, 공인 등

○ 사무국규정

- 와키야마해구 어업조정위원회 사무국규정
- 취지, 사무분장, 사무국의 위치, 직원, 전결사항 등

⑥ 위원의 보수

- 지방자치법 제203조의 2관련규정에서 비상근직원은 근무 날짜에 응해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액이나 지급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각 현은 조례를 제정해 「월액제」로 보수를 지불하는 사례가 많음

<표 5-2> 큐슈각 현 수용위원의 1개월의 보수와 평균 근무일수(2008년)

현	직책	보수액(¥)	근무일수	1일당(¥)
후쿠오카	회장	236,000	2.5일	94,000
	위원	199,000		79,000
사가	회장	64,000	0.6일	109,000
	위원	52,000		89,000
나가사키	회장	104,000	2.2일	48,000
	위원	86,000		39,000
쿠마모토	회장	129,000		91,000
	위원	109,000		76,000
오이타	회장	96,000	2.5일	38,000
	위원	79,000	1.3일	59,000
미야자키	회장	94,500	1.6일	59,000
	위원	77,900	1.5일	51,000
카고시마	회장	64,800	2.1일	31,000
	위원	54,000	1.6일	34,000

자료 : 서일본신문(2009.5.28)

- ※ 참고 : 행정위원의 보수 관련 1월 「월액보수는 지방자치법 위반」 판결, 오츠 지방 법원은 「근무 실태를 전제라고 하면, 동법의 취지에 반한다」 라고, 월액보수의 지불을 위법 인정

(2)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

(가) 설치목적

-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독자적인 해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복수의 해구어업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해구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설치(어업법 제1052조)
 -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의 감독사항(어업법82조2항)

(나) 설치방법

- 어업법 제105조 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지사에 의한 설치, 어업법 제105조 제2항에 규정과 관련하여 정부(농림수산대신)의 권고에 의해 지사가 설치, 어업법 제105조 제4항 규정과 관련하여 해구어업조정위원회에 의한 설치 등이 있음

(다) 조직 및 관련규정

- 해구어업조정위원회와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180조의 5. 5규정에서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은 법률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사무국은 대부분 현청 내에 두고 위원회를 담당하는 과에서 관장하며 담당직원들이 겸직하는 것으로 전망

(라) 관련규정

- 연합해구어업 조정위원회 운영사무규정
 - 니가타현 연합해구어업 조정위원회 설치고시
 - 가고시마현 연합해구어업 조정위원회 사무규정
 - 소관사무, 사무소의 소재지, 위원구성, 직무권한, 임기, 회의

(마) 지시사항 사례

- 나가사키현 연합해구 어업조정위원회 지시 제1호(2006.3.22)
 - 거북이 낚시어업에 대한 채포승인, 승인의 기준, 승인구역 및 조업기간, 제한 또는 조건, 채포실적의 보고, 승인의 취소, 지시의 유효기간 (2006.4.1~2009.3.31)

<참고>

가고시마 연합해구 어업조정위원회 사무규정

제2조 연합위원회의 사무소는, 가고시마현 수산부 수산진흥과내에 둔다.

제14조 연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다음의 직원을 두는 것으로 한다.

- (1) 사무국장
- (2) 차장
- (3) 참여(參與)
- (4) 서기

2~3. 생략

4 사무국장은 현 임무수산부(林務水産部)수산진흥과의 자원관리감을, 차장은 수산진흥과의 과장보좌 및 어업조정계장을, 참여는 수산진흥과의 기술 보좌, 어업감리계장 및 보급계장을 임명한다.

5 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 세부내용 : 가고시마현 연합해구 어업조정위원회 사무규정 참조

(3) 광역어업조정위원회

(가) 설치목적

-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어 대신관리어업과 지사관리어업에 걸치는 광역 수산자원의 관리와 관련되는 어업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2001년의 어업법 개정시 설치근거 마련
 - 농림수산대신의 감독사항(어업법 제82조 제2항)

(나) 설치기준 및 위원회의 종류

-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구역을 넘어 광역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전국을 태평양, 일본해·큐슈(九州)서쪽, 세토나이카이의 3블록으로 나누어 설치(어업법 제110조)
 - 태평양광역어업조정위원회(태평양 북부회, 태평양 남부회)
 - 세토나이해 광역어업조정 위원회
 - 일본해·큐슈 서광역 어업조정위원회(일본해 북부회, 일본해 서부회, 큐슈 서부회)
-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의 분포, 이용 등에 따라 관계 위원에 의해 구성되는 부회가 설치

(다) 위원회의 기능

- 광역적으로 분포 회유하는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정부가 추진하는 자원회복 계획 중점)에 대해 협의조정 실시와 복수 도도부현에 걸치는 해역을 회유하는 어종 자원관리에 대한 검토, 자원회복계획의 작성에 관한 심의, 자원관리 조치의 적절한 실시를 담보하기 위한 「위원회 지시」의 조치 관련 어업조정 등의 기능이 있음

(라) 위원의 구성

- 각 위원회는, 도도부현마다 호선하는 연안어업의 해구대표자와 정부가 선임하는 근해어업의 대표자(세토나이카이 제외) 및 학식경험자, 전문가로 구성
 - 태평양, 세토나이카이, 일본해·큐슈(九州)서부의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각각 28명, 14명, 29명(계 71명)
 - 태평양과 일본해·큐슈(九州)서부에 설치하는 부회는 연안어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해구대표 위원과 근해어업자의 대표 위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

(마) 주요의제 및 협의내용

- 2001년 설치 이후 매년 상·하반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주요 협의의제는 수산자원회복계획, 수산자원상태, TAE대상어종설정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임

<표 5-3> 광역어업조정위원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태평양광역어업조정위원회	1	1	1	1	1	2	2	2
태평양북부광역어업조정위원회	1	2	2	2	2	2	2	2
태평양남부광역어업조정위원회	1	3	2	2	2	2	2	2

<표 5-4> 일본해 큐슈서광역해 어업조정 위원회 회의개최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본해큐슈서광역어업조정위원회	1	1	1	1	1	2	2	2
일본해 북부회	1	2	2	2	2	2	1	2
일본해 남부회	1	2	2	2	2	2	2	2

다. 해상보안청의 어업단속

- 해상보안청(국토교통성의 외국)은 전국을 11개의 관리구역(이하 관구)로 나누어 관구해상보안부를 설치하고 있음. 해상보안청의 임무는 경비, 해양사고 구조, 해양정보, 교통업무가 있고, 경비업무 중에 밀수단속이 포함되어 있음. 경비업무 등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해상보안관은 해상보안법, 형사소송법에 의해 특별 경찰직원으로 규정되고 있음

1) 외국인불법조업대책

- 일본의 영해와 EEZ 내에서 외국선박의 위법조업 단속은 외국어선이 특히 많은 일본해, 동중국해 등 주요 해역에 순시선과 항공기를 배치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위법외국어선에 의한 단속 방해도 있음. 어선의 고속·고성능화와 지그재그 운항으로 추적, 체포 방해, 순시정 직접 충돌 등이 그 예임

2) 불법어업대책

- 불법어업은 어업생산력 발전 저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어업자 중에는 폭력단 관련자도 있어 폭력단의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어 수산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불법어업 근절을 기하고 있음. 불법어업은 범죄수익에 비교해 형량이 적어 재범성이 높고, 조직화, 악성, 교묘화가 한층 더해지고 있음
- 어업법령위반에 따른 송치건수는 1,000~1,500건(2000~06년)으로 그 중의 대부분이 불법어업이었음. 2007년 6월 한달 동안 제8관구 관내(山陰지방-일본 중국지방의 북쪽으로 일본해에 직면해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바다관련 사건 및 사고는 13건, 그 중 7건이 소라 등의 불법어업 사건이었음

3) 불법어업의 실태

- 해면어업 관계법령 위반 건수의 추이(1995~2005년)를 보면 연간 합계 건수는 900~1,500건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 과거 10년간을 비롯하여 그 이전까지 통틀어도 건수의 변화가 크지 않음

- 대상어종을 통해 살펴보면, 어류가 가장 많고(장어의 치어, 연어, 송어, 기타), 다음으로 패류(전복, 떡조개, 소라, 모시조개, 기타)가 많으며 (최근 3년간 크게 성장), 갑각류는 새우와 게, 기타 수산동물로 성게, 문어, 해삼 등이 있음
- 위반자를 어업자와 비어업자로 나누면, 어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었지만 최근 3년간은 비어업자의 비율이 급증하여 어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섬. 결국 비어업자에 의한 패류채취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05년의 1,311건을 위반자의 주소에 따라 현지인, 외지인(현내 타지역 거주자), 현 외로 나누어 보면, 어업자는 현지인이 대부분으로, 외지인과 현 외는 어류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비어업자의 경우는 현지인 보다 외지인과 현 외 거주자가 많음. 특히 패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명확히 나타났음
- 채포방법별로는 대신허가어업(오키아이저인망³⁹⁾, 대중형선망, 기타)은 8건으로 그 수가 적고, 대신승인어업(바다참게어업 등)에서는 없었음. 법정지사허가어업(중형선망, 소형저인망, 세토내해선인망, 소형연어, 송어유망, 소형저인망어업 대부분)은 301건이었음. 이 밖에 그물어업(예망, 자망이 대부분)이 242건, 낚시가 95건, 기타(패류, 갑각류, 기타 수산동물채포구, 잠수기 등)가 665건으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음. 어업자는 소형저인망, 기타 그물어업, 낚시어업이 많지만 비어업자는 채포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 결국, 내수면어업의 위반건수는 402건(2005년)으로 거의 대부분이 비어업자에 의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해면어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위반자는 현지인과 외지인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상어종은 연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송어류, 은어, 가막조개, 빙어 순으로 나타났음
- 해면어업으로 돌아가서 단속 기관별(2005년)로 도도부현이 302건(23%), 도도부현 경찰이 283건(22%), 해상보안부가 726건(55%)으로 해상보안부가 과반수를 단속하고 있음

39) 沖合저인망 : 연안어업과 원양어업의 중간규모 어업

- 위반에도 지역별로 특징을 보이고 있음. 북해도의 연어·송어어업, 카나가와 현은 비어업자가, 세토내해의 각 현은 어업자의 위반이 많음
- 해면어업에서 어업법위반은 법정지사허가어업의 무허가조업(제66조)과 어업권 침해(제143조)임. 수산자원보호법위반은 아니지만 성령위반은 소형저인망어업 단속규칙 위반을 중심으로 35건으로 대다수가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 위반임. 어업조정규칙 위반은 각 항목마다 건수가 많음(중복이 원인 중 한가지)
- 내수면어업의 경우 어업법위반은 제143조 위반뿐이고, 또 해면어업과는 달리 수산자원보호법위반이 많음. 어업조정규칙위반이 대다수를 점하는 것은 해면어업과 같지만 금지기간, 어구어법의 제한, 소지판매라고 하는 특정 항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임

2. 중국

- 중국은 1986년에 어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어장관리가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중국의 어정어항감독 관리기관으로는 어업국, 어정국. 농림부 직속기관으로 어정지휘센터가 있음
- 어업국은 전국의 수산업을 관리하며, 3개의 해구어정국은 황발해구, 동해구, 남해구로 분리하여 어정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어정 어항감독 관리국은 중국 해안지역의 어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중국 공안부는 국방업무 외에 중국의 정치, 치안유지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변방국은 공안부 직속으로서 성격상 준 군사조직으로 군계급장을 사용하고, 타 부서보다 1단계 상위 직급으로 보직하며, 해상관할구역을 가진 성, 직할시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업무는 국가 주권보호, 출입국 질서, 변경연해 지구의 치안유지 및 법률에 따른 행정관리 그리고 선박척수의 증가와 출어선의 생산 다양화, 종사인원 증가에 따른 출어선·어업인 관리 및 선박 번호가 없는 선박, 선적항이 없는 선박 단속 등 해상치안 확립, 변경지역 해상 및 출입국 지역 단속을 위한

해상순찰과 치안연락망 완비로 해상치안 확립, 변경지역, 해상 및 출입국 지역에 대한 범죄 단속을 강화하여 밀입출국사범을 단속하는 동시에 해상밀수, 해상강도, 절도사범을 단속하고 있음⁴⁰⁾

- 중국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체제를 원칙으로 하여 각기 담당 관할수역에서 어업감시·감독을 행하고 있으나公安부의 지도·단속이 보다 철저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음

가. 농업부 어업국(農業部漁業局)

1) 개요

- 국가 수산행정의 주관부문으로 농업부 안에 어업국이 있으며, 이는 한국과는 달리 농업 안에 어업이 포함되어 있음. 전국 각 성(省)·시(市)에 수산국, 어업국, 어업청, 어업처 등 관련 수산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주요업무

- 어업국의 주요 업무로는 어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기술향상대책 연구 및 정책 건의, 관련 법률규정의 기초 작업 및 감독 실시, 어업의 관리, 어업의 산업구조 조정에 관한 지도, 어업 관련 과학연구, 기술보급계획 수립 및 감독실시 중대한 과학연구보급프로젝트의 선정 및 실시, 어업자원, 어업생태환경의 보호 및 합리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대책수립 및 실시, 수산자원 관리, 어정(漁政)·어항 및 어선검사에 대한 감독관리권 행사, 어선·선원·어업허가 및 어업통신에 대한 관리, 중대한 해외어업분쟁의 처리 협조, 수산물가공업 발전, 수산시장 시스템 건설 및 해외무역 촉진을 위한 정책건의, 어업 표준화 및 품질안전관리업무, 수생동식물 방역업무, 수산양식에 있어서의 약물사용, 약물잔류검사 및 감독관리, 관련 법률법규 기초수립 시 참여, 국제어업 협약, 어업협정의 제정 및 집행 감독, 국제어업교류 및 협력 전개, 어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 및 실시, 안전조업 지도, 어업재해방지를 위한 관리 및 어업재난 구제자금의 처리, 어업통계 및 관련정보 공표, 유관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관리 및 지도 등이 있음

40) 정도훈, 우리나라 연근해 불법어업 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8, p.44

3) 조직구성

- 하부 조직으로는 종합처, 정책법규처, 계획처, 과기처, 어선어항처, 자원환보처, 양식처, 시장 및 가공처, 원양어업처, 국제합작처 등 10개 조직이 있으며, 각 조직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나타남
 - 종합처(綜合處) : 유관기관 또는 각 부처간 업무연락 협조 및 종합적인 사무처리 등
 - 정책법규처(政策法規處) : 어업발전전략, 방침, 정책 등의 수립 및 입안 등
 - 계획처(計劃處) : 어업의 장기발전계획, 투자계획 수립 및 실시 등
 - 과기처(科技處) : 어업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관련 사무, 어업표준화업무 등
 - 어선어항처(漁船漁港處) : 어업선박 및 어업허가 관리, 해상안전 관리 및 어선오염 방지 감독, 안전조업 지도 등
 - 자원환보처(資源環保處) :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의 보호 및 합리적인 이용개발에 관한 업무 등
 - 양식처(養殖處) : 수산양식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시 등
 - 시장 및 가공처(市場與加工處) : 수산물시장의 관리, 시장정보분석 및 홍보, 수산물 가공업의 발전전략 수립, 수산물의 품질안전 감독관리 등
 - 원양어업처(遠洋漁業處) : 원양어업의 발전계획 및 정책 수립, 관리감독
 - 국제합작처(國際合作處) :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건의 및 어업협정 체결 등 대외적인 교류와 협력 추진

나. 농업부 어정국(農業部漁政局)

1) 개요

- 어정국은 농업부 직속의 어정어항(漁政漁港) 감독기구로써, 농업부 어업국 및 중국어정지휘센터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음. 기존 '어정어항감독관리국'에서 2008년 9월 '어정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지역별로 구분하여 황발해구어정국, 동해구어정국, 남해구어정국이 있음. 법률에 근거하여 어정어항 감독 관리권을 행사함

2) 설립취지

- 어업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어업인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로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대내적)과 중국을 대표해 어정어항 감독관리권을 행사하여 국가의 해양 및 어업 권익을 보호(대외적)하기 위함임

3) 주요업무

- 주요 업무로는 관할해역의 어정어항 감독관리, 어업자원과 해양환경 보호, 휴어기 조업관리, 어업허가제도, 근해 조업강도 제한, 어업협정 실시, 안전조업 및 어업통신 관리, 관할해역 내 국내법규, 국제조약, 어업협정 등의 집행에 관한 조사 감독, 어업분쟁 및 국제해상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 및 처리, 어업허가증의 심사발급, 어업자원 및 해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주요어장 및 어기와 관련 생산량 조절 및 관리, 희귀 해양동물의 보호 및 관리 등이 있음

가) 황발해구어정국(黃渤海區漁政局)

- 소재지는 산둥성 옌타이(山東省煙台)로 관할지역은 황발해구(산둥성, 요령성, 하북성, 천진시)이며, 조직구성은 내부조직과 지부조직으로 나뉘어짐
 - 내부조직 : 관공실(辦公室), 인사노사처(人事勞資處), 계획재무처(計劃財務處), 정책법규처(政策法規處), 어정처(漁政處), 어항감독처(漁港監督處), 자원환보처(資源環保處), 정보관리처(信息管理處), 기관당위(機關黨委), 기관서비스처(機關服務處), 중국어정황발해본부(中國漁政黃渤海總隊)
 - 지부조직 : 진황도지부(秦皇島站), 석도지부(石島站)

나) 동해구어정국(東海區漁政局)

- 소재지는 상하이(上海)로, 관할지역은 동해구(강소성,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및 장강유역(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안휘성, 중경시)임
- 동해구어정국, 동해구 어정지휘부, 장강어업자원관리위원회 등 3가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연혁

- 1958년 10월 '동해구어업지휘부' 설립
- 1985년 2월 '어정분국'의 명칭 및 기능 추가(당시 농목어업부 소속)
- 1987년 4월 '장강중하류어업자원관리위원회' 설립 후 동국(同局)으로 부속
- 1990년 '농업부동해구어업지휘부'와 '농업부동해구어정분국'으로 명칭 변경
- 1990년 '어정분국'과 '어정국'으로 명칭 변경
- 1993년 1월 '장강어업자원관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
- 1995년 6월 '농업부동해구어정어항감독관리국'으로 명칭 변경
- 2008년 9월 '농업부동해구어정국'으로 명칭 변경

○ 조직구성은 내부조직과 지부조직으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내부조직 : 관공실(辦公室), 조직인사처(組織人事處), 재무처(財務處), 정책법규처(政策法規處), 어정처(漁政處), 어항감독처(漁港監督處), 정보처(信息處), 자원환보처(資源環保處), 장강어업자원관리위원회 관공실(長江漁業資源管理委員會辦公室), 중국어정동해본부(中國漁政東海總隊)
- 지부조직 : 남통지부(南通站), 심가문지부(沈家門站)

다) 남해구어정국(南海區漁政局)

○ 소재지는 광둥성 광저우(廣州)로, 관할지역은 남해구(광둥성, 광서성, 해남성)임

○ 연혁

- 1974년 4월 '남해구어업지휘부' 설립(국무원 직속)
- 1994년 12월 '남해구어정어항감독관리국'으로 명칭 변경
- 2008년 9월 '남해구어정국'으로 명칭 변경

○ 조직구성은 내부조직과 지부조직으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내부조직 : 관공실(辦公室), 인사교육처(人事教育處), 기관당위(機關黨委), 계획재무처(計劃財務處), 정책법규처(政策法規處), 어정어항감독관리처(漁政漁港監督管理處), 정보처(信息處), 자원환보처(資源環保處), 어정선단(漁政船隊), 기관서비스센터(機關服務中心), 남사어업처

(南沙漁業處), 중국어정남해본부(中國漁政南海總隊)

- 지부조직 : 주해어정지부(珠海漁政站)

라) 중국어정지휘센터(中國漁政指揮中心)

- 농업부 직속으로 어업행정상 법집행을 수행하는 지휘기구로 설립연도는 2000년 임. 주요 업무로는 중대한 어업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관련 법 및 농업부의 위임에 근거), 경제수역 및 어업협정에 근거한 공동수역에서의 법집행 및 조사, 중대한 사고·분쟁·돌발사안 및 국제적사건의 처리, 어업오염사고 조사 처리, 어업무선통신, 운항유도 관련 업무기술의 지도, 전국 어정관리 지휘시스템의 건설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임
- 조직 구성은 관공실(辦公室), 지휘처(指揮處), 조사처(調查處), 정보처(信息處), 감독지도처(督導處), 수생야생동식물보호처(水生野生動植物保護處)로 이루어져 있음
- 중국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체제를 원칙으로 하여 각기 담당 관할수역에서 어업감시·감독을 행하고 있으나公安부의 지도·단속이 보다 철저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음

3. 미국

가. 어업행정조직

- 미국의 수산행정은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관리처에 수산국을 두고, 수산국은 9개 과와 5개 지역사무소(알래스카, 북동지역, 북서지역, 남동지역, 남서지역)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수산관련 업무를 보면 내수면 어업은 내무부, 메기 등 양식어업은 농무부, 어선등록, 지도·단속은 연안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연안 경비대는 육·해·공·해병대에 이어 제 5의 군사조직으로서, 평시에는 교통부 소속이나 전시에는 해군에 소속되어 해군을 측면 또는 후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연안경비대는 어업지도·단속을 전담하는 부서는 별도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지도·단속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지방에는 지역 연안경비사무소 10개 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육지로부터 3해리 외측은 중앙정부인 수산청과 연안경비대가 담당하고 있고, 내측은 주 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음. 수산청 어업지도·단속부서에서 지방사무소별 지도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지방연안경비대의 장비(선박,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산청 지도·감독 공무원이 실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함. 연안경비대의 요원은 선박의 운항 및 어업지도·단속에 협조하는 체제이나, 연안경비 요원에게도 지도·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단독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미국에서의 어업관리 행정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해양대기청(NOAA)의 전신인 기관들이 설립된 1800년대에 만들어진 어업규제와 관련이 있음. 이러한 해양대기청 이전의 기관들은 1807년에 설립된 United States Coast and Geodetic Survey, 1870년에 설립된 United States Weather Bureau, 1871년에 설립된 United States Commission of Fish and Fisheries임. 한편, 미 수산국(NMFS)은 United States Commission of Fish and Fisheries에서 유래함. 그리고 해양대기청은 1966년 해양자원 및 공학발전법(Marine Resources and Engineering Development Act)에 따라 1970년에 설립되었음. 또한 해양대기청의 법집행사무소(NOAA Fisheries Office for Law Enforcement; OLE)는 수산국의 연방경찰부서로서 1930년에 U.S. Fish Commission and Bureau의 법집행부서로서 설립되었음. 동 부서는 생태계 보호와 해양생물의 보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
- 행정시스템의 수직구조를 살펴보면,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DC) 해양 대기청(NOAA) 수산국(NMFS) -법집행사무소(OLE) -59개 현장 사무소(FOs)로 조직되어 있음. 한편, 주정부에서의 어업규제 집행은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업·수렵부(Department of Fish & Game)와 환경관리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DEM)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나. 연방정부의 행정조직 및 역할

- 이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양대기청 소속 수산국(NMFS)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생산수준의 유지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담당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미 수산국은 어업관리계획(Fishery Management Plan; FMP) 및 관련 규제를 통해 남획방지, 혼획 감소, 필수서식처의 보존 및 고갈된 자원의 회복을 위해서 8개 지역어업관리위원회(Fishery Management Councils)와 협력하고 있음
- 즉, 지역 어업관리위원회는 어업관리계획과 그 수정사항을 권고하고 수산국은 관리프로그램의 승인과 필요한 규제의 집행을 수행하고 있음

다. 연방정부 수산국의 역할

- 미국의 어업관리 규제와 관련하여 미 수산국(NMFS)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지역어업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어업관리 규정의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 자료 마련
 - 지역어업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어업관리와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정책을 수정
 - 지역어업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행정, 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
 - 어선 및 가공시설의 개량, 그리고 과잉어획능력의 감축 방안 모색
 - 식품 규정에 대한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수산물 검사를 관리
 - 각종 국제협약의 협상 참여
 - 지역어업관리기구 및 쌍무협상 등에 참여 지원
 - 어업자들의 공평한 조업 및 상거래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
 - 외국어선에 대한 허가프로그램 관리

라. 법 집행사무소(Office of Law Enforcement)

- 미국의 연방어업 규제집행은 일반적으로 법집행사무소(OLE)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LE는 수산국의 하부조직으로서 미국의 해양 생물자원과 서식처를 보호하고 규제하는 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OLE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OLE는 민·형사 위반 모두를 수사하고 불법적 소유물과 금지품목을 압수하고 범법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OLE는 또한 순찰선을 보유하고 있고, 해안경비대, 이민통관집행국(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민간항공순찰대(Civil Air Patrol), 주정부 법집행부서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순찰 및 조사를 벌임
 - OLE는 각 지역별로 본부이외에 7개 사무소를 두어 법집행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 태평양지역사무소(Pacific Region)
 - 남서부지역사무소(Southwest Region)
 - 오대호지역사무소(Great Lake, Big River Region)
 - 동남부지역사무소(Southeast Region)
 - 동북지역사무소(Northeast Region)
 - 마운틴, 플레리지역사무소(Mountain Prairie Region)
 - 알라스카지역사무소(Alaska Region)
 - OLE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자발적 순응을 촉진하는 공동체방법 및 문제 해결(Community Oriented Policing and Problem Solving; COPPS)을 제공함
 - OLE는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과 같은 진보된 기술의 개발 및 확산에 노력함
 - OLE는 연방, 주정부, 외국 집행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부기구 및 수산업계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함
 - OLE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과 관련하여 여러 회원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수입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음
 - OLE는 또한 13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법집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양대기청의 해양국(National Ocean Service; NOS)을 지원함. 즉, OLE 인적자원에 의해 보호구역 내 순찰 및 조사 등을 수행함
- OLE는 해양생물자원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들의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방부서, 주정부부서,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어업관리위원회와 협

력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을 하고 있는 연방부서에는 해안경비대, 이민통관집행국, 세관·국경보호국(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어류·야생동물국(U.S. Fish & Wildlife Service),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gency), 법무성(U.S. Department of Justice),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등이 있음

마. 주정부의 행정조직 및 역할

- 주정부는 각 주의 어업상황에 따라 다른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업 및 자원보호, 법집행, 교육을 통한 환경보존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업·수렵부(Department of Fish & Game) 또는 환경관리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DEM) 내에 법집행부서를 두고 있음. 그 외에도 각 주의 해면어업위원회(Marine fisheries councils)는 주정부 어업관리 부서를 보조하고 있음
- 해면어업위원회는 주정부 관리수역인 3해리 내에서 조업하는 업체 및 어업자와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내수면 및 유어낚시와 관련해서는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예를 들어, 로드아일랜드주의 경우, 환경관리부 내 환경경찰관(EPO)은 어류, 야생동물, 습지, 초목 등과 관련하여 주정부의 법, 규칙, 규정 등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음. 모든 EPO는 연방 어류·야생동물국(FWS), 수산국(NMFS), 세관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아 주 관할권 내에서 연방법을 집행할 수 있음

바. 어업관리의 규제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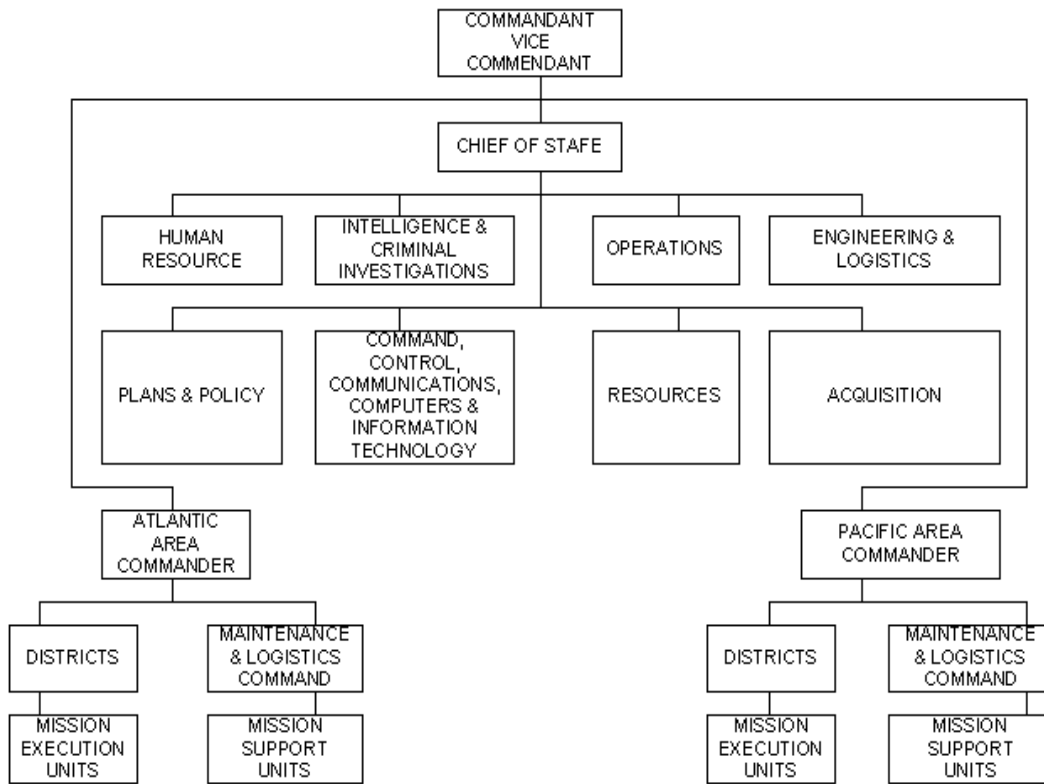
- 미국 어업규제의 집행 및 행정조직에는 해양대기청(NOAA)과 수산국(NMFS), 지역 사무소, 주정부, 법 집행사무소(Office of Law Enforcement) 그리고 해안경비대(USCG)가 있음
 - 미국에서의 기본적인 어업관리법은 1976년에 제정된 매그너슨 어업보존 및 관리법이며, 이후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보존 및 관리법으로 개정됨
 - 동 법에 의해 지역 어업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동 위원회에 의해 지역별 어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주정부의 어업규제 집행은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업·수렵부(Department of Fish & Game)와 환경관리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DEM)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미 해양대기청 법집행사무소(OLE)는 연방 어업규제의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타 연방기관, 주정부 파트너, 비정부기구(NGOs), 국제기구, 어업관리위원회(FMC)와 협력하고 있음
 - 법집행사무소는 매릴랜드 주 실버스프링에 본부를 두고 7개 분과사무소와 59개 현장사무소(FOs)를 두고 있음
 - 어업규제의 행정적 관리 분담과 관련해서는 해안으로부터 3~200해리는 연방정부가 어업관리규제 및 법집행을 수행하고, 3해리 이내는 개별 주정부가 그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OLE는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해 승선 조사하기 위해 순찰선(19척)을 보유하고 있고 육상, 해상, 공중에서 지역, 주정부, 연방정부 기관들과 연계하여 순찰활동을 하고 있음
 - 미국에서 어업관리 감시·감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는 해안경비대(USCG)로서 1,709척의 선박(구명보트, 서브보트, 구명선, 항구보안선 등), 54대의 비행기, 144대의 헬리콥터, 251대의 소형 감시선을 보유하고 있음
- 미국의 어업규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크게 어획노력량규제, 기술적 규제, 조업구역규제, 그리고 어획량규제로 구분될 수 있음
 - 어획노력량규제에서 우리와 다른 규제방법에는 조업일수제한이 있음
 - 어획량규제는 총 허용어획량(TAC), 개별양도성어획량(ITQ), 공동체개발할당 프로그램(CDQP)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처벌체계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다만, 적발 시 압류 등을 보면 처벌이 우리나라에 비해 다소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음
 - 해양대기청 법집행 공무원은 위반자에게 직접 즉결심판과 같은 형태에서 민사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거나 혹은 법집행·소송자문관실(GCEL)로 사건을 이첩함

- GCEL은 이후 인허가 제재통지(NOPs), 또는 위반·부과통지(NOVAs)의 형태로 민사적 처벌을 부과하거나 형사적 절차를 위해서 연방검찰청으로 이첩함
- 미국에서의 기본적인 어업관리법은 1976년에 제정된 매그너슨 어업보존 및 관리법(Magnuson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임. 동 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 및 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으로 불리고 있음. 동 법에 의해 미국의 어업관리에 대한 기본 틀이 형성되고 있음
- 또한 동 법에 의해 지역 어업관리위원회(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councils)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어업 보존 및 관리법이 정한 범위 내의 지역에 대한 어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은 미 수산국에 의해 시행됨. 일반적으로 동 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어업관리계획은 각 지역의 어업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어업관리수단들을 사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각 어업관리위원회는 관리대상어종에 대한 자원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남획된 어종에 대해서는 자원회복계획의 수립을 법제화함으로써 일정 기간 내에 목표 자원량이 달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자원회복을 위해서는 진입제한, 면허제, 어기(漁期) 설정, 해양보호구역 설정, 할당제, 어구 제한 등 다양한 어업관리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사. 해안경비대의 역할 및 기타 조직

- 미국에서 어업관리 감시·감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는 해안경비대(USCG)임. 미 해안경비대는 사령관, 부사령관, 8개 부서(인사, 정보 및 범죄수사, 운영, 공학 및 물류, 기획·정책, 명령/통제/의사소통/컴퓨터/정보 기술, 자원, 구입), 2개 지역(대서양, 태평양)으로 조직되어 있다. 해안경비대는 1,709척의 선박(구명보트, 서프보트(큰 파도에 건디는 튼튼한 보트), 구명선, 항구보안선 등), 54대의 비행기, 144대의 헬리콥터, 251대의 소형 감시선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5-1> 해안경비대 조직도

- 미 해안경비대의 임무는 국제수역을 포함하여 미국의 연안 항구, 내륙수로에서 일반 대중, 환경, 미국 경제 및 안보이익을 보호하는 것임. 즉, 해안경비대는 국가안보, 법 집행, 조사 및 구조, 해양환경오염 대응, 항행보조 등에 있어서도 폭 넓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해안경비대는 41,236명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고, 보충역으로 7,927명, 민간인 7,247명과 34,611의 보조원들을 보유하고 있음. 해안경비대의 감시와 모니터링 서비스는 해상범죄의 수사, 해양환경 보호활동, 불법적 어업활동을 포함함. 특히, 평균적으로 매일 193척의 배에 승선하고 21척의 어선의 조업을 감시함

4. 영국

- 영국은 농수산식품부(MAFF)부서에 Fishery Secretary 밑에 4개과와 해양어업 관실, 환경수산센터에서 수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어업의 지도·단속은 해양어업 검사관실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수산1과 : 어선정책, 수산물 유통 및 무역업무
- 수산2과 : 어패류 보건위생, 어패류 양식업무
- 수산3과 : 수산통계자료 생산, 수산정보기술과 재정지원업무
- 수산4과 : 어선, 수산보호정책 및 EU공동수산정책 이행 및 통제
- 해양어업검사관실 : 영국어업한계선 내의 어업활동에 관한 통제감시기능 수행, 유통시장 및 해양환경 관련규정의 이행, 어업위반 행위의 조사기능 수행
- 환경수산센터 :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사 및 감시, 양식업의 위생 및 보건, 어업 자원의 과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5. 캐나다

- 캐나다는 수산해양부(DFO)산하에 5개국(Assistant Deputy Ministers: ADMS)와 5개 광역지청에서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수산담당 ADMS : 어선감축정책 등 특별정책을 제외한 수산관련 조직을 관리

6.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중앙행정부서에 수산부를 두고 있으며 집행팀과 개혁사업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집행팀에는 수산 업무 사업부가 있어 수산사업 및 수산자원의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983년 어업법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뉴질랜드는 수산업에서 자원관리에 중점을 두어 1991년 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생산량 관리제도(Quater Management System)를 강력히 실시하고 있음. 이 생산량 쿼터 중 20%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에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는 어업인에게 배정되고 있음
- 모든 쿼터거래는 수산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쿼터에 관한 사항은 어느 누구도 특정한 어장이나 어종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이러한 제한은 수산부장관이 뉴질랜드 어업위원회 그리고 다른 산업계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함

- 뉴질랜드는 불법어업을 현장에서 직접 단속보다는 유통단계별 신고시스템으로 감시토록 하여 불법어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해상 감시체제는 규모가 큰 선체28m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항해 위치 추적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여 어선의 항해위치를 육상에 설치된 모니터에 의해 감시하고 있으며, 일부 어선에 대해서는 정부 감독관인 옹저버를 승선시켜 어업활동을 직접 감시토록 하고 있음

제2절 각국의 해상 지도·단속 제도 고찰

1. 어선 모니터링 제도(VMS)

- 어선 모니터링 제도는 어선을 모니터링하고, 통제와 감시(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이하 MCS라 함)를 하는 것으로서, 최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어선의 활동을 감시하고,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VMS(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 이하 VMS라 함)를 도입한 바, 그 실효성이 입증되어 시행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MCS를 위하여 VMS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 즉 공중감시, 해상에서의 감시선을 위한 감시, 어획 양륙조사 및 서류조사가 있지만, VMS가 운용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과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고, 어선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MCS를 위한 공중감시 및 해상감시가 어려운 재정적, 물리적 재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효과적임⁴¹⁾

가. 미국의 VMS

- 미국에서는 국립해양대기 관리처에서 수산자원의 고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역이나 어업별로 VMS시행 여부를 결정함. 이러한 조업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알라스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태평양 대구, 불락과 알라스카 고등어 등을 어획하려는 모든 어선에 어선 위치 자동추적장치인 VMS를 설치,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감시 및 모니터링 서비스는 수산국의 법집행사무소(OLE), 주정부 어업담당부서, 해안 경비대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기관들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OLE내 현장사무소(FOs)의 순찰선과 해안경비대는 연근해 어선의 조업활동을 모니터링함. 그리고 주정부의 순찰선은 주정부 관할 수역의 조업활동을 감독함. OLE 특별요원과 법집행관은 복잡한 민·형사 수사를 수행하고, 선상에서 승선조사, 가공공장 조사, 인터넷 등에서의 판매 조사, 육상, 해상 및 항공 순찰을 벌임

41) 「EEZ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업 질서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2.7 PP.186-187

- VMS는 자동적으로 20분마다 어선의 위치를 NOAA에 송신토록 하고, 만약 이 VMS가 고장이 나거나 다른 사유로 위치 송신이 되지 않으면 고장 수리되어 정상적으로 위치 송신이 될 때 까지 어업활동을 중단하여야 함
- NOAA는 고갈 위험이 있는 수산자원 서식지에 대한 어장 폐쇄여부의 결정과 이러한 어장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선의 위치추적을 위하여 이 정보를 이용하고 있음

1) 멕시코만 새우어업에서의 VMS

- 멕시코만에서 붉은 돔어업과 새우어업을 경제적 비중이 유사함. 붉은 돔의 유어와 서식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새우 트롤 조업 중에 붉은 돔의 유어가 혼획되는 비율이 높음
- 이 혼획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임시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칙에 의거 1998년 5월 14일로부터 1998년 11월 16일 까지 이 수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새우트롤어선 100척을 선정하여 읍저버를 승선시키거나 VMS를 설치토록 하여 어선의 위치, 코스와 속력을 조사함
- 읍저버의 조사 자료와 VMS 수신 자료 및 조업일지의 기록을 토대로 새우자원과 붉은 돔의 혼획율을 조사함

2) 대서양 청어어업

- 2001년 3월 11일 이후 대서양 어장에서 일 년에 500톤 이상의 청어를 어획하고자 하는 자는 500톤 이상 청어를 어획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는 것 외에 반드시 VMS를 설치하고 조업토록 함

3) 북동수역

- 2001년부터 과잉 어획으로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가리비아어업에 대한 전업 또는 겸업허가를 받은 어선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은 VMS를 설치토록 함

4) 알래스카 수역 어선 감시

- 1997년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래스카의 중요 수산 자원의 서식지에 대한 트롤어선의 어업을 전면 금지시켰음
- VMS는 자동적으로 20분마다 어선의 위치를 NOAA에 송신토록 하고, 만약 VMS가 고장이 나거나 다른 사유로 송신이 되지 않으면, 고장 수리되어 정상적으로 위치 송신이 될 때까지 어업활동을 중단하여야 함

나. 캐나다의 VMS

- 1993년에 와서 본격적인 개별 할당제도가 시행되면서 어획량과 어선 위치에 대한 허위기록과 허위보고 문제가 캐나다 수산업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로 대두됨. 이에 따라 캐나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허위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산 업계와 합동으로 각 선장들에게 조업일지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게 함
- 1999년부터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에 VMS설치를 의무화함. 이러한 노력으로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성과가 향상되어, 1999년부터 총 허용어획량이 증가하여 수산업계의 수익에 크게 기여함

다. 호주의 VMS

- 2000년 12월부터 약 1,000척의 어선에 VMS를 설치하고 있고 계속 확대 추세에 있으며, 이 제도의 도입 이후 허위보고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는 트롤어업을 중심으로 VM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출량 및 투입량 규제에 이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임
- 그리고 자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려는 모든 외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VMS 장착을 의무화 할 예정임

라. 뉴질랜드의 VMS

- 뉴질랜드에서는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이용 우려가 높아 자원보존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약 150척의 심해트롤 어선에 VMS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마. 유럽연합(European Union) V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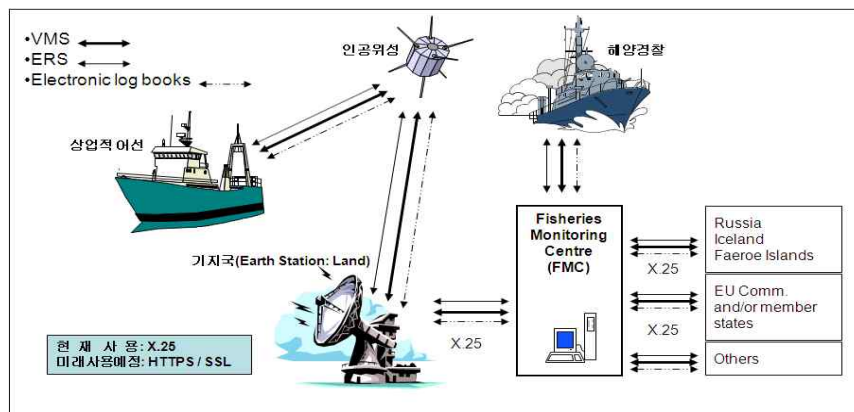
- EU에서는 특별한 예외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각국의 영해기선에서 12마일 이내에는 자국어선에만 조업을 허용하지만, 그 밖의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공동 조업하는 것이 일반적임
- 2000년 1월부터 공동수역에서 조업하려는 전장 24m이상의 모든 어선에는 의무적으로 VMS를 설치토록 함. 2001년 현재 약 7,000여 척이 VMS를 설치하고 있음
- EU에서 VMS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각국의 연안수역과 공동조업 수역을 이동하는 모든 어선을 추적하기 위한 것임
- 각 연안국은 모두 이 자료를 공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완벽한 감시제도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EU 공동으로 총 허용어획량을 분배하고 조업을 가능케 하고 있음

바. 일본의 VMS

- 일본은 VMS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여러 가지 VMS 장비를 시험 운용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어업 감시에 직접적으로 VMS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음
-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어업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즉, 수산청 산하의 어업지도선이 일본의 모든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산하의 어업감시선은 자신의 관할 수역의 불법어업을 감시함
- 필요시에는 해상 보안청 산하의 해시경비함도 불법어업감시에 동원되고 있음. 불법어업이 극심한 수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여러 부서의 감시선이 합동으로 단속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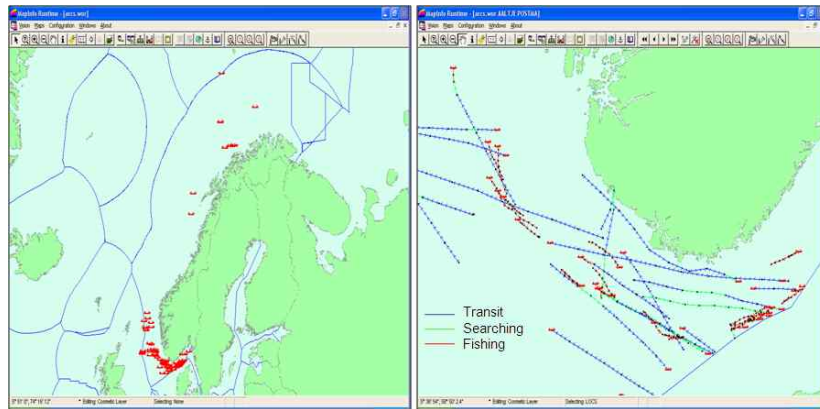
사. 노르웨이의 VMS

- 노르웨이의 어업규제는 수산청 산하의 어업관리위원회, 해양경찰청, 판매조직 등 3개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우선 수산청은 수산부의 한 하부조직으로서 어업관리의 기술·제도적 측면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으며, 수산청은 다시 지역 별로 어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업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그 대표적인 예로 양륙된 어획물에 대한 판매보고서와 조업일지를 점검하는 업무가 있음
- 둘째, 해양경찰청은 조업 중 일어날 수 있는 해상투기를 정기검사를 통해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함. 마지막으로 판매조직은 어선에 대한 양륙보고서를 보관·점검하며, 수산업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들에 대해 규제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Gezelius, 2006)
- 노르웨이의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과 인공위성 추적장치(ERS)를 이용한 전자교신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어선의 활동 정보가 실시간으로 추적되며, 이들 활동정보는 기지국(Land Earth Station)에서 통합됨. 해양경찰청과 각 나라의 모니터링 부서는 통합된 정보를 통해 조업 중인 선박을 감시·감독하고 있음



<그림 5-2> 노르웨이 전자교신 모니터링 시스템

- 한편 만일 어업자들이 쿼터를 보유하지 않고 어획하였을 경우, 어획물은 노르웨이 전자교신 모니터링 시스템 지역판매조직에 몰수되고, 어획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함



<그림 5-3> 노르웨이 EEZ내에서 조업하는 EU 어선들의 모니터링 상황

- 노르웨이의 경우, 생산자(예, 선장)와 구매자(예, 수산기업), 그리고 판매조직이 정부의 어업관리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 결과 이들 간의 어획물 양륙 및 유통에 대한 상호 점검(cross-check)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 외에도 VMS를 갖춘 선박에 대한 실시간 인공위성 추적 시스템을 통해 항로를 이탈한 어선의 불법조업이나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선 간 불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음

2. 옵저버제도(Observer)

- 옵저버제도는 어업감독자를 직접 어선에 승선시켜 어업관리에 필요한 양질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어업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임
- 이 제도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을 육지에서 감시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어업선진국에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음

가. 미국

- 1970년대에는 주로 외국어선을 감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나, 1980년부터 국내어업에도 옵저버를 승선시키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전체 어선의 약 20%에 일정기간 이상 옵저버를 승선시키고 있음

- 미국에서 읍저버를 승선시키는 근거법은 해양포유동물보호법, 1996년의 어업 보존관리법, 멸종위협업종법 등임
- 읍저버의 운영은 국립해양대기청 산하 수산연구소에서 자격증 부여, 교육 및 읍저버에 대한 총괄 운영계획을 담당하고 있고, 읍저버회사는 이들 자격있는 읍저버에 대한 인력관리를 담당하여 읍저버를 필요로 한 수산회사에 배정하고 있음. 수산회사는 읍저버 회사로부터 읍저버를 채용하여 어선 및 가공회사에 근무하게 하고 경비를 지불함
- 어선별로 읍저버를 승선시키는 기간이 다름(1,000톤 이상어선 ; 조업기간동안 항시 승선, 500톤~1,000톤 ; 조업기간30% 이상 승선, 전장 38.1m 이상의 통발어선을 제외한 어선 ; 조업기간동안 100% 승선, 킹크랩 지역에서 조업하는 트롤어선, 통발어선, 주낙어선 ; 100% 읍저버 승선, 브리스톨 만에서 조업어선 ;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트롤선은 100% 승선)
- 수산물 가공공장별 읍저버 입회는 1개월에 1,000톤 이상 어획물 처리 공장 ; 100% 입회, 500~1,000톤 미만은 30% 미만임
- 읍저버 승선 강제기간의 조정은 관할 관청은 어법, 어기, 어장, 어획 및 부수 어획 등이 크게 변경된 경우에는 읍저버를 승선시켜야 하는 기간을 조정하고, 읍저버를 승선시켜야 하는 어선의 어업자는 읍저버에게 양질의 무료 숙식제공, 안전 확보, 자료조사 및 자료 전송에 대하여 필요한 자원, 안전한 승선 및 어선 지원 등을 실시함
- 지역 관할청에서는 일정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에게 승인받은 읍저버의 승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어선은 읍저버를 승선시키지 않으면 어업활동을 할 수 없음. 선주는 자신의 책임으로 읍저버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수산자원과 어획량 조사 등 읍저버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되어 있음

나. 캐나다

- 캐나다에서는 1977년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면서 외국 어선에 대

하여 읍저버 제도를 도입하였고, 1980년부터 국내 어업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중요한 대부분 업종의 어선에 승선시키고 있음

- 읍저버제도 시행 비용은 국가와 수산업계가 분담하고 있음. 국가에서는 읍저버의 모집, 훈련 등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고, 읍저버의 임금 등은 수산업계에서 부담하고 있음. 즉, 대체로 전체 비용의 70%는 수산업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30%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음
- 읍저버가 수집한 어업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한 후, 어업 중지, 어장 폐쇄 및 고갈 위험 어종 지정 등을 결정함
- 일일, 주간 및 계절적 어획자료 등을 통합하여 어업관리에 관한 결정을 함. 저서어족에 대한 어업의 예를 들면, 일일 기준 유어와 부수어획 자료를 이용하여 어획물 중 유어 또는 부수어획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그 해당 어종에 대한 어장과 어업은 조업이 중지되며, 10일 이상 유어 또는 부수어획비율이 25% 이하로 지속되면 어업은 재개됨

다. 일본

-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읍저버의 승선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 일본은 어업자 조합을 중심으로 어업을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읍저버의 운용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어획량 조사를 위한 읍저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일본은 어획량 체크나 감시 감독업무 수행이 아닌 과학 읍저버를 지향하고 있음. 즉, 과학 읍저버는 자원관리와 자원회복을 위하여 공해 및 원양해역에서 과학지식을 기초로 한 자원조사와 평가관리를 위해 운용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어업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자원고갈의 위험이 있는 어종의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들 과학 읍저버는 과학 읍저버 육성체계 정비사업 계획에 의거하여 과학 읍저버를 모집하고 육성 및 등록업무를 하고 있음
 - 1997년 TAC제도 시행과 동시에 과학 읍저버제도 운영

- 양륙항 읍저버는 없으며, 약 30 명 정도의 과학 읍저버가 베링해(명태), 남태평양(참치 연승 및 선망)에서 활동하고 있음
- 이들 과학 읍저버는 해양 수산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장기간 해양수산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위주로 국가에서 선발하며, 과학 읍저버의 총괄은 수산청에서 담당하고 교육훈련은 원양수산연구소 및 수산관련 대학에서 실시하고, 과학 읍저버의 관리는 해양수산자원개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
- 과학 읍저버의 승선은 대개 1항차 혹은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3. 어업감시선을 이용한 직접 감시, 단속

가. 미국

- 미국의 해안경비대에서는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위하여 Ocean Guardian 을 수립하여 101가지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조업규칙에 적용하고 있음
- 효과적인 어업관리를 위하여 조업에 관한 충분한 업무지식을 숙지하고, 불법 조업에 대한 위험성과 처벌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 해안 경비대는 합리적인 시행이 가능한 관리 방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가 해양 대기처와 8개의 지역 어업관리 위원회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

나. 캐나다

- 캐나다에서도 해안경비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감시활동을 총괄하고 있음. 해안경비대의 임무 및 역할은 미국 해안경비대와 거의 유사함

다. EU

- 유럽의 공동어장에서도 어종의 70%가 남획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몇몇 어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완전히 고갈되었음
- 원인은 부적합한 쿼터시스템, 낮은 모니터링과 어업업자들의 관리규정의 불이행 그리고 부적합한 보조금의 지급에 있다고 보고 각국의 협의체를 마련키로 함

- 그러나 유럽연합은 각국의 영해 바깥 수역은 원칙적으로 공동조업구역이기 때문에 각 개별국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자국의 영해 내에서만 어업 감시선이 어업활동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어업활동 감시의 대부분은 VTS와 어획 양륙 및 유통을 추적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라. 일본

- 해상에서의 감시체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함, 즉, 농수산부 산하의 어업지도선을 중심으로, 각 도도부현 산하의 어업지도선이 어업감시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해상보안청 산하의 경비함도 불법어업의 감시에 동원되기도 함. 이러한 여러 기관의 어업감시선을 평상시에는 독자적으로 불법어업의 감시와 지도활동을 하지만 수산자원이 과도하게 어획되어 고갈될 우려가 있거나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는 우범 어장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하기도 함

4. 선체표식 및 어구 실명제

가. 미국

- 어업참여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어업에 종사하려는 모든 어선은 선체나 선수의 양 현에 당해 선박의 선명 및 허가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또한 감시선이나 감시 비행기에서 볼 수 있도록 노천갑판에도 허가 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고, 글자의 크기는 최소한 아라비아 숫자로 14인치를 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북동수역 어업관리위원회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려는 전장25ft (7.6m) 이상인 모든 어선은 선수 양현에 선명을 영구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가능하면 선미에도 선명을 표시토록 하고 있음
- 글자의 크기는 전장이 19.8m 이상인 어선은 최소한 18인치(45.7cm), 7.6m 이상인 어선은 10인치(25.4cm) 이상 되도록 해야 함
- 글자의 색상은 선체와 대비되는 색을 사용하여야 하고, 선명이나 허가번호는 항상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어구 등의 적재로 가려서는 안 되도록 하여야 함

- 북동수역에서 조업하려는 모든 어선의 소유하고 있는 통발의 부표 및 깃발에는 선명, 연방어업 허가번호 및 등록번호를 표기토록 하고, 글자의 크기는 최소한 높이 10.16 cm, 폭 1.27cm 이상 되도록 함

나. 캐나다

- 모든 어선에는 다른 선박이나 비행기 등에서 장애물 없이 잘 보이는 선수 양현에 선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으로 선박등록 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글자의 크기는 전장 5m 이하의 어선은 0.1m, 5~12m는 0.3m, 12~15m는 0.4m, 15~20m는 0.6m, 20~25m는 0.8m, 25m이상은 1.0m 이상이어야 하고 글자 폭은 글자크기의 $\frac{1}{2}$ 이상이어야 함
- 낚 그물류를 제외한 모든 어구에는 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명을 표기하도록 함. 이러한 표기는 부설 어구의 부이나 부표에 표기하여 항상 수면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글자의 크기는 75mm이상으로 외부에서 장애물에 가리지 않고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함
- 몬타리오주의 어업규칙을 살펴보면, 모든 상업적 어선에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고 있지 못하도록 함. 그리고 미끼를 사용하는 통발어업에서는 어업허가자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은 통발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그 외 자망, 주낙어업 등에서는 어구의 양 끝에 어업허가자의 이름이나 허가번호를 규격대로 표기한 부이나 부표 등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다. 일본

- 지정업자는 조업하려는 선박의 당해 허가에 따른 허가번호를 표시토록 함. 승인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승인 받은 어선의 선교 양측의 잘 보이는 곳에 법령에서 정한 규격으로 승인번호를 표시토록 함
- 대게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는 선교 주변에 적색 및 청색으로 각각 20cm 띠

를 표시토록 하고, 제1종 소형 참치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선교 주변에 황록색으로 폭 50cm 띠를 표시해야 함. 오징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선교 주변에 폭 30cm 띠를 표시해야 함

- 소라고동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선교에 황색 도장을 해야 하고, 선교 양측의 잘 보이는 곳에 법령에서 정한 양식으로 승인번호를 표시해야함
- 중형연어, 송어유자망 어업자는 그 부표에 당해 어업에 대한 허가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유자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또한 대게어업에 있어서도 그 부표에 허가번호를 명료하게 표시하지 않은 자망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제3절 각국의 육상 감시, 감독 체계

1. 어획량보고체계

가. 미국

- 선적 항구에서 연근해 어종과 다른 어획물을 양륙하려는 선박은 주 법률에 따라서 판매지점에서 양륙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
- 양륙증명서(Fish Ticket)는 총 양륙량을 산출하는 중요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에 대한 최대 지속적 어획국제규칙에서는 이 양륙증명서만 요구하고 추가로 다른 어획활동에 대한 보고는 요구하지 않음
- 어선활동보고(Vessel Activity Reports : VAR)는 매월 어선 활동에 대한 모든 기록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서양 청어어업에서는 어업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인은 조업활동 보고를 익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어선항차보고(Fishing Vessel Trip Reports : VTR)는 북동수역 어업관리위원회의 관할 수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 항차가 끝날 때마다 관할 관청에서 승인한 서식에 의해 어업활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은 선명, 허가번호, 승무원수, 어구 및 어구개수, 조업어장, 예망 회수, 평균예망시간, 어종별 어획량, 어종별 부수어획량 및 해상 투기량 등임
- 어선 항정보고 (Fishing Vessel Log Reports)는 연방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이 매월 어선의 항정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 자료는 어로일지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임
- 전자식 일지보고(Shoreside Processor Electronic Logbook Report : 2001. 12.31부터 시행) : 알래스카 어선으로부터 저서어종을 공급받는 가공업자는 NMFS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어획물의 공급 및 가공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한 전자식 가공일지를 작성하여 컴퓨터로 매일 보고 토록 함

나. 캐나다

- 캐나다에서는 어로일지(Logbook)를 수산자원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어획량과 노력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 자료는 수산자원과 어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본 자료를 활용되고 있음
 - 어로일지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양륙량 조사, 옹저버승선, VMS 설치 등에 의한 자료와 교차 체크하고 있음
- 일정량 이상의 어획물을 양륙하려는 어선의 선장은 입항 2시간 전에 양륙항과 양륙량을 어업감독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양륙지 모니터링(Dockside Monitoring)을 실시하고 있음
- 전자식 로그북은 감독 기관과 실시간 연결될 수 IT는 컴퓨터에 기록하는 로그북으로, 기록식보다 입력 방법이 간단하고 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없어 비용이 절감되므로 이 로그북과 VMS를 조합하여 운영하면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 부수어획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확대하고 있음

다. 호주

- 허가수역 : 허가수역으로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하기 전과 허가지역이나 어업중지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매주 수요일 및 허가지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양륙할 목적으로 입항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팩스를 통하여, 선명, 호출부호, 선박위치, 입출항 예정항구, 양륙예정어종 및 양륙예정량 등을 반드시 통보토록 함. 그리고 허가 수역에서 조업한 마지막 일자에는 승인된 양식으로 어획보고서를 작성토록 함
- 협정수역 : 협정을 체결한 태평양 각 도서 및 연안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할 경우에 각국들의 관할 수역으로 들어오거나 나오는 시간을 통보토록 하고, 계약국의 항구에 입항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함

- 그 외수역 : 어선이 경계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매 2일마다 어선위치를 보고토록 하고, 매 6일마다 어종별 어획량을 보고토록 함

라. 일본

- 어선 위치 등의 보고 : 지정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나 그 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방법을 고시로 정하거나, 어업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선 전신 또는 무선 전화로 어선의 위치를 보고하여야 함
- 어획성적서 등의 제출 : 지정어업자는 어장이나 어업에 따라 매월 사항을 (익월15일까지) 또는 매 항차별 (당해 항차 종료 후 일정기간 내) 어획성적 보고서나 사업성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어획량 조사체계

가. 미국, 캐나다

-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정확한 어획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육상에서 양륙 및 수산물에 대한 통계를 산정하기 위하여 어획물을 유통하거나 가공하려는 자는 어획물 유통 및 가공허가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몇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상세한 주간보고 : 연방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수산물 유통업자 및 가공업자는 자신이 거래한 수산물 유통내역을 관계기관이 승인한 형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주의 마지막 일로부터 16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함
- IVR 시스템(Interactive Voice Response) 에 의한 주간보고 : 대서양 청어 유통업자를 제외한 연방허가를 받은 유통 및 가공업자는 매주 화요일 정오까지 IVR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상세히 보고토록 하여야 함
- 연간보고 : 연방어업허가를 받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자는 자신의 수산물 연간 유통 및 가공내역을 익년도 2월 10일까지 보고토록 함

나. 호주

- 어로일지(Logbook) : 어업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수단으로 어업자들이 어업 활동에 대하여 직접 작성한 어로일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
- 어로일지는 어업활동을 마치고 귀항하면 즉시 어업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어로일지의 사본을 어업관리기관에 제출토록 함
- 일지의 기록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양륙량 보고자료, 어업감독관의 조사자료, 어획물 처리자료, VMS를 통한 어선 활동 자료등과 상호 비교함. 특히 중요한 어업에는 읍저버를 승선시켜 일지의 기록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함

3. TAC제도

- TAC제도의 지도, 단속 체계에 대한 연구는 TAC 시행에 따라 사전 방지형 시스템과 사후 처벌형 시스템으로 나뉨
- 사전 방지형(Preventative) 지도, 단속체계는 어업관리계획과 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와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둔 방법임, 이 시스템은 각종 어업 법규에 대해서 어업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와 순응을 유도함
- 사후 적발형(Deterrent) 지도, 단속체계는 검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하고, 그 발생원인과 결과의 규명을 통하여 적절한 처벌을 중심으로 어업인이 각종 규제에 순응토록 함

가. 미국

- 해양경비대에 의한 순찰은 해양 감시, 감독과 항공감시로 구별하며, 대형 경비정은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수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상시 지도, 단속을 수행함

- 해양경비대에 의해 수행되는 해양감시, 감독은 어획, 어구, 가공과 자료요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줌. 그러나 이 방식은 승선 읍저버처럼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승선 읍저버, 항공순찰과 병행하여 해양 감시,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어업관리의 지도, 단속의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어업자의 순응에 대한 육상 지도, 단속활동에는 양륙지 모니터링과 1차구매자(거래업자, 가공업자)에 대한 검사, 감사, 수사방법이 있음
- 양륙항 감시는 어종, 양륙량과 어획물의 체장에 대한 조사가 해상보다 용이하고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 수산물 거래업자의 기록을 검토하는 방식에는 회계감사가 있음. 이 방식은 양륙자료, 할당량 소진표찰이 판매, 저장, 운송영수증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함

나. 캐나다

- 캐나다의 어업관리 지도, 단속의 수단으로는 양륙항 감시, 항공감시, 해상감시, 읍저버 적용, 위성추적, 레이더셋 등이 있으며, 해양수산부 산하 5개 어업 지역으로 나누어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중에서 먼저 캐나다의 양륙항 감시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업인의 양륙항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독립적이고 제 3차에 의해 입증 가능한 자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다. 일본

- 일본은 크게 3가지 형태의 어업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우선 어업법과 수산자원보호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한 전통적 어업관리 제도,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대두 이후 연근해 어업자를 중심으로 한 법률적 강제를 벗어난 자율적 어업관리 자원 관리형 어업과 마지막으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TAC법)에 근거하여 최근 시행된 TAC제도가 있음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TAC법에 따라 농림수산부의 기본 계획과 도도부현의 계획에 의거하여, 그 대상 수역과 대상자원의 선정, 총 어획량의 결정과 배분, 관리가 이루어짐
- 이러한 공적 관리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어업자 상호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어업자 스스로 이를 준수하게 하는 자주적 관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TAC 대상 어종의 채포 수량등 정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일본의 어업에 대한 감시, 감독은 기본적으로 해상보안청 및 어업법 규정에 따라 어업감독공무원의 단속과 지도로 구분됨

라.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어업관리는 기본적으로 개별양도성 할당량(ITQ)을 중심으로 한 TAC 제도임, 이에 필요한 문서로써 다양한 유형의 어획, 양륙보고서, 할당량 관리보고서 이외에 면허를 가진 수산물 매입자의 보고서가 있고, 할당량 허가는 어종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300명의 허가권 소유주가 있음
- 양륙시점에서부터 양륙량에 대한 물리적 모니터링에 대한 대안으로써 생산자에서부터 거래업자에 이르기까지 어획물의 흐름과 관련된 문서와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는 어획물 유통에 대한 문서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뉴질랜드의 육상감시, 감독은 어획량과 양륙량의 일치, 보고량과 수집상에 의한 구매량 및 가공업자 등으로 가는 물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음
- 뉴질랜드에서 어업관리를 감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3개 기관으로 수산관, 명예 수산관과 경찰이 있으며, 수산관은 수산부 직원으로 감시, 감독의 주된 임무를 수행하고 광범위한 사법권도 갖고 있음. 명예수산관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주로 유어어업에서의 규정을 집행하고 있으며, 경찰도 수산관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만 관여하고 있음

마. 노르웨이

- 노르웨이의 어업관리에 관한 MCS 수단은 면허와 허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과거의 규제가 없는 자유어업에서 개별어선에 Quota를 할당하는 IVQ 제도로 발전하였음
- 노르웨이의 어업관리의 규제수단으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 기술적 규제로서 어선의 면허와 어업자의 등록 그리고 금어기를 설정함으로써 어업활동에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장치, 둘째, 어획량 규제로서 그룹 할당량, 최대 할당량, 어획 방지 등의 규제수단, 셋째, 구조적 규제로서 단위 할당량제도와 어선감척제도로 규제하는 수단이 있음
- 노르웨이의 면허와 허가제도를 바탕으로 IVQ제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관리 어종의 결정 및 국가 별 TAC 설정을 위해 다자간 어업협정의 체결, 자국에 할당된 쿼터의 범위 내에서 어종 별 어획쿼터의 결정을 하며, 노르웨이 어업상황에 적합한 개별 할당량제도의 도입, 어획물 보고체계를 갖추고 2003년에 면허 및 허가 등록에 관한 지역 네트워크의 모델을 확립하였음
- 이 모델은 지정된 12개 지역 수산 사무소에 취합된 정보들을 베르겐 수산청에서 통합 보고토록 함. 지역 수산 사무소는 개별 어업자들의 정보를 DB화하여 수산청에 보고하고, 해양경찰청은 이 DB화된 통합정보를 공유토록 함
- 수산청은 국가 쿼터 할당량을 우선할당 그룹 I, 우선할당 그룹 II, 우선할당 그룹 III으로 나누어 관리, 통제함. 판매조직은 세부적인 어선의 쿼터할당량을 관리하고 조정함
- 어업규제는 수산청, 해양경찰청, 판매조직 등 3개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수산청은 수산부의 하부 조직으로서 어업관리의 기술, 제도적인 측면에서 감시·감독을 수행하며, 그 수단으로서 양륙된 어획물에 대한 판매보고서, 조업일지를 점검하는 임무가 있음

- 다음으로 해양경찰청은 조업 중 일어날 수 있는 해상 투기를 정기검사를 통해 감시감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판매조직은 어선에 대한 양륙보고서를 보관, 점검하며 수산업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규제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노르웨이 모니터링시스템에는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과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이용한 전자교신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음. 이런 시스템을 통해 어선의 활동정보가 실시간으로 추적되며 이들 활동정보는 기지국에서 통합됨. 해양경찰청과 각 나라의 모니터링 부서는 통합된 정보를 통해 조업 중인 정보를 감시·감독함
- 노르웨이 어업은 모든 규제자원에 대해 어선 또는 단체 간의 TAC의 공유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규제자원에 대한 어업은 기본적으로 TAC를 어선 단체에 할당하는 단체 할당량을 통해 배분되고 있으며, 이후 단체 할당량은 개별 선박별 할당 또는 최대한도 할당에 의해 개인 또는 개별 어선에 할당됨
- 어업법규는 해상과 육상에서 3개 조직에 의해 동시에 집행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양경비대가 감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선 검열과 조업일지의 기입내용과 실제 어획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점검, 망목, 최소체장 이하의 비율 등을 점검함
- 어업관리 이사회와 판매조직은 육상에서의 감시·감독 활동을 수행함. 어획물이 양륙될 때 어획물을 구매하는 판매조직은 양륙량에 대한 어업통계를 유지할 책임을 갖고 있는 어업관리이사회에 보고함. 판매조직은 어업자에 의해 소유, 운영되고 있으며, 공개경매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소규모 어항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수천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판매조직에 대한 권한부여는 수산물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들 판매조직은 어선별 할당량이 초과되는지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어선별 할당량에 대한 행정업무를 하면서 초과어획에 대한 벌금을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판매 조직에서는 할당량에 대한 서면 및 실제 양륙량 점검을 실시하고 양륙지 및 가공공장에 조사반을 파견하여 자료를 수집함. 이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는 여러 수산 기구에 다시 통계자료로 제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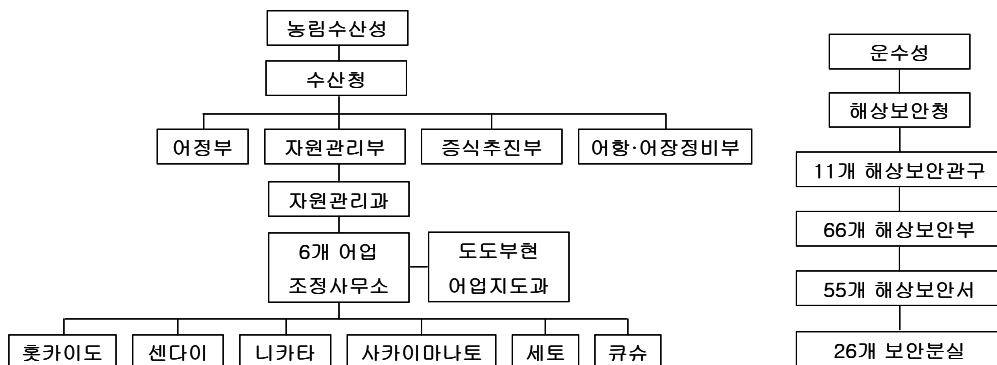
- 어업관리 이사회에서는 어획량 소진 및 어업보호의 이유에서 제한된 지역에서 특정어업을 중단시킬 권한을 갖고 있음
- 해양경비대는 해상에서 실제 어획량을 점검하고 조업일지와의 어획량이 상이할 경우, 어업법 위반으로 선장 또는 선주에 대한 조치가 취해짐

제4절 소결

1. 각국의 어선 감시, 감독 시스템

가. 일본

- 일본의 지도·단속 업무는 농림수산성과 해상보안청에서 수행하고 있음. 농림수산성은 산하에 수산청을 두고 5개 부 중에서 자원관리부에서 담당하며, 중앙에 자원관리과와 지방에 어업조정사무소의 어업감독관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있음. 그리고 해상보안청은 전국을 11개의 관리구역(이하 관구)로 나누어 관구 해상보안부를 설치하고 있음
 - 어업조정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력현황, 어선 입출항관리, 어선 VMS설치, 읍저버 승선, 어선표지설치 등 어업지도·단속을 위한 사전 사후조치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음
 - 해상보안청의 임무는 경비, 해양사고 구조, 해양정보, 교통업무가 있고, 경비 업무 중에 불법어업단속이 포함되어 있음. 경비업무 등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해상보안관은 해상보안법, 형사소송법에 의해 특별 경찰직원으로 규정되고 있음



<그림 5-4> 일본의 어업지도·단속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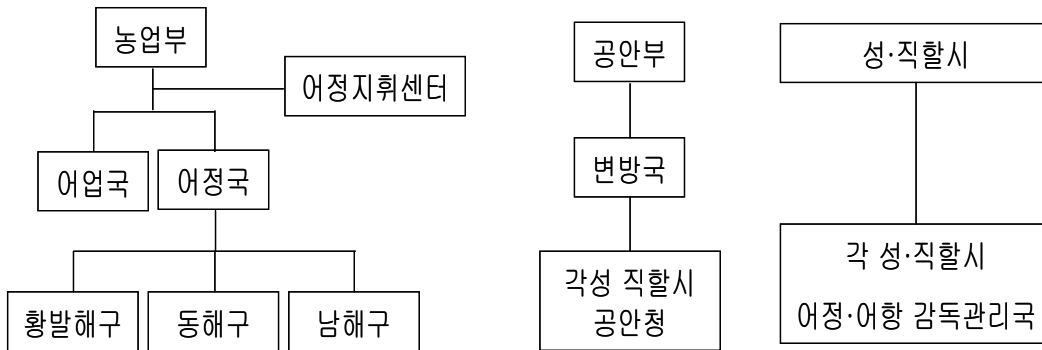
- 지도·단속 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해상보안청에서는 순시정과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수산청은 어업지도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도도부현은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해상보안청	수산청	도도부현
순시정 및 항공기	어업단속선	어업지도선

<그림 5-5> 일본의 기관별 지도·단속 장비 현황

나. 중국

- 중국은 농업부, 공안부, 각 성·직할시 등 어정어항감독 관리기관으로 농업부 산하 어업국과 어정국, 농림부 직속기관으로 어정지휘센터가 있음
 - 어업국은 전국의 수산업을 관리하며, 3개의 해구어정국은 황발해구, 동해구, 남해구로 분리하여 어정업무를 수행
 - 지방 어정 어항 감독 관리국은 중국 해안지역의 어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 5-6> 중국 어업지도·단속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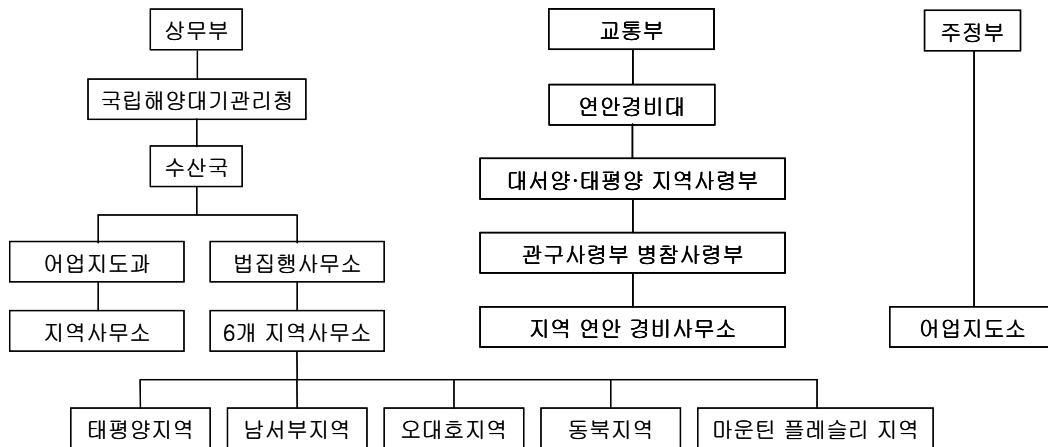
- 어정지휘센터는 주요 위반사항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 해구의 어정국에서는 어선 감시·감독을, 각 성·직할시 공안청은 국경 주변 해상 감시, 성·직할시 어정 어항 감독 관리국에서는 연안 해역을 감시·감독하는 등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 있음

어정지휘센터	어정국(각 해구)	각 성·직할시 공안청	성·직할시 어정·어항 감독관리국
주요 위반사항	어선감시·감독	국경 주변 해상감시·단속권	연안 해역 감시감독

<그림 5-7> 중국의 기관별 업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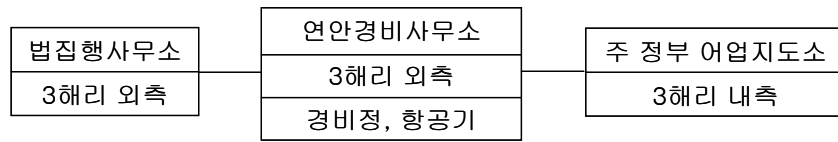
다. 미국

- 미국은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관리청 소속 수산국과 교통부 산하 연안경비대, 주정부 산하 어업지도소를 두고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내수면어업은 내무부, 양식어업은 농무부, 어선등록, 지도·단속은 연안경비대에서 담당
 - 연안경비대의 경우, 어업지도·단속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 구분은 어렵고, 지도·단속과에서 담당
 - 지방에 지역 연안경비사무소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그림 5-8> 미국의 어업지도·단속 기관 현황

- 육지로부터 3해리 외측은 중앙정부인 수산청과 연안경비대가 담당하고 있고, 내측은 주 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음
 - 수산청 어업지도·단속부서에서 지방사무소별 지도계획을 수립, 시달
 - 지방연안경비대의 장비(선박,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산청 지도·감독 공무원이 실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
 - 연안경비대의 요원은 선박의 운항 및 어업지도·단속에 협조하는 체제이나, 연안경비 요원에게도 지도·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단독 지도·단속 실시



<그림 5-9> 미국의 기관별 담당구역 현황

2. 주요 국가 지도·단속 제도 비교

가. VMS

- 각 국의 VMS 제도를 정리해 보면, 미국·캐나다는 자원고갈의 위험이 있는 어종이나 서식지 어장의 모든 어선에 대해서 VMS를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EU는 어업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회원국 간 어업정보를 공유하고 각국 연안수역과 공동수역을 이동하는 어선 추적을 위하여 전장15m 이상 모든 선박에 설치하고 있음. 일본은 아직 VMS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각 어선마다 유사시 대비한 자체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모든 어선에 VMS가 설치되어 있고, 해안경비대에에서 모든 어선을 감시·감독하고 있으며, 선박 VMS와 인공위성을 이용한 VMS가 있음

<표 5-5> 주요 국가별 VMS 실시 현황

구분	내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고갈의 위험이 있는 어종이나 서식지 어장의 모든 어선 • 최근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에 설치를 의무화함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정보시스템운영으로 회원국 간 어업정보공유 • 2002년 공동수신정책에 의거 공동조업구역 조업구명 감시·감독 실시 • 전장15m이상 모든 선박에 설치 • 각국 연안수역과 공동수역을 이동하는 어선 추적에 주 목적이 있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MS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임 • 각 어선마다 유사시 대비한 자체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VMS와 인공위성을 이용한 VMS가 있음 • 모든 어선에 VMS설치 • 해안경비대에 의해 모든 어선 감시감독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정보시스템(어획량, 어획노력량, 어선항차 등)

나. 읍저버

- 각 국의 읍저버 제도를 정리해 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1970년대 주로 외국 어선에 승선시켰으나 1980년대부터 국내어선에 승선 시키고 있고, 전체 어선의 20%에 승선하고 있음. 일본은 1997년 TAC제도 시행과 함께 운영된 이래로 감시·감독보다는 자원보호, 생태계 분석 등을 위한 과학 읍저버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EEZ수역 및 공해, 자원관리 보호지역에 중점 운용할 계획이며, 읍저버 총괄은 수산청 교육은 수산자원개발 센터가 담당하고 있음

<표 5-6> 주요 국가별 읍저버 제도 실시 현황

구분	내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주로 외국 어선에 승선시켰으나 1980년대부터 국내어선에 승선시킴 • 전체 어선의 20%에 승선 □ 어선 • 어선크기별로 승선기간이 다르게 운영 - 1,000톤 이상 : 상시 - 500~1,000톤 : 기간의 30% • 읍저버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약 500명의 읍저버가 활동하고 있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감독보다는 자원보호, 생태계 분석 등을 위한 과학 읍저버를 운용 • 향후 EEZ수역 및 공해, 자원관리 보호지역에 중점 운용 • 1997년 TAC제도 시행과 함께 동시운영 • 읍저버 총괄은 수산청 교육은 수산자원개발 센터가 담당 • 현재 30명운영
노르웨이	-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저버 임무: 어획노력량, 어획량, 부수어획물, 어획물의 선상폐기물, 어로일지, 어선위치, 선장·선원인터뷰

다. 양륙항 읍저버

- 각 국의 양륙항 읍저버 제도를 정리해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1,000톤 이상은 상시 감독하고 있고, EU는 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정부에서 공인하는 읍저버를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양륙항 읍저버가 없음. 노르웨이는 수산물거래에 대해 어업관리 이사회와 판매조직에서 공동으로 감시·감독하고 있고, 전장 27.5m이상 어선에 조업일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표 5-7> 주요 국가별 양륙항 읍저버 실시 현황

구 분	내용
미국·캐나다	•수산물 가공공장 : 1,000톤 이상 - 상시 / 500~1,000톤 - 가공기간의 30%
EU	•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정부에서 공인하는 읍저버를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
일본	•양륙항읍저버는 없음
노르웨이	•수산물거래에 대해 어업관리 이사회와 판매조직에서 공동감시감독 •전장 27.5m이상 어선에 조업일지 의무화
비고	•양륙항 보고서와 수산물 거래일지, 가공일지를 교차 확인

라. 어획량조사체계

- 각 국의 어획량 조사체계를 정리해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어획물 유통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 및 유통가공 실시 후 그 내역을 16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고, 대서양 청어 유통 업자를 제외한 모든 거래 수산물 내역을 매주 보고하도록 하는 IVR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자가 자신의 연간 수산물 유통 및 가공 내역을 익년 2월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연간 보고를 실시하고 있음. EU는 생산이력 시스템에 의거하여 각 국가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자율 관리 제도를 지향하여 어선 스스로 정하도록 권장하고,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현황을 체크하고 조업일지를 감독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노르웨이는 판매조직이 조사하여 어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표 5-8> 주요 국가별 어획량 조사체계 현황

구 분	내용
미국·캐나다	•어획물 유통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 및 유통가공 내역을 실시 후 16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함 •IVR시스템 : 대서양 청어 유통 업자를 제외한 모든 거래 수산물 내역을 매주 보고토록 함 •연간보고 :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자는 자신의 연간 수산물 유통 및 가공 내역을 익년 2월 10일까지 보고토록 함
일본	•자율 관리 제도를 지향하여 어선 스스로 정하도록 권장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현황, 조업일지 감독
노르웨이	•판매조직에 의해 조사되어 어업위원회에 보고됨

마. TAC제도

- 각 국의 TAC 제도를 정리해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읍저버의 승선감시와 해양 경비대의 해양 및 항공순찰 감시, 수산물 유통업체의 거래일지 및 회계 감사로 운용되고 있고, EU는 공동수산정책에 의거하여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하고, 어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음. 일본은 EEZ 문제 대두 이후 법률적 강제보다는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TAC대상 어종의 채포 및 수량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노르웨이는 어선단체별로 할당하여 개별 선박으로 할당하고 있음

<표 5-9> 주요 국가별 어획량 조사체계 현황

구 분	내 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저버의 승선감시 • 해양경비대-해양 및 항공순찰 감시 • 수산물 유통업체의 거래일지 및 회계 감사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수산정책에 의거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 • 어업정보시스템에서 통합관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EZ 문제 대두 이후 법률적 강제보다는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해 추진함 • TAC대상 어종의 채포 및 수량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단체별로 할당하여 개별 선박으로 할당함

바. 양륙항제도

- 각 국의 양륙항 제도를 정리해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양륙량 보고와 어획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정장소가 있고, EU는 수산물 매매를 위해 각국별로 결정하고 있고, 일본은 어정사무소의 통제 하에 양륙항에서 양륙량의 보고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양륙보고서와 판매 보고서와 상호 교차 확인제도 유지함

<표 5-10> 주요 국가별 어획량 조사체계 현황

구 분	내 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륙량 보고와 어획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정장소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매매를 위해 각국별로 결정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륙항에서 양륙량의 보고 및 감독(어정사무소)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륙보고서와 판매 보고서와 상호 교차 확인제도 유지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를 위한 육상감시감독 운영, 어획물 거래 및 가공과 직접 연계

사. 어업감시선

- 각 국의 어업감시선 제도를 정리해보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해양경비대는 Ocean Guardian에 101가지 권고사항을 조업규칙에 적용하고 있고, OLE와 8개 지역 어업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음. EU는 공동감시선을 운영하지 않고 VIS와 어획 양륙 및 유통보고서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양륙 지정항 제도를 실시하고 감독 공무원이 양륙량을 확인함. 일본은 수산국 산하 어업지도선 및 해상보안청 경비함이 있고, 노르웨이는 해양경비대가 감시·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표 5-11> 주요 국가별 어획량 조사체계 현황

구 분	내 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비대는 Ocean Guardian에 101가지 권고사항을 조업규칙에 적용 • OLE와 8개 지역 어업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감시선을 운영하지 않고 VIS와 어획 양륙 및 유통보고서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사용 • 각 회원국의 양륙지정항 제도를 실시하고 감독 공무원이 양륙량 확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국 산하 어업지도선 및 해상보안청 경비함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비대가 감시·감독

아. 선체표시 및 어구 실명제

- 각 국의 선체표시 및 어구 실명제 실시 현황을 정리해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모든 어선 내 선체에 선명 및 허가 번호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시선이 나 항공기에서도 식별하도록 갑판에도 허가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자원보호구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깃발 및 어구에 허가번호를 표시하도록 함. EU는 회원국 각국별로 시행하며, 특히 공동조업구역에서는 필히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규정에 따라 어선명, 허가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노르웨이는 모든 어선에 선명,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표 5-12> 주요 국가별 선체표시 및 어구실명제 실시 현황

구 분	내 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종사 모든 어선 내 선체에 선명 및 허가 번호를 표시토록 의무화 함 •감시선이나 항공기에서도 식별하도록 갑판에도 허가번호를 기재토록함 •자원보호구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깃발 및 어구에 허가번호를 표시토록 함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국 각국 별로 시행하며 특히 공동조업구역에서는 필히 사용토록 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에 따라 어선명, 허가번호를 표시토록 함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어선에 선명, 등록번호를 표시토록 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 조업구역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기도 함

자. 어획량 보고

- 각 국의 선체표시 및 어구 실명제 실시 현황을 정리해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어획물을 양륙할 때 양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월 어선활동 보고 의무인 어선활동보고와 어선의 향차가 끝날 때 마다 보고하는 어선향차 보고, 전자식 일지 보고인 어선항정 보고가 있음. EU는 생산이력시스템에 의거 어업일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일본은 어선위치 보고 및 어획 성적서를 어정사무소 감독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모든 어선에 개별 할당 어획량에 대한 어업보고서를 어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어획량보고, 양륙보고, 수산물 유통 및 가공보고 등 세 개의 보고서를 교차 확인함

<표 5-13> 주요 국가별 선체표시 및 어구실명제 실시 현황

구 분	내 용
미국·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획물을 양륙할 시 양륙증명서 제출 •어선활동보고 : 매월 어선활동 보고 의무 •어선향차보고 : 어선의 향차가 끝날 때 마다 보고 •어선항정보고 : 전자식 일지 보고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이력시스템에 의거 어업일지에 구체적으로 명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위치보고 및 어획 성적서를 어정사무소 감독관에 제출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어선에 개별 할당 어획량에 대한 어업보고서를 어업위원회에 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어획량보고, 양륙보고, 수산물 유통 및 가공보고 등 3 보고서를 교차 확인함

3. 각국의 MCS 제도상의 특징

가. 미국

1) 감시감독기구

- 수산업 감시감독은 해양대기청 산하 범 집행 사무소(OLE)에서 담당하고 연안 경비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 감시감독의 주요 사항은 자원고갈을 예방하기 위한 어종보호와 환경보존관리(해양투기물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2) 지역 어업관리위원회

- 효과적인 감시감독과 어업관리를 위하여 전국을 8개 지역별로 구분하여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 및 관리법에 의해 지역 어업관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지역 내에 어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은 수산국에 의해 시행됨. 위원회는 각 지역 어업환경을 고려하여 관리 대상 어종에 대한 자원평가는 매년 실시하여 남획되는 어종에 대해서는 자원회복 계획(구역진입제한, 면허제, 어기설정, 해양 보호 구역 설정, 할당제, 어구제한)을 수립하여 이를 수산국에 보고하여 집행토록 함

3) 규제순응(compliance)

- 어업인에게 가하는 각종 규제 및 MCS 사항에 대하여 자발적인 순응을 얻기 위해 행정력의 중점을 두고 있음. 규제에 대한 순응을 얻어내는 것이 감시감독에 의한 처벌보다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어업자원의 보호 및 환경보호에 대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임
- 어업인으로부터 자발적 순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규제조치에 대한 합당성(Legitimacy), 투명성(Transparency), 공정성(Justice)이 어업인에게 충분히 인식되도록 하여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

나. 일본

1) 감시감독

- 어업지도·단속 업무는 수산청 산하 어업조정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상보안청 및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과 긴밀한 협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어업조정사무소의 어업감독관은 필요시 선장 또는 어선의 운영자들에게 조업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음. 그들은 위반이 의심스러운 어선에 대해 선상검열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불법어로활동을 방지할 수 있음

2) 자원관리형 어업

- 일본은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대두 이후 연근해어업에 대해 법률적 강제가 아닌 자율적 자원관리형어업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음
- 최근 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TAC법)에 근거하여 TAC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 수역과 대상 자원의 선정, 총 어획량의 결정과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일방적인 결정, 통보보다는 어업인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의사결정을 배려하고 있음
- TAC 법은 공적관리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어업자 상호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어업자 스스로 이를 준수하게 하는 자율적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정 제도는 어업자 자주적 관리라는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효과를 높이려는 일본식 TAC를 운영하고 있음

3) 과학 읍저버

- 일본은 읍저버 제도를 감시감독 보다는 기초과학지식을 가지고 어족자원의 보호와 환경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자원평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 읍저버 제도를 199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음

다. EU

1) 수산통제기구

- 어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2년 말 공동 수산정책(Common Fisheries Policy)을 개정하여 공동체 차원의 수산통제기구(Community Fisheries Control Agency, CFCA)를 신설하여 수산정책의 집행에 있어 회원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체 차원에서의 수산정책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능을 확립하고자 했음

2) 수산물생산이력제도

- 각 회원국은 회원국 어획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항 제도 및 양륙량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매매보고를 각 회원국 수산감독 공무원을 파견하여 감독하고 있음

3) 어업정보시스템

- 할당제도를 바탕으로 어업을 관리하는 각 회원국이 각 어선별 할당량 관리 소진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전산화된 데이터 베이스 운영을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규칙에 의해 제도화 하고, 이를 위해 각국의 어업 자료의 교차확인이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통합관리하는 어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라. 기타 국가

1) 뉴질랜드

- 수산자원관리에 중점을 두어 1991년 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생산량 관리제도(Quota Management System, QMS)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 집행 팀에서는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 쿼터량은 수산부에서 위임하는 어업위원회에서 결정함
- 불법어업은 정부의 직접 단속보다는 유통단계별 신고시스템으로 감시토록 하여 불법어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2) 노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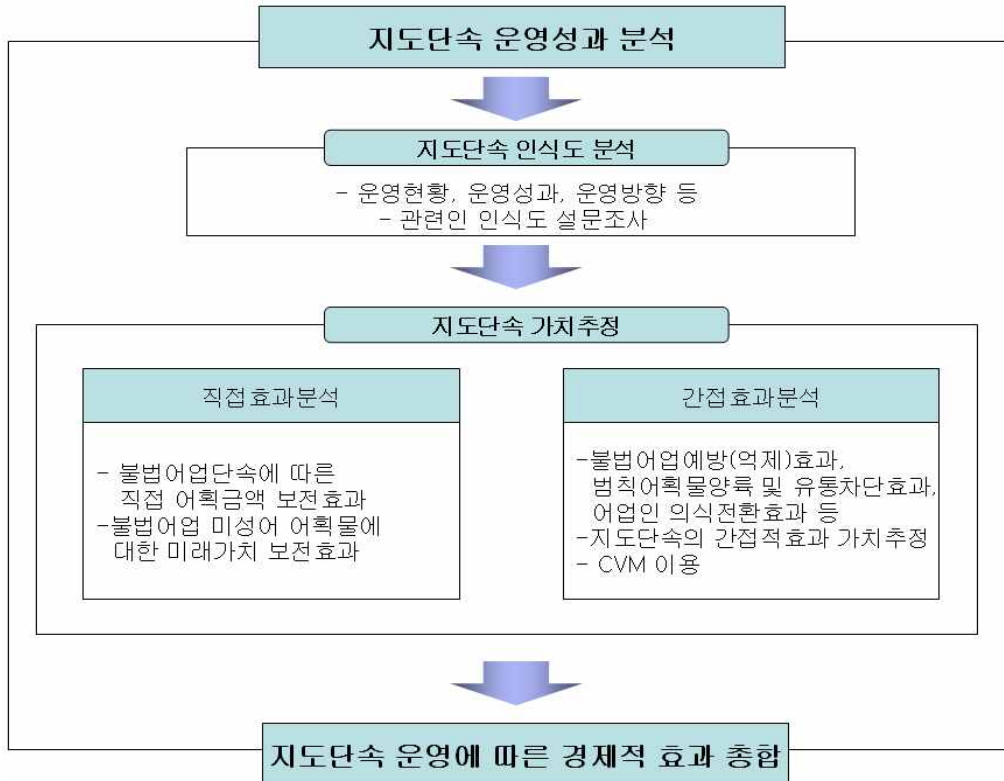
- 노르웨이 어업규제는 수산청에서 각 지역별로 위임한 어업관리위원회, 해양경찰청, 판매조직 등 3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중 해양경찰청을 제외한 어업관리위원회별 판매조직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해상 감시는 해양경찰청, 육상은 판매조직이 주도하고 있고 어업관리위원회는 이들 조직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수산부에 보고함

<표 5-14> 국내의 사례분석 시사점

국가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법적용과 감시수단의 협동관리체제 구축 •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순응 유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감독관은 조업금지 명령권 가짐 • 자율적 자원 관리형 어업에 중점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생산이력제도 시행 • 어업정보시스템 운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Monitoring 체제의 개선 필요 • 어업집행 예산확대 필요

제6장 어업지도·단속 운영성과 분석

- 본 장의 어업지도·단속 운영성과 분석은 크게 지도·단속 인식도 분석과, 직접 효과 및 간접효과를 포함한 지도·단속의 경제적 가치추정으로 구성되었음



<그림 6-1> 어업지도·단속 운영성과분석 연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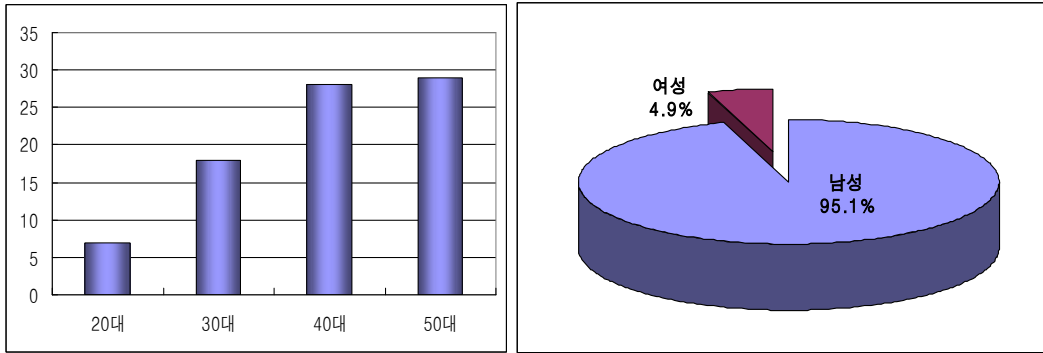
- 지도·단속 인식도 분석은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과 실제 지도·단속 업무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인 어업인, 해양수산부분 연구자를 대상으로 운영상황, 운영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함
- 지도·단속의 경제적 가치추정은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직접 어획금액 보전 효과와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의 직접효과를 통계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하였으며, 불법어업 예방(억제)효과, 범칙어획물 양륙 및 유통차단효과, 안전지도 및 어업인 의식전환효과 등과 같은 간접효과는 설문을 통한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분석 기법을 통하여 추정을 하였음

제1절 지도·단속 운영인식도 분석

- 지도·단속 인식도 분석은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과 실제 지도·단속업무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인 어업인, 해양수산부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설문을 이용하여 조사를 하였음
- 설문은 지도·단속의 정책성과 및 방향 인식도조사 및 업무영역에 대한 인식도 조사, 조직에 대한 인식 및 최근 지도·단속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었음
- 총 수집된 표본 수 중 일관성 및 결측 데이터가 있는 2개를 제외하고 82개의 유효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계와 연구원을 포함한 연구그룹이 19명,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및 지자체 지도·단속공무원의 관련공무원그룹이 35명, 어업인 그룹이 28명으로 나타났음
- 설문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연령별로는 50대가 29명 35.4%로 가장 높으며,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어업인 및 학계에서 높은 연령대를 나타내는 것을 반영하며, 성별구성은 남성이 78명 95.1%를 차지함

<표 6-1> 운영인식도 조사표본 인구통계학적 분석

연령별 구성			성별 구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20대	7	8.5%	남성	78	95.1%
30대	18	22.0%			
40대	28	34.1%	여성	4	4.9%
50대	29	35.4%			
총계	82	100	총계	8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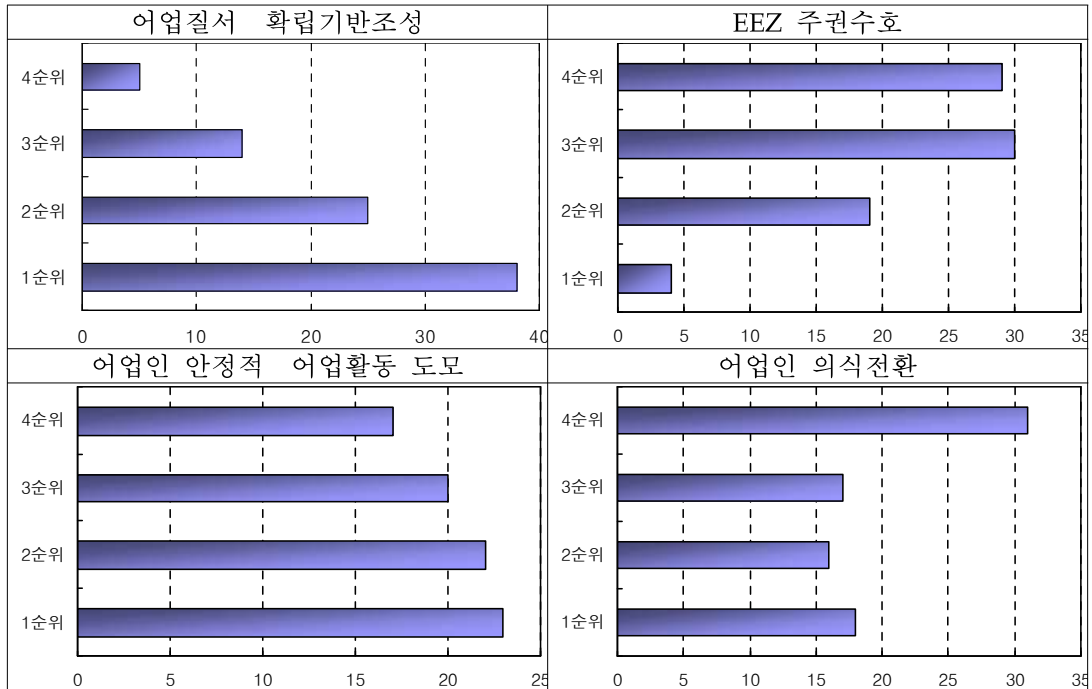


<그림 6-2> 운영인식도 조사표본 인구통계학적 분석

1. 정책성과

가. 지도·단속의 정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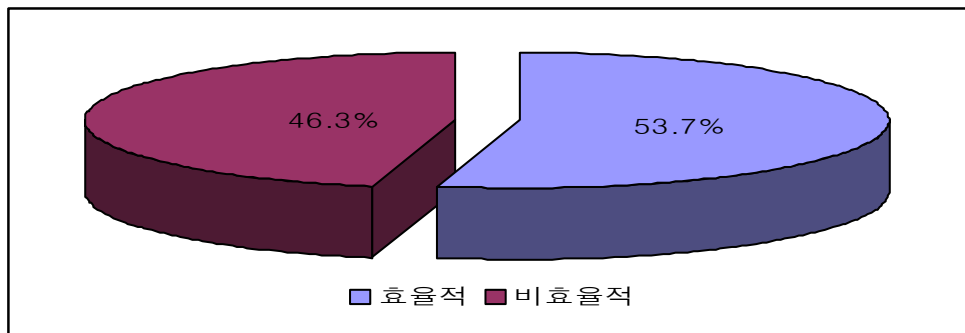
- 지도·단속의 정책성과 중 어떤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어업질서 확립기반조성, EEZ주권수호, 어업인 안정적 조업활동 도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어업인 의식전환 등의 주요 효과를 대상으로 순위분석을 한 결과 1순위는 어업질서확립 기반조성 → 어업인 안정적 어업활동도모 → 어업인 의식전환 → EEZ 주권수호 순으로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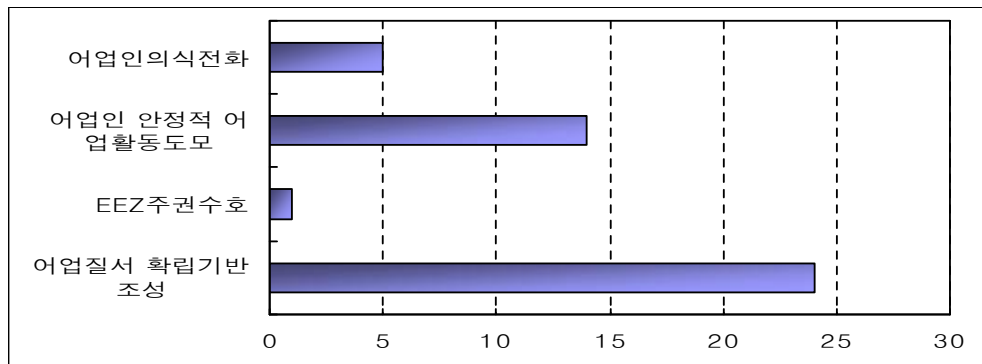
<그림 6-3> 지도·단속 정책성과분석 결과

나. 지도·단속의 수행효율

- 지도·단속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명으로 53.7%로 나타났으며, 효율적 측면이 나타나는 효과는 정부의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 기반조성의 측면이 가장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6-4>지도·단속 수행효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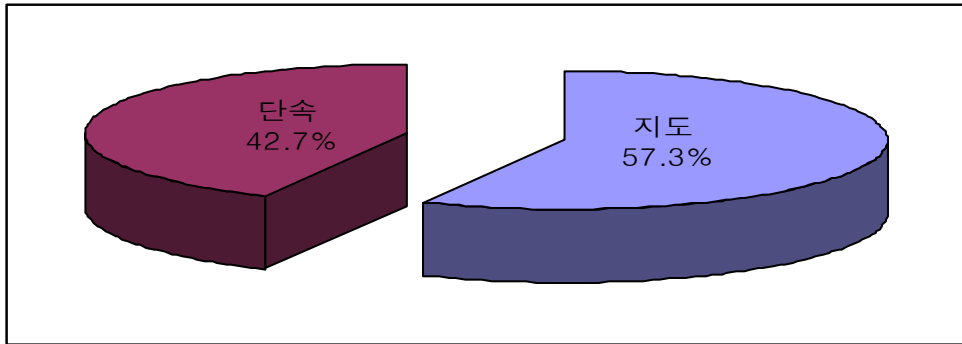


<그림 6-5>지도·단속 수행효율 측면

2. 업무관련 인식

가. 지도업무와 단속업무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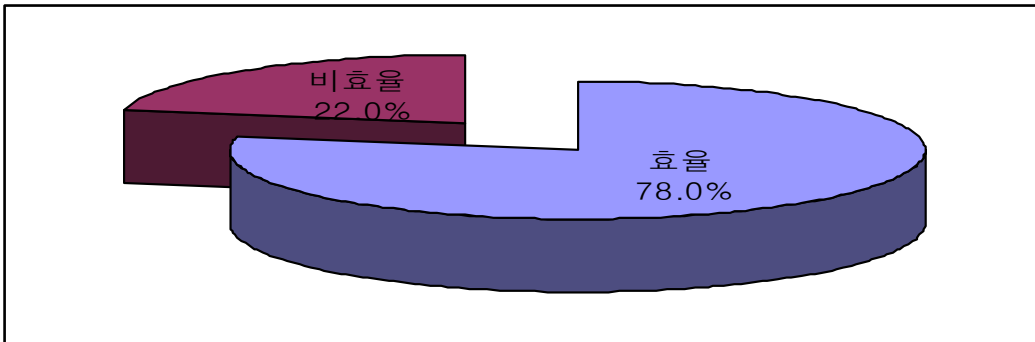
- 지도업무와 단속업무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도업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명, 57.3%로 나타났으며, 단속업무는 35명, 42.7%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업무보다는 교육 및 의식전환과 같은 예방적조치인 지도업무에 대하여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6> 지도업무와 단속업무의 업무중요도 비교

나. 경제적 제재조치 운영

- 어업지도·단속에 있어서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중단, 영어자금의 회수와 같은 경제적 제재조치의 운영은 효율적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64건, 78.0%로 분석되었음.



<그림 6-7> 경제적 제재조치의 운영 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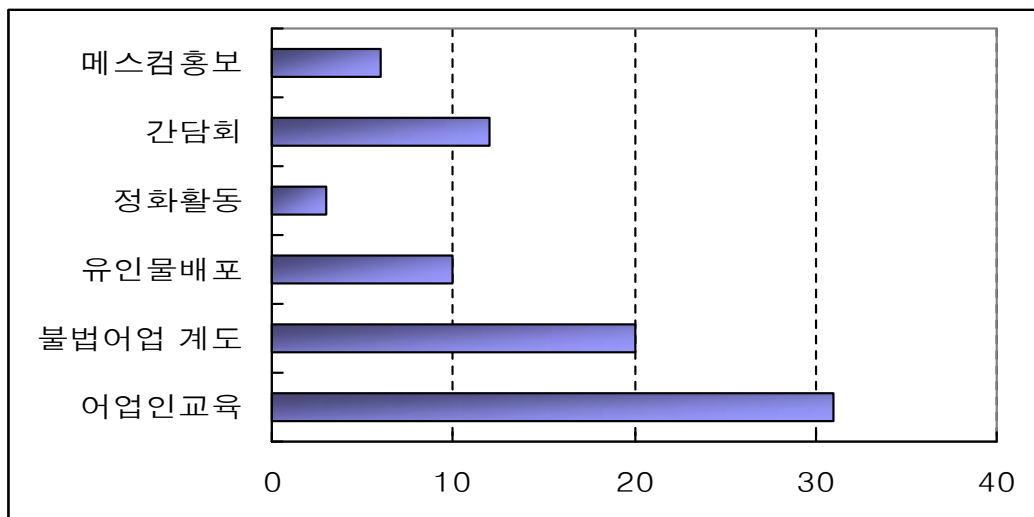
- 또한, 경제적 제재조치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중단이 51명 79.7%으로 영어자금회수나 생산지원자금 지원중단보다 더욱 효율적일 것인 것으로 응답하였음
- 경제적 제재조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즉각적인 제재조치 미흡 및 어업인의 제재조치 미인식이 큰 이유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다. 어업인 의식전환 방법

- 지도업무 중 어업인의 의식전환 및 예방적조치에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되는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어업인교육,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유인물 제작 및 배포, 항포구 정화활동, 간담회 개최, TV 및 신문 홍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음. 가장 효율적이라 여기는 수단으로는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31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어업인간담회 순으로 분석되었음

<표 6-2> 지도업무 수단효율성

구분	빈도수(명)	비율(%)
어업인 교육	31	37.80
불법어업 계도	20	24.39
유인물배포	10	12.19
정화활동	3	3.66
간담회	12	14.63
메스컴 홍보	6	7.32
합계	82	100



<그림 6-8> 지도업무 수단효율성

3. 주요이슈

- 지도·단속에 있어서 최근 주요이슈는 현지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 동해어업 지도사무소 워크샵 등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사항을 근거로 8개에 대하여 그

제2절 성과분석의 이론적 배경

1. 지도·단속업무의 재화적 특성

가. 공공재의 특성

-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주체의 구분이 아니라 재화의 특성에 의해 구분하면 사적재와 순수공공재, 비순수 공공재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적재는 경합적이고 소비로부터의 배제가 가능하며, 소비의 외부성이 없음. 즉 이러한 특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X = \sum_1^n x_i \quad \frac{\partial u_i}{\partial x_i} > 0 \quad \frac{\partial u_i}{\partial x_i} = 0$$

-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칭함. 즉,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소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이에 속함. 일반적으로 비경합성은 어떤 사람이 동 재화의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그것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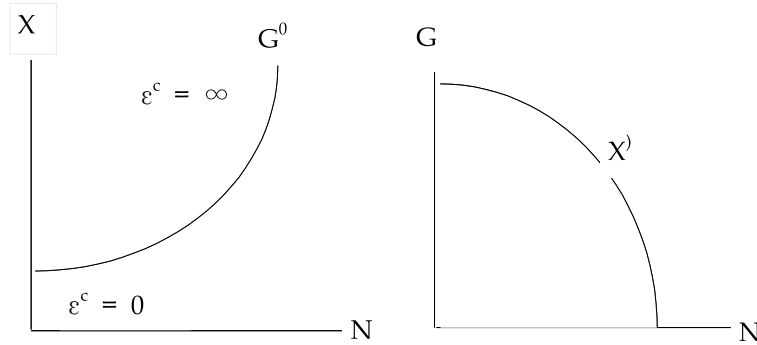
$$X = X_1 + \dots + X_i + \dots + X_n \quad \frac{\partial U_i}{\partial X} > 0$$

- 비순수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중 하나만 성립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순수공공재는 그리 많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이 비순수공공재(준공공재)에 포함 됨. 이는 congestible goods, club goods, local p.g., social goods, merit goods, PIP goods(확률적 소비재, 예:소방서비스), consumption externality goods, differential p.g.(차별적 공공재, 예:치수용제방) 42) 등 이 비순수공공재이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42) 참고: 공동소비재(consumption externality good) $X = \sum_1^n x_i \quad \frac{\partial u_i}{\partial x_i} > 0 \quad \frac{\partial u_i}{\partial x_i} \neq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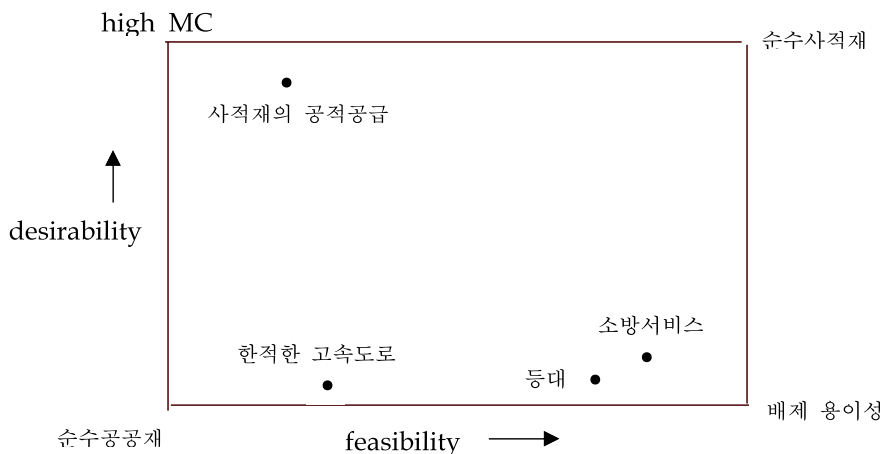
$$G = G(X, N) \quad \frac{\partial G}{\partial X} \geq 0, \quad \frac{\partial G}{\partial N} \leq 0 \quad (\text{congestion technology})$$

$$X = X(G, N) \quad \frac{\partial^2 G}{\partial X^2} << 0 \quad \frac{\partial^2 G}{\partial N^2} << 0$$



- 공공재의 특성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다는 것임. 비배제성이란 기본적으로 국방서비스, 국가건강프로그램과 같이 재화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화 등이 이에 포함됨. 비경합성이란 나의 소비가 남의 소비의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칭함. 바꾸어 말하면 추가적인 사용자에게 대한 한계비용이 0임. 재화 한 단위 생산하는데 드는 한계비용과 다름
 - not feasible to ration their use. : 배제가 어렵다, 비배제성
 - not desirable to ration their use.: 배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비경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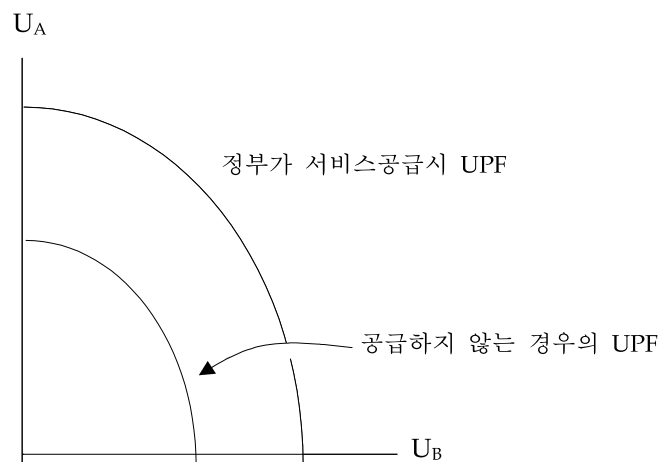
- 비순수공공재의 특성은 사적재와 공공재의 특성을 함께 지닌 재화임



<그림 6-9> 재화의 특성에 따른 구분

나. 지도·단속의 재화적 특성

- 어업지도·단속은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한다면 비순수 공공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에서 지도·단속업무를 할 경우 서비스는 원활하게 공급되기 어려움
- 지도·단속으로 인하여 사회적 잉여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배제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음. 이는 지도·단속에 있어서 추가사용자의 한계비용(MC)가 0이라는 것을 말하며, 소비를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지도·단속 업무는 국방서비스와 같이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거나 과소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나의소비가 남의소비의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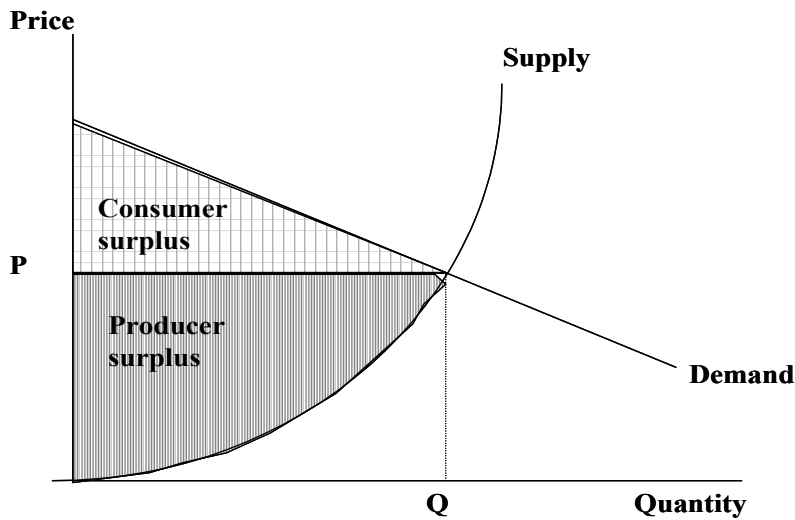
<그림 6-10> 지도·단속업무를 정부제공시 총효용

2. 분석의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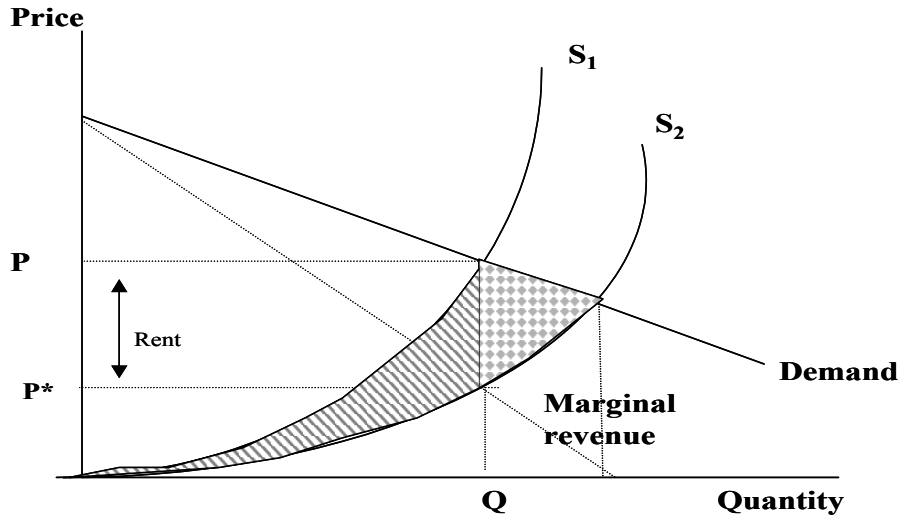
가. 수산부분 효용이론

- 수산업의 생산수준은 자원의 상태에 크게 의존하며, 경제조건 변화에 대한 어업인들의 단기적 대응은 미래생산수준의 감소라는 외부성을 가져옴. 공급곡선은 수산업의 단기한계비용을 의미하며, 단기적 관점에서 이는 보편적인 자원량 규모에 의존함

- 어업지도·단속이라는 서비스는 결국 수산업에 있어서 절대 자원량 규모를 증가시켜 어획단위당비용을 감소시킬 것임. 효과적인 어업지도·단속 업무의 수행 결과인 스톡규모의 증가는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단기한계비용곡선을 S_1 에서 S_2 로 이동시킴
- 낮은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Q수준으로 제한할 경우,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는 가격은 변화하지 않지만 총 잉여는 그림자 영역까지 증가함. 따라서 순편익의 증가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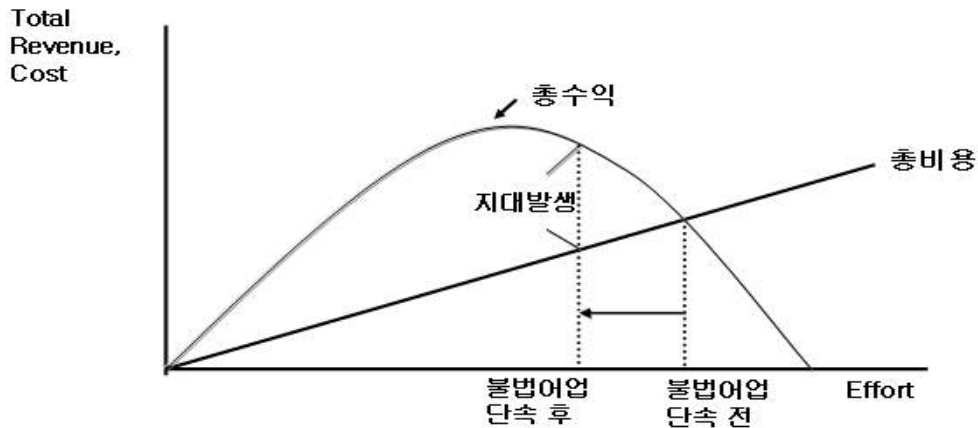


<그림 6-11> 지도·단속의 경제적 가치추정



<그림 6-12> 지도·단속의 경제적 가치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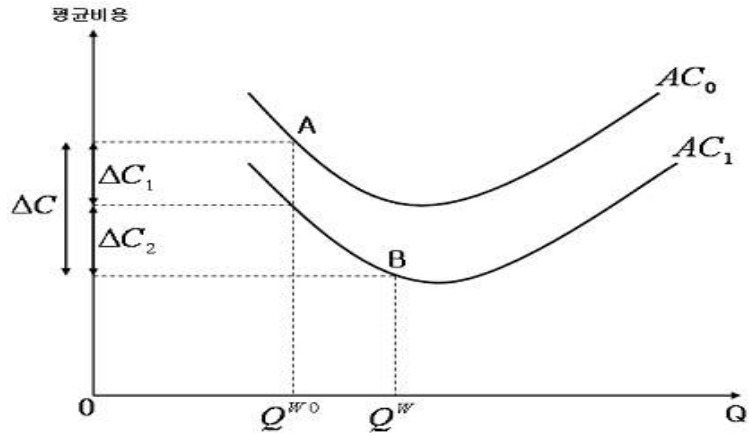
- 또한, 어업지도·단속으로 인하여 자원의 절대량이 증가할 경우 이는 어업비용 감소라는 연계효과를 수반함. 어업자비용 절감효과는 어획활동을 위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던 노력이 감소함에 따라 어획노력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어 나타나는 편익임



<그림 6-13> 지도·단속의 지대발생 효과

- 자원의 증가에 따른 어획비용감소효과의 경제이론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성향상에 의한 어획비용절감효과는 기술변화나 규제완화와 같은 요인들에 의한 비용절감효과 $\Delta C1$ 과 A에서 B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량변화효과 $\Delta C2$ 로 구분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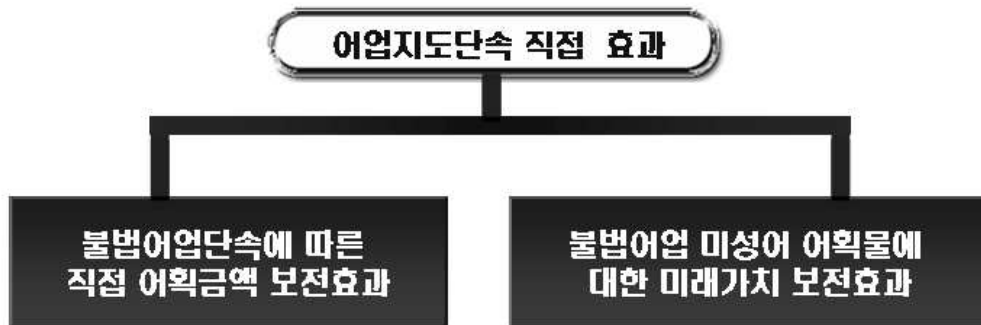
있음. 여기서 ΔC_2 는 평균비용곡선이 수평이 아니고 우하향하여 규모의 경제인 상태에서 생산량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한 생산성변화임



<그림 6-14> 어획비용절감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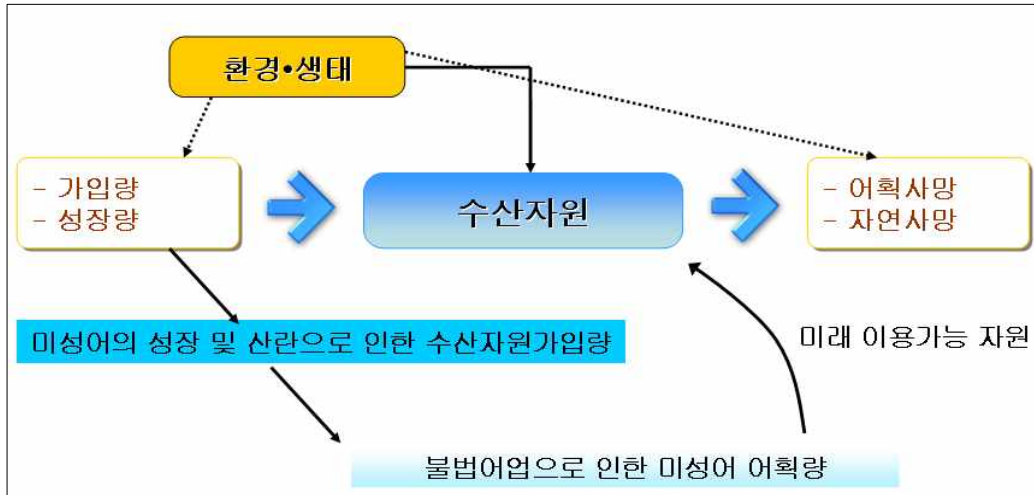
나. 직접효과 분석 이론적 배경

- 어업지도·단속의 직접효과의 이론적배경은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직접 어획금액 보전효과와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라 할 수 있음



- 직접효과 중 불법어업단속에 따른 직접 어획금액 보전효과는 실제로 불법 어업을 행하고 있는 어선에서 위반행위를 통하여 어획하는 어획량에 대하여 어업지도·단속을 시행함에 따라 불법어획 어획량의 보전이 되는 것을 의미함
-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는 아래 수산자원 변동 메커니즘으로 설명 될 수 있음. 아래 그래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산자원의 증

가는 미성어의 성장 및 성어자원의 산란으로 인한 수산자원 가입량이라 할 수 있으며, 불법어업으로 어획된 미성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에 이용 가능한 유효자원임. 즉, 어업지도·단속을 통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음



<그림 6-15> 수산자원 변동 메커니즘

다. 간접효과 분석 이론적 배경

1)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특징

- 동 연구에서 불법어업예방(억제)효과, 범칙어획물양륙 및 유통차단효과, 안전지도 및 어업인 의식전환효과 등 어업지도·단속업무의 간접효과의 추정에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이용하였음. CVM은 간단히 정의하자면 사람들이 어떤 공공재나 환경재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즉, CVM은 간단히 설명해 특별히 고안된 설문지를 통하여 비시장재 변화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사람들을 가상적인 상황에 결합시켜, 이런 조건 하에서 응답자들이 비시장재의 가상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불의사(WTP)가 있는지를 추정함
- CVM은 강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간접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물론, 간접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대상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선호를 나타내려는 응답자의 의사와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CVM이 성공적으로 편익추정에 사용되려면 설문지 작성, 설문과정 등 적용과정에서 CVM의 배경상 논쟁이 되었던 전략적 행위, 가상성, 의향과 행동의 상관관계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함. 또 설문방식을 편익추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지불의사 유도방법이나 설문방법 등도 CVM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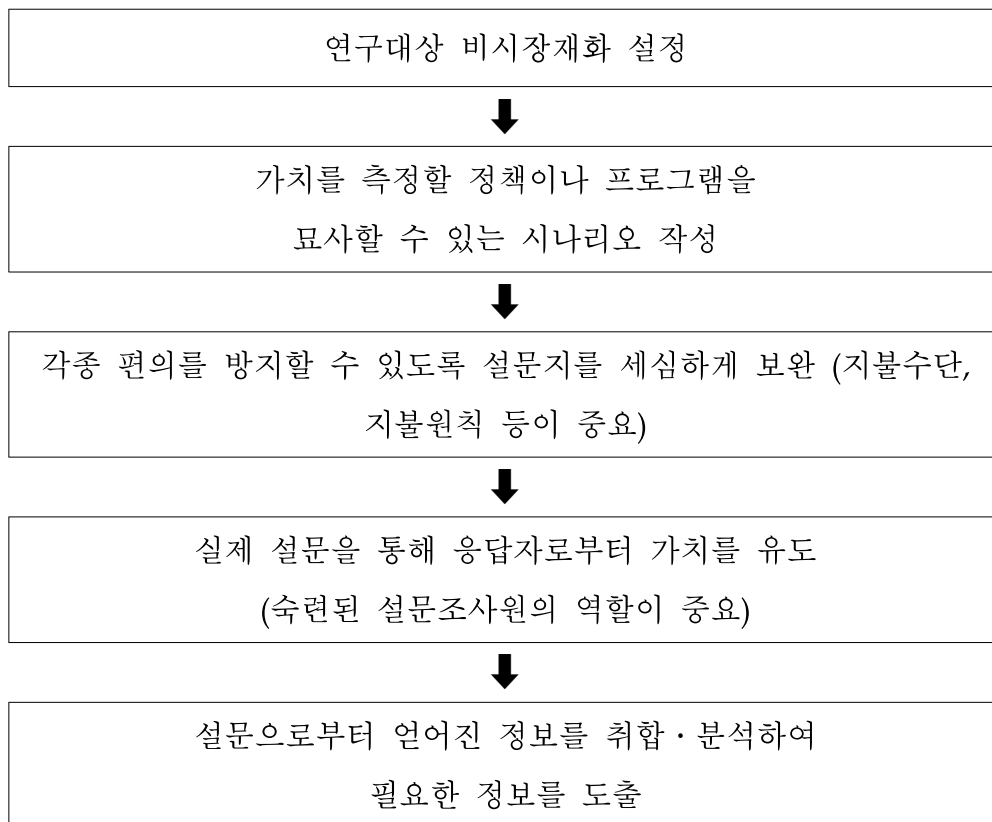
- 미국의 WRC(Water Resources Council)는 1979년부터 여행비용 평가법과 함께 CVM을 수자원 프로젝트 평가기법에 포함시켰으며, ACE(U.S Army Corps of Engineers)도 CVM을 채택하여 20여 개의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Kenneth Arrow와 Robert Solow를 의장으로 하여 유명한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패널(panel)은 CVM의 블루리본(blue ribbon)이라 불리는 NOAA 보고서를 통해 ‘CVM은 비사용가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히 믿을 만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CVM can produce estimates reliable enough to be the starting point of a judicial process of damage assessment, including loss passive-use value.)’는 결론을 내렸음. 이렇듯 CVM은 그 유효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이 입증되어 환경정책, 자원정책, 도시정책, 수산정책 등의 문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음
- CVM은 자원 및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더욱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 경제학의 범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험설계, 마케팅, 정치과학, 심리학, 사회학, 조사연구 등의 다른 영역과 결합되어 유연성 있게 비시장재의 가치추정에 이용되고 있음
- 특히, CVM은 주로 학문적 범위 내에서 연구되어 오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소송(litigation)과 관련된 가치추정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주요 정부관서, 국제기구, 연구소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예컨대, 미국의 WRC(the Water Resource Council), DOI(the Department of Interior),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MFS(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ACE(the Army Corp of Engineering), ADFG(the Alask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CAGO(the Colorado Attorney General's Office), MWDSC(the Metropolitan Water District of Southern California), EPRI(the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RFF(Resources for the Future)에서는 물론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음

2)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

- CVM의 적용은 아래의 5단계를 통하여 실행됨. 먼저 1단계에서 연구대상 비시장재화를 설정하고, 2단계에서는 설정된 비시장재화에 대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함. 3단계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운용에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보완하는 단계임. 4단계는 직접 현장에 나가 설문을 시행하는 단계로 충분히 교육받은 설문조사원의 역할이 강조됨.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설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취합·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내게 됨

-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에 있어 CVM이 다른 방법론에 비해 우월한 장점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다른 기법에 비해 보다 많은 비시장재에 적용될 수 있음. 둘째, 다양한 유형의 비사용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있음. 셋째, Hicks적 후생(Hicksian welfare)을 정확하게 직접 측정할 수 있음. 넷째, 특정 유효성 및 신뢰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음



<그림 6-15>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5단계

- 앞서 언급한 미국의 NOAA에서 제시하는 CVM 시행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살펴보면 첫째, 전화조사나 우편조사가 아닌 개별적인 면담조사에 근거해야 함. 둘째, WTA보다는 WTP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 지불수단으로 양분선택법(dichotomous choice)을 사용해야 함. 넷째, 고려중인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묘사해야함. 다섯째, 응답된 WTP에 대한 지불로 다른 재화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함을 인식시킴. 여섯째, 대상 재화에 대한 대체재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함. 일곱째, 응답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대답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질문이 있어야 함. 이러한 NOAA 패널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표 6-3> NOAA 패널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내 용
일반항목	
샘플 크기	통계적으로 충분한 크기가 필요
회수율	회수율이 낮을 경우 신뢰도 저하됨
개인면접	우편설문은 신뢰성이 낮으므로 개인면접방식이 바람직. 전화방식도 가능
질문자 영향체크	질문자가 있을 때와 아닌 경우 비교할 것
질문항목사전테스트	샘플의 정의, 샘플 크기, 회수율, 미응답항목 등을 보고해야 함
조사항목(지금까지 우수한 CVM에서는 만족된 것)	
예비 설문 설계	너무 금액이 높지 않도록 예비설계가 필요
지불의사액	WTA보다 WTP를 사용할 것
주민투표방식	질문형식은 주민투표방식으로 할 것
환경정책 설명	평가하려는 환경정책을 적절히 설명해야 함
사진 데이터	사진에 의한 영향을 조사해야 함
기타 대상 언급	파괴되지 아니한 기타 환경자원이 있는지, 장래 환경자원의 상태 전부 언급 할 것
평가시기	환경피해 사고부터 충분한 시간 경과까지 평가할 것
동시적 평균	다른 시점에서 평가하여 평균할 것
무응답	찬성/반대만이 아닌, “답하지 않음” 것도 뽑도록 것
찬성 / 반대의 전체 평가	찬성/반대인지를 찾을 것. 그정도 가치가 아닌가, 왜 아닌가, 기업이 지불토록 하는 등
크로스 표 작성	소득, 대상에 관한 지식 유무, 대상지까지의 거리 등으로 분류하여 크로스표를 작성할 것
응답자의 이해	응답자가 이해할 수 없는 등 복잡한 질문을 하지 말 것
목표항목 (이제까지 우수한 CVM에서는 만족된 것)	
대체 지불가능성	돈을 지불한다고 응답하는 경우, 기타 재화 구입에 사용할 금액이 줄어 든다는 것을 인식시켜야만 함
거래가치	환경보호에 돈을 내는 것에 만족하는 “윤리적 만족”의 영향을 제거할 것
정상상태와 일시적 손실	자연환경은 늘 상태가 변화하므로, 변동의 범위와 정상상태를 인정시켜야 함
일시적 손실의 현재가치	일시적으로 자연이 피해입은 후, 자연회복의 상태를 근거로 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사전승인	가상적 시나리오에 관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을 것
신뢰할 수 있는 참조 설문	몇 개의 앙케이트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것
입증책임	이하의 경우,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회수율이 낮고, 환경피해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든지, 응답자가 이해할 수 없거나, “찬성/반대”의 이유가 불명한 경우

출처 : Carson et al., 1996; Arrow et al., 1993; 栗山浩一, 1997. 55.

3) 모형설정

- CVM의 모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양분선택형 모형으로 대표 될 수 있음. 하나는 하네만모형(Hanemann's Method)이며, 다른 하나는 카메론 모형(Cameron's Method) 임

가) 하네만모형

- 하네만모형의 경우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을 얻어 이를 확률모형으로 전환하여 지불의사액 함수를 도출한 후, 다시 효용이론(Utility Theory)에 접목시켜 소비자의 후생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임. 후생변화의 측정은 Hicks가 제안한 보상변이를 기준으로 수행되게 됨

$$U = v(j, Y_{;s}) + \varepsilon_j \quad j = 0, 1$$

- 여기서 U 는 효용함수, v 는 간접효용함수, Y 는 소득수준 $j=0$ 일 경우는 환경개선에 대한 지불금액이 없는 경우, $j=1$ 일 경우는 지불금액이 있는 경우이다. s 는 개인의 사회 경제적 변수가 되며 ε_j 는 평균이 0인 무작위 변수(Random Variable) 임
- 만약 응답자가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금액(A)를 기꺼이 지불하고자 할 경우 간접효용함수는 $v_1(1, Y - A_{;s})$ 가 되며 반대로 지불할 의사가 없을 경우 $v_0(0, Y_{;s})$ 가 된다. 여기서 지불의사금액이 있는 응답자의 효용은 지불할 의사가 없는 사람보다 효용은 크거나 같게 됨. 즉, 다음 수식을 의미함

$$v_1(1, Y - A_{;s}) + \varepsilon_1 \geq v_0(0, Y_{;s}) + \varepsilon_0$$

- 여기서 개인의 응답을 무작위변수의 확률분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주어진 지불의사금액 A 에 대하여 이를 지불하고자라도 환경을 개선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확률 P_1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됨

$$P_1 = \Pr[WTP] \\ \Pr[v_1(1, Y - A_{;s}) + \varepsilon_1 \geq v_0(0, Y_{;s}) + \varepsilon_0]$$

- 만일 응답자가 환경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A 원을 지불할 경우 Hicks의 보상변이는 A 원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정의됨. 변화된 가격 하에서 지불의사의 유무에 대한 효용의 차이 Δv 는 변화된 상황 하에서 응답자가 얻는 효용의 크기로 측정될 수 있음

$$\Delta v = v_1(1, Y - A_{;s}) - v_0(0, y_{;s}) + (\varepsilon_1 - \varepsilon_0) \\ = v_1(1, Y - A_{;s}) - v_0(0, y_{;s})$$

- 여기서 ε_1 과 ε_0 는 동일한 변이를 가지고 평균이 0인 무작위 변수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됨

나) 카메론 모형

- 카메론은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적용되는 전통적인 프로빗 또는 로짓모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음. 양분선택형의 설문결과로부터 각 개인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지만 그의 가치가 제시된 금액보다 크지, 작을지만 알 수 있기 때문임(김기섭·심철호, 2006)

$$Y_i = x_i' \beta + u_i$$

- 각 응답자가 임의의 무작위로 선택된 금액 t_i 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의 반응에 대해 설문자는 응답자의 진실된 가치평가가 t_i 보다 크지, 작을지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응답자가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지불의사금액인 Y_i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시변수인 y_i 를 사용하여 ‘예’라고 응답할 $Y_i > t_i$ 인 경우 $y_i = 1$, ‘아니오’라고 응답할 $Y_i < t_i$ 인 경우 $y_i = 0$ 이라고 할때 각각의 확률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

$$\begin{aligned}
 \Pr(y_i = 1|x_i) &= \Pr(Y_i > t_i) \\
 &= \Pr(x_i'\beta + u_i > t_i) \\
 &= \Pr(u_i > t_i - x_i'\beta) \\
 &= \Pr(z_i > (t_i - x_i'\beta)/\sigma)
 \end{aligned}$$

$$\begin{aligned}
 \Pr(y_i = 1|x_i) &= 1 - \Phi((t_i - x_i'\beta)/\sigma) \\
 \Pr(y_i = 0|x_i) &= \Phi((t_i - x_i'\beta)/\sigma)
 \end{aligned}$$

- 여기서 Φ 는 표준정규분포를 가지는 누적밀도함수, z_i 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임. 이를 이용해 우도함수와 그에 따른 파라미터의 최우추정치를 도출함으로써 WTP를 산출할 수 있음
- 양분선택형 CVM은 제시된 지불의사액에 대해 '예'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게 되며, 이를 1과 0으로 변환하여 이분적 반응변수로 나타내게 됨. 일반적으로 이분적 반응변수가 있을 경우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통해 이를 추정 함. 그러나 선형확률모형은 종속변수 Y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 $Y=1$, 일어나지 않을 경우 $Y=0$), 독립변수 X 에 대해 선형으로 증가함에 따라 X 의 한계 효과가 계속 일정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함
- 이와 같은 한계를 대체 하기 위해 X_i 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P_i = E(Y=1|X)$ 는 증가하지만 0과 1 구간 안에 있으며, X_i 가 커짐에 따라 P_i 는 점차 느리게 1에 접근하게 되고, X_i 가 감소함에 따라 P_i 는 0에 점차 느리게 접근하게 됨에 따라 S자형 곡선이 이루어 졌을 때 가장 효과적임. 이는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함수이며,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진 모형을 로짓(logit) 또는 프로빗(probit)모형이라 부름
- 이는 일반적인 회귀모형과 유사하나 전형적인 최소자승법(이하 OLS)의 방법으로 추정이 불가능함.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오차항(u_i)의 비정규분포성 때문임. 일반적인 OLS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가정하에서 귀무가설 검정을 하게 됨. 그러나 로짓 / 프로빗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연속함수가 아닌 0과 1 두 값만 취하기 때문에 오차항 또한 0과 1의 두값만

가짐. 또 하나의 이유는 오차항의 이분산이다. 즉, 오차항이 종속변수의 조건부 기대치에 의존하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가 취하는 값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차항의 분산은 독립변수에 의존하며 동분산이 아니다. 일반적인 식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이분적인 종속변수 1과 0일 경우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Y=1$ 경우 확률은 P_i , $Y=0$ 경우 확률은 $1-P_i$ 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인 회귀식에 대입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음

<표 6-4> 조건부 반응에 따른 확률분포

Y_i	u_i	확률
1	$1 - \beta_1 - \beta_2 X_i$	P_i
0	$-\beta_1 - \beta_2 X_i$	$1 - P_i$

- $E(Y_i|X_i) = \beta_1 + \beta_2 X_i = P_i$ 를 대입하여 오차항의 분산을 구하면 아래 식을 통해 오차항의 분산은 이분산인 것을 알 수 있음

$$var(u_i) = E(Y_i|X_i)[1 - E(Y_i|X_i)] = P_i(1 - P_i)$$

-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로짓 또는 프로빗 모형에서는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0과 1사이에 있어야 함. 그러나 일반적인 OLS의 경우 0과 1사이의 제약을 만족 시킬 수가 없음
-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은 로짓 / 프로빗모형에서 수정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 중심극한정리⁴³⁾에 의해 표본 크기가 무한대로 증가함에 따라 누적적 정규분포를 이루게 된다. 즉, CVM의 경우에 큰 표본을 필요로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임

43) 표본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은 같으며, 표본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고, 표본의 크기가 무한대로 많아짐에 따라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을 말함. 즉, 표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의 이론적 근거가 됨.

4) 로짓모형(Logit Model)

- 일반적으로 로짓모형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모형을 선형확률모형으로 나타내면 아래 식과 같음

$$P_i = E(Y=1|X_i) = \beta_1 + \beta_2 X_i$$

- 여기서 Y 가 1일 경우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음을 뜻하며, 이를 로지스틱 형태로 변환하기 위하여 아래식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음

$$P_i = E(Y=1|X_i) = \frac{1}{1 + e^{-(\beta_1 + \beta_2 x_i)}}$$

- 여기서 $\beta_1 + \beta_2 x_i$ 를 Z_i 로 바꿔주면 아래처럼 표시할 수 있으며 이것은 누적 로지스틱 분포함수로 나타나게 됨

$$P_i = \frac{1}{1 + e^{-Z_i}} = \frac{e^{Z_i}}{1 + e^{Z_i}}$$

- Z_i 가 $-\infty$ 에서 $+\infty$ 까지 분포할 경우 P_i 는 0과 1사이 값을 가지게 됨. 또한 Z_i 와 비선형으로 연관되며, 이를 선형모형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_i ,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1 - P_i$ 라고 할 경우 아래 식과 같이 바꿔줄 수 있음

$$1 - P_i = \frac{1}{1 + e^{Z_i}}$$

- 로짓모형(L)을 추정하기 위한 식은 아래식과 같음

$$L = \frac{P_i}{1 - P_i} = \frac{1 + e^{Z_i}}{1 + e^{-Z_i}} = e^{Z_i}$$

- 위 식에 자연로그를 취해줄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ln L = \ln \left(\frac{P_i}{1 - P_i} \right) = Z_i = \beta_1 + \beta_2 x_i$$

- 즉, 로짓모형은 독립변수(예: x)와 모수(parameters)에 대하여 선형임. 그러나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1과 0만으로 식에 직접 대입할 경우 표준적인 OLS절차에 의해 추정할 수 없음
- $P=1$ 일 경우 $\ln\left(\frac{1}{0}\right)$, $P=0$ 일 경우 $\ln\left(\frac{0}{1}\right)$ 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이는 상대적 빈도를 계산함으로써 x_i 에 상응하는 P_i 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음
- 최우추정법은 주어진 모집단이 어떤 종류의 확률분포를 하는지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분포의 모집단을 나타내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본들의 결합밀도함수를 우도함수로 변환 후 우도함수의 값을 최대로 하는 값을 찾는 것. 바꿔 말하면 실제의 표본이 추출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하는 모수를 구하는 것임. 일반적인 우도함수는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L(\theta) = f(x_1, x_2, x_3, \dots, x_n | \theta)$$

- 여기서 x_n 은 어떤 상황 X_n 에 대한 확률, θ 는 분포의 모수를 나타내며, 여기서 X_n 이 각각의 독립적 확률과 각각 확률미도함수 $f(x:\theta)$ 를 가질 경우 아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L(\theta) = \prod_{i=1}^n f(x_i | \theta)$$

- 여기서 $L(\theta)$ 를 최대로 하는 통계량 $\hat{\theta}$ 를 최우추정량(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이라 한다. 위 식을 대수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로 바꿔줄 경우 다음과 같음

$$\ln L(\theta) = \sum_{i=1}^n \ln f(x_i|\theta)$$

- P_i 가 주어졌을 때 P_i 에 대한 우도함수는 아래와 같음

$$L = \prod_{i=1}^n P_i^{y_i} (1 - P_i)^{1 - y_i}$$

- 위 식을 로그우도함수로 바꿔주면

$$\ln L = \left(\sum_{i=1}^n Y_i \right) \ln P_i + \left(n - \sum_{i=1}^n Y_i \right) \ln (1 - P_i)$$

와 같으며, 양변을 P_i 로 미분하면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frac{d}{dP_i} \ln L(P_i) = \frac{\sum_{i=1}^n x_i}{P} - \frac{n - \sum_{i=1}^n x_i}{1 - P}$$

$$P_i = \frac{\sum_{i=1}^n x_i}{n}$$

- 로짓모형의 추정을 위해 상대적 빈도를 계산하게 되면 X_i 에 대응하는 P_i 의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음

$$\hat{P}_i = \frac{n_i}{N_i}$$

- N_i 는 X 의 조건에 만족하는 집단의 수, n_i 는 X 에 조건에 만족하며 1의 값을 가지는 집단의 수로써 \hat{P}_i 는 P_i 의 추정치가 될 것임. 추정된 식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ln\left(\frac{\hat{P}_i}{1-\hat{P}_i}\right) = \hat{\beta}_1 + \hat{\beta}_2 X_i + u_i$$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위에 추정식의 오차항은 이분산 적이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 OLS대신 WLS를 통해 추정해야 함
- 위 식에서의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N_i P_i(1-P_i)$ 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유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비율 P_i 는 평균이 P_i 이며, 분산이 $P_i(1-P_i)/N_i$ 인 이항분포를 따르게 됨. 또한 N_i 가 증가함에 따라 정규분포에 수렴하게 됨 즉, $\sqrt{N_i \hat{P}_i(1-\hat{P}_i)} = \sqrt{w_i}$ 를 통해 가중치를 구하고, 이를 양변에 곱하여 이분산을 수정할 수 있음. 최종적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sqrt{w_i} L_i = \beta_1 \sqrt{w_i} + \beta_2 \sqrt{w_i} X_i + \sqrt{w_i} u_i$$

- 일반화된 식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L_i^* = \beta_1 \sqrt{w_i} + \beta_2 X_i^* + u_i^*$$

- 여기서 L_i^* 은 가중된 L_i , X_i^* 는 가중된 X_i , u_i^* 는 가중된 오차항임. 로짓모형의 추정된 계수는 설명변수의 기울기계수로서 설명변수 값의 1단위 변화가 종속변수의 평균값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해 주게 됨. 일반적인 선형확률모형에서 기울기계수는 종속변수가 1단위 변화함에 따라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변화를 나타냄. 그러나 로짓모형의 경우 확률의 변화율은 $\beta_i P_i(1-P_i)$ 로써 β_i 는 i 번째 설명변수의 계수임

제3절 운영성과 분석

1. 직접효과 추정

가. 직접어획금액 보전효과

-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직접 어획금액 보전효과는 불법어업을 통해 어획되는 어획량의 상업적 이용액이라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추정을 위한 가정으로는 첫째, 단속건수를 불법어업의 척수로 산정하였음. 둘째, 불법어업을 통한 어획량은 어업별 어획노력량 ×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라 할 수 있음
- 주요 불법어업단속 업종의 적정어획강도 수준을 보면 모든 업종이 현재 자원량을 고려하였을 때 노력량이 과잉상태라 할 수 있음. 즉, 불법어업으로 인한 자원의 감소부분에 대하여 어업지도·단속의 효과로 그 노력량이 삭감이 된다고 하였을 때 이는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뿐 아니라, 불법어업으로 이용되고 있던 수산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음

<표 6-5> 주요 불법어업 단속업종의 적정어획강도 수준

업종	대형기저	대형트롤	중형기저	소형기저	잡수기	기선형망	삼중자망
적정 강도(%)	79	76	70.7	72.4	61.5	41.5	73
업종	연안통발	연안자망	새우조망	선망	권현망	기타	
적정 강도(%)	38.5	73	71.5	72.5	89.5	71.9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업종별 적정어획강도 내부자료 참고, 재작성

-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직접 어획금액 보전효과의 추정은 아래 식과 같이 추정이 가능함. 즉, 어획금액의 보전효과는 각 업종별로 불법어업 단속건수× 업종별 불법어업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가중치× 업종별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 업종별 어획물의 평균가격으로 추정이 가능함

$$\text{어획금액 보전효과}(U_1) = \sum_{i=a}^n (R_i \times W_i \times CPUE_i \times P_i)$$

R_i = 각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건수

W_i = 각 업종별 불법어업 조정치

P_i = 업종별 어획물 평균가격 (원/kg)

- 업종별 불법어업단속 건수는 2008년을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조정치를 적용하지 않은 불법어업이용 자원량은 합계는 약 135,992톤으로 분석되었음

<표 6-6> 업종별 불법어업단속건수 및 업종별 CPUE

구분	단속건수	CPUE(톤/척당)	불법어업이용자원량(톤)
대형기저	48	596.0	28,609
대형트롤	12	1000.1	12,001
중형기저	41	284.3	11,655
소형기저	18	3.6	65
잠수기	120	50.0	6,000
기선형망	136	3.5	483
삼중자망	363	4.7	1,712
연안통발	570	4.4	2,534
연안자망	926	4.7	4,368
새우조망	138	42.2	5,827
선망	61	325.4	19,851
권현망	27	243.2	6,565
기타	1989	18.3	36,322
합계	4449	2580.5	135,992

주 : 소형기저는 연안어업 평균치 적용, 기타는 해면어업 평균치 적용

자료 : 단속건수-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2008)

- 그러나 소형기선저인망어업과 같이 완전한 무허가 조업을 제외하고는 어선척당 어획물의 100%를 불법어업으로 어획한다는 가정에는 무리가 있음. 위의 표와 같이 단속건수를 어선척수로 가정할 경우 현실보다 높은 불법어업어획량을 산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됨. 그러므로 동 연구에서는 불법어업유형을 고려하여 불법어업이용자원의 조정치를 추정하였음. 업종별 불법어업유형별 조정치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업종별로 불법어업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표 6-7> 업종별 불법어업유형별 조정치

구분	불법어업유형	조정치
대형기저 대형트롤 중형기저	취약시간대를 이용 조업구역 위반, 금지체장위반(수산동물의 산란장 및 성육장 내에서의 조업), 채낚기어선과선미식트물(저인망)어업공조조업	0.2
소형기저	무허가조업	1
잠수기	조업구역 위반 및 제한규정 위반 (고마력가솔린기관을장착하고취약시간대불법조업)	0.3
기선형망	목재 또는 철재 등의 틀로 망구를 고정시킨 대망을 1가닥의 예인줄로 끄는 어구로 조개틀과 같이 그물입구가 고정된 형태로 조업	0.5
삼중자망	어구어법의 변형 및 제한위반, 특정어종 어획을 위해 3중 자망을 사용	0.7
연안통발	조업구역 및 어구어법의 변형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 그물코 규격이 35mm이하의 스프링 통발어구로 장어를 포획	0.5
연안자망	특정어종(도치, 곱치, 삼수기 등)어획을 위해 3중 자망을 사용	0.7
새우조망	조업구역 등을 위반하여 조업하거나, 날개그물7m 이하사용과 16mm이상의 망목과 허그물 사용을 사용하여 조업, 금지어종위반, 어구어법의 변형, 조업구역 이탈조업 및 잡어포획	0.5
선망	제한 및 조건의 위반	0.3
권현망	어구어법의 변형 및 금지어종 위반	0.3
기타	조업구역 위반, 금지어종 위반, 어구어법의 변형	0.3

- 업종별 연간 불법어업 어획금액을 추정해보면 아래와 같으며 총 불법어업단속에 따른 직접어획금액 보전효과는 약 1,018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표 6-8> 업종별 직접어획금액 보전효과

구분	연간불법어업 이용자원량(톤)	가격 (원/kg)	유형별 가중치	불법어업 어획금액(천원)
대형기저	28,609	2,163.9	0.3	12,381,403
대형트롤	12,001	1,213.5	0.3	2,912,643
중형기저	11,655	2,623.2	0.3	6,114,679
소형기저	65	5,424.2	1	352,573
잠수기	6,000	4,235.0	0.3	7,623,000
기선형망	483	1,316.9	0.5	318,031
삼중자망	1,712	5,540.5	0.7	6,639,735
연안통발	2,534	8,451.8	0.5	10,708,431
연안자망	4,368	5,540.5	0.7	16,940,633
새우조망	5,827	2,619.7	0.5	7,632,496
선망	19,851	938.8	0.3	5,590,836
권현망	6,565	1,064.8	0.3	2,097,124
기타	36,322	2,064.7	0.3	22,498,210
합계	135,992			101,809,793

나. 미성어 어획 미래가치 보전효과

- 앞서 언급하였던 수산자원의 변동 메커니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법어업으로 인해 어획되는 미성어는 불법어업이 없을시 미래에 경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유용자원을 비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임
-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는 업종별 연간불법어업 이용자원량 중 미성어의 어획량에 대한 미래가치라 할 수 있으므로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text{미성어 미래가치 보전효과}(U_2) = \sum_{i=a}^n (R_i \times W_i \times D_i \times S_i \times CPUE_i \times P_i)$$

R_i = 각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건수

W_i = 각 업종별 불법어업 조정치

D_i = 각 업종별 미성어 어획비율

S_i = 미성어 성장비율 및 자원이용 조정변수

P_i = 업종별 어획물 평균가격 (원/kg)

- 즉,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건수(R_i)과 업종별 단위노력당어획량(CPUE)의 곱으로 산출되어지는 업종별 연간불법어업 이용자원량에 대하여 업종별 미성어 어획비율 (D_i)과 가격 및 미성어 성장비율 및 자원이용 조정변수를 곱한 값임
- 일반적으로 미성어의 성장률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어자원으로 이용가능하기까지의 사망률 등을 고려하여 자원이용 조정변수(S_i)의 추정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미성어의 체장의 성장에 따른 효과를 자연사망폐사율이 상쇄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6-9> 업종별 미성어어획 비율 및 업종별 CPUE

구분	연간불법어업 이용자원량(톤)	미성어 어획비율	불법어업미성어 추정어획량(톤)
대형기저	28,609	70.6	20,198
대형트롤	12,001	45.8	5,496
중형기저	11,655	57.9	6,748
소형기저	65	39.4	26
잠수기	6,000	35.3	2,118
기선형망	483	77.3	373
삼중자망	1,712	33.8	579
연안통발	2,534	45.3	1,148
연안자망	4,368	33.8	1,476
새우조망	5,827	39.4	2,296
선망	19,851	42.0	8,337
권현망	6,565	30.0	1,970
기타	36,322	49.0	17,798
합계	135,992		68,563

- 업종별 불법어업으로 인한 미성어 어획금액은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는 약 533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표 6-10> 업종별 불법 미성어어획 미래가치 보전효과

구분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량(톤)	가격 (원/kg)	유형별 가중치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금액(천원)
대형기저	20,198	2,163.90	0.3	13,111,906
대형트롤	5,496	1,213.50	0.3	2,000,986
중형기저	6,748	2,623.20	0.3	5,310,599
소형기저	26	5,424.20	1	138,914
잠수기	2,118	4,235.00	0.3	2,690,919
기선형망	373	1,316.90	0.5	245,838
삼중자망	579	5,540.50	0.7	2,244,230
연안통발	1,148	8,451.80	0.5	4,850,919
연안자망	1,476	5,540.50	0.7	5,725,934
새우조망	2,296	2,619.70	0.5	3,007,203
선망	8,337	938.8	0.3	2,348,151
권현망	1,970	1,064.80	0.3	629,137
기타	17,798	2,064.70	0.3	11,024,123
합계	68,563			53,328,859

다. 직접효과 총합화

- 어업지도·단속의 직접효과는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직접 어획금액 보전효과와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의 합으로 추정이 가능함. 즉,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와 같이 산정을 할 수 있음

$$\text{직접효과} = \text{어획금액 보전효과}(U_1) + \text{미성어 미래가치 보전효과}(U_2)$$

- 앞서 추정된 불법어업단속에 따른 직접 어획금액 보전효과(U_1)와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U_2)를 통하여 연간 어업지도·단속의 직접효과는 어획량 약 20만톤, 금액적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약 1,551억원으로 추정됨. 이는 우리나라 연간수산물 생산량의 약 6.09%이며, 생산금액의 약 2.45% 수준임

2. 간접효과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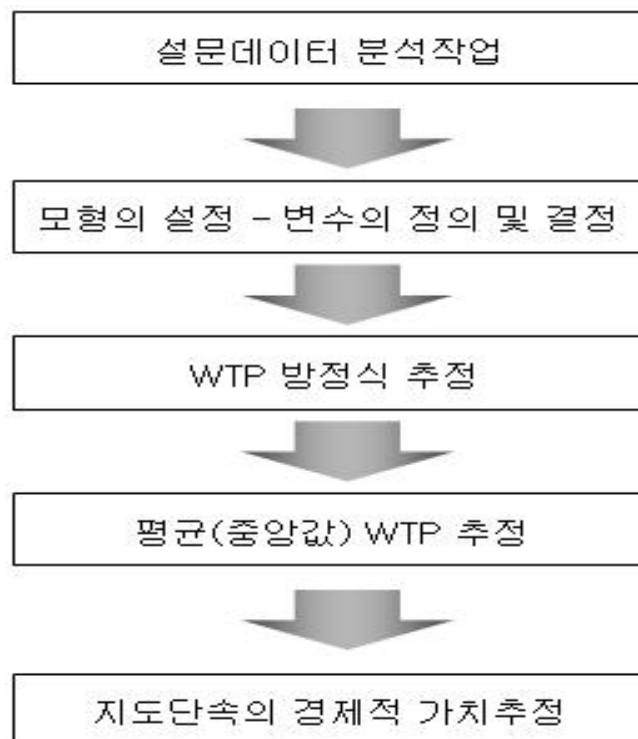
- 불법어업예방(억제)효과, 범칙어획물양륙 및 유통차단효과, 안전지도 및 어업인 의식전환효과 등과 같은 어업지도·단속의 간접효과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비시장재화(non-market)에 대한 효과라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간접효과의 추정은 정교하게 설계된 설문지를 통해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대한 WTP를 측정하여 지도·단속 보상수요곡선과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을 도출함. 그리고 저항적인 WTP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응답자의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을 이용하여, 소득세에 부과되는 보존기금을 지불수단(payment vehicle)으로 사용하여 가상성 편익(hypothetical bias)를 제거함

가. CVM의 운용절차

- CVM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설문지의 설계라 할 수 있음. 설문지 작성은 연구목적과 직접 연계되므로 본 단계에서 충분히 유의해야함. 설문지 설계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대상재화의 설정이며, CVM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시장재화에 대한 조건부 시장의 설정을 하게 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 있어서 대상재화는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이며, 비시장재화로 인한 편익의 증가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산환경의 악화를 경감하여 어업지도·단속으로 인한 수산환경의 개선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설문자에게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산환경의 피해에 대해 소개하고 일반적인 견해를 이끌어 냈음. 어업지도·단속으로 수행으로 비용이 소요됨을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질문하였음
- 두 번째로 응답자의 지불수단을 제시하는 것임. 어업지도·단속은 비순수공공재로써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부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출되게 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수단으로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경제적 가치측정과 관련하여 CVM 운용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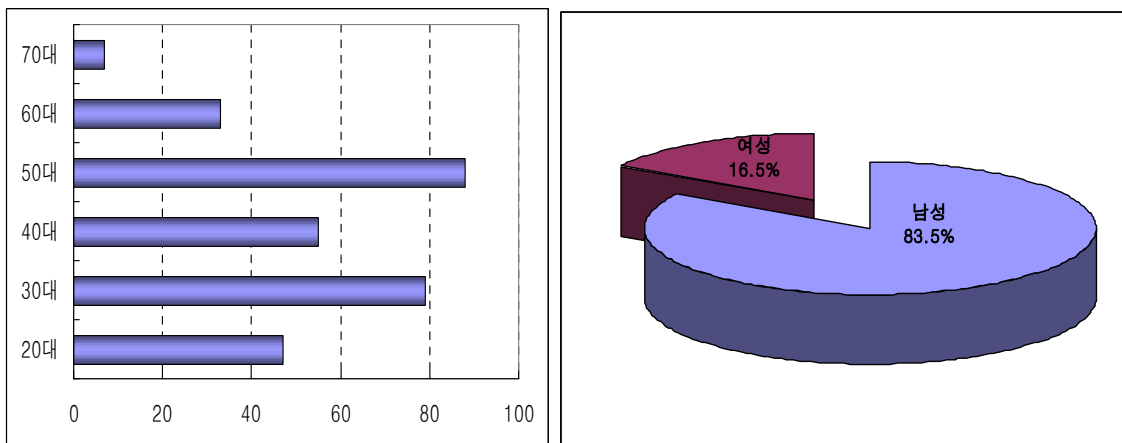
<그림 6-16> 지도·단속 경제적 가치추정 운용절차

나. 설문분석

- 어업지도·단속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제외한 불법어업 예방(억제)효과, 범칙어획물 양륙 및 유통차단효과, 안전지도 및 어업인 의식 전환 효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설문은 불법어업의 인식, 양분형 WTP 응답. 일반 인구 통계적 사항으로 크게 구성되었음
- 조사는 미리 설계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우편조사를 통하여 실시 되었으며, 이상치를 제외한 총 309개의 유효표본이 수집되었음
- 설문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별 구성 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연령별로는 50대가 88명 28.5%로 가장 높으며,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구성은 남성이 258명 83.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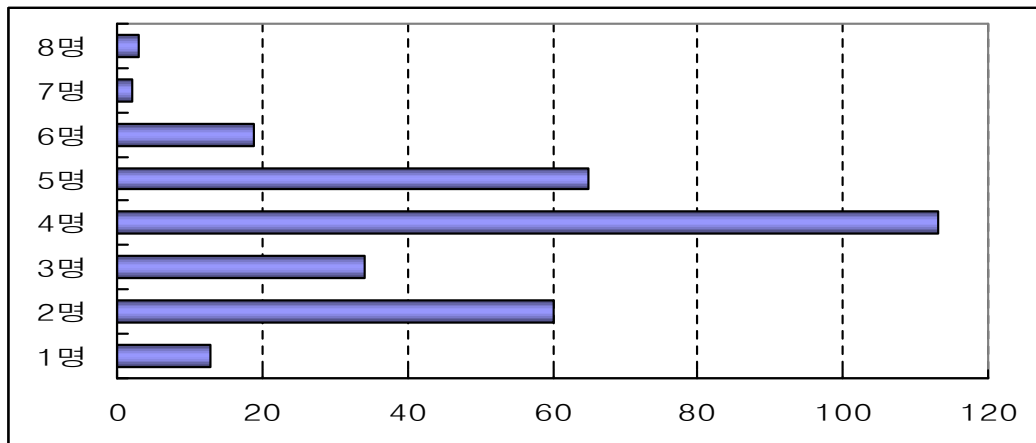
<표 6-11> 간접효과 조사표본 인구통계학적 분석

연령별 구성			성별 구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20대	47	15.2	남성	258	83.5
30대	79	25.6			
40대	55	17.8	여성	51	16.5
50대	88	28.5			
60대	33	10.7			
70대	7	2.3			
총계	309	100	총계	309	100



<그림 6-17> 간접효과 조사표본 인구통계학적 분석

- 설문대상자의 가족 수는 4인 가족이 113표본으로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인 가족, 2인 가족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음. 평균 가족 수는 3.76명임
- 교육수준은 평균 12년으로 이는 고등학교졸업 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6-18> 조사표본 가족수현황

다. 분석결과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증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11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309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음
- 최우(maximum likelihood) 추정법에 의해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모수 α , β 를 추정한 결과, 각각의 추정계수는 0.7984와 0.2719로 나타났으며, t-값과 p-값으로 판단하건대 이 추정계수들은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신뢰성 있는 값이라 판단됨
- 로그우도값은 -261.92이며, Wald 통계량이 112.63로 계산되었음. 이는 추정계수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alpha, \beta = 0$)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여유 있게 기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불의사액이 유의하게 "0"과 다름을 나타냄

<표 6-12> 모형의 추정결과

파라미터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α	0.7984	0.214	4.021***
β	0.2719	0.048	7.981***
log-likelihood		-261.92	
Wald 통계량		112.63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수행으로 인한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대푯값을 측정하기 위해 Hanemann(1989, 1984)이 제시한 평균 지불의사액와 절단된 평균 지불의사액을 사용하였음. 지불의사액의 산출 식은 아래와 같음

$$\text{평균지불의사액}(C^+) = C^* = \frac{\alpha}{\beta}$$

$$\text{절단된지불의사액}(C^{++}) = \frac{1}{\beta} \ln [1 + \exp(\alpha)]$$

- 위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에 대하여 양분선택형 모형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평균 2,936.4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절단된 평균 지불의사액은 4,303원으로 분석되었음. 추정된 평균 지불의사액과 절단된 평균 지불의사액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절단된 평균 지불의사액은 양의 선호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음의 선호까지 포함한 평균 지불의사액 보다 크게 나타남

<표 6-13> 지불의사액의 대표값 추정결과

모형	연평균 WTP 추정치(원)	표준오차	t-값
평균 WTP	2,936.4	0.423	7.324***
제한된 평균 WTP	4,303.1	0.242	15.23***

주 :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간접가치에 대하여 그 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을 최소치로 지불의사금액의 절단된 평균을 최대치로 하여 각각 시도하였음

- 설문조사시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간접가치에 가구소득 및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시 지불의사로 표현되는 세금의 경우 가구당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연평균 지불의사추정치는 개별가구의 지불의사로 정리할 수 있음

<표 6-14> 국내 가구수

구분	가구 수 (가구)
총계	15,887,128
1인	3,170,675
2인	3,520,545
3인	3,325,162
4인	4,289,035
5인	1,222,126
6인	266,930
7인이상	92,655

자료 : 통계청 총 조사 가구(2005)

- 2005년 통계청의 총가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수는 약 1,589만 가구임 연평균 지불의사 추정치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 수행에 따른 간접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보면 약 467 억원~약 684억원 인 것으로 추정

<표 6-15> 우리나라 지도·단속업무 수행의 총가치

모형	가구당 연간 WTP (A, 원)	가구수(B)	연간 총 수행가치 (A×B, 백만원)
최소 (평균 WTP)	2,936.4	15,887,128	46,651
최대 (절단된 WTP)	4,303.1	15,887,128	68,363

3. 지도·단속 운영성과

- 우리나라 지도·단속의 운영효과는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직접어획금액 보전 효과와 불법어업 미성어 어획물에 대한 미래가치 보전효과를 포함하는 직접 효과와 전국민적 지도·단속에 대한 효용가치인 간접효과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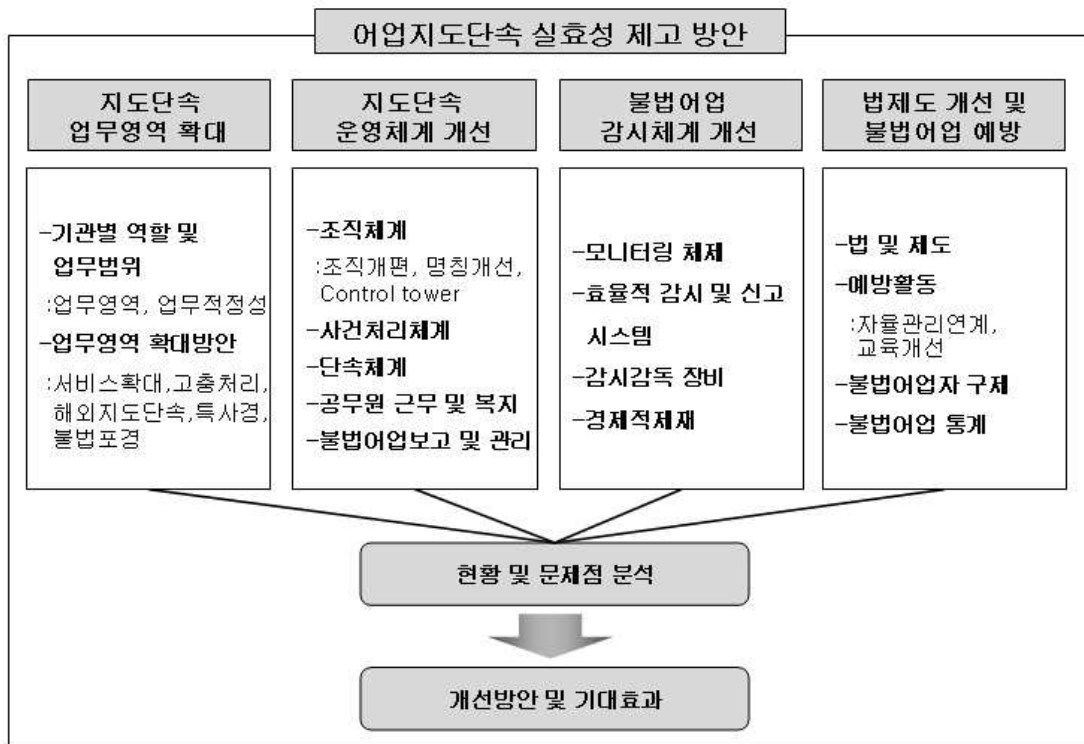
- 앞서 추정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바탕으로 연간 지도·단속의 운영 가치를 산출하면 약 2,018억원~ 약 2,23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장기적으로 10년을 보았을 때는 2조원 이상의 효과를 가짐

<표 6-16> 우리나라 지도·단속업무 수행의 총가치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합
	직접어획금액 보전효과	미성어 어획 미래가치보전효과	지도·단속 국민적 경제적 효용	우리나라 지도·단속 운영의 경제적 가치
금액 (백만 원)	101,809	53,328	46,651~68,363	201,790~223,502

제7장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방안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크게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불법어업 감시감독체계 개선,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예방 개선의 4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대분류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각 각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하여 개선사항 및 기대효과를 제시함



<그림 7-1>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연구체계

-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과업 지시서 상의 내용 중 기존 업무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지도·단속 업무 범위 재설정, 기관별 역할분석 및 기능 재설정 등은 내용상 기관별 지도·단속 업무 영역확대방안에 포함시켜 개선방안을 제시함. 그 이유는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있어 업무의 범위와 기관별 역할 분석, 기능 재설정은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임

제1절 기관별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방안

1.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

가. 현황

- 현재 불법어업의 해상 지도·단속 업무는 국가 어업지도선과 시·도별 어업지도선, 해경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어업지도선은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시·도별 어업지도선은 각 도, 시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 업무는 1966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법률 제1752호)의 개정 공포와 대통령령 제2427호에 의해 수산청 발족 및 지도과를 신설하여 어업지도선 운영을 전담하면서 시작된 이래로, 2004년 2월 2일 어업지도사무소가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로 분할(해양수산부 훈령 제267호)되면서 2개의 어업지도사무소가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해양경찰은 1953년 12월 내무부소속 해양경찰대로 태동한 이후로 1991년 8월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되고,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승격되었다가 2007년 정부조직 개편과 더불어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상경비활동을 통한 해상안보태세 확립과 해상안전을 확보하는 역할 및 해상치안활동을 강화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⁴⁴⁾
-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매년 2차례의 전국 불법어업 일제단속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 해양경찰, 해군, 검찰 등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행정과 사법적 제재를 병행하고 있음
- 그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시·도, 수협 등 관계부처 간에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육상과 해상, 공중을 연계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주요골자로 하는 「어업질서확립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매년 적극 추진하고 있음

44) EEZ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2. 7 해양수산부, p. 153

- 불법어업의 단속과 지원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영해 이원의 관할수역은 해군, 국가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영해 내측수역은 국가 어업지도선, 시·도 및 시·군이 담당하며, 시·도 및 시·군의 경계수역은 시·도 및 시·군이 합동으로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그리고 해양경찰과 어업지도선간의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지도 및 단속을 수행하고 있음. 해군은 특정해역에서의 어선 및 선원안전 부분만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국가 어업지도선 1척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범위는 우리나라 EEZ 전역의 광활한 해역이고, 담당하여야 할 임무 또한 다양하며, 현재 연근해어선을 중심으로 불법어업의 지도점검을 전담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불법어업을 담당하는 국가 어업지도선과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및 해양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범위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 합동단속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뿐만 아니라, 공조단속도 각 기관별로 업무구역 내에서 기관별로 단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어의 의미와 같이 공조하여 단속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함

<표 7-1> 어업지도선, 해경경비정, 해군함정의 역할

구분	어업지도선	해경경비정	해군함정
보유현황	○ 111척(본부34, 시도83) (250톤 이상28, 이하83)	○ 269척 (250톤 이상61, 이하208)	○ 보유척수 : 보안사항
주 활 동 해 역	○ 현행조업유지수역 - 잠정조치수역, 중간수역, 동중국해 ○ 배타적경제수역(EEZ) - 동·서·남해 EEZ전역 * 시·도지도선 : 연안관할수역	○ 연안수역 - 영해 및 EEZ내측 수역 ○ 항·포구	○ 작전인가구역 - 제1함대사령부(동해) - 제2함대사령부(서해) - 제3함대사령부(남해)
기본업무	○ 어업지도·단속 및 안전조업지도	○ 해상치안 유지	○ 국토(해양영토)방위
업무한계	○ 수산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수행(어선의 상선등 단속불가)	○ 경찰업무(EEZ법 규정상 외국어선 승선조사 불가)	○ 국토 방위(평시 민간선박 통제 곤란)

구분	어업지도선	해경경비정	해군함정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선의 어획량 확인 등 우리 EEZ 입어조건 등 이행여부를 위한 승선조사 ○ 주변국 인근수역 우리어선 어로보호 및 나포예방 지도 ○ 외국어선과의 어구 및 어업 분쟁 예방, 조정 지도 ○ 원해 출어선에 대한 유류·식수 보급 및 의료지원등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무허가 침범어선 감시 및 나포 ○ 한일/한중어업협정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홍보 ○ 과도수역 자원관리를 위한 한중/한일 제휴순시 등 실시 ○ 불법어업 지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해에서의 밀입국, 선상 폭력, 강절도범 검거 ○ 선박·선원실종사고 수색 ○ 수난구호 및 해상방제업무 ○ 영해, EEZ 경비 및 EEZ 무허가 침범조업 외국어선 나포 ○ 남북 접접해역의 동·서해특정해역 및 어로한계선 월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방위를 위한 활동 - 관할구역내의 적침투 공격·방어임무 수행 ○ 간첩 및 불순분자 침입 방지
특 징	○ 비무장(협정업무수행 원활)	○ 무장(협정업무수행 제한)	○ 무장

주 : 보유현황은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분석

자료 : 어업지도·단속 업무편람, 동해어업지도사무소, 2006, p.5에서 수정

나. 문제점

-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단속이 곤란
 - 동해 및 서해 어업지도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중 절반인 17척으로 우리나라 EEZ 뿐만 아니라, 영해와 내수지역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단속이 곤란
 - 국가 어업지도선이 넓은 담당구역 중 일부지역을 순회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 함정은 어업지도선이 없는 지역에서 단속하는 단속의 시스템이 없어 상호 보완적 단속이 불가능함
 - 국가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간의 지도·단속해야 하는 분야나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투입되는 인력에 비해 불법어업의 근절이라는 단속의 효과는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임

- 공조단속 체제의 미구축에 의한 효과 불확실
 - 공조단속은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단속에 대항하여 폭력과 조직적인 저항을 제압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조단속은 기관간의 문제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어업지도선과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무기의 소지 및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폭력적이거나 조직적인 대항으로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함

다. 주요 수산국과의 비교

- 주요 수산국 중에서 미국의 경우는 국가(중앙정부)기관의 관할해역은 3해리 이원이며, 담당 부서는 NOAA 및 수산국(NMFS), 집행기관은 법집행사무소(7개소)인 것으로 조사됨.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경우는 관할해역은 3해리 이내, 담당 부서는 주정부, 집행기관은 법 집행사무소(OLE) 및 연안경비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법 집행사무소(OLE) 7개소 : NOAA산하 기구로 연방어업규제의 집행담당
 - 집행특수요원 : 261명
 - 야생동물사찰단 : 122 명
 - 태평양 지역, 남서부 지역, 오대호, 동남 지역, 동북 지역, 마운틴, 알래스카 지역
- 일본의 경우는 국가기관의 관할해역은 근해이고, 담당부서는 수산청 진흥부 연근해과이며, 집행기관은 어업조정사무소(6개소)임. 지방정부의 관할해역은 연안이며 담당부서는 도도부현 어업지도과,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임. 불법 조업 어선 나포의 경우는 해상보안청의 경비정이 관여하나, 영해 침범과 같은 경우 이외의 어업단속 자체는 수산청에 협력하고 있어, 불법 조업 등 수산업에 대한 단속은 기본적으로 수산청의 임무라고 할 수 있음
 - 도 : 도지사 허가 어업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
 - 수산청 : 장관 허가 어업, 외국 선박의 어업이 이루어지는 해역
 - 수산청은 본청과 전국 6 곳의 어업 조정 사무소에 어업 단속 선박과 항공기를 보유
 - 어업조정사무소의 조직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총무과, 자원과, 어업감독과, 외국어선관리과, 어업감독하시관, 어선경위 등으로 구성
- 중국의 경우는 국가기관의 관할해역은 근해이고, 담당 부서는 어업부 및 어정국(3개국/ 황발해, 남해, 동해)이며, 집행기관은 어정지휘센터임. 지방정부의 관할해역은 연안이고, 담당부서는 지방정부(성) 수산국이며, 집행기관은 각 성

직할시 어업관리소임

- 어정지휘센터 : 농업부에 의해 조정 임무 및 포괄적인 국립 수산 집행 명령 수행, 농업부의 지시에 따라, 주요 사건 조사 및 불법어업 처리
- 배타적 경제 수역 어업 법 집행
- 국립 수산 무선 통신, 네비게이션 및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지도
- 어정지휘센터의 조직은 사무소, 지휘처, 조사처, 소식처, 감독처, 야생수산동 식물 보호처로 구성됨
- 어정검사원은 해상이나 어항에서 법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각 성 직할시 어업관리소 : 중국의 각 성과 직할시 연안의 어업지도·단속을 담당

○ 한국은 국가기관의 관할해역은 근해이고, 담당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 전과이며, 집행기관은 동해 및 서해 어업지도사무소임. 지방정부의 관할해역은 연안이고, 담당부서는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관련과이며,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임

-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국내어선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 협정과 정부간 합의 사항 이행 및 지도·단속, 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인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시·도별로 해양수산관련 과에서 어업지도·단속 업무 시행. 시, 군에서도 수산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도와 시, 군으로 세분화되어 실시되고 있음. 합동 단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단속 업무 실시

<표 7-2> 주요수산국의 어업지도·단속체계

국가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해경
	관할 해역	담당 부서	집행 기관	관할 해역	담당 부서	집행 기관	
미국	3해리 이원	NOAA/수 산국(NMF S)	법집행 사무소 (OLE)	3해리 이내	주정부	법집행 사무소 (OLE)	연안경비대(Coast Guard) 연근해 불법어업 단속
일본	근해	수산청 자원관리 부 관리과	어업조정 사무소 (6개소)	연안	도도부현 어업지도과	지자체	해상보안청 연근해 불법어업 단속
중국	근해	어업부 어정국 (3개)	어정 지휘센터	연안	지방정부 (성)수산국	각성 직할시 어업관 리소	※공안청 국방업무 외 치안유지 등 포괄적 업무담당(어업관 리, 출어선·어업인 관리 등)
한국	연근해	농림수산 식품부지 도안전과	동·서해어업 지도사무소	연안	지방자치단 체 수산관련과	지방자 치단체	해양경찰청 연근해 불법어업 단속

라. 개선방안

-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의 목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체계 구축에 의한 불법어업의 근절 책무 명확화라 할 수 있음.
- 지도·단속 범위의 구분
 - 지도·단속 기관간의 업무영역을 영해 외측선을 기준으로 하되, 책임구역제를 도입하는 등의 지도·단속 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국가 어업지도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의 불법어업과 자국 연근해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뿐만 아니라,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및 불법 어획물의 항만국 통제, 자국 수역을 향해하는 국내외 어선 또는 어획물 운반선의 어선검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국가 어업지도선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영해 내측의 어업지도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어업지도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별 불법어업 발생율이 낮거나 또는 단속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업지도선 신조지원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어업지도선의 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 등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
 - 그리고 국가 어업지도선은 암행감찰(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구역의 불법어업을 지도 및 단속)상 지방자치단체 지도·단속 업무구역에 불시에 출입하는 지도·단속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 또한 해양경찰은 어업지도선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별 담당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해안 파출소 소유의 함정은 대부분 소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영해 내측에서 불법어업을 담당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지도 단속 영역의 구분
- 국가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 국가 어업지도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간 업무구역은 중복되고, 지도·단속의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기관별 여건에 따라 불법어업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입체적인 단속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지도·단속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은 양식어업의 불법어업을 중심으로 단속하되, 연안어선의 불법어업을 겸하도록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해양경찰은 수산업 관계 법규의 단속보다는 불법행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수산업법의 위반을 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국가 어업지도선은 EEZ에서의 연근해어선의 불법어업과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의 정한 규정을 단속하는 것으로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범위 재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단속 업무영역의 경우는 국가 어업지도선은 현재 근해로 되어 있으나, 근해와 연안의 명확한 구분이 없으므로 영해(12해리) 외측부터 EEZ까지의 영역으로 재설정하고, EEZ와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 준한 규정을 단속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영해 내측부터 연안까지로 구분하고, 양식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연안 단속도 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해양경찰은 현재 전 수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산관계법과 관련된 규정과 관련하여 사후 처리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에 대한 지원 실적을 통한 차등지급 및 지원을 통해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암행감찰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효과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표 7-3> 기관별 지도·단속 업무영역(범위) 재설정 방안(안)

구분		국가 어업지도선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비고
단속업무 영역	현행	근해	연안	전 해역	현행은 근해와 연안이 명확한 구분 없음
	개선안	영해(12해리) 외측~EEZ	영해(12해리) 내측~연안	현행	
		EEZ와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 준한 규정단속 확대	양식위주, 연안 단속 겸임	행위에 집중 단속	기관별 특성 고려 개선
지도선 경비 차등지급 시스템	현행	-	-	-	암행감찰 시스템 도입
	개선안	-	실적을 통한 차등지급 및 지원	-	

<표 7-4>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추진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	- 목표 :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차등지원 - 내용 : 지방자치단체 별 암행감찰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목표 : 단속영역 책임 구역제 도입 - 내용 : 기관별 단속업무영역 구분	- 목표 : 역할 및 업무 범위 재설정 확립 - 내용 :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업무 역량 강화 정착

마. 기대효과

- 입체적 단속에 의한 불법어업의 근절
 - 어업지도 단속 기관별 지역별 입체적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어업의 근절을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각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의 책임제에 의한 소극적인 불법어업 근절에서 적극적인 불법어업의 단속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통한 업무효율 제고
 - 기관별 역할분담 및 공조협력을 통한 지도·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해경, 국가 어업지도선의 역할분담으로 인한 업무영역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가능

- 책임단속제에 의한 인센티브 제도 정착
 - 불법어업 근절 지역 담당 시·도, 해양경찰,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한 재원 마련
 - 인센티브는 주로 운영비와 포상금 및 신조건조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

바. 투융자

-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범위 재설정과 관련하여 투융자 계획을 살펴보면, 국가 어업지도선과, 해경,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과의 업무영역의 재설정을 위해서는 제1단계에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업무영역을 설정함

-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단속 실적평가를 위한 정규 매뉴얼의 작성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0.5억원을 산정.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도·단속의 실적평가는 매년 또는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연간 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산정

-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1단계에서 50억원, 제2단계에서 150억원, 제3단계에서 250억원 등 단계별로 예산의 규모를 증가

<표 7-5>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 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업무영역 재설정	3	-	-	3
지방자치단체 지도·단속 실적 평가	1.5	1.5	2	5.5
지방자치단체 지도·단속 실적 평가 매뉴얼 수립	0.5	0	0	0.5
인센티브 (신조 건조)	50	150	250	450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 합계	55	152	252	459

- 주1) 업무영역 재 설정 : 업무영역의 효율적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개최, 재정
정시 기반장비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제 1단계에 3억원 투입
- 주2) 지방자치단체 지도·단속 실적 평가 : 평가 매뉴얼을 이용한 연간 또는 분기별 실적 평
가를 위한 예산으로 연간 0.5억원을 산정
- 주3) 지방자치단체 지도·단속 실적 평가 매뉴얼 수립 : 합리적인 평가 매뉴얼의 설정을 위하
여 연구용역 및 공청회의 개최비용으로 제1단계에
서 0.5억원 산정
- 주4) 인센티브 : 운영비와 포상금 및 신조건조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단계별로 확대

2.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업무구역의 적정성 검토

- 우리나라 연근해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어업을 몇 척의 어업지도선으로 지
도·단속할 경우 근절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⁴⁵⁾
- 비록 대형어업지도선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어업의 지도·단속능력이 월등하다
고 할 수 없고, 소형어업지도선이라고 해서 낮다고도 할 수 없음
- 불법어업의 지도·단속능력은 선박의 규모뿐만 아니라 우수한 어업감독공무원
과 선박 조종능력, 적절한 선박의 속력과 지도·단속에 적절한 선형 및 지도·
단속 장비(단속용 보트, 가스총, 쌍안경, 비디오 카메라) 등에 의해 좌우됨. 그
러므로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1척이 담당
해야 할 관할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

45) EEZ 시대에맞는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2. 해양수산부, p.174-176에서 수정 및 보완

- 현재와 같이 황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어업지도선의 배치 간격이 60마일에서 90마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따라서 배치된 것이고, 해상에서의 10~15마일 정도의 육안거리와 15Kt 정도의 선박속력을 감안할 때, 관할범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 이와 같이 현재 국가 어업지도선 1척이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해야 하는 관할범위는 매우 넓고, 효율적으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국가 어업지도선의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키기 곤란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단속업무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EEZ와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해 2개 지역, 서해 2개 지역 및 남해 2개 지역 총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 지역에 어업지도선 2척을 상시 배치하여 불법어업의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12척의 어업지도선이 필요하게 되고, 예비의 12척을 포함하면 전체 24척이 소요됨
 - 동해의 중간수역, 남해의 중간수역 및 황해의 잠정조치수역 등 3개 지역에 2척씩 6척의 국가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예비로 6척을 포함하면, 국가 어업지도선 12척이 소요됨
 - 서해특정지역에 국가 어업지도선 1척이 상시 배치되고 있어서 2교대할 경우 2척이 필요함
-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배치된 24척의 어업지도선은 우리나라 관할수역에 입어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감시함은 물론, 국내 어업질서의 유지 및 TAC 관리제도의 이행업무를 주된 임무로 함
- 동해 및 남해 중간수역에 배치되는 어업지도선 4척은 한·일 어업협정 및 정부 간 합의사항 이행을 주된 임무로 하며, 황해 잠정조치수역에 배치된 2척은 한·중 어업협정 및 정부 간 합의사항 이행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불법어업의 단속은 권역별로 2척의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여도 그 배치된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의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한·중·일 어업협정의 이행과 정부 간 합의사항의 이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방식에 의한 어업지도선의 배치보다는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1척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어업지도선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개선방안

- 이를 정리하면, 동해 2개 지역에 총 4척, 남해 2개 지역에 총 4척, 서해 2개 지역에 총 4척, 한·일 중간수역 총 4척, 한·일 중간수역 및 한·중 현행 조업유지구역 총 4척, 한·중 잠정조치 수역 총 4척 등 총 38척의 국가 어업지도선이 필요함

<표 7-6> 업무영역별 국가 어업지도선 필요척수 추정

해역 구분		운항척수	예비척수	총 필요척수
동해	동해북부해역	2	2	4
	동해남부해역	2	2	4
남해	남해동부해역	2	2	4
	남해서부해역	3	3	6
서해	서해남부해역	2	2	4
	서해북부해역	2	2	4
한·일 중간수역		2	2	4
한·일 중간수역 및 한·중 현행 조업유지구역		2	2	4
한·중 잠정조치 수역		2	2	4
총 계				38



<그림 7-2> 국가 어업지도선 단속해역 및 총 필요척수 현황

- 이와 같이 현행 34척('09년 11월 기준)에서 추가로 국가 어업지도선이 4척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인원수를 계산하면, 척당 인원수 평균인 16.5명에 추가필요지도선 수인 4척을 곱하면 66명의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7-7> 국가 어업지도선 증척에 따른 필요 인원 추정

구분	현행				개선안
	어업지도선		행정	척당	
	척수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9	270	40	16	16.5(척당 인원수 평균) ×4척(추가필요지도선 수) =66
서해어업지도사무소	15	213	44	17	

주 : 행정 = 관리·운용·안전정보

<표 7-8> 국가 어업지도선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추진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적정업무 능력 확보	- 목표: 적정업무 능력규모 - 내용 · 업무영역 적정 선박규모 및 인력 파악 · 예산확보 · 신규선박 건조설계 실시 및 건조착공	- 목표: 인력 및 선박확충 을 통한 업무능 력 개선 - 내용 · 국가 어업지도선 임무 수행구역 개선 · 적정인력확보 · 신규선박 건조착공 및	- 목표: 적정능력확보로 국 가 어업지도선 효 율화 - 내용 · 신규선박 건조완료 및 배 치 · 국가 어업지도선 효율 적 운영 정착

마. 투융자

- 국가 어업지도선의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적정업무능력검토 및 신규선박 건조착공, 적정인력의 확보에 대한 예산으로 제1단계에서는 90.5억원, 제2단계에서는 230억원, 제3단계 200억으로 약 520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함
- 적정업무능력검토는 현재 국가 어업지도선의 기술적부분 및 지도·단속의 가능 해역범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적정 선박과 인원을 세부적으로 도출하기위한 연구와 공청회개최를 포함하여 제1단계에 0.5억원을 산정함
- 신규선박 건조착공은 건조설계와 건조를 위하여 100톤급 2척, 500톤급 1척, 1,000톤급 1척으로 건조기간 및 설계기간을 고려하여 제1단계에 80억, 제2단계에 210억, 제3단계에 180억의 예산 투입을 산정함
- 적정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원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제1단계에 10억, 제2단계와 제3단계에서는 각 20억원의 예산 투입필요

<표 7-9> 국가 어업지도선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프로그램 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적정업무능력검토	0.5	0	0	0.5
신규선박 건조착공	80	210	180	470
적정인력확보	10	20	20	50
국가 어업지도선 업무능력 개선 합계	90.5	230	200	520.5

- 주1) 적정업무능력검토 : 국가 어업지도선의 적정업무능력을 능력과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 및 조직의 능력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개최를 고려하여 제 1단계에 0.5억원 투입
- 주2) 신규선박 건조착공 : 선박건조비용 100톤급 2척 약 130억원(65억원×2척), 500톤급 140억원, 1000톤급 200억으로 총 4척에 대하여 470억원 투입
- 주3) 적정인력확보 : 1인기준 인건비 및 유지비 5천만원 제1단계 20명, 제2단계 40명, 제3단계 40명 기준 투입

3. 국가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

가. 육상·양식 및 원양으로 업무영역 확대

1) 현황

- 수산업법상 어업감독공무원의 업무 영역
 - 현행 수산업법에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 어업지도선의 어업지도·단속은 해상에서의 어선을 중점적 대상으로만 하고 있으며 육상의 불법어업 단속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제수산물기구 관리어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관련 항만국 검색 업무 및 북서태평양(WCPFC), 러시아 수역 등에서의 우리나라 어선 검색 등에 참여하여야 하나, 선박이나 공무원의 인원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

- 또한, 우리나라의 해상 지도·단속업무는 연근해와 EEZ 수역을 중심 시행으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육상단속 및 양식·정치망과 같은 면허·허가어업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수역 등 원양까지를 포괄하는 지도·단속업무의 외연확대가 필요함
- 어업지도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
 - 현재 국가 어업지도선은 한 번 출동하면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며, 각 어업 지도선별로 평균 22명은 있어야 함(선박직원법상의 승무정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개 선박당 약1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임
 - 게다가 전체 어업지도선의 1/2이 출동하고 나면 나머지 1/2은 다음 출동을 위한 준비나 기관수리, 서류 정리 등의 출항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동 어업지도선에 대한 대기선박에서의 인력지원이 곤란한 상황임

<표 7-10> 어업지도사무소 정원현황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4급	4·5급	5급	6급 이하		
동해	정원	327	159	1	2	17	139	168
	현원	326	158	1	1	18	138	168
서해	정원	264	132	1	1	16	114	132
	현원	261	129	1	1	15	112	132
과부족	-4	-4	-	-1	-	-3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내부자료(2009년 11월 기준)

- 불법·비보고·비규제(IUU) 관련 항만국 검색 업무의 집행능력 미흡
 - 어업지도선은 입출항 관련 항만국 통제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선이나 어획물운반선의 입출항, 어획물 내용, 수량 등의 정보를 보고받거나 또는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수산기구가 요구하는 특정 관리어종에 관한 항만국 검색의 업무 수행이 용이하지 않음
 - 그러나, 관계부처의 통보에 기초하여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운반하는 선박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상을 항해할 경우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와 관련한 국제법규에 따라 해당선박을 정선시키거나 또는 회항시켜 검색업무 수행함

- 그리고 검색대상 선박에 외국인이 승선하고 있거나 또는 외국선박일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황에서 국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색 또는 질문을 하여야 하나, 현재의 어업감독공무원들이 국내 어선을 주 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어구사능력을 가진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법 절차의 무지로 인한 국가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법 전문가 공무원이 없는 상황임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및 해외에서 어업지도선에 대한 수요증가 예정
 - 최근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 자원내셔널리즘 강화 및 국제적 수산자원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10개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가입, 2개 기구가입 추진중, 2개 신설기구 협상 참여중
 -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회원국 승선검색제도 채택 및 시행(2008년)
 - 한·러 입어협상 합의사항인 선도선박 배치와 관련 어업지도선 파견

2) 문제점

- 어업감독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야의 축소
 - 국가 어업지도선은 과거부터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어업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이 고유 업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농림수산물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가 보유 선박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구역이나 범위에 관한 수산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 소속 어업감독공무원들은 허가어업 이외의 면허어업, 내수면, 육상에서의 불법 어획물 보관·유통·판매 등의 분야에 대한 어업 단속에는 능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임
 - 그러나 일부 어업지도선들이 최근에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불법어구의 적재 또는 불법 어획물의 운반, 보관·유통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업지도선별로 업무수행의 내용이 일반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참여 어업지도선도 있는 등의 임의성 육상에서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공무원 수의 태부족

- 업무 구역상 지방자치단체 어업감독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허가어업 이외의 면허어업, 내수면, 불법 어획물 보관·유통·판매 등의 분야에 대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감독공무원이 지원하는 형태로 하거나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감독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육상단속을 위한 인원을 확보하여 이 지역에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어업감독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수행에도 한계가 있을 정도로 수산담당 공무원의 수가 적고, 육상에서의 불법 어획물 보관·유통·판매와 관련한 단속도 팀 단위(계원은 1명 내지 2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임
 - 국가 어업지도선은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과 효율적인 단속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결국 육상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조직의 신설 내지는 현행 지도 단속기관의 인원 충원을 통한 육상 단속이 병행되어야 하나, 예산상 또는 공무원 정원 문제로 인하여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음
- 국제수산협력에 관한 이행체제 미구축
- 현재 어업지도사무소를 비롯하여 어업지도선에는 최소 필요인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산협력에 관한 전담부서나 전문기구가 없는 실정임
 - 실제 국제수산협력을 위해서는 원양어선의 지원을 위한 어업지도선의 출동시기에 대한 정보의 수집, 외국검색선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조업선 승선검색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조직이 필요함
 - 이러한 조직의 부재로 인하여 국제수산기구 또는 협정 이행에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승선 검색선 요원 중 외국어 능통자 부족
- 최근에 어업지도선에 특별 채용되는 신규 인력의 학력은 고졸 이상자로 어업지도선 소속 공무원급은 대부분 대졸자임
 - 그러나, 신규 인력이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분야 국제법과 국제수산기구를 잘 알고 외국어가 능통한 자는 많지 않으며, 외국어가 능통한 자를 선발하고자 해도 해상근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용이하지 않음

3) 개선방안

가) 목표

- 어업지도선의 정원 조정을 통한 업무 영역 확대 및 외국 수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국제 분쟁에 대한 유연한 대처방안 마련

나) 추진내용

- 국가 어업지도선의 정원 확대를 통한 육상 단속반 조직
 - 어업지도선이 해상에서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상의 승무정원 규정에 따른 최소 인원을 충원
 - 어업지도사무소에 시·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각 시·도별 육상단속 담당자를 선발 및 농림수산물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지도·단속 체계를 구축하되, 적어도 2명 이상이 1개조가 되도록 편성하되, 3-6개조를 조직함
 - 그리고 단속반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개발과 책임단속업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확립함
- 어업지도선 정원 충원 및 육상 단속반 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 38척의 어업지도선에 부족한 인원은 각 어업지도선별로 대략 5명 정도로 총 200명 정도가 충원되어야 함으로 이들의 인건비와 복무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
 - 육상단속반은 13개 광역시 및 도에 최소 6명에서 10명 정도 충원할 경우 130명으로 이들의 인건비(평균 4,000만원) 및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 확보
- 국가 어업지도선의 국제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배양
 -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어업지도선 운항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서 그 필요한 인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어구사능력자나 국제법 전문가를 별도로 승선시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임
 - 업무구역의 확대에 따른 국제법 또는 국제수산기구 전문가 및 영어구사능력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승선 어업감독공무원 중에서 기초능력평가를 토대로 외국어능력이나 국제법 전문가로 선발하고 어업지도사무소 책임 하에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검색선 및 선도선박 배치를 위한 승선직원 임무수행 교육을 통한 파견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임무수행 교육 단계별 실시

- 국제협약수역, 원양 등 해외업무 수요발굴 및 장비확보
 - 중서부 태평양 승선검색 등 해외업무 수요 발굴
 - 해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VMS 수신기, 단속정, 고성능 망원경 등의 단속 장비 확보 및 국가 어업지도선의 대외적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승선인원 복장 등을 개발·보급

4) 기대효과

-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 해소
 - 선박직원법상 승무정원을 확보함으로써 승선 어업감독공무원 과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부터 탈피 및 공무원 사기 진작
 - 인원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애로점을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 거양
- 육상의 불법 어획물 유통 및 판매에 관한 단속체계 확립
 - 육상 단속에 의한 입체적 단속으로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음
 - 해상과 육상의 단속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입체적 단속이 가능함
- 국외조업 어업인 보호 및 책임있는 조업국 위상 확립
 - WCPFC에서는 우리나라 검색선 파견시 타 회원국 소속의 검색선으로부터 검색 최소화로 원활한 조업활동을 지원가능
 -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권익 보호
 - 우리나라 승선 검색선의 파견으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동 수역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정책에 기여
 - 중서부태평양, 러시아 수역 등 공해상 어업지도 실시로 지역수산기구의 수산 자원관리 보전조치

<표 7-11> 육상·양식 및 원양으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육상·양식 불법어업 단속활성화	-목표: 단속인력 확충 및 육상단속반 조직 - 내용 · 육상·양식업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인력확보 · 육상단속반 조직	- 목표: 육상·양식업 단속체계 정립 - 내용 · 효율성 높은 육상단속반 단속체계 정립 및 업무영역 확대	-
해외수역으로 업무영역 확대	-목표: 공무원 양성 및 새로운 수요발굴 · 해외업무 수행 전문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신설 · 해외업무의 수요발굴 (국제회의참석 및 설문조사)	- 목표: 해외업무 수행으로 국제적 위상 강화 · 해외업무 수행 전문 공무원 확보 · 해외업무를 위한 장비 확보	- 목표: 지속적 해외업무 확대로 국제적 위상 정착 · 신규 수요 발굴 및 지속적 해외업무 파견 등

5) 투융자

- 국가 어업감독공무원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단계별 투융자는 육상 및 양식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활성화와 전문인력의 교육, 해외수역 국제전문가 양성, 해외업무에 대한 수요발굴, 장비의 확보 등에 투입되며 제1단계에 약 48억원, 제2단계에는 41억원, 제3단계 25억원으로 총 약 114억원의 예산을 산정
- 육상·양식 불법어업 단속 활성화를 위하여 한 각 도별 육상단속 담당자를 선발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지도·단속 체계를 구축은 단계별로 1단계에 30억원, 제2단계에 50억원의 예산을 산정, 인력확충 및 교육은 해외수역 국제전문가 인력확충은 향후 지역수산기구의 가입증가 및 수요의 확대를 고려하여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는 각 6억원, 장기적으로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
- 해외수역 국제전문가 교육은 외국어교육 및 해외연수 등 제1단계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체계구축을 위하여 1.5억원을 산정하였으며, 제2단계와 제3단계에는 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연간 0.1억원을 투입

- 해외업무수요발굴은 원양선박 및 해외수역 입어 어업인대상 설문조사 및 해외수역의 현황파악 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장비확보는 해외수역에서 어업지도·단속을 위한 VMS 수신기, 단속정, 고성능 망원경 등의 단속 장비 및 국가 지도선의 대외적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어업감독공무원 복장 등에 대한 예산으로 제1단계에 10억, 제2단계에 12억, 제3단계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

<표 7-12> 육상·양식 및 원양으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 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육상·양식 불법어업 단속 활성화	30	22	-	52
해외수역 국제전문가 인력확충	6	6	8	20
해외수역 국제전문가 교육실시	1.5	0.3	0.4	2.2
해외업무수요발굴	0.3	0.6	0.8	1.7
장비확보	10	12	16	38
육상·양식 및 원양으로 업무영역 확대 합계	47.8	40.9	25.2	113.9

- 주1) 육상·양식 불법어업 단속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육상단속 담당자선발 130명(1인 연간 4천만원기준)으로 제1단계 30억원, 제2단계 22억원 소요
- 주2) 해외수역 국제전문가 인력확충 : 해외수역 국제전문가 40명(1인 연간 5천만원기준) 제1단계 12명, 제2단계 12명, 제3단계 16명 고용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총 20억원
- 주3) 해외수역 국제전문가 교육실시 : 외국어교육 및 해외연수 등 제1단계에서는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체계구축을 위하여 1.5억원을 산정하였으며, 제2단계와 제3단계에는 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연간 0.1억원을 투입
- 주4) 해외업무수요발굴 : 지속적 수요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개최 비용으로 제1단계는 연간 0.1억원, 제2단계와 제3단계는 연간 0.2억원으로 산정
- 주5) 장비확보 : 해외수역에서 어업지도·단속을 위한 장비 및 복장에 대한 투입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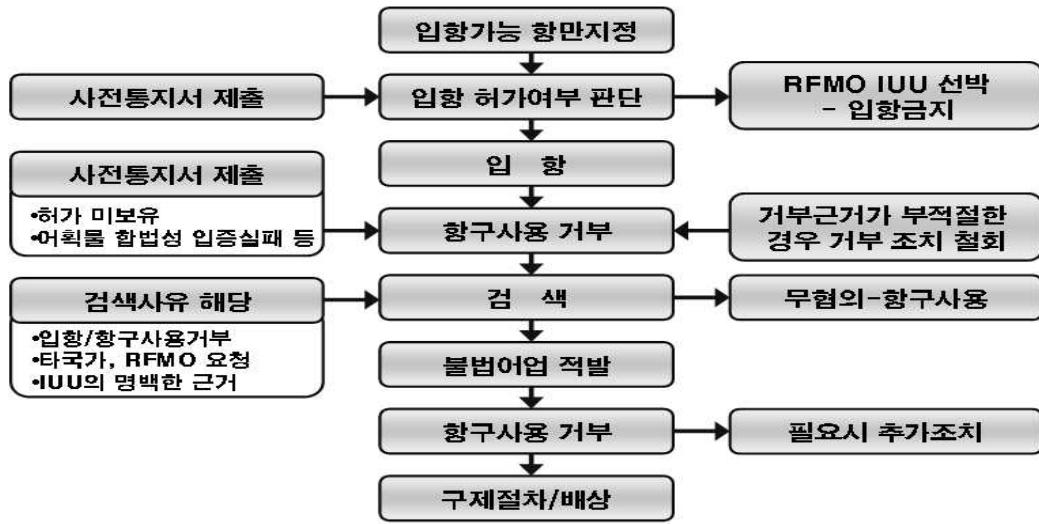
나.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

1) 현황

- 전세계적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을 근절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IUU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 주요수산국들은 IUU어업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 사항을 채택하고 국제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국제수산기구(ICCAT, CCAMLR)에서도 어획증명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EU는 IUU 근절조치를 입법화('09년)하고, '10년부터 전격 시행하는데 주된 내용은 모든 수산물(가공품)에 각국 정부가 인정하는 어획증명서를 부착하여야 함
 - FAO는 전 세계가 IUU 의심 선박 입항 금지, 검색, 항구사용 거부권 행사 등의 항구국 조치에 관한 문안을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인 IUU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수산물이 들어오는 각국 항구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됨에 따라 '구속력 있는 항구국 조치 협정'이 추진되고 있음
 - IUU어선 항구국 조치 협정은 '01년 입항선박의 IUU어업 관련성 조사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요구하는 IUU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IUU)가 채택되고 IPOA 채택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특성으로 인하여 25개국('06.6 기준)만이 NPOA를 수립하는 등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이행이 저조하였음
 - 제27차 FAO 수산위('07)에서 항구국 조치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노르웨이의 제안이 채택되어 협정 제정을 합의함
 - FAO에서 선정한 9개 국가 및 국제해사기구, 북동대서양어업위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07.9, 미국)에서 협정 초안이 마련됨
 - 4차례의 기술자문회의('08.6, '09.1, '09.5, '09.8) 및 2차례 비공식 회의('08.11, '09.3)을 거쳐 협정 문안을 도출되었음
 - 제88차 법적 및 현장 문제 위원회('09.9)에서 협정이 승인되었으며, 제 137차 FAO 이사회('09.9.28~10.2)에서 동 협정을 제36차 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정을 하였음. '제36차 총회에서 협정이 승인되었으며, 향후 1년간 서명이 개시되었음
 - 1년 이후부터 비준, 가입 절차가 개시되며 가입 이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항구국 조치 시행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입항가능 항만지정, 입항 허가여부 판단, 입항, 항구사용 거부, 검색, 불법어업 적발, 항구사용 거부, 구제절차/배상 등으로 구성됨



<그림 7-3> 항만국조치 흐름도

- 최근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09년 12월에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 FAO가 2001년 3월 2일 채택하고, 2001년 6월 23일 승인한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을 예방, 억제 및 근절시키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에서 정한 원칙을 기반으로 작성
 - 동 협정에서는 협력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당사자' 권한이 있는 대상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해양경찰청을 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2) 협정내용

-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의 목적은 효과적인 항구국 조치의 이행을 통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근절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과 해양 생태계의 장기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함
- 협정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은 10부 37조에 걸쳐서 작성되어 있음. 제1부는 총칙으로 제1조~제6조에 걸쳐 용어정리 및 협정의 목적,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2부(제7조-제10조) 입항과 관련하여 항구 지정, 항구 접근에 대한 사전 요청, 입항 허가, 승인 또는 금지, 불가항력 또는 조난시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제3부(제11조)는 항구 사용 관련 내용이며, 제

4부(제12조-제19조)는 각 국에서 실시해야하는 검색실시방법 및 절차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제5부(제20조)에서 제9부(제24조)까지는 기국의 역할, 개도국 요구사항, 분쟁해결,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내용이며, 제10부(제25조-제37조)는 협정과 관련한 서명, 비준, 승인, 가입, 발효, 잠정적용, 부속서 등의 부수조항들이 이에 포함됨

<표 7-13> 항만국조치 조문별 내용

구분	조문	주요내용
제1부 총칙	제1조~제6조	용어의 정의, 목적, 적용, 국제법과 기타 국제규범과의 관계,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과 조정, 협력과 정보 교환 방법
제2부 입항	제7조-제10조	항구 지정, 항구 접근에 대한 사전 요청, 입항 허가, 승인 또는 금지, 불가항력 또는 조난시 적용 내용
제3부 항구 사용	제11조	항구 사용 관련 내용
제4부 검색 및 후속조치	제12조-제19조	검색의 수준과 우선순위, 검색실시, 검색결과, 검색 결과의 송부 내용, 전자적 정보교환, 검색관 훈련, 검색 후 항구국 조치, 항구국 구제절차 통보 관련
제5부 기국의 역할	제20조	기국의 역할
제6부 개도국 요구사항	제21조	개도국 요구사항
제7부 분쟁해결	제22조	평화적인 분쟁해결
제8부 비당사자	제23조	동 협정의 비당사자
제9부 모니터링과 검토	제24조	모니터링과 검토 및 평가
제10부 최종 조항	제25조-제37조	서명 및 비준, 수락 또는 승인, 가입,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발효, 유보와 예외, 선언과 성명, 잠정적용, 개정, 부속서, 탈퇴, 수탁자, 정본

- 제1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어류, 어업, 항구, 선박 등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으며, 시사점을 살펴보면 동 협정에서 독립적으로 IUU어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어류는 가공여부를 관여하지 않고 어업관련활동에 포장, 가공, 연료, 장비 및 기타 물자 제공

을 위한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어업활동의 범위를 넘어 넓은의미의 어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7-14> 항만국조치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보전관리조치	협약에 반영된 내용을 포함한 국제법의 관련 규정과 부합되게 채택되고 적용되는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어류	가공여부에 관계없이 해양생물의 모든 종을 의미
어업	어류의 탐색, 유인, 위치 파악, 어획, 채포, 수확 또는 어류의 유인, 위치 파악, 어획, 채포 또는 수확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활동
어업관련활동	이전에 항구에서 하역된 적이 없는 어류의 양륙, 포장, 가공, 전채 또는 운송을 포함한 어업과 해상에서 인력, 연료, 장비 및 기타 물자 제공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활동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2001년도 FAO의 IUU에 대한 국제행동계획 제3조에서 정한 활동
당사자	동 협정에 의해 구속받을 것에 동의하고 동 협정이 발효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지칭
항구	양륙, 전채, 가공, 연료공급 또는 물자공급을 위한 역외 터미널 및 기타 시설을 포함
지역경제통합기구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포함하여 회원국이 동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이전한 지역경제통합기구를 지칭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보전관리조치를 수립할 권한이 있는 정부간 수산기구 또는 필요시, 약정을 의미
선박	어업 또는 어업관련 활동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되기 위한 장비를 갖추거나, 사용이 의도된 선박

- 적용대상 선박 제1조(c)·(d)·(j), 제3조에 근거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 선박(자국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음), 어업 및 어업관련 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선박임 .조업선, 운반선 뿐 아니라 급유선, 컨테이너 선박 등도 적용대상임
- 단, 어획물을 적재하고 있지 않거나, 既 하역된 어획물(예 : 참치캔)을 적재한 컨테이너 선박은 적용에서 제외됨

- 항구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제7조에 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항구국은 동 협정에 근거하여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지정하여 그 목록을 FAO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사전통지서 제출요구는 제8조에 근거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항구국은 입항허가 전에 해당 선박에 대해 부속서 A에 제시된 '사전통지서'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구체적 시간 규정은 없음
- 입항허가 또는 거부는 제9조에 나타나 있음. 항구국은 제8조의 사전통지서를 바탕으로 입항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선박에 통보 / 선박은 입항 시 관련 당국에 허가서 제출해야 함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RFMO)에서 관리하는 IUU 목록에 등재된 선박에 대해서 입항 거부
- 항구사용 거부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음.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IUU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입항은 허용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체의 항구 서비스(양륙, 환적, 연료 공급 등) 사용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기국이 발급한 유효하고 적용가능한 허가 미보유
 - 연안국 관할권에서 요구되는 유효하고 적용가능한 허가 미보유
 - 동 선박의 선상 어획물이 연안국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어획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받은 경우
 - 기국이 선상 어획물에 대한 합법성 입증에 실패한 경우
 - 기타 IUU에 가담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 검색은 제12조에서 규정하며, 최소한의 검색 수준은 RFMO, FAO 등을 통해 당사국간 합의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협정에 의해 입항 또는 항구 사용이 거부당한 선박, 다른 관련 당사국 또는 RFMO에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 IUU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검색 우선순위 부여할 수 있음
- 검색 후 후속조치는 제18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IUU어업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검색 당사국은 즉시 기국과 필요시 관련 연안국, RFMO, 국제기구, 선장의 국적국에 동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동 선박에 대해

어획물의 양륙, 환적, 포장, 가공, 연료 및 물자공급, 정비, 드라이도킹(drydocking) 등 일체의 항구 서비스 사용 거부하고, 필요시 국제법과 일관된 추가조치 가능함

- 협정 문안에는 없으나, 가능한 추가조치로 불법어획물 몰수가 논의된 바 있음

-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항구국의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와 보상권에 대한 정보를 선주 등이 서면으로 요청시 제공하여야 함

<표 7-15> 항만국조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주요항목	조항	내용	시사점
IUU의 정의	제1조(e)	01년에 FAO에서 채택된 'IUU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IUU, International Plan of Action)상의 정의를 따름	독립적 정의를 사용하지 않음
적용대상 선박	제1조(c)·(d)·(j), 제3조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 선박, 어업 및 어업관련 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선박 조업선, 운반선 뿐 아니라 급유선, 컨테이너 선박 등도 적용대상	적용대상 선박의 광범위함
항구지정	제7조	항구국은 동 협정에 근거하여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지정하여 그 목록을 FAO에 제출	-
사전통지서 제출요구	제8조	항구국은 입항허가 전에 해당 선박에 대해 부속서 A에 제시된 '사전통지서' 제출을 요구해야 함	사전통지서의 작성 및 진위여부 파악 필요
입항허가 또는 거부	제9조	항구국 사전통지서를 바탕으로 입항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선박에 통보 / 선박은 입항시 관련 당국에 허가서 제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관리하는 IUU 목록에 등재된 선박에 대해서 입항 거부	입항 여부결정을 위한 기관필요
항구사용 거부	제11조	IUU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입항은 허용하였으나 '기국이 발급한 유효하고 적용가능한 허가 미보유, 연안국 관할권에서 요구되는 유효하고 적용가능한 허가 미보유, 동 선박의 선상 어획물이 연안국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어획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받은 경우, 기국이 선상 어획물에 대한 합법성 입증에 실패한 경우, 기타 IUU에 가담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항구사용을 거부할 수 있음	항구사용 거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 및 능력이 필요

주요항목	조항	내 용	시사점
검 색	제12조	최소한의 검색 수준은 RFMO, FAO 등을 통해 당사국간 합의할 것 '동 협정에 의해 입항 또는 항구 사용이 거부당한 선박, 다른 관련 당사국 또는 RFMO에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 IUU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검색 우선순위 부여	검색수준 및 항구국 검색관 필요
검색 후 후속조치	제18조	IUU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검색 당사국은 즉시 기국과 필요시 관련 연안국, RFMO, 국제기구, 선장의 국적국에 동 사실을 통지 동 선박에 대해 어획물의 양륙, 환적, 포장, 가공, 연료 및 물자공급, 정비, 드라이도킹(drydocking) 등 일체의 항구 서비스 사용 거부	사실 통지를 위한 전담기구 필요 항구서비스 사용 거부 모니터링 필요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	제19조	항구국의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와 보상권에 대한 정보 제공	-

3)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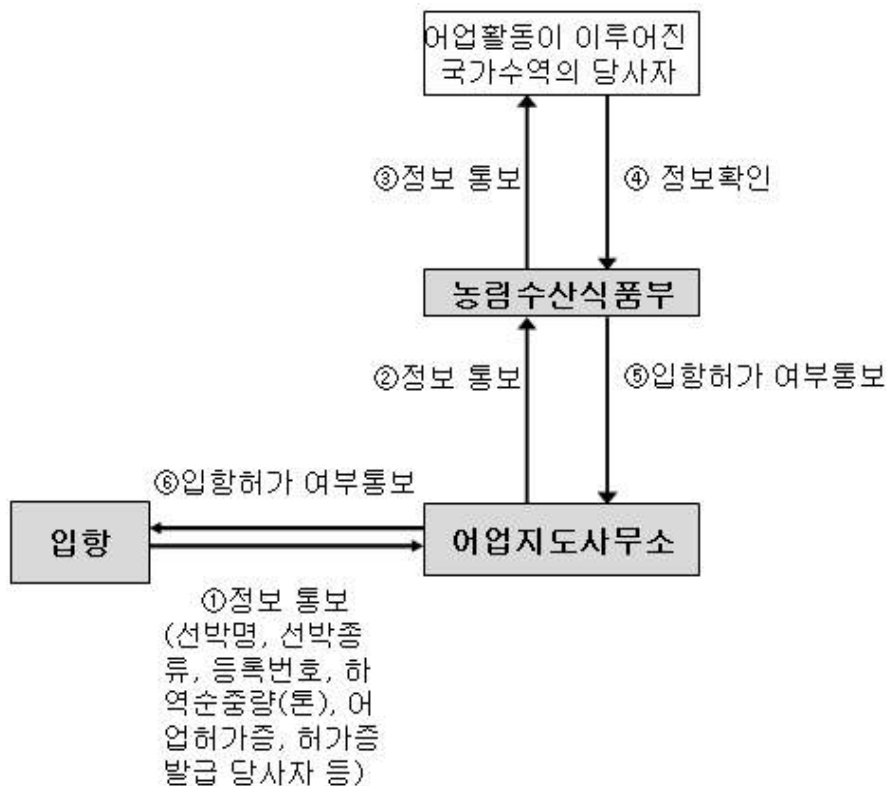
- 구속력있는 항구국 조치와 관련한 국내규정 및 근거 미약
 - 각 지방항만사무소에서는 개항질서법 및 항만법에 따라 항만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항내질서유지 및 항만운영관리를 위하여 입출항 신고·허가 업무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구속력있는 항구국조치 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이를 관장할 수 있는 국내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IUU어획물 감시를 위한 제도 없음
- IUU어선 항구국조치와 관련한 총괄기관의 부재로 책임있는 관리 미흡
 - 현재 우리나라의 IUU어선 항만국조치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기관이 명확하게 선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담하고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은 관세청의 세관에서 외국선박의 입항 및 항만시설관리는 국토해양부의 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업지도사무소를 비롯하여 어업지도선에는 최소 필요인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IUU어선 항만국조치에 관한 점담부서나 전문기구가 없는 실정임

- 농림수산식품부의 항만국 검색 업무 집행능력 미흡
 - 어업지도사무소 소속 어업지도선은 입출항 관련 항만국 통제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지 못함
 - 또한, 외국어선이나 어획물운반선의 입출항, 어획물 내용, 수량 등의 정보를 보고받거나 또는 그러한 정보를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수산기구가 요구하는 특정 관리어종에 관한 항만국 검색의 업무 수행이 용이하지 않음
 - 그러나, 관계부처의 통보에 기초하여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운반하는 선박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상을 항해할 경우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와 관련한 국제법규에 따라 해당선박을 선박을 정선시키거나 또는 회항시켜 검색업무 수행함
 - 그리고 검색대상 선박에 외국인이 승선하고 있거나 또는 외국선박일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황에서 국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색 또는 질문을 하여야 하나, 현재의 어업감독공무원들이 국내 어선을 주 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어구사능력을 가진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법 절차의 무지로 인한 국가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법 전문가 공무원이 없는 상황임

4) 개선방안

- IUU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총괄기관으로 담당하며, 항구국조치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획물 감시, 국외어선의 지도·단속 관련 업무는 어업지도사무소에서 관장
 - 러시아와 '09년 12월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4조 1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해양경찰청이 당사자에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IUU어선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수산물임을 고려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 불법어업의 지도·단속 업무는 지도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상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선에 대한 검색업무 수행은 국가어업지도선의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IUU 어선 항만국 조치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은 불법어업을 총괄하는 지도안전과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해양생물자원을 하역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항구로 입항하는 경우, 선박의 선장은 24시간 이전에 우리나라 어업지도사무소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선박의 등록서류에 명기된) 선박명, 선박의 종류, 어선의 등록번호, 어선의 국제호출부호, 선주이름, 각 종류의 해양생물자원별 하역 순중량(톤), 어선내의 해양생물자원의 어업허가증 유효기간, 발급날짜 및 번호, 조업허가증을 발급한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을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받은 정보를 24시간 내에 어업활동이 이루어진 국가수역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하여 해양생물자원 어업허가에 관한 정보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해양생물자원 하역을 위한 항구로의 입항 허가 여부 결정
- 해양생물자원의 하역을 위하여 우리나라 항구로 접근하고자 하는 어선이 IUU어선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선박의 항구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어선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와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



<그림 7-4> IUU협정 어선에 대한 항만국조치 체계(안)

○ IUU어선 항구국 조치와 관련한 국내관련 규정의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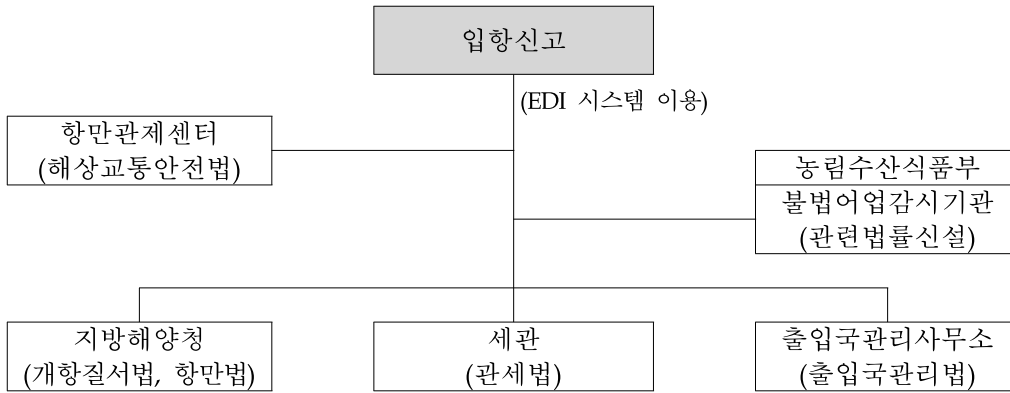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는 IUU 어선 항구국 조치와 관련된 국내규정 및 근거가 미약하여 이에 대한 조치 및 보완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수산업법에 항구국 조치를 포함 및 내부규정과 규칙 등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표 7-16> IUU/항구국 조치 관련 수산업법 개정(안)

구 분	내 용
현행 법	제72조(어업감독 공무원)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수정안	제72조(어업감독 공무원)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 <u>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승인된 국제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u>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 '구속력 있는 항구국 조치 협정' 포함

<표 7-17> IUU/항구국 조치관련 별도의 규정 및 규칙 신설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 분	내 용
항구지정	- 선박이 입항을 요청할 수 있는 항구 지정 - 지정 항구 목록을 FAO에게 제공
정보요구	- 선박에 대해 입항을 허가를 위한 정보요구 수준 및 절차 등
입항 허가, 승인 또는 금지 판단	- 판단 기관 및 판단의 근거, 입항 금지시 통보 절차 등
항구사용 판단	- 판단 기관 및 판단의 근거, 입항 금지시 통보 절차 등
검색임무	- 검색절차, 검색수준 등
항구국 검색관 자격	- 어업감독 공무원 등에 검색관 자격 - 한국국 검색관 교육이수
검색 후 후속조치	- 검색결과서 작성 및 통보 - 항구국 구제절차 등



<그림 7-5> 입항신고 업무흐름도 및 IUU어선 감시체계

○ 항구국 검색관 교육 및 전문가 양성

- ‘구속력 있는 항구국 조치 협정’ 제13조 2. (a)에 따르면 검색은 검색을 위한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적절하고 자격있는 사람에 의해 검색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 제17조에 각 당사자는 검색관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E에 따르면 항구국 검색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최소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항구국 검색관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

<표 7-18> 항구국 검색관 교육 지침

항구국 검색관 교육 프로그램
1. 윤리 2. 건강, 안전 및 안보 이슈 3. 적용가능한 국내법령,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리 수역 및 보전관리조치와 적용가능한 국제법 4. 증거 수집, 평가 및 보관 5. 보고서 작성 및 인터뷰 기술과 같은 일반 조사 절차 6. 항해일지, 전자 문서 및 선박 히스토리(선박명, 소유 및 국적)와 같이 선박의 선장이 제출한 정보의 검증에 요구되는 정보의 분석 7. 어창 검색 및 선박의 선적 용량 계산을 포함한 선박 탑승 및 조사 8. 다양한 종과 제품에 대한 전환율의 활용을 포함한 양륙, 전채, 가공 및 선상 어류에 관련된 정보의 검증 및 확인 9. 어종 식별과 체장 및 기타 생물학적 10. 선박과 장비 식별 및 검색과 장비 측정 기술 11. 설비 및 VMS 운영과 기타 전자 트래킹 시스템 12. 검색 후속 조치

-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제3항에서는 ‘각 당사자는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의 억제,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의 수산검사기구 및 이 협정 제4조에 언급된 기타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과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어족자원관리와 IUU 불법조업방지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관세청, 법무부, 해양경찰 등의 관련기관 공무원과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한 협조체계를 구축

- 이를 요약하면, 첫째, 관계부처 업무 분장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불법어업 감시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고, 둘째, 감독공무원 업무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업무범위를 IUU/항구국 조치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IUU/항구국 조치 세부규칙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부내용이 포함된 규정이나 규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넷째, IUU/항구국 검색관 교육과 관련하여 검색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표 7-19> IUU/항구국조치 관련 필요한 조치 요약

구분	현행	필요조치(안)	비고
관계부처 업무분장 관련	국토해양부 항만관제센터에서 총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불법어업감시 참여 필요	국토해양부와 협력 필요
감독공무원 업무영역 관련	IUU/항구국 조치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조문 없음	수산업법 제72조에서 감독공무원의 업무범위를 IUU/항구국 조치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수정 필요	수산업법 제72조(어업감독공무원)
IUU/ 항구국 조치 세부규칙	IUU/항구국 조치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구지정, 정보요구, 입항허가/승인 또는 금지 판단, 항구사용판단, 검색임무, 항구국 검색관 자격, 검색 후 후속조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음	IUU/항구국 조치관련 별도의 세부내용이 포함된 규정이나 규칙 신설 필요	관계부처 협력 필요
IUU/항구국 검색관 교육 관련	IUU/항구국 검색관 교육 지침이나 프로그램 없음	IUU/항구국 조치 지침에 따라 검색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IUU/항구국 조치 규정 참조

4) 기대효과

-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어족자원관리와 IUU 불법조업방지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국제수산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보
- 불법 어획물을 수입해온 무역업계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여 합법적인 거래 선으로 전환 가능하며, 불법 어획물의 수입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던 국내 어업인의 경영을 개선

<표 7-20>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	-목표: IUU어선 항구국조치 체계 기반마련 - 내용 · IUU어선 항만국 조치업무를 위한 인력확보 · 법 및 규정의 기반마련 ·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목표: 효율적 IUU어선 항구국업무 구축 - 내용 · IUU어선 항구국업무 체계 정립 및 공무원 교육확대 · IUU협정 확대	-

5) 투융자

-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IUU관련 국내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예산으로 제1단계('10~'12)에 0.5억원, 연구결과의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에 0.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지속적 사업으로 회의 및 간담회개최 비용으로 제1단계에는 '10년에 0.3억 '11년부터는 각 연간 0.1억원의 예산을 산정하여 0.5억원이 필요하며, 제2단계와 제3단계에는 연간 0.1억원의 예산 투입
- IUU관련 전문인력확보 및 공무원교육은 해외수역 국제전문가 인력확보와 해외수역 국제전문가 교육에 포함을 시키는 방안으로 예산의 추가편성 없음. IUU항만국조치와 관련된 국제회의참석을 위하여 연간 0.1억원의 예산 편성

- 항만국조치 총괄시스템 구축은 우리나라 항구에 접근하는 어선에 대한 상대국으로의 보고 및 정보전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1단계에 0.3억원의 예산 소요

<표 7-21>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 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국내관련 법·제도 정비	0.5	0	0	0.5
공청회 개최	0.3	0	0	0.3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회의, 간담회)	0.5	0.3	0.4	1.2
인력확보	0	0	0	0
공무원교육	0	0	0	0
국제회의참석	0.3	0.3	0.4	1.0
항만국조치 총괄시스템 구축	0.3	0	0	0.3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 합계	1.9	0.6	0.8	3.3

- 주1) 국내관련 법·제도 정비 : 연구용역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 주2) 공청회 개최 : 연구용역 결과를 통한 법·제도 개선사항 적정성평가
- 주3)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비용(연간 0.1억원 산정)
- 주4) 인력확보 및 공무원교육은 앞서 국가 어업감독공무원의 업무영역확대에 포함되므로 제외

다. 대어업인 서비스 영역 확충

1) 현황

- 현재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의료지원, 조난선박 구조 및 예인, 대어업인 물품 지원, 어업지도선 공개 등 어업인에 대한 복지 및 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의료지원은 해상의료서비스와 육상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조업을 위해 출어한 어선 및 의료기반이 미약한 도서지역에 대한 긴급환자 치료 및 투약, 후송, 현장방문 등을 수행
 - 해상 의료서비스 : 출어선에 긴급환자 발생시 치료, 투약 및 후송, 응급처치
 - 육상 의료서비스 : 공중보건의 현장방문 기초 진료 및 건강진단 등, 기초검진, 보건교육 및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등
 - 2004년 15건/23명에서 2008년 22건/22명으로 수행실적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음

- 조난선박 구조 및 예인은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수행
 - 우리나라 전 해역 특히 동해중간 및 대화퇴 등 해경관할구역 외각에서 발생하는 조난선 발생시 구조 후 항 포구까지 안전하게 예인조치
 - 기관 및 항해기기의 고장발생시 인적·물적 지원 및 긴급수리
 - 침몰선박 인명구조 및 수색작업 실시, 기타 출어선의 요청사항 지원
 - 2004년 10건에서 2008년 17건 수행실적의 미비하게 증가하였음

- 어업인 물품지원은 조업선의 유류소진 및 조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유류·식수·식량에 대한 부족현상을 서비스차원에서 지원

2) 문제점

- 현행 의료지원 및 물품지원, 조난선박 구조 및 예인 등 대어업인 서비스는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에 수행건수는 크게 많지 않으며 어업인들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운영구조 미흡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홍보의 미약 및 어업인 인식부족으로 활용도 낮음
 - 체계적인 운영구조의 미흡으로 인해 적극적 서비스 지원 어려움
- 어업지도사무소 부정적 인식으로 어업인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려움
 - 현재 국가 어업지도선에 있어서 업무의 특성상 여전히 어업인들은 단속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임. 즉, 서비스의 대상인 어업인이 서비스 공급주체인 어업지도사무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용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은 실정임

3)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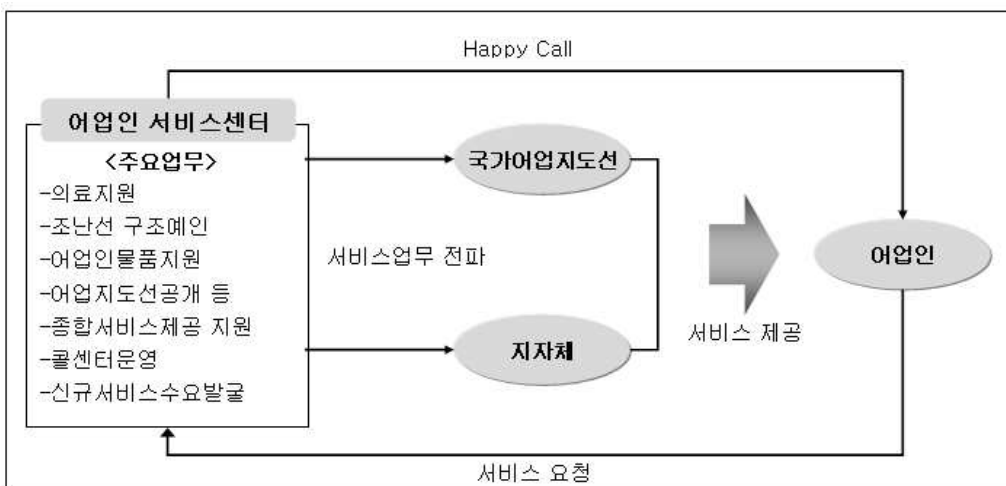
- 대어업인 서비스 영역의 확충을 위해서는 문제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 체계적인 운영구조의 수립, 어업인에 대한 홍보, 어업인 인식도 전환 등 선행되어야 함

- 체계적 운영구조 수립
 - 어업인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 운영구조의 수립은 크게 서비스센터 건립 및 서비스역량강화, 인력확충을 제시할 수 있음

- 서비스센터 설립 : 의료지원, 조난선박 구조 및 예인, 대어업인 물품지원, 어업지도선 공개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중앙관리를 할 수 있는 센터 설립하여 각 분야별로 효율적인 서비스공급체계 확보 필요. 향후 중장기적으로 Control tower건립시 포함 방안
- 역량강화 및 인력확충 : 현행 어업지도공무원은 단속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어 서비스 지원인원의 확충이 필요. 또한, 서비스영역의 역량강화는 어업인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서비스 수요개척을 위한 조사 실시

○ 어업인 홍보 강화 및 인식도 제고

- 어업인들이 쉽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스티커 제작 및 조업어선에 홍보 스티커 부착
- 콜센터 운용을 통한 어업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어업인 인식을 제고(어업인 서비스센터)



<그림 7-3> 어업인 서비스센터를 이용한 서비스 지원 시스템 도식(안)

4) 기대효과

- 어업지도·단속업무는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이며,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시키고, 어업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어업

지도사무소에 대한 불식을 해소

- 단속위주의 업무체계상 어업지도·단속업무 및 어업지도선에 대한 어업인의 부정적 인식을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

- 어업인 인식도제고를 통하여 교육, 계몽, 단속업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인 협조 등 이차적 효과 발생

<표 7-22> 어업인 서비스영역 확대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지도·단속 서비스영역 확대	- 목표: 어업인 서비스 영역 확대 기반 조성 - 내용 · 어업인서비스센터 건 립 · 서비스 홍보방안 마련	- 목표: 어업인 서비스 제공 확대 - 내용 · 신규서비스 수요발굴 (설문조사 간담회 등) · 인력 및 장비확충으 로 서비스 효율화	- 목표: 어업지도·단속 업무 인식제고 - 내용 · 어업인 서비스 센터 Control tower 포함 · 지속적 서비스 영역 확대

5) 투융자

- 지도·단속 서비스영역 확대와 관련하여 단계별 투융자 계획을 살펴보면, 어업인 서비스센터의 건립은 제1단계('10~'12)에서 완료되는 과제로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서비스 수요의 발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로 간담회, 어업인 및 관련인 설문조사 등 연간 약 0.5억원의 예산을 산정하여 제1단계('10~'12) 1.5억원, 제2단계('13~'15) 1.5억원, 제3단계('16~'19)에 2억원이 추정됨.
- 서비스 홍보는 지도·단속 서비스영역의 확대로 서비스 수요자인 어업인에 대한 인식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홍보책자의 발간 및 전문지, 매스컴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1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위하여 연간 1억원, 이후에는 연간 0.5억원을 투입

- 서비스장비확충은 현재 의료지원, 조난선박 구조 및 예인, 대어업인 물품지원, 어업지도선 공개 등 서비스 제공에 이용되고 있는 필요장비에 대한 구입 및 개선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제1단계에서 약 5억원, 제2단계 및 제3단계에서는 각 1억원으로 산정

<표 7-23> 어업인 서비스영역 확대를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 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계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어업인서비스센터건립	2	0	0	2
서비스 수요발굴 (간담회, 설문조사 등)	1.5	1.5	2	5
서비스 홍보	3	1.5	2	6.5
서비스장비확충	5	1	1	7
어업인 서비스영역 확대합계	11.5	4	5	20.5

- 주1) 어업인서비스센터건립 : 본원 및 한 개소 추가로 설립될 경우 여기에 신설하는 방안
- 주2) 서비스 수요발굴 : 간담회 및 설문조사 비용(연간 0.5억원 산정)
- 주3) 서비스 홍보 : 어업인 대상 홍보책자 및 마스크 홍보 등. 제1단계에서는 연간 1억원, 이 후에는 연간 0.5억원으로 산정
- 주4) 서비스장비확충 : 의료지원, 조난선박 구조 및 예인, 대어업인 물품지원, 어업지도선 공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의 확충

라.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 역할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어업인은 조업상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나 고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함
- 현재 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출동지도선 기상악화로 항·포구 피항시 간담회 추진 및 어촌계를 통한 간담회형식의 애로사항을 청취중. 또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및 어업인단체 간담회 개최하고 있음. 그러나, 어업인들에게 조업상 애로사항 및 지도·단속 의견 등에 대한 정부 의견개진 및 즉각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 어업인 단체 또는 수협을 중심으로 현안 파악 및 어업인 애로사항 청취

- 절차의 정형화 및 간담회 결과에 대해 정책과 연계부족
 - 정형화된 보고서 서식의 부재로 내용전달 명확성이 떨어짐
 - 본부대상 의견개진 및 홍보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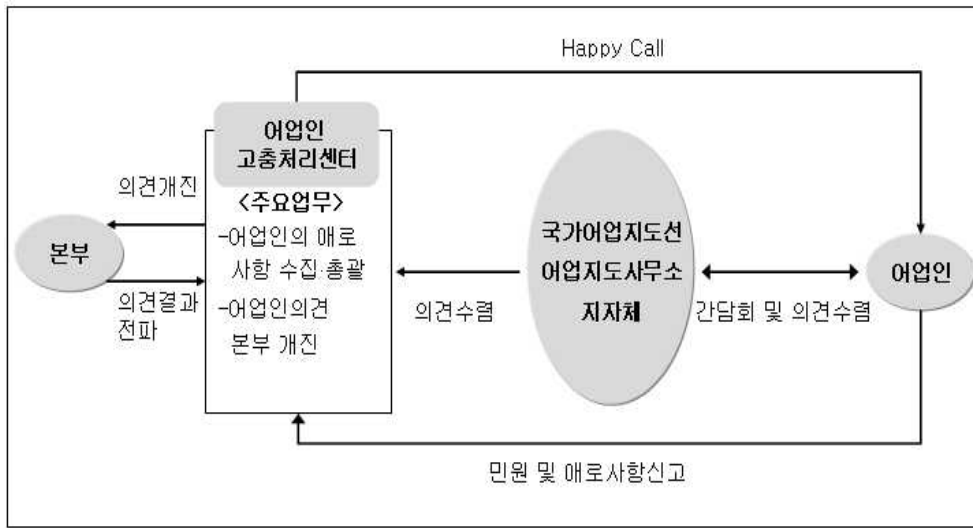
- 불편사항 개선내용을 어업인에게 적극 홍보 부족
 - '07년 이후 많은 불편사항을 개선한바 있으나 어업인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
 - 개인어업인에 대한 개선내용 전달 지연

2) 개선방안

- 현행 어업지도선 간담회 절차의 정형화와 간담회 결과의 책임성 부여
 - 대상 어업인 연락처 또는 주소확보로 간담회 처리결과 회신경로 마련 및 시급을 요하는 현안과제 확인 시 현장 해결이 어려울 경우 사무소 담당자와의 즉시 전화통화 조치

- 어업인 정기적 간담회 개최
 - 어업인 초청 또는 방문 간담회를 실시를 통한 어업지도선의 친절 이미지 부각
 - 민원 및 애로사항 이외 어업인 대상 각종 지원활동 수요 여부 파악

- '어업인 고충처리센터' 설립 및 운영
 - 단기적으로 어업인 고충처리센터를 설립하여 어업인의 애로사항 수집·총괄 및 본부를 대상으로 어업인의 의견개진 창구 역할
 - 자체적 Happy Call 제도의 운영으로 어업인에 대한 신뢰성 강화 및 어업인 인식제고



<그림 7-4> 어업인 고충처리센터를 시스템 도식(안)

3) 기대효과

- ‘어업인 고충처리 센터’를 통하여 민원 및 애로사항과 어업인대상 각종 지원 활동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지도·단속과 관련한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
- 어업지도선과 어업인간의 친밀도 상승 및 어업인 인식도제고를 통하여 교육, 계몽, 단속업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인 협조 등 이차적 효과 발생

<표 7-24>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	-목표: 어업인 고충해결 시스템 수립 - 내용 · 어업인고충처리센터 건립 · 고충처리 홍보방안 마련	- 목표: 어업인 의견반영 효율화 - 내용 · 어업인 의견반영 시스템 구축	- 목표: 어업지도·단속업무 인식제고 - 내용 · 어업인 고충센터 Control tower 포함

5) 투융자

-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어업인고충처리센터건립은 제1단계('10~'12)에서 완료되는 과제로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업인 의견반영 시스템 구축은 제2단계('13~'15)에 SMS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하는 시스템의 개발로 0.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 고충처리 홍보는 어업인 고충처리업무에 대한 업무 브로셔, 홍보스티커 및 전문지, 마스크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1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위하여 연간 1억원, 이후에는 연간 0.5억원을 투입

<표 7-25>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 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어업인고충처리센터건립	1	0	0	1
어업인 의견반영 시스템 구축(연구)	0	0.5	0	0.5
고충처리 홍보(스티커 및 광고)	3	1.5	2	6.5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 역할 합계	4	2	2	8

주1) 어업인서비스센터건립 : 본원 및 한 개소 추가로 설립될 경우 여기에 신설하는 방안

주2) 어업인 의견반영 시스템 구축 : 연구비용으로 0.5억원 산정

주3) 고충처리 홍보 : 어업인 대상 홍보스티커 발부 및 마스크 홍보 등. 제1단계에서는 연간 1억원, 이 후에는 연간 0.5억원으로 산정

마. 특사경 제도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특사경 지명의 법적 근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8호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에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
- * 관(官) :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리(吏) : 8급, 9급 공무원

- 현재 국가어업지도사무소의 특사경 지명현황(2009. 2월 기준)을 살펴보면 총 222명 (관 140 / 리 82)임
 - 동해어업지도사무소(125명) : 관 81 / 리 44
 - 서해어업지도사무소(97명) : 관 59 / 리 38
- 특사경의 임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속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 수산업법 제73조(사법경찰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단속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제23조(위반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승선·검색·나포 등
- 업무절차는 위반사범 단속·적발·인지 → 사건수사 → 사건 송치 → 보강수사(검찰) →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절차로 이루어짐
- 그러나, 현행 수산업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는 불법어업 행위단속에 국한되어 있고 어선에 대한 단속권은 없어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가짐
 - 어업허가는 어선에 부여하며 어선에 대한 전문지식과 어업현장에서 많은 어선 어업인과 대면을 하면서 “어선법”이 단속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근원적인 불법어업 단속 및 항·포구 등에서의 예방단속에 한계점이 있음
 - 무등록어선은 “어선법” 위반사항으로 일반사법경찰관의 권한사항
 - 어업감독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시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악용(고발시 업무집행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발)

2) 개선방안

- 법·제도적 개선을 하여 불법어업 행위뿐만 아니라 어선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개정 시 수산

관련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소속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뿐만 아니라 「어선법」에 관한 범죄 사항을 추가

3) 기대효과

- 현재 어선에 부여되고 있는 어업허가제도를 고려할 때 어선의 위반사항 단속을 사법경찰관의 업무 영역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근원적인 불법어업 단속 및 항·포구 등에서의 예방단속에 기여
- 무등록어선의 단속가능 및 공무집행의 효율성 등의 이차적인 효과를 가짐

<표 7-26> 특사경 제도개선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특사경 제도개선	-목표 : 특사경의 직무권한 확대 기반구축 -내용 - 어선의 위반사항 단속 직무영역에 확대 적정성 검토	-목표 : 특사경의 직무권한 강화 -내용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개정 - 특사경의 단속 활성화 및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	-

4) 투융자

- 특사경 제도개선 단계별 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여론수렴은 제1단계(10~12)에서 완료되는 과제로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표 7-27> 특사경 제도개선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 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제도개선 공청회 및 여론수렴	1	0	0	1
특사경 제도 개선방안 합계	1	0	0	1

주1) 제도개선 공청회 및 여론수렴 : 현행 제도의 변경을 위한 공청회 및 여론수렴 개최예산

바. 불법포경 감시 · 감독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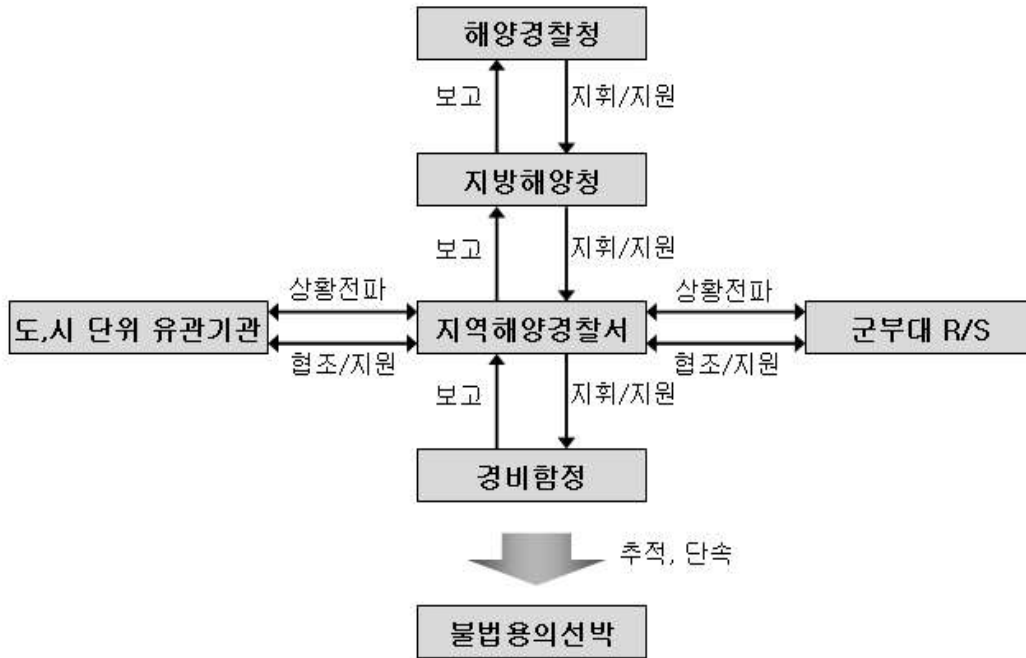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고래의 포획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 - 46호”의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및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 이서의 해역에서는 고래를 포획하지 못하며, 다만, 돌고래류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조사와 국민정서에 필요한 교육 및 관람용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포획이 가능
- 고래의 포획과 관련하여 포획의 금지는 상업포획 금지, 보호대상종, 멸종위기종 등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법령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실정임
 - 농림수산식품부(수산업법) : 연근해수역에서 고래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돌고래류는 과학조사, 교육 및 관람용 목적에 한하여 포획승인 허용
 - 국토해양부(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 IWC 관리종 중 8종(밍크고래와 돌고래류 제외)을 보호대상종으로 지정하여 포획금지
 - 환경부(야생동물보호법) : CITES 규제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수출·입 규제
-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 협약에 의해 상업포경이 금지되면서 고래 포획이 전면 금지됐지만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 즉, 혼획된 고래는 수협을 통해 위판이 가능함
 - 2008년 밍크고래 혼획 78건, 돌고래 혼획 398건
 - 최근 3년간(2006년~2008년) 연간 총 580두 중 약 82%가 통발·정치망·자망에 혼획, 이중 밍크고래는 연간 80두가 통발→정치망→자망 순으로, 돌고래는 연간 500두로 정치망→자망→통발 순으로 혼획되고 있음
- 고래위판시 밍크고래의 경우 수천만원, 돌고래의 경우 수백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최근 어자원 고갈 등으로 불법 포경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음. 최근 불법 고래 포획도 점차 기업형으로 변형되고 있으며, 유통구조 또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임

<표 7-28> 고래류 불법포획 현황

연도별	계	종별	
		밍크고래	돌고래
합계	48	39	9
2004년	9	8	1
2005년	9	3	6
2006년	4	2	2
2007년	14	14	-
2008년	12	12	-

- IWC는 1986년부터 상업포경 모라토리움을 시행하면서 협약 부속서 10(e)에 “늦어도 1990년 상업포경 모라토리움이 고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포괄적 자원평가를 수행하고 양적으로 풍부한 자원에 대하여 포획쿼타를 설정한다”고 규정
- 혼획·좌초된 고래에 한하여 판매 또는 식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어업과의 충돌,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고래자원의 이용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 또한, 최근 상업포경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근해 어업인들은 고래개체수의 증가로 인하여 어구피해 및 조업장해가 빈번해 짐에 따라 고래포획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
 - 고래전통문화의 유지·계승을 위하여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 포경의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
- 현재 불법포경의 단속업무는 해양경찰에서 전담을 하고 있으며, 그 단속업무의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음. 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불법포경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임
 - 해양경찰에서는 불법 고래 포획 등 고속 도주하는 불법 용의 선박에 대한 효과적 단속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 및 불법 고속도주 선박에 대한 상황별, 단계별 절차와 제반사항에 대한 단속 매뉴얼 작성 배포, 입체적 합동단속 계획 등 불법 고래포획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있음
 - 향후 상업포경의 재개가능성과 불법포경의 증가 및 조직화로 인하여 단속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 불법포경은 수산업법상의 위반행위인 불법어업이므로 어업지도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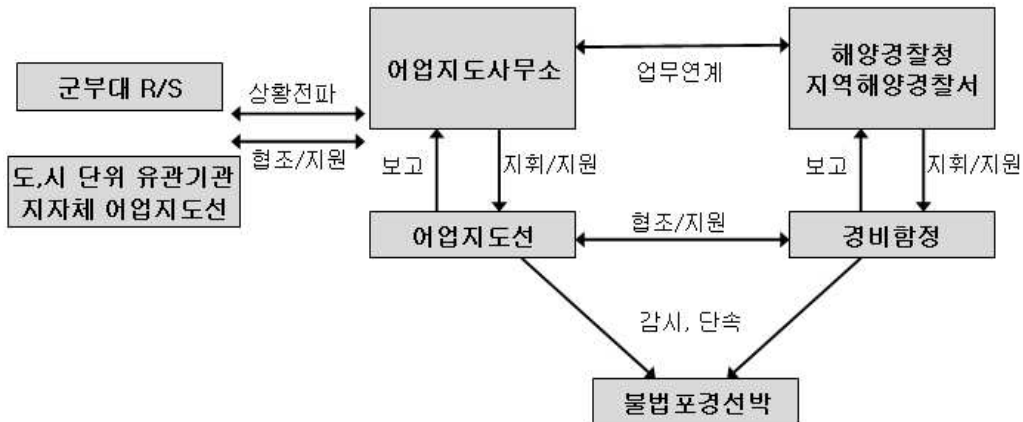


<그림 7-5> 해양경찰의 불법포경 단속체계

2) 개선사항

- 향후 상업포경의 재개와 지속적인 불법포경의 증가 등으로 고래관련 단속수요의 증가될 것을 고려하여 국가 어업지도선에서 불법포경의 단속에 대한 업무영역의 확대 필요
 - 현행 해양경찰에서 전담하고 있는 불법포경의 업무를 국가 어업지도선에서도 병행
 - 불법 고래 포획의 단속을 위한 단속공무원의 교육실시
 - 상황별, 단계별 절차와 제반사항에 대한 단속 매뉴얼 작성
 - 불법포경의 업무영역의 확대

- 해양경찰과의 업무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
 - 해양경찰의 헬기 동원 및 군부대의 협조 등을 고려
 - 정기적 합동단속 및 불법용의선박의 도주시에 업무연계를 통한 단속



<그림 7-6> 불법포경 단속 개선체계

- 현행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고래의 포획과 관련된 법령의 통폐합 필요.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수산업법을 정리하여 불법포경의 패널티 강화 및 관련규제의 단일화를 시행하여야 함

3) 기대효과

- 해양경찰과의 불법포경의 합동단속 및 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감시 체계의 구축 및 단속의 효율성 강화 가능
- 강력한 불법포경 단속으로 인해 IWC 및 국제사회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인 고래자원의 보존을 위한 규정준수 국가의 위상을 재고 할 수 있음

<표 7-29> 불법포경 업무개선 명칭개선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불법포경 업무개선	-목표 : 어업지도사무소 불법포경 단속시스템 기반 마련 -내용 - 불법포경 단속 교육실시 - 단속 매뉴얼 작성	-목표 : 체계적 불법포경 단속체계 구축 -내용 - 해경 및 해군과의 합동 단속체계 구축 - 불법포경 단속업무 확대	-

4) 투융자

- 불법포경 업무개선 명칭개선 단계별 투융자계획은 불법포경 단속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제1단계('10~'12)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매뉴얼개발과 어업단속 공무원의 교육이 주요사업내용이며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불법포경단속업무의 확대는 해양경찰과의 업무연계와 국가 어업지도선에서 불법포경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제2단계('13~'15)와 제3단계('16~'19)에 각 0.5억원으로 산정

<표 7-30> 불법포경 업무개선 명칭개선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 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불법포경 단속 매뉴얼 마련 및 교육	2	0	0	2
불법포경 단속업무확대	0	0.5	0.5	1
불법포경 업무개선 합계	2	0.5	0.5	3

주1) 불법포경 단속 매뉴얼 마련 및 교육 : 교육자료 및 교육시스템구축, 단속 매뉴얼 작성에 투입되는 예산

주2) 불법포경 단속업무확대 : 제2단계부터 소요되는 예산으로 업무확대로 사용되는 예산 총액 포함

제2절 어업지도·단속 운영체제 개선방안

1.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방안

가. 어업지도사무소 명칭 변경

1) 현황 및 문제점

- 기관 명칭이 「어업지도선사무소」를 거쳐 「어업지도사무소」로 변경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능은 여전히 과거에 정지된 상태임
 - 수산자원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보다는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 및 관리 기능에 중점
 - 어항건설 관련 업무 이관 등 어업지도사무소의 업무영역은 확대되었으나,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국한된 기관명칭 사용
- 어업지도 및 어항건설을 업무를 아우르고 조직 발전성 및 기관위상 제고를 위한 명칭변경이 필요함, 기관위상 제고를 위한 기관명칭 변경 방안이 제기됨
 -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의견 수렴 결과, '서해수산청'으로 명칭 변경을 희망하였음 (2009년)
- 기존의 규제 지향적 명칭에서 탈피하여 대국민 지원형 명칭으로 새로운 이미지 제시가 필요함
 - '국가사무'와 '고유업무' 영역을 고려한 포괄적 명칭을 고려

2) 개선방안

- 규제 지향적 명칭에서 탈피, 대국민 지원형 명칭으로 새로운 이미지 제시
 - 어업관리 및 수산자원회복정책 등을 직접 지원하는 명칭
 -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가사무'와 '고유업무' 영역을 고려한 포괄적 명칭
- 어업지도사무소의 주요기능 및 업무를 고려하여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무소의 기능 및 주요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국내 및 국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

- 어선의 안전조업, 조업환경개선, 의료지원 등 어업인 서비스 제공
 - 자원관리어업, 수산자원회복 정책 등의 추진을 현장에서 지원
 - 기타 어항사무소, 광역수산조정위원회 등 부수업무 지원
- 본 연구에서는 명칭에 관하여 4가지(안)을 검토하였으며, 이 중에서 과거의 해양수산청 기능을 참고하고, 향후 지도·단속 업무는 단속에 강조하는 것 보다는 어업인 서비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수산부문의 종합적인 기능 담당(지도·단속, 어항관리, 자원관리, 자원회복, 의료 지원, 어선수리 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제2안인 '○○수산관리청'을 1순위로 제시함
- 어업지도·단속 관련 기관 및 공무원의 의견반영시 제4안의 '○○수산관리종합센터'에서 센터라는 용어는 조직이 담당하는 규모 및 역할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7-31> 지도사무소 명칭개선(안) 제시

구분	개선(안)	사유	순위
제1안	○○ 수산청	어촌지도소 업무 등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청'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측면 강조	3
제2안	○○ 수산관리청	지도·단속 업무뿐만 아니라 어항 업무 및 종합적 어업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포괄적 용어 사용	1
제3안	○○ 수산자원관리청	수산자원관리 및 수산자원회복 등을 위한 분쟁조정 업무도 포함하고 있고, 지도·단속 업무는 궁극적으로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있음을 강조	4
제4안	○○ 수산관리종합센터	안전조업, 조업환경개선, 의료지원 등 종합적 어업인 서비스 제공 기능 강조.	2

3) 기대효과

- 명칭변경을 통하여 어업지도 및 어항건설을 업무를 아우르고 조직 발전성 및 기관위상 제고함. 또한, 기존의 명칭이 가져다주는 규제 지향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대국민 지원형 명칭으로 새로운 이미지 제시 가능
- 기관명칭 변경으로 기존의 어업지도·단속업무 중심에서 수산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의 이미지 구축

<표 7-32> 어업지도사무소 명칭개선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어업지도사무소 명칭개선	-목표: 새로운 명칭개선으로 이미지재고 - 내용 · 명칭개선	-	-

5) 투융자

- 어업지도사무소 명칭개선에 대한 투융자계획은 명칭개선으로 인한 제반여건의 수정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제1단계(10~12)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총 4억 원을 비용을 산정

<표 7-33> 지도사무소 명칭개선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 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명칭개선에 따른 제반여건 수정	4	0	0	4
지도사무소 명칭개선 합계	4	0	0	4

나.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지도·단속조직과 기능은 다양하고 변화된 어업현실을 반영하기 역부족임
 - 불법어업 형태의 치밀화, 불법어구의 교묘한 변형, 어획 대상물을 둘러싼 업종간 다툼, 어업인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수산관련 제도의 문제점 제기 빈발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등의 문제 발생
 - 단속과 지도를 위해서는 관련정보가 중요하나 이에 관한 기능과 조직이 부각되지 못한 상태임
- 효율적인 단속과 어업지도선 운항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분석기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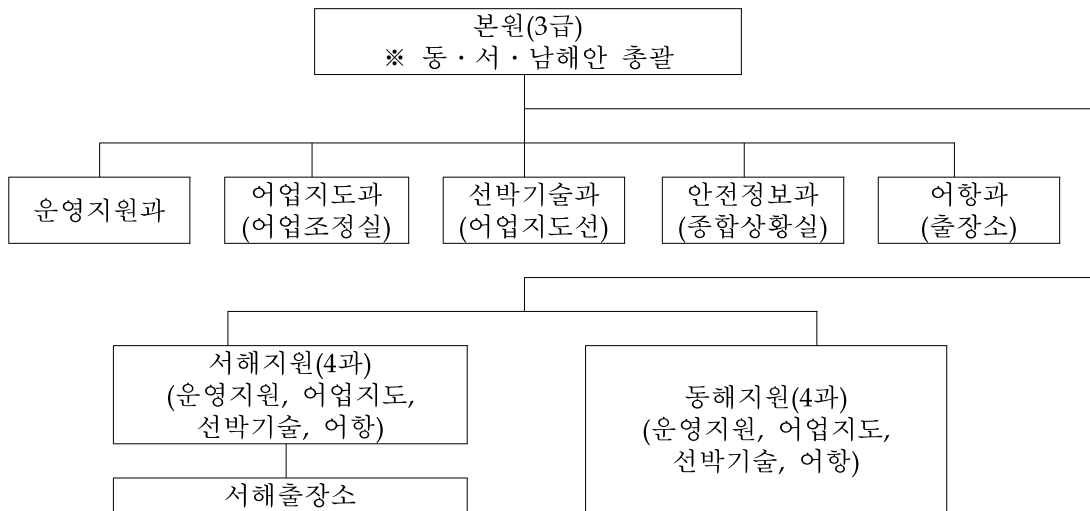
-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기능이 없어 비효율적인 단속과 어업지도선 운항으로 인한 낭비요인 발생
- 종합수산행정을 수행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지도·단속조직과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함
 - 어업분쟁 조정, 어업지도, 불법어업 정리지역 사후관리 등
- 그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불법어업은 성행하고 있어 지도·단속 방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
 - 현재 '단속'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도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나 기초단계에 불과
-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이 없어 비효율적인 단속과 어업지도선 운항으로 인한 낭비요인 발생
- 고객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능과 조직을 이에 부합하게 재정비 필요
 - 어업분쟁 조정, 어업지도, 불법어업 정리지역 사후관리 등
- 지방해양청 '어항공사과'의 어업지도사무소 편입 등 향후 종합수산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화에 대비
- 따라서, 업무 방식과 업무량 변화에 부합하게 국가 어업지도사무소의 기능 및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어업지도사무소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기능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함

2) 개선 방안

가) 제1안

- 현행 2개 어업지도사무소 체제에서 남해본원(3급)을 신설하고 2개의 동해 및 서해지소(원)을 소속기관으로 운영. 서해에는 1개 출장소를 추가운영하여 현재 2개 사무소 체제에서 본원 및 1개 출장소를 신설하는 방안

- 동해 : 동해안, 한·일 협정수역, 동해 EEZ, 러시아 입어수역 담당
 - 서해 : 서해안, 한·중 협정수역, 서해 NLL 담당
 - 본원(남해 포함) : 총괄업무 및 남해안 관할, 한·일 협정수역, 중·일 협정수역, 공해
- 사무소 위치는 업무구역, 접안시설, 정주환경 등을 고려하여 동·서해사무소 직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선정함. 또한 어항사무소 업무, (가칭)해역별 수산조정위원회 등 지도·단속업무 외의 업무는 해당 부서(국)에서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체제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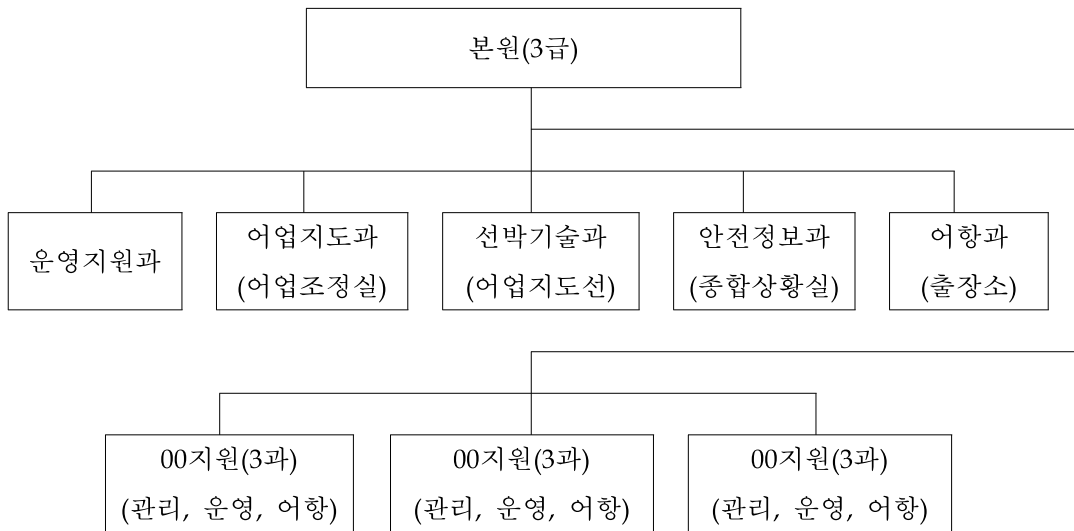


<그림 7-7> 1안(남해 본원 1, 지원 2, 출장소1)

나) 제2안

- 현행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를 3개 사무소로 개편하고, 이를 총괄하는 본부를 신설
 - 본원을 두어 총괄업무 및 남해권 해역관리를 병행하고, 동해와 서해에 3개의 지원을 설치하여 소속기관으로 운영
 - 별도의 본부기관(3급)을 신설하고, 3개 지소(원)를 소속기관으로 운영
 - 현 2개 사무소체제에서 본원 및 1개 지원을 신설
- 사무소 위치는 업무구역, 접안시설, 정주환경 등을 고려하여 동·서해사무소 직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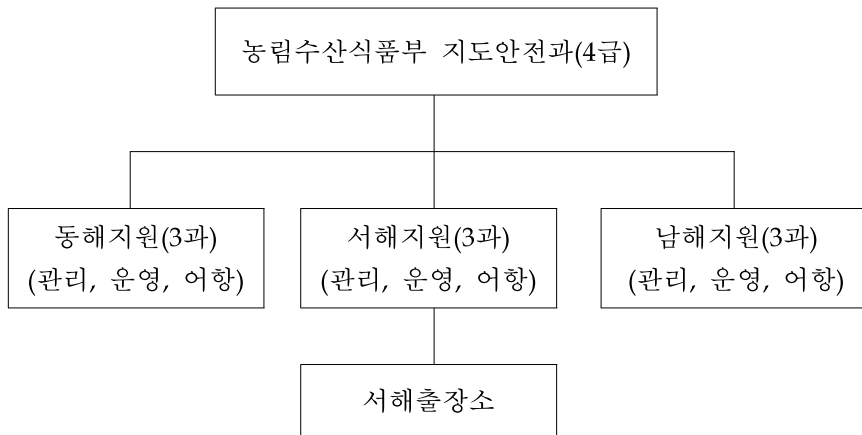
- 어항사무소 업무, (가칭)해역별 수산조정위원회 등 지도·단속업무 외의 업무는 해당 부서(국)에서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체제를 유지
 - 본원(지소)는 사무실 제공 등 해당 업무활동을 지원
 - 중장기적으로는 본부 조직개편과 연계, 업무 추진체계개편



<그림 7-8> 2안(본원 1, 지원 3)

다) 제3안

- 별도의 본부기관 신설 없이 동·서·남해지소(원)을 증설하는 방안, 서해지원에는 1개 출장소를 운영. 현 2개 사무소 체제에서 1개 지원, 1개 출장소를 신설
 - 동해 : 동해안, 한·일 협정수역, 동해 EEZ, 러시아 입어수역 담당
 - 서해 : 서해안, 한·중 협정수역, 서해 NLL 담당
 - 남해 : 남해안, 한·일 협정수역, 중·일 협정수역, 공해
- 사무소 위치는 업무구역, 접안시설, 정주환경 등을 고려하여 동·서해사무소 직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선정함
- 어항사무소 업무, (가칭)해역별 수산조정위원회 등 지도·단속업무 외의 업무는 해당 부서(국)에서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체제를 유지



<그림 7-9> 3안(3개지원, 1개 출장소남해 증설)

- 지금까지 제시한 제1안에서 제3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제1, 2안은 현행 2개 사무소를 2~3개 사무소로 개편하고 이를 총괄하는 본부를 신설하는 것이며, 제3안은 별도 본부 기관 신설 없이 동·서·남해지소(원)을 증설하는 것임

<표 7-34> 어업지도사무소 조직 개편(안) 요약

구분	조직	업무 영역
제1안	본원(남해) 1, 동해 및 서해 각 1개소, 1개출장소	동해 지원: 동해안, 한·일 협정수역, 동해 EEZ, 러시아 입어수역 담당 서해 지원: 서해안, 한·중 협정수역, 서해 NLL 담당 남해 본원: 총괄 및 남해안, 한·일 협정수역, 중·일 협정수역, 공해
제2안	본원 1, 지소(원)3 사무소로 개편	남해 본원 : 남해안, 한·일 협정수역, 중·일 협정수역, 공해 3개 지원 : 동해와 서해에 3개 지원 설치
제3안	본원 신설 없이 동서남해지원 증설, 1개출장소	동해 : 동해안, 한·일 협정수역, 동해 EEZ, 러시아 입어수역 담당 서해 : 서해안, 한·중 협정수역, 서해 NLL 담당 남해 : 남해안, 한·일 협정수역, 중·일 협정수역, 공해

- 주 1) 사무소 위치 : 업무구역, 접안시설, 정주 환경 등을 고려
 2) 어항사무소 업, (가칭)해역별 수산조정위원회 등 지도·단속업무 외의 업무는 해당 부서(국)에서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체제를 유지

<표 7-35> 명칭 및 지도·단속 조직개편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추진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지도·단속 조직개편	- 목표 : 조직개편(안) 및 예산확보 - 내용 : 조직개편(안) 마련 및 시행	- 목표 : 조직개편 추진 - 내용 : 조직개편(안) 시행(계속)	- 목표 : 조직개편 정착 - 내용 : 지도·단속업무 실효성 극대화

3) 기대효과

- 동·서·남해 해역 및 조업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산행정서비스 제공
 - 조직재편으로 해역별 어업조정과 맞춤형 어업관리 등 신개념 수산발전 정책 추진방향에 부응
- 한·중, 한·일 어업협정수역 및 동·서 접경해역(NLL)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 우리 EEZ 수역의 외국어선 단속 및 어업협정수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서특정해역 및 접경수역에 대한 신속·상시대응 추진
- 거점 해역별 어업지도선 배치를 통한 어업지도선 운항경비 절감 및 업무특성화를 통한 어업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 거점 기관별 어업지도선 운항을 통해 현장중심의 행정효율을 기하고, 어업지도선 운항거리 및 시간 단축을 통한 운영 경비절감
 - ※ 연간 어업지도선 유류비 절감 추정액 : 1,078백만원(총 유류비의 7.7%)
- 현행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체제의 업무구역 불균형 및 직원배치의 비효율성 해소
 - 직원들의 서해 어업지도사무소 근무기피에 따른 양 어업지도사무소 체제의 업무구역·지도선 배치 불균형 및 업무공백 문제 해소

4) 투융자

-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은 각 대안별로 소요되는 예산의 차이가 있어 예산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 동 연구에서는 지도·단속체계개편 여론 수렴 및 공청회, 지도·단속 조직 신설 및 이전, 업무체계개편이 이에 포함됨
- 지도·단속체계개편 여론 수렴 및 공청회 개최는 제1단계('10~'12)에서 완료되는 과제로 2억원을 투입하며, 조직의 신설 및 이전은 신설에 따른 건물, 토지의 구입 및 임대료, 이전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제1단계('10~'12)에 100억원으로 추정
- 업무체계 개편은 신설 및 이전 이후에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장비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제1단계('10~'12)와 제2단계('13~'15)에 연간 1억원씩 산정

<표 7-36>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 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계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지도·단속체계개편 여론 수렴 및 공청회	2	0	0	2
지도·단속 조직 신설 및 이전	100	10	5	115
업무체계 개편	3	3	0	6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합계	105	13	11	123

주1) 지도·단속체계개편 여론 수렴 및 공청회 : 조직개편을 위한 공청회개최 및 여론수렴을 위한 예산 공청회2회, 여론수렴 설문조사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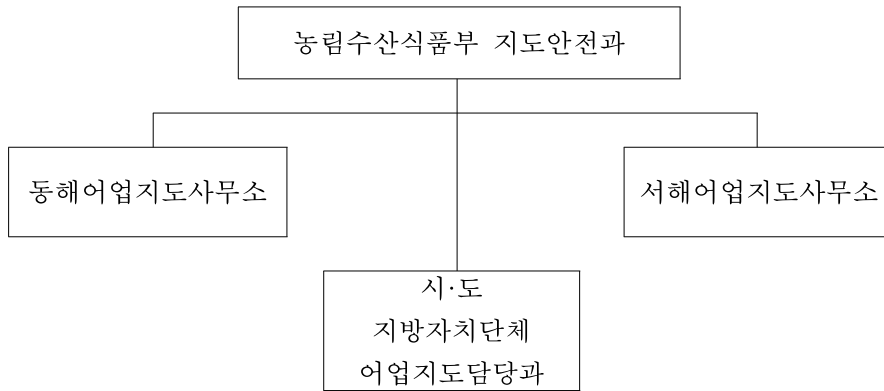
주2) 지도·단속 조직 신설 및 이전 : 각 대안별로 투입되는 예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동연구에서는 건물 및 제반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정 제1단계에서 신설 및 이전비용으로 100억원 추정

주3) 업무체계 개편 : 제1,2단계에서 완료되는 사업으로 연간 1억원 산정

다. Control tower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동해와 서해 어업지도사무소 및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담당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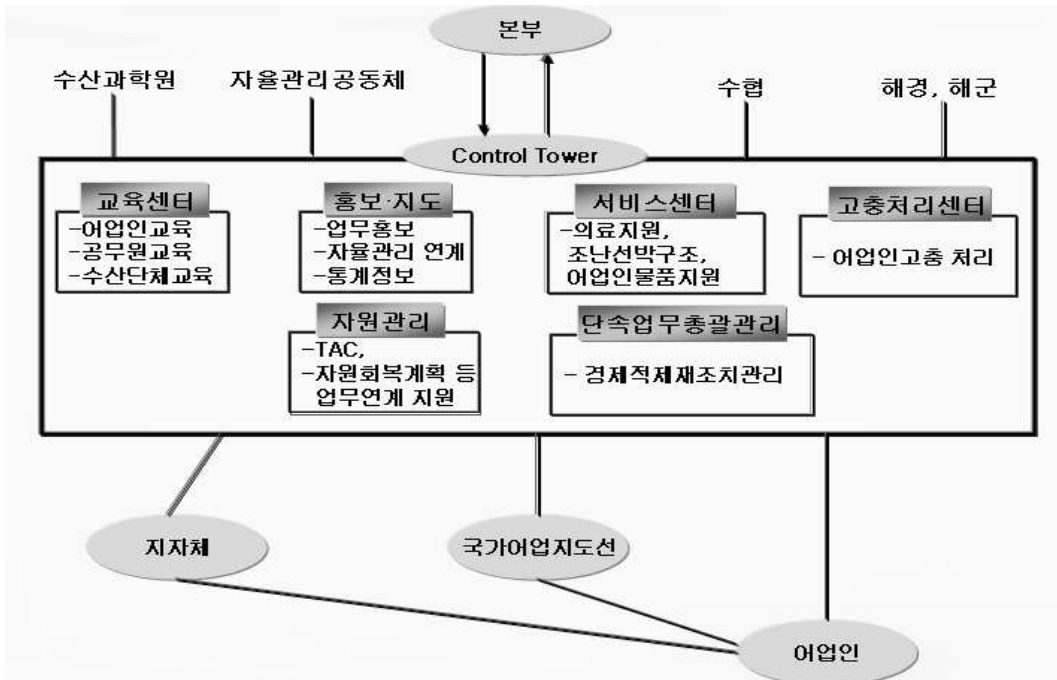
<그림 7-10> 현행 어업지도·단속 조직체계

-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현재의 체제는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에서 지도·단속업무의 총괄을 하고 있으나 향후 서비스센터 및 어업인고충처리센터, TAC 및 자원회복계획지원 등 다양한 업무영역으로의 확대에 따른 총괄적 관리는 현행체계 하에서 업무수행 한계점을 가질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각 지도안전과와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의 현행 조직체계에서의 중복된 업무에 대한 운영비용의 과다사용, 어업인의 의견 및 어업인 지원서비스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에서는 처리절차에 있어 처리단계의 다단계성으로 인한 서비스처리 지연문제 발생, 또한 독립적 운영을 하고 있는 지도사무소간 동일하지 못한 어업인서비스로 인한 불화 등의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음

2) 개선사항

- 중장기적으로 지도·단속 조직의 개편이후 지도·단속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 단체의 설립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Control tower를 설치로 인한 효과는 첫째, 종합적 업무처리 기관의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음. 둘째, 총괄 콜센터의 운영 및 인력의 중복적 사용 감소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의 감소효과. 셋째, 어업인 의견 개진 및 대어업인서비스, 교육의 체계화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넷째, 종합적 단일 기관의 운영으로 정책의 변화 및 현실의 반영에 대한 운영체계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 다섯째, 지도·단속업무의 총괄을 통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분장 및 업무연계에 있어서 효율성 상승 및 위상확보. 여섯째, 각 업무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등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가짐.
-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센터 및 어업인고충처리센터, 교육센터, 홍보센터 등을 포함한 단속업무의 총괄관리와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 등을 종합하여 운영하는 Control tower를 설치함으로써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그림 7-11> 어업지도·단속 Control Tower 조직체계

- 앞서 언급한 조직체계 개편의 1안과 2안에서 제안된 남해본원의 설치시에는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본원 내부에 설치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3) 기대효과

- 종합적 업무처리기관의 설립으로 어업인 및 관련기관 지원 효율화
 - 일원화된 기관에서 종합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어업인 및 관련기관에게 연계 및 업무협력의 요청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
 - 각 업무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어업지도선에 대한 지도·단속업무 지원 효율화
- 어업지도·단속업무의 대외적 위상강화
 - 대표성 있는 조직의 건립으로 인하여 어업인 및 대외적 위상강화

<표 7-37> Control Tower건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추진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Control Tower 건립	- 목표 : 어업지도·단속 총괄기관 설립기반조성 - 내용 : Control Tower 업무영역 및 범위검토	- 목표 : 어업지도·단속 총괄기관 운영 - 내용 : Control Tower 건립 및 종합적 업무영역 확보	-

4) 투융자

- Control Tower건립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제1단계(‘10~’12)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Control Tower건립 업무영역 및 범위검토를 위한 공청회 및 여론수렴에 2억원을 투입, Control Tower건립과 종합 업무영역 확보는 제2단계부터 추진되는 과제임

<표 7-38> Control Tower건립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 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Control Tower건립 업무영역 및 범위검토	2	0	0	2
Control Tower건립	0	15	2	17
종합 업무영역 확보	0	1.5	2	3.5
Control Tower건립 합계	2	16.5	4	22.5

주1) Control Tower건립 업무영역 및 범위검토 : 공청회 및 여론수렴, 각 업무별 연계 및 적정 범위를 위한 연구를 포함

주2) Control Tower건립 : 본원 및 한 개소 추가로 설립될 경우 여기에 신설하는 방안

2. 사건처리체계 개선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업지도선이 해상순시 중에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을 인지한 경우, 그 인지한 시점에서의 불법어업의 단속절차는 제4장 제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법어업을 행하고 있는 어선을 현장에서 인지하였을 경우 그 어선이 항해중인 경우에는 정선명령을 발하여 어선을 정선시키고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용 보트를 이용하여 어선에 승선하여 위반사실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임
- 현장에서 위반사실의 확인과 더불어 어업지도사무소 상황실을 경유하여 신원·선적·허가사항 등을 조회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어선의 구체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벌 또는 사법처리 대상을 구별하여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의 사건조사를 행함
- 그리고 위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어구 및 어획물을 임의제출 받아 어업지도선에 이적함으로써 제1차 조사를 완료한 후 어선을 석방하거나 또는 항·포구로의 회항을 명함
-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입항한 후 사건일체를 어업지도사무소에 이첩하면, 어업지도사무소에서 그 위반어선의 위반사실에 대해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 등의 송치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 수사를 종료함
- 그러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어업지도선 관할 소재지 이외의 행정관청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아 사건일체를 어업을 허가한 행정관청에 이송하고,(단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자체 송치) 어업지도선 관할 소재지의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의 보완조사를 함

- 허가어선일 경우에는 허가한 행정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무허가어선일 경우에는 소환하여 범죄경력조회 등의 사건송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 및 압수물 처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함. 이 때 사법처리의 대상 중 구속사유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을 신청함

나. 개선방안

- 불법어업은 처음부터 불법어업을 행하겠다는 의도로써 적법한 어구를 탑재하지 않고 불법어구로 행하는 경우와 적법한 어구를 이용하여 어업활동을 하던 도중에 고의로 행하는 경우 및 과실로 불법어업을 행하는 경우 등 다양함
- 적법한 어구도 없이 불법한 어구로 어업을 할 경우에는 논할 것도 없지만, 어업활동을 영위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금지구역선을 월선한다든지 또는 체장제한 이하의 어류를 채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과실에 기인한 불법어업을 사건처리 흐름도에 따라 불법어업인을 처리한다면, 어업활동을 방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정부는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여 근절시켜야 할 책임도 있지만,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조장하고 보장하여야 할 책임도 있음.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또한 지도·단속하는 것은 어업인들이 어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므로,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불법어업인이 아닌 단순한 법규의 위반과 같은 불법어업에 대하여 해상에서 여죄를 묻고, 다시 합법적인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을 보호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불법어업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어업감독공무원이 해상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 경우 범칙금 통지서의 교부범위와 한도를 정하고 어업감독공무원에 의한 범칙금통지서 발부가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그 뿐만 아니라,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어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위반현장에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중국은 어업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어정선의 공무원들이 불법어업의 위반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서 해상에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어정검사원은 해상 혹은 어항에서 법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불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했을 때는 자연인에 대한 50위안 이하, 법인 혹은 기타의 조직체에 대해서는 1,0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 등의 처벌권을 행사 할 수 있고, “행정처벌결정서”를 기입하여 당사자에게 발급함⁴⁶⁾
- 범칙금 통고제를 통한 사건 처리 개선(안)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구어법 전문가 및 어업인 의견 수렴 후에 구체적인 종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7-39> 범칙금 통고제를 통한 사건처리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방안	비고
주요 내용	불법어로행위로 인해 적발시 일반사법처리 절차에 따라 어업지도선-검사-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벌금/과태료/몰수, 또한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징수	불법어업을 행하는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보호 및 조장을 위하여 단속 공무원이 해상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미한 불법어업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도’ 신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구어법 전문가 및 어업인 의견 수렴 후 구체적 종류 제시
대상	모든 불법 행위 해당	금지구역위반, 금지체장 위반	

다. 기대효과

- 경미한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의 정착으로 어업인의 조업권 리확보 및 어업감독공무원의 위상 강화
- 불법어업의 위반 유형과 그 정도에 따른 처벌의 차별화로 고의적이거나 악질적인 불법어업의 감소 도모

46) 중국어업행정처벌규정 18조, 19조, 22조.

<표 7-40> 사건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범칙금 통고제	- 목표 : 법·제도 수정(안) 작성 - 내용 : 전문가 및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안)작성	- 목표 : 수산관련법 제도 화 - 내용 : 경미한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 정착	-

라. 투융자

- 사건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불법어업 범칙금 통고제 연구와 공청회 및 여론 수렴은 제1단계('10~'12)에서 완료되는 과제로 각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불법어업 범칙금 통고제 연구는 어업감독공무원이 해상에서 범칙금을 부과시의 사회·경제적 타당성 및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범칙금 규모에 대한 연구에 소요

<표 7-41> 사건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 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계
불법어업 범칙금 통고제 연구	2	-	-	2
공청회 및 여론 수렴	2	-	-	2
사건처리체계 개선 합계	4	-	-	4

- 주1) 불법어업 범칙금 통고제 연구 : 범칙금 통고제의 사회·경제적 타당성 및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범칙금 규모 설정에 관한 연구비
- 주2) 공청회 및 여론 수렴 : 범칙금 통고제에 대한 어업인 및 관련인 공청회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조사비용

3. 해상 및 육상단속 체계 개선방안

가. 현황

- 어업지도사무소의 담당 업무구역의 확대
 -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1998년까지는 어업지도선이 영해 외측의 우리나라 수역(동해, 황해, 남해수역 및 특정해역)과 일본과 중국의 인접수역, 서일본수역, 동중국해, 대화퇴 등 근해수역 및 원양명태트롤어선과 원양꽂치붕수망어선이 조업하였던 북해도의 태평양수역을 업무구역으로 하였음
 - 1999년 이후부터 어업지도선은 우리나라의 동해·서해·남해에서의 한국어선 뿐만 아니라, 외국어선의 영해침범 등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는 것과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어선의 월선조업과 피랍방지를 위한 지도를 주된 임무로 함
 - 근해수역에서는 우리나라 어선의 불법어업 방지와 더불어 의료지원 및 조난선 구조, 유류, 식수 등 장기조업에 필요한 지원을 주된 임무로 하였으며,⁴⁷⁾ 원양수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한·일 어업협정 이행 및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규제조치 위반을 지도·단속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음
 - 그러나 1999년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일·중어업협정 등 동북아수역에 새로운 어업질서가 형성됨으로써 어업지도선의 업무구역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286,543km²)으로 대폭 축소되었음
 - 다만, 과거에는 어업지도선의 임무가 우리나라 어선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과 관할수역 침범을 지도·단속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업무는 대폭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기관별 담당구역의 불명확
 - 현행 불법어업 단속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수산담당 공무원 및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등 여러 기관으로서 이들 기관의 업무구역이 명확하지 않음
 - 이들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의 업

47) 「어업지도선 관리 운용 및 승무원복무지침」 제58조에서 복지모선에 의한 대민지원 사업을 출어선에 긴급환자 발생시 치료, 투약 및 수용, 출어선에 대한 유류, 청수, 기관부속품 및 기타 선용품 보급, 기관 및 항해기기의 고장시 긴급수리, 조난발생시 구조예인하거나 선단선 또는 귀항선에 예인조치, 기타 출어선의 요청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영역을 구분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영해 내측 평수구역을 관할수역으로 담당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는 영해 이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어업지도사무소는 영해이원의 어선어업을 주 지도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식장, 위판장 등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 ※ 양식장 단속은 수사후 압수물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상존하므로 지자체와 합동단속
- ※ 수협위판장 단속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육상단속반 단속시 활동을 하며,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육상단속반은 주기적으로 관할 수협위판장 점검을 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절대 부족

- 시·도의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유사하며,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법 처리, 연근해어선 행정처분, 어업협정 위반어선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해양사고 어선의 긴급구호 및 어선 안전조업지도, 어업지도 관련 정보 수집 및 처리, 외국 어선의 동태 파악 보고 및 지도·단속, 어선지도선 운항 및 관리, 기타 어업지도 단속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 등을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시·도별로 어업감독공무원으로서 육상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각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6-10명 정도이며, 이들 육상 근무자 중에서도 실질적인 어업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두명에 불과한 실정임
- 예를 들어, 부산시 영도구의 어업지도 조직 및 업무를 살펴보면, 수산담당 중 1명은 팀장이고, 4명이 수산 업무 계획 수립,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신고에 관한 업무, 어항시설 관리,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관련 업무, 어업보상에 관한 업무, 어선 관리, 낚시선 표지판 관리, 방치·폐선 관리, 한·일,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된 업무, 어업인 후계자 지정 및 관리 업무, 수산물 원산지 및 유통 관리, 어획량 및 어업통계조사 등을 수행하고, 어업지도 담당 1명이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법 처리, 연근해어선 행정처분,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 등을 담당함. 2명은 어업지도선 운항 및 어업지도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소형 어업지도선 1~2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육

상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도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상단속은 물론 육상에서의 불법어업단속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나.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와의 업무 제휴 미흡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에 소속된 어업감독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임명권자가 되고, 직무와 복무 및 인사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 어업감독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자가 되며, 인사, 직무와 복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을 받음
 - 이 때문에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관한 협력은 관련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의 협력에 기초하여야 하나, 임명직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이에 무조건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어렵다는게 현실임
 -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와의 업무 제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각 기관별로 독자적인 지도·단속 계획의 수립과 이행으로 인하여 양식장, 위판장 등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단속업무의 비효율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도의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은 특성상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도·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저조함. 최근 3년 평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단속건수는 약 1.4건이며, 어업지도선 1척당 단속건수는 연간 14.2척임

<표 7-42> 시도별 공무원 및 지도·단속선 1인당/척당 단속비율

구분	공무원수(A)	지도·단속척수(B)	단속건수(C)	(C/A)	(C/B)
강원도	82	3	149.7	1.8	49.9
경상북도	163.3	2	27.7	0.2	13.9
부산시	90.7	10	111.7	1.2	11.2
울산시	20	2	8.7	0.4	4.4
전라북도	51	4	68	1.3	17.0
전라남도	186	17	180.7	1.0	10.6

구분	공무원수(A)	지도·단속척수(B)	단속건수(C)	(C/A)	(C/B)
경상남도	68	12	255	3.8	21.3
인천시	21	9	21	1.0	2.3
제주	79	4	23	0.3	5.8
충청남도	32	6	95	3.0	15.9
경기도	29	6	25	0.9	4.2
평균	75	7	88	1.4	14.2

주 : 2006~2008 3년 평균 현황

○ 어업지도사무소의 육상 단속 기능 배제

- 어업지도사무소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국내어선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 협정과 정부간 합의 사항 이행 및 지도·단속, 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인 지원, 기타 어업분쟁 예방 조정, 해양사고 방지 및 어로활동 보호를 위한 지도, EEZ, TAC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수행, 어업지도상황실 및 무선국 운영, 어업지도선의 정비 및 운항관리,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어업지도사무소가 창설될 때부터 지금까지 해상에서의 불법어업 단속을 주된 임무로 하여 왔으며, 육상단속에 대한 업무는 원활히 되지 못함

다. 개선방안

1) 목표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포함된 시·도 어업지도조직의 창설
 - 시·도 및 시·군·구의 어업지도업무를 통합하여 어업지도조직 창설
 -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와 같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독립기관화 추진

2) 추진내용

- 시·도 어업지도조직의 창설
 -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의 어업감독공무원 및 어업지도선을 통합하여 시·도 어업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어업지도조직 신설
 - 어업지도·단속 계획수립, 어업지도선 관리, 어업감독공무원 및 어업인 교육, 불법어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등을 담당하는 독립기관화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와 시·도 어업단속조직의 협력체제 상설화
 - 새로이 창설하는 시·도 어업지도조직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파견제 도입
 -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및 충북을 제외한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는 11개 시·도 어업지도조직에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2명 정도를 상주하게 하여 국가계획의 달성도를 제고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원 확충
 - 어업지도선의 운항을 위한 법정 승무정원의 확보
 - 새로이 조직되는 시·도 어업지도·단속 조직에 파견될 22명 인원 확보
 - 국제수산기구의 가입으로 인한 업무수행을 위한 외국어 능력자 보충

라. 기대효과

- 시·도 어업지도조직의 창설
 - 첫째, 어업지도에 필요한 적정인원의 확보와 더불어 육상 및 해상 어업지도팀을 별도로 조직할 수 있어 육상 및 해상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현재 시·도와 시·군·구 어업지도선간의 관할수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도에서 시·군·구의 어업지도선을 통합하여 관리하면 중복수역 문제가 해결되고, 규모의 경제가 구축되어 보다 계획적인 어업지도·단속이 가능할 것임
 - 셋째, 시·도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면 각 어업지도선의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현재보다 어업지도선의 척수를 감축할 수 있어 관리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와 시·도 어업단속조직의 협력체제 상설화
 -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계획과 실행의 일원화를 도모
 - 농림수산식품부와 시·도의 합동 또는 상호 협력체제에 의한 입체적인 단속으로 불법어업을 근절

<표 7-43> 해상 및 육상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해상 및 육상단속 체계 개선	- 목표: 지방자치단체 어업감독공무원 업무능력 강화 - 내용 · 시·도 어업지도조직의 창설	- 목표: 중앙과 지방의 연계강화 - 내용 · 어업지도사무소와 시·도어업지도조직의 협력체계 구축	- 목표: 어업지도·단속업무 실행의 일원화 정착 - 내용 · 상호 협력체제에 의한 입체적인 단속

마. 투융자

- 해상 및 육상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시·도 어업지도조직 창설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제1단계('10~'12)에 15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협력체계 구축은 어업지도사무소와 시·도 어업지도조직의 원활한 업무의 협력을 위하여 그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제1단계('10~'12) 연간 0.1억 원의 예산의 소요

<표 7-44> 해상 및 육상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 : 억 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시·도 어업지도조직 창설	15	0	0	15
협력체계 구축	0.3	0	0	0.3
해상 및 육상단속 체계 개선 합계	15.3	0	0	15.3

- 주1) 시·도 어업지도조직 창설 : 시·도 어업지도조직 창설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의 확보 예산
- 주2) 어업인 의견반영 시스템 구축 : 연구비용으로 0.5억원 산정
- 주3) 고충처리 홍보 : 어업인 대상 홍보스티커 발부 및 마스크 홍보 등. 제1단계에서는 연간 1억원, 이 후에는 연간 0.5억원으로 산정

4. 지도·단속 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방안

가. 현황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평균 13.8명⁴⁸⁾으로 선박운항에 필요한 최저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어업지도선 1척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범위는 광활한 해역이고, 담당하여야 할 임무 또한 다양하여 현재의 어업지도선으로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을 전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어업지도선은 연간 160일 내외의 출동을 하고 있으며, 한번 출동은 10일 내외로 장기간 출동하고 있는데, 승선 어업감독공무원 중 72%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이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
 - 어업지도선 직원 근무 시간은 200톤급 이하는 일평균 14.3시간, 1주 100.1시간, 500톤급 이상은 일평균 10.3시간, 1주 72.1시간으로, 이는 해상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긴급상황을 고려한 수치보다 많은 시간근무로 선원법 55조에 해상근로시간을 1주 최대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장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연고지 등을 배제한 지역에서의 출동명령제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대부분 해안가 지역에 연고를 둔 자들로서 불법어업을 행하는 자가 고향 선·후배이거나 또는 가까운 지인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받을 수 있음
 - 그 뿐만 아니라, 불법어업을 행하는 자가 부모형제이거나 또는 고향 선·후배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탁하거나 또는 청탁 등의 부패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음
 - 따라서 어업감독공무원의 출신지역을 감안하여 각 어업지도선별로 인사발령을 하고, 가능한 한 출신지역이 아닌 곳으로 출동하도록 하여 어업지도선의 출동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48) 200톤급(11명), 300톤급(13명), 500톤급(14명), 1000톤급(17명) 승선

- 불법어업 단속시 어업인과의 마찰 등으로 사고위험 상존, 근해위주 출동에 따른 위험한 해상환경에 노출, 신조대체건조(증톤)의 톤급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승무정원 계속 승계로 선박직원 승무자격 및 정원 미달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나. 문제점

-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근무 의욕 저하
 - 선박 관련 법률에서 근해이상 항행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당직근무를 3직으로 하여 8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과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승선하고 있는 어업감독공무원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등의 과도한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
 - 이 때문에, 근무의욕의 저하는 물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어업지도선관리의 부실화
 - 선박은 건조에서부터 운항하는 동안 5년마다 정기검사와 2년마다의 중간검사, 중간검사 사이의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주된 목적은 선박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항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박은 수시로 선박 수리 업무에 종사함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출동 중에는 제각기 맡은 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항해서는 선박수리 등의 출동준비를 위한 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있음
 - 선박 수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작업 중의 하나로 현재와 같이 적은 인원으로서는 수리 도중에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적은 승선 어업감독공무원 인원은 선박관리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기본적 선박운항인력 부족상태에서 선박운항업무와 불법어업지도업무 동시수행으로 인하여 어업지도선 주요업무 기능 약화.
- 유사업무 수행기관과의 수당범위 차이로 직원 사기 저하가 우려됨. 어업감독공무원은 해양경찰등 유사기관보다 출동일수 및 관할해역범위가 넓음

- 해양경찰은 업무범위가 관할경찰서 업무구역에 한정되나 국가 어업지도선은 연근해 및 EEZ, 대화퇴 수역으로 광범위 함
-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기준이 일반 관공선에 준하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소속직원의 사기저하
- 해양경찰과의 급여를 동급으로 비교해볼 경우 선박합정수당 및 활동비 등에서 약 월 70만원 이상 차이를 가짐

다. 개선방안

1) 목표

- 수당지급 형평성 확보 및 어업감독공무원 승선정원 확보와 최상의 선박관리 도모
 - 선박 운항에 필요한 최적의 선원 확보
 - 수시 수리체계 구축에 의한 최상의 선박 관리
 - 유사업무 수행기관과 수당지급 형평성 확보

2) 추진내용

- 승선 어업감독공무원 충원
 -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신조선박의 건조와 통신장비의 발달을 감안한 현실적 승선체계 구축
 - 현재 어업지도선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급수별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그리고 어업지도사무소가 어항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업감독공무원 중 일부를 선발하여 대학원 진학 등을 추진함
 - 또한 충원된 인원으로 연간 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선박의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것은 자체 수리하도록 하는 등 선박 수리비를 절감하도록 하여 인건비 상승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함
- 충원된 인원에 의한 연간 수리계획의 수립
 - 승선 어업감독공무원이 없어서 선박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승선 어업감독공무원이 충원된 만큼 인원에 맞는 자체수리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에 의해 선박관리하도록 함

- 수당지급 형평성 확보
 - 수산자원회복과 어업질서 및 해양주권 확립을 위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에 대해 유사업무를 수행기관과의 수당지급 범위 형평성 유지

라. 기대효과

- 승선 어업감독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 충분한 휴식시간의 부여로 선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며, 과도한 노동에 의한 피로도의 누적으로 인한 해양사고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임
- 선박관리의 최상화 도모
 -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승선 어업감독공무원의 확보로 인하여 연간 수리계획 작성의 유연화를 도모하며, 계획에 의한 선박수리로 어업지도선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과도한 선박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음
-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과 업무의 효율성 보장 및 유사업무기관과의 수당지급 범위 형평성 유지를 통한 승선 어업감독공무원의 업무 활성화 동기부여
 - 소속간, 선박간 승선정원체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승선 어업감독공무원의 확보 근거기준 마련

<표 7-45> 지도·단속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공무원 근무 개선방안	- 목표: 현실적 승선체계 구축 - 내용 · 기술발달을 감안한 현실적 승선인원 파악 및 배치	- 목표: 효율적 선박운용 및 선박관리체계 정착 - 내용 · 자체선박 수리계획 및 현실적 승무원 배치	-
수당지급형 평성 확보	- 목표: 지도·단속 공무원 업무동기부여 · 형평성있는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개정 및 수당지급	-	-

마. 투융자

- 지도·단속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적정인력확충을 통한 어업감독공무원의 현실적 승진체계 및 효율적 선박운용과 수당지급의 형평성 확보로 구분할 수 있음. 인력확충에 대한 예산은 앞서 업무영역의 확대에서 포함되었으므로 동 사업에서는 중복집행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포함되지 않음. 수당지급형평성 확보는 물가상승 및 수당의 상승을 고려하여 제1단계('10~'12)와 제2단계('13~'15)에서는 연간 12.8억원을 제3단계('16~'19)년에는 33%를 증가시켜 연간 17.1억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음

<표 7-46> 지도·단속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프로그램 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수당지급형평성 확보	38.4	38.4	51.2	128
지도·단속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 합계	38.4	38.4	51.2	128

주1) 인력확충에 대한 예산은 앞서 업무영역 확대에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배제

주2) 수당지급형평성 확보 : 제1단계, 제2단계 연간 연간 12.8억원, 제3단계 연간 17.1억원
(물가상승 및 수당상승고려)

5. 불법어업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어업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불법어업 단속업종 우선순위의 선정 및 업무능력의 집중 등에 대하여서는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업종별 집중적 단속은 관행화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단속에 있어서 단속업무능력의 집중화를 시행한 사례가 있음
 - 이후 업종별 단속의 업무능력 집중 및 우선순위별 어업지도·단속은 시행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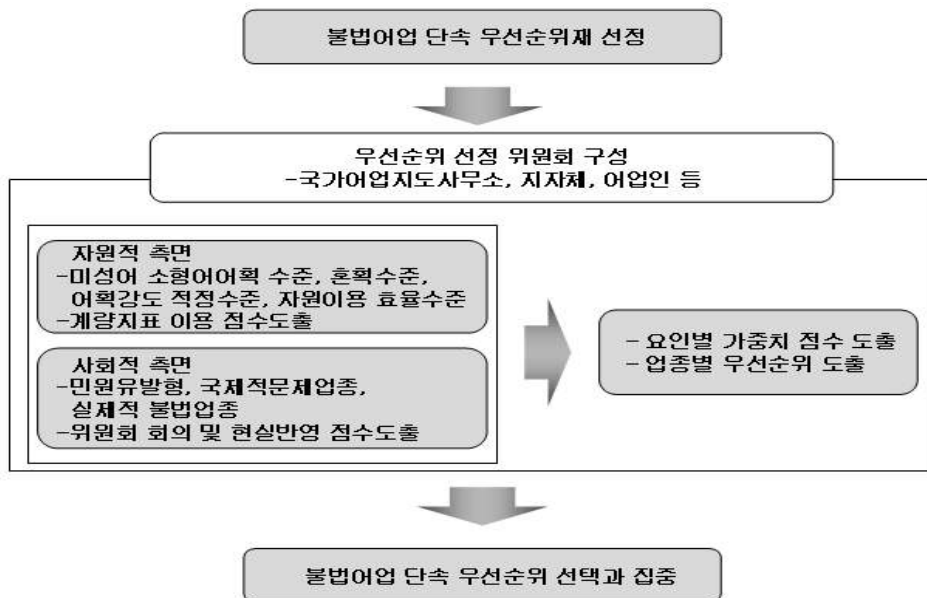
- 어업지도·단속업무의 목표가 불법어업의 근절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환경의 실현이라 한다면, 불법어업의 단속에 있어서도 자원적인 측면 및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즉, 예를 들자면 연안복합어업 1척과 트롤어업 1척에 대한 단속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며, 단순한 조업구역 위반과 악질적인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차이가 있음
 - 앞 서 6장의 지도·단속업무의 경제적 효용분석의 직접효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척당 단위노력당어획량이 높거나 미성어의 어획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단속은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다. 개선방안

- 어업지도·단속 업무의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단속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 단순히 단속건수의 확대 보다는 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타 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원유발형 및 국제적으로 규제가 되는 문제업종, 실제적인 불법 업종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야 함
- 또한, 신규어구의 개발 및 어업기술의 발달,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현실적 상황을 고려 역시 필요함
- 동 연구에서는 불법어업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체계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함. 우선순위의 선정은 크게 자원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고려하여 선정함
 - 자원적 측면 : 미성어·소형어 어획수준, 혼획수준, 어획강도 적정수준, 자원이용 효율수준
 - 사회적 측면 : 타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원유발형, 국제적으로 규제가 되는 문제업종, 실제적인 불법 업종
- 자원적 측면의 각 요인별 점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량적 점수를 도출
 - 미성어 소형어 어획 수준 : 미성어나 소형어의 어획은 향후 상품성이 있는 자원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지속적 이용자원량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에 대한 중요도

- 어획대상의 혼획 수준 : 어획대상의 혼획은 목표어종 이외의 어종에 대한 선상폐기 및 자원의 소모를 가짐. 이에 대한 중요도
 - 어획강도의 적정 수준 : 어획강도가 적정어획강도 보다 높을 경우 지속적으로 자원량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적정 수준의 중요도
 - 자원이용의 효율 수준 : 동일한 어종에 대하여서도 업종별로 kg당 가격 즉, 어가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효율수준이 중요도
- 사회적 측면의 각 요인별 점수는 ‘우선순위 선정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현실상황 및 Delphi 기법을 이용하여 도출
- ‘우선순위 선정 위원회(가칭)’는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국가어업지도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어업인 등 현실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 ‘우선순위 선정 위원회(가칭)’에서 자원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각 요인별 중요도 가중치 점수를 도출하고 업종별 우선순위를 도출
- 단속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주요단속업종을 선정
 - 불법어업 단속의 우선순위는 수산업환경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3년을 주기로 재선정



<그림 7-12> 불법어업 단속 우선순위 선정 방법(안)

- 동 연구에서는 불법어업 단속 우선순위 선정 중 자원적 측면을 농림수산식품부 (2008), '연근해 업종별 경제성분석'의 결과를 참조하여 한가지 예로써 제시함
- 미성어 소형어어획 및 어획물의 혼획, 어획강도, 자원이용 효율 등을 고려한 자원적 측면

<표 7-47> 자원적 측면 점수 도출 방법

구분	Normalization	변수 내용	자료
미성어 소형어 어획 수준	$\frac{(1 - K_i)}{MAX(1 - K_i)}$	K_i = 각 어업 미성어어획비율 MAX = 각 어업 중 최고값	어업생산통계 06~08 평균치
어획대상의 혼획 수준	$\frac{(1 - K_i)}{MAX(1 - K_i)}$	K_i = 각 어업 혼획비율 MAX = 각 어업 중 최고값	어업생산통계 06~08 평균치
어획강도의 적정 수준	$\frac{K_i}{MAX(K_i)}$	K_i = 적정어획강도 대비 현행수준 MAX = 각 어업 중 최고값	수과원 내부자료
자원이용의 효율 수준	$\frac{K_i}{MAX(K_i)}$	K_i = 각 어업 자원이용효율점수 MAX = 각 어업 중 최고값	어업생산통계 '08

<표 7-48> 연근해어업 자원적 측면 업종별 영향도 분석

구 분	자원적요인				평균
	미성어 소형어 어획 수준	어획대상의 혼획 수준	어획강도의 적정 수준	자원이용의 효율 수준	
대기저(외)	0.537	0.413	0.855	0.410	0.554
대기저(쌍)	0.303	0.683	0.911	0.230	0.532
동해구기저	0.630	0.761	0.654	0.190	0.559
서남구기저(외)	0.621	0.537	0.804	0.480	0.611
서남구기저(쌍)	0.551	0.665	0.911	0.320	0.612
대형트롤	0.774	0.974	0.849	0.270	0.717
동해구트롤	0.909	0.997	0.838	0.130	0.718
대형선망	0.781	0.817	0.989	0.190	0.694
소형선망	0.829	0.812	0.810	0.400	0.713
근해채낚기	0.899	0.983	0.838	0.600	0.830
기선권현망	1.000	1.000	1.000	0.250	0.813
근해자망	0.817	0.690	0.771	0.400	0.670
근해안강망	0.477	0.490	0.894	0.340	0.550
잠수기	0.924	0.817	0.687	1.000	0.857
근해통발	0.571	0.961	0.587	0.800	0.730
근해형망	0.324	0.986	0.464	0.480	0.563
근해연승	0.626	0.906	0.771	0.600	0.726
연안자망	0.953	0.289	0.820	1.000	0.765
연안안강망	0.955	0.429	0.927	0.916	0.807
연안선망	0.983	0.939	0.904	0.617	0.861
연안통발	0.787	0.526	0.433	0.747	0.623
연안들망	1.000	1.000	1.000	0.597	0.899
연안조망	0.871	0.853	0.803	0.649	0.794
연안복합	0.551	0.477	0.803	0.818	0.66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08), '연근해 업종별 경제성분석' 재작성

- 또한, 불법어업 단속 우선순위 선정 중 사회적 측면은 정성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관계업종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음
 - 타 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원유발형, 국제적으로 규제가 되는 문제업종, 실제적인 불법 업종

<표 7-49> 연근해어업 사회적 측면 업종별 영향도 분석

구 분	민원 내용	관련업종	민원유발 및 불법어업 영향도
대기저(외)	대기저(외)어업의 조업구역 조정민원	대기저(쌍)	△
대기저(쌍)	-	-	△
대형트롤	대형트롤어선의 128도 이동조업 및 공조조업 민원	근해채낚기, 동해안어업인	●
동해구트룰	동해구트룰어선이 당초의 어선구조를 현측식에서 선미식 불법개조 문제	동해구트룰	○
대형선망	-	-	△
소형선망	청어·멸치자원 선점을 두고 조업구역 중복으로 인한 분쟁	연안양조망	●
근해채낚기	대형트롤어선의 128도 이동조업 및 공조조업	대형트롤, 동해안어업인	●
기선권현망	기선권현망어업이 조업구역을 이탈하여 면허·허가받은 어구주변에서 인망조업 울산연안 업종간 자율적으로 정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	정치성어업	●
근해자망	근해자망어업의 연안조업으로 인한 분쟁 대게자원 및 꽃게자원 이용을 둘러싼 분쟁	연안자망, 근해통발, 연안복합 등	○
근해안강망	멸치자원 선점을 두고 어구·어법에 대한 분쟁	연안양조망 연안개량안강망	○
잠수기	어업권이 설정된 마을어장에서 조업하거나 잠수기어선이 무단 침범조업	마을어업, 연안통발 등	●
근해통발	대게자원 및 꽃게자원 이용을 둘러싼 민원유발	연안자망, 근해자망 등	○
근해형망	금지구역 침범조업 및 조업구역으로 인한 민원	연안복합 등	○
근해연승	-	-	△
연안자망	업종간 조업구역의 중첩으로 인한 어구훼손 민원유발 연안자망과 근해자망·통발어업간 조업구역	연안선망, 연안복합, 근해자망	●
연안안강망	치자원 선점을 두고 어구·어법에 대한 분쟁유발	근해안강망, 연안양조망	○
연안선망	자원 선점을 두고 어구·어법에 대한 분쟁유발	근해안강망, 소형선망	●
연안통발	업종간 조업구역의 중첩으로 인한 어구훼손 민원유발	연안자망, 근해자망	○
연안조망	업종간 조업구역의 중첩으로 인한 어구훼손 민원유발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
연안복합	어업권이 설정된 마을어장에서 조업하거나 잠수기어선이 무단 침범조업		○

주) ● : 매우심각, ○ : 심각, △: 양호

- 불법어업 단속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사회적 측면은 정성적인 부분으로 향후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면담 및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계량화가 필요함
- 또한, 이러한 단속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대내적인 여건 및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지속적·주기적으로 관련 전문가의 면담 및 통계적 자료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기대효과

- 단속업무의 우선순위를 자원적 측면 및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객관성있는 분석을 통하여 도출함으로써 단속업무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수산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 단속의 집중을 함으로써 향후 자원의 이용 및 개선된 어업환경을 실현

<표 7-50> 불법어업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방안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단속우선순위 설정	- 목표: 객관적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 - 내용 · 단속 우선순위 선정의 이론적 기반 검토 · 현실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정	- 목표: 단속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적 단속체계 정착 - 내용 ·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 단속 실시	-

마. 투융자

- 불법어업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방안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은 단속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개최 및 의견수렴과 '우선순위 선정 위원회(가칭)' 설립에 대한 투융자가 포함됨

- 단속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개최 및 의견수렴은 제1단계('10~'12)에 연간 0.3억원, 제2단계('13~'15)와 제3단계('16~'19)에는 연간 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우선순위 선정 위원회(가칭)' 설립은 제1단계('10~'12)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0.6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표 7-51> 불법어업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방안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프로그램 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단속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개최 및 의견수렴	0.9	1.5	2	5
'우선순위 선정 위원회(가칭)' 설립	0.6			
불법어업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방안	1.5	1.5	2	5
합계				

- 주1) 전문가 회의개최 :및 의견수렴 : 제1단계('10~'12)에 연간 0.3억원, 제2단계('13~'15)와 제3단계('16~'19)에는 연간 0.5억원
- 주2) '우선순위 선정 위원회(가칭)' 설립 : 위원회 설립을 위한 초기 제반비용 및 출범비용 포함 0.6억원

제3절 불법어업 감시감독 체계 개선방안

1. 모니터링 체제개선

가. 현황

- 어선모니터링제도(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 이하에서는 'VMS'이라 함)는⁴⁹⁾ 어선을 모니터링하고, 통제 및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잠재적인 효율성이 크게 평가되고 있음. 이는 공중감시, 해상에서의 감시선을 이용한 감시, 어획 양륙량 조사 및 서류조사 등의 방법보다 운용비용이 저렴하고, 다른 방법들과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음⁵⁰⁾
- VMS는 어선의 어업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 즉 위치, 속도, 이동경로, 어획량 등을 일정 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어업감시기관 및 선주 등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VMS는 어선의 기존 설비를 이용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연안이나 소형어선에는 단파송수신기(VHF: Very high Frequency)를 이용하고, 원양어선이나 또는 대형선에는 INMARSAT-C, GPS 등을 이용하고 있음
- 최근에 VMS의 시행이 확대될 것이 예측되면서, VMS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장치나 프로그램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이에 따라 기기 및 운용 성능의 향상은 물론, 설치비용은 저렴해지고 있음. 그러나 VMS를 이용하여 보고되는 각종 정보들의 보안문제가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어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VMS를 통하여 보고한 각종 자료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의 지속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어업자에게 관련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임

49) EEZ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2. 7, p.178~183

50) FAO,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 Fishing Operation(Vessel Monitoring Systems), 1998.

- VMS는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먼저 미국에서는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가 수산자원의 고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역이나 어업별로 VMS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주요 시행 지역으로는 알래스카 수역⁵¹⁾, 멕시코만 새우 어업⁵²⁾, 대서양 청어어업, 북동수역⁵³⁾ 등이 있음
- 캐나다에서는 1993년에 본격적으로 개별할당량제도가 시행되면서 어획량과 어선 위치에 대한 허위 기록과 허위보고 문제가 대두되었음. 이는 TAC가 엄격해지고 조업에 참여하는 어선이 증가하면서 조업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임. 특히 동해안 저서어업(주로 가리비어업)에서 문제가 심각하였는데, 허위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총 허용 어획량이 산정되고 이에 따라 어업이 관리된다고 간주되어 관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정확한 어획량과 어선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1994년부터 이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에 VMS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가장 큰 어업 중 몇 개 어업에 도입하고 있는데, 약 1,000척의 어선에 VMS를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 의무 어선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1992년부터 남동해역 트롤어업에 ITQ가 도입된 이후 산출량규제제도로 전환되면서 정확한 산출량 관리가 필요하였는데⁵⁴⁾, 어업자들이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어업에 종사하려는 모든 어선에 VMS를 설치·운용하도록 강제하고, 이 제도와 어선 입항 시 시행하는 항해일지 검사, 양륙량 보고 등의 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효과적으로 허위보고를 방지하고자 하였음. 이 제도의 도입 이후 불법어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허위보고는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내어업에 대한 불법어업을 방지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⁵⁵⁾

51) 알래스카 수역은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미국 총 어획량의 40%를 어획하는 중요 어장이다 (어선은 약 17,000척이고 어업자는 약 35,000명이다, 1997년 기준).

52) Alejandro Mejias, Jr., "Vessel monitoring sensor application in the Gulf of Mexico shrimp fishery",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2.5(Email : Andy. Mejias@noaa.gov).

53) 이 수역은 the New England & the Mid-Atlantic 어업관리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데, 1996년 현재 약 25,00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중요한 서식어종 34종류 중에서 14어종은 과도 이용되고, 2어종은 과도 이용 우려가 있는 어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54) 2000년 현재 전체 어업의 약 67%(가치기준)가 ITQ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2002년 6월에는 약 90%에 이를 전망이다(Australian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y, "Commonwealth Fisheries Management : Follow-up Audit, 2001, p.35)

- 뉴질랜드에서는 자원에 대한 과도이용 우려가 높아 자원보존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약 150척의 심해 트롤어선에 VMS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산부에서는 VMS의 설치가 어선의 활동을 감시하여 과도어획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다른 어업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
- 유럽연합에서는 각국의 영해기선에서 12마일 이내에는 자국어선에게만 조업이 허용되고, 그 밖의 경제수역에 대하여서는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공동조업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이러한 여러 국가의 어선들의 조업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VMS가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수역임. EU에서 VMS를 운용하는 주된 목적은 각국의 연안수역과 공동조업 수역을 이동하는 모든 어선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고, 각 연안국은 모두 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어 EU 공동으로 TAC를 분배하고 조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벨기에,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는 자발적으로 소형 어선에도 VMS 설치를 강제하고 있음⁵⁶⁾
- 일본은 VMS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러 가지 VMS 장비를 시험 운용하는 중에 있고, 아직까지 어업 감시에 직접적으로 VMS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원칙적으로 수산청 산하의 어업지도선이 일본의 모든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어업감시선은 자신의 관할수역의 불법어업을 감시함. 그리고 필요시에는 해상보안청 산하의 해시경비함도 불법어업 감시에 동원되고 있으며, 불법어업이 극심한 수역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여러 부서의 감시선이 합동으로 단속하기도 함
- 연근해 어선의 VMS 설치 거부
 - 어선의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수색 및 구조를 위하여 VMS 설치한다는 고유 목적에도 불구하고 VMS의 정보를 다른 어선들이 공유함으로써 타 어선에 자기 어장의 위치 노출로 인한 피해와 장비설치 및 운용에 따른 비용 등의 이유로 어업인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음

55) John M, Davis,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vessel monitoring system requirements to combat IUU fishing", Expert Consultatio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rganized by the Government of Australia in Cooperation with FAO, Sydney, Australia, 15-19 May 2000, pp. 9~10.

56) FAO, "Coordinating working party on Fishery statistics", Report of the Eighteenth Session Luxembourg, Grand Duchy, 6-9 July 1999, p.62.

- 현재 길이 24m 이상 어선은 AIS를 설치하고 있으나, 어선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 고의로 기기의 전원을 끄고, 사후에 AIS가 고장이 나서 작동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불법어업자에게 단속정보를 누출하거나 또는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단속
 - 어업지도사무소나 또는 해양경찰에게 불법어업을 자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함과 동시에, 불법어선들이 도주하거나 위반행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음
 - 이는 고발을 접수한 어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의 출동정보가 불법어업자에게 전달되고 그 정보를 접한 어업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철수하거나 또는 위반행위를 중단하는 것임

나. 문제점

- VMS를 이용한 불법어업 단속의 제약
 - 선박위치발신장치(AIS)는 현재 선박의 위치와 항적 등을 나타내는 기기로서 금지구역에서의 조업 등에는 활용 가능할 것임
 - 그러나 고의로 기기의 전원을 끄고, AIS가 고장이 나서 작동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경우에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며, 설상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기관 고장에 의해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머물렀다고 항변할 경우, 그 확인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 특정해역(서해 및 동해) 등 특정분야 조업어선 VMS 설치 목적 상이
 - 서해 및 동해의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VMS의 설치는 안전조업과 어선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며, 이는 불법어업의 감시감독을 위한 목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VMS를 설치한 어선이 금지구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은 될 수 있으나, 이는 수범자들이 법규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
 - 현재의 수산업 여건상 어업자들이 술선수범하여 준법어업을 하지 않고 있고, 사실문제로서 금지하는 지역에서의 어획율이 높기 때문에, VMS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할 수 있음

- 불법어업 적발을 위한 VMS 자료의 신뢰도 문제
 - 더욱 중요한 것은 금지구역 내에서 일정시간 머물거나 또는 저속이동이 조업 때문인지 아니면, 이동과 투망시간을 고려하여 저속으로 항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의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일부 선원들과 선주들의 반대에 부딪혀⁵⁷⁾ 선박위치발신장치(AIS) 부착 문제가 무산되었으나, GPS 고장으로 NLL을 넘어 북측 경비정에 예인되 억류 중인 연안호 사건과 관련, 소형 어선에도 선박위치 발신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수색 및 구조를 위해 AIS 설치를 의무화하려 했으나 이들 정보를 어선들이 공유함으로써 타 어선에 자기 어장의 위치 노출로 인한 피해와 고가 장비 부담 등의 이유로 선주와 선원들이 반대에 무산됨

- 현재 선박안전법에는 단독 및 선단을 구성해 출어하는 어선들은 3~4시간마다 어업무선국에 위치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별다른 후속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해경 경비정 및 해군 함정의 감시 범위 밖에 있는 어선은 자발적 교신 이외 방법으로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위성항법장치나 무선장비가 고장 날 경우 후속장치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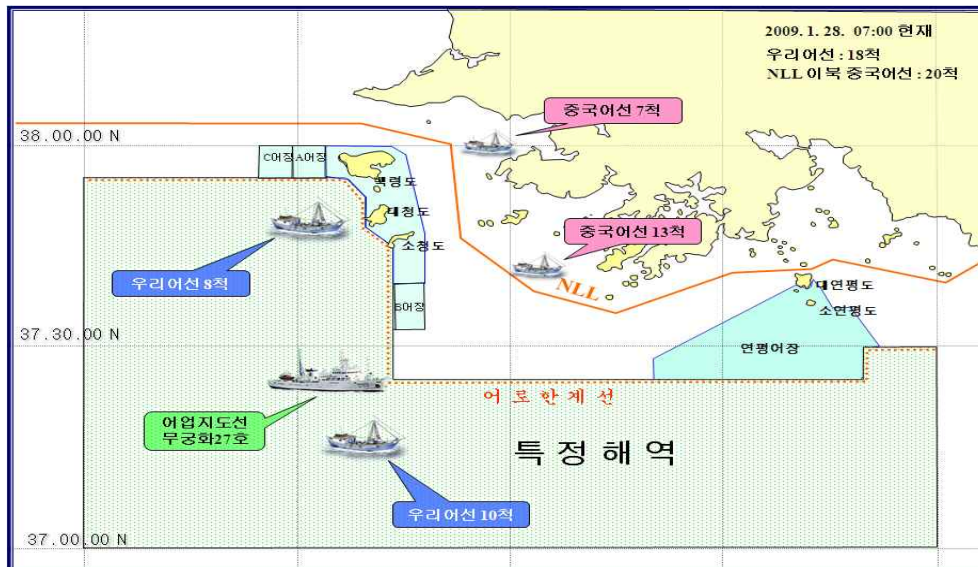
- 현재 AIS를 설치하고 있는 어선은 길이 24m 이상 어선과 총톤수 2톤 이상 유어선에만 부착토록 하고 있어 이 문제를 정부가 다시 추진한다 해도 현재로써는 법률 개정작업이 쉽지 않을 것임

다. 개선방안

- 모니터링 체제개선의 목표는 중장기적 VMS 설치를 통한 효율적 불법어업 모니터링체계 구축임
 - 단기적으로 서해 및 동해 NLL주변 특정 해역 조업어선 VMS 설치
 - 중장기적으로 근해어선에 VMS설치

57) 수산신문 2009.8.17 기사 인용

- VMS 설치는 연근해 어업에서 어장의 정보제공 기피로 인하여 어업인들이 매우 강한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서해 및 동해의 NLL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에 VMS 설치 추진
- 특정해역 조업어선에 대한 VMS설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어선규모가 작은 연안어업을 제외한 근해어업에 대하여 VMS를 설치
- 현재 관련법은 국토해양부의 선박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박안전법에서 관련 내용을 어선법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그림 7-13> 서해 NLL 주변 어장도

<표 7-52> 모니터링 체제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모니터링 체제개선	- 목표: VMS장착 기반조성 및 시범도입 - 내용 · VMS장착에 따른 효과 추정 및 인식도 조사 실시 · 동서해 특정해역 조업 어선 VMS 장착	- 목표: VMS장착 확대 - 내용 · 근해어업 중 대형선박 사용 업종에 대하여 VMS장착 확대 · VMS를 이용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 목표: 효율적 모니터링 제도 정착 - 내용 · 연안어업을 제외한 근해조업 어선에 대하여 VMS장착 · VMS를 이용한 모니터링시스템 정착

라. 기대효과

- VMS의 장착은 어업인해상사고의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으며, 또한 불법어업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조업구역위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중요한 통계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마. 투융자

- 모니터링 체제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VMS장착에 따른 효과추정 및 인식도 조사는 제1단계('10~'12)에서 완료되는 과제로 연구를 통해서 실시되며 연구비용 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특정해역 조업어선 VMS 시범장착 지원 에는 동·서해 NLL에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근해어업 VMS 장착지원은 특정해역 시범장착 지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해어업어선에 대하여 제2단계('13~'15)부터 장착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여 제3단계('16~'19)에 완료를 필요로하며, 각 110억원과 150억의 예산이 소요
- VMS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개선은 VMS장비의 사용으로 효율적인 어선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부분과 어업환경 및 어업인 인식수준 등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비용과 개선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소요가 추정됨. 제2단계('13~'15)에 완료되는 과제로 단계별로 각 1억원 투입

<표 7-53> 모니터링 체제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 : 억 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VMS장착에 따른 효과추정 및 인식도 조사	0.5	0	0	0.5
특정해역 조업어선 VMS 시범장착 지원	12	0	0	12
근해어업 VMS 장착지원	0	110	150	260
VMS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개선	1	1	0	2
모니터링 체제개선 합계	13.5	111	150	274.5

주1) VMS장착에 따른 효과추정 및 인식도 조사 : 연구비용 0.5억원 산정

주2) 근해어업 VMS 장착지원 : 제2단계부터 근해어선에 대하여 장착을확대

2. 효율적 감시 및 신고시스템 개선 방안 (민간감시체계)

가. 명예감시선 제도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자원명예감시선』 제도가 도입(2003년 10월)되어 200척을 시작으로 2006년 500척, 2007년 600척으로 100척씩 확대되었고, 2008년에 연근해어선의 1%인 700척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음
 - 명예감시선은 불법 어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어선을 대상으로 3년간 지정, 불법어업 신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업인 계도·홍보, 여론 수렴 건의의 임무를 수행
 - 수산자원명예감시선의 경우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시 우선순위 배정,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
 - 2008년 10월 성육기 집중단속시 최초로 합동단속 참여
-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지정 및 운용 권한이 어업지도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됨
- 명예감시선의 불법어업 신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규모 및 외연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또한 정책적으로 감시체계 중 민간활용 방안 미흡으로 명예감시선 활용도 저조
 - 명예감시선 신고실적 : ('03) 50건 → ('04) 23건 → ('05) 6건 → ('06) 5건
- 일반적으로 명예감시선의 활동을 하고 있는 선장들은 대부분 어촌계 및 자율관리공동체의 리더들이며, 실제 감시감독을 하는 해역 및 지역은 인근에 국한되기 때문에 불법어업을 행하는 어업인과의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감시효과가 저조할 수 밖에 없음
- 이와 더불어, 불법어업자에게 단속정보를 누출하거나 또는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단속
 - 어업지도사무소나 또는 해양경찰에게 불법어업을 자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함과 동시에, 불법어선들이 도주하거나 위반행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음

- 명예감시선의 지정은 명예직으로 인식될 만큼, 신고나 어업인 계도에 대한 보상이 따르지 못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가지지 못한 정책으로 머물고 있음. 또한, 명예감시선 선장들은 명예감시선 제도에 대한 인식 미약과 더불어 불법 어업의 형태 및 유형, 또는 수산제도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

2) 개선방안

- 명예감시선의 명칭 개선
 -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명칭을 ‘수산자원보호 명예관리선’ 등 규제적인 명칭에서 탈피 부정적 이미지 개선
- 명예감시선 선장의 간담회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
 - 정기적인 명예감시선 선장 모임 및 어업지도선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에 있어 의견수렴, 어업인 현지어론 및 건의사항 수렴
 - 명예감시선의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통하여 전문적 명예감시요원 양성
 - 실질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명예감시선으로 재정비하여 정예화
- 명예감시선 신고 인센티브 강화방안 모색
 - 민간 참여 중 가장 높은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개선
 - 명예감시선 실적에 따른 유류비지원 및 선박수리지원
 - ‘신고포상금제’의 포상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 명예감시선 운영체계의 개선
 - 명예감시선 합동 운영 및 지도·단속선과의 연계 단속 등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수립
 - 명예감시선의 업무를 신고 및 단속보다는 지도 및 예방에 중점을 두어 감시선에 대한 어업인들의 반감 감소
 - 명예감시선 활동 콜센터 운영을 통한 적극적 활동 유도 및 지원

3) 기대효과

- 명예감시선의 지정에는 지원조건이 있으므로 인센티브 증가 시 어업인들의 명예감시선 참여를 위한 불법어업 자연 감소 기대

- 명예감시선과 지도·단속선과의 민관합동 지도 및 단속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할 수 있으며,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전환 및 지도·단속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 가능.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증대 기대

<표 7-54> 명예감시선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명예감시선 제도개선	- 목표: 명예감시선 제도 활성화 기반조성 - 내용 · 명예감시선 제도 운영 개선수요 및 요구 수렴 · 명예감시선 신고 인센티브 체계구축	- 목표: 명예감시선 제도 확대 및 활성화 - 내용 · 명예감시선 지정 확대 · 명예감시선 운영체계 확립 및 인센티브제도 정착	- 목표: 민감감시감독 문화 정착 - 내용 · 명예감시선을 통한 민간감시감독 정착

5) 투융자

- 명예감시선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은 명예감시선 지정확대 및 장비지원과 명예감시선 인센티브 확대가 이에 포함됨. 명예감시선 지정확대 및 장비지원은 지속사업으로 연간 0.5억원의 예산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명예감시선 인센티브 확대는 실적에 따른 유류비 및 선박수리비 지원 등으로 연간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표 7-55> 명예감시선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프로그램 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명예감시선 지정확대 및 장비지원	1.5	1.5	2	5
명예감시선 인센티브 확대	3	6	8	17
명예감시선 제도개선 합계	4.5	7.5	10	22

주1) 명예감시선 지정확대 및 장비지원 : 연간 0.5억원 산정

주2) 명예감시선 인센티브 확대 : 연간 1억원 산정

나.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제도 개선(어파라치)

1) 현황 및 문제점

-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는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 어업질서확립과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에 불법 공조조업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어업인의 민간자율감시기능 강화 및 정부의 불법어업 정책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시행
- 신고대상은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중인 어선,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적재한 어선 또는 제작·유통·판매하는 행위, 근해트롤(대형트롤, 동해구트롤) 어선과 채낚기(근해채낚기, 연안채낚기)어선이 서로 협력하여 공조 조업하는 행위, 김 양식어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김 양식어장에 불법무기산을 사용한 자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불법어업 신고의 경우 : 최저 10만원- 최고 200만원으로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신고를 기준 함
 - 불법무기산 신고의 경우 : 최저 10만원- 최고 30만원으로 수사기관에서 불법 무기산을 보관·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물량을 기준으로 함
- 어업인 민간신고는 신고대상이 한정적이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이 제한으로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적임
 - 규정상 해면어업에 있어서는 소형기선저인망과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에 한정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떨어짐
 - 규정상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법원의 1심신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형의선고가 없을 경우에는 노력에 대한보상을 받지 못하며, 또한 신고와 신고포상금의 지급까지 시간상 공백을 가지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선호되지 못함

2) 개선사항

- 신고대상의 범위확대 및 현실상황을 반영한 대상 선정
 - 소형기선저인망의 경우 약 826억원을 투입해 2,467척의 소형기저어선을 매입·정리한 사례가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이 근절되었음. 이에 신고대상의 현실성이 없음
 - 주기적(3년 또는 5년)으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신고대상의 변경이 필요함
 - 신고대상이 약 2개 업종에 한정되고 있어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신고대상 범위의 단계별 확대가 필요

- 신고 인센티브 증가 및 포상금지급의 제도적 보안
 - 신고포상금의 상승을 통한 적극적 활동동기 부여
 - 신고포상금의 규정화 현행 '최저 10만원- 최고 200만원'은 민간신고 어업인에 있어서 모호한 규정이며 체계적으로 불법어업의 형태 및 체계에 따른 포상금의 단계별 분류 필요
 - 현행 신고포상금의 범원의 1심선고를 기준의 규정을 변경하여 신고시 즉시적 포상금지급방안 마련

<표 7-56>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개선	- 목표: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활성화 기반조성 - 내용 · 신고대상 및 포상금지급제도 개선안 마련	- 목표 :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확대 및 활성화 - 내용 · 신고대상 단계별 확대 · 인센티브 확대	- 목표: 민감감시감독 문화 정착 - 내용 · 신고 및 포상금제도 통한 민간감시감독 정착

5) 투융자

-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신고대상 및 포상금지급제도 개선안 마련은 제1단계('10~'12)에서 완료되는 과제로 연구비용으로 약 0.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홍보는 홍보스티커 발부 및 마스크 홍보 등 연간 0.3억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됨

- 인센티브확대를 위한 예산은 연간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7-57>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신고대상 및 포상금지급제도 개선안 마련	0.5	0	0	0.5
제도홍보	0.9	0.9	1.2	3
인센티브확대	3	3	4	10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제도 개선 합계	4.4	3.9	5.2	13.5

- 주1) 신고대상 및 포상금지급제도 개선안 마련 : 연구비용 0.5억원 예산 산정
- 주2) 제도홍보 : 홍보스티커 발부 및 마스크 홍보 등 연간 0.3억원 예산 산정

3.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 지도·단속과의 감시감독 및 단속 장비를 살펴보면 기관별 톤급 및 마력은 다르지만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음
 - 2009년 11월 기준 국가 어업지도선 보유 척수는 총 34척이며,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은 2008년 12월 기준 총 74척임.
- 기술의 발달로 불법어업 선박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지도·단속업무의 범위의 확대 등으로 선박을 중심으로 한 지도·단속업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계점을 가질 것으로 사료됨
- 인접국인 일본의 경우 지도·단속 업무에 항공기를 도입하여 입체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단속뿐만 아니라 조업어업인의 어장이용 상황 및 국외어선의 감시에도 이용하고 있음

<표 7-58> 일본 지도·단속 항공기 현황

일본 지도·단속 항공기	구분
	Cessna(세스나) C560
	Cessna(세스나) 172P
	비치(ビーチ) B200

2) 개선사항

- 지도·단속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해면에서의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지도·단속업무보다는 항공기 및 헬기를 연계한 입체적 업무수행시 그 효율성을 극대화 될 수 있음
 - 불법어선 정선 및 승선업무 선박담당
 - 조업구역 위반 및 불법어선 이동, 감시 항공기 및 헬기이용
- 중장기적으로 헬기 및 항공기의 도입에 대한 현실적 검토 및 항공기를 이용한 새로운 지도·단속 운영체계 검토 필요

<표 7-59>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	- 목표 : 지도·단속 항공기 및 헬기 도입 기반마련 - 내용 : 타당성검토 및 예산 확보	- 목표 : 시범적 도입 및 운영 - 내용 : 임대 및 시범적 도입 운영	- 목표: 입체적 지도·단속 업무 정착 - 내용 : 헬기 및 항공기 도입

3) 투융자

-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은 제1단계('10~'12)에 연구용역을 통한 항공기 도입 타당성 및 효율성분석에 0.3억원의 예산이 산정되며, 제2단계('13~'15)에 임대를 통한 항공기 시범도입 10억원, 제3단계('16~'19)에 헬기 및 항공기도입을 위한 구입에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7-60>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항공기 도입 타당성 및 효율성분석	0.3	0	0	0.3
임대 및 시범도입		10	0	10
항공기 및 헬기 도입	-	0	1000	1010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 합계	0.3	10	1000	1020.3

주1) 항공기 도입 타당성 및 효율성분석 : 연구비용 0.3억원 예산 산정

주2) 임대 및 시범도입 : 항공기 임대료 및 운영비 포함 연간 3억원, 시범도입체계구축 1억원 산정

4. 경제적 제재 투명성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불법어업 단속어선에 대하여 수협에서 각종 지원배제를 하고 있음

- 경제적조치 : 면세유, 영어자금, 기자재
- 수산활동 제한조치 : 조합원제명, 어민후계자 제약

○ 경제적 제재조치의 실행 미흡

- 경제적 제재조치에 대한 권한을 수협중앙회에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단속된 어업인 또는 어선에 대해 즉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조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가짐
- 수협의 조직 특성상 수협은 조치의 대상일 뿐, 경제적 제재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아님

○ 경제적 제재조치 현황

<표 7-61> 불법어업단속과 경제적 제재 조치 현황

추진사항	단위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단속건수	건	4,054	3,015	3,773	4,135
조합원 제명	명	114	16	283	7
면세유류 공급중지	건	1,963 (48.4%)	1,219 (40.0%)	893 (23.7%)	458 (11.1%)
수산기자재 공급중지	건	307	180	149	121
영어자금 대출금지	건/백만원	110/262	64/473	104/235	88/280
영어자금 대출금 회수	건/백만원	77/768	55/969	46/787	41/531

○ 경제적 제재조치 내용

<표 7-62> 경제적 제재조치 현황

제재조치	대상	제재내용 및 기간
면세유 제한	불법어업을 한 어선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기간
	어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어업허가 제한기간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을 매입 및 변경 등록한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기간
영어자금 회수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융자된대출금전액을 인지한날또는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상환하도록 통보 ○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위반회수에 따라 대출중지기간을 6개월씩 가산적용
자금의 지원중단	어업정지 45일이상의 처분을 받은 어업인 또는 선박	○ 대출금전액을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상환토록 ○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위반횟수에 따라 대출중지기간을 6개월씩 가산적용

2) 개선방안

- 수협이 경제적 제재조치의 역할을 국가지도사무소에 이관
 - 경제적제재조치의 권한을 국가지도사무소로 이관하여 단속부터 사후감시까지 총괄
 - 수협은 국가지도사무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실행기관 역할
- Control Tower 설치시 이에 포함
 - Control Tower 내에 사후감시 부서를 마련하여 일괄적 관리체계 구축

3) 기대 효과

- 단속효과 제고
 - 경제적 유인책(면세유 제재조치 등)을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도사무소에서 수행함으로써 단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일원화를 통하여 단속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음
- 어업인 경각심 제고
 - 자연, 인맥을 통한 제재조치의 부정적 집행을 방지하여 어업인에게 경각심을 제고하여 불법어업을 예방

<표 7-63> 경제적제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경제적 제재 투명성 확보	- 목표: 일원화된 행정처리를 통한 단속효과 극대화 - 내용 · 경제적제재조치 효율적 이행책 검토 · 경제적제재조치 권한 이관 검토	-	-

4) 투융자

- 경제적 유인책(면세유 제재조치 등)을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 지도사무소에서 수행은 앞서 Control Tower 설치에 예산이 포함되므로 동 과제에서는 예산 산정 제외

<표 7-64> 경제적제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경제적 제재 투명성확보 합계	-	-	-	-

제4절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개선방안

1. 법 및 제도 개선방안

가. 현황

- 수산업이라는 산업 활동에 수반되는 위반사항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다양한 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또한, 동일 법상에서도 위반에 대한 내용과 그 사례가 매우 복잡한 현실임
- 수산업법과 관련한 불법어업의 위반사례와 해당법조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7-65> 수산업법 위반사례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 어업경영의 타인지배 금지에 위반한 때	법 제34조1항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계류처분기간 중 출어조업한 때	법 제36조1항
○ 이 법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 위반에 의한 계류처분기간중 출어 조업한 때	법 제36조1항7호
○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 위반에 의한 계류처분 기간 중 출어조업한 때	법 제36조1항8호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허가를 받은 자나 어획물 운반업 등록을 한 자	법 제37조1호
○ 근해어업 허가선이 허가이외의 어업을 한 때	법 제43조1항1호
○ 연안어업 허가선이 타 관할구역(허가받은 시·도 이외의 구역)에서 조업한 때	법 제43조2항1호
○ 구획어업 허가선이 타 관할구역(허가받은 시·군·구 이외의 구역)에서 조업한 때	법 제43조3항
○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준수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6조4항
○ 이 법에 의한 어업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때	법 제58조
○ 어선에 표지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60조1항
○ 어선에 설치한 표지을 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때	법 제60조2항
○ 어업감독공무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불응한 때	법 제63조1항
○ 어업감독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때	법 제63조1항
○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 또는 회항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63조1항
○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때	법 제71조
○ 범칙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때	법 제73조
○ 어업감독공무원의 범칙어획물 방류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 74조2항

- 수산자원보호령과 관련한 불법어업의 위반사례와 해당법조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7-66>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사례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어구외의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한 때	보호령 제8조
○ 전라남·북도 일부해역에서 새우포획을 목적으로 한 어구사용 금지기간 (7.1~8.31) 위반한 때	보호령 제9조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한 때[별표 11]	보호령 제11조
○ 수산동물의 포획·채취 금지체장 또는 체중 이하인 것 포획·채취한 때	보호령 제12조
○ 대게 및 붉은 대게의 암컷 포획한 때	보호령 제13조
○ 수중에 방란된 어란 채취한 때	보호령 제14조제1항
○ 허가 이외의 어구를 선박에 적재한 때	보호령 제24조1항
○ 당해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 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용한 때	보호령 제25조제1항
○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한 때	보호령 제25조제2항
○ 범칙포획·채취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때 (수자보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을 소지·운반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판매)	보호령 제35조

- 선박안전조업규칙과 관련한 불법어업의 위반사례와 해당법조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7-67>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사례

위 반 사 례	해당법조
○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안전규칙 제15조1항
○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 등록 없이 출어한 때	안전규칙 제16조1항
○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단을 편성하지 않고 조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단에서 이탈한 때	안전규칙 제17조1항
○ 특정해역의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해역의 자제선을 월선 어로·항해한 때	안전규칙 제20조1항
※ 특정해역내 어로제한 - 통신시설·나침의·해도·구명등의·조석표·라디오 등 관계부처의 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춘 동력선. 다만, 특정해역 인접 지역의 어민이 보유 무동력어선 및 10톤 미만 어선은 예외(맞과 노비치 포함) - 10톤미만의 어선 출어금지 동해 : 동경131도00분 이동해역 서해 : 동경125도00분 이서해역(단, 울릉도기지어선은 울릉도에 서60마일까지 출어가능)	안전규칙 제21조
○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	안전규칙 제21조3항
○ 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안전규칙 제23조1항
○ 어업무선국에 허위로 위치 보고한 때	안전규칙 제23조1항

나. 문제점

-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
 - 다양한 어류를 주 어획대상으로 하는 어업 특히 끌어구의 경우에는 금지체장이나 금지체중의 어류가 포획되기도 하고, 포획금지어종이 포획되기도 함
 - 자원상황이 출어경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획이 금지된 어종의 해상투기나 방류가 쉽지 않음
 - 그리고 수산업법상의 치어, 자어의 포획금지에도 불구하고 특정어업의 경우에는 세망을 사용하게 허가함으로써 어업자들이 치어 포획에 대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
 - 이처럼 수산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규제의 내용을 어업인이 준수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업활동에 의해 수반되는 수산관련 법령의 위반을 고의든 과실이든지를 불문하고 어업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음

- 해상에서의 현장범 채포에 주안을 둔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 예를 들어, 권현망어업은 표층의 멸치를 포획대상으로 허가한 어업이지만, 위판장에 위판되는 어종은 멸치 뿐만 아니라, 상업성이 높은 고급어종의 위판이 계절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함
 - 이는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이 적발되지 않으면, 위판이나 유통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법한 방법으로 어획된 어류를 위판장 등의 공개된 장소에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특정어업이 정상적으로는 어획할 수 없는 어종의 위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에 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

다. 개선방안

1) 목표

- 수산법규의 순응도 제고를 위한 규제의 단순화
 - 규제사항의 단순화
 - 벌칙의 가벌성 조정

2) 추진내용

○ 별칙의 단순화

- 예를 들어 수산업법 제58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자원보호령 제8조(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에서 “법 제8조, 법 제43조, 법 제44조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어구 외의 어구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목적으로 제작·판매·소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선이 면허 또는 허가 이외의 어구를 탑재하고 동법 제58조를 위반하여 조업하였으나,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조업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의 적용이 모호해짐
- 조업 중인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위반으로 제96조의 별칙이 적용되지만, 조업하였으나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지 못한 경우와 조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8 또는 제24조 위반에 의한 제37조의 별칙규정이 적용됨(이 경우, 제8조나 제23조의 위반에 대한 별칙은 동일함).
- 법 제58조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위법한 어업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면 수산자원보호령 제8조나 제24조는 허가받은 어업자가 불법어구를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별칙조항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위반한 어업인들로 하여금 증거물(불법어구)의 은닉 등의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불법어구 등의 증거물을 은닉하는 것은 어구를 바다 속에 버리는 것으로, 썩지 않는 재질로 된 어구를 바다에 투기하면, 자원보호나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며, 항해안전 및 환경문제를 유발함
- 이와 같이 수산업법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물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별칙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음

○ 수산업법의 단순화·전문화 추진

-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관한 관리제도는 수산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산업법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는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등록령, 어업단속 공무원의 직무규정 등 4개가 있고, 부령으로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업면허에 관한 규칙 등 15개의 시행규칙이 있음

- 이와 같이 수산업법의 하위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된 것은 수산업에 관한 상호 이질적인 사항들을 수산업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는 수산업 관리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만 간략하게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법령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법률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산업법을 개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의 명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것이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 함
 - 따라서 한 개의 법률에 하나의 대통령령과 하나의 부령 체계로 법률체계를 단순화하여 어업인이 이해하기 쉽고 준수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 물론, 수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을 한 개의 법률에 하나의 대통령령과 하나의 부령 체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수산업법에 수산에 관한 사항을 망라한 종합법으로 둘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임
- 불법어업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수산업법 평가제 도입
- 현재 불법어업의 유형을 보면, 불법어업을 저지른 자가 다시 불법어업을 행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어업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현행 행정조치는 3번 이상 동일한 위반을 하였을 때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자들은 이를 악용하면서 불법어업을 계속하고 있음
 -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그 어선의 선장과 선박소유자에게 불법어업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제하고(법률의 근거규정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육의 참석태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어업허가나 면허, 수산관련 기업인가, 수산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등의 신청자)들로 하여금 수산업법의 숙지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야 할 것임
- 불법어업을 양산하는 현행 어업제도의 개선
- 128도 이동 조업금지의 규정은 1965년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도입된 것으로

서 대형기선저인망어선(외끌이 쌍끌이 포함)은 128도 이동 해역에서 조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임

- 신·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와 더불어 어업자원의 감소로 인한 생산고가 저하되자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오징어를 포획대상으로 하여 128도 이동의 동해해역에 출어하기 시작하였음
- 또한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단독으로 오징어를 포획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동해채낚기어선과의 공조하여 조업하는데, 이 역시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금지하는 사항임
- 그리고 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분쟁도 시대착오적인 정책의 산물임. 환경변화로 인한 어장변동에 따라 탄력적인 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그러한 정책이 펼쳐지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것임
- 따라서 지금이라도 불법어업을 양산하는 현행 어업제도를 현실성 있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어업제도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담당 중앙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결토록 하여야 할 것임

<표 7-68>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법·제도 개선	- 목표: 현실성 있는 수산제도 기반마련 - 내용 · 교육·홍보 강화 및 수산업법 평가제 · 수산관련 법·제도 개정안 마련 및 검토	- 목표: 알기쉽고 체계적인 수산법령 구축 - 내용 · 수산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개정	-

라. 기대효과

- 어업자가 수산법과 제도를 모르고 행하던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음
 - 수산업법을 위시한 자원보호령은 규제의 내용이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어업자들이 수산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수산행정의 100년 동안 사회와 어업현실은 많이 변했으나, 오히려 수산제도는 제자리 걸음을 함으로써 어업자들이 어업제도를 순응하지 않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꿈으로써 수산제도에 보다 순응하게 되고, 선진어업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

마. 투융자

-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에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개최가 포함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위한 예산으로 제1단계('10~'12)에 0.3억원, 연구결과의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에 0.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7-69>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0.3	0	0	0.3
공청회 개최	0.3	0	0	0.3
법·제도 개선 합계	0.6	0	0	0.6

주1)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연구비 0.3억원 예산 산정

2. 불법어업 예방활동 개선방안

가. 지도 및 교육 개선

1) 현황

- 어업자에 대한 불법어업 예방 교육은 매년 주로 수협 주관 하에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안전조업지도 교육과 시도별 어업인 교육, 불법어업 행위자 계도, 유인물 배포 등 홍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사안에 따라서 점수화하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청이 운용하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불법어업의 내용에 따라 점수화 하여 초회의 위반인 경우 교육기간을 최소화하고 2차 또는 3차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교육기간을 늘리는 제도의 운용이 필요함

2) 문제점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홍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어업 예방 홍보이고, 입간판 등을 이용한 소극적인 불법어업 예방 홍보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주체가 시도, 수협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미비하며 일관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교육의 기회에 있어 어업인지도자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음.
 - 실제 어업인 지도자(어촌계계장 및 공동체리더)와 소속 어업인간의 교육수준의 괴리발생
- 특히, 어업인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집행과 불법어업의 근절효과가 누구에게 나타나며,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념적 내용이 강화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어업지도사무소 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되, 교육장은 어업지도사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며, 경기도나 강원도와 같이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불법어업인의 교육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교육장을 마련하고 전문교육강사가 출장 교육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불법어업 예방활동 개선의 목표는 보다 구체적인 홍보 전략에 의한 불법어업 예방이라 할 수 있음
- 교육기회의 확대

- 어업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소속 어업인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어업에 대한 발생의 미연방지
- 고질적인 불법어업인들은 부산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준범어업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불법어업자 집합교육 실시
 - 불법어업 교육 참여에 의한 행정처분 일수 축소
 - 지역별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용
- 교육체계재정립으로 어업인들의 교육참여의지 향상도모 및 중앙 정부차원의 교육매뉴얼 개발과 교육전담단체의 단일화
 -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일정 조정 및 지원 등 보조적 역할 수행 및 사후관리 실시

4) 기대효과

- 중앙정부차원의 교육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최신의 정책방향과 제도를 알림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효과 극대화
-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정립으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교육으로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 기대

<표 7-70> 지도 및 교육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지도 및 교육 개선	- 목표: 효율적 교육체계 구축기반 마련 - 내용 · 어업인 교육기회 확대 · 정부차원 교육매뉴얼 개발 및 교육기관 단일화	- 목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정립 - 내용 ·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정립	- 목표: 어업인교육시스템 정착 - 내용 · 어업인 교육 확대

4) 투융자

- 지도 및 교육개선을 위한 투융자계획에는 교육메뉴얼 개발과 교육기관 개편 및 교육확대가 포함됨. 교육메뉴얼 개발은 정부차원의 교육메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전문가의 자문회의 등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제1단계('10~'12)에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교육기관 개편 및 교육확대는 교육기관의 단일화와 지속적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제1단계('10~'12)에 연간 1억원, 제2단계('13~'15)와 제3단계('16~'19)에는 연간 3억원의 예산소요

<표 7-71> 지도 및 교육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프로그램 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교육메뉴얼 개발	1	0	0	1
교육기관 개편 및 교육확대	2	9	12	23
지도 및 교육 개선 합계	3	9	12	24

주1) 교육메뉴얼 개발 : 연구비 및 전문가자문회의 개최 등 1억원의 예산 산정

주2) 교육기관 개편 및 교육확대 : 제1단계 연간 1억원 소요, 제2단계와 제3단계에는 연간 3억원 소요

나. 자율관리어업 업무연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의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여 2001년부터 도입되어 어업인 스스로 자율관리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불법어업 추방하고 있음
 - 2008년기준 659개 공동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51천명의 어업인이 활동을 하고 있음
 - 우수활동 공동체에 현재까지 약 754억원의 금액을 지원
-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분위기 확산 및 불법어업에 능동적으로 대처, 불법어업 방지 적극 추진(감시조 운영, 불법어업 고발센터 운영 등)

- 어업인에 대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산관련 교육 중 우수한 프로그램 보유 및 높은 참여율을 보유하고 있음
 - 광역단위워크숍 5회, 선진화방안 워크숍 1회, 심포지엄 및 자체교육 등
- 자율관리어업 참여 정도와 활동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공동체 평가항목중 불법어업관련 배점을 보유하고 있음
 - 총정 1,000점 중 불법어업관련 배점 30점
- 현재 어업지도·단속 업무와 자율관리공동체와의 업무연계는 전무한 실정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및 공동체평가에 지도·단속업무와 연계 필요

2) 개선방안

- 어업지도·단속 업무와 자율관리공동체 연계를 통한 어업인 인식도 제고
 - 자율관리공동체의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에 어업지도관련 교육을 포함 및 어업감독공무원이 참석을 함으로써 어업인들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할 수 있음
 - 단체 내 감시선 적극 지원으로 민간감시의 체계적 관리 도모가능(명예 감시선 위상 및 인센티브 확대)
-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업무에 어업지도사무소 참여
 - 공동체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육성사업비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각 공동체에서 평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어업지도사무소가 평가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어업인들에 대한 영향력확대 및 인식제고 가능
 - 불법어업적발시 감점비율을 확대 및 불법어업관련 배점을 확대 등, 공동체평가내용 수정을 통해 공동체 스스로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

3) 기대효과

- 자율관리공동체를 통한 민간감시에 따른 불법어업방지 및 국가 어업지도선 인식제고와 더불어 자발적불법어업 감시체제확립으로 자원회복기대, 불법어업 관련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업활동 도모 가능

- 또한, 기존의 자율관리공동체 교육시스템 및 조직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 극대화 가능

<표 7-72> 자율관리어업과 연계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자율관리어업과 연계	- 목표: 자율관리어업과 지도안전업무 협력기반 마련 - 내용 · 자율관리어업과 지도안전업무 연계방안 개발 · 교육프로그램에 국가어업지도소 포함	- 목표: 업무연계성 극대화 - 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개선(어업지도소 평가주체로 포함)	-

4) 투융자

- 자율관리어업과 연계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사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추가적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

<표 7-73> 자율관리어업과 연계를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자율관리어업과 연계	-	-	-	-
계	-	-	-	-

3. 불법어업자 구제 개선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형평성을 고려한 단속체계의 미정립으로 조업어선 어업권리 보호 미약
 - 현행 단속체계는 경미한 위반과 고의로 행하는 어업에 대한 사건처리가 동일하게 진행
 - 어업지도선이 해상순시 중에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을 인지한 경우, 그 인지한 시점부터 불법어업의 단속절차에 따름

- 어업활동을 영위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금지구역선 월선 및 체장제한 이하의 어류를 채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과실에 기인한 경미한 불법어업을 사건처리 흐름도에 따라 처리시 어업활동을 방해
- 어업지도·단속업무는 어업활동을 조장하고 보장할 책임을 가짐
-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여 근절시켜야 할 책임도 있지만,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조장하고 보장하여야 할 책임도 있음
 -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또한 지도·단속하는 것은 어업인들이 어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나. 개선방안

- 경미한 불법어업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도 신설
- 불법어업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어업감독공무원이 해상에서 범칙금을 부과(안)
 - 고질적이고 악질적이 아닌 단순한 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해상에서 여죄를 묻고, 다시 합법적인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을 보호
- 효율적 승선조사 및 불법자 사건조사시 등에서 불편사항 개선
- 승선조사후 선장확인 서명 생략
 - 중복 승선조사가 되지 않도록 조사어선에 스티커 발부
 - 불법어업 적발시 선택적 사건조사 : 현장 어업지도선 또는 입항후 어업지도소에서 받을 것인지를 어업인이 선택하도록 조치
- 사례
- 현재 우리나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위반현장에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
 - 중국은 어업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어정선의 공무원들이 불법어업의 위반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서 해상에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

다. 기대효과

- 경미한 불법어업에 대한 조사시간의 절감으로 유효인력의 운영 원활화 및 어업인에 대한 조업권리의 확보로 어업지도선에 대한 인식의 제고

<표 7-74> 불법어업자 구제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불법어업자 구제개선	- 목표: 어업인권리강화 기반구축 - 내용 · 단속관련 불편사항 수요조사 및 개선 · 불법자 사건조사시 등에서 불편사항 개선	- 목표: 어업인권리보장 확립 - 내용 · 경미한 불법어업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도 신설	-

라. 투융자

- 불법어업자 구제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는 단속관련 불편사항 수요조사와 범칙금 통고제도 신설이라 할 수 있음. 범칙금 통고제도 신설은 앞서 사건처리체계 개선방안에서 예산 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제외하였으며, 단속관련 불편사항 수요조사는 지속사업으로 제1단계('10~'12)와 제2단계('13~'15)에 각 1억원, 제3단계('16~'19)에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7-75> 불법어업자 구제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프로그램 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단속관련 불편사항 수요조사	1	1	2	4
불법어업자 구제개선 합계	1	1.5	2	4.5

주1) 범칙금 통고제도 신설은 앞서 사건처리체계 개선방안에서 예산 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제외

4.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 개선

가. 현황

-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는 2006년 8월에 통계청에서 통계작성 승인을 얻어 국가통계로써 관리되고 있으며, 통계는 자치단체,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 자체기관에서 단속한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매월 문서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함으로써 작성되며, 주요 작성 과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7-14>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 보고체계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는 기관별 단속실적을 취합, 월별, 연도별 불법어업 통계를 작성하고, 어업지도 정책에 활용
- FAO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불법어업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위협한다는 인식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통계의 정교화 등에 노력을 가지고 있음

나. 문제점

- 현행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의 문제점을 관련성, 시기성과 적절성, 비교성, 일관성의 4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관련성에서는 첫째, 단속된 어선들의 선적 및 해구에 대한 내용 부재. 둘째, 중국 및 일본 어선의 국내조업 단속 실적통계 미비. 셋째, 단순실적위주의 통계자료만이 명시되어 있어 자료활용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가짐
- 시기성과 적절성에서는 통계자료의 목적에 부합하는 data 요구가 필요함. 비교성에서는 첫째, 관련 국제적 수준의 통계자료의 필요 고려, 둘째, 단속실적 건수

위주의 통계자료만 있어서 비교성 부족, 셋째, 단속물량에 대한 자료 부재, 넷째, 조사의 기준치와 목적치가 모호, 다섯째, 불법어업 사례별 단속건수 부재 등

- 일관성측면에서는 첫째, 현재통계는 연도별, 어선별, 시도별로만 정리되어 있어 해구별 단속실적 등이 요구되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업종별 단속실적이 없어 세분화된 자료이용이 어려움

다. 개선사항

-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의 목적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고 있는 통계 수요에 부응하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첫째, 해양수산통계연보에 수록된 불법어업단속실적통계 항목은 통계적 유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연도별 어선별 불법어업단속실적과 시도별 불법어업단속실적 등 고작 2개의 항목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통계작성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불법어업 단속사례별 건수, 해구별 단속건수, 국적별, 단속건수, 선적항별 단속건수, 업종별 단속건수, 지역별 단속건수 등 고급통계항목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기적으로 통계이용자나 전문가의 의견과 개선안을 반영하는 것이 불법어업단속실적통계자료의 품질개선에 필요
 -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연구원, 교수, 대학원생 등 본 통계자료 주 이용자를 대상으로 3년주기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차년도 통계자료 작성 시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
- 둘째, 불법어업 단속사례별 건수와 해구별/국적별/선적항별 불법어업단속건수 제시하고 외국어선들의 불법 어업현황을 통계 관리함으로서 정책 자료로 그 활용성을 높여야 함
- 셋째, 불법어업단속실적통계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그래프로 제공되고 있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e-나라지표에서 제공되고 있는 시계열 및 항목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엑셀 파일을 활용하는 쌍방향 실시간 차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눈높이에서의 용어

해설과 자료문의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간시기, 자료이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홍보를 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도모

라. 기대효과

-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의 개선을 통하여 시대적 요구에 따르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충족을 위해 일관된 통계작성 기준과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해양수산부국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 가능
-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지원하여 그 활용성을 높이며,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보급

<표 7-76>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핵심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	- 목표: 효율적인 불법어업 통계시스템 구축 - 내용 · 이용자편의 제고 · 통계보고체계 시스템 개편 · 불법어업 통계 홍보	-	-

마. 투융자

-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통계보고 체계 시스템 개편은 제1단계('10~'12)에서 완료되는 과제로 약 0.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어업 통계 홍보는 인터넷홍보 및 통계 브로셔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연간 0.1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표 7-77>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을 위한 단계별 투융자계획

세부과제명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제1단계 (제1년~제3년)	제2단계 (제4년~제6년)	제3단계 (제7년~제10년)	계
통계보고체계 시스템 개편	0.5	-	-	0.5
불법어업 통계 홍보	0.3	0.3	0.4	1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개선 합계	0.8	0.3	0.4	1.5

주1) 불법어업 통계 홍보 : 인터넷홍보 및 통계 브로셔제작 등 포함 연간 1억원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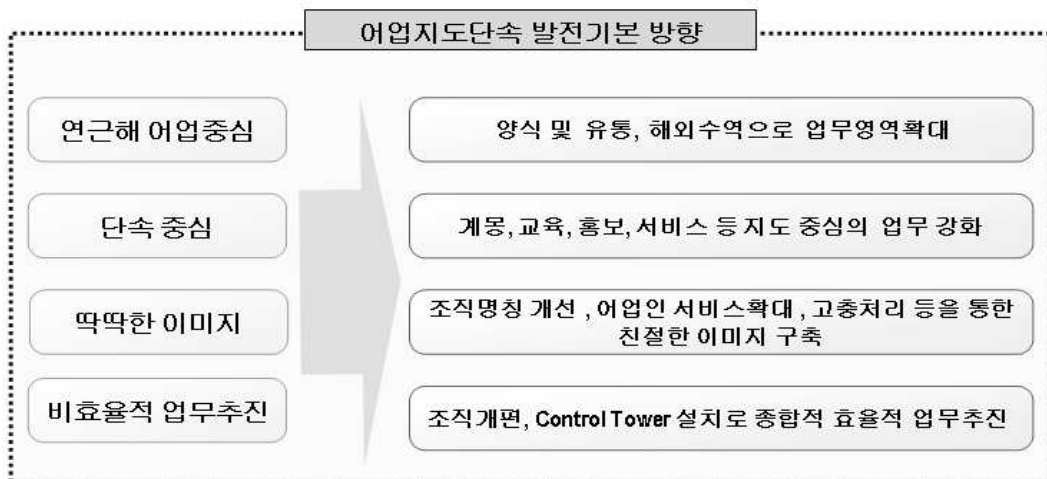
제8장 어업지도·단속 업무 중장기 발전 방안

- 본 장에서는 앞서 검토되었던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 업무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제7장에서 검토한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세부과제별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제시하였음

제1절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됨
 - 첫째, 이전의 연근해어업중심의 어업지도·단속에서 양식어업 및 육지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 지도·단속, 불법·비보고·비규제(IUU) 및 국제적 수산자원 관리가 강화에 따른 해외수역의 어업지도·단속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 필요
 - 둘째, 단속 중심의 업무에서 단속업무와 병행하여 어업인 교육, 홍보, 대어업인 서비스 등 지도업무의 강화필요
 - 셋째, 조직명칭의 개선, 대어업인 서비스 확대, 고충처리 창구로서의 역할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대상인 어업인에게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친절한 이미지 구축
 - 넷째, 조직개편 및 Control Tower 설치를 통하여 효율적 업무추진 체계의 구축 필요



<그림 8-1> 어업지도·단속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목표 및 비전

-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기본방향 및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업지도·단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5대 실천전략을 제시함
- 어업지도·단속의 비전은 ‘선진형 수산업실현의 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 수산업 여건의 개선 및 선진형 수산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어업지도·단속은 그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성장동력원이 되어야 함
- 어업지도·단속의 목표는 첫째, 수산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어업지도·단속 구축, 둘째, 대어업인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어업지도·단속 정착
- 이러한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5대 실천전략으로는 첫째, 조직명칭 변경 및 조직체계 개편, 둘째,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셋째, 법제도 개선. 넷째, 불법어업 예방적조치 강화, 다섯째, 불법어업 감시체계 개선이 포함됨



<그림 8-2> 어업지도·단속 비전 및 목표

제2절 주요 추진과제

- 어업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는 7장에서 제시된 주요과제 및 세부과제를 총괄 정리하였음
 - 어업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불법어업 감시체계 개선,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등 4개의 상위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과제를 정리함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도·단속 업무영역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기관별 역할 및 업무범위와 업무영역 확대 방안, 둘째,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조직개편, 명칭개선, Control tower 설치, 사건처리·단속 체계, 공무원 근무 및 복지, 불법어업 보고 및 관리 방안, 셋째, 불법어업 감시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체제, 효율적 감시 및 신고 시스템, 감시감독 장비, 경제적 제재조치, 넷째,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과 관련하여 법 및 제도 개선, 예방활동, 불법어업자 구제, 불법어업 통계 개선 등 임

<표 8-1> 어업지도·단속 실효성 제고 주요 추진과제

주요추진과제	세부 과제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업무구역의 적정성 검토
	국가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 - 육상·양식 및 원양으로 업무영역 확대 - 대어업인 서비스 영역 확충 -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 역할 - 특사경 제도개선 - 불법포경 업무개선
	공무원 근무 및 복지제도 개선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방안 - 어업지도사무소 명칭 변경 -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 Control tower 설치
	사건처리체계 개선
	해상 및 육상단속 체계 개선방안
	지도·단속 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
	단속우선순위 설정

주요추진과제	세부 과제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	모니터링 체제개선(VMS)
	효율적 감시 및 신고시스템 개선 방안 (민간감시체계) - 명예감시선 제도개선 -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제도 개선(어파라치)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
	경제적 제재 투명성 확보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법·제도 개선
	불법어업 예방활동 개선방안 - 지도 및 교육 개선 - 자율관리어업 업무연계 방안
	불법어업자 구제 (어업인 권리 강화)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 개선

제3절 단계별 추진(안)

- 단계별 추진에서는 각 추진 세부 과제별로 단기(제1단계) 3년, 중기(제2단계) 3년, 장기(제3단계) 4년으로 각 단계별 목표 및 주요 실시내용을 제시함

1.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을 위해서 제1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차등지원을 목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암행감찰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함. 제2단계에서는 단속영역 책임구역제 도입을 목표로 기관별 단속업무영역 구분함.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역할 및 업무범위 재설정 확립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업무역량 강화를 정착함
- 적정업무능력 확보를 위해서 제1단계에서는 적정업무 능력규모를 목표로 업무영역 적정 선박규모 및 인력 파악, 예산확보, 신규선박 건조설계 실시 및 건조착공을 추진함. 제2단계에서는 인력 및 선박확충을 통한 업무능력 개선을 목표로 국가어업지도선 임무수행구역 개선, 적정인력확보, 신규선박 건조착공을 추진함. 제3단계로 적정능력 확보로 국가어업지도선 효율화를 목표로 신규선박 건조완료 및 배치, 국가어업지도선 효율적 운영 정착을 추진함
- 육상·양식 불법어업 단속활성화를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단속인력 확충 및 육상단속반 조직을 목표로 육상·양식업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인력확보, 육상단속반 조직을 추진함. 제2단계에서는 육상·양식업 단속체계 정립을 목표로 효율성 높은 육상 단속반 단속체계 정립 및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함
- 해외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단계로 공무원 양성 및 새로운 수요 발굴을 목표로 해외업무 수행 전문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신설, 해외업무의 수요발굴을 추진하고, 제2단계로는 해외업무 수행으로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해외업무 수행 전문 공무원 확보와 해외업무를 위한 장비확보를 추진함.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는 지속적 해외업무확대로 국제적 위상 정착을 목표로 신규수요 발굴 및 지속적 해외업무 파견 등을 추진함

-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IUU어선 항구국조치 체계 기반마련을 목표로 IUU어선 항만국 조치업무를 위한 인력확보, 법 및 규정의 기반마련,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효율적 IUU어선 항구국 업무 구축을 목표로 IUU어선 항구국업무 체계정립 및 공무원 교육확대, IUU협정 확대를 추진함
- 지도·단속 서비스영역 확대를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어업인 서비스영역 확대 기반조성을 목표로 어업인서비스센터 건립, 서비스 홍보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어업인 서비스제공 확대를 목표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설문조사 간담회 등), 인력 및 장비확충으로 서비스 효율화 등을 추진함. 제3단계에서는 어업지도·단속 업무 인식제고를 목표로 어업인 서비스센터(Control tower 포함) 설립, 지속적 서비스 영역 확대 등을 추진함
-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 수행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어업인 고충해결 시스템 수립을 목표로 어업인고충처리센터 건립, 고충처리 홍보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어업인 의견반영 효율화를 목표로 어업인 의견반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특사경 제도개선을 위해서 제1단계에서는 특사경의 직무권한 확대 기반구축을 목표로 어선의 위반사항 단속 직무영역에 확대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특사경의 직무권한 강화를 목표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개정과 특사경의 단속 활성화 및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함
- 불법포경 업무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어업지도사무소 불법포경 단속시스템 기반마련을 목표로 불법포경 단속 교육실시, 단속 매뉴얼 작성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체계적 불법포경 단속체계 구축을 목표로 해경 및 해군과의 합동단속체계 구축, 불법포경 단속업무 확대 등을 추진함

<표 8-2>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단계별 추진(안)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차등지원 - 내용 : 지방자치단체 별 암행감찰 및 평가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단속영역 책 임구역제 도 입 - 내용 : 기관별 단속 업무영역 구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역할 및 업무 범위 재설정 확립 - 내용 :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업무 역량 강화 정 착
적정업무능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적정업무 능력규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영역 적정 선박규모 및 인력 파악 · 예산확보 · 신규선박 건조설계 실시 및 건조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인력 및 선박 확충을 통한 업무능력 개 선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업지도선 임무 수행구역 개선 · 적정인력확보 · 신규선박 건조착공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적정능력확보 로 국가어업지 도선 효율화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선박 건조완료 및 배치 · 국가어업지도선 효율 적 운영 정착
육상·양식 불법어업 단속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단속인력 확충 및 육상단속반 조직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양식업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위 한 인력확보 · 육상단속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육상·양식업 단 속체계 정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높은 육상단속 반 단속체계 정립 및 업무영역 확대 	-
해외수역으로 업무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공무원 양성 및 새로운 수 요발굴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업무 수행 전문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신설 · 해외업무의 수요발굴 (국제회의참석 및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해외업무 수행 으로 국제적 위상 강화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업무 수행 전문 공무원 확보 · 해외업무를 위한 장 비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지속적인 해외업 무확대로 국제 적 위상 정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수요발굴 및 지 속적 해외업무 파견 등

<표 8-3>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단계별 추진(안)(계속)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	- 목표: IUU어선 항구 국조치 체계 기 반마련 - 내용 · IUU어선 항만국 조 치업무를 위한 인력 확보 · 법 및 규정의 기반마 련 ·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목표: 효율적 IUU어 선 항구국업무 구축 - 내용 · IUU어선 항구국업무 체계정립 및 공무원 교육확대 · IUU협정 확대	-
지도·단속 서비스영역 확대	- 목표: 어업인 서비스 영역 확대 기 반조성 - 내용 · 어업인서비스센터 건 립 · 서비스 홍보방안 마 련	- 목표: 어업인 서비스 제공 확대 - 내용 · 신규서비스 수요발굴 (설문조사 간담회 등) · 인력 및 장비확충으 로 서비스 효율화	- 목표: 어업지도·단 속업무 인식 제고 - 내용 · 어업인서비스센터 Control tower 포함 · 지속적 서비스 영역 확대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	- 목표: 어업인 고충해 결 시스템 수 립 - 내용 · 어업인고충처리센터 건립 · 고충처리 홍보방안 마련	- 목표: 어업인 의견반 영 효율화 - 내용 · 어업인 의견반영 시 스템 구축	- 목표: 어업지도·단 속업무 인식 제고 - 내용 · 어업인 고충 센터 Control tower 포함
특사경 제도개선	- 목표 : 특사경의 직 무권한 확대 기반구 축 - 내용 · 어선의 위반사항 단 속 직무영역에 확대 적정성 검토	- 목표 : 특사경의 직 무권한 강화 - 내용 · ‘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 률’ 개정 · 특사경의 단속 활성 화 및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	-
불법포경 업무개선	-목표 : 어업지도사무 소 불법포경 단속시 스템 기반마련 -내용 · 불법포경 단속 교육 실시 · 단속 매뉴얼 작성	-목표 : 체계적 불법포 경 단속체계 구축 -내용 · 해경 및 해군과의 합 동단속체계 구축 · 불법포경 단속업무 확대	-

2.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 지도사무소 명칭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로 새로운 명칭개선으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명칭개선을 추진함
- 지도·단속 조직개편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조직개편(안) 및 예산확보를 목표로 조직개편(안) 마련 및 시행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조직개편 추진을 목표로 조직개편(안) 시행을 계속 추진함. 제3단계에서는 조직개편 정착을 목표로 지도·단속업무 실효성 극대화를 추진함
- Control Tower 건립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어업지도·단속 총괄기관 설립기반조성을 목표로 Control Tower 업무영역 및 범위검토를 추진하고, 제2단계로는 어업지도·단속 총괄기관 운영을 목표로 Control Tower 건립 및 종합적 업무영역 확보를 추진함
- 사건처리체계개선(범칙금 통고제)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법·제도 수정(안) 작성을 목표로 전문가 및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안)작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수산관련법 제도화를 목표로 경미한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 정착을 추진함
- 공무원 근무 개선방안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현실적 승무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술발달을 감안한 현실적 승무인원 파악 및 배치를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효율적 선박운용 및 선박관리체계 정착을 목표로 자체선박 수리계획 및 현실적 승무원 배치를 추진함
- 수당지급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제1단계로 지도·단속 공무원 업무동기 부여를 목표로 형평성 있는 특수 업무수당 지급 규정 개정 및 수당지급을 추진함
- 단속우선순위 설정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객관적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을 목표로 단속 우선순위 선정의 이론적 기반 검토, 현실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정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단속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적 단속체계 정착을 목표로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 단속 실시를 추진함

<표 8-4>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단계별 추진(안)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지도사무소 명칭개선	- 목표: 새로운 명칭개 선으로 이미지 제고 - 내용 · 명칭개선	-	-
지도·단속 조직개편	- 목표 : 조직개편(안) 및 예산확보 - 내용 : 조직개편(안) 마련 및 시행	- 목표 : 조직개편 추진 - 내용 : 조직개편(안) 시행(계속)	- 목표 : 조직개편 정착 - 내용 : 지도·단속업무 실효성 극대화
Control Tower건립	- 목표 : 어업지도·단속 총괄기관 설립기반조성 - 내용 : Control Tower 업무영역 및 범위검토	- 목표 : 어업지도·단속 총괄기관 운영 - 내용 : Control Tower 건립 및 종합적 업무영역 확보	-
사건처리체계개선 (범칙금 통고제)	- 목표 : 법·제도 수정(안) 작성 - 내용 : 전문가 및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안)작성	- 목표 : 수산관련법 제도화 - 내용 : 경미한 불법 어업 위반자 에 대한 범 칙금 통고제 정착	-
공무원 근무 개선방안	- 목표: 현실적 승무체 계 구축 - 내용 · 기술발달을 감안한 현실적 승무인원 과 약 및 배치	- 목표: 효율적 선박운 용 및 선박관 리체계 정착 - 내용 · 자체선박 수리계획 및 현실적 승무원 배치	-
수당지급 형평성 확보	- 목표: 지도·단속 공 무원 업무동기 부여 · 형평성있는 특수업무 수당 지급규정 개정 및 수당지급	-	-
단속우선순위 설정	- 목표: 객관적 단속의 우선순위 선정 - 내용 · 단속 우선순위 선정 의 이론적 기반 검 토 · 현실을 반영한 우선 순위 선정	- 목표: 단속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적 단속체 계 정착 - 내용 · 우선순위에 따른 체 계적 단속 실시	-

3.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

- 모니터링 체제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VMS장착 기반조성 및 시범도입을 목표로 VMS장착에 따른 효과추정 및 인식도 조사 실시, 동·서해 특정해역 조업어선 VMS 장착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VMS장착 확대를 목표로 근해어업 중 대형선박사용 업종에 대하여 VMS장착 확대, VMS를 이용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을 추진함. 제3단계에서는 효율적 모니터링 제도 정착을 목표로 연안어업을 제외한 근해조업 어선에 대하여 VMS장착, VMS를 이용한 모니터링시스템 정착 등을 추진함
-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지도·단속 항공기 및 헬기 도입 기반마련을 목표로 타당성검토 및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시범적 도입 및 운영을 목표로 임대 및 시범적 도입·운영을 추진함.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입체적 지도·단속 업무 정착을 목표로 헬기 및 항공기 도입을 추진함
- 경제적 제재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제1단계로 일원화된 행정처리를 통한 단속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적 제재조치 효율적 이행책 검토, 경제적 제재조치 권한 이관 검토 등을 추진함

<표 8-5>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 단계별 추진(안)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모니터링 체제개선	- 목표: VMS장착 기반조성 및 시범도입 - 내용 · VMS장착에 따른 효과추정 및 인식도 조사실시 · 동서해 특정해역 조업어선 VMS 장착	- 목표: VMS장착 확대 - 내용 · 근해어업 중 대형선박사용 업종에 대하여 VMS장착 확대 · VMS를 이용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 목표: 효율적 모니터링 제도 정착 - 내용 · 연안어업을 제외한 근해조업 어선에 대하여 VMS장착 · VMS를 이용한 모니터링시스템 정착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	- 목표: 지도·단속 항공기 및 헬기 도입 기반 마련 - 내용 · 타당성 검토 및 예산 확보	- 목표: 시범적 도입 및 운영 - 내용 · 임대 및 시범적 도입·운영	- 목표: 입체적 지도·단속 업무 정착 - 내용 · 헬기 및 항공기 도입
경제적제재 투명성 확보	- 목표: 일원화된 행정 처리를 통한 단속효과 극대화 - 내용 · 경제적제재조치 효율적 이행책 검토 · 경제적제재조치 권한 이관 검토	-	-

4.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 지도 및 교육 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효율적 교육체계 구축기반마련을 목표로 어업인교육기회 확대, 정부차원 교육메뉴얼 개발 및 교육기관 단일화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정립을 목표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정립을 추진함. 제3단계에서는 어업인 교육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어업인 교육기회 확대를 추진함
- 자율관리어업과 연계를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자율관리어업과 지도안전 업무 협력기반 마련을 목표로 자율관리어업과 지도안전업무 연계방안 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국가어업지도소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업무연계성 극대화를 목표로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개선(어업지도소 평가 주체로 포함)을 추진함
- 불법어업자 구제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어업인 권리강화 기반구축을 목표로 단속관련 불편사항 수요조사 및 개선, 불법자 사건조사시 등에서 불편사항 개선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어업인 권리보장 확립을 목표로 경미한 불법어업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도 신설을 추진함

-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로 효율적인 불법어업 통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이용자편의 제고, 통계보고체계 시스템 개편, 불법어업 통계 홍보 등을 추진함

<표 8-6>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단계별 추진(안)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목표의 내용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지도 및 교육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효율적 교육체계 구축기반 마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교육기회 확대 · 정부차원 교육메뉴얼 개발 및 교육기관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정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어업인교육시스템 정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교육기회 확대
자율관리어업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자율관리어업과 지도안전업무 협력기반 마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어업과 지도안전업무 연계방안 개발 · 교육프로그램에 국가어업지도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업무연계성 극대화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개선(어업지도소 평가주체로 포함) 	-
불법어업자 구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어업인권리강화 기반구축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관련 불편사항 수요조사 및 개선 · 불법자 사건조사시 등에서 불편사항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어업인권리보장 확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불법어업에 대한 범칙금 통고제도 신설 	-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효율적인 불법어업 통계시스템 구축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편의 제고 · 통계보고체계 시스템 개편 · 불법어업 통계 홍보 	-	-

제4절 투융자계획

- 단계별 투융자계획은 각 추진 세부 과제별로 단기(제1단계) 3년, 중기(제2단계) 3년, 장기(제3단계) 4년으로 각 단계별 투융자계획을 제시함

1.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의 예산은 단기 55억원, 중기 152억원, 장기 252억원으로 총 459억원이 산정됨
- 적정업무능력 확보는 단기 90.5억원, 중기 230억원, 장기 200억원으로 총 520.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은 육상·양식 및 원양으로 업무영역 확대와 IUU어선 항구국조치 업무개선, 어업인 서비스영역 확대,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 특사경 제도개선, 불법포경 업무개선의 세부 과제를 포함하여 단기 68.2억원, 중기 48억원, 장기 33.5억원으로 총 149.7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임
-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는 약 1,129억원

<표 8-7> 지도·단속 업무영역 확대 및 재정립 투융자계획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예산			예산 합계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및 업무 범위 재설정	55	152	252	459
적정업무능력 확보	90.5	230	200	520.5
국가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	68.2	48	33.5	149.7
육상·양식 및 원양으로 업무영역 확대	47.8	40.9	25.2	113.9
IUU어선 항구국 조치 업무개선 합계	1.9	0.6	0.8	3.3
어업인 서비스영역 확대	11.5	4	5	20.5
어업인 고충처리 창구역할	4	2	2	8
특사경 제도개선	1	0	0	1
불법포경 업무개선	2	0.5	0.5	3
예산 합계	213.7	430	485.5	1129.2

2.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의 투융자계획을 살펴보면 단기 170.2억원, 중기 69.4억원, 장기 68.2억원으로 총 30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방안에는 지도사무소 명칭개선, 지도·단속 조직개편, Control Tower건립이 포함되며 단기 111억원, 중기 29.5억원, 장기 15억원으로 총 149.5억원
- 사건처리체계개선은 단기에 4억원의 예산 소요, 해상 및 육상단속 체계 개선방안은 단기에 15.3억원 예산 필요. 지도·단속 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방안은 단기 38.4억원, 중기 38.4억원, 장기 51.2억원 총 128억원의 예산을 산정
- 단속우선순위 설정 단기 1.5억원, 중기1.5억원, 장기 2억원 총 5억원의 예산을 산정

<표 8-8> 지도·단속 운영체계 개선 투융자계획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예산			예산 합계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방안	111	29.5	15	149.5
지도사무소 명칭개선	4	0	0	4
지도·단속 조직개편	105	13	11	123
Control Tower건립	2	16.5	4	22.5
사건처리체계개선(범칙금 통고제)	4	-	-	4
해상 및 육상단속 체계 개선방안	15.3	0	0	15.3
지도·단속 공무원 근무 및 복지 개선방안	38.4	38.4	51.2	128
단속우선순위 설정	1.5	1.5	2	5
예산 합계	170.2	69.4	68.2	301.8

3.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

-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의 투융자계획은 모니터링 체제개선, 명예감시선 제도 개선과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제도 개선을 포함한 효율적 감시 및 신고시스템 개선,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이 포함되며 단기 22.7억원, 중기132.4억원, 장기 1,165억원으로 총 1,330억원의 예산을 산정

<표 8-9> 불법어업감시체계 개선 투융자계획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예산			예산 합계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모니터링 체제개선	13.5	111	150	274.5
효율적 감시 및 신고시스템 개선 방안	8.9	11.4	15.2	35.5
명예감시선 제도개선	4.5	7.5	10	22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제도 개선	4.4	3.9	5.2	13.5
감시감독 장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0.3	10	1000	1020.3
예산 합계	22.7	132.4	1165.2	1330.3

4.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투융자계획은 법 및 제도 개선방안, 불법어업 예방활동 개선방안, 불법어업자 구제개선, 불법어업단속실적 통계개선이 포함되며, 단기 5.4억원, 중기 10.8억원, 장기 14.4억원으로 총 30.6억원의 예산을 산정

<표 8-10> 법제도 개선 및 불법어업 예방 투융자계획

추진 세부 과제명	단계별 예산			예산 합계
	제1단계 (‘10~’12)	제2단계 (‘13~’15)	제3단계 (‘16~’19)	
법 및 제도 개선방안	0.6	-	-	0.6
불법어업 예방활동 개선방안	3	9	12	24
지도 및 교육 개선	3	9	12	24
자율관리어업과 연계	0	0	0	0
불법어업자 구제개선	1	1.5	2	4.5
불법어업단속 실적 통계개선	0.8	0.3	0.4	1.5
예산 합계	5.4	10.8	14.4	30.6

참고문헌

- 김봉태, 「미국의 어업관리 동향과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 연차보고서, (1969~2009)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지도·단속 업무편람(2006.12)
- 박성쾌 외, 「한·중·일 어업협정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 이상고, 「TAC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체계와 운영정책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 1999
- 이상고 외, 「효율적인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감시감독체제구축 및 읍저버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02.9
- 이상고 외, 「수산주요국의 수산업 지원체계 및 국내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6. 11
- 이상고 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체계적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8. 7
- 이정삼 외,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12
- 정도훈, 「우리나라 연근해 불법어업 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최종화 외, 「국제수산기구 자원보존관리조치의 국내적 수용체계에 관한 법제연구」, 해양수산부, 2006. 7
- 차철표 외, “불법 어업의 단속에 관한 법리고찰”, 「해사법연구」, 제11권1호, 1999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국제어업질서 구축에 따른 국제어업 협력방안」, 해양수산부, 2000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2003. 2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수산기구의 자원보존조치 비교분석」, 해양수산부, 2005. 6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EEZ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2. 7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선박안전조업 입법체계의 구축 연구」, 해양수산부, 2002. 7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3. 6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방안 Work Group 운영」, 해양수산부, 2003. 12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수산자원회복계획 초안 작성을 위한 Working Group 운영」, 해양수산부, 2004. 12
- 한국수산회, 「일본어협 관련 자료집」, 2007. 6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연근해어구의 체계적 관리방안 기초연구」, 해양수산부, 2007. 9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한·러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및 위생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영향과 대책 연구」, 해양수산부, 2008, 2

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효율적인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감시·감독체제 구축 및 읍
저버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9, 5

황기형 외, “어업 모니터링체제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12

최정윤 외, 수산시책 50년(2007)

Kang Yeon Sil, Lee Kwang Nam, "The Korean Case Study on the Fisheries Management
Costs", 2002

Paul Walis and Ola Faaten, "Fisheries Management Costs : Concepts and Studies", 2005
Production and Law Enforcement, 2008

Draft country note on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 United States, 2008

Norway, Fisheries Law Enforcement, 2005

Law Enforcement and Co - operation OECD Roundtable on Privacy, 2006

Law Enforcement Co - operation, 2006

국내 사이트

농림수산식품부 : <http://www.maf.go.kr/main.tdf>

동해어업지도사무소 : <http://eastship.mifaff.go.kr/main.tdf>

서해어업지도사무소 : <http://westship.mifaff.go.kr/main.tdf>

해양경찰청 : http://www.kcg.go.kr/main_page/main.asp

어업생산통계시스템 : <http://fs.fips.go.kr>

통계청 : <http://kosis.kr>

국외사이트

경제협력개발기구 : www.oecd.org

중국 어업정무국 : www.cnfm.gov.cn

중국 황발해어정국 : www.hbhyzchina.gov.cn

중국 동해어정국 : www.dhychina.gov.cn

중국 남해어정국 : www.nhychina.gov.cn

중국 농업국 : www.cfr.gov.cn

일본 수산청 : www.jfa.maff.go.jp

노르웨이 수산부 : www.regjeringen.no

유럽공동체 : www.euroko.net

아이슬란드 수산부 : www.google.co.kr/icelandic_fishery

영국 어업관리위원회 : www.nefmc.org